水原市史・附録

資料・解題

水原市

水原市史・附録

資料・解題

水　原　市

일 러 두 기

1. 본서는 앞서 편찬된 『水原市史』 上·中·下의 부록으로, 수원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고대·고려시대의 기사발췌 자료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한 관련 서적을 해제한 것이다. 단, 문헌 기사 자료는 『京畿道史資料集』 古代篇·高麗篇 Ⅰ·Ⅱ·Ⅲ·Ⅳ에서 발췌하였다.

2. 본서의 공간적 대상 범위는 현재 행정구역상의 수원을 기본으로 하되, 이전에 수원에 포함되었던 지역 전체를 포괄하였다 또한 해제한 서적의 선정 범위는 수원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기사가 있는 저서 및 수원출신인, 정조·정조와 관련된 인물 등의 저서를 광범위하게 모두 포괄하였다

3. **서술체제**

① 문장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고유명사 혹은 전문용어는 한자를 ()안에 표기한다.

② 부호는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

『 』 문헌·저서명
「 」 작품 항목명
() 한자병기, 부가설명
〖 〗 기사 출전, 한글과 음이 같지 않은 한자, 괄호가 겹칠 경우
< > 자료 두주, 번역문의 세주(細註)
〈 〉 자료 원문의 세주
○ 자료 원문의 시작
● 자료 번역문의 시작
□ 자료 결자(缺字)
“ ” 인용문
‘ ’ 강조

③ 연대는 서기를 우선으로 하고 왕조년(王朝年)·연호년(年號年)은 ()로 묶는다.

④ 이서명(異書名) 혹은 통용서명(通用書名)이 있을 때에는 서명 다음 줄에 표기하여 준다

예) 『주자가례(朱子家禮)』
→ 『가례(家禮)』

일러두기

제1편 자료(資料)

제1장 사서(史書)

1) 삼국사기(三國史記) 3
2)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7
3) 고려사(高麗史) 세가(世家) 14
4) 고려사(高麗史) 지(志) 17
5) 고려사(高麗史) 열전(列傳) 29

제2장 문집(文集) 및 금석문(金石文)

1)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51
2) 가정집(稼亭集) 53
3) 목은집(牧隱集) 53
4) 도은집(陶隱集) 57
5) 동문선(東文選) 57
6) 금석문(金石文) 58

제2편 해제(解題)

제1장 지지(地誌)

1) 경기지(京畿誌) 77
2) 경기읍지(京畿邑誌) 78

3) 경기도지도(京畿道地圖) 80
4) 고려사(高麗史) 지리지(地理志) 81
5) 기전영사례(畿甸營事例) 83
6) 기전영지(畿甸營誌) 84
7) 남양군읍지(南陽郡邑誌) 85
8) 남양부읍지(南陽府邑誌) 87
9) 남양읍지(南陽邑誌) 87
10) 대동지지(大東地志) 87
11)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90
12) 동국지리지(東國地理誌) 92
13)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志) 93
14)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 94
15) 수원군읍지(水原郡邑誌) 96
16)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 98
17) 수원읍지(水原邑誌) 101
18)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01
19) 여지도서(輿地圖書) 104
20)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106
21) 택리지(擇里志) 108
22) 화성지(華城志) 109
23) 화영사례(華營事例) 111

제2장 의궤(儀軌)

1)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 113
2) 국조보감감인청의궤(國朝寶鑑監印廳儀軌) 115
3) 사도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思悼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118
4) 사도세자예장도감도청의궤(思悼世子禮葬都監都廳儀軌) 119
5) 원행배설정례(園幸排設定例) 120

6) 원행을묘정리의궤 (園幸乙卯整理儀軌) 120
7) 원행정례 (園幸定例) 123
8) 장조상시봉원도감의궤 (莊祖上謚封園都監儀軌) 128
9) 장조영우원묘소도감의궤 (莊祖永祐園墓所都監儀軌) 129
10) 장조영우원천봉도감도청의궤 (莊祖永祐園遷奉都監都廳儀軌) 130
11) 장조현륭원원소도감의궤 (莊祖顯隆園園所都監儀軌) 131
12) 장조현륭원천원의궤 (莊祖顯隆園遷園儀軌) 133
13)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 133
14) 정조건릉천봉도감의궤 (正祖健陵遷奉都監儀軌) 135
15) 정조국장도감의궤 (正祖國葬都監儀軌) 136
16) 정조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 (正祖大王殯殿魂殿都監儀軌) 137
17) 정조부묘도감의궤 (正祖祔廟都監儀軌) 138
18) 정종대왕태실가봉의궤 (正宗大王胎室加封儀軌) 139
19) 화성성역의궤 (華城城役儀軌) 140

제3장 문집 (文集)

1) 건재집 (健齋集) 145
2) 계갑일록 (癸甲日錄) 146
3) 관수만록 (觀水漫錄) 148
4) 반계수록 (磻溪隨錄) 151
5) 번암집 (樊巖集) 155
6) 성호사설 (星湖僿說) 160
7) 수원유생우하영경륜 (水原儒生禹夏永經綸) 162
8) 시남집 (市南集) 165
9) 여사제강 (麗史提綱) 167
10) 여유당전서 (與猶堂全書) 169
11) 읍혈록 (泣血錄) 174
12) 정조윤음 (正祖綸音) 176

13) 정조초고(正祖草稿) 178
14) 천일록(千一錄) 179
15)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184
16) 한중록(恨中錄) 189
17) 홍재전서(弘齋全書) 190
18) 화성일기(華城日記) 196
19) 화영일록(華營日錄) 197

제4장 관찬서(官撰書)

1) 건릉지(健陵誌) 199
2) 건릉지장속편(健陵誌狀續編) 200
3) 국조보감(國朝寶鑑) 201
4) 규장각지(奎章閣志) 204
5) 규장총목(奎章總目) 205
6)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207
7) 무예도보통지언해(武藝圖譜通志諺解) 209
8) 병학지남(兵學指南) 209
9) 병학지남연의(兵學指南演義) 212
10) 병학통(兵學通) 214
11)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 216
12)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217
13) 우사별전초월과홀기(右司別前哨月課笏記) 219
14) 자휼전칙(字恤典則) 223
15) 현륭원지(顯隆園誌) 223
16) 화성궐리지(華城闕里誌) 226

제5장 일록(日錄)·등록(謄錄)·계록(啓錄)

1) 건릉기사(健陵紀事) 230

2)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231
3) 수원부계록(水原府啓錄) 235
4) 수원하지초록(水原下旨抄錄) 236
5)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242
6) 일성록(日省錄) 244
7) 정조강서원일기(正祖講書院日記) 246
8) 정조동궁일기(正祖東宮日記) 247
9) 정조수필일기(正祖手筆日記) 249
10) 정조실록(正祖實錄) 249
11) 정조원손궁일기(正祖元孫宮日記) 256
12) 정조청정일기(正祖聽政日記) 257
13)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258
14) 현륭원등록(顯隆園謄錄) 262
15) 현륭원사례(顯隆園事例) 262

제6장 고문서(古文書)

1) 경기각군각둔도조급각양세전납미납구별성책
(京畿各郡各屯賭租及各樣稅錢納未納區別成冊) 263
2) 경기각군각역둔을사도수도성책(京畿各郡各驛屯乙巳度收賭成冊) 264
3) 경기각군각역둔전답일경두락결복도액실수초록
(京畿各郡各驛屯田畓日耕斗落結卜賭額實數抄錄) 264
4) 경기각군둔역도조기경신임계봉미봉책(京畿各郡屯驛賭租己庚辛壬癸捧未捧冊) 265
5) 경기도각군소재각둔토조사성책(京畿道各郡所在各屯土調查成冊) 266
6) 경기도수원군양안(京畿道水原郡量案) -1900년 266
7) 경기도수원군양안(京畿道水原郡量案) -1903년 268
8) 경기수원부내수사원장부급적몰전답개타량병록성책
(京畿水原府內需司元帳付及籍沒田畓改打量並錄成冊) 269
9) 광주부수원부춘천부개성부각양면세갑오승총초책

(廣州府水原府春川府開城府各樣免稅甲午陞總抄册) 270
10) 남양관계서류(南陽關係書類) 270
11) 남양둔추수성책(南陽屯秋收成册) 271
12) 남양부마산동소재의열궁전답타량성책(南陽府馬山洞所在義烈宮田畓打量成册) 271
13) 남양부미지곶면소재선희궁전답양안(南陽府旀知串面所在宣禧宮田畓量案) 272
14) 남양부소재장용영전답안(南陽府所在壯勇營田畓案) 272
15) 남양부소재전답진기구별성책(南陽府所在田畓陳起區別成册) 272
16) 남양부우음도소재궁전답개타량성책(南陽府牛音島所在宮田畓改打量成册) 273
17) 남양총둔경둔추수기(南陽摠屯經屯秋收記) 273
18) 봉불기복게(奉佛祈福偈) 274
19) 수원군갈담면갈등리치사남인김자근봉핵검문안
(水原郡葛潭面葛等里致死男人金自斤奉覈檢文案) 276
20) 수원군만평리향탄둔책(水原郡晩坪里香炭屯册) 278
21) 수원둔수봉책(水原屯收捧册) 278
22) 수원목장결미수축곳성책(水原牧場結未收逐廘成册) 279
23) 수원부각포선세혁파성책(水原府各浦船稅革罷成册) 279
24) 수원부갑오조년분성책(水原府甲午條年分成册) 281
25) 수원부공도회과작(水原府公都會科作) 281
26) 수원부무인조년분성책(水原府戊寅條年分成册) 282
27) 수원부병술조년분성책(水原府丙戌條年分成册) 282
28) 수원부병술조환향각곡급각읍소재별비미마감성책
(水原府丙戌條還餉各穀及各邑所在別備米磨勘成册) 283
29) 수원부소재내영둔전답개타량성책(水原府所在內營屯田畓改打量成册) 283
30) 수원부소재용동궁전답타량성책(水原府所在龍洞宮田畓改打量成册) 284
31) 수원부수조성책(水原府收租成册) 284
32) 수원부수조출미태성책(水原府收租出米太成册) 285
33) 수원부외탕고봉부동전마감성책(水原府外帑庫封不動錢磨勘成册) －1886년 285
34) 수원부외탕고봉부동전마감성책(水原府外帑庫封不動錢磨勘成册) －1887년 286

제 1 편

자료(資料)

제1장 사서(史書)

제2장 문집(文集) 및 금석문(金石文)

제1장 사서(史書)

1)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10, 현덕왕 15년 2월] 〈수성군 · 당은현〉

○合水城郡唐恩縣.

●수성군(수원)과 당은현을 합하였다

[삼국사기 권35, 지4 지리2, 신라] 〈수성군〉

○水城郡. 本高句麗買忽郡, 景德王改名. 今水州.

●수성군. 본래 고구려 매홀군이었는데 경덕왕 때 이름을 (수성군으로) 고쳤다 지금의 수주이다[1]

[삼국사기 권35, 지4 지리2, 신라] 〈당은군〉

○唐恩郡 本高句麗唐城郡, 景德王改名, 今復故 領縣二, 車城縣, 本高句麗上〈一作車〉忽縣, 景德王改名, 今龍城縣. 振威縣, 本高句麗釜山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당은군 본래 고구려 당성군이었는데 경덕왕 때 이름을 (당은군으로) 고쳤다가 지금은 다시 옛 이름(당성군)을 쓰고 있다[2] 영현은 둘이다 거성현은 본래 고구려 상

1) 오늘날의 수원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헌강왕 15년(823) 2월에 수성군을 당은현(군)에 합쳤다고 전하나, 여기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후 고려 태조가 남쪽을 정벌할 때 수성군 출신 인물들이 귀순한 후 적극 보좌하여 그 공로로 수주로 승격되었다 고려 원종 12년(1271) 반란을 진압한 공로로 수원도호부로 승격되었다가, 다시 또 수주목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홍건적의 침입 때 제일 먼저 항복함으로써 강등되어 군(郡)이 되었는데, 군민들이 중앙의 재상에게 뇌물을 주어 다시 부(府)가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수원도호부로 고쳤다 고려시대 때에는 한남(漢南) 또는 수성(隋城) 등으로도 불리었다 (『고려사』 권56 志10 地理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9)

2) 오늘날의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 일대 고려 초에 당성군이라 하고서, 고려 현종 9년(1018)에 수주(水州)에 속하였다가 뒤에 인주(仁州)로 속하였다 고려 말에 강령도호부(江寧都護府)로 승격되었다가 다시 또 승격되어 익주목(益州牧)이 되었으나 다시 강등되어 남양부로 되었다 조선 태종 13년(1413)에 남양도호부가 되었다 이후 조선시대에 몇 차례의 지명 강등과 복귀를 반복하였다 일제시대인 1914년에 관할하의 2개 면이 부평군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수원군에 합쳐졌는데, 현재는 화성군 남양면을 비롯한 몇 개의 면으로 되었다(『고려사』 권56 志10 地理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9) 남양만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은 원래 백제의 영토였으나 장수왕의 남진으로 인하여 고구려 당성군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홀현<혹은 거홀현>이었는데 경덕왕 때 이름을 (거성현으로) 바꾸었으니, 지금의 용성현이다[3] 진위현은 본래 고구려 부산현이었는데 경덕왕 때 이름을 (진위현으로) 고쳐,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4]

[삼국사기 권37, 지6 지리4, 고구려] 〈한산주〉

○南川縣 〈一云南買〉, 駒城 〈一云滅烏〉, · 述川郡 〈一云省知買〉, 骨乃斤縣, 楊根縣 〈一云去斯斬〉, …… 皆次山郡 …· 奈兮忽沙伏忽 …· 買忽 〈一云水城〉, 唐城郡, 上忽 〈一云車忽〉, 釜山縣 〈一云松村活達〉, 栗木郡 〈一云冬斯肹〉, 仍伐奴縣, 齊次巴衣縣, 買召忽縣 〈一云彌鄒忽〉, 獐項口縣 〈一云古斯也忽次〉, 主夫吐郡, 首尒忽, 黔浦縣, 童子忽縣 〈一云仇斯波衣〉, 平淮押縣 〈一云別史波衣, 淮一作唯〉, 北漢山郡 〈一云平壤〉, 骨衣內縣, 王逢縣 〈一云皆伯, 漢氏美女迎安臧王之地, 故名王逢〉, 買省郡 〈一云馬忽〉, 七重縣 〈一云難隱別〉, 波害平史縣 〈一云頷〉, 泉井口縣 〈一云於乙買串〉, 述尒忽縣 〈一云首泥忽〉, 達乙省縣 〈漢氏美女於高山頭點烽火迎安臧王之處, 故後名高烽〉, 臂城郡 〈一云馬忽〉, 內乙買 〈一云內尒米〉, 鐵圓郡 〈一云毛乙冬非〉, 梁骨縣, 僧梁縣 〈一云非勿〉, 功木達 〈一云熊閃山〉, ·· 所邑豆縣, ·… 獐項縣 〈一云古斯也忽次〉, 長淺城縣 〈一云耶耶, 一云夜牙〉, 麻田淺縣 〈一云泥沙波忽〉, 扶蘇岬, 若只頭耽縣 〈一云朔頭, 一云衣頭〉, …… 冬比忽, 德勿縣, 津臨城縣 〈一云烏阿忽〉, 穴口郡 〈一云甲比古次〉, 冬音奈縣 〈一云休陰〉, 高木根縣 〈一云達乙斬〉, 首知縣 〈一云新知〉, ·· 甕遷, 今甕津縣, 付珍伊, 今永康縣, 鵠島, 今白嶺鎭

●남천현<남매라고도 한다>,[5] 구성<멸오라고도 한다>,[6] · 술천군<또는 성지매 >,[7] 골내근현,[8] 양근현<또는 거사참>,[9] …· 개차산군,[10] ·· 나혜홀,[11] 사복

551년(진흥왕 12, 성왕 29) 백제와 신라가 연합하여 고구려를 몰아내고 한강 하류 지역을 백제가 다시 치지하게 되었을 때, 이 지역도 되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553년 신라가 백제를 기습공격하여 한강 하류 지역마저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번에는 신라로 편입되게 되었다 이후 이 지역은 신라가 서해를 통해 중국과 교역하는 관문이 되었지만, 삼국간의 통일전쟁이 본격화되는 7세기 이후에는 백제와 고구려의 잇달은 침입으로 활발히 이용되지 못했다

3) 오늘날의 화성군 남양면 남쪽 일대 고려초에 용성현으로 바뀌었다가, 현종 9년(1018)에 수원도호부에 예속되었다

4) 오늘날의 송탄시 고려시대에는 충청도 관할하에 있었으나, 조선 태조 7년(1398)에 경기도로 이관되었다 1924년 평택군으로 합쳐 졌다

5) 오늘날의 경기도 이천 신라시대 한주(漢州)의 영현인 황무현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한주 황무현(黃武縣) 참조

6) 오늘날의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일대 신라시대의 거서현(巨黍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한주 거서현 참조

7) 오늘날의 경기도 여주 신라시대의 소천군(泝川郡)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소천군 참조

홀,[12] 매홀<또는 수성>,[13] 당성군,[14] 상홀<또는 거홀>,[15] 부산현<또는 송촌활달>,[16] 율목군<또는 동사힐>,[17] 잉벌노현,[18] 제차파의현,[19] 매소홀현<또는 미추홀>,[20] 장항구현<또는 고사야홀차>,[21] 주부토군,[22] 수이홀,[23] 검포현,[24] 동자홀현<또는 구사파의>,[25] 평회압현<또는 별사파의, 회일작유>,[26] 북한산군<또는 평양>,[27] 골의내현,[28] 왕봉현<또는 개백이라 한다 한나라 출신의 미녀가 안장왕을 맞이한 곳이라 하여 왕봉이라 하였다>,[29] 매성군<또는 마홀>,[30] 칠중현<또는 난은별>,[31] 파해평사

8) 오늘날의 경기도 여주읍 신라시대의 황효현(黃驍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소천군 황효현 참조
9) 오늘날의 경기도 양평군 양평면 일대 신라에서도 양근현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소천군 빈양현(賓陽縣) 참조
10) 오늘날의 안성군 죽산 일대 신라시대의 개산군(介山郡)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개산군 참조
11) 오늘날의 경기도 안성군 신라시대의 백성군(白城郡)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백성군 참조
12) 안성군 양성면 일대 신라시대의 적성현(赤城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백성군 적성현 참조
13) 오늘날의 경기도 수원 신라시대의 수성군(水城郡)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수성군 참조
14) 오늘날의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 일대 신라시대의 당은군(唐恩郡)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당은군 참조
15) 오늘날의 화성군 남양면 남쪽 일대 신라시대의 거성현(車城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당은군 거성현 참조
16) 오늘날의 경기도 송탄시 신라시대의 진위현(振威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당은군 진위현 참조
17) 오늘날의 경기도 과천 신라시대의 율진군(栗津郡)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율진군 참조
18) 오늘날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구로구 시흥 일대 신라시대의 곡양현(穀壤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율진군 곡양현 참조
19) 오늘날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부와 김포군 양동면과 양서면 일부 지역 신라시대의 공암현(孔巖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율진군 공암현 참조
20) 오늘날의 인천광역시 신라시대의 소성현(邵城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율진군 소성현 참조
21) 오늘날의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과 군자면 일대 신라시대의 장구군(獐口郡)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장구군 참조
22) 오늘날의 인천구 북구 계산동을 중심으로 한 부천, 부평 일대 신라시대의 장제군(長堤郡)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장제군 참조
23) 오늘날의 경기도 김포 구읍 신라시대의 수성현(戍城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장제군 수성현 참조
24) 오늘날의 김포군 김포면 일대 신라시대의 김포현(金浦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장제군 김포현 참조
25) 오늘날의 김포군 통진 고읍 신라시대의 동성현(童城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장제군 동성현 참조
26) 오늘날의 김포군 월곶면과 통진면 일대 신라시대의 호유압현(乎唯押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장제군 호유압현 참조
27) 오늘날의 서울특별시 일부 신라시대의 한양군(漢陽郡)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한양군 참조
28) 오늘날의 경기도 양주군 주안면 일대 신라시대의 황양현(黃壤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한양군 황양현 참조
29) 지금의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일대 신라시대의 우왕현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한양군 우왕현 참조
30) 오늘날의 양주군 주내면 일대 신라시대의 내소군(來蘇郡)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내소군 참조
31) 오늘날의 파주군 적성면 일대 신라시대의 중성현(重城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내소군 중성현

현<또는 액>,[32] 천정구현<또는 어을매곶>,[33] 술이홀현<또는 수니홀>,[34] 달을성현<한나라 출신의 미녀가 고산 위에서 봉화를 피워 안장왕을 맞이한 곳이라 하여 고봉이라고 이름붙였다>,[35] 비성군<또는 마홀>,[36] 내을매<또는 내이미>,[37] 철원군<또는 모을동비>,[38] 양골현,[39] 승량현<또는 비물>,[40] 공목달<또는 웅섬산>,[41] 소읍두현,[42] …… 장항현<또는 고사야홀차>,[43] 장천성현<또는 야야, 또는 야아>,[44] 마전천현<또는 이사파홀>,[45] 부소갑,[46] 약지두치현<또는 삭두, 또는 의두>,[47] 동비홀,[48] 덕물현,[49] 진림성현<또는 오아홀>,[50] 혈구군<또는 갑비고차>,[51] 동음나현<또는 휴음>,[52] 고목

참조

32) 오늘날의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일대 신라시대의 파평현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내소군 파평현 참조

33) 오늘날의 파주군 교하면 일대 신라시대의 교하군(交河郡)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교하군 참조

34) 오늘날의 파주군 주내면 일대 신라시대의 봉성현(峰城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교하군 봉성현 참조

35) 오늘날의 경기도 고양군 벽제 일대 신라시대의 고봉현(高峰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교하군 고봉현 참조

36) 오늘날의 경기도 포천 신라시대의 견성군(堅城郡)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견성군 참조

37) 오늘날의 경기도 양주군 북쪽 일대 신라시대의 사천현(沙川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견성군 사천현 참조

38) 오늘날의 강원도 철원 신라시대의 철성군(鐵城郡)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철성군 참조

39) 오늘날의 포천군 영중면 일대 신라시대의 동음현(洞陰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견성군 동음현 참조

40) 오늘날의 연천군 구읍 동쪽 일대 신라시대의 동량현(幢梁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철성군 동량현 참조

41) 오늘날의 연천군 연천읍 일대 신라시대의 공성현(功成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철성군 공성현 참조

42) 오늘날의 연천군 북면 일대 신라시대의 삭읍현(朔邑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토산군 삭읍현 참조

43) 오늘날의 장단군 북쪽 신라시대의 임강현(臨江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우봉군 임강현 참조

44) 오늘날의 장단군 군내면 일대 신라시대의 장단현(長湍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우봉군 장단현 참조

45) 오늘날의 연천군 미산면 일대 신라시대의 마전현(麻田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우봉군 마전현 참조

46) 오늘날의 개성 신라시대의 송악군(松岳郡)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송악군 참조

47) 오늘날의 장단 북쪽 일대 신라시대의 여비현(如羆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송악군 여비현 참조

48) 치소가 오늘날의 개풍군 서면 개성리 일대 신라시대의 개성군(開城郡)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개성군 참조

49) 오늘날의 개풍군 봉동면 홍왕리 일대. 신라시대의 덕수현(德水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개성군 덕수현 참조

50) 오늘날의 연천군 임진면 일대 신라시대의 임진현(臨津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개성군 임진현 참조

51) 오늘날의 강화군 신라시대의 해구군(海口郡)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해구군 참조

52) 오늘날의 강화군 하점면 일대 신라시대의 강음현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해구군 강음현 참조

근현<또는 달을참>,[53] 수지현<또는 신지>,[54] ·· 옹천<지금의 옹진현이다>,[55] 부진이<지금의 영강현>,[56] 곡도<지금의 백령진>[57]

2)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사절요 권5, 문종 21년 정월] 〈흥왕사 낙성에 수주 등에서 채붕하게 하다〉

○興王寺成凡二千八百間十二年而功畢王欲設齋以落之諸方緇流坌集命擇有戒行者一千赴會仍令常住特設燃燈大會五晝夜勑令百司及安西都護開城府廣水楊東樹五州江華長湍二縣自闕庭至寺門結綵棚櫛比鱗次連亘相屬輦路左右又作燈山火樹光照如晝是日王備鹵簿率百官行香施納財襯佛事之盛曠古未有

●흥왕사(興王寺)가 낙성(落成)되었는데 2800간이며, 12년 만에 준공하였다 왕이 재(齋)를 베풀어서 낙성하니, 각처에서 중들이 모여 들었다 계행(戒行)이 있는 자 1000명을 택하여 법회(法會)에 참예하게 하고, 이어 상시(常時)로 머물게 하였으며, 특히 5일 동안 밤낮으로 연등대회(燃燈大會)를 개설하였는데, 칙령으로 중앙의 모든 관청과 안서도호부(安西都護府)·개성부(開城府)·광주(廣州)·수주(水州 京畿 水原)·양주(楊州)·동주(東州)·수주(樹州 . 京畿 富平) 다섯 고을과 강화(江華)·장단(長湍) 두 현(縣)을 시켜서 뜰에서 절 문에 이르기까지 채붕(綵棚)을 꾸미게 하였는데, 빗살을 나란히 비늘처럼 차례로 잇달았으며, 왕의 연(輦)이 지나가는 길 좌우에는 또 등산(燈山)과 화수(火樹)를 꾸며서 대낮같이 환하게 하였다 이날 왕이 의장과 행렬[鹵簿]을 갖추고 백관을 거느리고 가서 분향하고 재물을 보시하였는데, 불사(佛事)의 성대함이 전에 없던 것이었다

[고려사절요 권11, 의종 9년 8월] 〈수원 출신 최루백의 효심〉

○召平章事崔子英知門下省事梁元俊起居舍人崔婁伯左司諫朴得齡左正言許洪材右正言崔祐甫訪問國政婁伯水原人戶長尙翥之子年十五父因獵爲虎所害婁伯欲捕虎母止之婁伯曰父讎可不報乎卽荷斧跡虎虎旣食飽臥婁伯直前叱虎曰汝食吾父吾當食汝虎乃掉尾俛伏遽斫而剖其腹取父骸肉盛虎肉於瓮埋川中葬父廬墓一日假寐其父來詠詩云披榛到

53) 오늘날의 강화군 교동면 신라시대의 교동현(喬桐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해구군 교동현 참조
54) 오늘날의 강화군 남쪽 일대 신라시대의 수진현(守鎭縣)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 해구군 수진현 참조
55) 오늘날의 경기도 옹진군
56) 오늘날의 옹진군 강령
57) 오늘날의 옹진군 백령면

孝子廬情多感淚無窮負土日加冢上知音明月虓風生則養死則守誰謂孝無始終詠訖遂不見服闋取虎肉盡食之

●평장사 최자영, 지문하성사 양원준, 기거사인 최루백, 좌사간 박득렁, 좌정언 허홍재, 우정언 최우보를 불러 국정(國政)을 자문(諮問)하였다 루백(婁伯)은 본관이 수원(水原)인데, 호장(戶長) 상저(尙翥)의 아들이다 나이 15세 때에, 아버지가 사냥하다가 호랑이에게 해를 당하였다 루백이 호랑이를 잡으려는 것을 어머니가 말리니, 루백이 말하기를, "아버지의 원수를 어찌 갚지 않겠습니까" 하고, 즉시 도끼를 들고 호랑이를 추적하였다 호랑이는 이미 그의 아버지를 먹고 배가 불러 누워 있었다 루백이 곧장 앞으로 달려가 호랑이를 꾸짖어 말하기를, "네가 우리 아버지를 먹었으니, 나는 마땅히 너를 먹으리라" 하였다 호랑이가 꼬리를 흔들며 엎드리는 것을 급히 도끼로 찍어서 죽이고 그 배를 갈라서 아버지의 뼈와 살을 꺼내고는, 호랑이 고기는 독에 담아서 냇물 가운데 묻고, 아버지를 장사지내고 여묘(廬墓)를 살았다 하루는 어슴푸레하게 잠이 들었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시를 읊기를, "가시덤불 숲을 헤치고 효자의 여막(廬幕)에 이르니, 정(情)의 느낌이 많아 눈물이 다함이 없구나 흙을 져서 날마다 무덤 위에 보태니, 마음을 알 자는 청풍과 명월뿐이라 살아서는 봉양하고 죽어서는 무덤을 지키니, 그 누가 효(孝)의 시종(始終)이 없다 하랴"라고 읊은 뒤에 이윽고 보이지 않았다 3년 복을 마치고는, 호랑이 고기를 가져다가 다 먹었다.

[고려사절요 권11, 의종 24년 8월] 〈수주의 백성이 금을 얻어 바치다〉

○水州民耕田得金一錠長二寸許頭尾雙尖狀如龜知州事吳錄之取以獻左右呼萬歲曰天降金龜聖德之應羣臣皆賀

●수주(水州)의 백성이 밭을 갈다가 금(金) 한 덩이를 얻었는데, 길이는 두 치가량 되고 머리와 꼬리가 모두 뾰족하여 형상이 거북과 같았다 지주사(知州事) 오록지(吳錄之)가 가져다가 바치니, 좌우에서 만세를 부르며 말하기를, "하늘이 금거북을 내리시니, 성덕(聖德)의 징험입니다"라고 하며, 여러 신하가 모두 하례하였다.

[고려사절요 권13, 명종 25년 정월] 〈수주 정곡촌의 104세 할머니〉

○王聞水州廷谷村有老嫗年百有四歲子孫共九十五人悉供徭役賜嫗穀三十碩

●왕이, 수주(水州) 정곡촌(廷谷村)에 나이 104세나 되는 할멈이 있는데, 아들·손자 합계 95명이 모두 국가의 요역(徭役)에 이바지한다는 말을 듣고 할멈에게 곡식 30석을 내려주었다

[고려사절요 권15, 고종 4년 정월] 〈광주와 수주에서 징병하다〉

○振威縣人令同正李將大直長同正李唐必乘國家有事乃與同縣人別將同正金禮謀不軌嘯聚徒衆劫奪縣令符印發倉賑貸村落飢民多附移牒旁郡自稱靖國兵馬使號義兵行至宗德河陽二倉發粟啗士恣其所取將寇廣州王遣郎將權得材散員金光啓等與按察使崔惇發廣水二州軍討之不勝更徵忠淸楊州道兵攻之獲唐必及禮賊徒潰散將大奔尙州按察使擒之械送于京皆伏誅

●진위현(振威縣) 사람 영동정(令同正) 이장대(李將大)와 직장동정(直長同正) 이당필(李唐必)이 국가의 사단이 있는 틈을 타서, 같은 현(縣) 사람 별장동정(別將同正) 김례(金禮) 등과 더불어 반란을 꾀하여, 도중(徒衆)을 모아 현령(縣令)의 병부(兵符)와 인(印)을 겁탈하고, 창고를 열어 (곡식을) 촌락에 펼쳐주니, 주린 백성이 많이 붙좇았다 이웃 고을에 통지하되 자칭(自稱) 정국병마사(靖國兵馬使)라 하고, (그 군사)를 의병(義兵)이라 이름하였다 행군하여서 종덕(宗德)·하양(河陽) 두 창(倉)에 이르러 곡식을 풀어서 군사를 먹이고, 제멋대로 꾸려 가지고 장차 광주(廣州)를 침범하려 하였다 왕이 낭장 권득재(權得材)와 산원(散員) 김광계(金光啓) 등을 보내어, 안찰사 최박(崔博)과 함께 광주(廣州)·수주(水州) 두 고을의 군사를 발하여 쳤으나 이기지 못하고, 다시 충청·양주도의 군사를 징발하여 쳐서 당필과 김례를 잡으니, 도적의 무리가 흩어져 달아나고 장대는 상주(尙州)로 달아났는데, 안찰사가 (그를) 사로잡아 차꼬를 채워 서울로 보내어서 모두 죽였다

[고려사절요 권19, 원종 12년 2월] 〈몽고군이 대부도의 주민을 약탈하다〉

○窄梁防戍蒙古兵入大部島侵奪居民民甚怨之及聞崇謙等起遂殺蒙古兵以叛水州副使安悅率兵討平之進悅秩五品後脫朶兒承帝旨鞫謀亂者斬唐城人洪澤杖洪均庇等充驛吏

●착량(窄梁)에서 방수하는 몽고병이 대부도(大部島)에 들어가서 주민을 약탈하니 백성들이 매우 원망하다가 숭겸 등이 난을 일으킨 것을 듣고는 드디어 몽고병을 죽이며 반역하였다 수주부사(水州副使) 안열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서 평정하니, 안열을 5품 관직으로 승진시켰다 후에 탈타아가 황제의 명을 받아 반란을 음모한 자들을 국문하여, 당성(唐城) 사람 홍택을 베고, 홍균비 등에게 매를 치고 역리에 충당시켰다

[고려사절요 권19, 충렬왕 원년 11월] 〈수원의 장서기 김천서〉

○分遣部夫使于諸道摠郎金晅如全羅道行至菁好驛全羅道按察盧景綸驛輸內膳于京甚夥私膳居半晅取私膳輸之國庫景綸壻金天緖適爲水原掌書記取以爲獻景綸又訴於王王免晅官以宋由義代之尋貶晅爲襄州副使

●부부사를 각도에 나누어 보냈다 총랑 김훤이 전라도에 갔는데, 청호역에 이르니

전라도안찰사 노경륜이 역에서 어선을 서울로 실어 보내는 것이 매우 많은데, 사선이 반이나 되므로 훤이 사선을 빼앗아 국고로 수송하였다 경륜의 사위 김천서가 마침 수원(水原)의 장서기로 있다가 그것을 가져다 경륜에게 주고 또 왕에게 하소하니, 왕이 훤의 관직을 면하고 송유의로 대신하였으며, 나중에는 훤을 양주부사(襄州副使)로 좌천시켰다

[고려사절요 권26, 충정왕 3년 8월] 〈왜선이 자연·삼목도와 남양·쌍부현을 침략〉

○倭船一百三十艘來寇紫燕三木二島焚其民舍殆盡又焚南陽府雙阜縣遣萬戶元顥于西北面萬戶印瑨前密直李權于西江屯兵以備之又命瑨等入海捕倭權還白王曰臣非將又不食祿不敢奉命固辭不行

●왜선 130척이 자연(紫燕 京畿 仁川)·삼목(三木 京畿 仁川)의 두 섬(島)을 침략하고 민가에 불질러 거의 다 태워버렸고, 또 남양부(南陽府 京畿 水原)·쌍부현(雙阜縣 京畿 始興)에 불질렀다 만호(萬戶) 원호(元顥)를 서북면(西北面)에 보내고 만호 인당(印瑨)과 전 밀직(前密直) 이권(李權)을 서강(西江)으로 보내어, 군사를 주둔하게 하여 방비하게 하고 인당 등에 명하여 바다로 나가 왜적을 잡도록 하였다 이권은 돌아와 왕에게 아뢰기를, "신은 장수가 아니고 또 (현재) 녹을 받고 있지도 않으니 감히 명령을 받들 수 없겠나이다" 하고, 굳이 사퇴하여 가지 않았다

[고려사절요 권27, 공민왕 11년 4월] 〈수원부를 수원군으로 강등시키다〉

○陞福州牧爲安東大都護府安城縣爲郡降水原府爲郡王之駐福也福人盡心供頓卒能徵兵諸道收復京都紅賊之招降楊廣也水原最先下州郡莫敢挫其鋒安城獨以小邑設計殲賊賊不敢南下割水原四部曲以隸之

●복주목(福州牧)을 안동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로 승격시키고, 안성현(安城縣)을 군(郡)으로 높이고, 수원부(水原府)는 군(郡)으로 낮추었다 왕이 복주에 머물렀을 때 복주 사람들이 성심껏 공궤하고, 마침내 여러 도(道)의 군사를 불러 경성을 수복하였다 홍건적이 양광도(楊廣道)를 꾀어 항복받을 때에, 수원(水原)이 가장 먼저 항복하니 남은 고을들이 감히 적의 예봉을 꺾지 못하였다 안성(安城)은 홀로 조그만 읍(邑)으로서도 계교를 내어 적을 섬멸하니, 적이 감히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수원의 4부곡(部曲)을 잘라 내어 안성에 붙였다

[고려사절요 권27, 공민왕 11년 6월] 〈감찰사에서 수원 거둥을 중지토록 청하다〉

○監察司上言大軍之後公私俱匱今隨駕員吏仰資廩給者月費三千餘石朝官衛士不可減省

宦官之輩靡有定額耗廩太多除供職外餘悉汰去殿下初置忠勇衛祿其將士同於八衛者蓋欲効力於倉卒也南幸之際未有一人扈駕誠爲虛設徒費廩祿請罷之又竊聞乘輿欲幸水原水原濱海倭寇可虞且其迎降紅賊人心難保淸州在三道之衝易於轉餉又距海遠駐駕之所莫便於此又國家寇盜連年兵不團結每至危急徵兵於農非惟擾民亦無救於倉卒請自今選鍊丁壯以備緩急

●감찰사(監察司)에서 아뢰기를, "큰 난리를 치른 후로 공사(公私)의 재물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지금 전하의 행차를 따라갔던 관원들로서 곡식을 타먹은 자들이 한 달에 3000여 석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조정 관리와 위사(衛士)들도 곡식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환관(宦官)의 무리들은 일정액(一定額)이 없어 곡식을 소비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 직무에 이바지하는 자 이외에는 모두 도태하여 버리소서 전하께서 일찍이 충용위(忠勇衛)를 두시고, 그 장사(壯士)들에게 녹을 팔위(八衛)와 같이 주기로 한 것은,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효력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거둥하실 때에 한 사람도 행차를 따라간 자가 없었습니다 진실로 이것은 헛되이 설치하여 한갓 창고의 곡식만 축내는 것입니다 청하건대 이것도 없애시옵소서 또 듣자오니, 거가가 수원(水原)으로 거둥하시려 한다 합니다 수원은 바닷가여서 왜가 침범할까 걱정이 되고, 또 홍건적을 맞아 항복한 곳이라 인심들을 보증하기 어렵습니다 청주(淸州)는 3도의 요충에 있어 곡식을 운반하기 쉽고, 또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행차가 머무르실 곳은 여기보다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또 국가에 적병의 침입이 해마다 연달아 있사온데, 군사가 단합되지 않아서 항상 위급함을 당했을 때에 농촌에 가서 군사를 모으는 것은, 백성들을 소란시킬 뿐 아니라, 또한 창졸간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옵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장정을 뽑아서 훈련시켜, 일이 있을 때에 대비하소서" 하였다

[고려사절요 권29, 공민왕 20년 7월] 〈신돈을 수원으로 귀양보내다〉

○王之謁憲景二陵旽分遣其黨設伏道旁約行大事及王還宮旽謂其黨曰何不如約其黨曰見上儀衛甚盛不忍犯也 ……遂流旽于水原王嘆曰益齋嘗言旽非端人必貽後患先見之明不可及已

●왕이 헌릉(憲陵)과 경릉(景陵)의 두 능에 배알할 적에, 신돈이 그 당(黨)을 나눠 보내어 길가에 매복시켜 두고 큰일을 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왕이 궁에 돌아오니 신돈이 그 무리에게 말하기를, "어째서 약속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니, 그 무리가 말하기를, "왕의 의위(儀衛)가 심히 성함을 보고 차마 범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 드디어 신돈을 수원(水原)으로 귀양보내고는 왕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익재(益齋)가 일찍이 '신돈은 바른 사람이 아니므로 반드시 후환을 끼칠 것이라' 말하더니, 선견(先

見)의 밝음은 미칠 수 없구나" 하였다

[고려사절요 권29, 공민왕 20년 7월] 〈신돈을 수원에서 참수하다〉

○兩府臺諫理部上書曰 伏望殿下斷以大義寘旽極刑籍沒家産幷夷其黨以快衆心王從之遣大司成林樸判事金斗斬旽于水原支解以狗梟首京城東門初王與旽春富等同盟至是授樸盟文使示旽數罪樸至水原使人詐報宣召旽喜曰今日召還盖爲阿只思我也阿只方言小兒之尊稱

●양부·대간·이부에서 글을 올리기를, " ……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써 결단하시어 신돈을 극형에 처하고, 가산을 몰수하고 그 도당까지 모두 죽여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통쾌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따라 대사성 임박과 판사 김두를 보내서 신돈을 수원(水原)에서 목베고 팔다리를 찢어 사방에 돌리고, 서울의 동문(東門)에 목을 매달았다 일찍이 왕이 신돈·이춘부 등과 함께 맹세를 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임박에게 맹세한 글을 주면서 신돈에게 보이고 수죄(數罪)하게 하였다 임박이 수원에 이르러 사람을 시켜서 왕명으로 불러들인다고 거짓 알리니, 신돈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오늘 불러들이는 것은 대개 아기[阿只]를 위하여 나를 생각한 때문이다" 하였다 아기는 방언에 어린아이의 존칭이다

[고려사절요 권30, 우왕 3년 5월] 〈수원부사 박승직이 안성 관사에서 패전하다〉

○倭自江華攻陷楊廣道賓海州郡初賊船僅二十二艘奪我戰艦多至五十艘邏卒望見我戰艦以爲我軍民皆信之不避殺傷不可勝計賊又寇慶陽及安城郡楊廣道元帥王安德怯懦不戰乃召副元帥印海及陽川元帥洪仁桂退次加川驛欲邀擊歸路賊望見由他路引去安德率銳追擊不克號天痛哭擒賊諜訊之諜曰吾等議若侵楊廣諸州崔瑩必帥師而下於是乘虛直擣京城可圖也初賊入安城伏兵麻田使被虜三四人田于隴上若農夫然以紿之水原府使朴承直聞三元帥至亦領兵來問田者曰賊退否三元帥何在對曰賊旣退三元帥追之矣承直信之直趨官廨賊伏發圍之承直單騎突圍脫走軍士多被殺虜自水原至陽城安城蕭然無復人煙體覆使崔仁哲還朝妄言臣督王安德洪仁桂印海擊倭于稷山縣斬五十餘級禑賜仁哲廐馬白金賜安德等衣酒廐馬遣贊成事楊伯淵評理邊安烈林堅味助戰

●왜적이 강화로부터 양광도 바닷가에 고을들을 쳐서 함락시켰다 처음에 적선이 겨우 22척이었는데, 우리 전함을 빼앗은 것이 50척이나 되었다 정탐하는 군사가 우리 전함을 바라보고 우리 군사라고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믿고 피하지 않았으므로, 죽고 다친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적이 또 경양(慶陽)과 안성군을 침범하니, 양광도원수 왕안덕(王安德)이 겁내고 나약하여 싸우지 못하므로, 부원수 인해(印海)와 양천원수(陽川元帥) 홍인계(洪仁桂)를 불러 퇴각시켜서 가천역(加川驛)에 머

물러 적이 돌아가는 길에서 맞아 치려 하였으나, 적이 바라보고 다른 길로 갔다 안덕이 정예한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 치다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을 부르짖으며 통곡하였다 적의 첩자를 사로잡아 물으니 첩자가 말하기를, "우리들이 의논하기를, '만일 양광도 여러 고을을 침공하면 최영이 반드시 군사를 거느리고 내려올 것이니, 이에 빈 틈을 타서 바로 두들기면 경성을 도모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처음에, 적이 안성에 들어와서 삼밭에 복병하고, 포로 3, 4명을 시켜 언덕 위에서 농부인 체하고 밭을 매어 속이게 하였다 수원부사 박승직(朴承直)이 세 원수(元帥)가 온다는 말을 듣고, 역시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밭매는 자에게 묻기를, "적이 물러갔느냐. 세 원수가 어디 있느냐" 하였다 대답하기를, "적은 이미 물러가고, 세 원수가 쫓아갔다" 하였다 승직이 그 말을 믿고 곧 안성 관사로 들어갔다 적의 복병이 뛰어나와 포위하니, 승직이 단기(單騎)로 포위를 뚫고 빠져 달아나고, 군사는 많이 죽고 포로가 되었다 수원에서 양성(陽城)·안성에 이르기까지 쓸쓸하여 사람의 자취가 없었다 체복사 최인철이 조정에 들어와서 속여 말하기를, "신이 왕안덕·홍인계·인해를 독려하여 직산현(稷山縣)에서 왜적을 쳐 50여 수급을 베었습니다" 하니, 우가 인철에게 말과 백금을 주고, 안덕 등에게 옷·술·말을 주며, 찬성사 양백연, 평리 변안렬·임견미를 보내어 싸움을 도왔다

[고려사절요 권30, 우왕 3년 5월] 〈왜적이 수원 등을 침입하다〉

○倭賊百餘騎寇南陽安城宗德等縣又五十艘復寇江華殺府使金仁貴戍卒被虜者以千計又寇水原府元帥楊伯淵羅世以戰艦五十艘擊走之世過江華境有一婦匿水旁指示曰賊諜入彼民家世疾趨圍而火之殺賊二十九人

●왜적 100여 기가 남양(南陽)·안성·종덕(宗德) 등 현을 침범하고, 또 50척이 다시 강화를 침범하여 부사 김인귀(金仁貴)를 죽이고, 수자리 사는 군사가 사로잡힌 것이 1000이나 되었다 또 수원부를 침범하니, 원수 양백연·나세가 전함 50척으로 쳐서 쫓았다 나세가 강화 지경을 지나는데, 한 부인이 물가에 숨었다가 손가락질하며 말하기를, "적의 첩자가 저 민가에 들어 있습니다" 하였다 나세가 빨리 달려가서 불을 질러 적 29명을 죽였다.

[고려사절요 권30, 우왕 4년 5월] 〈왜적이 수원부 등지에 침구하다〉

○倭寇西州庇仁縣又寇水原府

●왜적이 서주(西州) 비인현(庇仁縣)을 침범하고, 또 수원부를 침범하였다

[고려사절요 권32, 우왕 10년 11월] 〈왜적이 수원 공이향을 침략하다〉

○倭寇水原工二鄕府使許操擒賊諜三人

●왜적이 수원(水原) 공이향(工二鄕)을 침략하니, 부사 허조(許操)가 적의 첩자 세 사람을 사로잡았다

3) 『고려사(高麗史)』 세가(世家)

[고려사 권8, 세가8 문종 21년 정월 무진] 〈흥왕사에서 연등대회를 열다〉

○特設燃燈大會於興王寺五晝夜勑令百司及安西都護開城府廣水楊東樹五州江華長湍二縣自闕庭至寺門結綵棚櫛北鱗次連亘相屬輦路左右又作燈山火樹光照如晝是日王備鹵簿率百官行香施納財襯佛事之盛曠古未有

●흥왕사에서 5주야(晝夜)에 걸친 연등대회를 특별히 열고 조정의 모든 관리들과 안서도호부·개성부·광주·수주(水州 수원)·양주·동주(東州 철원)·수주(樹州·부평) 등 5개 주와 강화·장단 두 현에 명령하여 대궐 뜰에서부터 흥왕사 문간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5색 비단으로 감은 시렁대를 즐비하게 세워 비늘[鱗]처럼 겹겹이 잇대이게 하고 왕의 수레가 통과하는 큰 길 좌우에는 등장대를 수풀처럼 세워 대낮과 같이 밝게 하였다 이날 왕은 호위병을 앞뒤에 세우고 백관들과 함께 향불을 피운 다음 재물과 의복을 시주하였다. 이처럼 성대한 불교행사는 예로부터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고려사 권19, 세가19 의종 24년 8월 무오] 〈수주의 백성이 금을 얻어 바치다〉

○水州民耕田得金一錠長二寸許頭尾雙尖狀如龜知州事吳緣之取以馳獻王以示左右左右呼萬歲曰天降金龜聖德之應群臣皆賀

●수주(水州) 농민이 밭을 갈다가 금 한 덩어리를 얻었는데 길이가 2치 가량 되며 머리와 꼬리가 뾰족해서 마치 거북과 같았다 지주사 오록지(吳緣之)가 그 금덩이를 가지고 달려와서 왕에게 바쳤다 왕은 이것을 좌우 시신들에게 보였더니 좌우 시신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하늘이 금 거북을 내린 것은 임금의 성덕에 감응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축하하였다

[고려사 권20, 세가20 명종 25년 정월 계묘] 〈수주 정곡촌의 104세 할머니〉

○王聞水州廷谷村有老嫗年百有四歲子孫丁壯者共九十五人悉供徭役賜嫗穀三十石

●왕이 수주(水州) 정곡촌(廷谷村)에 있는 어떤 늙은 할머니의 나이는 104세이며

그 자손으로서 장정이 모두 95명인데 그들을 모두 국가 부역에 내어 보냈다는 말을 듣고 그 할머니에게 곡식 30석을 주었다

[고려사 권23, 세가23 고종 19년 12월] 〈수주 속읍 처인성에서 살례탑을 죽이다〉

○撒禮塔攻處仁城有一僧避兵在城中射殺之答東眞書曰 ‥至今年十二月十六日水州屬邑處仁部曲之小城方與對戰射中魁帥撒禮塔殺之俘虜亦多餘衆潰散自是衋氣不得安止似已回軍前去然不以一時鳩集而歸或先行或落後欲東欲北故不可指定日期又莫知向甚處去也請貴國密令偵諜可也

●살례탑(撒禮塔)이 처인성(處仁城)을 침공하므로 어떤 중 한 사람이 난리를 피하여 성 안에 있다가 살례탑을 쏘아 죽였다 동진(東眞)에 보낸 회답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금년 12월 16일에는 수주(水州)에 속한 처인부곡(處仁部曲)의 조그마한 성에서 몽고군과 대전하다가 그들의 괴수인 살례탑을 쏘아 죽였고 사로잡은 것도 많았으며 패배를 당한 잔당들은 사방으로 분산되었다 이때부터 그들의 사기가 꺾여서 일정한 곳에 편히 있을 수 없게 되어 군사를 철수한 듯하다 그러나 한꺼번에 모여서 간 것이 아니라 혹은 먼저 가기도 하고 혹은 뒤떨어지기도 하였으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까지 다 없어질지 또는 어느 곳으로 갈지 알 수 없다 우리가 부탁하는 바는 귀국에서 은밀히 정탐하여 보는 것이 좋은 것이다"

[고려사 권27, 세가27 원종 12년 2월 신축] 〈수주부사 안열이 몽고군을 토벌하다〉

○窄梁防戍蒙古兵入大部島侵奪居民民甚怨之大部人聞崇謙等起遂殺蒙古六人以叛水州副使安悅率兵討平之進悅秩五品

●착량(窄梁)의 초소를 지키고 있던 몽고 군대가 대부도(大部島)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침해 약탈하니 주민들의 원망이 심하였다 대부 사람들이 숭겸 등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몽고 병사 6명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 수주부사(水州副使) 안열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토벌하여 평정하였으므로 안열의 관직을 5품으로 올려 주었다

[고려사 권40, 세가40 공민왕 11년 6월 병신] 〈수원에 궁궐을 지으려 하다〉

○監察司上言竊聞乘輿欲幸水原營宮闕水原陝隘濱海倭寇可虞首降紅賊人心難保淸州已備巡幸且居三道之衝便於轉餉賊不能近願姑駐駕淸州徐俟農隙擇京城近地以爲移御之所今農務方殷豈可用經亂之民以興工役下都僉議司議之

●감찰사에서 왕에게 글을 올리기를, "듣건대 수원(水原)으로 행차하여 궁궐을 지으려 한다고 하는데 그 지방은 협소하고 바닷가에 있는지라 왜적이 침범할 우려가

있으며 제일 먼저 홍건적에게 항복한 곳이라 인심도 믿기 어렵습니다 청주(淸州)는 이미 순행에 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또 3도(道)의 요충지이므로 식량 운반이 편리하고 도적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잠시 청주에 머물러서 서서히 농한기를 기다려 서울 근처에 땅을 가리어 옮겨 앉을 곳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사가 한창 바쁜데 어찌 난리를 겪은 백성을 동원하여 공사를 일으키겠습니까" 라고 하니 왕이 이것을 "도첨의사(都僉議司)에 내려 의논하라" 하였다

[고려사 권40, 세가40 공민왕 11년 8월 경술] 〈청주수원도병마사에 박춘을 임명함〉

○以左政丞柳濯爲西北面紅賊防禦諸軍都統使密直使李珣爲都兵馬使金漢貴爲東京道許綱爲安東道金瑺爲尙州道李之泰爲晉州道成元揆爲全州道林堅味爲羅州道金桂生爲南京廣州道朴椿爲淸州水原道柳繼祖爲公州道張熙載爲忠州道金長壽爲交州道金庾爲江陵道兵馬使時有紅賊聲息又帝有挾攻之命故有是擧未幾聞賊潰乃止

●좌정승 유탁을 서북면홍적방어제군도통사, 밀직사 이순(李珣)을 도병마사, 김한귀(金漢貴)를 동경도(東京道), 허강(許綱)을 안동도(安東道), 김진(金瑺)을 상주도(尙州道), 이지태(李之泰)를 진주도(晉州道), 성원규(成元揆)를 전주도(全州道), 임견미(林堅味)를 나주도(羅州道), 김계생을 남경광주도(南京廣州道), 박춘(朴椿)을 청주수원도(淸州水原道), 유계조(柳繼祖)를 공주도(公州道), 장희재(張熙載)를 충주도(忠州道), 김장수(金長壽)를 교주도(交州道), 김유(金庾)를 강릉도(江陵道)의 병마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이때에 홍건적에 관한 소문이 있었고 또 황제가 협공을 명령한 바 있었으므로 이러한 조치가 있었으나 얼마 안가서 홍건적이 궤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정지하였다

[고려사 권40, 세가40 공민왕 12년 5월 갑오] 〈부평수원도병마사에 장천지를 임명함〉

○以全普門爲慶尙道都巡問使全以道爲安東道兵馬使安克仁爲東京道兵馬使柳濡爲尙州道兵馬使林堅味爲晉州道兵馬使安楫爲全州道兵馬使成元揆爲羅州道兵馬使金漢貴爲廣州道兵馬使張天志爲富平水原道兵馬使權禧爲洪州道兵馬使趙思敏爲公州道兵馬使成元完爲淸州道兵馬使玉天柱爲忠州道兵馬使權長壽爲交州道兵馬使調兵

●전보문(全普門)을 경상도도순문사로, 전이도(全以道)를 안동도병마사로, 안극인(安克仁)을 동경도병마사로, 유유(柳濡)를 상주도병마사로, 임견미(林堅味)를 진주도병마사로, 안집(安楫)을 전주도병마사로, 성원규(成元揆)를 나주도병마사로, 김한귀(金漢貴)를 광주도병마사로, 장천지(張天志)를 부평수원도병마사로, 권희(權禧)를 홍주도병마사로, 조사민(趙思敏)을 공주도병마사로, 성원완(成元完)을 청주도병마사로, 옥천주(玉天柱)를 충주도병마사로, 권장수(權長壽)를 교주도병마사로 임명하여 군대를 증모하게 하였다

[고려사 권43, 세가43 공민왕 20년 7월 기미] 〈수원으로 신돈을 귀양보내다〉

○流辛旽于水原

●신돈을 수원으로 귀양보냈다

[고려사 권45, 세가45 공양왕 2년 윤4월 신미] 〈수원부사에 전백영을 임명하다〉

○左遷右司議李舒爲光州牧使兼執義南在爲鐵原府使執義全伯英爲水原府使掌令權湛爲南原府使金若恒知谷州郡事起居舍人徐彦知淳昌郡事持平宋愚知成州郡事慶習知遂安郡事獻納咸傅霖知春州郡事張子崇爲平壤判官正言全賓知甫州郡事以李廷輔爲左常侍金震陽李擴爲左右司議李室爲左獻納鄭擢爲左正言崔遠兼執義安景儉爲執義許周崔兢爲掌令趙庸趙謙爲持平又以閔開爲知中事

●우사의(右司議) 이서를 광주목사로, 겸집의(兼執義) 남재(南在)를 철원부사로, 집의 전백영(全伯英)을 수원부사로, 장령 권담을 남원부사로, 김약항(金若恒)을 지곡주군사(知谷州郡事)로, 기거사인 서언을 지순창군사로, 지평 송우를 지성주군사(知成州郡事)로, 경습(慶習)을 지수안군사(知遂安郡事)로, 헌납(獻納) 함부림(咸傅霖)을 지춘주군사(知春州郡事)로, 장자숭을 평양판관으로, 정언 전빈을 지숙주군사로, 각각 좌천하고, 이정보를 좌상시(左常侍)로, 김진양과 이확을 좌사의와 우사의로, 이실을 좌헌납으로, 정탁을 좌정언으로, 최원을 겸집의로, 안경검을 집의로, 허주와 최긍을 장령으로, 조용과 조겸을 지평으로, 그리고 민개를 지신사로 각각 임명하였다

4) 『고려사(高麗史)』 지(志)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당성군〉

○唐城郡本高勾麗唐城郡新羅景德王改爲唐恩郡高麗初復古名顯宗九年爲水州屬郡後來屬明宗二年置監務忠烈王十六年以洪茶丘內鄕陞知益州事後又陞爲江寧都護府三十四年又陞爲益州牧忠宣王二年汰諸牧降爲南陽府有大部島小牛島仙甘彌島靈興島召勿島承黃島仁物島伊則島雜良串島沙也串島難知島木力島

●당성군(唐城郡)은 원래 고구려의 당성군(唐城郡)인데 신라 경덕왕이 당은군(唐恩郡)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옛 명칭으로 고쳤으며, 현종 9년에 수주(水州)의 소속군으로 되었다가 후에 본 인주(仁州)에 소속시켰다. 명종 2년에 감무를 두었고, 충렬왕 16년에 홍다구(洪茶丘)의 내향(內鄕)이라는 이유로 지익주사(知益州事)로 승격시켰으며 후에 또 승격시켜 강녕도호부로 되었고, 34년에 또 다시 승격시켜 익주목(益州牧)으로 되었는데 충선왕 2년에 전국의 목이 폐지됨에 따라 낮추어서 남양부(南陽府)로 되

었다 대부도(大部島)·소우도(小牛島)·선감미도(仙甘彌島)·영흥도(靈興島)·소물도(召勿島)·승황도(承黃島)·인물도(仁物島)·이칙도(伊則島)·잡량곶도(雜良串島)·사야곶도(沙也串島)·난지도(難知島)·목력도(木力島) 등이 있다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재양현〉

○載陽縣古安陽縣顯宗九年稱今名屬水州任內後來屬

●재양현(載陽縣)은 옛날의 안양현(安陽縣)으로서 현종 9년에 지금 명칭으로 부르고 수주(水州) 관하에 속하였다가 후에 본 주에 소속시켰다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수주〉

○水州本高勾麗買忽郡新羅景德王改爲水城郡太祖南征郡人金七崔承珪等二百餘人歸順效力以功陞爲水州成宗十四年置都團練使穆宗八年罷之顯宗九年復知州事元宗十二年宰樑防戍蒙古兵入大部島侵略居民島人憤怨殺蒙兵以叛副使安悅率兵討平之以功陞爲水原都護府後又陞爲水州牧忠宣王二年汰諸牧降爲水原府恭愍王十一年紅賊遣先鋒招降楊廣道州郡府最先迎降遂降爲郡郡人重賂宰臣金鏞復爲府別號漢南〈成廟所定〉又號隋城屬縣七

●수주(水州)는 원래 고구려의 매홀군(買忽郡)인데 신라 경덕왕이 수성군(水城郡)으로 고쳤다 고려 태조가 남방을 정벌할 때 이 군 사람인 김칠(金七)·최승규(崔承珪) 등 200여 명이 태조에게 귀순하여 협력하였으므로 그 공로로 수주로 승격시켰다 성종 14년에 도단련사(都團練使)를 두었다가 목종 8년에 없앴으며, 현종 9년에 지주사(知州事)로 다시 고쳤다 원종 12년에 착량(宰梁) 주둔 몽고 군사들이 대부도(大部島)에 침입하여 그곳 주민들을 약탈하므로 섬 사람들이 격분하여 원한을 품고 몽고 군사들을 살해하고 폭동을 일으켰을 때 부사(副使) 안열(安悅)이 부대를 동원하여 폭동군을 진압하였는데 그 공로로 수원도호부로 승격시켰으며 후에 또 승격시켜 수주목(水州牧)으로 되었다가 충선왕 2년에 전국의 목이 폐지됨에 따라 낮추어서 수원부로 되었다 공민왕 11년에 홍건적이 선봉부대를 파견하여 양광도내 각 주군에 항복할 것을 권유했을 때 이 부 사람들이 맨 먼저 적군을 맞아들여 항복하였으므로 마침내 낮추어 군으로 되었는데 이 군 사람만 재신(宰臣) 김용(金鏞)에게 많은 뇌물을 주어 부(府)로 고치게 되었다 한남(漢南)<성종이 정한 명칭이다> 혹은 수성(隋城)이라고도 부르는데 소속된 현이 7개 있다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안산현〉

○安山縣本高勾麗獐項口縣新羅景德王改爲獐口郡高麗初改爲安山郡顯宗九年來屬後置監務忠烈王三十四年以文宗誕生之地陞知郡事

●안산현(安山縣)은 원래 고구려의 장항구현(獐項口縣)인데 신라 경덕왕이 장구군(獐口郡)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안산군(安山郡)으로 고쳤고, 현종 9년에 본 수주(水州)에 소속시켰으며 후에 감무를 두었다가 충렬왕 34년에 문종이 탄생한 곳이라는 이유로 지군사(知郡事)로 승격시켰다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영신현〉

○永新縣 〈一云五朶一云永豐〉 顯宗九年來屬

●영신현(永新縣)<오타(五朶) 또는 영풍(永豐)이라고도 한다>은 현종 9년에 본 주에 소속시켰다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쌍부현〉

○雙阜縣古六浦顯宗九年來屬

●쌍부현(雙阜縣)은 옛날의 육포(六浦)로서 현종 9년에 본 주에 소속시켰다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용성현〉

○龍城縣本高勾麗上忽縣 〈一云車忽〉 新羅景德王改名車城爲唐恩郡領縣高麗初改今名顯宗九年來屬

●용성현(龍城縣)은 원래 고구려의 상홀현(上忽縣)<차홀(車忽)이라고도 한다>인데 신라 경덕왕이 차성(車城)으로 고쳐서 당은군(唐恩郡)의 관할 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초에 지금 명칭으로 고쳤으며, 현종 9년에 본 주에 소속시켰다.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정송현〉

○貞松縣古松山部曲顯宗九年稱今名來屬

●정송현(貞松縣)은 옛날의 송산부곡(松山部曲)으로서 현종 9년에 지금 명칭으로 부르고 본 주에 소속시켰다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진위현〉

○振威縣本高勾麗釜山縣 〈古淵達部曲一云金山縣又松村活達〉 新羅景德王改今名爲水城郡領縣至高麗仍屬明宗二年置監務後陞爲縣令官

●진위현(振威縣)은 원래 고구려의 부산현(釜山縣)<옛날의 연달부곡(淵達部曲)인바 금산현(金山縣) 또는 송촌활달(松村活達)이라고도 한다>인데 신라 경덕왕이 지금 명칭으로 고쳐서 수성군(水城郡)의 관할 현으로 만들었다 고려에서도 그대로 소속시켰고, 명종 2년에 감무를 두었으며 후에 현령관(縣令官)으로 승격시켰다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양성현〉

○陽城縣本高勾麗沙伏忽新羅景德王改名赤城爲白城郡領縣高麗初更今名顯宗五年來屬明宗五年置監務

●양성현(陽城縣)은 원래 고구려의 사복홀(沙伏忽)인데 신라 경덕왕이 적성(赤城)으로 고쳐서 백성군(白城郡)의 관할 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초에 지금 명칭으로 고쳐서 현종 5년에 본 주에 소속시켰으며, 명종 5년에 감무를 두었다

[고려사 권56, 지10 지리1] 〈안성현〉

○安城縣本高勾麗柰兮忽新羅景德王改爲白城郡高麗初更今名顯宗九年屬水州後來屬明宗二年置監務悉愍王十年紅賊入松都王南巡賊遣先鋒招降楊廣道州郡所至莫敢挫其鋒唯縣人佯爲降附設宴犒之乘其醉斬魁首六人賊由是不敢南下十一年以功陞知郡事割水原任內陽良甘彌呑馬田薪谷四部曲以與之後金鏞受賂以三部曲還屬水原

●안성현(安城縣)은 원래 고구려의 내혜홀(柰兮忽)인데 신라 경덕왕이 백성군(白城郡)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지금 명칭으로 고쳤고 현종 9년에 수주(水州)에 소속시켰다가 후에 본 부에 소속시켰으며, 명종 2년에 감무를 두었다 공민왕 10년에 홍건적이 송도(松都)에 침입하자 왕은 남쪽으로 피난하였으며 침략군이 선봉부대를 파견하여 양광도내 각주군에게 투항할 것을 강요하였을 때 아무도 감히 적의 예봉을 꺾지 못하였는데 오직 이 현 사람이 투항을 가장하고 연회를 베풀어 그들을 대접하다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적의 우두머리 6명을 죽이니 적들은 이로 말미암아 감히 더 남쪽으로 침입하지 못하였다 11년에 그 공로로 지군사로 승격시키고 수원 관하에 있던 양량(陽良)·감미탄(甘彌呑)·마전(馬田)·신곡(薪谷)의 4개 부곡(部曲)을 분할하여 이 현에 소속으로 만들었다 후에 김용(金鏞)이 뇌물을 받고 그 중 3개의 부곡을 도로 수원에 소속시켰다

[고려사 권80, 지34 식화3 녹봉 외관록] 〈수주부사 등 외관록을 정하다〉

○文宗朝定二百七十石〈知西京留守事〉二百二十三石〈東京留守事〉二百石〈西京副留守南京留守八牧使安西大都護使〉一百二十石〈南京副留守八牧副使安西大都護副

使〉一百石〈蔚禮金梁豐等州防禦使〉八十六石十斗〈開城府使東西南京判官八牧判官安西大都護判官仁水原公洪俠春東交平谷等州使天安南原長興京山安東等府使古阜靈光靈岩寶城昇平等郡使〉六十六石十斗〈東京副留守〉四十六石十斗〈東西南京司錄參軍事禮金豐等州防禦副使〉四十石〈開城府副使東西南京掌書記八牧安西大都護司錄仁水原公洪俠春東交平谷等州副使天安南原京山安東長興等府副使古阜靈光靈岩寶城昇平等郡副使蔚梁州防禦副使白嶺鎭將〉三十三石五斗〈禮金州防禦判官〉三十石五斗〈蔚梁州防禦判官〉三十石〈開城府判官〉二十六石十斗〈仁水原公洪俠春東交平谷州判官天安南原京山安東古阜靈光靈岩寶城昇平判官江東江西中和順和仁華固城南海巨濟一善管城大丘義城順安基陽遂安瓮津臨陂進禮金堤富城嘉林陵城耽津海陽金溝等縣令白嶺鎭副將〉二十石〈東西京八牧安西大都護法曹江華一善管城大丘義城順安臨陂進禮金堤富城嘉林陵城耽津瓮津海陽等縣尉〉十六石十斗〈固城縣尉〉十三石五斗〈開城法曹〉

●문종 때에 (외관록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270섬<지서경유수사(知西京留守事)>, 223섬<동경유수사(東京留守使)>, 200섬<서경부유수·남경유수(南京留守)·8목사(牧使)·안서대도호사(安西大都護使)>, 120섬<남경부유수·8목부사(牧副使)·안서대도호부사>, 100섬<울주(蔚州)·예주(禮州)·금주(金州)·양주(梁州)·풍주(豐州) 등의 방어사(防禦使)>, 86섬 10말<개성부사(開城府使)·동서남경판관·8목판관·안서대도호부판관·인주(仁州)·수주(水州)·원주(原州)·공주(公州)·홍주(洪州)·협주(俠州)·춘주(春州)·동주(東州)·교주(交州)·평주(平州)·곡주(谷州) 등의 사(使)·천안(天安)·남원(南原)·장흥(長興)·경산(京山)·안동(安東) 등 부사(府使)·고부(古阜)·영광(靈光)·영암(靈岩)·보성(寶城)·승평(昇平) 등 군사(郡使)>, 66섬 10말<동경부유수>, 46섬 10말<동서남경의 사록참군사(司錄參軍事), 예(禮)·금(金)·풍(豐) 등 주의 방어부사(防御副使)>, 40섬<개성부부사, 동·서·남경의 장서기(掌書記), 8목·안서대도호부의 사록, 인주·수주·원주·공주·홍주·합주·춘주·동주·교주·평주·곡주 등의 부사, 천안·남원·경산(京山)·안동·장흥 등 부(府)의 부사, 고부·영광·영암·보성·승평 등 군의 부사, 울주·양주방어부사, 백령진장(白嶺鎭將)>, 33섬 5말<예주·금주방어판관>, 30섬 5말<울주·양주방어판관>, 30섬<개성부판관>, 26섬 10말<인주·수주·원주·공주·홍주·협주·춘주·동주·교주·평주·곡주의 판관, 천안·남원·경산·안동부 및 고부·영광·영암·보성·승평군의 판관, 강동·강서·중화·순화·강화·고성·남해·거제·일선·관성·대구·의성·순안·기양·수안·옹진·임피·진례·김제·부성·가림·능성·탐진·해양·금구 등 현령(縣令), 백령진부장(白嶺鎭副將)>, 20섬<동·서경, 8목·안서대도호부의 법조(法曹), 강화(江華)·일선·관성(管城)·대구(大丘)·의성(義城)·순안·임피·진례·김제·부성·가림·능

성(陵城)·탐진·옹진·해양 등 현위(縣尉)>, 16섬 10말<고성현위>, 13섬 5말<개성 법조>

[고려사 권80, 지34 식화3 녹봉 숙종 6년 2월] 〈수주부사 등 외관록을 제정하다〉

○判外官吏邑祿給公須租仁宗朝定二百石〈西京留守〉一百六十六石十斗〈東南京留守〉一百二十石〈安西安北大都護副使安邊安南小都護使八牧副使〉八十六石十斗〈東西南京判官安邊安南都護副使安北安西都護判官八牧判官諸知州府郡事〉六十石〈雲龍延昌靜朔麟孟定長義等州寧德定戎平虜威遠寧朔淸塞寧仁宣德元興耀德寧遠等鎭副使〉四十六石十斗〈西京錄事宣鐵和金梁蔚禮溟豐等州副使〉四十石〈東西南京掌書記安邊安南都護判官安北安西都護八牧司錄兼掌書記諸知州府副使雲龍麟延孟昌義靜朔長定等州判官定戎淸塞平虜威遠寧仁寧朔宣德寧德元興寧遠等鎭判官靜邊永興鎭溟龍津長平朝陽白嶺等鎭將撫渭博嘉肅慈郭殷成順德高文豫龜泰宜交等州副使安義鎭副使〉三十三石五斗〈宣鐵和金梁禮溟豐蔚等州判官龍岡咸從通海永淸金壤瓮津翼嶺高城杆城三陟蔚珍固城巨濟等縣令〉二十六石十斗〈成順德撫郭嘉龜泰渭肅慈殷高文豫宜谷平春東交水仁原洪公俠昇等州判官昇天天安長興安東京山開城等府判官南原古阜靈岩靈光寶城密城判官安義陽岩雲林隘守等鎭將靜邊龍津長平朝陽白嶺等鎭副將鎭溟縣尉西京六縣令江華耽羅長湍海陽遂安嘉林富城金口臨陂進禮金堤南海珍島綾城管城大丘一善義城基陽順安延日東萊萬頃牛峯盈德金浦等縣令〉二十三石五斗〈龍岡咸從通海永淸高城杆城金壤翼嶺三陟蔚珍瓮津固城等縣尉安戎鎭將〉二十石〈東西南京安北安西都護黃廣倘忠全羅晋尙龍等州法曹永豐樹德等鎭將十三倉判官西京六縣尉嘉林富城臨陂進禮金堤海陽綾城耽羅管城大丘一善江華義城順安東萊遂安等縣尉諸監務〉十六石十斗〈安南都護法曹溟州豐州法曹〉十五石十斗〈安邊都護法曹〉十三石五斗〈開城昇平安東京山等府春公洪等州法曹〉

●외관리(外官吏)의 읍록(邑祿 해당 지방에서 지출하기로 된 녹봉의 반액)은 공수전(公須田)에서 나오는 조(租)로써 줄 것을 왕의 명령으로 결정하였다 인종 때에 (외관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200섬<서경유수>, 166섬 10말<동·남경유수>, 120섬<안서·안북대도호부부사, 안변(安邊)·안남소도호부사, 8목부사>, 86섬 10말<동·서·남경판관, 안변·안남(소)도호부부사, 안북·안서(대)도호부판관, 8목판관, 제지주부군사(諸知州府郡事)>, 60섬<운주(雲州)·용주(龍州)·연주(延州)·창주(昌州)·정주(靜州)·삭주(朔州)·인주(麟州)·맹주(孟州)·정주(定州)·장주(長州)·의주(義州) 등의 부사, 영덕진(寧德鎭)·정융진(定戎鎭)·평로진(平虜鎭)·위원진(威遠鎭)·영삭진(寧朔鎭)·청새진(淸塞鎭)·영인진(寧仁鎭)·선덕진(宣德鎭)·원흥진(元興鎭)·요덕진(耀德鎭)·영원진(寧遠鎭) 등의 부사>, 46섬 10말<서경록사, 선주(宣州)·철주

(鐵州)·화주(和州)·금주(金州)·양주(梁州)·울주(蔚州)·예주(禮州)·명주(溟州)·풍주(豐州) 등의 부사(副使)>, 40섬<동서남경장서기(東西南京掌書記), 안변·안남도호부판관, 안북·안서도호부 및 8목의 사록겸장서기(司錄兼掌書記), 제지주부부사(諸知州府副使), 운주(雲州)·용주(龍州)·인주(麟州)·연주(延州)·맹주·창주·의주·정주·삭주·장주·정주 등의 판관, 정융(定戎)·청새(淸塞)·평로(平虜)·위원(威遠)·영인(寧仁)·영삭(寧朔)·선덕(宣德)·영덕(寧德)·원흥(元興)·영원(寧遠) 등 진의 판관, 정변(靜邊)·영흥·진명(鎭溟)·용진(龍鎭)·장평(長平)·조양(朝陽)·백령(白嶺) 등 진의 장(將), 무주(撫州)·위주(渭州)·박주(博州)·가주(嘉州)·숙주(肅州)·자주(慈州)·곽주(郭州)·은주(殷州)·성주(成州)·순주(順州)·덕주(德州)·고주(高州)·문주(文州)·예주(豫州)·귀주(龜州)·태주(泰州)·의주(宜州)·교주(交州) 등의 부사, 안의진부사(安義鎭副使)>, 33섬 5말<선주(宣州)·철주·화주·금주·양주·예주·명주·풍주·울주 등의 판관, 용강(龍岡)·함종(咸從)·통해(通海)·영청·금양(金壤)·옹진·익령(翼嶺)·고성·간성(杆城)·삼척(三陟)·울진(蔚珍)·고성(固城)·거제(巨濟) 등 현의 영(令)>, 26섬 10말<성주(成州)·순주·덕주·무주·곽주·가주·구주·태주·위주·숙주·자주·은주·고주·문주·예주·의주·곡주·평주·춘주·동주·교주·인주·수주·원주·홍주·공주·협주·승주 등의 판관, 승천(昇天)·천안·장흥·안동·경산·개성부 등의 판관(判官), 남원·고부(古阜)·영암(靈岩)·영광(靈光)·보성(寶城)·밀성(密城) 등 군의 판관, 안의(安義)·양암·운림·애수(隘守) 등 진의 장(將), 정변(靜邊)·용진(龍津)·장평(長平)·조양(朝陽)·백령(白嶺) 등 진의 부장(副將), 진명현위(鎭溟縣尉)·서경육현령(西京六縣令)·강화·탐라·장단·해양(海陽)·수안·가림(嘉林)·부성(富城)·금구(金口)·임피(臨陂)·진례(進禮)·김제(金堤)·남해·진도(珍島)·능성(陵城)·관성(管城)·대구(大丘)·일선(一善)·의성(義城)·기양(基陽)·순안(順安)·연일(延日)·동래(東萊)·만경(萬頃)·우봉(牛峯)·영덕(盈德)·김포(金浦) 등 현의 영(令)>, 23섬 5말<용강·함종·통해·영청·고성·간성·금양·익령·삼척·울진·옹진·고성 등 현의 위(尉), 안융진장>, 20섬<동경·서경·남경·안북·안서 도호부 및 황주·광주·청주·충주·전주·나주·진주·상주·용주 등의 법조, 영풍·수덕 등 진의 장(將), 13창판관, 서경 6현의 위(尉), 가림·부성·임피·진례·김제·해양·능성·탐라·관성·대구·일선·강화·의성·순안·동래·수안 등 현의 위(尉), 제감무(諸監務)>, 16섬 10말<안남도호부의 법조, 명주·풍주법조>, 15섬 10말<안변도호부법조>, 13섬 5말<개성·승평·안동·경산 등 부의 법조, 춘주·공주·홍주 등의 법조>

[고려사 권82, 지36 병2 참역] 〈수주가 충청주도 관할에 들어가다〉

○狻猊道掌十狻猊〈開城〉金谷〈白州〉深洞〈塩州〉淸端嘉栗望汀金剛楊溪〈安西〉維安〈靑松〉佐丘〈永康〉金郊道掌十六金郊〈江陰〉興義〈牛峯〉玉池〈江陰〉安信白原〈牛峯〉金岩寶山安城〈平州〉龍泉〈洞州〉班石騏麟溫泉〈平州〉管山〈俠溪〉今勿〈谷州〉栍谷〈俠溪〉泉頭〈谷州〉邑嶺道掌十一邑嶺〈鳳州〉洞仙丹林〈黃州〉陶工〈鳳州〉金洞〈安州〉射邑〈遂安〉廻郊生陽高原神地雲峯〈西京〉興郊道掌十二… ·興化道掌二十九長寧〈黃州〉安信〈嘉州〉新安雲興〈郭州〉林畔通陽〈宣州〉豐陽〈鐵州〉光池〈寧州〉昌泰〈寧德〉鴨綠〈靜州〉會元〈義州〉名駒〈龍州〉靈騏〈麟州〉從化〈威遠〉長興〈泰州〉城陽三妓通義大平〈龜州〉寶峯懷仁〈安義〉花田臨川〈定戎〉銀邑榛田〈寧朔〉邑舍〈龜州〉芳田昌平〈朔州〉安富新驛〈安戎〉雲中道掌四十三……桃源道掌二十一桃源〈松林〉白嶺〈崙州〉玉溪〈章州〉龍潭楓川〈東州〉臨崙〈平康〉松閒丹林〈嵐谷〉銀溪〈交州〉臨江驛田原〈東州〉桃昌南驛丹邑〈金化〉洞陰驛朔寧驛烽谷〈僧嶺〉通堰〈交州〉梨嶺直木〈金城〉熊壤〈岐城〉朔方道掌四十二 · ·靑郊道掌十五靑郊〈開城〉通波〈臨津〉馬山〈峯城〉碧池〈高峯〉迎曙〈南京〉平理〈德水〉橡林丹棗〈積城〉淸波〈南京〉蘆原〈南京〉幸州驛從繩〈守安〉金輪〈樹州〉重林〈仁州〉綠楊〈見州〉春州道掌二十四保安員壤富昌仁嵐〈春州〉甘井〈嘉平〉川原芳春山梁原貞〈狼川〉遂仁〈楊口〉連同〈朝宗〉甘泉連峯〈橫川〉橫川驛瑪瑙〈麟蹄〉嵐橋〈瑞禾〉桑樹〈豐壤〉雙谷安遂〈抱州〉南京驛仇谷〈南京〉臨川〈沙川〉蒼峯含春〈橫川〉平丘道掌三十平丘〈南京〉奉安〈廣州〉娛賓〈楊根〉田谷伯冬〈砥平〉幽原〈原州〉楊化〈川寧〉嘉興〈忠州〉連原〈忠州〉黃剛壽山安陰〈虒風〉丹丘安壤神林〈原州〉泉南〈提州〉延平溫山正陽〈寧越〉靈泉長林〈丹山〉義豐〈永春〉樂壽〈平昌〉新興新津〈黃利〉昌樂〈興州〉平恩昌保〈剛州〉幽洞〈甘泉〉道深〈奉化〉溟州道掌二十八·……慶州道掌十五德豐慶安長嘉安業南山〈廣州〉良梓〈果州〉金領〈龍駒〉佐贊分行〈竹州〉五行安利〈利川〉無極〈陰竹〉遙安〈陰城〉丹月安富〈槐州〉忠淸州道掌三十四同和長足薺好〈水州〉嘉川〈陽城〉栗峯雙樹猪山長池〈淸州〉長楊堆粮〈鎭州〉燕山驛金沙〈燕岐〉蒲谷〈全義〉成歡〈稷山〉新恩〈天安〉金蹄〈豐歲〉長世〈牙州〉昌德〈新昌〉理興〈溫水〉日興〈禮山〉廣庭日新〈公州〉坦平〈公州〉銀山〈扶餘〉維鳩〈新豐〉檢楊〈定山〉汲泉〈伊山〉洪州驛光世〈大興〉金井〈靑陽〉得熊〈余美〉夢熊〈貞海〉靈檢〈嘉林〉非熊〈鴻山〉全公州道掌二十一 · 昇羅州道掌三十 …山南道掌二十八……南原道掌十二· 慶州道掌二十三 ·…金州道掌三十一 尙州道掌二十五 ··京山府道掌二十五·· 分各驛丁戶爲六科以金郊臨皮金嵓寶山安城龍泉邑嶺洞仙高原生陽懷蛟林原爲一科以安定迎德通寧雲邑興林興郊長若安

信新安雲興林畔通陽豐陽興化鎭驛爲二科以白嶺玉雞龍潭嵐泉林崗松閒丹林銀漢孤山藍山寶龍鐵關德嶺通達和遠城陽康樂大平長興玉兒葦溪朔安爲三科以通德善田金川長利長歡風崗通堰熊壤通蕃長壽爲四科以金谷深洞虎崗望丁金剛丹林沙溝石牛興泉密田桃摘田原臨江縣驛利嶺直木保安安撫甘泉山粱高岑竹苞灌木射邑淸僧安奇桑樹雙谷大昌橫深珍富大和芳林雲橋安仁壽山新池雲峯驥驎班石陶工金洞管山深源德新洞陰縣驛爲五科以楊溪嘉原靑僧長材雲牛金化縣驛僧嶺縣驛朔寧縣驛元貞芳春遂人富昌甘泉連峯仁嵐蒼峯嵐山商圓壤瑪瑙希山商縣驛臨川同德驎駒樂豐平陵喬柯史直龍化沃源興富召召木界烏原慈山降仙玉地白原兎山縣驛溫泉往谷泉頭今勿雲邑長林爲六科一科丁七十五二科丁六十三科丁四十五四科丁三十五科丁十二六科丁七狡猊雖在兩京閒比他驛役事不緊故仍定五十丁林原雖非兩京閒役事最緊故在一科朔安雖爲三科非沿路故定爲二十五丁桃源雖爲三科在東西要衝故定爲五十丁若有田而丁口不足以本驛白丁子枝自願者充立懸鈴傳送〈懸鈴謂皮帒盛文貼傳送〉三急三懸鈴二急二懸鈴一急一懸鈴隨事緩急行之津驛皮角傳送自二月至七月三急六驛二急五驛一急四驛八月至正月三急五驛二急四驛一急三驛

●산예도(狻猊道)는 10개소를 관할한다 즉 산예(狻猊)<개성(開城)>·금곡(金谷)<백주(白州)>·심동(深洞)<염주(塩州)>·청단(靑端)·가율(嘉栗)·망정(望汀)·금강(金剛)·양계(楊溪)<안서(安西)>·유안(維安)<청송(靑松)>·좌구(佐丘)<영강(永康)> 금교도(金郊道)는 16개소를 관할한다 금교(金郊)<강음(江陰)>·흥의(興義)<우봉(牛峯)>·옥지(玉池)<강음(江陰)>·안신(安信)·백원(白原)<우봉(牛峯)>·금암(金岩)·보산(寶山)·안성(安城)<평주(平州)>·용천(龍泉)<동주(洞州)>·반석(班石)<기린(麒麟)>·온천(溫泉)<평주(平州)>·관산(管山)<협계(俠溪)>·금물(今勿)<곡주(谷州)>·생곡(栍谷)<협계(俠溪)>·천두(泉頭)<곡주(谷州)> 절령도(岊嶺道)는 11개소를 관할한다 절령(岊嶺)<봉주(鳳州)>·동선(洞仙)·단림(丹林)<황주(黃州)>·도공(陶工)<봉주(鳳州)>·금동(金洞)<안주(安州)>·사암(射邑)<수안(遂安)>·회교(廻郊)·생양(生陽)·고원(高原)·신지(神地)·운봉(雲峯)<서경(西京)> 흥교도(興郊道)는 12개소를 관할한다 …… 흥화도(興化道)는 29개소를 관할한다 장녕(長寧)<황주(黃州)>·안신(安信)<가주(嘉州)>·신안(新安)·운흥(雲興)<곽주(郭州)>·임반(林畔)·통양(通陽)<선주(宣州)>·풍양(豐陽)<철주(鐵州)>·광지(光池)<영주(寧州)>·창태(昌泰)<영덕(寧德)>·압록(鴨綠)<정주(靜州)>·회원(會元)<의주(義州)>·명구(名駒)<용주(龍州)>·영기(靈騏)<인주(麟州)>·종화(從化)<위원(威遠)>·장흥(長興)<태주(泰州)>·성양(城陽)·삼기(三岐)·통의(通義)·대평(大平)<구주(龜州)>·보봉(寶峯)·회인(懷仁)<안의(安義)>·화전(花田)·임천(臨川)<정융(定戎)>·은암(銀邑)·진전(榛田)<영삭(寧朔)>·암사(邑舍)<구주(龜州)>·방전(芳田)·창평(昌平)<삭주(朔州)>·안부신역(安富

新驛)<안융(安戎)> 운중도(雲中道)는 43개소를 관할한다. 도원도(桃源道)는 21개소를 관할한다 도원(桃源)<송림(松林)>·백령(白嶺)<단주(湍州)>·옥계(玉溪)<장주(章州)>·용담(龍潭)·풍천(楓川)<동주(東州)>·임단(臨湍)<평강(平康)>·송한(松閒)·단림(丹林)<남곡(嵐谷)>·은계(銀溪)<교주(交州)>·임강역(臨江驛)·전원(田原)<동주(東州)>·도창(桃昌)·남역(南驛)·단암(丹嵓)<금화(金化)>·동음역(洞陰驛)·삭녕역(朔寧驛)·봉곡(烽谷)<승령(僧嶺)>·통언(通堰)<교주(交州)>·이령(梨嶺)·직목(直木)<금성(金城)>·웅양(熊壤)<기성(岐城)> 삭방도(朔方道)는 42개소를 관할한다 · 청교도(靑郊道)는 15개소를 관할한다 청교(靑郊)<개성(開城)>·통파(通波)<임진(臨津)>·마산(馬山)<봉성(峯城)>·벽지(碧池)<고봉(高峯)>·영서(迎曙)<남경(南京)>·평리(平理)<덕수(德水)>·상림(橡林)·단조(丹雕)<적성(積城)>·청파(淸波)<남경(南京)>·노원(蘆原)<남경(南京)>·행주역(幸州驛)·종승(從繩)<수안(守安)>·금륜(金輪)<수주(樹州)>·중림(重林)<인주(仁州)>·녹양(綠楊)<견주(見州)> 춘주도(春州道)는 24개소를 관할한다 보안(保安)·원양(員壤)·부창(富昌)·인람(仁嵐)<춘주(春州)>·감정(甘井)<가평(嘉平)>·천원(川原)·방춘(芳春)·산량(山粱)·원정(原貞)<낭천(狼川)>·수인(遂仁)<양구(楊口)>·연동(連同)<조종(朝宗)>·감천(甘泉)·연봉(連峯)<횡천(橫川)>·횡천역(橫川驛)·마노(瑪瑙)<인제(麟蹄)>·남교(嵐橋)<서화(瑞禾)>·상수(桑樹)<풍양(豐壤)>·쌍곡(雙谷)·안수(安遂)<포주(抱州)>·남경역(南京驛)·구곡(仇谷)<남경(南京)>·임천(臨川)<사천(沙川)>·창봉(蒼峯)·함춘(含春)<횡천(橫川)> 평구도(平丘道)는 30개소를 관할한다 평구(平丘)<남경(南京)>·봉안(奉安)<광주(廣州)>·오빈(娛賓)<양근(楊根)>·전곡(田谷)·백동(伯冬)<지평(砥平)>·유원(幽原)<원주(原州)>·양화(楊化)<천녕(川寧)>·가흥(嘉興)<충주(忠州)>·연원(連原)<충주(忠州)>·황강(黃剛)·수산(壽山)·안음(安陰)<청풍(淸風)>·단구(丹丘)·안양(安壤)·신림(神林)<원주(原州)>·천남(泉南)<제주(提州)>·연평(延平)·온산(溫山)·정양(正陽)<영월(寧越)>·영천(靈泉)·장림(長林)<단산(丹山)>·의풍(義風)<영춘(永春)>·낙수(樂壽)<평창(平昌)>·신흥(新興)·신진(新津)<황리(黃利)>·창락(昌樂)<흥주(興州)>·평은(平恩)·창보(昌保)<강주(剛州)>·유동(幽洞)<감천(甘泉)>·도심(道深)<봉화(奉化)> 명주도(溟州道)는 28개소를 관할한다 ·· 경주도(慶州道)는 15개소를 관할한다 덕풍(德風)·경안(慶安)·장가(長嘉)·안업(安業)·남산(南山)<광주(廣州)>·양재(良梓)<과주(果州)>·금령(金領)<용구(龍駒)>·좌찬(佐贊)·분행(分行)<죽주(竹州)>·오행(五行)·안리(安利)<이천(利川)>·무극(無極)<음죽(陰竹)>·요안(遙安)<음성(陰城)>·단월(丹月)·안부(安富)<괴주(槐州)> 충청주도(忠淸州道)는 34개소를 관할한다 동화(同和)·장족(長足)·청호(菁好)<수주(水州)>·가천(嘉川)<양성(陽城)

>・율봉(栗峯)・쌍수(雙樹)・저산(猪山)・장지(長池)<청주(淸州)>・장양(長楊)・퇴량(堆粮)<진주(鎭州)>・연산역(燕山驛)・금사(金沙)<연기(燕岐)>・포곡(蒲谷)<전의(全義)>・성환(成歡)<직산(稷山)>・신은(新恩)<천안(天安)>・금제(金蹄)<풍세(豐歲)>・장세(長世)<아주(牙州)>・창덕(昌德)<신창(新昌)>・이흥(理興)<온수(溫水)>・일흥(日興)<예산(禮山)>・광정(廣庭)・일신(日新)<공주(公州)>・탄평(坦平)<공주(公州)>・은산(銀山)<부여(扶餘)>・유구(維鳩)<신풍(新豐)>・유양(楡楊)<정산(定山)>・급천(汲泉)<이산(伊山)>・홍주역(洪州驛)・광세(光世)<대흥(大興)>・금정(金井)<청양(靑陽)>・득웅(得熊)<여미(余美)>・몽웅(夢熊)<정해(貞海)>・영유(靈楡)<가림(嘉林)>・비웅(非熊)<홍산(鴻山)> 전공주도(全公州道)는 21개소를 관할한다 승라주도(昇羅州道)는 30개소를 관할한다 ・ ・ 산남도(山南道)는 28개소를 관할한다 ・ 남원도(南原道)는 12개소를 관할한다 ・・ 경주도(慶州道)는 23개소를 관할한다 금주도(金州道)는 31개소를 관할한다 상주도(尙州道)는 25개소를 관할한다 ・ 경산부도(京山府道)는 25개소를 관할한다 ‥・・ 각 역참에 속한 역졸의 호수를 6과로 나누되 금교(金郊)・임파(臨波)・금암(金嵓)・보산(寶山)・안성(安城)・용천(龍泉)・절령(岊嶺)・동선(洞仙)・고원(高原)・생양(生陽)・회교(懷皎)・임원(林原)을 1과(科)로 하고, 안정(安定)・영덕(迎德)・통녕(通寧)・운암(雲嵓)・흥림(興林)・흥교(興郊)・장약(長若)・안신(安信)・신안(新安)・운흥(雲興)・임반(林畔)・통양(通陽)・풍양(豐陽)・흥화진역(興化鎭驛)을 2과(科)로 하고, 백령(白嶺)・옥계(玉雞)・용담(龍潭)・남천(嵐泉)・임단(林湍)・송간(松間)・단림(丹林)・은한(銀漢)・고산(孤山)・남산(藍山)・보룡(寶龍)・철관(鐵關)・덕령(德嶺)・통달(通達)・화원(和遠)・성양(城陽)・강락(康樂)・대평(大平)・장흥(長興)・옥아(玉兒)・위계(葦溪)・삭안(朔安)을 3과(科)로 하고, 통덕(通德)・선전(善田)・금천(金川)・장리(長利)・장환(長歡)・풍단(風湍)・통언(通堰)・웅양(熊壤)・통번(通蕃)・장수(長壽)를 4과로 하고, 금곡(金谷)・심동(深洞)・청단(淸湍)・망정(望丁)・금강(金剛)・단림(丹林)・사구(沙溝)・석우(石牛)・흥천(興泉)・밀전(密田)・도적(桃摘)・전원(田原)・임강현역(臨江縣驛)・이령(利嶺)・직목(直木)・보안(保安)・안무(安撫)・감천(甘泉)・산량(山粱)・고잠(高岑)・죽포(竹苞)・관목(灌木)・사암(射嵓)・청간(淸澗)・안기(安奇)・상수(桑樹)・쌍곡(雙谷)・대창(大昌)・횡심(橫深)・진부(珍富)・대화(大和)・방림(芳林)・운교(雲橋)・안인(安仁)・수산(壽山)・신지(新池)・운봉(雲峯)・기린(驥驎)・반석(班石)・도공(陶工)・금동(金洞)・관산(管山)・심원(深源)・덕신(德新)・동음현역(洞陰縣驛)을 5과로 하고, 양계(楊溪)・가원(嘉原)・청간(靑澗)・장재(長材)・운반(雲半)・김화현역(金化縣驛)・승령현역(僧嶺縣驛)・삭녕현역(朔寧縣驛)・원정(元貞)・방춘(芳春)・수인(遂人)・부창(富昌)・감천(甘泉)・연봉(連峯)

·인람(仁嵐)·창봉(蒼峯)·남적(嵐山商)·원양(圓壤)·마노(瑪瑙)·희적현역(希山商縣驛)·임천(臨川)·동덕(同德)·인구(驎駒)·낙풍(樂豐)·평릉(平陵)·교가(喬柯)·사직(史直)·용화(龍化)·옥원(沃源)·흥부(興府)·소소(召召)·목계(木界)·오원(烏原)·자산(慈山)·강선(降仙)·옥지(玉地)·백원(白原)·토산현역(兎山縣驛)·온천(溫泉)·왕곡(往谷)·천두(泉頭)·금물(今勿)·운암(雲嵓)·장림(長林)을 6과로 하였다 1과에는 정인(丁人)이 75명, 2과에는 정인이 60명, 3과에는 정인이 45명, 4과에는 정인이 30명, 5과에는 정인이 12명, 6과에는 정인이 7명이다 산예(狻猊)는 비록 양경 사이에 있으나 다른 역(驛)에 비교하면 하는 일이 긴요하지 않으므로 정인을 50명으로 하고 임원(林原)은 비록 양경 사이는 아니나 하는 일이 가장 긴요하므로 1과에 두고 삭안(朔安)은 비록 3과로 되었으나 연로(沿路)가 아니고 동서 요충지에 있으므로 정인을 50명으로 하였다 만약 토지가 있고 정인이 부족하면 그 역의 백정 자제의 자원자로 보충해 세운다 방울을 달아 공문을 전해 보내는데<현령이 가죽 주머니에 봉인한 공문서를 넣어 보내는 것을 말한 것이다> 제일 급한 일은 방울을 세 개 달고 다음 급한 일은 방울을 두 개 달고 그 다음 급한 일은 방울을 한 개 다는데 이것은 일이 급한 정도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각 진·역(津驛)에서는 가죽으로 싼 공문서를 전해 보내는데 2월부터 7월까지는 제일 급한 일은 하루에 여섯 역(驛)을 가고 다음 급한 일은 하루에 다섯 역을 가고 그 다음 급한 일은 하루에 네 역을 가기로 하며, 8월로부터 정월까지는 제일 급한 일은 하루에 다섯 역을 가고 다음 급한 일은 하루에 네 역을 가고 그 다음 급한 일은 하루에 세 역을 가기로 한다

[고려사 권83, 지37 병3 주현군 양광도] 〈광주·남경·안남·인주·수주〉

○廣州道內保勝二百五十八人精勇五百四十六人一品五百三十六人南京道內保勝一百三十三人精勇八百六十四人一品五百二十九人安南道內保勝一百五十九人精勇二百九十二人一品二百八十二人仁州道內保勝一百九十四人精勇一百八十七人一品二百二十七人水州道內保勝一百七十五人精勇二百九十一人一品三百七十二人忠州牧道內保勝二百四十一人精勇三百五十七人一品五百二十人原州道內保勝一百二十二人精勇二百三人一品二百四十八人淸州牧道內保勝五百三十八人精勇七百八人一品八百五十人公州道內保勝三百二十六人精勇五百五十三人一品五百二十七人洪州道內保勝三百三十八人精勇四百九十七人一品七百十三人嘉林道內 ……一品二百一人

●광주(廣州) 도내 보승 258명, 정용 546명, 1품 536명 남경(南京) 도내 보승 133명, 정용 864명, 1품 529명 안남(安南) 도내 보승 159명, 정용 292명, 1품 282명 인주(仁州) 도내 보승 194명, 정용 187명, 1품 227명 수주(水州) 도내 보승 175명, 정용 291명, 1품 372명 충주목(忠州牧) 도내 보승 241명, 정용 357명, 1품 520명 원주(原

州) 도내 보승 122명, 정용 203명, 1품 248명 청주목(淸州牧) 도내 보승 538명, 정용 708명, 1품 850명 공주(公州) 도내 보승 326명, 정용 553명, 1품 527명 홍주(洪州) 도내 보승 338명, 정용 497명, 1품 713명 가림(嘉林) 도내 1품 201명

5) 『고려사(高麗史)』 열전(列傳)

[고려사 권94, 열전7 김은부] 〈수주 안산현 사람 김은부〉

○金殷傅水州安山縣人性勤儉

●김은부(金殷傅)는 수주(水州) 안산현(安山縣) 사람이니 성품이 부지런하고 검박하였다

[고려사 권97, 열전10 유재 부 신안지] 〈신안지가 수주의 원을 역임하다〉

○愼安之字元老亦宋開封府人父脩文宗朝隨海舶來有學識且精醫術登第官至守司徒左僕射叅知政事致仕謚恭獻安之事睿仁二朝知水州爲政淸肅吏畏民懷

●신안지(愼安之)의 자는 원로(元老)니 그도 송나라 개봉부(開封府)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 신수(愼脩)가 문종 때에 상선을 따라왔는데 학식이 있고 또 의술에 정통하였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수사도좌복야 참지정사까지 승진된 후 치사하였으며 시호는 공헌(恭獻)이라고 하였다 신안지는 예종과 인종 두 왕을 섬겼다 수주(水州)의 원으로 있을 때에 정사를 청백하고 엄숙하게 하였으므로 그 고을의 아전들은 그를 어렵게 여기고 백성들은 그를 사모하였다

[고려사 권98, 열전11 김정순] 〈김정순이 수주의 원을 역임하다〉

○金正純黃州人起寒素尙氣任俠善射御常語人曰男兒當立邊功以取名位安能鬱悒苟活里閭閒邪睿宗朝尹瓘征女眞自請從軍有戰功累遷閤門祗候出守和水二州素不閑吏治不以簿書介意但擧大體亦無廢事

●김정순(金正純)은 황주(黃州) 사람으로 빈한한 가정에서 자라났다 기개가 있고 호협스러운 남아로서 활쏘고 말타기에 능숙하였다 항상 하는 말이, "사나이는 마땅히 외적을 치는 공을 세움으로써 명예와 지위를 얻을 것이지 어찌 울적한 시골 구석에서 구차하게 살겠는가"라고 하더니, 예종 때 윤관(尹瓘)이 여진을 정벌할 때 종군을 자원하고 출정하여 전공을 세웠으며 점차 벼슬이 올라 합문지후(閤門祗候)에 이르렀다가 화주(和州)와 수주(水州) 두 고을 원으로 나가 있었다 그는 본래 행정사무에 익숙치 못하고 문부에는 관심을 돌리지 않았으며 다만 대체만을 파악하고 있었고 또

한 공사를 못쓰게 한 일도 없었다

[고려사 권98, 열전11 최자성] 〈수주 사람 최자성〉

○崔滋盛水州人登第補殿中內給事仁宗朝歷官至特進檢校司徒守司空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최자성(崔滋盛)은 수주(水州) 사람이니 과거에 급제하고 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로 임명되었다가 인종 때에 여러 관직을 역임하여 특진 검교사도 수사공 중서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로 올라갔다

[고려사 권100, 열전13 경대승] 〈손석의 부친이 수주의 원으로 탐오가 심하다〉

○明宗八年淸州人與州人係京籍而退居者構隙捕殺幾盡其黨之在京者聞之欲報仇矯旨募死士向淸州王遣將軍韓慶賴等追止之不及與州人戰不克死者百餘人時大升與大將軍朴純弼爲本州事審官以不能禁制見罷牧副使趙溫舒亦罷 · · 時京城寇盜多起自稱大升都房有司逮捕囚之大升輒釋之由是公行奪掠無畏忌大升門客殺一良家子於路有司捕之欲治大升力救得免…… 十一年前隊正韓信忠蔡仁靖朴敦純等謀作亂令史同正大公器知之以告大升大升白王捕鞫之辭連石和及別將朴華注簿李敦實乃流信忠仁靖郭純等于島貶和南海縣令華河山島勾當使流敦實于廣州……明宗欲授三品職光陟曰臣年少拜四品又兼吏部於臣足矣遂辭出爲楊忠州道察訪使時孫碩父爲水州使性貪鄙侵漁無厭百姓苦之碩懼就光陟求哀光陟不聽意劾罷之碩由是與光陟有隙遂誘大升殺之

●명종 8년에 청주 사람들이 청주 사람으로서 서울에 적(籍)을 두고 살다가 청주로 퇴거하는 사람들과의 사이가 좋지 못하여 서울서 살던 사람들을 거의 다 잡아 죽였다 그리하여 서울에 남아있는 그들의 일당들이 이 소문을 듣고 복수하기 위하여 왕의 지시를 위조하고 결사대원을 모집하여 청주로 내려 보냈다 왕이 장군 한경뢰 등을 뒤쫓아 보내어 제지하려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청주 사람들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100여 명이 죽었다 그때에 경대승이 대장군 박순필과 함께 청주의 사심관(事審官)이었는데 이것을 제지하지 못하였다 하여 면직되었으며 부사 조온서도 파면되었다 …… 그때에 서울에는 도적이 많이 생겼는데 자칭 경대승의 도방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니었다 법관이 이런 자들을 잡아 가두면 경대승이 즉시 석방시켰다 이런 까닭에 그들은 아무 꺼림없이 공공연히 약탈을 감행하였다 경대승의 문객 한 사람이 길에서 양가 자제를 죽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법관이 체포하여 치죄하려 하였으나 경대승이 극력 주선하여 무사하게 만들었다 11년에 전 대정 한신충·채인정·박돈순 등이 반란을 음모하는 것을 영사동정 대공기(大公器)가 알고 경대승에게

밀고하였다 경대승이 왕에게 고하여 붙잡아 국문하니 석화와 별장 박화, 주부 이돈실도 이 사건에 관계가 있는 것이 발각되었으므로 한신충·채인정·박돈순 등은 섬으로 귀양보내고, 석화는 남해현령(南海縣令)으로, 박화는 하산도구당사(河山島勾當使)로 강직시켰으며, 이돈실은 광주(廣州)로 귀양보냈다 명종이 오광척에게 3품 관직을 제수하려 하니 오광척이 말하기를, "제가 연소한데 벌써 4품관으로 되었고 또 이부(吏部)까지 겸임하였으니 저에겐 이만하면 족합니다"라고 하여 사양하고 양충주도찰방사(楊忠州道察訪使)로 나갔다 그때 손석의 부친이 수주(水州)의 원으로 있었는데 탐오가 심하고 착취가 끝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 손석이 자기 죄에 겁이 나서 오광척을 찾아 보고 애걸하였으나 오광척이 용서하지 않고 기어이 탄핵하여 파직시켰다 그런 관계로 손석이 오광척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경대승을 꾀어 오광척을 죽이게 된 것이다

[고려사 권100, 열전13 정세유] 〈수주의 아전으로부터 뇌물을 받다〉

○又在尙書省署永州吏崔安戶長公牒已成世裕納水州吏崔少賂改永爲水安爲少以其牒給少事覺法當流以計獲免

●또 상서성에 있을 때 영주(永州)의 아전 최안(崔安)을 호장(戶長)으로 임명하기로 하여 문건까지 이미 작성되었는데 정세유가 수주(水州)의 아전 최소(崔少)의 뇌물을 받고 영주라는 영(永)자를 수주라는 수(水)자로 고치고 안(安)자를 소(少)자로 개작하여 최소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각되었을 때에 응당 법에 의하여 귀양보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계를 써서 형을 면하였습니다

[고려사 권106, 열전19 김훤] 〈수원서기 김천서〉

○忠烈元年由摠郎出爲全羅道部夫使至菁好驛見全羅按察盧景綸驛輸內膳于京甚夥私膳居半取其私膳歸國庫景綸女壻金天緖適爲水原書記取以獻王景綸訴于王免晅官· 時內府令姜融有求於開物不獲怒歐之開物罵曰汝本奴隷敢辱士族耶融銜而譖之下巡軍鞫之時融爲千戶巡軍阿融意杖開物流松加島後授陜州開物辭不赴又流紫燕島連遭困躓處之怡然及放還家居客室則置酒鼓琴賦詩自娛殆十五年無復仕宦意

●충렬왕 원년에 총랑을 지나 전라도부부사(全羅道部夫使)로 파견되어 나갔다 그가 청호역(菁好驛)에 이르러 전라도안찰사로 노경륜(盧景綸)이 역전(驛傳)을 이용하여 개성에다 내선(內膳)을 운반해 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 중에는 사선(私膳)이 절반이나 되기 때문에 김훤이 그 사선의 물품들을 몰수하여 국고(國庫)에다 돌려 주었더니, 노경륜의 사위 김천서(金天緖)가 그때 마침 수원서기(水原書記)로 있다가 그것

을 갖다가 왕에게 바쳤으며 노경륜은 왕에게 신소하여 김훤의 관직을 파면시켰다 ‥ 당시 내부령(內府令) 강융(姜融)이 김개물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성을 내며 김개물을 구타하였다 김개물이 욕하기를, "너는 본래 노비 출신인데 감히 사족(士族)을 모욕한단 말이냐"라고 하였다 강융이 이것으로 악감을 품고 있다가 김개물을 참소하여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어 문초하게 하였다 당시에 강융이 천호로 있었으므로 순군이 강융에게 아부하여 김개물을 곤장으로 쳐서 송가도(松加島)에 귀양보냈다 그후 합주(陜州)의 수령으로 임명되었으나 김개물은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으므로 또 그를 자연도(紫燕島)에 귀양보냈다 이와 같이 여러 번 곤란한 처지에 빠져 승진이 막히곤 하였으나, 그는 태연하게 지냈으며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와서는 손님이 오면 술상을 차리고 거문고를 타며 시를 지어 스스로 즐겼다 이렇게 거의 15년간이나 지나도록 다시는 벼슬길로 나갈 생각을 갖지 않았다

[고려사 권109, 열전22 이성] 〈수원사록을 역임한 이성〉

○李晟潭陽人弱冠登第調溫水監務移水原司錄秩滿挈家歸竹溪村舍不求祿仕日以討墳典爲事

●이성(李晟)은 담양(潭陽) 사람이다 20세 전에 과거에 급제하여 온수감무(溫水監務)로 임명되고 수원사록(水原司錄)으로 전직하였다가 만기가 되자 가솔을 데리고 죽계(竹溪) 마을 집으로 돌아와 벼슬을 단념하고 날마다 고서를 연구하는 것으로 일을 삼았다

[고려사 권109, 열전22 신군평] 〈신군평이 수주 참군을 역임하다〉

○申君平平州人登第忠肅朝爲臺官時賂權貴得官者幾百餘有崔琬者嘗匿父喪赴擧後中第爲水州參軍有穢聲爲同榜所斥倚權豪爲成均學錄君平皆不署告身又不署政丞姜融贊成蔡河中懷義君崔老星左代言曹莘卿元尹申時用持平尹賢告身以故見忤罷朝野惜之

●신군평(申君平)은 평주(平州) 사람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충숙왕 때에 대관(臺官)으로 되었다 이때 권세와 지위가 있는 계층에게 뇌물을 주고 벼슬을 얻는 자가 무수하였다 그 가운데 최완(崔琬)은 일찍이 아버지의 상사를 숨기고 과거를 보았으며 그후 과거에 급제하여 수주참군(水州參軍)이 되었는데 그는 수주에서 음행이 있었으므로 같은 기회에 과거에 합격한 자들에게서 배격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권세 있는 자에게 아부하여 성균학록(成均學錄) 벼슬을 하였다 신군평은 그의 고신(告身)에 모두 서명하지 않았으며 또 정승 강융(姜融)·찬성사 채하중(蔡河中)·회의군 최로성(崔老星)·좌대언 조신경(曹莘卿)·원윤 신시용(申時用)·지평 윤현(尹賢) 등의 고신

에 대한 서명도 모두 거부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의 미움을 받아 파면되었는데 세상에서는 모두 그를 애석히 여겼다

[고려사 권110, 열전23 김태현] 〈김태현을 행수주목사 등에 임명하다〉

○忠宣卽位分遣大臣括諸道民戶台鉉爲楊廣水吉道計點使行水州牧使諸道報僉議司受指畫每回牒曰當依楊廣水吉道所爲行之故諸道皆取法… 恭愍立杜門不出凡十二年奉養其母朝夕盡禮母歿廬墓終制每祭必涕泣不止王聞而嘉之使人諭曰思與卿語可使得見乎光載時抱疾扶入見王曰年顔非甚衰也而有斯疾何耶歎惜久之命有司旌表所居曰靈昌坊孝子里復其里若干戶以奉事焉· 子興祖倜儻有志官至軍器監歷宰水原海州與金齊顔金精等謀誅辛旽事洩爲所害

●충선왕이 즉위하자 대신들을 파견하여 각도 호구(各道戶口)를 조사할 때에 김태현을 양광(楊廣)·수길(水吉) 두 도 계점사(計點使) 겸 행수주목사(行水州牧使)로 삼았으며, 각도에서 첨의사(僉議司)에 보고하여 사업상 지시를 받을 때마다 회답하기를, "양광도와 수길도에서 하는 방식에 의하여 실행하라"고 하였으므로 각도에서는 모두 그것을 본받았다 …… 공민왕이 즉위하자 그는 12년간 세상에 나오지 않고 밤낮으로 부모 봉양하는 예절을 다하였으며 어머니가 죽은 후에는 분묘 곁 묘막에서 3년상을 마쳤다 그후에도 제사 때마다 눈물을 흘려 울기를 마지 않았다 왕이 그 소문을 듣고 가상히 여겨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그대를 만나 말할 일이 있는데 만나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때 김광재는 병든 몸으로 부축을 받아 궁중으로 들어가서 왕을 뵈오니, 왕이 말하기를, "연령과 용모는 그다지 쇠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병을 앓는 것은 웬일인가"하고, 오랫동안 애석히 여기다가 유사에게 명령하여 그가 거주하는 곳을 표창하여 영창방 효자리(靈昌坊孝子里)라 하고 그 마을에서 약간 호의 제금을 떼어주어 그를 받들게 하였다 아들 김흥조(金興祖)는 호협하고 지절이 있었다 벼슬이 군기감(軍器監)에 이르렀고 수원·해주의 수령 등 지방관을 지냈으며 김제안(金齊顔)·김정(金精) 등과 더불어 신돈(辛旽)을 처단할 것을 계획하다가 일이 누설되어 살해되었다

[고려사 권112, 열전25 이존오] 〈수원서기가 된 이존오〉

○李存吾字順卿慶州人姿相端潔簡重寡言早孤力學忼慨有志節年十餘肄十二徒賦江漲詩云大野皆爲沒高山獨不降識者異之恭愍九年登第調水原書記選補史翰

●이존오(李存吾)의 자는 순경이며 경주사람이다 그는 사람됨이 단정하고 깨끗하며 행동이 정중하고 말이 적었다 어려서 고아가 되었는데, 열심히 공부하였고 그는 강개하고 지조가 있었다 나이가 10여 세에 십이도(十二徒)에서 공부하면서 '강에 물

이 불었다(江漲詩)'라는 시에 '넓은 들은 모두 다 잠기고 높은 산만 유달리 낮아지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식자들은 그를 기이하게 여겼다 공민왕 9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수원서기(水原書記)로 채용되었다가 사한(史翰)으로 임명되었다

[고려사 권114, 열전27 나세] 〈수원에 침입한 왜적을 나세가 격퇴하다〉

○羅世本元人也恭愍朝與諸將擊走紅賊錄功爲二等累轉版圖判書爲喬桐萬戶倭入寇世逃還王怒命囚巡衛府‥ 尋判開城府事時倭寇江華世上書曰臣非有文章可以華國又非衣冠之後得處肉食之列常思效死以報萬一請提兵入江華擊走倭賊禑壯其志賜內廐馬二匹又賜十匹分與摩下世與思敏李元桂康永朴壽年等擊却之倭五十艘復寇江華殺府使金仁貴虜千餘人又寇水原世與元帥楊伯淵率戰艦五十艘擊走之世過江華境有一婦匿水濱指示一家曰賊諜入彼世疾趍圍而火之殺賊二十九人倭四十五艘寇信州瓮津文化等縣世與元帥趙仁璧沈德符等擊之斬數級不克而退報于朝曰賊勢甚强我師疲弱難以制勝請遣軍助之倭又寇信州文化安岳鳳州世與德符梁伯益朴普老擊之敗績封延安君爲海道元帥倭寇延安府世與金海君金庾以戰艦五十餘艘往擊之 倭寇丑山島禑命世往擊之世不卽行禑怒繫廣州獄尋釋之

●나세(羅世)는 원래 원나라 사람이다 공민왕 때에 여러 장수들과 함께 홍건적을 격퇴하여 그 공로가 2등으로 등록되었다 후에 여러 관직을 거쳐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냈다 교동(喬桐)만호로 되었을 때에 왜적이 침입하자 그는 도망쳐 돌아왔으므로 왕이 노하여 순위부(巡衛府)에 가두었다 …… 이어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가 되었다 그때 왜적이 강화에 침입하였다 나세가 상서하기를, "저는 문장을 잘해서 나라를 빛낼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또한 사대부의 집안에 나서 호강하는 축에 들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함으로써 왕은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려 하는 것이니 군사를 거느리고 강화에 들어가서 왜적을 격퇴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신우가 그 정신을 장하게 여기어 궁마(宮馬) 2필을 주고 또 그 휘하들에게 10필을 나눠 주었다 나세는 조사민(趙思敏)·이원계(李元桂)·강영(康永)·박수년(朴壽年) 등과 함께 적을 격퇴하였다 왜적의 병선 50척이 다시 강화에 침입하여 부사(府使) 김인귀(金仁貴)를 죽이고 1000여 명을 포로한 후 또 수원(水原)을 침범하였다 나세는 원수 양백연(楊伯淵)과 함께 병선 50척을 거느리고 그를 격퇴하였다 나세가 강화를 지날 때 어떤 부인 하나가 냇가에 숨어서 외딴 집을 가리켜 말하기를, "적의 첩자가 저기로 들어갔다"고 하므로 나세가 빨리 달려가 그 집을 포위하고 불을 질러 적 29명을 죽였다 왜선 45척이 신주(信州)·옹진(瓮津)·문화(文化) 등 현을 침범하였으므로 나세는 원수 조인벽(趙仁璧)·심덕부(沈德符) 등과 함께 공격하여 수 명을 죽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적의 세력이 대단

히 강한 데다가 아군은 피로하여 승리를 보장하기 어려우니 응원군을 보내어 원조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왜적이 또 신주·문화·안악(安岳)·봉주(鳳州)를 침범하였으므로 나세는 심덕부·양백익(梁伯益)·박보로(朴普老) 등과 함께 싸웠으나 패전하였다 나세를 연안군으로 봉하고 해도원수로 임명하였다 왜적이 연안부(延安府)를 침략하였다 나세는 김해군 김유와 함께 병선 50여 척을 거느리고 가서 그를 공격하였다 …… 왜적이 축산도(丑山島)에 침입하였을 때 신우가 나세에게 가서 칠 것을 명령하였는데 나세가 재빨리 출동하지 않았으므로 신우가 노하여 광주(廣州) 옥에 가두었다가 이어 석방하였다

[고려사 권114, 열전27 오인택] 〈오영좌를 수원으로 귀양보내다〉

○吳仁擇恭愍朝從安祐等擊走紅賊錄功爲二等累遷上將軍又從祐等收復京城又與崔瑩討興王賊錄功俱一等賜端誠亮節功臣號 …仁澤子前軍簿判書英柱三司判官英佐與其母卜於盲人石天祿曰崔瑩李龜壽何時見斥天祿曰不久矣言洩乃流英柱于杞溪英佐于川寧幷杖流天祿辛旽當國召拜知都僉議仁擇與千興等謀去旽事洩繫巡軍杖流尙州又杖流英佐于水原皆沒爲奴後仁擇聞旽必欲殺己與英柱英佐逃旽遣使楊廣全羅慶尙道搜捕又繫仁擇妻子判事玉天桂養仁擇少子旽疑與仁擇同謀繫巡軍拷掠殺之尋獲仁擇杖配思利城烽卒

●오인택(吳仁擇)은 공민왕 때에 안우 등을 따라 홍건적을 격퇴하고 그 공로가 2등으로 등록되었으며 벼슬을 여러 번 진급하여 상장군(上將軍)이 되었다 또 안우 등을 따라 경성을 수복하였고 또 최영과 함께 흥왕사(興王寺)의 적을 토벌하여 그 공로가 모두 1등으로 등록되었으며 단성 양절공신(端誠亮節功臣)의 칭호를 받았다 오인택의 아들 전 군부판서(前軍簿判書) 영주(英柱)와 삼사판관(三司判官) 영좌(英佐)는 그 어머니와 함께 소경 석천록(石天祿)에게 점을 치기를, "최영·이구수는 어느 때 쫓겨날 것인가"라고 물으니 석천록이 말하기를, "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말이 누설되어 오영주를 기계(杞溪)로, 오영좌를 천녕(川寧)으로 귀양보내고 이와 함께 석천록도 매를 쳐서 귀양보냈다 오인택이 경천흥과 함께 신돈을 제거하려고 도모하였다 일이 누설되어 순군에 가두었다가 매를 쳐서 상주(尙州)로 귀양보내고 또 오영좌를 매를 쳐서 수원(水原)으로 귀양보내어 모두 노비로 삼았다 후에 오인택은 신돈이 기필코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영주·영좌와 함께 도망쳤다 신돈이 사람을 양광·전라·경상도에 보내어 수사하고 또 오인택의 처자를 가두었다 판사 옥천계(玉天桂)는 오인택의 어린 아들을 기르고 있었으므로 신돈은 그가 오인택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순군에 가두고 고문하여 죽였다 이어 오인택을 체포하여 매를

쳐서 사리성(思利城) 봉졸(烽卒)로 귀양보냈다

[고려사 권117, 열전30 김진양] 〈수원에서 남은 등에게 취조하기를 명하다〉

○恭愍朝登第調藝文檢閱不十年揚歷華要出爲西海道按廉有聲績由門下舍人陞左司議

· 歲庚午淸州大水辛未城市乘桴天灾荐至年穀不登豈非所召也‥ 震陽等又言古人曰去草不去根終當復生去惡不去根其惡長浚道傳惡之根也闇紹宗在璞養其根而滋蔓者也昨臣等上章請誅而惟道傳特蒙允許餘止貶外罪同罰異請將浚等並置極刑王愕然曰我初無誅道傳之語命移流道傳于光州浚于泥山闇在璞紹宗思忠皆聚水原遣巡衛府千戶金龜聯刑曹正郎李蟠與楊廣道觀察使姜隱同鞫未行我太祖自海州輿疾夜還于邸鄭夢周李穡禹玄寶等以謂若劾浚闇置極刑則璞紹宗思忠之輩不足制也陰誘臺諫連日交章伏閤廷諍請誅浚道傳等

●공민왕 때에 과거에 급제하고 예문검열로 임명된 지 10년도 못되어 중요한 관직을 지낸 다음 서해도안렴사(西海道按廉使)로 나가 성적(聲績)을 올렸으므로 문하사인(門下舍人)을 거쳐 좌사의(左司議)에 승진되었다 … 지난 경오년(庚午年)에 청주(淸州)에 홍수가 나고 신미년(辛未年)에도 성내에서 떼를 탔었는바, 이렇게 천재가 거듭 발생하고 농사가 잘 되지 않은 것은 어찌 그들이 저지른 죄악으로부터 초래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진양 등이 다시 말하기를, "옛사람의 말에 풀을 뽑을 때 뿌리채 뽑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다시 나는 것이요, 악을 제거할 때 뿌리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악이 자라난다고 하였는바 조준과 정도전은 악의 뿌리요, 남은·윤소종·남재·조박 등은 그 뿌리를 가꾸어 키워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글을 올려 그들을 베일 것을 요청하였는데 다만 정도전에 대해서만 특별히 허가하고 기타는 지방에 귀양보내는 데 그침으로써 죄는 같은데 벌이 달라졌습니다 조준 등도 동일하게 극형에 처하소서"라고 하니, 왕이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나는 처음부터 정도전을 베라는 말을 한 일이 없었다"라고 정도전을 옮겨 광주(光州)에 귀양보내고, 조준을 이산(泥山)에 귀양보내고, 남은·남재·조박·윤소종·오사충 등을 모두 수원에 모아 놓고 순위부천호(巡衛府千戶) 김귀련(金龜聯), 형조정랑 이반(李蟠) 등을 보내어 양광도관찰사(楊廣道觀察使) 강은(姜隱)과 함께 사건을 취조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시행하지 못하였다 태조가 해주로부터 병든 몸으로 야간에 귀가하였는데 정몽주·이색·우현보 등은 생각하기를, "만일 조준·남은을 추궁하여 극형에 처한다면 조박·윤소종·오사충의 무리를 처단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 하고 대간을 은근히 꾀어서 연일 번갈아 상소하고 궐문 밖에 엎드려 간절히 간함으로써 조준과 정도전 등을 베기를 청하였다.

[고려사 권118, 열전31 조준] 〈경기 8현은 부역이 아주 번다하다〉

○禑召浚曰楊廣慶尙道倭賊大熾元帥都巡問使懊怯不戰卿其往察軍機浚曰臣母年踰八十又罹沉痾乞遣他人禑曰卿正直無私且有威望無以易卿浚曰殿下若命臣全制兩道其將帥逗遛敗績者聽臣區處則臣謹奉命不然元帥都巡問使位在臣上豈畏臣就死地乎將帥族黨忌之白禑止之倭寇江陵交州道以浚爲都檢察使賜宣威佐命功臣號 司僕掌乘輿之馬政周之伯冏之任也親近左右其選最重近代別立內乘內竪之徒專擅其職日者縱暴尤甚其收芻槀也劫奪萬端輸轉入城也農牛瘡什殘破畿縣毒流諸郡一州之內穀草之價布幾至九百匹州郡皆是而又驅其貢戶名爲驅史至千百人不付公籍私置農莊而役使之若奴隷然害民病國甚可哀痛願自今以尙乘屬之司僕寺不許內竪除授謹擇廉幹者任之更日入直凡其芻豆身親量給畿內芻槀計馬定數分月而供且使糾正監檢每一番置獸醫五人驅史三十人餘皆罷之屬之府兵凡都監有事則置無事則罷例也造成都監初因宮闕之作而置後以繕工之職歸之使管一國材鐵之用遣官吏而煩驛騎竭民財而盡其力 且使糾正監檢以壺串宮闕之材瓦被罪籍沒之居室兩江之材諸窯之瓦供諸營造凡斫木陶瓦之役且停三年以休民力都城根本之地風化之所先其民衛王室而已近來敎養無法奸詐相習力役煩重日就凋弊願罷都摠都監將五部屬之開城府每一里擇耆老有學者爲社長依黨序之法敎養子弟其賤人及工商子弟各事所業毋使羣聚街巷以長浮薄之風違者罪社長及父兄其都官宮司倉庫奴婢及近日訴流人祖業新得奴婢令辨正都監皆計口成籍毋使遺漏每有土木營繕之役賓客佛神之供皆以役之其於坊里雜役一皆除去以安其生以衛王室 · 全羅慶尙楊廣三道貢賦之所出國家之腹心也今倭奴橫行陷我州郡蹂踐我禾稼殺戮我老弱奴婢我丁壯而擁旌節者嬰城竄伏莫有鬪志賊勢日熾願令大擧及時掃淸 顯官任職者託以覲親上冢冒干口傳使歸鄕曲庵延歲月曠官廢職非事君致身之義願自今父母奔喪外不許出關外其事有不獲已者必辭職然後乃行違者痛理州縣之吏在京都典掌其鄕之事曰其人法久弊生隷各處役之如奴隷不堪其苦至有逋亡者主司督京邸主人日徵贖布人一匹稱貸於人而不能償之直趨州縣倍數督徵縱暴侵掠州郡凋弊亦或由此 魯國大長公主玄陵之配也而以僞后韓氏爲配以忝宗廟宜亟撤之且韓氏之懿陵禑昌之胎藏亦宜掘破以雪神人之憤其勢是憑濫加官號若汚城黃驪固城禮安諸郡一皆降從本號其妃曰謹曰懿曰淑曰憲曰安曰寧曰靖曰賢曰善諸妃及諸翁主無論貴賤以一時之寵愛皆封爵賜印內帑珍寶錫與無算願令攸司收印章徵其珍寶以還內府其有係公私之賤者各還本役 吾東方家廟之法久而廢弛今也國都至于郡縣凡有家者必立神祠謂之衛護是家廟之遺法也 京畿八縣徭役甚煩然非正官之所統觀察之所理又無守令之宣化故科斂不均賦役無藝民不聊生無所控告願自今依各道例縣置五六品官使開城府考績以明黜陟 竊聞楊廣道已置常平倉宜令諸道依此施行守令有不如法者罰之 州郡因朔膳使客供支等事雖當盛農驅集農民

馳騁荊棘旬月弋獵農失其時民不足食職此之由若夫鷄豚之畜則取之牢中不擾於民願自今京畿築鷄豚場二所一令典廐署主之以奉宗廟祭祀之用一令司宰寺主之以供御庖賓客之須至於州郡各驛皆令畜之撙節愛養不害胎卵則不出數年而供上祭祀賓客之奉充吾民養生之用足而無弋獵廢農之患矣司饔每歲遣人於諸道監造內用甕器一年爲次憑公營私侵漁萬端而一道馱載至八九十牛所過騷然及至京都進獻者皆百分之一餘皆私之弊莫甚焉 ‥願自今諸道將帥破賊者獻馘而已軍民所得倭物勿使推鞫箸爲令典則人樂其利而勇於戰矣犯者內而憲司外而觀察使以不廉論‥ 凡京外大小官吏除目旣下累日不卽上官赴任以致公務稽遲其文書錢穀皆爲奸吏所容匿此則弊之大者而又非臣予誠心事君之道也願自今除臺省政曹官外其京官大小員吏自下批之後京官限三日外官限十日進闕謝恩卽行上官赴任稱權知行事新舊相對將文書錢穀明立契券手相交付以憑考課謝後卽眞有不如法者京中憲司外方觀察使痛繩以法 …爲金震陽所劾繫水原獄召還復爲贊成事尋判三司事

●신우가 조준을 불러서 "양광도·경상도에서 왜적의 기세가 대단히 치열하고 있는데 원수와 도순문사가 연약하고 겁이 많아서 싸우지 않으니 그대가 가서 군사상 기밀을 알아보라"고 말하자, 조준이 "저의 어머니가 나이 80이 넘었고 또 중병을 앓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파견하소서"라고 하였다 신우가 말하기를, "그대가 정직하고 사정이 없으며 또한 위신과 덕망에 있어서 그대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였다 이에 조준이 대답하기를, "만약 전하가 두 도의 통제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그 머뭇거리어 패전한 자들을 저의 처치에 맡긴다면 저는 삼가 명령을 받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나 도순문사들이 그 직위가 저의 위에 있으니 어찌 저를 무서워하여 죽을 결심을 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장수의 족당(族黨)들이 그를 꺼리어서 신우에게 말하여 그를 그만두게 하였다 왜적이 강릉 교주도를 침범하였을 때 조준을 도검찰사(都檢察使)로 임명하고 선위 좌명공신(宣威佐命功臣) 칭호를 주었다 · ·사복(司僕)은 왕의 수레에 쓰는 말들을 관리하는 자이니 주(周)나라에서 백경(伯冏)이 맡아 보던 직무입니다 왕의 측근에 있는 만큼 그 인선이 대단히 중요한데 근래에 와서는 별도로 내승(內乘)을 설치하여 내수(內竪)의 무리들이 이 직무를 독차지하고 일을 제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이들이 아주 횡포하여서 마초를 징수할 때면 온갖 약탈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성 안에 운반해 올 때는 농우(農牛)가 창(瘡)이 나서 쓰러집니다 그리하여 경기의 현들이 혹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그 해독이 여러 군에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주(州)에서는 곡초의 댓가가 거의 베 900필에 달하고 있습니다 각 주군이 모두 다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한데 또 주군의 공호(貢戶)를 구사(驅史)라는 이름으로 부려먹고 있는데, 그 인원수가 수천 수백에 달합니다 이들을 공적(公籍)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 농장에서 부려먹기

를 마치 노예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고 나라를 피폐하게 하니 참으로 비통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상승(尙乘)을 사복시(司僕寺)에 종속시켜서 내수들을 채용하지 말고 청렴하고 재간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이에 채용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하루 건너 당직을 시키며 모든 마초와 콩을 지급할 때에는 빠짐없이 자기가 직접 계산하여 주도록 할 것이며 서울 부근에서 징수하는 마초는 말의 수에 의하여 그 양을 결정하고 월별 지역당번(月別地域當番)이 날마다 공급하게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규정(糾正)을 시켜 이것을 감독 심사하게 할 것입니다 1회 당직번(當直番)마다 5명의 수의(獸醫)와 30명의 구사(驅史)를 두고 그 나머지는 파면하여 부병(府兵)에 예속시킬 것입니다 모든 도감(都監)은 일이 있으면 설치하고 일이 없으면 폐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조성도감(造成都監)은 당초에 궁궐을 짓느라고 두었고 후에 와서 영선사업(營繕事業)에 귀속시켜서 온 나라의 목재 및 철재의 수요를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이 도감은 관리를 파견하여 역졸을 괴롭히며 백성의 재산과 힘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糾正)을 시켜서 호곶(壺串) 궁궐의 재목과 기와, 형벌을 받고 몰수된 주택, 동서 양강의 목재, 여러 요업소(窯業所) 기와들의 여러 건설에 공급되는 상황을 감독 검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무를 채벌하여 기와를 구워내는 부역(賦役)을 우선 3년간 중지하여 백성의 힘을 휴식시키소서 서울은 왕업의 기초 지역이며 왕화(王化)가 먼저 시작되는 곳이요 그 주민들은 왕실을 보위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그들의 교양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간사한 풍습에 젖어들었으며 노역(勞役)이 번다하고 힘들어서 그 몰락과 영세가 날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도총도감(都摠都監)을 폐지하고 그 5부(部)를 개성부(開城府)에 소속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리마다 학문이 있고 점잖은 노인을 뽑아서 사장(社長)으로 삼고 500호를 1당(黨)으로 묶어서 거기에 한 서(序) 즉 학교를 세우는 방법에 의하여 자제를 교양하게 할 것입니다 또 천인과 상공업자의 자제들은 각각 자기 직업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무리를 지어 거리에서 놀아 경박한 습성이 자라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장과 그 부형들을 처벌할 것입니다 도관(都官)·궁사(宮司)·창고(倉庫)의 노비와 근일에 사형 또는 유형에 처한 자들의 재산 몰수에 의하여 새로 얻어진 노비들에 대하여서는 변정도감(辨正都監)으로 하여금 이들의 인구수를 계산하여 누락없이 등록하도록 할 것이며 토목공사나 영선(營繕) 공사가 있을 때와 빈객의 접대, 신불(神佛)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들을 불러쓰게 하고 그들에게서 방(坊)과 리(里)에서의 잡역을 완전히 면제하여 생활을 안정시키며 왕실을 보위하게 할 것입니다 전라·경상·양광 삼도는 세금과 노력이 나오는, 말하자면 나라의 흉복부(胸腹部)인데 지금 왜적이 횡행하면서 우리의 주·군들을 함락시키고 우

리의 곡식을 짓밟고 우리의 늙은이와 약한 자들을 살육하고 우리의 장정을 노비로 만들고 있으나 병권(兵權)을 위임받고 나가 있는 자들이 성문을 닫고 그 안에 엎드려서 투지가 없으며 적의 기세는 날로 더 성하여 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행동을 개시하여 제때에 소탕하여 버리소서 · … 높은 지위에서 복무하고 있는 자들이 근친 혹은 성묘간다는 구실로 구두로 전달을 청해 놓고는 자기 고향에 가서 오랜 세월을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결근하여 자기 직책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을 섬기면서 자기 일신을 바치는 도리와는 어긋납니다 앞으로는 부모가 죽어서 장사에 가는 이외에는 서울 밖에 나가는 것을 금할 것이며 사정이 부득이한 자는 반드시 사직한 후에 가게 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자는 엄격히 처분할 것입니다 주·현의 아전으로 서울에 와 있으면서 자기 지방의 일을 보는 사람을 기인(其人)이라고 하는데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는 것이어서 그들은 각처에 예속되어 노예처럼 부려져 그 고생에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는 자들까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관 기관에서는 경주인(京主人)을 독촉하여 하루에 1인부 속(贖)으로 베 1필씩 징수하니 남에게서 차용하고 갚지 못하면 주·현에 가서 몇 배로 징수하면서 폭행과 약탈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주군의 영락이 이에도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가 공민왕의 왕비인데도 불구하고 가짜 왕후인 한씨(韓氏)를 왕비로 인정하고 배향하여 종묘를 더럽혔습니다 한씨를 빨리 떼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씨의 의릉(懿陵)과 신우와 신창의 안태 묻은 곳도 역시 발굴하여 없애버림으로써 신명과 사람들의 분노를 풀어줄 것입니다 또 그 권세만 믿고 함부로 승격시킨 면성(冕城)·황려(黃驪)·고성(固城)·예안(禮安) 등 여러 군을 모두 다 낮추어 본래의 칭호를 쓰게 하며 그리고 근비(謹妃)·의비(懿妃)·숙비(淑妃)·헌비(憲妃)·안비(安妃)·영비(寧妃)·정비(靖妃)·현비(賢妃)·선비(善妃) 등 여러 비(妃)와 옹주(翁主)들은 그 귀천을 말할 것도 없이 모두 일시의 총애를 가지고 작위의 책봉을 받고 인(印)과 궁중의 재물 보화들을 수없이 받았던 것입니다 바라건대 담당 관리에게 명령하여 그 인장을 거두고 재물 보화를 회수하여 내부(內部)에 반환시키며 그 중에서 공노비 또는 사노비였던 자는 각기 그 본래의 천역으로 돌려 보낼 것입니다 …… 우리 나라에서 가묘법(家廟法)이 파괴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지금은 수도를 비롯하여 각 군현에 이르기까지 집이 있는 자들은 모두 다 반드시 사당(祠堂)을 세워놓고 이것을 위호(衛護)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묘법의 잔재입니다 ·· 경기 8현은 부역이 아주 번다합니다 그러나 책임 관리가 통제하는 것도 아니요, 관찰사가 관할하는 것도 아니며, 수령의 지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세의 부과가 고르지 못하고 부역에 기준이 없어서 백성들은 살아나갈 수 없으면서도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앞으로는 각도의 예에 따라서 현에

5, 6품의 관리를 두고 개성부로 하여금 그 성적을 고찰하게 하여 승진 또는 좌천을 공명정대하게 할 것입니다 제가 듣건대 양광도에서는 이미 상평창을 설치하였다 하니 마땅히 각도가 여기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할 것이며 수령 중에서 법령대로 시행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처벌할 것입니다 … 주·군에서는 삭선(朔饍)·사객(使客 외국으로 가는 사신)·접대 등의 일로 인하여 비록 농번기일지라도 농민들을 강제로 모아서 가서 덤불 속을 몰고 다니며 열흘이나 한 달을 사냥시키므로 그동안 농사철을 놓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백성의 먹을 것이 자라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만약 닭·돼지 등을 기르게 되면 우리에서 이것을 취할 수 있으니 백성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서울 부근에 2개소의 양계장과 양돈장을 설치하여 놓고 그 중의 하나는 전구서(典廐署)가 관리하여 종묘 제사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하나는 사재시(司宰寺)가 관리하여 궁중의 주방용 및 손님 접대용으로 쓰게 하소서 또 주군 및 각 역에서도 모두 다 사양하게 하되 잘 보호하고 특히 새끼와 알을 없애지 않으면 몇 해 안되어서 공상(供上)과 제사·빈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며 우리 백성의 보양 비용도 충족시키고 사냥으로 폐농하는 폐단도 없어질 것입니다 사옹(司饔)이 매년 사람들을 각도에 파견하여 그 감독하에 궁중에서 쓸 사기를 굽는데 이것이 일년에 한 번 있는 예사로 되고 있으며 공무를 빙자하고 사리를 추구하여 온갖 수탈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 도에서 80, 90마리에 달하는 소 등에 실어내고 있으며 연도가 떠들썩하나 일단 서울에 들어오면 궁중에 바치는 것은 그 100분의 1에 불과하고 모두 사사로 처분하여 버리니 그 폐단이 참으로 큽니다 … 앞으로는 각도의 장수들이 왜적을 격파하면 귀만 베서 바치게 하고 병사들과 주민이 얻은 물품은 추궁하지 말도록 하고 이것을 법률로 정해두면 사람들은 그 이득을 얻으려고 용감히 싸울 것입니다 그 위반자는 서울이면 헌사(憲司)가, 지방이면 관찰사가 탐오로 단죄하게 될 것입니다 … 서울과 지방의 대소 관리들이 임명장이 내려와도 오래동안 그 관직에 부임하지 않아서 공무의 지연을 초래하고 그 문서와 금전 및 양곡이 모두 다 간악한 아전들에 의하여 은닉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폐단인 동시에 신하로서 성심으로 임금을 섬기는 도리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대성(臺省)과 정조(政曹)의 관리 이외에는 대소 관원들이 비준이 내린 후 서울 관리이면 3일 내에, 지방 관리이면 10일 내에 대궐에 들어가서 사은(謝恩)하고 곧 그 관직에 부임하여 권지행사(權知行事)라는 명목 하에 신관과 구관이 마주 앉아서 문서와 재산에 대하여 인계 인수 문건을 작성하여 수교(手交)함으로써 검토할 증빙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 인계가 끝난 후 권무(權務)에서 본관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서울에서는 헌사가,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법에 의하여 엄중

히 처벌할 것입니다 ‥ 그는 김진양(金震陽)에게 규탄되어 수원(水原)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소환되어 다시 찬성사로 임명되었으며 얼마 후에 판삼사사(判三司事)로 되었다

[고려사 권121, 열전34 효우 최루백] 〈수원 최루백의 효행〉

○崔婁伯水原吏尙翥之子尙翥獵爲虎所害婁伯時年十五欲捕虎母止之婁伯曰父讎可不報乎卽荷斧跡虎虎旣食飽臥婁伯直前叱曰伱食吾父吾當食汝虎乃掉尾俛伏遽斫而剖其腹盛虎肉於瓮埋川中取父骸肉安於器遂葬弘法山西

●최루백은 수원(水原) 아전 상저(尙翥)의 아들이다 상저가 사냥갔다가 범한테 물려 죽었다 그때 최루백의 나이는 15세였는데도 그 범을 잡으려 하였다 그 모친이 못가게 하자 최루백은 말하기를, "아버지의 원수를 어찌 갚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고 도끼를 메고 범의 발자국을 밟아가니 범은 벌써 배불리 먹고 누워 있었다 최루백이 바로 앞으로 나서서 "네가 내 아버지를 먹었으니 나도 마땅히 너를 잡아먹을 터이다"라고 꾸짖으니 범은 꼬리를 치며 넙죽 업드렸다 갑자기 도끼로 내려치고 그 배를 갈라서 범의 고기는 항아리에 담아서 개울 바닥에 묻고 그 부친의 뼈와 고기점을 골라 모아서 그릇에 넣어 홍법산(弘法山) 서쪽에 매장하였다

[고려사 권124, 열전37 폐행2 노영서] 〈조연을 수원부사로 임명하다〉

○忠穆初豐儲倉副使李仁壽丞李汝就竊倉貨監察司囚鞫之仁壽英瑞姻婭也以王命沮之尋以仁壽爲軍簿正郎謫執義趙淵爲水原府使

●충목왕 초엽에 풍저창부사(豐儲倉副使) 이인수(李仁壽)와 승(丞) 이여취(李汝就)가 창고 재산을 훔쳐 먹었으므로 감찰사가 가두고 문초하였는데, 이인수는 노영서와 사돈 관계가 있었으므로 왕의 명령으로 중지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수는 군부정랑(軍簿正郎)이 되고 집의(執義) 조연(趙淵)을 강직시켜 수원부사로 임명하였다

[고려사 권125, 열전38 간신1 이춘부] 〈 신돈이 수원으로 귀양가다〉

○李春富陽城縣人祖梃陽城君父那海僉議評理 … ·盹與其黨奇顯等謀逆事覺流于水原春富蘭洪永通金瑱詣宮門言臣等與盹同事久今盹流而臣等獨免如國論何王曰且歸視事

●이춘부는 양성현(陽城縣) 사람이며 그의 조부 이천(李梃)은 양성군(陽城君)이요 부친 이나해(李那海)는 첨의평리였다 신돈이 그의 도당 기현(奇顯) 등과 반역을 공모하다가 발각되어 수원(水原)으로 귀양갔는데 이때 이춘부·김란·홍영통·김진 등이 궁문에 가서 말하기를, "우리들도 오랫동안 신돈과 함께 일했는데 이제 신돈을

귀양보내고 신하들만 홀로 면죄된다면 나라의 공론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왕이 말하기를, "아직은 돌아가서 일이나 보라" 하였다

[고려사 권126, 열전39 간신2 왕안덕] 〈수원부사 박승직이 왜적에게 패하다〉

○出爲楊廣道都元帥倭寇餘美縣安德擊之賊登山趣沔州安德追擊斬一級賊入加耶寺禍遣體覆使崔仁哲責安德不能捕倭倭自江華攻陷楊廣嶺海州郡初賊船僅二十二艘奪我戰艦多至五十艘見者誤以爲我軍不避被殺傷者不可勝計賊又寇慶陽遂入安城郡安德望見賊勢怯懦不進乃召副元帥印海陽川元帥洪仁桂退次加川驛欲邀擊歸路賊知之由他路引去安德率銳卒擊之不克身被創銳卒死者四人安德號天慟哭擒賊諜訊之諜曰吾等議若侵楊廣諸州崔瑩必帥師而下於是乘虛直擣京城可圖也初賊入安城伏兵麻田使被虜三四人田于隴上若農夫然以給之水原府使朴承直聞三元帥至亦率兵來問田者曰賊退否三元帥何在對曰賊既退三元帥追之矣承直信之直趨官廨賊伏發圍之承直單騎突圍脫走士卒多被殺虜自水原至陽城安城蕭然無復人烟　　拜贊成事倭賊屯古庇仁境安德與廣州節制使崔雲海楊廣道都節制使李承源追至九十里與戰于都屯串大敗安德墜馬僅免士卒死者四十餘人‥ 臺諫交章復論安烈之黨流安德于豐州洪壽于仁州元庠于光州又流李乙珍李庚道于遠地踰月召還

●왕안덕이 외직으로 나가서 양광도도원수로 되었을 때 왜적이 여미현(餘美縣)에 침입했으므로 왕안덕이 출격하니 적이 산을 타고 면주(沔州)로 달아났다 계속 추격하여 적 한 명을 목 베었는데 적이 가야사(加耶寺)로 침입했으므로 신우가 체복사 최인철(崔仁哲)을 파견하여 왕안덕이 왜적을 잡지 못하였음을 책망하였다 왜적이 강화로부터 양광도 해변 주군(州郡)을 침공하여 함락시켰는데 처음에는 적선이 겨우 22척이었으나 우리 나라 병선을 탈취해서 50척에 달하였는데 이것을 아군으로 오인하고 피하지 않았다가 살상당한 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왜적이 또 경양(慶陽)을 침략하고 드디어 안성군(安城郡)으로 침입하였을 때 왕안덕은 적세를 바라보고 겁이 나서 진공하지 않고 부원수(副元帥) 인해(印海)와 양천원수(陽川元帥) 홍인계(洪仁桂)를 불러서 가천역(加川驛)까지 후퇴하여 있다가 적이 돌아가는 길목에서 맞받아 싸우려고 하였다 적이 이것을 알고 다른 길로 퇴군하여 갔다 왕안덕이 정예 군사를 인솔하고 적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제 몸에도 창상을 입었고 정예 병사도 4명이나 전사하였으므로 왕안덕은 하늘을 향해 통곡했다 적의 첩자를 잡아서 심문하니 그 첩자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만약에 양광도 각 고을에 침입하면 최영이 반드시 군사를 거느리고 내려올 것이니 그때에 빈 틈을 타서 서울을 곧바로 공격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의논했소"라고 하였다 처음 적이 안성에 들어갔을 때 삼밭에 복병한 후 포로 3, 4명을 시켜 밭언덕에서 들일을 하게 하여 마치 농부처럼 가장하게 하는 속임수를

썼다 그런데 수원부사(水原府使) 박승직(朴承直)이 세 원수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군사를 거느리고 왔는데 그 들일하는 자에게 묻기를, "왜적이 물러 갔는가 세 원수는 어디 있는가" 하니 그자가 대답하기를, "적은 이미 물리쳤으며 세 원수는 추격 중입니다" 하였으므로 박승직이 이것을 곧이 듣고 바로 관아로 들어가니 적의 복병이 나타나서 그를 포위했다 그래서 박승직은 단신으로 포위를 돌파하고 탈주하였으나 다수의 사졸들이 죽거나 다치고 적에게 잡혔다 사태가 이렇게 되어 수원으로부터 양성(陽城)·안성에 이르는 사이는 인적을 볼 수 없는 쓸쓸한 곳이 되었다 ·· 찬성사(贊成事)가 되었을 때에 왜적이 또 고비인(古庇仁) 지경에 주둔하였으므로 왕안덕은 광주절제사(廣州節制使) 최운해(崔雲海), 양광도도절제사 이승원(李承源)과 함께 적을 90리를 추격하여 도둔곶(都屯串)에서 교전하였으나 대패하였다 이때 왕안덕은 말에서 떨어지고 겨우 죽음을 면했으나 사졸(士卒)은 죽은 자가 40여 명에 달했다 ·.. 후에 대간이 자주 상소하여 다시 변안렬 일당을 논죄하였으므로 왕안덕을 풍주(豐州)로, 홍우수를 인주(仁州)로, 원상을 광주(光州)로 각각 귀양보내고 또 이을진과 이경도를 먼 지방으로 귀양보냈으나 그 다음달에 그들을 소환하였다

[고려사 권130, 열전43 반역4 한순] 〈진위현 사람 이장대가 반역을 모의하다〉

○又有振威縣人令同正李將大直長同正李唐必者乘契丹之亂與同縣人別將同正金禮謀不軌嘯聚徒衆劫奪縣令符印發倉賑貸村落飢民多附之移牒旁郡自稱靖國兵馬使號義兵至宗德河陽二倉發粟恣人所取將寇廣州王遣郎將權得才散員金光啓等與按察使崔博發廣水二州兵討之不克更徵忠淸楊州道兵攻之獲唐必禮賊徒潰散將大奔尙州被擒按察使械送于京皆伏誅

●진위현(振威縣) 사람 영동정(令同正) 이장대(李將大)와 직장동정(直長同正) 이당필(李唐必)이 거란(契丹)의 난리 틈을 타서 동향 사람인 별장동정(別將同正) 김례(金禮)와 함께 반역을 모의하고 동류를 모집해 데리고 현령(縣令)의 병부(兵符)와 관인(管印)을 빼앗아 국가 창고를 열고 미곡을 풀어서 백성을 구제했으므로 농촌의 굶주리던 농민들이 다수 모여 와서 가담했다 이웃 고을들에 글을 써서 돌렸는데 자칭 정국병마사(靖國兵馬使)라고 하고 의병(義兵)이라 하였다 종덕(宗德)·하양(河陽)의 두 창고를 열어 놓고 그 양곡을 누구든지 마음대로 가져가게 했다 그리고 장차 광주(廣州)로 쳐들어 가려 하였다 이에 왕은 낭장 권득재(權得才)·산원 김광계(金光啓) 등을 파견해서 안찰사 최박(崔博)과 함께 광주(廣州)·수주(水州) 두 주의 군사를 동원해서 토벌하게 했으나 승리하지 못하고 충청도와 양주도의 군사를 더 징발해서 공격하여 이당필과 김례를 생포하고 적의 무리를 파멸시켰다 이장대는 패전하고 상주(尙

州)로 쫓겨 갔다가 붙잡혔다 안찰사가 목에다 질곡(桎梏)을 가하여 서울로 압송하여 모두 다 사형에 처했다

[고려사 권130, 열전43 반역4 김준] 〈수주 광인원에서 행인에게 주식을 베풀다〉

○一日往水州廣因院施酒食於行路從者如雲皆著戎服 ‥舊制八關閱樂日堂後門下二人盛設宴近因兵荒廢之已久俊以閱樂不可無宴乃置廣庭宴禮都監移牒州郡備供具民甚苦之後遂寢· 初俊子承宣嗌家奴與龍山別監李碩有憾聞碩載內膳二艘泊于江訴碩於嗌嗌以告俊遣夜別抄奪之入其家分與夜別抄未幾俊見王王以碩所上膳狀示俊俊變色退還收以獻王却之曰旣奪而復獻於義可乎是皆寡人祭醮之須碩久稽不進見奪於俊是碩罪也流于島遂以內侍權仁紀代之尋召碩還由是王益惡俊

●김준이 하루는 수주(水州) 광인원(廣因院)으로 가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베풀어 주었는데 수행하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많았으며 모두 군복을 입었다 구제(舊制)에 팔관회(八關會)를 구경하는 날에는 당후(堂後) 문하(門下) 두 사람이 성대하게 연회를 차리는 관습이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병란으로 인하여 이미 오랫동안 폐지되었다 그런데 김준은 팔관회가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광정연례도감(廣庭宴禮都監)을 두고 각 주군에 공문을 보내 연회에 필요한 물자를 바치게 하였던 바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했으므로 그후에는 중지했다 당초에 김준의 아들 승선 김애(金嗌)의 종은 용산별감(龍山別監) 이석(李碩)과 악감을 가진 사이였는데 이석이 궁중에서 쓸 음식을 배 2척에 싣고 강(江)에 정박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김애에게 이석을 고자질했더니 김애는 김준에게 고하였다 김준은 야별초를 파견하여 그것을 빼앗아 자기 집으로 가져 오게 한 후 야별초에게 나누어 주었다 다음날 김준이 왕에게 갔더니 왕은 이석이 제출한 선장(膳狀)을 보았으므로 김준은 얼굴빛을 변하고 집에 돌아와서 회수하여 바쳤으나 왕은 그것을 돌려 보내면서 말하기를, "한 번 빼앗은 것을 다시 바친다 해서 이것이 될 일인가 이것은 모두가 나의 제사용품인데 이석이 오래 두고 진상하지 않아서 김준에게 빼앗겼으니 이것은 이석의 죄이다"라고 말하고 이석을 섬으로 귀양보내고 내시 권인기(權仁紀)로 후임을 삼았는데 미구에 이석은 소환되어 돌아왔다 이로부터 왕은 더욱 김준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고려사 권131, 열전44 반역5 김용] 〈김용이 수원을 다시 부로 승격시키다〉

○金鏞安城人性陰譎有機檻多詐忌克 初紅賊招降楊廣諸州水原府先降降爲郡削其四部曲隸安城至是鏞納水原人賂復陞爲府還其部曲

●김용(金鏞)은 안성(安城) 사람인데 성질이 음흉하고 능청스러웠으며 기만과 가식

이 많을 뿐 아니라 남을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버릇이 있었다 ·…… 그전에 홍건적이 양광도(楊廣道) 각 고을에다가 투항할 것을 권유했을 때 수원부가 먼저 투항했으므로 군으로 강등시키고 또 4개의 부곡(部曲)을 떼어서 안성에 소속시켰던 바 이때에 와서 김용이 수원 사람들의 뇌물을 받아 먹고 수원을 다시 부(府)로 승격시켜 주었고 4개 부곡도 돌려 주었다

[고려사 권132, 열전45 반역6 신돈] 〈신돈을 수원으로 귀양보내다〉

○十八年以公主忌晨設會于演福寺僧尼數千施布八百匹時水原道饑流民聞會坌集旽以餘布分與流民以干譽旽欲自爲五道都事審官令三司上書請復之王曰我皇考忠肅王値旱灾焚香告天罷此官天乃兩寡人可忘先王之意乎焚其書後旽齎諸道州縣事審奏目詣王王戲曰五道都事審僉議可自爲之又曰大盜莫若諸州事審事遂寢旽密令春富請移都忠州王怒旽托言松京濱海海寇可畏以解之王乃下令將巡駐三蘇發民除道又於平壤忠州皆作離宮及公主魂殿峙供頓民甚苦之然畏旽無敢言者判司天監陳永緖等上書以爲近者太白晝見又年饑靜吉動凶王曰何晩奏耶明日謂左右曰國事大臣不可不與聞與旽議罷之… ··王謁憲景二陵旽分遣其黨設伏道傍約行大事及王還宮旽謂其黨曰何不如約其黨曰見上儀衛甚盛不忍犯也旽怒且罵曰爾輩誠怯懦無用者也自是日夜聚謀更刻日擧事……翼日旽以小兒生辰飯僧廣明寺王命承宣權仲和降香賜蟒龍衣旽遂謁正陵王命仁任與邦及頭裏速古赤從之後二日流旽于水原命李成林王安德押行理部憲司請族顯等王曰門下重房何無狀疏都評議司奏曰旽本庸僧過蒙恩幸乃詭謀竊權陰結黨與圖爲不軌幸賴天佑剪除其黨旽以逆首只窟于外尙保首領宜置極刑幷誅遺孽同産及其黨顯思遠等子餘黨亦悉窮治門下省奏曰大逆天下萬世之所不容辛旽本一微僧濫遇上知位極人臣進退百官頤指氣使廣植兇徒覬覦非分幸賴祖宗之靈殿下先見之明兇謀發覺乃用寬典止於流放三韓缺望且旽之黨與不但顯思遠等七人而已伏望斷以大義置旽極刑籍沒家産幷夷其黨以快衆心憲府又請誅旽流其親黨籍産磔宅王曰法者天下萬世之公予不得私撓宜如所奏遣察訪使林樸体覆使金斗于水原誅旽卽召還旽所逐千興瑩希泌承順等初王與旽春富等同盟至是授樸盟書使示旽數罪曰爾嘗謂近婦女所以導引養氣非敢私之今聞至生兒息是在盟書者歟城中造甲第至七是在盟書者歟如是者數事數罪訖可焚此書樸至水原使人詐報宣召旽喜曰今日召還盖爲阿只思我也阿只方言小兒之稱旽婢妾般若生牟尼奴王以爲己子是爲禑阿只指牟尼奴也水原府使朴東生泣旽前陳其情款成林叱退之旽當刑束手乞哀於樸曰願公見阿只活我乃斬之支解徇諸道梟首京城東門

● 18년, 공주의 기일날 새벽에 연복사에서 불공을 드렸다 남녀 중[僧]이 수천 명이였는데 포목 800필을 주었다 그때 수원(水原) 지방에 기근이 들어서 유랑하는 난민들이 불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여 들었으므로 신돈이 나머지 베를 유랑민에게

나누어 주어서 자기의 명예욕을 만족시켰던 것이다 신돈은 자기가 오도도사심관(五道都事審官)이 되고 싶어서 삼사(三司)를 시켜 그 관제의 회복을 주청하게 하니 왕이 말하기를, "나의 선친 충숙왕이 심한 한재를 당했을 때 향불을 피우고 하늘에 고한 다음 각도 도사심관을 혁파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한다 내가 어찌 선왕(先王)의 뜻을 망각하겠는가"라고 하고 그 상소문을 불에 태웠다 그후에도 신돈은 각도·주·현 사심관을 설치하는 데 대한 청원 목록을 가지고 왕에게 진언(進言)한즉 왕이 말하기를, "5도 도사심관인 첨의가 스스로 할 일이지"라고 농담을 하고 계속해서 "무슨 도적이니 해도 제일 큰 도적이 각 고을의 사심관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이 문제는 드디어 중지되었다 신돈이 비밀히 이춘부를 시켜 충주로 국도를 옮길 것을 청했더니 왕이 대노하였다 이때에 신돈은 핑계하기를 송도의 위치가 바다 가까이 있으므로 바다로 침입하는 적을 염려한 까닭이라고 하였으므로 왕의 노염도 풀어졌다 이것을 계기로 왕이 앞으로 삼소(三蘇 평양·송도·한양을 말함)를 순회하고 체류하겠으니 주민을 동원하여 도로를 닦아 놓고 또 평양과 충주에 모두 이궁(離宮)과 공주의 혼전(魂殿)을 신축하라는 영(令)을 내렸는데 공급할 물자를 준비하느라고 백성이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신돈이 두려워서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판사천감(判司天監) 진영서(陳永緖) 등이 상서하여 근자에 태백성(太白星)이 낮에 보이고 또 금년 농사가 흉작이니 정(靜)이 길하고 동(動)이 흉하다는 의견을 말했다 왕은, "어째서 이제야 말하는가"라고 하고는 그 이튿날 왕은 좌우 시종들에게 말하기를, "국사는 대신이 몰라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면서 신돈과 의논한 후에 그 여행을 중지하였다
왕이 헌릉(憲陵)과 경릉(景陵)에 배알했을 때 신돈은 그 도당을 나누어 파견하여 길가에 매복시키고 왕을 살해하라고 엄명하였는데 왕이 무사히 환궁하니 신돈은 그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어째서 약속대로 아니되었는가"라고 하니 그 무리들이 말하기를, "상감의 의위(儀衛)가 너무나 엄해서 범접할 생각도 못했다"라고 하였으므로 신돈이 노하여 욕하기를, "너희 같은 겁쟁이들은 무용지물이다"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밤낮으로 모여서 밀모하고 다시 기일을 정하여 거사하기로 하였다 이튿날 신돈은 소아의 생신이어서 광명사(廣明寺)에서 중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는데 왕은 승선 권중화(權仲和)를 시켜서 향(香)을 피워 주고 망룡의(蟒龍衣)를 주었으며 신돈이 정릉(正陵)에 배알하려 가니 왕은 이인임·경흥방 및 두리속고적(頭裏速古赤)에게 신돈을 따라 가라고 명령하였다 이틀 후에 신돈을 수원(水原)으로 귀양보내니 이성림(李成林)·왕안덕(王安德)을 시켜 압송하게 하였다 이부(理部) 헌사(憲司)가 기현 등의 삼족(三族)을 면할 것을 건의하니 왕이 말하기를, "문하성이나 중방(重房)에서는 어찌하여 아무런 의견이 없느냐"라고 하였으므로 도평의사가 아뢰기를, "신돈은 근본이 용

렬한 중 놈인데 과도한 은총을 받으면서 권모술수로 국권을 농락하고 은밀히 편당을 만들어 함께 반역을 음모했으나 다행히도 하늘의 도움을 받아 그 일당을 숙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돈은 역적의 괴수로 서울 밖으로 축출당하였을 뿐 아직까지 목숨을 보존하고 있으니 응당 극형에 처할 것이며 그의 남긴 자식과 이부 동북 동생들, 그리고 그 도당 기현, 최사원 등의 자식들도 죽여야 하며 그 잔당들도 역시 모조리 추궁해서 치죄하소서"라고 했다 문하성에서는, "대역(大逆)의 죄는 천하 만세에서 용납치 못할 죄인데 신돈은 본래 일개 한미한 중으로 외람히 상감의 지우(知遇)를 받아 직위가 신하로서는 최고에 이르렀고 백관의 임면을 마음대로 하고 재상들도 종같이 부렸으며 흉도를 규합하여 분에 없는 자리를 엿보다가 다행히 조종의 영림과 전하의 선견지명(先見之明)으로 흉모가 발각되었는데 관대한 은전으로 유방(流放)하는 처벌에 그치니 모든 백성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또 신돈의 도당은 기현, 최사원 등 7명 뿐이 아니니 삼가 바라건대 대의에 입각하여 신돈을 극형에 처하여 가산을 몰수하고 그 일당도 모두 죽여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상소했고 헌부(憲府)에서도 역시 신돈은 극형에 처하고 그의 친당(親黨)들을 귀양보내고 가산 몰수 및 저택(邸宅 집을 헐어 버리고 못을 만드는 것)형을 적용할 것을 청했다 그래서 왕이 말하기를, "법은 천하 만민의 공법(公法)이므로 내가 어찌 사사로운 정으로 공법을 꺾겠느냐 마땅히 상주(上奏)한 바에 의하여 처단하라"라고 하고 찰방사 임박(林樸)과 체복사 김규를 수원으로 파견해서 신돈을 사형에 처하고 곧 신돈이 쫓아 낸 경천흥·최영·이희필·윤승순 등을 소환했다 당초에 왕이 신돈·이춘부 등과 함께 맹세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임박에게 그 맹서문을 주어 그것을 신돈에게 보이고 다음과 같이 치죄하라고 하였다 "네가 일찍이 '부녀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들을 매개(媒介)로 하여 양기(養氣)하는 것이지 감히 사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더니 이제 듣건대 자식까지 두었다니 이런 일이 맹서문에 있느냐 성중에 훌륭한 집을 일곱 채나 지었다니 이것도 맹서문에 있느냐 이런 일이 한두 가지만이 아니다 수죄한 후에 이 글을 불에 태워 버리라"라고 하였다 임박이 수원으로 가서 사람을 시켜 소환하러 온다고 속였더니 신돈이 기뻐서 말하기를, "오늘 나를 소환하는 것은 아마 아기[阿只]가 나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기란 속말에 어린 아이를 말한다 신돈의 비첩(婢妾)인 반야(般若)의 소생 모니노(牟尼奴)를 왕이 자기 아들로 삼아서 이것이 후에 신우로 되었는데 아기란 바로 모니노를 가리킨 것이다 수원부사 박동생(朴東生)이 신돈 앞에서 울며 그들 사이의 정의를 늘어 놓으니 이성림이 꾸짖어 내보냈다 신돈이 사형을 당할 때 두 손을 마주 잡고 임박에게 애걸하기를, "원컨대 당신은 아기를 보시고 나를 살려 주시오"라고 하였다 이어 목을 베어 죽이고 사

지를 포를 떠 각도로 조리돌림을 하였으며, 서울 동문에 효수했다

[고려사 권133, 열전46 신우 즉위년] 〈공민왕이 신돈을 수원으로 귀양보내다〉

○恭愍王常憂無嗣一日微行至旽家旽指其兒曰願殿下爲養子以立後王睨而笑不答然心許之旽密令其黨吳一鶚爲書祈佛山觀音云願令弟子分身牟尼奴福壽住國及旽流水原王語近臣曰予嘗至旽家幸其婢生子毋令驚動善保護之旽旣誅王召牟尼奴納明德太后殿謂守侍中李仁任曰元子在吾無憂矣因言有美婦在旽家聞其宜子遂幸之乃有此兒

●공민왕이 항상 아들 없음을 근심하던 차에 하루는 미행으로 신돈의 집에 가니 신돈이 그 아이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원컨대 전하께서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뒤를 이으소서"라고 하였다 이때 왕이 아이를 곁눈으로 보고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 속으로는 이에 동의하였던 것이다 신돈은 그의 도당인 오일악을 은밀히 시켜 소원문을 써 가지고 낙산사(洛山寺) 관음보살 앞에 가서 기도하게 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원컨대 당신의 제자 신돈의 혈육인 모니노가 수명과 복록을 가지고 이 나라에 살게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후 신돈을 수원(水原)으로 귀양보내게 되었는데 왕이 근신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신돈의 집에 갔을 때에 그 집 여종과 내통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이를 경동시키지 말고 잘 보호하라"고 하였으며, 신돈을 죽인 후 왕은 모니노를 데려다가 명덕태후의 궁전에 두고 수시중인 이인임에게 이르기를, "맏아들이 있으니 나는 근심이 없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신돈의 집에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데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내가 가까이 하였더니 이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였다

[고려사 권133, 열전46 신우 4년 3월] 〈남양·수원부에 왜적이 침입하여 방화하다〉

○倭寇南陽遂焚掠水原府府使愼仁道僅以身免元帥王賓與戰敗績請齊師命密直副使朴修敬赴之

●왜적이 남양을 노략질하고 마침내 수원부에 침입하여 방화 약탈을 감행하자 부사 신인도는 겨우 몸만 피해 나왔으며, 원수 왕빈이 적과 싸우다가 패하여 구원병을 청하였으므로 밀직부사 박수경을 보내어 응원하게 하였다

[고려사 권133, 열전46 신우 4년 5월] 〈수원·용구 등에 왜적이 침공하다〉

○倭寇西州庇仁縣又寇水原龍駒等處戶長李富摘獲十餘人

●왜적이 서주 비인현을 침공하고 또 수원·용구 등을 침공하므로 호장 이부가 적 10여 명을 사로잡았다

[고려사 권134, 열전47 신우 7년 11월 병술] 〈수원·부평도병마사에 최현진을 임명함〉

○以前典工判書崔賢進爲水原富平道兵馬使

●전 전공판서 최현진을 수원·부평도병마사로 임명하였다

[고려사 권135, 열전48 신우 10년 11월 기묘] 〈수원 공이향에 왜적이 침입하다〉

○倭寇水原工二鄕府使許操擒賊諜三人

●왜적이 수원 공이향에 침입함에 부사 허조가 왜적의 첩자 3명을 생포하였다

제2장 문집(文集) 및 금석문(金石文)

1)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동국이상국전집 연보, 계묘년] 〈수주로 근친가다〉

○癸卯 〈大定二十三年〉 公年十六 春嚴君出守水州 公留赴司馬試不捷 秋之水州覲省

●계묘년<대정 23년(1183, 명종 13)> 공의 나이 16세 봄에 부친이 수주(水州)의 원으로 나갔는데 공은 경사(京師)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마시(司馬試)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고 가을에 수주로 가서 근친(覲親)하였다

[동국이상국전집 연보, 을사년] 〈사마시에 합격하지 못하고 수주로 가다〉

○乙巳 〈大定二十五年〉 公年十八 春自水州至 遂赴司馬試 不捷秋還

●을사년<대정 25년(1185, 명종 15)> 공의 나이 18세 봄에 수주에서 경사로 들어와 드디어 사마시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자 가을에 또 수주로 되돌아갔다

[동국이상국전집 연보, 병오년] 〈부친을 따라 수주에서 경사에 이르다〉

○丙午 〈大定二十六年〉 公年十九 春嚴君見代 隨至京師

●병오년<대정 26년(1186, 명종 16)> 공의 나이 19세 봄에 부친이 수주원에서 갈리게 되자 경사로 따라왔다

[동국이상국전집 권1, 강남에서 지난 일을 추억하다] 〈한남에서의 젊은 시절〉

○江南舊遊 結髮少年日 輕裝寄漢南 〈水州一名漢南〉 乘閑頻劇飮 遇勝輒窮探 水共魚相樂 花先蝶自貪 種荷看露覃 愛月訴雲含 柳翦陶潛五 杯傾太白三 仙姝爭自媚 笑臉最憐欿 纖玉哀彈妙 流波注視嫿 金釵嬌不整 羅袖弱難堪 縹帙披琴譜 紋楸鬪手談 鴈春詩思暢 雞曉醉眠酣 久住民風熟 佳遊客意甘 江山無盡藏 聲色幾年耽 往事渾成夢 何時更理驂 湖州去何晩 杜牧得無慙

●강남에서 지난 일을 추억하다. 옛날 결발하던 젊을 때에는 / 하찮은 살림살이 한남<수주를 한남이라고도 한다>에 두었지 / 한가로운 틈 타서 술도 자주 마셨고 / 좋은 경치 나면 한없이 놀기도 했다 / 강가에서 물고기와 함께 즐기고 / 꽃을 보면 나비보다 앞서 갔다네 / 연꽃 심어놓고 맺힌 이슬 보기도 하고 / 달빛 사랑하여 구름낀 밤 미워했지 / 도잠의 오류전 가끔 외고 / 이백의 독작시도 자주 읊었네 / 아양떠는

아가씨들 아름다움 다투는데 / 빙그레 웃는 뺨 제일 사랑스러웠지 / 절묘한 거문고 소리 옥 같은 손끝에서 울리니 / 모두들 눈길이 그리로 쏠렸네 / 금비녀 비스듬해도 보기가 좋고 / 연약한 몸은 비단옷도 못이기는 듯 / 서가에 꽂은 금보도 빼어 보고 / 바둑판 벌여놓고 승부도 겨루었지 / 꾀꼬리 우는 봄엔 시상이 번뜩이고 / 닭 우는 새벽까지 술에 취해 잠잤네 /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민풍에 익숙했고 / 좋은 놀이 자주 하여 나그네 회포도 잊었다 / 강산에 볼 만한 경치 너무도 많아 / 몇 해를 지나도록 풍월을 즐겼네 / 지나간 일 모두 다 꿈같으니 / 어느 때에 또다시 달려갈지 / 호주(湖州)로 가는 길 어찌 그리 늦은가 / 두목처럼 부끄러움 얻지 말아야지

[동국이상국전집 권28, 동진에 답하는 별지] 〈수주 속읍 처인부곡의 승전〉

○答東眞別紙 云云 夫所謂蒙古者 猜忍莫甚 雖和之不足以信之 則我朝之與好 非必出於本意 然如前書所通 越己卯歲於江東城 勢有不得已 因有和好之約 是以年前其軍馬之來也 彼雖背盟弃信 肆虐如此 我朝以爲寧使曲在彼耳 庶不欲効尤 故遂接遇如初 以禮遣之 今國朝雖遷徙都邑 當其軍馬之來 則猶待之彌篤 而彼尙略不顧此意 橫行遠近外境 殘暴寇掠 與昔尤甚 由是四方州郡 莫不嬰城堅守 或阻水自固 以觀其變 而彼益有呑啖之志 以圖攻取 則其在列郡 豈必拘國之指揮 與交包禍之人 自速養虎被噬之患耶 於是 非特入守而已 或往往有因民之不忍 出與之戰 殺獲官人及士卒 不爲不多矣 至今年十二月十六日 水州屬邑處仁部曲之小城 方與對戰 射中魁帥沙打里殺之 俘虜亦多 餘衆潰散 自是 褊氣 不得安止 似已廻軍前去 然不以一時鳩集而歸 或先行或落後 欲東欲北 故不可指定日期 又莫知向甚處去也 請貴國密令偵牒可也 云云

●동진에 답하는 별지 운운. 저 이른바 몽고(蒙古)란 시기하고 잔인함이 막심하여 비록 화친을 하더라도 믿지 못하니 우리나라가 그들과 좋게 지내는 것은 반드시 본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에 보낸 편지에 말한 바와 같이 지난 기묘년(1219, 고종 6) 강동성(江東城)에서 사세 부득이하여 화친을 약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연전에 그들의 군마(軍馬)가 왔을 때에, 그들은 비록 맹약(盟約)을 배반하고 신의(信義)를 저버려 그와 같이 포악을 부렸으나, 우리 조정에선 잘못이 저들에게 있을지언정 그 잘못을 본받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끝내 처음과 같이 예로 대접해 보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도읍을 옮겼으나 그들의 군마가 올 때는 대우하기를 더욱 두터이하였는데, 그들은 이 뜻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원근(遠近)의 외경(外境)을 횡행하여 포학하게 약탈하는 것이 전보다 더욱 심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방의 주군(州郡)이 성문을 닫고 굳게 지키지 않는 이가 없으며, 혹은 물을 막아서 스스

로 튼튼하게 하여 그의 변하는 것을 관망하고 있었으나, 그들은 더욱 병탄(倂呑)할 뜻을 가지고 공격하기를 도모하였으니, 우리 열군(列郡)에서는 어찌 나라의 지휘에만 구속되어 화심(禍心)을 품은 사람과 어울려 스스로 범을 길렀다가 잡아먹히는 화단을 부르겠습니까 그리하여 다만 들어가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혹은 때때로 백성들의 참지 못함을 인하여 나아가 그들과 싸워서, 관인(官人)·사졸(士卒)을 죽인 것도 많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 12월 16일에 이르러 수주(水州)의 속읍인 처인부곡(處仁部曲)의 작은 성(城)에서는 그들과 대전하여 괴수 사타리(沙打里)를 사살하고 사로잡은 것도 또한 많았으며, 남은 무리들은 산산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로부터 그들은 기세를 상실하여 안정하지 못하고 이미 회군하여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모아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먼저 가고 혹은 뒤에 가며, 혹은 동으로 혹은 북으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또한 어디로 향해서 갈 것인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귀국은 비밀리에 명령을 내려 정탐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가정집(稼亭集)』

[가정집 권4, 요양현군 조공 묘영기] 〈조공탁이 수원부 용성현에 거처하다〉

○大元贈奉訓大夫遼陽等處行中書省左右司郎中飛騎尉遼陽縣君趙公墓塋記 …郎中公諱公卓 高麗淳昌郡人 没從姻婭 移居水原府之龍城縣 年六十四 延祐己未 卒于家而因葬之

●대원 증 봉훈대부 요양등처 행중서성 좌우사랑 중비위 요양군 조공 묘영기

낭중공(郎中公)의 휘는 공탁(公卓)인데 고려 순창군 사람이다 뒤에 인아(姻婭) 관계를 따라 수원부 용성현(龍城縣)에 옮겨 살았다 나이 64세로 연우 기미년에 집에서 죽자 곧 장사하였다

3) 『목은집(牧隱集)』

[목은시고 권2, 수원부에서 유선생의 시에 차운하다] 〈수원부에서 보낸 시〉

○水原府次兪先生韻〈諱思廉字耻夫〉 先生官罷去神州 高嘯林泉又一秋 尙有風雲長入夢 肯敎霜雪便侵頭 偶乘白雨多遊寺 每愛靑山獨倚樓 逸態已敎流俗駭 詩篇應爲後人留

●수원부(水原府)에서 유선생(兪先生)의 시에 차운하다<이름은 사렴(思廉), 자는 치

부(耻夫)> 선생은 벼슬을 버리고 서울을 떠나 / 자연에서 고상하게 읊조리니 또한 가을 / 아직도 풍운의 꿈이 오래 남아 있건만 / 어찌해 세월은 온통 머리를 희게 하는가 / 우연히 맑은 비 맞으며 늘 절에서 노닐고 / 매양 푸른 산이 좋아 홀로 누각에 기대네 / 빼어난 모습이 이미 세속을 놀라게 하니 / 시 지어 응당 후인에게 남겨야 하리

[목은시고 권2, 여름 4월 수원에 이르러 시에 차운하다] 〈수원에 이르르다〉

○夏四月將抵京應擧行次水原奉次伯父贈行詩韻寄呈 客裏風吹滿袖塵 黃鸝聲遠故園春 從今漸近人間路 却恐靑山不我親

好夢先歸輦路塵 滿城桃李正誇春 懸知伯父詩多讖 趁取花時慶老親

●여름 4월 서울에 가서 과거에 응시하려고 수원에 이르렀을 때, 백부께서 길 떠나면서 주신 시에 차운하여 부쳐 드리다 나그네에게 바람이 불어 소매에 먼지 가득한데 / 꾀꼬리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니 고향은 봄이라 / 이제부터 점차 인간 세상의 길에 가까워져 / 문득 푸른 산이 나와 친하지 않을까 두렵네

좋은 꿈이 먼저 벼슬길로 나아가 먼지 일으키고 / 성에 가득한 복사꽃, 오얏꽃이 한창 봄을 뽐낸다 / 백부의 시는 효험이 많음을 분명히 알겠으니 / 꽃 피는 계절에 늙으신 부모님 기쁘게 하리라

[목은시고 권2, 수원 팔탐촌에서 잡흥 3수] 〈수원 팔탐촌에서 쓴 시〉

○在水原八呑村候東堂日期雜興三首 靑山淡無色 綠水冷無光 君子方有志 欲登天子堂 眼前事浩浩 頭上天蒼蒼 所以不敢必 一夕九回腸 勉哉自策礪 主司登畯良

鳥飛驚我目 鳥啼驚我魂 平生群魚鳥 寂然歸本元 奈何守不定 忽此迷存存 明知利欲動 拔本將塞源 未能免夫俗 浩歌對山樽

山深松浮煙 海近魚滿盤 村犢隴頭臥 野人頂無冠 小婢新汲水 漉酒勸加飡 加飡豈不好 我心方未寬 明當自求售 鄙哉於妝安

●수원(水原) 팔탐촌(八呑村)에서 동당(東堂)의 과거 날을 기다리다 잡흥(雜興) 3수 푸른 산은 색깔 없이 담박하고 / 파란 물은 빛깔 없이 냉랭하네 / 군자가 바야흐로 뜻을 두어 / 천자의 궁궐에 오르려 하네 / 눈앞의 일들은 넓고도 넓건만 / 머리 위의 하늘은 푸르고 푸르다 / 감히 반드시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 하루 저녁에도 창자가 아홉 번 뒤틀리네 / 힘써라!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연마하여 / 일을 맡아 좋은 권농관(勸農官)에 오르리

새가 날아 나의 눈을 놀라게 하고 / 새가 울어 나의 혼을 놀라게 하네 / 평생 물고기·새와 함께 하면서 / 조용히 본원(本原)에 돌아가리 / 어찌 지키는 것이 안정되지 못해 / 홀연히 존재의 의미를 어지럽히리 / 이욕(利欲)의 움직임을 분명히 알아 / 근본을 뽑고 근원을 막아야 하네 / 아직 세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 높이 읊조리며 산

과 마주해 술잔 기울이네

산이 깊어 소나무가 이내에 떠다니고 / 바다가 가까우니 물고기 소반에 가득해 / 송아지는 밭 두렁에 누워 있고 / 농부들은 머리에 갓 쓰지 않았네 / 작은 여자 종은 새로 물 길러오고 / 술을 거르며 밥 더 먹으라고 권하네 / 밥 더 먹는 것 어찌 좋지 않으리 / 내 마음 어쩐지 편치 않네 / 분명히 스스로 팔리기를 구하나니 / 비루하구나 너의 편안함이여 !

[목은시고 권10, 정사현이 귀향을 알리다] 〈수원〉

○門生鄭士賢告歸 家在水原東 親居草溪畔 榮名下大夫 歸興南飛雁 翠栢倚雲崗 寒梅拆江岸 生涯自有涯 且須忘早晩

●문생 정사현(鄭士賢)이 귀향을 알리다 집은 수원(水原) 동쪽에 있고 / 어버이 초계(草溪) 가에 사시네 / 영화롭게도 하대부(下大夫)에 올랐건만 / 돌아가는 흥은 남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로다 / 푸른 잣나무는 구름 낀 산에 기대 있고 / 겨울 매화는 강 언덕에서 꽃망울을 터뜨리네 / 생애에는 저절로 끝이 있나니 / 장차 이르고 늦은 것을 잊어야지

[목은시고 권24, 이진사를 전송하다] 〈수원〉

○送李進士歸覲水原 李生慈侍下 讀序可知詳 扇枕孝思動 拂衣歸意忙 江山秋退暑 燈火夜生凉 異日收功處 榮親爛有光

●이진사(李進士)가 수원으로 근친가는 것을 전송하다 이생(李生)은 인자한 편모의 슬하에 자라 / 글방에서 독서를 상세히 한 것 알고 있네 / 부채와 베개[58]가 효성스런 생각에서 움직이고 / 옷을 떨침은 돌아갈 생각이 바쁘기 때문이라 / 강산에는 가을이 여름을 물리치니 / 등불은 밤이라 서늘한 기운이 인다 / 다음날 공부한 공을 이루면 / 어버이의 영화는 매우 빛나리

[목은시고 권27, 임동년이 와서 상주로 간다고 말하다] 〈수원〉

○任同年來言踏驗田畝水原府 因歸尙州 欲向水原去 因從沙伐騰 髯氷風兩袖 腸鐵夜孤燈 代食謀非拙 公田命自疑 他年游洛上 相對酒如澠

●임동년(任同年)이 와서 말하기를 '수원부(水原府)에서 전답을 살피고 상주(尙州)로 돌아간다'고 하다 수원(水原)을 향해 가려고 하다가 / 그로 인해 사벌(沙伐)로 올라갔네 / 두 소매에 바람일어 구레나룻 얼고 / 외로운 등불 켠 밤에 무쇠 같은 마음

58) 선침온피(扇枕溫被)의 준말 지극한 효심을 이르는 말 곧 베개를 시원하게 하고, 이불로 따뜻하게 한다는 뜻으로, 진(晉)나라 왕연(王延)이 여름에는 부모의 베개를 부채질하여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이불을 덮어 따뜻하게 해 드렸다는 고사(故事)에서 나온 말이다

/ 녹봉을 먹는 생각 졸렬하지 않고 / 공전(公田)의 명령 절로 의심스럽네 / 다음에 서울에 와서 노닐게 되면 / 서로 마주하고 술 흠뻑 마시리

[목은시고 권33, 화산군과 함께 가다] 〈수원부사 이서원〉

○同花山君詣公偕行遇崔判事元濡餞水原府使李契長舒元朴政堂來會 我老貧無物 君强惠及人 旌旆行有日 酒肉乞諸隣 鳥絶千山雪 鬻遷萬木春 他年循吏傳 會見播芳塵

●화산군(花山君)과 공무로 함께 가다가, 판사(判事) 최원유(崔元濡)를 만나 수원부사(水原府使)로 부임하는 설장(契長) 이서원(李舒元)을 전별하는데, 박정당(朴政堂)이 와서 참여하였다 나는 늙고 가난해 나누어 줄 것 없는데 / 그대는 힘써 남에게 은혜 베푸네 / 깃발들이 해 아래에 떠다니고 / 술과 고기를 이웃에서 빌리네 / 온 산에 눈 내려 새소리 끊기고 / 온 나무에 봄이 오자 꾀꼬리 옮겨가네 / 다른 해에 순리전(循吏傳)에서 / 마침 아름다운 자취 남음을 보리라

[목은문고 권4, 수원부 객사 지정기] 〈수원부 객사 연못의 정자〉

○水原府客舍池亭記 池臺坡榭 遊翫之所也 於世道何與焉 然國家理亂之迹 州縣興廢之由 於是乎在 盖朝廷淸明 上下豫安 則吏樂其職 民安其生 非有池臺坡榭 何以形容大平之盛觀哉 法令苛暴 賦斂繁重 則民咨於野 吏困於官 雖有池臺坡榭 豈能獨樂哉 然則水原府新亭之作 可無記乎 府理東北隅 舊有池 蕪廢已久 全君成安爲守時 慨然有志於興復 乃鑿而深之 中爲島以翼新亭 財不出於官 役不及於民 及其成也 州人見之 相顧驚駭 以爲何其成之易耶 必異物之來相也 何不吾役而能若此也 吁 全君其知使民者歟 會全君內遷 而秘書少監安君出按楊廣道 嘉全君爲政之能 走書於予曰 全氏之迹 不泯而傳之後 惟在於文 子毋辭諸 予惟水原按部所理 控制諸州 是以 爲一道所輻湊 然其盛衰興廢 亦爲一道先 今全君威惠並至 憮集得宜 又能不煩細民 廣我國家大平之美 安君職察民風 樂道人善 皆可書也 異日 穡也功成乞退 道過斯邑 若値荷花開時 必停車上亭 以讀吾此記而後去

●수원부 객사 지정기 못과 대와, 언덕과 정자는 유람하는 곳이니, 세도에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러나 국가 치란의 자취와 주현의 흥망한 이유가 여기에 달려 있다 대체로 조정이 맑고 밝아 위와 아래가 안락하게 되면, 관리들은 그 직을 즐겁게 여기고 백성들은 삶을 편안히 여기게 되는 것이니, 못과 대·언덕과 정자가 있지 아니하면 무엇으로써 태평한 성관을 형용하겠는가 법령이 까다롭고 사나우며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번거롭고 무겁게 되면, 백성은 들에서 한탄하고 관리는 관청에서 곤란을 받게 되는 것이니, 비록 못·대·언덕·정자가 있다고 하여도 어찌 홀로 즐기겠는가 그렇다면 수원부에 새로운 정자를 지었는데 정기(亭記)가 없어서야 되겠는가 수원부

동북쪽에 옛못이 있었으나 황폐된 지 벌써 오래되었다 전성안군이 그 고을 원이 되었을 때 황폐된 것을 개탄하고 복구하는 데 뜻을 두어서, 바로 파서 깊게 하고 못 가운데 섬을 만들어 새 정자를 날아갈 듯하게 세웠는데, 재정은 관청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노역은 백성에게 미치지 아니하였다 새로 낙성함에 이르러 고을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란 얼굴을 지어 서로 쳐다보면서 말하기를, "어떻게 낙성을 그렇게 쉽사리 하였는가 반드시 신이 와서 도운 것이구나 우리들을 노역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잘 되었을까" 하였다 아 전군은 백성 부리는 것을 알고 있었구나 때마침 전군은 서울로 전보되어 가고 비서소감으로 있던 안군이 양광도에 나가 다스릴 때 전군의 정사한 것이 능함을 아름답게 여겨 나한테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전씨의 자취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이것을 후세에 전하는 것은 오직 글에 있는 것이므로 그대는 사양하지 말고 정기(亭記)를 써주기를 바라오" 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수원 안찰부가 다스리는 것은 여러 고을을 단속하는 것이므로 한 도의 문물이 모여드는 곳이 된다 그러나 그 성쇠·흥망이 또한 한 도의 선두가 된다 이제 전군은 위엄과 은혜가 동시에 이르렀고, 모아 들이는 것이 마땅함을 얻어 또한 가난한 백성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우리 나라의 태평한 아름다움을 잘 넓혔다 안군의 직책을 말하면 백성의 풍습을 살피는 지위에 있어 남의 착한 것을 말하기 즐기니 모두 정기에 쓸 만하다 뒷날 내가 공을 이루고 버슬에서 물러갈 적에 이 고을을 지나다가, 만일 연꽃 피는 때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수레를 멈추고 정자에 올라가서, 내가 지은 이 글을 꼭 읽어 보고 가겠노라.

4) 『도은집(陶隱集)』

[도은집 권3, 이생이 수원에 감을 보내며] 〈수원〉

○送李生之水原 樓下荷花滿水開 隋城六月亦佳哉 曾聞牧隱留題詠 爲我登臨一讀來

●이생이 수원에 감을 보내며 누(樓) 밑에 연꽃이 물 가득하니 피어 / 수성(隋城) 유월 달은 아름다워라 / 일찍 목은(牧隱)이 시를 지어 걸어 두었다고 들었거니 / 나를 위해 올라가서 한번 읽고 오게나

5) 『동문선(東文選)』

[동문선 권15, 수원 운금루---薛文遇] 〈수원의 운금루〉

○水原雲錦樓 樓在林巒積翠中 登臨一望四方空 花間瓦影鱗鱗碧 石上苔紋點點紅 荷

葉亂鳴欹枕雨 柳條輕颺捲簾風 謫來到處江山好 萬事皆從失馬翁

●수원 운금루 겹겹 푸른 숲 속에 다락이 솟았으니 / 한 번 올라 바라보매 사방이 탁 트였네 / 꽃 사이의 푸른 기와 비늘처럼 포개졌고 / 돌 위의 이끼 무늬는 점점이 분홍빛일세 / 베개에 기대니 연잎에 비소리 요란하고 / 발 걷으니 버들가지 바람에 하늘거리네 / 귀양살이 간 곳마다 강산이 좋으니 / 만사가 모두 새옹의 실마(失馬) 그대로네

6) 금석문(金石文)

[최사위 묘지명][59] 〈광주목 수주 출신의 최사위〉

○高麗國卒太師三重大匡內史令崔貞肅公廟誌 夫公諱士威字動寰漢南道廣州牧管內水州人也曾祖諱徐遷爲戶長 ‥公歲八十一重熙十年辛巳三月四日卒詔謚曰貞肅公其月二十四日國葬於佛日寺法雲山之陽也有季男令言隔三十五年取乙卯十一月八日改葬于松林縣境內松峴也 貴承王命獨斷時宜造立三寶幷宮室者三所也審其名焉玄化寺奉恩寺大廟者也況又自陳奏牘使奉曰兪創立修營寺舍宮□者一十五所也普濟寺金堂及羅漢殿醫王寺□衆院西京四天三寺其京長樂宮大祖眞殿延州境內鎭北靈化寺宣州神衆寺珍島縣占察院市津縣境內布川彌勒院狼川郡開通寺啓星寺皆次斤山正陽寺水州資福寺松林縣境內普賢鏡舘等也

●고려국 졸 태사 삼중대광 내사령 최정숙공 묘지 공의 휘는 사위이고, 자는 동환인데, 한남도 광주목 관내 수주 사람이다 증조의 휘는 서천으로 호장이었고, …… 공은 나이 81세가 되던 중희 10년(1041, 정종 7) 신사 3월 4일에 죽었다 조서로 정숙공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그달 24일에 불일사 법운산 남쪽에다 국장을 지냈다 막내 아들 영언이 35년 뒤인 을묘년(1075, 문종 29) 11월 8일에 송림현 경내 송현에 개장하였다 …… 왕명을 귀하게 받들어 시의를 독단하여 삼보(三寶)와 궁실을 세 군데에 세웠다 그 이름을 살피면, 현화사·봉은사·태묘(大廟)이다 하물며 또한 주독사가 스스로 봉하여 올려 말하길, 사사와 궁궐을 창건하거나 수리한 곳이 15군데라고 하였다 보제사 금당 및 나한전·의왕사·□중원·서경 사천삼사, 그 경(평양)의 장악궁·태조진전, 연주(延州) 경내 진북 영화사, 선주 신중사, 진도현 점찰원, 시진현 경내 포천 미륵원, 낭천군 개통사·계성사, 개차근산 정양사, 수주 자복사, 송림현 경내 보현

59) 崔士威(961~1041) 字는 動寰, 諡號는 貞肅이다 1009년(목종 12)에 大定門別監이 되었다 統軍使, 參知政事, 西北面行營都統使, 西京留守, 內史侍郎平章事, 唐何縣開國男, 檢校太師守門下侍中 등에 제수되었다

경관 등이었다

[최계방 묘지명][60] 〈수주의 삼한 대족 출신인 최계방이 죽다〉

○高麗國守司空囝僕射參知政事和順崔公墓誌銘幷序 … 公諱繼芳字復時姓崔氏其先出於水州三韓之大族也…… 越丙申年□六月乙丑以疾而薨殯于□東普通寺 … 越壬申權葬于城東長峯山越明年春二月甲申其子等更卜吉於城西面西方岬之左麓移葬焉嗚呼孝哉

●고려국 수사공 좌복야 참지정사 화순 최공 묘지명 병서 …· 공의 이름은 계방이요 자는 복시이고 성은 최씨인데 그 선대는 수주(水州)에서 나온 삼한의 대족이다 ··· 이에 병신년(1116, 예종 11) □ 6월 을축일에 병으로 죽으니 동쪽 보통사에 빈소를 마련하였다 이에 임신일에 임시로 경성 동쪽 장봉산에 장사하였고, 다음해 봄 2월 갑신일에 그 아들 등이 다시 길한 곳을 점쳐 경성 서면 서방갑의 왼쪽 기슭에 이장하였으니, 아! 효성스럽도다

[배경성 묘지명] 〈배경성의 아들 진이 수주의 원을 지냈다〉

○公諱裴景誠其先俠溪人也 ····至癸卯春以試閤門祗候出爲南京少尹 ·· 今上新卽政意欲用公卽加善慶府詹事居無何不幸得疾醫藥無效卒于京城新和寺實皇統六年九月十二日己卯也享年六十四歲… ·男五人長曰晋尙衣直長同正曾任水州倅 子晋等以卒年冬十一月二十四日庚寅葬于京幾江陰縣南山之西麓

●공의 휘는 배경성이니 그 선조는 협계인이다 … 계묘년(1123, 인종 1) 봄에 이르러 시합문지후로서 남경소윤으로 나아갔다 ·· 금상이 즉위하매 공을 쓰고자 하여 곧 선경부첨사를 더하였다 그곳에서 지낸 지 얼마 안되어 불행히 병을 얻으니 의약이 효과가 없이 경성 신화사에서 죽으니 황통 6년(1146, 의종 즉위) 9월 12일 기묘였다 향년은 64세였다 · 아들이 다섯 있으니 큰아들은 진으로서 상의직장동정으로 일찍이 수주의 원을 지냈다 · 아들 진 등이 죽은 해 11월 24일 경인에 경기 강음현 남산의 서쪽 기슭에 장사를 지냈다

[최유항 묘지명] 〈최유항의 선조가 낭천군에서 수주로 옮겨오다〉

○故秘書少監知兵部事兼大子中允崔公廟誌 ·· 其先自狼川郡遷于水州遂爲水州人也

●고 비서소감 지병부사 겸 태자중윤 최공 묘지 …· 그 선조는 낭천군으로부터

60) 崔繼芳(1045~1116) 字는 復時, 시호는 和順이다 御史大夫, 戶部尙書 兼三司使, 同知樞密院事, 檢校司空 樞密院使 등을 거쳤다 尙書左僕射 判三司事 柱國에 제수되었다

수주로 옮겨와 드디어 수주 사람이 되었다

[최루백 처 염경애 묘지명] 〈경성 동쪽 청량사에 유골을 임시로 보관하다〉

○皇統六年丙寅正月二十八日戊戌漢南崔婁伯之妻峯城縣君廉氏卒於里第殯于順天院二月壬寅火櫬于京城北朴穴西北崗緘骨權安于京城東淸凉寺其三年戊辰八月十七日葬於因孝院東北君皇考墓之側

●황통 6년 병인(1146, 인종 24) 정월·28일 무술에 한남 최루백의 처인 봉성현군 염씨가 동리의 자택에서 죽으니 순천원에 초빈하였다 2월 임인에 경성 북쪽 박혈 서북 언덕에서 화장하였다 뼈를 봉하여 임시로 경성 동쪽 청량사에 봉안하였다 그 3년 무진(1148, 의종 2) 8월 17일에 인효원 동북의 군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 곁에 장사지냈다

[최용 처 김씨 묘지명] 〈수주 출신인 최씨를 의룡산 기슭에 장사지내다〉

○江陵郡大夫人金氏墓銘　　母漢南郡大夫人崔氏水州人 …長男弘護寺住持三重俊流·… 至皇統八年冬十月十三日遂感疾卒千佛境院越明年己巳十月六日葬于義龍山之麓

●강릉군 대부인 김씨 묘명　　어머니는 한남군대부인 최씨로 수주 사람이다 장남은 홍호사 주지 삼중 준류이고, … 황통 8년(1148, 의종 2) 겨울 10월 13일에 마침내 병이 나서 천불경원에서 죽었다 다음해 기사 10월 6일에 의룡산의 기슭에 장사지냈다

[최재 묘지명][61] 〈최재가 전중내급사로서 수주를 지키다〉

○銀靑光祿大夫檢校大尉守司空尙書左僕射參知政事判禮部事致仕崔公墓誌 公諱梓字大用其先孔嵒縣人也　　累遷至衛尉住簿當是時睿廟重外之故以殿中內給使[62]出守水州又明年丙午六月改授禮賓少卿賜三品服出刺安西大都護府三年秩滿左遷都官郎中未幾改爲刑部郎中又改給事中·… 是月二[63]十日丙申葬于京城南天德山西北麓

●은청광록대부 검교 태위 수사공 상서좌복야 참지정사 판예부사 치사 최공 묘지공의 휘는 재이고 자는 대용이며, 그 선조는 공암현인이다 …… 여러번 옮겨 위위주

61) 崔梓(1079~1151)　字는 大用, 孔巖縣人이다 1102년(숙종 7) 禮部試 丙科에 급제하였다 祭器都監判官, 衛尉住簿, 殿中內給事, 權知監察御史, 尙書刑部郎中, 禮賓少卿, 尙書禮部侍郎 등을 거쳤다 1130년(인종 8)에 人倩節 하례차 金나라에 갔다왔다 朝散大夫 衛尉卿, 西京副留守, 兵部侍郎, 司宰卿, 朝散大夫 禮賓卿, 右散騎常侍, 工部尙書, 同知樞密院事 등에 제수되었다 또한 銀靑光祿大夫 檢校 司徒 守司空 尙書左僕射 參知政事 判禮部事를 더하였다

62) 『전문』에는 事

63) 『전문』에는 三

부에 이르렀는데, 당시 예종이 외방을 중히 여긴 까닭에 전중내급사로서 나아가 수주(水州)를 지켰다 · 또 이듬해 병오년(1126, 인종 4) 6월에는 예빈소경에 개수하고 삼품복을 하사하였다 안서대도호부 자사로 나아가 3년 임기가 차서 도관낭중으로 좌천되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형부낭중으로 개수되고 또 급사중에 개수되었다 · 이달 20일 병신에 경성 남쪽 천덕산 서북 기슭에 장사지냈다

[승 관오 묘지명] 〈현화사 · 봉은사 · 수리사 · 안성군 파라밀사〉

○修理寺住持慈應了□定慧通炤圓證神解證智首座墓誌銘幷序 師諱觀奧字虛中俗姓崔氏其先水州人也 年十二投師剃髮於叔父玄化寺僧統尙之傳法於僧統靈粲乾統八年戊子受戒於佛日寺天慶三年癸巳崇敎寺成福選得名七年丁酉奉恩寺大選入格加大德· 貞元二年甲戌共議四轉住修理□ 師旣感國厚恩欲伸報效特修營安城郡波羅密寺功畢奏聞上嘉之

●수리사 주지 자응요□ 정혜통소 원증신해 지증수좌 묘지명 병서 선사의 이름은 관오이고 자는 허중, 속성은 최씨로 그 선대는 수주인이다 ·· 나이 12세에 스승을 따라 숙부인 현화사 승통 상지에게 머리를 깎았고 승통 영찬으로부터 법을 전하였다 건통 8년 무자(1108, 예종 3)에 불일사에서 계를 받았다 천경 3년 계사(1113, 예종 8)에 승교사 성복에 뽑히어 이름을 얻었다 7년 정유에 봉은사 대선에 입격하여 대덕을 더하였다 · 정원 2년(1154, 의종 8) 갑술에는 공의(共議)에 따라 네 번째로 수리사 주지에 전임되었다 선사는 이미 나라의 은혜가 두터움을 느껴 은혜를 갚기 위하여 힘을 다함을 펴고자 특별히 안성군에 파라밀사를 수영하여 공을 마치고 아뢰니 상이 기뻐하였다

[최함 묘지명][64] 〈수주〉

○高麗國卒金紫光祿大夫特進檢校大尉守司徒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判尙書刑部事贈謚文簡崔公墓誌銘 公諱詠字子和姓崔氏其八代祖書遷漢南人漢南今之水州也書遷有二子其季諱韓用入朝仕至侍中始居京師其後世爲王京人· 十二年春夏出爲關[65]西路

64) 崔詠(1094~1160) 字는 子和, 諡號는 文簡, 본관은 漢南이다 1114년(예종 9)에 을과 제5인으로 발탁되었다 寫經院判官, 直翰林院文詞贍, 右正言 知制誥, 尙州牧使, 右司諫, 全羅道按察使 兼點軍使, 殿中侍御, 關西路按察使, 試禮部郎中, 國子司業, 禮部侍郎 翰林侍讀學士 등을 거쳤다 1140년(인종 18)에 萬壽節 하례차 金나라에 입국하였다 諫議大夫, 同知貢擧, 右常侍, 上.部尙書, 知樞密院事, 政堂文學 등에 제수되었다 또한 金紫光祿大夫檢校大尉守司徒 등이 더해졌다

65) 『전문』에는 開

按察使還[66]拜試禮部郎中 · ·十六年秋冬出爲楊廣忠淸路按察使俄拜試中書舍人賜紫衣金魚 五年六月二十八日告疾上遣御醫賜湯劑諭以調養疾大革以七月十三日薨年六十七上聞之震悼輟朝三日贈謚文簡賜之布粟其葬物有司官給之命[67]近臣監護是年八月壬申葬于京西黃鳳山之□□初娶平章事金沽之女封江陵郡君子男一人光世今爲知仁州事副使 …銘曰 · 始從漢南徙居京師

●고려국 졸 금자광록대부 특진검교대위 수사도 중서시랑 동중서 문하평장사 판상서형부사 증시 문간 최공 묘지명 공의 휘는 함이고 자는 자화이며 성은 최씨이다 그 8대조 서천은 한남인(漢南人)인데 한남(漢南)은 지금의 수주(水州)이다 서천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 휘 한용이 입조하여 벼슬이 시중에 이르렀으며 비로소 경사(京師)에 거주하였다 그후 대대로 왕경인(王京人)이 되었다 ·· ·· (인종) 12년(1134) 춘하(春夏)에 외직으로 나가 개서로안찰사가 되었으며 돌아와 시예부낭중에 배임되었다 · 16년 추동(秋冬)에 외직으로 나아가 양광충청로안찰사가 되었는데 얼마 안있어 시중서사인에 배임되고 자의금어를 하사받았다 · (정풍) 5년(1160, 의종 14)[68] 6월 28일 병을 고하니 임금이 어의를 보내고 탕제를 하사하고는 병을 조리토록 유시하였다 병이 급속히 나빠져 7월 13일 죽으니 나이 67세이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애도하여 3일간 철조하고, 문간이란 시호를 내렸다 베와 곡식을 하사하고 그 장례치르는 물품들을 유사에서 관급하게 하고 근신들로 하여금 감호토록 하였다 이해 8월 임신에 개경 서쪽 황봉산(黃鳳山)의 □□에 장사지냈다. 초취(初娶)는 평장사 김고의 딸로서 강릉군군에 봉해졌다 그 사이에 한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광세로 지금 지인주사부사이다. 명에 이르기를 …… 비로소 한남에서 종사하여 경사로 옮겨 거하였다

[최정 묘지명] 〈수주 출신 최정의 유골을 경성 북산 수정사에 임시로 안장하다〉

○君姓崔諱精其先水州人也……辛酉年以試閤門祗候爲豊州防禦使兼勸農使……子有裔以君卒之月蒿葬于五龍山南麓遂收骨借置於京北山水精寺以癸未八月十四日壬申將葬于若頭山南麓請銘於予

●군의 성은 최요 이름은 정이며 그 선대는 수주인이다 ·· 신유년(1141, 인종 19)에 시합문지후로 풍주방어사 겸 권농사가 되었다 · 아들 유예가 군이 졸한 달에 오룡산 남쪽 기슭에 고장(蒿葬)하였다 드디어 경성 북산 수정사에 뼈를 수습하여 임시로 안치하였다 계미(1163, 의종 17) 8월 14일 임신에 장차 약두산 남쪽 기슭에

66) 『전문』에는 遷
67) 『전문』에는 令
68) (丌豊)元年 곧 丌隆 5년이다 그러나 세조의 휘를 피하기 위해 隆字 대신 豊字로 대신하였다

장사지내려고 나에게 명을 청하였다

[최우보 묘지명] 〈수주 출신 최우보를 의룡산 기슭에 장사지내다〉

○卒儒林郎判少府監事知尙書工部事賜紫金魚袋崔公墓誌銘 公諱祐甫水州人 · 時東按春州道北使大金國皆稱旨壬午拜太府少卿寶文閣待制復出按西海道時丁儉歲或弛賦蘇民或宣恩降賊諸道無與爲比 …以辛卯八月十二日葬骨于倚龍山之東麓

●졸 유림랑 판소부감사 지상서공부사 사자금어대 최공 묘지명 공의 이름은 우보이고 수주인이다 … 때에 동으로 춘주도를 안찰하였고 북으로 대금국으로 사행하였는데 모두 왕의 뜻에 맞았다 임오(1162, 의종 16)에 태부소경보문각대제에 임명되고 다시 나가 서해도를 안찰하였다 그때에 흉년을 만나 부세를 완화하여 민을 소생시키고 혹은 은혜를 베풀어 도적을 항복시키니 여러 도와 비교되지 않았다 · 신묘(1171, 명종 1) 8월 12일에 의룡산 동쪽 기슭에 뼈를 장사지냈다

[김열보 묘지명] 〈수주 출신 김열보를 우산 기슭에 장사지내다〉

○高麗國故前全州牧判官試閤門祗候金君墓誌銘 ·· 吾友金君諱閱甫字保全系出水州 · 以八月二日卜兆于憂山之麓

●고려국 고 전 전주목판관 시합문지후 김군 묘지명 · 나의 친구 김군의 휘는 열보이고 자는 보전이며 수주(水州)출신이다 …· 8월 2일에 우산 기슭에 묘지를 정했다

[승 영소 묘지명] 〈흥왕사 · 영통사 · 광교사에 주석하다〉

○高麗國興王寺敎學靈通寺住持正覺僧統墓誌 諱靈炤俗姓金氏水州人 · ·年甫十一 · 就靈通寺普炤院剃度因以命名越明年□□于佛日寺其次得名年十七登國試二十一初住光敎寺 自住光敎終於靈通寺數至九所

●고려국 흥왕사 교학 영통사 주지 정각 승통 묘지 휘는 영소이고 속성은 김씨로 수주인이다 ··· 나이 비로소 11세에 ·· 영통사 보소원에 이르러 머리를 깎고 불도(佛道)에 들어갔으며 이로써 이름을 지었다 다음해 □□ 불일사에서 다음 이름을 얻었다 17세에 국시에 올랐고 21세에 처음으로 광교사에 주석하였다 · 광교사의 주지로부터 영통사에서 마칠 때까지 수는 9곳에 이르렀다

[최루백 묘지명] 〈최루백을 대덕산 기슭에 장사지내다〉

○越是月十八日庚午葬于大德山之麓禮也 龍城縣

●이달 18일 경오에 대덕산 기슭에 장사지내니 예이다 …… 용성현

[최효사 묘지명][69] 〈최효사를 경성 밖 4리의 영악산 서록에 장사지내다〉

○樞密院使禮部尙書寶文閣大學士崔公墓誌幷銘 ……□□漢南崔氏名孝思改名坦亦海東著姓也其先自鷄林移籍此州 ……至大金貞祐六年夏寢疾不起春秋七十九五月十有五日葬于靈岳山西麓去京城四里許

●추밀원사 예부상서 보문각 대학사 최공 묘지 병명 …… 공은 한남(漢南 경기 수원) 최씨이고 이름은 효사이다 이후 탄으로 고쳤으며 또한 해동의 저성으로 그의 선조는 계림에서 출자하여 이 주로 이적하였다 ‥ 대금 정우 6년(1218, 고종 5) 여름에 이르러 병상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춘추 79세였다 5월 15일 영악산 서쪽 기슭에 장사지냈는데 경성에서 4리쯤 떨어져 있다

[전신 묘지명][70] 〈수원부사를 지낸 전신을 선흥사 부근에 장사지내다〉

○全柏軒墓誌· 辛亥出知金海府明年移成安府又二年移水原府… ·成安等卜用八月二十八日將擧柩遷葬京東禪興寺之後洞南距夫人李氏之墓若干步

●전백헌 묘지. 신해년(1311, 충선왕 3)에 나아가 지김해부사가 되었으며, 다음해(1312, 충선왕 4) 성안부로 옮겨지고, 또 2년 만에 수원부(水原府)로 옮겼다 ‥ 성안 등이 8월 28일로 날을 정하고 서울 동쪽 선흥사(禪興寺) 뒷동에 옮겨 장사지내려 하니, 남쪽으로 부인 이씨의 묘와의 거리가 몇 발자국 되었다

[김륜 묘지명][71] 〈김륜을 대덕산 감응사 동남쪽 언덕에 장사지내다〉

○有元高麗國輸誠守義協贊輔理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彦陽府院君贈謚貞烈公金公墓誌

69) 崔孝思(1138~1218) 본관은 漢南(水州)이다 이름을 坦으로 고쳤다 1163년(의종 17)에 金永胤 문하에서 등과하였다 敬德宮錄事, 樞密院堂後官, 慶尙州道按察使 兼蔚州 金州 梁州點軍使, 戶部侍郎 右諫議大夫, 樞密院知奏事 등을 거쳤다 樞密院使 禮部尙書 寶文閣大學士로 치사하였다

70) 全信(1276~1339) 字는 而立, 號는 柏軒, 본관은 人安 1301년(충렬왕 27)에 內侍內衣直長으로 과거에 나가 합격하였다 崇慶府丞, 安東府判尹, 典儀副令, 金海府, 成安府, 水原府, 司憲掌令, 寶文閣提學, 知製敎, 慶軍別監使, 鷄林府尹, 福州牧使 등을 역임하였다 1330년(충숙왕 17)에 監察大夫 進賢館大提學 上護軍 奉翊大夫에 제수되었다

71) 金倫(1277~1348) 字는 無己, 號는 竹軒, 諡號는 貞烈, 본관은 彦陽 蔭職으로 密直判官에 보임되었다가 典廐丞으로 轉職되었다 別將, 郎將, 牽龍行首, 神虎衛護軍 兼監察侍丞 등을 거쳤다 부원군에 봉해졌다 洪了藩의 천거로 辨正都監副使가 되었다 그후 檢校許珥, 忠州牧使가 되었다가 元에 갔다와서 1342년(충혜왕 복위 3)에 일등공신에 책록되었고 府院君 壁上三韓輔理功臣이 되었다

銘幷序· 十七年庚寅哈丹寇我疆我遷都江華 ····以檢校僉議評理階匡靖大夫出刺忠水益三州入爲讞選二部典書密直副使以慶尙全羅都巡問使鎭合浦加僉議評理商議會議都監事三司左右使 ·· 是月二十四日窆于大德山感應寺之巽岡祔文愼公兆域遵理命也 ····夫人副知密直司事崔諱瑞之女先一年沒贈卞韓國大夫人生七男二女… 曰淑明開城判官

●유원 고려국 수성수의협찬보리공신 벽상삼한대광 언양부원군 증시 정렬공 김공 묘지명 병서 …… 17년 경인[72]에 합단이 우리 나라를 침구하므로 나라의 도읍을 강화(江華)로 옮기게 되었다 …· 검교첨의평리에 품계는 광정대부로서 외직에 나아가 충주(忠州)·수주(水州)·익주(益州)의 세 고을을 맡았다가 내직으로 돌아와서 언·선 2부의 전서가 되었으며, 경상전라도순문사로서 합포를 진무하였고, 첨의평리 상의회의도감사 삼사좌우사를 더하였다 · 2월 24일에 대덕산(大德山) 감응사(感應寺)의 동남쪽 언덕에 하관하여 문신공의 조역(兆域)에 부장하였으니, 이명(理命 죽은 사람의 유언)을 따른 것이다 ·· 부인은 부지밀직사사 최서의 딸로 공보다 1년 앞서 졸하였는데, 변한국대부인으로 추증되었다 7남 2녀를 낳았는데, · 숙명은 개성판관(開城判官)이다

[김광재 묘지명][73] 〈김광재가 사는 곳을 영창방 효자리로 정표하다〉

○松堂先生金公墓誌銘幷序 辛卯冬十月玄陵嗣位公杜門不出奉養大夫人朝夕盡禮及其琴祥侍中洪陽坡先生與一時名卿往勞苦之公曰吾年六十三始居于茲常惧一旦身先朝露以爲宗族羞獲至今日考妣之德也言畢泣下諸公皆泣下嘆服旣還設版位於堂北隅每行事泣不止以舊病不出門玄陵聞其風使使諭公曰思與公語久矣不識可使寡人得見乎公惶恐子姪扶以入上曰年顔非甚衰也而有斯疾何耶嘆惜者久之命有司旌表所居曰靈昌坊孝子里復其里若干戶以奉祀焉辛丑冬十一月避紅賊至高昌縣因留居之癸卯春三月感微恙起居語言無少變十四日旣晩謂夫人曰吾今年七十死復何恨男子不絶於婦人之手禮也可與衆婢退矣且戒無或高聲疾語以擾我也俄而絶平日所養可知已子壻扶柩遷京某月甲子葬于德水先塋公娶門下平章諡良簡金公諱承澤之女生子二人男曰興祖倜儻有志官至中顯大夫軍器監歷使水原海州政績頗著死於鷲城之手人至今憐之

●송당선생 김공 묘지명 병서 … 신묘년(1351, 충정왕 3) 겨울 10월에 공민왕이 왕위를 계승하자 공은 두문불출하며 대부인을 봉양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예를 다하였

72) 충렬왕 17년은 신묘년(1291)이다 경인년은 충렬왕 16년(1290)이다

73) 金光載(1294~1363) 자는 了輿, 호는 松堂, 시호는 文簡, 본관은 光州이다 1313년(충숙왕 즉위)에 과거에 합격하였다 1330년(충혜왕 즉위)에는 충혜왕을 따라 元에 갔다 온 공으로 司僕寺丞에 임명되었다 成均祭酒, 三司左尹, 判典校寺事, 知密直司事 등을 거쳤다

다 (대부인이 돌아가셔서) 여묘살이를 마칠 때에 시중 홍양파선생(先生 洪彦博을 가리킴)과 당시의 재상들이 가서 위로하자 공은 "나의 나이 예순셋인데 처음 이곳에 살면서 하루 아침에 몸이 아침이슬처럼 먼저 죽어 종족의 부끄러움이 될까 늘 걱정하였는데 (다행히)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덕이다"라고 하면서 말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니 제공이 모두 눈물흘리며 탄복하였다 여묘살이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신주를 당(堂)의 북쪽 모퉁이에 놓고서 행사(行事)할 때마다 눈물 흘리며 그치지 못하였다 옛 병으로 문밖에 나서지 못하였는데 공민왕이 그의 명성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어 공에게 말하기를, "공과 함께 얘기하고자 생각한 지 오래되었는데 나를 만나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공은 황공하여 자질(子姪)의 부축을 받고 궁궐에 들어가니 왕은 "나이와 얼굴은 그렇게 쇠하지 않았는데 이런 병이 있는 것이 어쩐 일인가" 하면서 오랜동안 안타까워 하고 유사에게 명령하여 사는 곳을 영창방(靈昌坊) 효자리(孝子里)로 정표(旌表)하고 그 마을 약간 호(戶)의 조세를 면제해 줘 제사지내는 것을 돕게 하였다 신축년(1361, 공민왕-10) 겨울 11월에 홍건적을 피하여 고창현에 가서 계속 그곳에 머물러 살다가 계묘년(1363, 공민왕 12) 봄 3월에 작은 병에 걸렸는데 기거(起居)와 말하는 것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었다 14일째가 되자 부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제 일흔넷이니 무엇을 안타까와 하겠는가 남자는 부인의 손에서 죽지 않는 것이 예에 맞으니 여러 비(婢)와 함께 물러가시오 또 큰 소리와 빠른 말로 나를 소란스럽게 하지마시오" 라고 하고 조금 있다 죽었다 (그러니) 평소의 수양한 바를 알 수 있다 아들과 사위가 관을 지고 서울로 돌아와 모월 갑자에 덕수현(德水縣) 선영에 장사지냈다 공은 문하평장 양간공 김승택의 따님과 결혼하여 자식 둘을 두니 아들 홍조는 쾌활하며 큰 뜻을 가졌다 벼슬이 중현대부·군기감에 올랐고 수원(水原)과 해주(海州)의 지방관을 역임하여 정적(政績)이 자못 두드러졌는데 취성(鷲城 辛旽)의 손에 죽으니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타까워 한다

[수원 갈양사 혜거국사비][74] 〈금을 하사하여 수주부 갈양사를 수리케 하다〉

○高麗國水州府花山葛陽寺辯智無碍圓明妙覺興福佑世惠居國師諡洪濟尊者寶光之塔碑銘幷序 …… 師[法][75]諱智□惠居軒[號也][76]俗籍溟州朴氏川寧郡黃驪縣人也考諱允榮贈門下侍中金氏夢□□□□墜懷有娠唐光化二年己未四月四日師生焉· ·乾化甲戌春

74) 이 비는 원래 갈양사(현 경기도 수원 용주사)에 있었으나 파괴되어 현전하지 않는다 南陽郡의 孔氏가 보관해 오던 탁본을 1917년에 李能和가 『朝鮮佛敎叢報』에 활자본의 형태로 전한 것이 가장 오래 된 것이나, 탁본도 현전하지 않는다 고려 성종 13년(994) 8월에 건립되었다

75) 『조선불교총보』·『고려불교사연구』에는 □

76) 號也 『조선불교총보』·『고려불교사연구』에는 □□

往牛頭山開禪寺謁悟心長老請歸佛長老嘉愛爲之薙染時年十六 開運四年秋我定宗大王特降璽書封師爲王師命中涓邀之師方出出赴京盖師之行藏豈其偶爾哉同十二月進闕謝恩王迎師于澄瀛閣謂曰 ·明年二月設轉藏法事於弘化寺命王師住席賜辯智無碍之號及我光宗大王十三年壬戌命王師移住廣明寺爲設仁王般若會七日賜圓明妙覺之號兼磨衲袈裟寶器香茶等十九年戊辰正月陞王師爲國師於慶雲殿設百座會請國師說圓覺經同年六月亢暵命國師禱雨於崇景殿國師執香爐誦大雲輪經小頃有物如蚯蚓欻從淨甁中出噙雲虹空大雨滂沱左右莫不驚歎威以爲神聖開寶三年庚午春國師奏曰水州府葛陽寺山明水麗爲國家萬代福址願以劃爲祝釐之所上可之賜帑金亟[77]旣厥事國師承命使門人前住廣明寺住持普昱監之修緝象塔殿樓輪焉奐焉明年辛未秋竣功因設水陸道場上命太子往而落之壬申春國師屢乞退養至於納印上表王優詔許之以三月十五日上駕幸演福寺設闍院僧齋兼乎寅餞之儀率文式[78]斑辭別明日啓程命中書舍人李鎭喬陪行南歸花山葛陽寺王賜租五百石綿布六十四月留原茶一百角幷器皿等又賜田結五百碩以贍祝釐之資又賜輿福佑世之徽號是年七月國師上表謝恩國師自是焚修齋練而觀佛摒除知見而叅禪丕振曹溪宗風光廟二十五年甲戌二月十五日召大衆戒之曰山河萬象根塵四大罔非幻起幻滅吾亦今將還源爾曹勿悲咷勿愛戀泊然入寂報齡七十六戒臘六十一四衆攀擗訃聞丹陛上震悼遣左承宣中書舍人李敬迪致吊祭監護喪事以三月八日號奉全身茶毘于寺之南麓人祇憯痛禽獸哀呼獲舍利十三枚於紅燄中塔以封之門人弘化寺住持三重大匡大禪師嵩曇廣明寺住持三重大匡大禪師普昱及大禪伯淨觀大敎碩德忠惠等百餘人裒集國師行狀詣闕上表上使所司議謚是年七月日贈謚曰洪濟尊者塔曰寶光越二十年今我聖上十三年甲午秋上召臣亮敎若曰故惠居國師歷事二朝陰襄化理之功旣茂而弘尙欠勒碑垂后之典予甚慨然爾[79]其銘之亟圖不朽臣謬承宣旨罔敢蓁讓於是稽首拜手而銘曰……智辯雙運爲王者師福國佑世崇敎廣慈行藏義理終始惠思山高水長百世蓍龜歲聿云暮時行時止重葺葛祉載疏蓮址將身歸林納印受辛位牢跏嵓穴俾遂初志

●고려국 수주부(水州府 경기도 수원) 화산 갈양사(葛陽寺)[80] 변지무애 원명묘각 홍복우세 혜거국사 시호제존자 보광탑지비명 병서 · · 사의 (법)휘는 지□이며, 혜거는 헌호이다 속적(俗籍)은 명주 박씨이니, 천넝군(川寧郡) 황려현(黃驪縣 경기도 여주) 사람이다. 아버지의 휘는 윤영이니 문하시중을 추증받았다 어머니는 김씨인데,

77) 『고려불교사연구』에는 洌
78) 『조선불교총보』·『고려불교사연구』에는 武
79) 『고려불교사연구』에는 없음
80) 葛陽寺 현재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송산리 188번지에 있는 용주사의 전신 신라 문성왕 16년(854)에 廉居禪師가 세웠으며, 고려 광종 22년(971) 惠居國師가 중건하였다 그후 조선 정조 13년(1789) 사도세자의 능을 수원으로 옮긴 이듬해(1790)에 왕명으로 寶鏡堂 스님이 크게 중수하여 龍珠寺라 하였다

(큰 별이) 떨어져 품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임신하여 당나라 광화 2년 기미년(899, 효공왕 3, 견훤 8) 4월 4일에 스님을 낳았다 건화 갑술년(乾化 4, 914, 신덕왕 3, 견훤 23)에 우두산(牛頭山) 개선사(開禪寺)에 가서 오심장로를 뵙고 부처님께 귀의할 것을 청하니 장로가 가상히 여기고 사랑하여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게 하였다 이때 나이 16세였다 개운 4년(947, 정종 2) 가을에 우리 정종대왕께서 특별히 편지를 보내 사를 왕사로 봉하고 시종관[81]에게 명하여 맞이하게 하였다 사가 바야흐로 나오려 하였으므로 서울로 나아가니, 사의 나아감과 물러남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같은 해 12월 대궐에 나아가 사은하니 왕이 징영각(澄瀛閣)에서 사를 맞이하고 말하였다 …… 이듬해(948, 정종 3) 2월 홍화사(弘化寺)에서 전장법사[82]를 열어 왕사로 하여금 주석하게 하고 '변지무애(辯智無碍)'의 호를 사하였다 우리 광종대왕 13년 임술년(962)에 왕사를 광명사(廣明寺)로 옮겨 거하게 하고 인왕반야회를 7일간 베풀었다 '원명묘각'의 호와 겸하여 붉은 자줏빛 마납가사·보기·향·차 등을 사하였다 (광종) 19년 무진년(968) 정월에 왕사를 올리어 국사로 삼았다 경운전(慶雲殿)에서 백좌회[83]를 베풀고 국사에게 『원각경(圓覺經)』을 설하여 줄 것을 청하였다 같은 해 6월 극심한 가뭄이 들어 국사에게 숭경전(崇景殿)에서 기우(祈雨)를 명하였는데, 국사가 향로를 잡고 『대운륜경(大雲輪經)』을 외우니 조금 있다가 지렁이 같은 것이 정병(淨甁) 속에서 나와 맑은 하늘에 구름을 내뿜더니 큰 비가 쏟아졌다 좌우가 경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모두가 신성하다 하였다 개보 3년 경오년(970, 광종 21) 봄에 국사가 이르기를, "수주부(水州府) 갈양사(葛陽寺)가 산이 밝고 물이 아름다워 국가 만대의 복된 터전이 되니 떼어서 복을 비는 장소로 삼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상이 허락하고 내고의 금을 사하여 일이 빨리 끝나게 하였다 국사가 명을 받들어 문인으로 전에 (국사가) 머물던 광명사의 주지인 보욱(普昱)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여 탑상전루(塔象殿樓)를 수리하게 하니 장대하고 아름다웠다 이듬해인 신미년(971, 광종 22) 가을에 준공하였으므로 수륙도량을 베풀었다 상이 태자(뒤의 경종)에게 명하여 가서 낙성하게 하였다 임신년(972, 광종 23) 봄에 국사가 자주 물러나기를 청하여 인(印)을 바치고 표(表)를 올리는 데에 이르니 왕이 두터이 칙령을 내려서 가게 하였다 3월 15일에 상이 연복사(演福寺)에 행차하여 원(院)에 있는 모든 승려에게 재를 베풀고 겸하여 전별의 의식을 베풀었는데, 문무반[84]을 이끌고 하직하여 이별하

81) 中侁 궁중의 掃除夫로 천자의 곁에서 시종하는 사람 中涓者 中은 궁중, 侁은 청결을 의미
82) 轉藏仏事 轉經仏會 대장경의 글자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看藏과 달리 경전의 처음과 중간, 끝의 몇 줄씩만을 독경하는 기념식
83) 白座會 100개의 자리를 마련하고 인왕경을 강독하며 국가의 발전을 비는 법회 진흥왕 때 惠亮이 처음 시작하였다

였다 다음날 길을 떠나니 중서사인 이진교에게 명하여 남쪽 화산 갈양사로 돌아가는 길을 배행하도록 하였다 왕이 조(租) 500석과 면포 60필, 유원다 100각 및 그릇 등을 하사하였고, 또 전결(田結) 500석을 하사하여 복을 비는 비용으로 충당하게 하였다 또한 '흥복우세'의 휘호를 사하였다 이해 7월에 국사가 표를 올려 사은하였다 국사가 이로부터 재련(齋練)을 분향하여 관불(觀佛)하고, 지견(知見)을 없애어 참선하니 조계(曹溪)의 종풍(宗風)이 크게 떨쳐졌다 광묘 25년 갑술년(974, 광종 25) 2월 15일 대중을 불러 경계하여 이르기를, "산하만상(山河萬象)과 근진사대(根塵四大)[85]는 허망하게 일어났다가 허망하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나 역시 이제 장차 근원으로 돌아가려 하니 너희들은 슬퍼하거나 사랑하여 그리워하지 말라" 하고 조용히 입적하니, 보령(報齡) 76세요, 계랍(戒臘)은 61세였다 사중(四衆)[86]이 모두 가슴을 쳤고, 부음이 궁궐에 들리니 상이 애도하여 좌승선중서사인 이경적을 보내 조제를 치르고 상사(喪事)를 보살피어 잘 치르게 하였다 3월 8일에 전신을 받들어 산의 남쪽 기슭에서 다비를 거행하니 사람들은 삼가 슬피 울고 들짐승과 날짐승들도 애통해하였다 사리 13매를 붉은 불꽃 가운데에서 얻어 탑에 봉안하였다 문인 홍화사주지(弘化寺住持) 삼중대광 대선사 승담과 광명사주지(廣明寺住持) 삼중대광 대선사 보욱 및 대선백 정관·대교석덕 충혜 등 100여 인이 국사의 행장을 수집하여 대궐에 나아가 표를 올리니 임금이 소사(所司)로 하여금 시호를 의논하게 하였다 이해 7월 일에 증시하여 '홍제존자'라 하고, 탑을 '보광'이라 하였다 20년이 지나 지금 우리 성상(성종) 13년 갑오년(994) 가을에 상이 신 량(亮)을 불러 하교하시기를, "고 혜거국사는 두 임금을 두루 섬기어 교화하여 다스리는 것을 은밀히 도운 공이 이미 무성하고 넓은데도, 오히려 돌에 새기어 후세에 전하는 일을 결하였으니, 내가 매우 개탄스러워 하는 바이다 너는 그것을 명하여 빨리 이지러지지 않도록 하라" 하셨다 신이 외람되이 선지를 받아 감히 중요한 일을 사양하지 못하였다 이에 머리를 땅에 조아려 절하고 명(銘)하기를, … 지혜와 언변이 모두 뛰어나 왕의 스승이 되었고, 복이 크게 세상을 도우니 높은 가르침이 자비를 넓히도다 나아가고 숨음이 의리이니 처음과 끝이 은혜로운 생각이며, 산이 높고 물이 길으니 백세의 (모범이 되는) 톱풀과 거북이라 해가 마침내 저물었다 하니 때로 행하고 때로 그치어, 갈사(葛社)를 중수하고 연지(蓮址)를 뚫도다 몸이 장차 숲으로 돌아가려하여 인(印)을 들어 지위를 사양하고, 굳게 바위굴에

84) 文式 당시 惠宗의 諱인 武를 避諱하여 썼을 것이므로 원문에는 文式으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85) 根塵四大 六根은 眼·耳·鼻·舌·身, 六塵은 色·聲·香·味·觸이며, 四大는 만유를 구성하는 地 水·火 風의 4가지 물질의 요소

86) 四衆 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尼의 총칭

앉아 처음 뜻을 이루도다

[수원 창성사 진각국사 대각원조탑비][87] 〈창성사〉

○贈謚 眞覺國師 碑銘

高麗國國師大華嚴宗師禪敎

推忠保節同德賣化功臣壁上

洪武十五年夏六月十六日華嚴浮石國師示寂于彰聖社□□□□□□□□□□□□□□不朽也利□□□□□□□□

上上賜謚曰眞覺國師塔曰大覺圓照命臣穡文于石門人等以師行狀來不甚悉不敢下筆久矣有敬南□□□□□□□□

山今始至徵文具語其事曰申辰秋吾師航海抵杭吾執侍跬步不離側吾師到休休菴蒙山眞堂夜有□□□□□□□□

人衣鉢心異之引師至方丈扃鐍甚固有三轉語在壁師逐語下語鑰有聲忽啓衆皆肅然室中有櫃□□□□□□□□□

棒拂在此將以授我耳啓之衆益服又有漆小櫃無縫者其上曰時未至而啓者天必譴浙省丞相張大尉□□□□□□□□□

何物藏師曰文書也又問今可啓乎師曰可果有書二秩其中□言群盜破壞三寶乃底滅亡之事丞相□□□□□□□□□

海外來殺之何益吾謹吾法爾其收蒙山衣物放之去丙午春參萬峯於聖安寺三日不出戶峯曰高麗老和□□□□□□□□無入

時豈有出耶峯曰我病矣誰有好眼看我病師以拳安其背是夜三更萬峯以袈裟禪棒授之曰不聞□□□□□□□□□

至吳江有僧請留師固辭萬峯堂下欲奪其師衣棒是夜追至吳江僧房不及而還僧之姓馬也聞其鳴而□□□□□□□□□

渡也必矣嗚呼蒙山夢之於前萬峯戒之於後灼見未來妙堪遺囑師資之道無間於古今遐邇此釋氏之□□□□□□□□□□

玄陵勞慰良渥國人爭先瞻禮師隱于雉岳游于東海致洛山觀音放光之瑞丁未正月還雉岳上遣使邀師者三師始至五月封爲國師大華嚴宗師禪敎都摠攝傳佛心印大智無碍性相圓通福□□□□□□□□□

圓應尊者置府設寮屬賜印章法服庚戌九月

87) 이 비는 경기도 수원시 상광교동 창성사지에 있었는데, 지금은 보물 제14호로 매향동의 화홍문 옆에 옮겨져 있다 고려 우왕 12년(1386)에 건립되었다

玄陵請王師懶翁選境內禪敎諸僧功夫節目師爲證明旣罷居敬天辛亥遊金剛山五月
上遣使請還其秋懇乞歸雉岳歲壬子住浮石重營殿宇悉如舊盖爲身後計也師諱千熙號雪
山與海人□□□□□□□□□
理判書妣崔氏崔氏夢見大艦群僧梵呗水漲至門因而有身彌月又夢白鶴啄其腹靑帖袈裟
一僧躍出以大德丁未五月二十
一日生 師年十三投華嚴盤龍社主一非大師薙髮 十九登上品選歷住金生德泉符仁開泰
等十餘寺其衣服飮食與□□□
小異操志甚高參究禪旨在小伯山夢見蒙山付其衣法在金剛五臺亦如之此所以決志南遊
也嘗著三寶一鏡觀若干卷行于
世師年七十六法臘六十三臣聞普照國師師大鑑友大慧侍者每於夢中見之至今爲叢林美
談今圓應自夢蒙山得傳衣法□
釋氏之敎不可得而思議也信哉臣穡敢不爲之銘銘曰
大道無外何有古今苟求其故曰惟此心心之不失夢覺爲一周流如川煥赫如日佛法之傳妙
乎人天
夢中授受如在目前昔聞照公今見圓翁玄陵崇之俾師國中年將八秩示有生滅千載斯碑勿
訛勿缺
洪武十九年丙寅正月 日 門人開泰寺住持妙智無碍通照大師 冲述 立石 比丘惠
岑刻

●고려국 국사 대화엄종사선교
추충보절 동덕찬화공신벽상

홍무(洪武) 15년(우왕8 1382) 여름 6월 16일에 화엄부석국사(華嚴浮石國師)께서 창성사에서 입적하셨다 (결락) 임금께서 시호를 내려 진각국사(眞覺國師)라 하고 탑을 '대각원조(大覺圓照)'라 하고 신 이색(李穡)[88]에게 비명을 쓰라고 명을 내리셨다 그러나 문인들이 대사의 행장을 가지고 온 것이 매우 거칠어서 대사의 행장을 자세히 알 길이 없어 감히 붓을 들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

(결락) 이제 비로소 가히 증험할 수 있는 글과 손실 없이 갖추어진 행장이 도착되었다 거기에 기록된 내용에 이르기를,

"갑진년(공민왕13 1364) 가을에 우리 대사께서 바다를 건너 항주(杭州)에 이르렀다 내가 그를 곁에 모시고 있으면서 반걸음도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 우리 스승께서 휴휴암(休休庵)의 몽산(蒙山) 진당(眞堂)에 이르러 밤에 (결락) 마음속으로 매우 이상하게

88) 李穡 고려 충숙왕 15(1328)~조선 태조 5(1396) 고려말의 문신 학자 본관은 韓山 자는 穎叔 호는 牧隱

여기어 스승을 모시고 방장실(方丈室)에 이르니 자물쇠로 굳게 방문이 잠겨 있고, 세 마디의 전하는 말이 벽에 붙어 있을 뿐이었다 대사께서 말을 따라 읽어 내려가니 자물쇠가 홀연히 소리가 나면서 저절로 열렸다 대중들은 모두들 조용히 말을 잃고 서 있고 방 가운데 상자 하나가 있었는데, (결락) 장차 나에게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었다 상자를 열어 보자 대중들이 더욱 더 감복하였다 그 속에는 옻칠한 작은 상자가 또 하나 들어 있었는데, 사방을 봉하지도 않았고, 그 위에는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 상자를 열어보는 자는 반드시 하늘이 벌을 주리라' 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절강성의 승상 대위 장사성(張士誠)[89]이 (결락) '무슨 물건이 들어 있습니까?' 하니,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서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그럼 이제 열어도 됩니까?' 하니,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열어도 됩니다' 하여, 상자를 열어보니 과연 편지 2통이 들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말이 '여러 도적이 삼보(三寶)[90]를 파괴하니 이에 일이 멸망하게 되리라'라고 쓰여 있었다 승상이 (결락) '… 해외(海外)에서 왔으니, 죽인다 한들 무슨 유익함이 있으리요 내 우리의 법을 삼갈 뿐이다' 하고는 몽산(蒙山)의 의복과 물건을 거두어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병오년(공민왕15 1366) 봄에 성안사(聖安寺)에서 만봉(萬峯)께 참배하고 3일 동안 문밖을 나가지 아니하니 만봉이 이르기를 '고려 노화상(老和尙)이 (결락) 들어간 때가 없으니, 어찌 나옴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만봉이 이르기를 '내가 지금 병이 들었다 누가 좋은 눈이 있어서 내 병을 보아주겠는가?' 하니, 대사께서 주먹으로 그의 등을 어루만졌다 이날 밤 삼경(三更)에 만봉이 가사(袈裟)와 선봉(禪棒)을 그에게 주며 이르기를 (결락) 오강(吳江)에 도착하여 스님 한 분이 머물러 계실 것을 간청하였으나, 대사께서는 굳이 사양하였다 만봉당 제자들이 그 스승의 옷과 선봉을 뺏으려고 이날 밤 오강까지 추격하여 이르렀으나 승방(僧房)에 미치지 못하고 돌아가니 스님의 성은 마씨였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결락) 건너 간 것이 분명하다." 하였다

아아! 슬프다! 몽산이 앞에 현몽하시고 만봉이 뒤에서 계(戒)를 주시니 미래에 그에게 미묘한 법을 유촉(遺囑)하실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스승과 제자간에 전하는 도는 예나 지금이나 멀고 가까움에 관계가 없으니, 이는 석씨(釋氏)의 (결락) 현릉(玄陵 공민왕)께서 노고를 위로하시니 국내 사람들이 다투어 그에게 예를 올리려 하였다

대사께서는 치악산에 은거하시고 동해를 유람하시다가 낙산(落山)에서 관음보살이 광명을 내도록 하였다 정미년(공민왕16 1367) 정월에 치악산에 돌아왔는데, 임금께서 사신을 보내 대사를 맞이한 것이 세 번이나 되었다 대사는 비로소 5월에 이르러 국사

89) 張士誠 원나라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원의 세력권에서 벗어나려 항전하던 群雄의 하나
90) 三寶 佛 法·僧

(國師)로 봉함을 받으시고 "大華嚴宗師禪敎都摠攝傳佛心印大智無碍性相圓通福 (결락) 尊者"가 되었으며, 부설 관료를 두고 인장(印章)과 법복(法服)을 하사하였다

경술년(공민왕19 1370) 9월에 공민왕께서 왕사(王師) 나옹(懶翁)[91]을 청하여 경내(境內)에 있는 선(禪)·교(敎) 두 종(宗)의 모든 승려들 중에서 공부가 뛰어난 사람들을 뽑는데 대사께서 증명법사(證明法師)가 되었다 선발이 끝난 후에 경천사(敬天寺)에서 주석하였다 신해년(공민왕20 1371)에 금강산을 구경하였는데, 5월에 임금께서 사신을 보내어 돌아올 것을 청하였다 그 해 가을에 치악산으로 돌아갈 것을 간청하기도 하였다 임자년(공민왕21 1372)에 부석사(浮石寺)[92] 주지로 있으면서 전우(殿宇)를 중건하여 옛것과 같이 회복시켰다

대사의 이름은 천희(千熙)요, 호는 설산(雪山)이니 흥해(興海) 사람이다 (결락) 전리판서이며, 부인은 최씨이다 최씨가 큰배에 많은 승려들이 타고 범패(梵唄)를 하면서 물결을 헤치고 문 앞에 이르는 꿈을 꾸고 인하여 아이를 가졌다 한달 남짓하여 또 꿈을 꾸니 흰 학이 그 배를 쫓으니 푸른색 천으로 만든 가사를 입은 승려 하나가 뛰어나왔다

대덕(大德) 정미년(충렬왕33 1307) 5월 21일에 태어났고 대사의 나이 13세에 화엄(華嚴) 반룡사(盤龍寺) 일비대사(一非大師)에게 귀의(歸依)하여 머리를 깎고 19세에 상품(上品)에 발탁되고 금생사(金生寺), 덕가사(德家寺), 부인사(符仁寺), 개태사(開泰寺) 등 10여 군데 절의 주지를 지냈으며, 그 의복과 음식이 (결락) 지조가 있고 매우 고상하였으며, 선지(禪旨)를 깊이 연구하였다 소백산(小白山)에 있을 적엔 꿈에 몽산을 만나 그 의법(衣法)을 부촉받기도 하였으며, 금강오대(金剛五臺)에서도 또한 그러했으니, 이것이 그가 강남(江南)으로 갈 뜻을 굳히게 된 동기가 되었다 일찍이 『三寶一鏡觀』 약간 권을 지어서 세상에 널리 펴기도 하였다 대사의 나이는 76세요, 승려 생활은 63년이었다

신이 들으니 보조국사(普照國師)[93]로 스승을 삼고 대감국사(大鑑國師)[94]로 친구를 삼고 대혜(大慧)로 상좌(上座)를 삼았다고 한다 늘 꿈속에 그가 나타나 보이곤 하여 지금

91) 懶翁 충숙왕 7(1320)~우왕 2(1376) 고려말의 고승 이름은 惠勤·慧勤 성은 牙氏 속명은 元惠 호는 懶翁 江月軒 고려말에 習定均慧와 勤修 智慧로써 성불의 가능성을 보여준 고승으로 고려말의 禪風이 그에 의해 새롭게 선양되었다

92) 浮石寺 경상북도 榮州郡 浮石面 北枝里에 있는 절

93) 普照國師 의종 12(1158)~희종 6(1210) 고려 중기의 高僧이자 禪宗의 중흥조 성은 鄭氏 자호는 牧牛子

94) 大鑑國師 1070~1159 호는 默庵 휘는 坦然 시호는 大鑑 禪旨에만 조예가 깊었을 뿐만 아니라 王羲之의 필체를 터득한 명필로서 춘천 淸平寺 文殊院重修碑, 예천군 北龍寺碑, 삼각산 僧伽寺重修碑 등을 썼다 徐居正이 동국의 필법은 金生이 제일이고, 姚克一 坦然 靈業이 다음 간다고 평하였다

도 총림(叢林)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거리가 되곤 한다 이제 원응(圓應)이 스스로 꿈속에서 몽산에게서 의발(衣鉢)과 법을 전해 받았으니, 석씨의 교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믿을 만도 하여라! 신 이색(李穡)이 감히 비명(碑銘)을 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명(銘)에 이르기를,

대도는 밖이 없거늘 어찌 고금인들 있으랴
진실로 옛것을 구한다면 오직 이 마음뿐이네
마음에 잘못이 없음은 꿈에서나 깨어서나 마찬가지일세
두루두루 냇물처럼 흘러 다녔고, 밝고 빛나기는 저 해와 같도다
불법의 전함은 인간계나 천상계보다도 더 묘하여
꿈속에서 법을 주고받으니 마치 눈앞에 있는 듯하다
옛날엔 普照에게 들었고 이제는 圓公에게 보았도다
공민왕도 그를 숭배하여 대사를 國師로 삼으셨다
장차 80 가까운 나이에 生滅이 무언지를 보여 주시니
이 비석 천년토록 변하거나 무너짐이 없어라

홍무 19년 병인년(우왕 12 1386) 정월 일에
문인 개태사 주지 묘지 무애 통조대사 충술은 비석을 세우다
비구 혜잠이 새기다

제 2 편

해제(解題)

제1장 지지(地誌)

제2장 의궤(儀軌)

제3장 문집(文集)

제4장 관찬서(官撰書)

제5장 일록(日錄) · 등록(謄錄) · 계록(啓錄)

제6장 고문서(古文書)

제7장 기타(其他)

여 백

제1장 지지(地誌)

1) 『경기지(京畿誌)』

경기 33개 군현과 영종진(永宗鎭)의 읍지를 합편한 경기도에 관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도지(道誌)이다 4책 3552장의 필사본으로 채색지도가 있으며, 편자(編者)는 미상(未詳)이다 교동(喬桐)·음죽(陰竹)·진위(振威) 등 읍지 제목과 책 끝에 '도광(道光) 22년 6월~23년 정월'이라는 표기를 통해 1842년(헌종 8)에서 1843년 사이에 편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읍지의 제1책은 양주(楊州)·여주(驪州)·파주(坡州)·교동·장단(長端)·부평(富平)·인천(仁川), 제2책은 죽산(竹山)·남양(南陽)·통진(通津)·이천(利川)·고양(高陽)·안산(安山)·마전(麻田)·안성(安城)·가평(加平)·김포(金浦), 제3책은 양지(陽智)·포천(抱川)·적성(積城)·연천(漣川)·지평(砥平)·과천(果川)·음죽·영종진, 제4책은 양근(陽根)·삭녕(朔寧)·교하(交河)·영평(永平)·양천(陽川)·진위·용인(龍仁)·시흥(始興)·양성(陽城) 등을 각각 수록하였다 읍지의 체제는 첫머리에 채색지도를 넣는 등 다른 읍지와 차이가 없으나 항목 배열 순서는 상이하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각 군·현이 작성한 개별 읍지를 감영(監營)에서 합책한 것으로 보인다

제1책의 양주목(楊州目)은 사계(四界)·건치연혁(建置沿革)·군명(郡名)·성씨(姓氏)·산천(山川)·제언(堤堰)·토산(土産)·봉수(烽燧)·궁전(宮殿)·학교(學校)·서원(書院)·역원(驛院)·발참(撥站)·목장(牧場)·면리(面里)·불우(佛宇)·사묘(祠廟)·능묘(陵墓)·고적(古蹟)·명환(名宦)·인물(人物)·제영(題詠)·진공(進貢)·장시(場市)·교량(橋梁)·민호(民戶)·전부(田賦)·군액(軍額)·조적(糶糴)·공해(公廨)·관방(關防)·형승(形勝)인 반면, 제2책의 남양군은 사계·건치연혁·군명·관직(官職)·성씨·산천·풍속(風俗)·방리(坊里)·호구(戶口)·전부·요역(徭役)·군액·성지(城池)·창고(倉庫)·관방·진보(鎭堡)·봉수·학교·단묘(壇廟)·능묘·불우·누정(樓亭)·교량·제언·도서(島嶼)·장시·궁실(宮室)·어염(魚鹽)·역원·목장·토산·진공·봉름(俸廩)·환적(宦蹟)·과거(科擧)·인물·제영·비판(碑板)의 체제로 구성되었다 다른 군현도 이와 비슷하나, 선생안(先生案)·책판(冊板) 등이 추가되거나 일부 누락되어 있다. 항목은 비슷하지만 군현에 따라 내용의 상세함과 소략함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즉 민호조(民戶條)는 전체의 군총(郡摠)만 밝힌 경우와 제4책의 양근·교하처럼

면별·동리별까지 호총(戶摠)을 상세하게 파악한 경우도 있다

『여지도서(輿地圖書)』가 사회·경제적인 관계에 중점을 둔 반면, 이 책은 문화 관계에 중점을 두었다 제영조를 신설하여 시·문 등을 수록하는 동시에 과거조·읍선생안조 등도 신설하였다 인물조에는 1830년대 인물을 대거 수록하는 한편 명현묘(名賢墓)를 기록하는 등 인문·문화 관계를 대거 보완하였다 호구조는 경자식(庚子式, 1840년) 호적에 근거하고, 결총(結摠)은 1841년(헌종 9)의 실기(實起)를 반영하였다 또한 제언의 변화와 지방관직 체계의 변화 등 당시 변화 상황을 그대로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1830년대 경기 전역의 변화를 기록함으로써 당시 각 군현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유용성을 지닌다 특히 이후 다른 군현이나 도단위 지리지의 편찬 저본으로 활용된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1871년(고종 8)에 편찬된 『경기읍지(京畿邑誌) 6책』와 1895년(고종 32) 편찬된 『기전읍지(畿甸邑誌) 3책』는 『경기지』 등 규장각에 소장된 지리류를 묶어 1985년 아세아문화사에서 『한국지리지총서(경기도편)』로, 규장각에서도 원형을 살린 채색지도를 각각 영인하였다

2) 『경기읍지(京畿邑誌)』

관내 35개 군·현의 읍지를 경기 감영(監營)에서 합편한 읍지로, 6책 558장의 필사본으로 채색지도가 있으며, 편자는 미상이다 읍지 서명에 '동치(同治) 10년'을 표기한 사실에서 1871년(고종 8)에 작성되었고, 각 읍지의 끝에 지방관의 수결(手決)이 있으며, 동일한 지질(紙質)·흑괘선(黑掛線) 등에서 감영이나 중앙의 명령에 의해 지방관이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읍지는 각 군·현에 따라 수록된 내용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읍지에 수록된 군·현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책은 교동(喬桐 주문진지(注文鎭誌)와 장봉진지(長峯鎭誌)를 포함), 경기영종방영읍지급사례책(京畿永宗防營邑誌及事例冊)·김포군읍지(金浦郡邑誌)·양천현읍지(陽川縣邑誌)·부평부읍지부읍사례책(富平府邑誌府邑事例冊)·안산군읍지(安山郡邑誌)를, 제2책은 가평읍지(加平邑誌)·연천현읍지(漣川縣邑誌)·삭녕지(朔寧誌)·마전군읍지성책(麻田郡邑誌成冊)·적성현지(積城縣誌)·파주목읍지사례등출책(坡州牧邑誌事例謄出冊)·고양군여지승람(高陽郡輿地勝覽)을, 제3책은 장단지(長湍誌)·풍덕부읍지(豊德府邑誌)·교하군읍지(交河郡邑誌)를, 제4책은 양주목읍지(楊州牧邑誌)·포천현읍지(抱川縣邑誌)·영평군읍지(永平郡邑誌)를, 제5책은 안성군읍지급읍사례책(安城郡邑誌及邑事例冊)·용인현읍지(龍仁縣邑誌)·여주읍지(驪州邑誌)·양지현읍지(陽智縣邑誌)·지

평(砥平 책 명칭 없음)·이천부읍지(利川府邑誌)·통진부읍지(通津府邑誌)·양근(陽根 책 명칭 없음) 등을, 제6책은 시흥읍지(始興邑誌)·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과천현읍지급사례대개책(果川縣邑誌及事例大概冊)·양성(陽城 책 명칭 없음)·남양(南陽 책 명칭 없음)·죽산부읍지(竹山府邑誌)·진위현여지승람사실(振威縣輿地勝覽事實)·음죽현읍지(陰竹縣邑誌) 등을 각각 수록하였다

각 읍지의 첫머리에는 채색지도가 첨부되어 있으며, 수원·강화·광주 등 유수부(留守府)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없다 가평과 장단읍지에는 지방관의 서문, 가평·적성·여주·이천·안성·과천읍지에는 목록, 장단읍지에는 서례(敍例)가 있는 등 다른 읍지와는 독특한 차이가 있다 또 읍사례는 별권(別卷)이나 말항(末項)으로 기록하였고, 읍지의 형식은 "범례일종여지승람"(凡例一從輿地勝覽)이라는 표현처럼 전통적인 읍지의 체제를 따랐다 제6책의 인천부는 사계(四界)·건치연혁(建置沿革)·관원(官員)·군명(郡名)·성씨(姓氏)·풍속(風俗)·산천(山川)·방리(坊里)·토산(土産)·성지(城池)·봉수(烽燧)·관방(關防)·제언(堤堰)·교원(校院)·역원(驛院)·사묘(祠廟)·총묘(塚墓)·고적(古蹟)·공해(公廨)·창고(倉庫)·호구(戶口)·전부(田賦)·봉름(俸廩)·관속(官屬)·인물(人物)·명환(名宦) 순서인 반면에 같은 책의 남양군은 사계·건치연혁·군명·관직·성씨·산천·풍속·방리·호구·전부·공해·요역(徭役)·군액·창고·조적·환적(宦蹟)·고적·토산·진공·봉름·교량·성지·관방·진보(鎭堡)·봉수·학교·단묘(壇廟)·능묘·불우·누정(樓亭)·도로·제언·도서(島嶼)·장시(場市)·어염(魚鹽)·역원·목장·궁실(宮室)·형승(形勝)·과거(科擧)·제영(題詠)·비판(碑板)·복호(復戶)·향교·수호(水護)·잡역(雜役)의 체제인데, 다른 읍지도 대체로 이와 유사하다 다만 방보조(防洑條) 등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내용의 소략 또는 상세한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다. 「진위현읍지」의 강계(疆界)조는 주기(註記)를 사용하는 등 읍지 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호구조는 군총(郡摠)만 일반적으로 밝혔으나, 부평·파주·교하·영평·이천·양근은 면별(面別)로, 가평·양지는 리(里)까지 상세하게 파악하였다 제언조는 사방주회(四方周回)와 몽리(蒙利)면적·폐기 여부 등을 수록하여 당시 수리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진위현은 방보조를 신설하여 군내의 18개 방보에 대해 주기를 하는 등 방보를 주요한 수리시설로서 파악한 점이 특징이다 읍사례는 중앙 상납의 결총(結摠)·군총(軍摠)·환총(還摠)과 지방재정 관황(官況)을 중심으로 편성한 경우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식이다 과천현은 무용물품(貿用物品)의 절전식(折錢式)이 상세히 기록되어 당시의 물가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경기읍지』는 1842~3년(헌종 8~9) 편찬된 『경기지(京畿誌) 4책』와 1895년(고종

32) 편찬된 『기전읍지(畿甸邑誌) 3책』 등과 함께 규장각에 소장된 것을 1985년 아세아문화사에서 『한국지리지총서(경기도편)』로, 규장각에서도 원형을 살린 채색지도를 각각 영인하였다

3) 『경기도지도(京畿道地圖)』

1872년(고종 9) 각 읍에서 제작한 채색지도 40장을 경기도에서 합편한 지도집으로 40장 1책의 채색지도인 필사본이고 편자는 미상이다 1871년 「열읍지도등상령(列邑地圖謄上令)」에 의해 경기도 각 읍과 진에서 만든 채색지도로 음죽현(陰竹縣)지도에 '동치(同治) 11년 3월 일'이라는 기록에서 1872년 작성됨을 알 수 있다 곧 1871~2년 편찬된 『경기읍지』의 편찬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도는 각 읍마다 1장씩으로 고유의 규장각 도서번호가 붙여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 읍지도

지 도 명	도서번호	지 도 명	도서번호	지 도 명	도서번호
가평군지도	10367	부평(군)	10373	강화부전도	10350
삭녕군지도	10644	개성전도	10358	수원부지도	10360
고양군지도	10363	시흥(군)	10368	과천지도	10370
안산군지도	10343	광주전도	10357	안성지도	10362
교동부지도	10348	양근(군)	10643	교하군지도	10342
양성지도	10353	김포지도	10374	양주지도	10359
남양지도	10354	양지현지도	10379	대부지도	10361
양천현지도	10356	마전군지도	10366	여주목지도	10356
연천(군)	10344	적성지도	10345	영종지도	10347
죽산지도	10351	영평군지도	10365	지평현여지도	10372
용인현지도	10376	진위현지도	10349	음죽현지도	10352
통진부지도	10364	이천부일경지도	10378	파주지도	10377
인천(군)	10375	포천(군)	10369	장단(군)	10355
풍덕부지도	10371				

각 지도에는 면리(面里)와 산·하천·도로·사찰·창(倉)·장시(場市)·봉대(烽臺), 동서남북의 방위, 경계(境界)까지의 거리 등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지도에 표기된 내

용은 지역에 따라 상세하거나 소략하는 등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즉 「광주전도(廣州全圖)」는 면 사이의 거리를 밝혔고, 「수원부지도(水原府地圖)」는 면 사이의 이정표(里程表)를 지도 상단에 표기하였다. 「영평군지도(永平郡地圖)」의 상단에는 도로(道路)·건치연혁(建置沿革)·군명(郡名)·성지(城池)·산천(山川)·성씨(姓氏)·교량(橋梁)·봉수(烽燧)·누정(樓亭)·사찰(寺刹)·고적(古蹟) 등을 기록하였다. 이 지도는 경기읍지의 채색지도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며, 크기는 한지 1매 정도로 전체 지도의 축적과는 관계없이 확대하는 등 비교적 상세하게 그렸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4) 『고려사(高麗史)』 지리지(地理志)

『고려사(高麗史)』는 1451년(문종 원년) 김종서(金宗瑞), 정인지(鄭麟趾), 이선제(李先齊) 등에 의하여 완성된 고려시대의 역사서 전체 구성은 세가(世家) 46권, 지(志) 39권, 표(表) 2권, 열전(列傳) 50권, 목록(目錄) 2권 등 총 139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은 건국과 더불어 전 왕조인 고려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태조(太祖) 때 『고려국사(高麗國史)』가 편찬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수(改修), 개찬(改撰) 등 보완이 이루어진 끝에 이 해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 것이다

『고려사』 지(志)의 구성을 보면 천문(天文) 3권, 역(曆) 3권, 오행(五行) 3권, 지리(地理) 3권, 예(禮) 11권, 악(樂) 2권, 여복(輿服) 1권, 선거(選擧) 3권, 백관(百官) 2권, 식화(食貨) 3권, 병(兵) 3권, 형법(刑法) 2권 등 총 12개 분야의 지 39권으로 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지리지는 권 56에서 권 58까지 3권이다 『고려사』 지의 이와 같은 체재는 그 구성이나 서술방식 등에 있어서 모두 원사(元史)의 체재를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리지의 내용은 서문(序文)과 왕경(王京)인 개성부(開城府)와 경기(京畿), 5도 양계(兩界)의 순으로 그 아래 군현의 구성을 서술하고 있다 즉 1단계는 5도와 양계이고, 2단계는 계수관(界首官)인 주목(主牧 경, 목, 도호)이며, 3단계는 일반 외관(外官)이 파견된 영현(領縣)이고, 4단계는 외관이 설치되지 않은 속현(屬縣)이다 이와 같은 체제는 조직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확하지 못한 부분도 많은데 이것은 『고려사』 지리지가 고려 전기의 주목 중심의 영속관계와 후기의 도(道) 중심의 영속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 편성함으로써 파생된 모순점이었다 고려 지방제도에 대한 편찬자들의 이해부족이 지리지 구조의 불균형을 나타내게 하였던 것이다.

이 밖에도 『고려사』 지리지는 고려시대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던 향(鄕), 부곡(部曲), 소(所)의 존재가 누락되고, 뒤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이는 바와 같은 인문지리적인 내용이 없는 등 결함을 지니고 있다

한편 지리지 서문에서는 고려가 고구려의 땅에서 일어났다고 하여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내세웠으며, 신라와 백제를 합하여 삼한을 통일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의 영역을 표시할 때는 고구려의 옛땅과 비교하고 있다 고려의 영역에 대하여 1만리에 달한다고 광대함을 표현하였고, 서북은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동북은 선춘령(先春嶺)을 경계로 삼았으며 서북은 고구려 때의 영토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동북은 이를 넘어섰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려사』의 기록 중 수원과 관련되는 명칭으로는 '수주(水州)',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 '수주목(水州牧)', '수원부(水原府')', '수원군(水原郡)', '한남(漢南)', '수성(隋城)' 등의 이름이 보인다

『고려사』 권56, 지리1, 수주(水州) 조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본래 고구려의 매홀군(買忽郡)으로 신라 경덕왕이 고쳐서 수성군이라 하였다 태조(고려)가 남쪽으로 정벌할 때 군인(郡人) 김칠(金七), 최승규(崔承珪) 등 2백여 인이 귀순하여 힘을 다한 공이 있어 올려 수주로 삼았다 995년(성종 14) 도단련사(都團練使)를 두었다가 1005년(목종 8)에 이를 파하고, 1018년(현종 9)에 지수주사(知水州使)로 복구하였다. 1271년(원종 12) 착량(笮梁)을 방수(防戍)하던 몽고병이 대부도(大部島)에 들어가 주민을 침탈하므로 주민들이 분노하여 몽고병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거늘 부사(副使) 안열(安悅)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서 평정하였는데 그 공으로 수원도호부를 삼았고, 뒤에 또 올려 수주목으로 삼았다 1310년(충선왕 2) 전국의 목(牧)을 폐할 때 수원부가 되었다 1362년(공민왕 11) 홍건적이 선봉을 보내어 양광도(楊廣道)의 주군을 초유(招諭)하여 항복케 하니 수원부가 가장 먼저 맞아 항복한지라 드디어 내려 군으로 삼았는데 군인(郡人)이 재신(宰臣) 김용(金鏞) 등에게 후한 뇌물을 주어 다시 부(府)가 되었다 별호(別號)를 한남(漢南)이라 하였는데 이는 성종이 정한 것이다 또 호를 수성(隋城)이라고도 한다 안산현(安山縣), 영신현(永新縣), 쌍부현(雙阜縣), 용성현(龍城縣), 정송현(貞松縣), 진위현(振威縣), 양성현(陽城縣) 등 7현이 속하였다"

그밖에 수원과 관련된 기록으로 『고려사』 권40, 1362년(공민왕 11) 5월 병신(丙申) 조에 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수원으로 가서 임시로 궁궐을 짓고 거처하려 하자, 이를 반대하는 감찰사(監察使)의 주장이 실려 있다 반대 이유로 수원은 좁고, 바다가 가까워 왜구가 염려되며, 맨 처음 홍건적에게 항복한 곳이므로 인심을 보장하기 어렵

다고 하였다 또한『고려사』권43, 1371년(공민왕 20) 7월 기미(己未)조에는 신돈(辛旽)을 수원에 유배하였다가 얼마 안되어 복주(伏誅)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5)『기전영사례(畿甸營事例)』

1894년(고종 31) 의정부(議政府)에서 엮은 책이며, 4책의 필사본으로 편자는 미상이다 의정부에서 유수영(留守營)인 개성(開城)·강화(江華)·광주(廣州)·수원(水原)의 신정(新定)사례를 종합한 책으로 갑오승총(甲午陞摠)에 따른 지방재정의 내역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제1책은 「개성부신정사례(開城府新定事例)」로 응입질(應入秩)·응하질(應下秩)·환모식(還耗式)·각고질(各庫秩)·구폐질(捄弊秩), 제2책은「강도사례(江都事例)」로 건치연혁(建置沿革)·폭원(幅圓)·면리(面里)·도서(島嶼)·직제(職制)·이예(吏隷)·향교(鄕校)·충렬사(忠烈祠)·군제(軍制)·구근초보(久勤抄報)·진보(鎭堡)·사영(四營)·부해(府廨)·군수고(軍需庫)·포량창(砲糧倉)·호창(戶倉)·부사(府司 田畓·結錢)·육궁(六宮)·사창(司倉)·별향창(別餉倉)·수성고(修城庫)·병고(兵庫)·고마고(雇馬庫)·예고(禮庫)·보민고(補民庫)·공방(工房)·지고(紙庫)·진고(賑庫)·저치고(儲置庫)·군기고(軍器庫)·약방(藥房)·장고(醬庫)·삼유영훈영(三留營訓營)·육궁도조대급전세상납수효(六宮賭租代及田稅上納數爻), 제3책은「갑오년광영사례(甲午年廣營事例)」로 군향(軍餉)·영고(營庫)·보향고(補餉庫)·보장고(保障庫)·별고(別庫)·성기(城機)·군기(軍器)·복호소(復戶所)·고마소(雇馬所)·숙창(稤倉)·병방소(兵房所)·예방소(禮房所)·예고(禮庫)·영선(營繕)·공고(工庫)·지통소(紙筒所)·이아관청(貳衙官廳)·이아공방(貳衙工房)·양향둔(糧餉屯)·전총(田摠)·결전질(結田秩), 제4책은 「화영사례(華營事例)」로 호총(戶摠)·전정소(田政所)·환향(還餉)·진제곡(賑濟穀)·외탕고(外帑庫)·봉부동(封不動)·관오고(筦午庫)·분봉상시(分奉常寺)·행궁수리소(行宮修理所)·저치고(貯置庫)·수성고·예고·보영고(補營庫)·영고·영선·지소(紙所)·노수고(路需庫)·책응고(策應庫)·장예고(奬藝庫)·별보고(別補庫)·광혜고(廣惠庫)·고마고·팔색고(八色庫)·향수고(餉需庫)·보향고(保餉庫)·군기고(軍器庫)·화약고(火藥庫)·이창(二倉)·수첩청(守堞廳)·금도청(禁盜廳)·방료소(防料所)·신설복고(新設復庫)·상춘소(湘春所)·녹명소(鹿鳴所)·둔소(屯所)·삼도둔(三島屯)·호방장(戶房掌)·각고속둔(各庫屬屯)·각도소재곡작전총(各道所在穀作錢摠)·별비미(別備米)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개성·강화·광주·수원의 재정 수입과 지출을 전(錢)·미(米)·포(布)·목(木) 등 항목별로 세부적인 규정을 자세하게 수록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경기각읍신정사례(京畿各邑新定事例) 2책』와 『경영신정사례(京營新定事例) 1책』 등이 있다 현재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6) 『기전영지(畿甸營誌)』

1895년(고종 32) 의정부에서 편찬한 수원·춘천(春川)·강화(江華) 등 3부의 읍지이다 3책의 필사본으로, 책의 크기는 세로 28 7㎝×가로 18㎝의 규모이며,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기전(畿甸)'이란 서울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간 행정구역을 포괄한 지역으로서, '경기(京畿)', '기내(畿內)'와 같은 명칭이다 조선시대에는 경기도의 일원(一圓)을 이르던 말로 쓰였으며, 경기도 관찰사를 '기백(畿伯)' 또는 '기찰(畿察)'이라 했고, 감(監)이 주재하는 관아를 '기영(畿營)'이라고 하였다

이 책의 내용 목차를 보면, 제1책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 제2책 「춘천지(春川誌)」, 제3책 「강화부읍지(江華府邑誌)」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말에는 '상지이십팔년 신묘 칠월일 풍양 조동면기(上之二十八年辛卯七月日豊壤趙東冕記)'라고 발문이 붙어 있다

먼저 제1책 「수원부읍지」의 목차는 폭원(幅圓)·읍명(邑名)·산천(山川)·방리(坊里)·단묘(壇廟)·능원(陵園)·전우(殿宇)·행궁(行宮)·관해(官廨)·사원(祠院)·관직(官職)·향관(鄕官)·장관장교(將官將校)·원역노령(員役奴令)·속읍역진목(屬邑驛鎭牧)·호구(戶口)·전결(田結)·부세(賦稅)·재용(財用)·세입(歲入)·환향진곡(還餉賑穀)·군총(軍摠)·성곽(城郭)·산성(山城)·봉수(烽燧)·교량(橋梁)·제언(堤堰)·둔전(屯田)·누대(樓臺)·지당(池塘)·각창(各倉)·각고(各庫)·장시(場市)·사찰(寺刹)·고적(古蹟)·과시(科試)·성씨(姓氏)·인물(人物)·충신(忠臣, 附忠奴)·효자(孝子)·효부(孝婦)·열녀(烈女)·부사유수(府使留守)·판관(判官) 등 비교적 조항이 세분된 읍지인데, 그 내용은 전대나 후대에 편찬된 수원의 다른 읍지에 비하여 간략한 편이다

이 읍지의 내용 구성 가운데서 능원·전우·행궁 조는 18세기 말 수원 신도시를 건설하고 화성행궁과 성곽을 축조한 정조와 관련된 기록이 많이 채록되어 있으며, 사원·부세조는 1871년(고종 8) 이후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호구수는 정조대에 편찬된 『수원부읍지』보다 적게 나타나 있으나 전결수는 거의 동일하다 『수원부읍지』, 『화성지(華城志)』, 『수원군읍지(水原郡邑誌)』 등과 함께 수원지방 읍지로서 참고가 되는 자료이다

한편 제2책 「춘천지」는 강계(疆界)·건치연혁·관원(官員)·군명·성씨·풍속·누정(樓亭)·학교·역원(驛院)·창고·불우(佛宇)·사묘(祠廟)·명관(名官)·고적·인물·제영(題詠) 등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제3책 「강화부읍지」는 1783년(정조 7)에 부사 김노진(金魯鎭)이 편찬한 계묘지(癸卯誌)를 1889년(고종 26)에 증보하고[己丑誌], 이를 영지(營誌) 편찬 때 전사(轉寫)하였다 그 내용은 책머리에 김노진의 서(序)와 제(題), 이노춘(李魯春)의 발(跋)이 있고, 권1~권4에 걸쳐 항목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남양군읍지(南陽郡邑誌)』

1899년(광무 3) 전국적인 읍지 편찬사업 때 이루어진 경기도 남양군 읍지이다 현재 전하고 있는 『남양군읍지』는 대략 4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①은 규장각 도서로 소장되어 있는 1책 13장의 필사본으로, 맨 앞머리에 채색(彩色)지도가 붙어 있고, 그 규모는 세로 32 3㎝×가로 21 4㎝의 크기이다(奎 No 10705) ②는 역시 규장각도서에 있는 연기미상(年紀未詳)의 『남양부읍지(南陽府邑誌)』로서 1책 4장의 간략한 필사본이다(古 915 12-N152b) 이 소략한 읍지의 맨 앞에는 역시 채색지도가 붙어 있는데, 그 규모는 세로 30 4㎝×가로 20 5㎝의 크기이다 ③은 장서각도서에 소장되어 있는 1책의 『남양읍지(南陽邑誌)』로서, 이는 광무 3년에 편찬되어 역시 채색지도를 넣어 편찬된 필사본이다 ④는 1760년(영조 36)에 편성된 『여지도서(輿地圖書)』 경기도 편에 수록된 『남양읍지』로서, 이 역시 앞머리에 채색지도가 붙어 있는 7장의 필사본이다

먼저 ①의 『남양군읍지』의 저본은 그 항목 내용으로 미루어 1842년(헌종 8)에 편찬된 『경기지(京畿誌)』 (奎 No 12178) 제2책의 「남양읍지」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 읍지의 본문 첫 내리에는 「남양도호부사 겸 남양진 병마첨절제사 좌영장 총융청 전영장 좌토포사(南陽都護府使 兼 南陽鎭 兵馬僉節制使 左營將 摠戎廳 前營將 左討捕使)」라 기재되어 있고, 다음에 항목으로 나누어 간략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즉 내용구성은 건치연혁(建置沿革)·군명(郡名)·관직(官職)·성씨(姓氏)·산천(山川)·풍속(風俗)·방리(坊里)·호구(戶口)·전부(田賦)·요역(徭役)·군액(軍額)·성지(城池 無)·창고(倉庫)·관방(關防 無)·진보(鎭堡)·봉수(烽燧)·학교(學校)·단묘(壇廟)·능묘(陵墓)·불우(佛宇)·누정(樓亭)·도로(道路)·교량(橋梁)·제언(堤堰)·도서(島嶼)·장시(場市)·궁실(宮室 無)·어염(魚鹽)·역원(驛院)·목장(牧場)·형승(形勝)·고적(古蹟)·토산(土産)·진공(進貢)·봉름(俸廩)·환적(宦蹟)·과거(科擧)·인물(人物)·제영(題詠)·비판(碑板) 순이다 한편 1871년(고종 8)에 편찬된 『경기읍지(京畿邑誌)』(奎 No 12177) 제6책에 수록된 『남양군읍지』와는 각 조목의 배열 순서는 틀리나 기본적으로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이 읍지의 「방리」조에는 화척지면(禾尺只面)·미지곶면[旀知串面]·저팔리면(楮八里

面)·분향리면(分鄕里面)·둔지곶면(屯知串面)·음덕리면(陰德里面)·마도면(麻道面)·신리면(新里面)·서여제면(西如堤面)·송산면(松山面)·세곶면(細串面)·수산면(水山面)·쌍수리면(雙守里面)·대부도면(大阜島面) 등 14면과 각 이동(里洞)을 주기(注記)했고,「호구」조에는 6,326호에, 인구 22,294구를 기록해 놓았다「진보」조에서는 화량진(花粱鎭)의 역사적 유래를,「봉수」조에서는 염불산봉대(念佛山烽臺)와 해운산봉대(海雲山烽臺)의 기능·거리·봉수 담당 원역(員役)이 기재되어 있다「역원」조에는 양재역(良才驛)에 딸린 해문구화역(海門仇火驛)이 영화역(迎華驛)에 속하게 된 사실을,「목장」조에는 대부목장(大阜牧場)의 거리·규모·목자(牧子)·마필(馬匹) 수를 각각 기재하였다「과거」조에는 홍숙(洪淑)·홍언필(洪彦弼)·홍섬(洪暹)·홍담(洪曇)·홍가신(洪可臣)·홍경신(洪慶臣)·홍익한(洪翼漢)·박세훈(朴世勳)·박세희(朴世熹)·최동립(崔東立)·방사량(方士良) 등 44명의 문과(文科) 급제자를 수록했고,「제영」조에는 김지남(金止男)·심전(沈銓)·박세희(朴世熹)·이준민(李俊民)·이홍남(李洪男)·김만기(金萬基)·정홍제(鄭弘濟) 등 역대 부사·관찰사·총융사·선비들의 시작(詩作)이 첨부되어 있다

앞의 규장각도서에 있는 ②『남양부읍지』는 맨 앞머리에「남양도호부사 겸 경리청 전영장(南陽都護府使 兼 經理廳 前營將)」이라 기재된 다음에 방리·도로·건치연혁·군명·형승·성[無]·관직·산천·성씨·풍속·능침(陵寢 無)·단묘·공해·제언·창고·물산(物産)·교량[無]·역원[無]·목장[無]·관액(關扼 無)·봉수·사찰·고적·진보·인물·한전(旱田)·수전(水田)·진공·조적(糶糴)·전세(田稅)·대동(大同)·친군영세(親軍營稅)·봉름·군전(軍錢)·책판(冊板 無)·누정 순으로 항목마다 소략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장서각도서에 있는 앞의 ③『남양읍지』의 항목은 연혁·방리·결총(結摠)·호구·환총(還摠)·역도(驛賭)·풍속·고적·토산·인물·충효열(忠孝烈)·명환(明宦)·능묘·사찰(寺刹)·성첩(城堞)·봉수·산천·명승(名勝)·제영·선생안(先生案) 순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특기할 사항은 다른『남양군(부)읍지』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선생안」조가 열거되어 있는 301명의 읍쉬명단(邑倅名單)은 남양부에 지방관으로 부임한 역대 수령들의 명단이라는 점에서 좋은 연구자료가 되어 준다

④의『여지도서』경기도편에 수록되어 있는『남양읍지』는 첫머리에「남양도호부사 겸 좌영장 수원진관(南陽都護府使兼左營將水原鎭管)」이라 쓴 뒤에 다음과 같은 항목과 내용을 구성해 놓았다 방리·건치연혁·군명·관직·산천·성씨·풍속·단묘·능침·공해·제언·창고·물산·역원·목장·봉수·누정·사찰·고적·진보·인물·한전·수전·진공·조적·대동·균역청·봉름·군병(軍兵) 등이다

8) 『남양부읍지(南陽府邑誌)』

연기미상의 남양부읍지로서, 편자는 남양부이다 1책 4장의 필사본으로 책머리에는 남양부의 채색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이 필사본의 크기는 세로 30 4cm, 가로 20 5cm의 규모로 현재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앞의 『남양군읍지』 참조)

9) 『남양읍지(南陽邑誌)』

'남양읍지'라는 제명으로 전해오고 있는 것은 다음의 ①, ② 두 종류가 있다 ①은 남양도호부(南陽都護府)편의 『남양읍지』인데, 원래의 필사본은 1871년(고종 8)이지만 이 책은 1910~1945년에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1책 41장의 이 필사본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②는 남양군편의 『남양읍지』로서, 이 책 필사본이 이루어진 연대는 1899년(광무 3)이다 1책 26장의 이 필사본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앞의 『남양군읍지』 참조)

10) 『대동지지(大東地志)』

조선 후기 순조·헌종·철종·고종 초에 살았던 김정호(金正浩 호 古山子)가 편찬한 지리서이다 32권 15책의 필사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고려대학교 도서관·규장각 도서에 소장되어 있다 김정호는 소년시절부터 지리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전국 각지를 두루 답사하여, 1837년(헌종 3)경에 『청구도(靑丘圖)』를 완성하였는데,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 후 다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완성하여 1861년(철종 12)에 간행하였다 그 후 1864년(고종 원년)에 『대동여지도』의 재간(再刊)과 함께 『대동지지』를 완성했는데, 이 『대동지지』 기록의 하한은 1863년(철종 14)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대동여지도』와 함께 『청구도』의 자매편이라 할 수 있는데, 『대동여지도』가 『청구도』의 지도적인 면을 다시 정리하여 좀더 간편하고 실용적이며 정확성을 기하려 했다면, 『대동지지』는 『청구도』의 지지적(地誌的)인 면을 한층 확대하고 보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동지지』는 『청구도』에 대한 지지(地誌)이며, 『청구도』는 『대동지지』의 부도(附圖)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32권 15책의 『대동지지』는 권25 「산수고(山水考)」와 권26 「변방고(邊防考)」가 결본(缺本)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총괄·팔도지지·산수고·변방고(邊防考)·정리고(程里考)·역대

지(歷代志) 등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괄 부분은 전체 목차인 총목과 항목을 풀이한 문목(門目), 그리고 인용서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가 참고한 국내 서적으로는 『삼국사기』(지리지)·『고려사』(지리지)·『동국여지승람』·『동국문헌』(여지고)와 군읍지 등 43종, 중국 서적으로 22종에 이를 만큼 광범위한 자료를 섭렵했음을 알 수 있다

권1은 경도(京都)·권2는 경기도 사도(四都), 곧 수원부·광주부·개성부·강화부를, 권3은 경기도 13읍(교동·파주·양주·고양·교하·가평·영평·포천·적성·장단·삭령·마전·연천), 권4는 경기도 14읍[여주·죽산·이천·양근·지평·음죽·양지·남양·인천·통진·부평·안산·안성·김포·진위·용인·양천·과천·양성·시흥·강역(疆域)·전민(田民)·역참(驛站)·봉수·총수(總數)], 그리고 충청도(권5·6)·경상도(권7~10)·전라도(권11~14)·강원도(권15·16)·황해도(권17·18)·함경도(권19·20)·평안도(권21~24), 그리고 권25 산수고(결락)·권26 변방고(결락)·정리고(程里考, 권27·28)·방여총지(方輿總志, 권29~32) 순이다

이 중에서 권2 경기도 4도 중에서 총괄과 수원부 2조를 보기로 한다 먼저 경기도 총괄 부분에서 그 역사적 유래와 변천과정을 개괄한 뒤 소항목으로 순영(巡營 漢城府)·총리영(摠理營 수원부)·수어영(守禦營 광주부)·관리영(管理營 개성부)·진무영(鎭撫營 강화부)·통어영(統禦營 喬洞府)·병마방영(兵馬防營 坡州牧)·수군방영(水軍防營 永宗鎭)·토포영(討捕營 摠戎前營 南陽·摠戎後營 長湍·守禦中營 楊州·守禦後營 竹山)·양주진관(楊州鎭管)·장단진관(長湍鎭管)·여주진관(驪州鎭管)·남양진관(南陽鎭管) 순으로 열거하였다

이어서 「수원부」조는 연혁(유래와 邑號 . 漢南·隋城·華城, 官員)·고읍(古邑 龍城·廣德·雙阜·貞松)·방면(坊面 . 南部·北部·日用·荊石·松洞·南谷·山城·漁灘·葛潭·東北·梅谷·三峯·雨井·晴湖·楚坪·正林·床笏·南面·八灘·楊州·宗德·貢鄕·長安·草長·水北·五朶·靑龍·宿城·梧井·浦內·玄岩·鴨汀·慶德·土津·佳士)·산수(山水)·형승(形勝)·성지(城池 府城·禿城·山城·舊邑城)·영위(營衛 摠理營)·봉수·창고·역참·진도(津渡)·교량·목장·토산(土産)·궁실·묘전(廟殿)·능원·사원·전고(典故) 순으로 항목을 설명하였다

「연혁」항 중 '관원(官員)'으로는 유수(겸 摠理使)·판관(겸 華寧殿令管域將)·총리영(겸 後事官)·검률(檢律)·의학(醫學) 각 1원 등을 기재, 고종대 이전의 지방관을 반영했고, 「방면」항 맨 뒤에는 주석향(柱石鄕)·분촌향(盆村鄕)·육내미부곡(陸內彌部曲)·제촌부곡(堤村部曲)·청구부곡(靑邱部曲)·사량부곡(沙梁部曲)·공촌부곡(公村部曲)·신영장(新永莊)·금음촌처(今音村處)·심곡처(深谷處)·유제처(楡梯處)·고등촌처(古等

村處)·사정처(奢井處) 등 신라 이래 고려시대까지 존속했던 향·부·곡·장·처의 이름을 병기(併記)하였다

「영위」항에는 총리영, 관원으로 총리사·중군(中軍 겸 華寧殿衛將·討捕使·禿城別將)·별효사별장(別驍士別將)·오사파총(五司把摠)·협수겸파총(協守兼把摠)·둔아병파총(屯牙兵把摠)·척후장(斥候將)을, 「창고」항에는 창4 고23(內城), 3창(龍珠寺), 4창5창(山城), 7창(靑龍), 8창(貢鄕)·9창(雨井)을, 「역참」항에는 영화도(迎華道 察訪 1員 겸摠理斥候將·屬驛 11)와 혁폐(革廢)된 역으로 장족역(長足驛 東30리)·동화역(同化驛 西25리)·청호역(菁好驛 南40리)을 기재하였다 「교량」항에는 대황교(大皇橋)·오목천교(梧木川橋)를, 「목장」항에는 홍원곶장(洪原串場)·양야곶장(陽也串場)을, 「누정」항에는 영화정(迎華亭)·항미정(抗眉亭)을 기재하면서, 영화정은 장안문 북쪽 3리 지점으로 유수가 교구(交龜)한다고 하여 이때까지 정조대에 이룩된 만석거(萬石渠)에 건재해 있었음과 일명 '교구정(交龜亭)'의 유래도 알게 해주고 있다 「묘전」항에는 화령전(華寧殿)에 정조의 어진(御眞)이 봉안되었음과 1년 중 탄일(誕日)·납일(臘日) 두 차례 제향되는 사실, 그리고 관원으로는 영(令) 2원 중 1원은 판관이 겸하고, 위장(衛將) 2원 중 1원은 중군이 겸했고, 수문장 2원은 수원부에서 계(啓)하여 참봉 각 1원을 차출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정조의 사후 순조 원년에 건립된 화령전이 정조의 어진을 봉안하고 있으며, 그 제향 행사가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전고」항에는 고려 말 왜구가 수원부 경계에 자주 침입하여 분탕한 사실, 조선 임진왜란 때 의병장 김천일(金千鎰)의 의병부대와 전라감사 권율(權慄)의 근왕병이 용인 김령(金嶺)과 독성산성에서 승전한 사실, 그리고 1621년(광해군 13) 12월에 충청·전라·경상도 3도병 각 3천명이 수원에 주둔했고, 이어서 1728년(영조 4) 이인좌난(李麟佐亂) 때 청주가 함락되자 총융사 김중기(金重器)가 수원에 출진한 사실을 기록하는 등 편찬된 다른 수원읍지보다 역사적 유래와 실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권4 경기도 20읍 중 「남양」조에는 맨 앞머리에 연혁을 비롯하여 고읍(古邑 載陽)·방면(坊面 府內·禾尺·楮八里·屯之山·新里·松山·彌之串·分鄕·麻道·面如堤·細串·水山·雙守里)·산수·형승·성지·영위(營衛 摠戎前營)·진보(鎭堡 花梁鎭·永宗浦鎭)·봉수(烽燧 念佛山·海雲山)·창고[邑倉2·海倉·新倉·外倉(분향면)]·목장[大部場·屬場·廢場]·토산·사원(祠院 龍柏祠)·전고항 순으로 목차와 내용을 구성하였다 특히 「전고」항에는 신라 이래 남양의 역사적 유래를 밝히면서 고려 말 충정왕·공민왕·우왕대에 왜구가 침입한 사실과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향화반민(向化叛民)의 인도를 청병이 침입했을 때 부사 윤계(尹棨)가 적을 꾸짖고 순절한 사실을 기재해 놓았다

11)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저자는 유형원(柳馨遠)으로 1622년(광해군 14)에 태어나 1673년(현종 14)에 졸하였다 본관은 문화(文化)이며 자는 덕부(德夫), 호는 반계(磻溪)이다 세종 때 우의정을 지낸 유관(柳寬)의 9대 손이며 증조부는 유위(柳湋), 조부는 유성민(柳成民)이다 부친은 예문관 검열을 지낸 유순(柳愃)이며 모친은 참찬을 지낸 이지완(李志完, 여주 이씨)의 딸로 서울 출신이다 18세 때 혼인하였는데 부인은 심수경(沈守慶)의 증손녀이고, 심은(沈誾)의 딸이다

『동국여지지』가 편찬된 것은 1656년(효종 7)이다 그러나 현전 필사본에 보면 1660년대 후반까지의 내용이 추보되어 있다 그 내용은 권1 경도(京都 서울), 한성부, 개성부, 권2 경기, 권3 충청도, 권4 경상도, 권5 전라도, 권6 황해도 권7 강원도, 권8 함경도, 권9 평안도로 구성되어 있다 9권 10책의 필사본으로 전해지다가(규장각 소장) 1983년에 아세아문화사에서 한국지리총서 가운데 『전국지리지』제3권으로 영인, 출판하였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다만 역사지리적인 강역의 변천 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조선후기에 한백겸의 『동국지리지(東國地理誌)』 이래 역사지리학이 발전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동국여지지』는 유형원의 『반계수록(磻溪隧錄)』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 그의 토지개혁론 등 그의 사회개혁 사상을 밑에 깔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술되었다 각 군현별 사항에서는 한전, 수전을 맨 앞에 놓고 토지 단위도 그의 주장대로 면적에 따른 경무법으로 하고 실제 수치는 비워두어 경무법 단위의 토지 개혁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였다 또 실제 지역 정치를 위해 불필요한 제영(題詠)이나 성씨조 같은 것을 삭제하고 누정과 같은 것도 관련항목에 통합하였다 즉 『동국여지지』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비하여 실용성과 개혁의 관점에서 지역 위주로 문제를 파악하며 그 실상을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려 한 점이 특징이다

또 단순한 자료의 수집과 나열이 아니고 치밀하게 고증하려 하였다 이 점에서 일종의 연구로 볼 수 있다 『동국여지지』는 16세기 후반 이래 활성화된 읍지 편찬의 성과 및 『동국지리지(東國地理誌)』의 역사지리학과 문헌고증적 태도를 종합한 것이다 『동국여지지』를 통해 우리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이후 17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더욱이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기존 지리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동국여지지』범례에는 수원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항목들이 있다

『동국여지지』에서 수원에 관련된 내용은 제2권 경기(京畿) 부분 가운데 수원도호부

(水原都護府) 항에 실려 있다 세부 항목은 한전(旱田), 수전(水田), 건치연혁(建置沿革), 군명(郡名), 형승(形勝), 풍속(風俗), 산천(山川), 토산(土産), 성곽(城郭), 학교(學校), 궁실(宮室), 봉수(烽燧), 우역(郵驛), 관량(關梁), 사묘(祠廟), 능묘(陵廟), 사찰(寺刹), 고적(古蹟), 명환(名宦), 인물(人物)로 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비교해 살펴보기로 한다

수원도호부 항목의 서두에 한전과 수전 항목을 두면서 그 내용을 비워 놓은 것은 다른 지역 항목과 같다 건치연혁 항목에서는 "본래 백제 지역이었지만 고구려가 취하여 매홀군(買忽郡)이라 했다"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본래 고구려 지역"이라고 했으나 『동국여지지』의 이 기록이 보다 정확하다 다만 고구려가 점령했을 시기에 군(郡)이라는 지방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홀(忽)이 지방제도의 단위였다고 생각된다 건치연혁 항목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세조 때 진을 설치하고 판관을 둔 것에서 끝나고 있으나 본서에서는 그 이후의 변화가 증보되어 있다 즉 중종 때 군(郡)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도호부로 복구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속현으로 쌍부현(雙阜縣)과 용성현(龍城縣)이 있으나 『동국여지지』에는 없다 이 시기에는 이미 속현이 모두 소멸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풍속 항목에서는 "농사에 열심이며 활쏘기에 힘쓴다"고 하였다 이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없던 내용이다 성곽 항목에서 "부성(府城 읍성)은 흙으로 쌓았는데 이제 모두 허물어졌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정조 때 팔달산 아래로 옮기기 전 수원부의 성곽을 가리킨다 이미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모두 허물어졌다고 하였다 한편 성곽 항목에는 독성산성(禿城山城)이 추가되어 전략적 중요성과 임진왜란 때 권율(權慄) 장군이 이곳에 진을 쳐 승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임진왜란 이후 국방에 대한 관심 증대를 엿볼 수 있다

학교 항목에서는 수원부의 서쪽 2리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현 위치인 팔달산 아래로 옮기기 전의 것이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서쪽 3리로 되어 있는데 향교의 이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본서 필사의 오류라고 생각된다 다음의 궁실 항목은 새로 넣은 것으로 향사당(鄕射堂), 군영(軍營), 운금루(雲錦樓), 진남루(鎭南樓) 등에 대한 언급이 있다 운금루의 경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누정 항목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으나 본서에서는 누정 항목을 없애고 궁실 항목 속에 넣어 간략히 언급하였다 진남루는 변응성(邊應星)이 독성산성을 수리한 뒤 그 안에 세운 것이다 봉수와 역 항목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차이가 없으나 관량(關梁 關과 교량) 항목이 추가되어 여기서 혜남루(惠南樓), 대곶교(大串橋), 주교(舟橋), 대진도(大津渡)에 대해 언급하였다 사묘 항목은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차이가 없으며, 능묘 항목에서는

이종생(李從生)의 묘가 추가되어 있으며 사찰 항목에서는 객사 남쪽의 반룡사(盤龍寺)가 누락되어 있다 고적 항목에서는 새로이 쌍부현, 용성현이 폐현으로 언급되어 있고 반룡사에 대해 폐사되어 그 터가 민가가 되었다고 하였다 명환 항목에는 우성전(禹性傳), 변응성(邊應星), 정엽(鄭曄)이 추가되어 있다 인물 항목에는 변동이 없다 끝으로 『동국여지지』의 수원도호부 항목은 『반계수록』 보유의 군현제 부분에 있는 수원 항목과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12) 『동국지리지(東國地理誌)』

1615년(광해군 7) 경에 한백겸(韓百謙)이 지은 역사지리서이며 1책 60장으로 구성된 목판본이다 내용의 구성은 중국 역대 사서의 열전에 기록된 우리나라 부족국가에 대한 서술을 인용하여 쓴 부분과 삼국에 대한 서술 및 부록으로 붙인 부분, 고려에 대한 서술 부분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족국가에 대한 기록은 『전한서(前漢書)』의 조선전, 『후한서(後漢書)』의 고구려전, 동옥저전, 예전, 부여전 등의 원전을 약간 축약하여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신의 사론적 성격의 견해는 '우안(愚按)'이라는 표현으로 덧붙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부족국가의 위치, 강역, 종족 및 사실의 신빙성 문제가 언급되어 있다

삼국에 대한 부분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서로 국도(國都), 봉강(封疆), 형세, 관방(關防)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국도는 각 나라의 옛 국도를 시대순으로 적고, 국도를 정하게 된 내력을 설명하였는데, 첫 국도에는 개국전설을 싣고, 마지막 국도에는 몇 왕, 몇 년만에 나라가 멸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봉강부분에서는 그 나라의 영역 내에 흡수된 부족국가나 역사적 유래가 있는 지명에 대한 설명이 있다 삼국의 형세와 관방에 대한 부분에서는 당시의 역사에서 전투지역으로서 요충지였던 강(江), 현(峴), 영(嶺), 성(城), 책(柵), 진(鎭)이 적혀 있고, 어느 곳인지 분명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저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고려시대에 관해서는 국도에서 개성부, 서경, 남경, 동경, 강도(江都), 중흥전(重興殿), 신경(新京), 북소궁(北蘇宮)에 대한 설명과 봉강, 형세 관방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었다 이 책에 인용된 사서는 부족국가에 대해서는 주로 『전한서』, 『후한서』의 동이열전이며 그밖에 『위씨춘추(魏氏春秋)』, 『두씨통전(杜氏通典)』, 『동관서(東觀書)』 등이 인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자료는 인용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단군조선에 대한 서술은 없다

삼국시대 부분에서는 『동사(東史)』와 김부식(金富軾)의 『고구려지(高句麗志)』 그리

고 『고려사』, 『동국여지승람』, 『통전(通典)』, 『문헌통고(文獻通考)』, 『송사(宋史)』, 『한서(漢書)』 등이 인용되었으나, 사서의 인용없이 서술한 부분이 많다 고려시대에 대하여서는 『고려사』 본기, 『여지승람(輿地勝覽)』의 인용이 한두 차례 있을 뿐 사서의 인용없이 서술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역사지리학의 창시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역시지리 연구에 많은 자극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규장각(奎章閣) 소장 도서이다

수원에 관한 기사로는 『삼국사기』 지리지나 『고려사』 지리지에 보이는 내용 이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

13)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地理志)

『삼국사기』는 1145년(고려 인종 23) 김부식(金富軾)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삼국시대의 정사(正史)이다 기전체(紀傳體)의 사서(史書)로 본기(本紀) 28권(신라 12권, 고구려 10권, 백제 6권), 지(志) 9권, 표(表) 3권, 열전(列傳) 10권 등 총 50권으로 되어 있다 이 중 지의 구성을 보면, 제1권은 제사(祭祀)와 악(樂), 제2권은 색복(色服), 거기(車騎), 기용(器用), 옥사(屋舍)이며, 제3권부터 제6권까지 4권은 지리지(地理志), 나머지 제7권에서 제9권까지는 직관지(職官志)인데, 이처럼 지리지의 분량이 다른 지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다른 사서들의 예로보아 특이하다 또한 지리지의 내용은 질적으로 보아 당시의 역사지리를 연구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후세 지리지 편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크다

목차를 보면 국토의 전역을 비롯하여 주(州), 군(郡), 현(縣)의 위치와 연혁(沿革)에 중점을 두었고, 다음 시대의 지리지에서 볼 수 있는 인물(人物), 물산(物産), 공부(貢賦), 교통(交通)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오는 수원과 관계되는 지명은 '매홀(買忽)', '수주(水州)', '수성군(水城郡)' 등이다 『삼국사기』 권35, 지리2에 "수성군은 원래 고구려의 매홀군(買忽郡)을 경덕왕(景德王)이 개칭(改稱)한 것인데 지금의 수주(水州)이다(水城郡 本高句麗買忽郡 景德王改稱 今水州)"라고 하였고, 『삼국사기』 권37, 지리4, 한산주(漢山州)조에 "매홀, 수성이라고도 한다(買忽 一云水城)"라고 한 대목이 있다 그밖에 『삼국사기』에 나오는 기록으로는 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憲德王) 15년 2월조에 "수성군과 당은현을 합쳤다(合水城郡唐恩縣)"라고 한 기사가 있다

한편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나해니사금(奈解尼師今) 3년 5월조에 보이는 '수

주현(水州縣)'과 권3, 신라본기3, 자비마립간(慈悲麻立干) 12년 7월조의 '수주군(水州郡)', 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憲德王) 16년 5월조에 나오는 '수주군인민(水州郡人民)'은 「수해(水害)를 당한 주, 군, 현이나 그 백성」을 지칭한 것으로 수원과는 무관한 대목으로 보인다

14)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

1454년(단종 2)에 완성된 『세종장헌대왕실록(世宗莊憲大王實錄)』의 제148권에서 제155권에 실려있는 8권 8책의 전국지리지이다 세종은 즉위 6년인 1424년 11월 15일에 대제학 변계량(卞季良)에게 지지(地誌) 및 주, 부, 군, 현의 연혁을 지어 바칠 것을 명하였다 이 사업을 주관하게 된 춘추관에서는 우선 전국적으로 자료가 될만한 것을 수집하는 한편 1425년 경상도지리지의 발간을 시작으로 전국 8도의 지리지 편찬작업이 추진되어 7년만인 1432년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로 편찬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편찬된 『신찬팔도지리지』는 그 뒤 다시 보완이 되면서 22년이 지난 1454년 3월 『세종실록』에 포함이 되어 지리지로서 완성을 보게 된 것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내용 구성은 제148권 경도한성부(京都漢城府), 구도개성유후사(舊都開城留後司), 경기도관찰(京畿道觀察)에서 시작하여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의 순서로 되어있으며 제155권 함길도(咸吉道)에서 끝난다.

경도한성부의 내용을 보면, 수도로서의 개관적인 내용으로 연혁을 비롯하여 부윤(府尹), 판사(判事) 등의 관직, 명칭의 개폐, 종묘, 궁궐의 건립, 도성의 주위, 4대문과 4소문 등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한성부 내의 행정구역인 동, 서, 남, 북, 중의 5부와 그 소속 방명(坊名), 방수(坊數), 호수(戶數), 간전(墾田), 결수(結數)를 밝혔다. 이어서 종묘, 사직, 문묘, 왕궁, 궁전, 누, 교, 관 등에 관하여 각각 명칭의 유래를 상세히 서술하였다 다음에는 산천, 제단(祭壇), 적전(籍田), 도진(渡津), 빙고(氷庫), 조지소(造紙所), 활인원(活人院), 귀후소(歸厚所), 사찰(寺刹), 봉경(封境) 등의 주석을 달면서 그 위치, 수량, 유래 등을 설명하였다

구도개성유후사조에서는 대체로 경도한성부의 항목과 비슷하나 다소 간략하고, 송도팔경, 영이(靈異) 등을 더하였다 경기조를 보면 처음에 관원과 정원, 연혁, 4경(위치와 면적), 행정구역, 명산, 대천 등으로 역사적 고찰과 자연환경을 기록하였고, 다음으로 호구, 군정, 간전(墾田), 공부(貢賦), 약재(藥材), 진영(鎭營), 역(驛) 등 경제, 재정적 항목들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이에 속한 1목, 8도호부, 6군, 26현을 모두 단위별로 들어 설명하였다 경기도를 비롯한 각 도 및 그 하부의 단위별 내용

구성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20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연혁, 4경(四境), 산천, 궐토(厥土), 풍기(風氣), 토의(土宜), 호구, 군정, 성씨, 간전, 토산 및 토공(土貢), 약재, 목장, 어량(魚梁), 염소(鹽所), 철장(鐵場), 도자기소, 고적, 역, 조운(漕運) 등이다

여기서 연혁은 역사적 고찰이 되고, 4경·산천·궐토·풍기·토의 등은 지인(地人)의 지(地), 즉 자연환경에 관한 것이며 호구·성씨·군정 등은 인(人), 즉 인간에 해당되는 것이다 간전·토산·약재·목장·어량·염소·철장·도자기소·목장 등은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교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경관을 의미하고, 역·조운은 통신, 교통과 관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세종실록』지리지는 현존하는 최고의 조선 초기 전국지리지로서 사서(史書)의 부록이 아니라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지리서로서 그 내용이 국가통치에 필요한 여러 자료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국토의 위치와 연혁에 치중하여 지명의 설명과 나열을 위주로 하였던『삼국사기』지리지 체제를 탈피하여 인문지리, 자연지리, 경제, 군사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 조선 초기의 지리지 편찬체제가 확립되었으며 그 뒤의 지리지 편찬의 모범이 되었다 특히 지방명칭의 변천, 행정단위의 승강(陞降) 등이 기록된 연혁, 소관(所管)조 등의 행정관계 내용과 호구, 군정·공부·전결·토산 등의 경제, 재정관계 내용, 명산·군영·성곽·목장·관방조 등의 군사관계 내용, 성씨·인물 등 주민들의 신분구성에 관한 내용들이 상세하여 조선 초기의 정부가 통치 확립에 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15세기 조선의 경제, 사회, 군사, 재정, 교통, 산업, 지방제도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 있어 역사지리학과 지방사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꼽히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수원에 관한 기사는 권148, 지리지, 경기 수원도호부조에 서술되어 있다 연혁에 해당하는 내용 중 고려 말까지의 사정은『고려사』지리지의 내용과 동일하며, 다만 조선 건국 이후인 1413년(태종 13) 도호부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첨가되었다 속현은 쌍부, 영신, 정송, 용성, 광덕(廣德) 등 5개이고, 향(鄕)은 공이(工二), 주석(柱石), 분촌(盆村) 등 3개, 부곡(部曲)은 육내미포(陸內彌浦), 내미(內彌), 사량(沙梁), 쟁홀(爭忽) 등 4개이다 처(處)는 사정(砂井), 금물촌(今勿村), 유제(楡梯), 양간(楊干), 심곡(深谷) 등 5개이고, 장(莊)은 오타(五朶), 종덕(宗德), 신영(新永) 등 3개이다 4경에 대한 설명으로 동(東)은 용인(龍仁)에서 17리, 서(西)는 쌍부 팔라곶(八羅串)에서 55리, 남(南)은 충청도 평택현 유지두(酉只頭)에서 65리, 북(北)은 과천에서 21리 떨어졌다고 했다

다음으로 호는 1,842호이고, 인구는 4,926명이며,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 197

명, 선군(船軍)은 405명이라 하였다 성씨에 관해서는 본부(本府)와 각 현, 향, 부곡, 처, 장 별로 기록하였는데 수원도호부의 경우 토성(土姓)으로 최(崔), 김(金), 이(李), 서(徐) 등 4개, 경래성(京來姓)으로 백(白) 1개, 촌락성(村落姓)으로 하(河) 1개, 망성(亡姓)으로 백(白), 최(崔), 이(李), 방(方) 등 4개가 있다. 인물은 한림학사(翰林學士), 국자사업(國子司業) 최루백(崔婁伯)을 들었고, 궐토와 간전(19,154결), 토공, 약재, 염소(6개), 어량(2개)이 있다고 하였다 읍토성(邑土城)에 관한 설명으로 둘레가 270보이며 성내에 우물이 2곳이라 하였다 그 밖에 역 2개, 목장 2개, 봉화 1개가 있다 영도호부(領都護府)로 남양(南陽)이 있고, 영군(領郡)으로는 안산(安山)과 안성(安城) 2개, 영현(領縣)은 진위(振威), 용인, 양성(陽城), 양지(陽智) 등 4개가 있다고 하였다

15) 『수원군읍지(水原郡邑誌)』

1899년(광무 3) 5월 전국의 읍지 상송령에 따라 당시의 수원군수 이범선(李範善)의 주관 아래 편찬된 수원군 읍지이다 1책의 필사본인 『수원군읍지』는 현재 규장각도서 소장의 2종, 즉 ① 1책 58장, 세로 26㎝×가로 19㎝ 크기의 읍지(No. 10702), ② 1책 63장의 세로32 3㎝×가로 21 4㎝ 크기의 읍지(고 915 12 - Su 96g), 그리고 ③ 장서각도서에 소장된 읍지 1책 등 모두 3종이 대표적인 것이다

규장각도서의 ①②『수원군읍지』는 내용이 동일하므로 먼저 이들 읍지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항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수원군읍지』는 사례적인 성격을 띤 읍지로서, 본문 중 2행으로 기록된 주기(注記)는 조선후기의 『수원부읍지』, 『화성지』 이후 급격히 변화된 고종 연간의 사회적·행정적 사정을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다 또 '광무 3년 5월 일 수원군읍지'라는 연대와 제명 다음에 목록을 싣고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검토해 보면 내용의 목차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있다

①② 읍지의 내용 구성을 보면, 폭원·건치연혁·읍명·읍치·방리·호구(戶口·戶摠)·결총·성곽·산천·산성·진도·도서(島嶼)·필로(蹕路)·교량·봉수·제언·둔전·우역(郵驛)·능원·전우·행궁·관해·단묘·사원·형승·누정·지당·각창·장시·사찰·성씨·인물·충신·효자·효부·열녀·고적·풍속·물산·부세·관직(官職 儒任, 鄕官, 將官)·원역·군총·관찰부(觀察府)·지방대(地方隊)·본군(本郡)·우체사(郵遞司)·소학교(小學校)·지방영(地方營)·부사선생(府使先生)·영선생(營先生)·읍선생(邑先生)·관찰사선생(觀察使先生)·판관선생(判官先生)·군수선생(郡守先生) 등 순으로 나누어 기재하였다

위의 「방리」조에는 40면 449동에는 종전에 두었던 풍헌(風憲)·약정(約正)·기찰(譏察)·이정(里正)·권농(勸農) 각 1인을 모두 폐하고 현재는 면장·이장·권농 각 1인을 두고 있음을 밝혔으며, 각 면에는 2행으로 관할 이동(里洞)을 주기해 놓았다 조선후기에 편찬된 『수원부읍지』는 「방리」조에서 호구를 면별(面別)로 밝히고 있으나 『수원군읍지』는 『화성지』 호구조의 전통을 계승, 원호(元戶) 12,579호 가량(인구는 49,708口 가량)으로 기록하여 전시대의 읍지보다 오히려 감소된 호구수를 드러내고 있다(『호구총수(戶口摠數)』의 1789년 정조 기유식(己酉式)은 15,121戶, 『수원부읍지』 방리조는 14,696호, 『화성지』 호구조는 14,588호 가량, 인구는 58,041口) 또한 호전(戶錢)으로 실총(實摠) 10,936호에 매호당 3냥(兩)씩을 받고 있었다는 기록은 「결총(結摠)」조에서 매결당(每結當) 25냥씩을 받았다는 기록과 함께 세제의 변화를 알려 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결총」조를 보면, 원장부(元帳付) 전답결(田畓結)은 11,821결 61부 3속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수원부 이읍 직후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수원부읍지』나 1831년(순조 31)에 편찬된 『화성지』 전결(田結)조에 기재된 원장부결수와 같아서 흥미롭다 이 읍지의 「성곽」조는 『화성지』 성곽조의 항목과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성곽의 규모·부속 여장(女墻)·치(雉)·대문(大門)·옹성(甕城)·적대(敵臺)·소문(小門)·암문(暗門)·수문(水門)·장대(將臺)·노대(弩臺)·공심돈(空心墩)·각루(角樓)·포루(砲樓)·포루(舖樓)·봉돈(烽墩) 등의 위치와 건치연대 등을 부기하였다 「단묘」조에는 종전의 읍지에서 볼수 없던 향교(鄕校)가 있으나, 재임(齋任)이나 교생(校生)에 관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각창」조에는 1869년(고종 6)에 사창(社倉)을 설치한 뒤 각창은 폐지하고 환곡은 각 면에서 사수(社首)가 조적(糶糴)을 전관(專管)하도록 하는 기록이 보인다. 「관직」조에는 고종 32년(1895)에 폐지된 유수·판관·중군(中軍)·찰방(察訪)·검률(檢律) 등과 그 대신 설치된 관찰사·군수 등의 직명이 보이고, 목록에는 누락되어 있으나 유임(儒任)·향관(鄕官) 등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다

이 읍지의 선생안(先生案)에는 부사선생 190명, 유수선생 83명, 관찰사선생 2명, 판관선생 64명, 군수선생 6명의 명단을 부임순으로 기재해 놓고 있다. 이 중에서 「영선생안」, 「읍선생안」은 19세기 이후 관직의 변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맨 끝 부분에 첨부된 「군수선생안」은 1895년(고종 32) 5월에 부임한 정교(鄭喬)로부터 1899년(광무 3) 2월에 부임해서 『수원군읍지』를 편찬한 이범선까지 기재된 것이 특징이다

끝으로 장서각도서에 소장된 ③의 『수원군읍지』는 앞의 ①②읍지와 그 내용과 항목은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다만 부록된 『화성지』 속편에는 화성성곽과 행궁 등 부내 중요건물에 걸려있는 편액명을 건물별로 열거하고 그 건물의 상량문(上樑文)을 수록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상량문이 수록된 중요건물을 보면, 장안문(長安門)·화홍문(華虹門)·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동장대(東將臺)·창룡문(蒼龍門)·팔달문(八達門)·서장대(西將臺)·화서문(華西門)·신풍루(新豊樓)·노래당(老來堂)·강무당(講武堂)·복내당(福內堂)·항미정(杭眉亭) 등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문건의 수합은 이 읍지의 편찬자들이 이미 정조 말년에 그 편찬이 완성되었던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의 내용을 많이 참고, 이를 활용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16)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

현재 규장각도서에 소장된 편자와 연대미상의 필사본 『수원부읍지』는 2종이 있다

(1) 1책 28장의 『수원부읍지』(No 10743)

편자·편년 미상의 1책 28장으로 된 필사본이다 책의 맨 앞에는 수원부의 경내를 알려 주는 채색(彩色)지도가 있으며, 책의 규모는 세로 29 4㎝×가로 25 4㎝의 크기이다 이 읍지는 1792년(정조 16) 1월에 제배(除拜)되어 이듬해 5월 형조판서에 이배(移拜)된 부사 이경무(李敬懋)까지 「부사선생안(府使先生案)」조에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읍치를 옮겨 수원 신도시가 건설되고, 1793년(정조 17) 1월 수원이 유수부(留守府)로 승격된 후에 편찬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 내용은 항목 없이 경내의 폭과 둘레를 기재한 다음 방리·건치연혁·군명·형승·성지·관직·산천·성씨·풍속·단묘·공해·제언·창고·물산·교량·역원·목장·봉수·누정·사찰·고적·인물·효자·충신·효부·열부·충노·한전·수전·진공·조적·전세·대동·균세(均稅)·군총·부선생안(府先生案) 순으로 모두 36항목으로 나누어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체제는 『여지도서(輿地圖書)』 보유편(補遺篇)에 실린 『수원부읍지』와 동일한 것으로, 아마도 영조 때 『여지도서』 편성 당시에는 누락되었던 것을 뒤에 증보할 때 필사본 『수원부읍지』를 그대로 빌어다가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

「방리」조에는 문수당(文殊堂)에서 압장면(鴨長面)에 이르는 49면의 거리·호수·남녀별 인구를 기록했는데, 총 호구수는 합편호(合編戶) 14,696호로서, 1789년(정조 13)의 『호구총수』에 기록된 15,121호보다 약간 적게 나타나 있다 「성지」조에서의 성곽은 읍성(구읍성)과 독성산성(禿城山城)만을 기록하여 용복면(龍伏面)의 구읍치 시대의 상황만을 반영했고, 「단묘」조에서는 사직단(社稷壇)·문묘(文廟)·여단(廬壇)·성황사(城隍祠)·매곡서원(梅谷書院)만이 보이고, 향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 그 대신 문묘(文

廟)에 관한 기사 가운데 이경원(李慶遠)이 쓴 「명륜당중수기(明倫堂重修記)」 전문(全文)을 소개하고 있는데, 1661년(현종 2) 퇴락한 명륜당 이건(移建)에 힘쓴 유생(儒生)과 학자·관료 들의 이름과 향사례(鄕射禮)를 거행한 사실 등 조선후기 수원지방 학교 실정의 일면을 살피는데 도움을 준다 또 「공해」조에는 구읍치 당시의 객사(客舍)·동헌인 은약헌(隱若軒)·어목헌(御牧軒)·당저(當宁)·강무당(講武堂)·중영(中營) 등의 전말과 부사 유엄(柳儼)·김취로(金取魯)·홍가신(洪可臣)·홍경신(洪景臣) 등의 시작(詩作)이 소개되어 있으며, 「누정」조에는 부사 이정보(李鼎輔)의 공극루 중건 상량문(拱極樓 重建 上樑文)과 이정구(李廷龜)의 진남루(鎭南樓) 기문(記文)이 첨부되어 그 유래를 살피는데 참고가 되어 준다

한편 「사찰」조에서는 만의사(萬儀寺)·창선(성)사(彰善(聖)寺)·반룡사(盤龍寺)·오동사(梧桐寺)·정수암(淨水菴)·가지사(迦支寺)·신복사(新福寺)·만봉암(萬峯菴)·백산암(栢山菴) 등 현존 또는 폐사(廢寺)된 절을 기록했고, 「고적」조에서 정송(貞松)·광덕(廣德)·포내미(浦內旀)·쟁홀(爭忽)·육내미(陸內彌)·제촌(堤村)·청구(靑丘)·사량(沙梁)·공촌(公村)·주석향(柱石鄕)·분촌향(盆村鄕)·공이향(工以鄕)·금물촌면(今勿村面)·양간면(楊干面)·삼봉면(三峯面)·고등촌면(古等村面)·심곡(深谷)·유제(楡梯)·오타면(五朶面)·종덕면(宗德面)·진보무속진읍(鎭堡無屬鎭邑) 등 신라·고려 이래 향(鄕)·부곡(部谷)·장(莊)·처(處)와 속현(屬縣)·폐현(廢縣) 등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 고장의 군현제 형성과 향촌사회의 변천과정을 연구하는데 크게 참고가 되어 주고 있다 「인물」조에서는 고려 때 중서시랑(中書侍郞)·평장사(平章事)를 지낸 최자성(崔滋盛)에서부터 조선 중기의 처사(處士) 김우상(金禹祥)에 이르기까지 56인을, 「효자」조에서는 고려시대 최루백(崔婁伯)에서부터 조선시대의 진사(進士) 김취징(金就徵) 등에 이르기까지 13인의 효행을, 「충신」조에서는 한명윤(韓明胤)·윤정준(尹廷俊) 2인을, 「효부」조에서는 임진왜란 때 효행을 한 수성 차씨(隋城車氏)로부터 안동 김씨에 이르기까지 3인을, 「열부」조에서는 목사(牧使) 한명윤의 처 밀양 박씨로부터 수원 최씨에 이르기까지 10인을, 「충노」조에서는 남연년(南延年)의 노(奴) 이만만(李晩萬)의 충직함을 각각 기재하였다 그리고 이 읍지에는 「한전」, 「수전」, 「진공」, 「조적」, 「전세」, 「대동」, 「균세」, 「군총」 등으로 세분하여 언급하고 있음은 농업의 중요성과 더불어 임진왜란 이후 대동법·균역법의 시행과 더불어 전정·군정·환곡 등 3정의 중요성과 그 비중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부사선생안」조에는 1576년(선조 9) 1월에 부임한 이제민(李齊閔)과 그해 3월에 부가 현으로 강등(降等)되었을 때 부임한 현감(縣監) 우성전(禹性傳)에서부터 1792

년(정조 16) 1월에 제배되었다가 이듬해 1월 유수부로 승격되면서 이임(移任)하는 이경무까지 역대 부사들의 명단과 제·이배 일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 가운데는 당시까지 정조대에 부사를 역임한 인물만 보더라도 1777년(정조 1) 3월에 제배된 김광묵(金光默)에서부터 이경무에 이르기까지 14인의 전직 부사들의 이름이 보이며, 화성 축성 때 정조의 심복으로 활약한 조심태(趙心泰 정조 13년 7월에 제배되었다가 이듬해 2월에 훈련대장이 되어 이배)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본문 안의 내용은 이읍 이전의 구읍치 당시의 상황을 기재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2) 1책 20장의 『수원부읍지』(No 17364)

이 읍지는 1책 20장의 필사본으로 그 규모는 세로 30 2㎝×가로 21 4㎝의 크기이다 편자·편년은 모두 미상이다 그러나 이 책의 「읍선생안(邑先生案)」조 맨 마지막에 기재된 부사 김노영(金魯永)의 재임기간이 1788년(정조 12) 9월에 제배되어 이듬해 7월 대사간(大司諫)에 이배된 사실, 정조 14년 이읍 초기에 설치된 시전(市廛) 기사 등으로 미루어 대략 1790년(정조 13) 이후에 편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앞 (1)의 『수원부읍지』보다는 그 편찬시기가 약간 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읍지의 내용은 폭원·건치연혁·관직·중군·읍명·진관(鎭管)·읍치(邑治)·방리·호구·산천·성지·형승·풍속·성씨·진도·도서·암동(巖洞)·교량·목장·우역·봉수·제언·물산·진공·원침(園寢)·단묘·사원·관해·누정·창고·시전·사찰·전결·부세·곡총(穀摠)·군총·인물·고적·과시·읍선생 순으로 모두 40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해당 내용을 기술하였다 앞 (1)의 읍지 항목과 비교해 볼 때 그 명칭도 약간 다르고 순서 또한 약간 뒤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장시(場市)」란 명칭 대신 정조 14년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진 「시전」이란 이름을 항목으로 쓰고 있는 점도 특징이 있다 즉, 읍지의 「시전(市廛)」조에는 성내 관문 밖에 설치된 입색전(立色廛)·어물전(魚物廛)·목포전(木布廛)·염급상전(塩及床廛)·미곡전(米穀廛)·유철전(鍮鐵廛)·괸곽전(棺槨廛)·지혜전(紙鞋廛) 등 8개의 시전명이 기재되어 있어서 다른 읍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18세기 말 수원부에 설치된 시전의 실체를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이 읍지에는 권말에 읍지의 내용과는 별도로 1789년(정조 13)과 이듬해에 걸쳐 정조가 내린 10편의 전교(傳敎)·유지(有旨)·윤음(綸音) 등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 그 특색이다. 그 내용은 1789~1790년 정조가 생부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능묘를 구읍치 지역인 화산(花山)으로 이장하고 수원읍치를 팔달산 기슭으로 옮겨 건설하는데 따른 여러 행정적 조치를 담고 있다 즉, 객사(客舍)의 이건(移建)과 민가의 철이(撤移) 문제, 현륭원(顯隆園) 천봉(遷奉)에 따른 민심의 동향을 살펴서 둔전의 설치와 요역·환곡의

감면조치, 또 광주부 관할하의 일용(日用)·송동(松洞) 양면의 수원부 이속(移屬) 등을 명하고 부내 사인(士人)과 관료들에게 이에 대한 양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이후의 수원읍지에는 실려 있지 않은 것으로서, 또 이 읍지가 신읍치로 옮겨 신도시를 건설하던 시기에 편찬되었음을 알려 주는 동시에, 당시 국왕의 진두지휘 아래 신읍치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민생에도 유념하여 대역사(大役事)를 추진하려 한 정황을 짐작케 하는 하나의 좋은 단서가 되어 준다고 할 수 있다

17) 『수원읍지(水原邑誌)』

1899년(광무 8) 수원군편으로 이루어진 읍지이다 1책 102장의 필사본으로,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목차와 내용은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의 필사본 『수원군읍지』와 동일하다(앞의 『수원부읍지』 참조)

18)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조선 성종 때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을 1530년(중종 25)에 완성한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관찬지리서이며 25책 5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종의 명에 따라 편찬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은 이행(李荇), 윤은보(尹殷輔), 신공제(申公濟), 홍언필(洪彦弼), 이사균(李思鈞) 등이다 이 책은 『동국여지승람』을 세 차례 수교(讐校)하여 완성되었다

최초의 『동국여지승람』은 1481년(성종 12) 50권으로 편찬되었는데, 내용은 1477년에 편찬한 『팔도지리지』에다 『동문선(東文選)』의 시문(詩文)을 첨가한 것이었으며, 체재는 남송(南宋) 축목(祝穆)의 『방여승람(方輿勝覽)』과 명나라의 대표적 통지(統志)인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를 참고하였다

『동국여지승람』의 1차 수교는 1485년 김종직(金宗直)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때 시문에 대한 정리와 연혁, 풍속, 인물편목에 대한 교정, 그리고 『대명일통지』의 예에 따라 고적편목이 신설되었으며, 중국의 지리지에 없는 성씨, 봉수(烽燧)의 양조도 신설되었다 그 뒤 1499년(연산군 5)에 임사홍(任士洪), 성현(成俔) 등이 부분적인 교정과 보충을 가하였으나 내용상의 큰 변동은 없었다 제 3차 수정은 증보를 위한 것으로서 1528년(중종 23)에 착수하여 1530년에 속편 5권을 합쳐 전 55권으로 완성, 이에 '신증'의 두 자를 삽입하여 간행하였다

내용과 체제를 보면 첫머리에 이행(李荇)의 진전문(進箋文), 서문, 교수(校修) 관원 직명과 구본(舊本) 『동국여지승람』의 노사신(盧思愼)의 진전문, 서거정(徐居正)의 서

문 및 교수(校讐) 관직명, 찬수(撰修) 관직명,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책의 끝에는 홍언필, 임사홍, 김종직의 발문(跋文)이 실려있어 간행과정과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권1은 경도(京都) 상, 권2는 경도 하, 권3 한성부, 권4·5 개성부, 권6~13 경기도, 권14~20 충청도, 권21~32 경상도, 권33~40 전라도, 권41~43 황해도, 권44~47 강원도, 권48~50 함경도, 권51~55 평안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권마다 여러 개의 군현이 수록되어 있으나 경기도의 광주목과 여주목, 경상도의 경주부, 평안도의 평양부 등 큰 읍은 1개 행정구역만 수록되었다 경도 앞에 조선전도인 팔도총도가 실려 있으며, 각 도 첫머리에는 도별지도가 삽입되었다 이 지도들은 실측지도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지극히 단순한 형태를 나타낸다 이 지도는 동서의 폭이 지나치게 넓은 반면 남북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한반도의 모양이 기형적이며, 주요 하천의 유로(流路)가 부정확하고 강폭이 과장되어 있으며, 서남해의 섬과 반도들이 적당히 그려져 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 그러나 이 지도는 본래 지지(地誌)를 읽는 데 참고가 되도록 첨부한 안내도였으므로 지도학적 가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도에 표시된 내용도 산과 하천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이는 산천에 대한 제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순수한 자연현상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리지에 지도를 첨부함으로써 지리지에 수록된 내용의 공간적 파악과 정확한 인식을 달성하려 한 점은 이전의 지리지에서 한걸음 발전한 것이다

내용은 각 도의 총론과 연혁과 관원을 적은 후, 목·부·군·현의 연혁, 관원, 군명, 성씨, 풍속, 형승(形勝), 산천, 토산, 성곽, 관방(關防), 봉수, 누정(樓亭), 학교, 역원(驛院), 교량위치, 불우(佛宇), 사묘(社廟), 능묘(陵墓), 고적(古跡), 명환(名宦), 인물, 시인의 제영(題詠) 등의 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국여지승람』 이후에 증보된 것은 신증으로 밝혀져 있다 인물 속에는 효자, 열녀가 포함되어 있다 군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특히 강조된 내용은 연혁, 성씨, 산천, 역원, 고적, 인물 등이다 연혁에서는 시대에 따른 각 군현의 지명변화, 행정구역의 변천과정 등을 밝히고 있다 성씨는 토성(土姓), 내성(來姓), 속성(續姓)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으며 역사상 유명한 학자, 고승, 충신, 무장, 효자, 열녀 등을 다룬 인물조와 관계가 깊다 산천조는 명산, 하천, 바다, 호소, 나루터 등의 위치를 읍을 기준으로 거리와 방향을 기록하였으며 시문으로 과거의 경관을 묘사하였다 역원제(驛院制)와 봉수제(烽燧制)는 왕명의 전달, 긴급 군사정보의 송부, 공무여행자와 관물수송 등 봉건 전제 군주하에서 행정상의 중추신경 구실을 했던 만큼 매우 중요시되었다 봉수와 역원의 위치는 읍을 중심으로 방위와 거리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역은 찰방역과 일반역으로 나누었다 찰방역의 경우 그 소속 역명을 열거하였으며, 주요 역원은 그 시설과 연혁 등이 기술

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으로 같이 실은 지도와 함께 조선 말기까지 큰 영향을 끼친 지리지이다 이 책은 지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역사, 행정, 군사, 사회, 민속, 예술, 인물 등 지방사회의 모든 방면에 걸친 종합적 성격을 지닌 백과전서식 서적이다 따라서 조선 전기 사회의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자료로서 여러 학문에서도 중요한 고전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세종 때의 지리지가 지녔던 장점인 토지의 면적, 조세, 인구 등 경제, 군사, 행정적인 측면이 약화되고 인물, 예속, 시문 등이 강화되어 있다

수원에 관한 내용은 권9, 경기 수원도호부 편에 실려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동쪽으로 용인현 경계까지 21리, 남쪽으로 충청도 평택현 경계까지 50리에서 59리, 진위현 경계까지 22리, 서쪽으로 남양부 경계까지 20리에서 113리, 북쪽으로 과천현 경계까지 39리, 서울까지는 88리가 된다고 적고 있다

건치연혁조의 내용은『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이며 다만 세조 때 진(鎭)을 설치하고, 또 판관(判官)을 두었다는 내용이 첨가되었다 속현으로는 쌍부현과 용성현 2개를 들었으며, 다음 진관(鎭管)조에서 도호부로 부평(富平)과 남양, 인천 등 3개, 군으로 안산, 안성 등 2개, 현으로 진위, 양천, 용인, 금천(衿川), 양성, 통진(通津), 김포(金浦) 등 7개를 들고 있다 관원으로는 부사(府使), 판관(判官), 교수(敎授) 각 1명인데 신증조에서 1526년(중종 21) 부의 백성으로 그의 부모를 죽인 자가 있어 군으로 강등하여 군수 1명을 두었다고 했다 군명은 한남, 수성(隋城), 매홀, 수성(水城), 수주라고 했다

성씨조의 내용은 그 대부분이 세종실록 지리지의 내용과 동일하다 산천조에서는 발점산(鉢岾山), 광교산(光敎山), 무봉산(舞鳳山), 독성산(禿城山), 홍법산(弘法山), 홍천산(興天山), 사근천(沙斤川), 대천(大川), 구이포(仇二浦), 진목포(眞木浦), 적진포(赤津浦), 다라고비진(多羅高飛津), 양야곶(陽也串), 홍원곶(洪源串), 팔라곶(八羅串), 오을미곶(吾乙未串), 대저지도(大楮只島), 소저지도(小楮只島), 응도(鷹島), 구화도(仇火島), 풍도(楓島), 기지(機池), 손항지(孫項池), 도제지(刀梯池) 등을 들고 있다 토산으로는 백옥(白玉), 소금, 소어(蘇魚), 병어(兵魚), 홍어(洪魚), 석수어(石首魚), 황석수어(黃石首魚) 등과 조개, 황합(黃蛤), 죽합(竹蛤), 토화(土花), 석화(石花), 낙지, 대하(大蝦), 자하(紫蝦), 게, 청해(靑蟹) 등 주로 인근 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을 꼽았다

성곽조에서 읍성은 토성으로 둘레가 4천 35척인데 모두 허물어졌다고 했다 봉수는 흥천산 봉수를 들었는데 남쪽으로 양성현 괴태길곶(槐台吉串)에 응하고, 서쪽으로 남양부 염불산(念佛山)에 응한다고 했다 누정조에는 운금루(雲錦樓)를 소개하면서 이색

(李穡)이 지은 기(記)와 신숙주(申叔舟)가 지은 중수기(重修記), 권제(權踶)가 지은 서(序), 설문우(薛文遇)의 시, 이석형(李石亨)의 시 등을 덧붙였다 학교조에 향교(鄕校)는 부의 서쪽 3리 되는 곳에 있다고 하였으며, 역원으로는 장족역(長足驛), 동화역(同化驛), 청호역(菁好驛), 도산원(島山院), 사원(蛇院), 대제원(大梯院) 등이 있다고 하였다

불우조에는 만의사(萬義寺), 창성사(彰聖寺), 반룡사(盤龍寺)를 소개했고, 사묘(社廟)로는 사직단과 문묘, 성황사(城隍祠), 여단(厲壇)을 들었으며 총묘(塚墓)로는 최상저(崔尙翥)묘와 덕원군(德原君)묘를, 고적조에는 정송폐현(貞松廢縣), 광덕폐현(廣德廢縣), 포내미부곡(浦內彌部曲), 육내미부곡(陸內彌部曲), 쟁홀부곡(爭忽部曲), 제촌부곡(堤村部曲), 사량부곡(沙梁部曲), 공촌부곡(公村部曲), 주석향(柱石鄕), 분촌향(盆村鄕), 공이향(工二鄕), 사정처(奢井處), 금음촌처(今音村處), 양간처(楊干處), 삼봉처(三峯處), 고등촌처(古等村處), 심곡처(深谷處), 유제처(楡梯處), 오타장(五朶莊), 종덕장(宗德莊), 신영장(新永莊) 등『세종실록』지리지에 실려있던 현 중 2개소와 부곡, 향, 처, 장 등에 관하여 적고 있다 명환으로는 고려 김흥조(金興祖), 윤승해(尹承解), 신안지(愼安之), 전신(全信), 김정순(金正純), 이윤수(李允綏) 등과 조선 맹사성(孟思誠)을 꼽았고, 신증으로 문근(文瑾), 권복(權福)을 첨가했다 인물조에는 고려 최자성(崔滋盛)을, 효자조에는 고려 최루백(崔婁伯)을 들었는데 신증으로 조선 최세호(崔世湖)와 한몽송(韓蒙松)을 추가했다 그밖에 제영조에서 이색(李穡), 이숭인(李崇仁), 김수온(金守溫) 등의 시를 소개하고 있다

19)『여지도서(輿地圖書)』

1757년(영조 33)부터 8년 동안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성책한 전국 읍지로 55책의 필사본이다 295개의 읍지와 감영지 6, 병영지 7, 수영지 3, 통영지 1 등 17개의 영지(營誌) 및 1개의 진지(鎭誌) 등 총 313개의 지지(地誌)가 수록되어 있다

제1책～제5책은 경기도, 제6책～제13책은 충청도, 제14책～제17책은 강원도, 제18책～제21책은 황해도, 제22책～제30책은 평안도, 제31책～제35책은 함경도, 제36책～제49책은 경상도, 제50책～제55책은 전라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당시의 행정구역을 상고할 때 읍지가 수록되지 않은 결읍(缺邑)이 보이는데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충청도 등지에서 모두 39개의 읍지가 누락되었다 누락된 부분을 보면 경기도의 한성부, 개성부, 수원부 등 9개 읍지와 2개 영지, 경기도 총론, 전도를 비롯하여 전라도의 남원, 담양, 제주 등 16개 읍지와 4개 영지, 전라도 총론, 전도, 경상도의 울산, 양산, 영

천 등 11개 읍지가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각 읍지의 내용구성은 강역, 방리(坊里 호구 포함), 도로, 건치연혁, 군명, 형승, 성지(城池), 관직, 산천, 성씨, 풍속, 능침(陵寢), 단묘(壇廟), 공해(公廨), 제언(堤堰), 창고, 물산, 교량, 역원, 목장, 관애(關阨), 봉수, 누정, 사찰, 고적, 총묘(塚墓), 진보(鎭堡), 명환(名宦), 인물, 한전(旱田), 수전(水田), 진공(進貢), 조적(糶糴), 전세(田稅), 대동(大同), 봉름(俸廩), 군병(軍兵) 등으로 되어 있어 대단히 상세하다

『여지도서』의 편찬은 1757년 홍양한(洪良漢)의 주달(奏達)이 계기가 되었으며 왕명에 따라 홍문관에서 팔도 감사에게 명을 내려 각 읍에서 읍지를 올려보내도록 하였다 그 뒤 김응순(金應淳)과 이은(李溵)이 홍문관에 있을 때 이를 개수하였다고 하나, 현존하는 『여지도서』는 누락된 군현이 많고 결책순서 등으로 보아 홍문관에 비치되었던 본이 아니라고 추측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읍지의 호구조의 기준 연도가 1759년, 기해장적(己亥帳籍)인 점으로 볼 때 1760년 이후에 수집된 읍지들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편찬목적은 간행된 지 270년이 지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개수, 속성(續成)에 있었다 『여지도서』는 『동국여지승람』을 기초로 하면서 방리, 제언, 도로, 전결(한전, 수전), 부세(진공, 조적, 전세, 대동, 균세), 군병 등의 항목이 첨가되어 사회, 경제적인 내용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16세기 후반 이래 대두된 새로운 읍지편찬의 경향을 정리하고 종합한 것으로 18세기 읍지의 종합적 성격을 대표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방리, 도로, 부세에 관한 여러 조항 및 각 읍 읍지의 첫머리에 수록된 채색지도이다 일반적으로 읍지의 제일 첫머리에 기재하던 건치연혁조보다도 방리조를 앞에 위치시킴으로써 당시 읍지편찬자들이 이를 중시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일반 읍지의 방리조에는 면, 또는 리의 명칭과 위치를 기록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여지도서』는 면, 리 또는 읍별로 가호수(편호)와 남녀인구수를 상세하게 기재한 점이 특징이다

이 책이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로 도로조를 주목할 수 있다 도로조는 이 시기에 신설된 항목으로서 그 위치도 건치연혁조보다도 앞에 설치되었다 이러한 항목 배열순서 및 내용의 상세함을 통하여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도로가 중시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상업의 발달과 더불어 도로의 중요성이 커지고 지역간의 교류가 증대되면서 지역간 및 지역내의 구체적인 유통망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조세수취와 관련된 진공, 조적, 전세, 대동, 균세, 봉름 등이 각각 독립 항목으로 설정되는 변화를 볼 수 있다 조세량의 정확한 파악과 수납은 국가의 지방통치력 및 중앙재정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읍지에서 이에 관한 기

록의 비중이 18세기 중엽 이후 점차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편 『여지도서』를 통하여 읍지편찬의 역사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룩됨을 볼 수 있으니 각 읍의 첫머리에 각 읍별 채색지도가 부착되는 점이다 여지도(圖)와 서(書)의 결합이라는 의미로 『여지도서』라는 서명을 붙일 정도로 지도가 중시된 것이다 각 읍지마다 거리와 방위 등이 정확한 대축척 지도가 첨부되어 지도와 읍지가 밀접하게 결부된다 읍지의 내용을 지도로 도식화함에 따라 읍지의 내용에 정확성이 증가되고, 지도의 이용으로 당시 사람들의 공간적 인식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여지도서』는 공시적(共時的) 기록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전국에 걸쳐 동일한 시기에 작성된 읍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8세기 중엽의 지방사회를 전국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현재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으며, 1973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 간행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은 누락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보유편을 두고, 해당 읍지 가운데 편찬연대가 확실한 것으로 『여지도서』와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들을 보완하여 간행하였다

영인본 보유편에 있는 수원부 읍지를 보면, 『세종실록』 지리지는 물론 그 후에 간행된 『동국여지승람』 등의 지지에 비해 훨씬 뒤에 나온 자료인 때문이기도 하나 앞서 나온 지지들보다 분량이나 내용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세하고 치밀하다 위치에 대한 설명 부분에 있어서도 그간의 변화를 모두 담았고, 방리조에는 호구에 대한 상세한 숫자를 기록하였다 건치연혁·군명·형승·성지조에도 이전의 지지들의 내용에 상당부분이 첨가되었으며, 관직도 도호부사겸병마좌방어토포사(문 3품, 무 2품)라 했다 산천, 성씨조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풍속조에서 "무와 기(技)를 좋아하며 인심이 질박(質朴)하고 글을 아는 이가 적으나 농사일을 좋아한다"고 한 것이 특이하다 그밖의 항목에서는 조선 중·후기의 변화가 첨가된 것을 제외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나 마지막에 부사선생안(府使先生案)에서 선조 이후의 부사 명단을 수록한 부분이 상당량에 달하고 있다

20)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1903년부터 1908년 사이에 칙명(勅命)으로 편찬, 간행된 장고(掌故) 집성(輯成)의 유서(類書)로 우리나라 상고로부터 대한제국 말기에 이르기까지의 문물, 제도를 총망라한 책이다 총 16고(考), 250권으로 되어 있으며 신활자로 간행되었다 장고의 유서는 조선 초기·중기까지도 『문헌통고(文獻通考)』와 같은 중국 측의 것을 활용하는 데 그쳤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회의 발달에 따라 우리 것의 편찬이 요청되어 1770

년(영조 46)에 처음으로 『동국문헌비고』가 편찬·간행되었다 1769년에 왕명으로 시작된 이 편찬사업은 서명응(徐命膺), 채제공(蔡濟恭), 서호수(徐浩修), 신경준(申景濬) 등이 주도하여 6개월 여만에 상위(象緯), 여지(輿地), 예(禮), 악(樂), 병(兵), 형(刑), 전부(田賦), 시적(市糴), 선거(選擧), 재용(財用), 호구, 학교, 직관 등 총 13고 100권으로 완성되어 1770년 8월에 인쇄까지 되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이루어져 체제가 서로 어긋나거나 사실(史實)의 소략과 착오 등이 많아 1782년(정조 6)에 왕명으로 재편찬에 들어갔다 당시 박학강기(博學强記)로 이름난 이만운(李萬運)을 기용하여 진행된 이 사업은 1790년에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정조 즉위 후의 사실이 많이 빠져 계속 보완, 증보의 작업이 지시되었다 이 증보사업은 1797년에 이만운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서명응(徐命膺)의 손자이자 호수(浩修)의 아들인 유구(有榘)도 함께 참여하였다 이후에도 이만운의 아들 유준(儒隼)의 보완작업이 따랐으나 기본골격은 이전과 마찬가지였다

『증정(增訂) 동국문헌비고』 혹은 『증보(增補) 동국문헌비고』로 불리는 이 책은 앞의 13고에다 물이(物異), 궁실, 왕계, 씨족, 조빙(朝聘), 시호(諡號), 예문(藝文) 등 7고를 더하여 총 20고 146권을 이루었으나, 간행이 되지는 않았다 대한제국 시기의 『증보문헌비고』 편찬은 1894년의 갑오경장으로 문물제도가 크게 바뀌어 이를 반영시키기 위하여 『증정동국문헌비고』를 개찬한 것이다 1903년 1월 법무국장 김석규(金錫圭)의 건의가 채택되어 홍문관 안에 찬집소를 두고 박용대(朴用大), 조정구(趙鼎九), 김교헌(金敎獻), 김택영(金澤榮), 장지연(張志淵) 등 33인이 찬집(撰輯)을, 박제순(朴齊純) 등 17인이 교정(校訂)을, 한창수(韓昌洙) 등 9인이 감인(監印)을, 김영한(金榮漢) 등 3인이 인쇄를 각각 맡아 5년 만에 완성시켰다 개찬의 결과 250권으로 양은 늘어났으나 분류는 줄어들어 상위(12권), 여지(27권), 제계(14권), 예(36권), 악(19권), 병(10권), 형(14권), 전부(13권), 재용(7권), 호구(2권), 시적(8권), 교빙(13권), 선거(18권), 학교(12권), 직관(28권), 예문(9권) 등의 16고로 되었다

문헌비고의 편찬목적은 영조 때의 찬진에서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실용에 도움이 되게 하고 경국제세의 도구로 삼으려 하였다"고 말하고, 광무년간의 찬진에서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이 "진실로 경국제세의 실용을 위하였다"고 진언하였듯이 치세의 실용적인 면을 위한 것으로서 18세기 이후의 실학의 한 면모에 해당하는 것이다 편집형식은 고별(考別)로 역대의 사실을 공사(公私)의 사적(史籍)에서 넓게 뽑아 편년순으로 배열하였는데 '보(補)'자의 표식을 기준으로 이전의 것이 원본에서 빠진 것을 보충한 것이고, '속(續)'자의 표식은 이만운의 증정에서 정조 14년 이후의 사실 보충에서부터 쓴 것으로서 광무년간의 개찬에서도 같은 표식을 그대로 쓰고 연대로

구별하도록 하였다

수원에 관한 내용은 이전에 간행된 사서들과 비교하여 특별한 것이 없다

21) 『택리지(擇里志)』

『택리지』는 이중환(李重煥)이 지은 인문지리학서이다 이중환은 1690년(숙종 16) 12월에 태어나서 1756년(영조 32) 1월에 사망하였으며, 자는 휘조(輝祖)이고, 호는 청담(淸潭) 또는 청화산인(靑華山人)이다 본관은 여주(驪州)로서 찬성(贊成)을 지낸 이상의(李尙毅)의 5대손이며, 참판을 지낸 이진휴(李震休)의 아들이다 이중환은 성호 이익과 인척 관계로서 이익의 재종손이다 그러나 이중환의 생애는 이익의 생존 시기(1681~1763 숙종 7~영조 39)와 일치하며 이익에게서 학문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의 집안은 정치적으로 기호남인계에 속한다

이중환은 1713년(숙종 39)에 문과에 급제한 뒤 경종 연간의 정국, 즉 소론 주도 하에 일부 남인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남인의 입장에 서서 중앙 정계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남인의 영수였으며, 영조 측근 인물들을 역적으로 고변했던 목호룡(睦虎龍)과의 친분 관계 때문에 1725년(영조 원년) 유배를 당한 뒤 중앙 정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전국을 방랑하였으며, 이것은 그에게 전국의 지리를 직접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 결과 이중환은 『택리지』를 저술할 수 있었으며, 그 저술 시기는 대략 61세 때(1750)에 시작하여 이듬해(1751)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택리지』는 「사민총론(四民總論)」, 「팔도총론(八道總論)」, 「복거총론(卜居總論)」, 「총론(總論)」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이 다채로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예를 들어 『팔역지(八域志)』, 『팔역가거지(八域可居志)』, 『동국총화록(東國總貨錄)』, 『형가승람(形家勝覽)』, 『동국산수록(東國山水錄)』 등이 그것이다 『택리지』는 필사본 1책으로만 전해지다가 1912년 조선광문회에서 신활자로 간행하였다 「사민총론」에서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유래와 역할, 관혼상제 등 사대부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생업의 필요, 거주에 좋은 곳 등을 설명하였으며 팔도총론에서는 전국의 산세와 위치를 논하였다 「복거총론」에서는 지리(地理), 생리(生利), 인심(人心), 산수(山水)로 나누어 서술했으며 총론에서는 사농공상에 따른 신분제를 비판하였다

『성호사설』을 보면 이익은 지리에 관한 관심이 깊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이중환의 『택리지』 저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아울러 18세기 유통경제의 발달과 그에 따른 인문지리적 상황의 변화라는 당시 상황도 『택리지』 저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택리지』는 도를 하나의 단위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동시에 한 도 내의 각 지역을 유통 경제와 관련해 상호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즉 우리로 하여금 군현 단위를 넘어서 몇 지역을 유통과 관련해 상호 연결해 유통권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당시의 유통 경제에 대한 일종의 연구서라고도 할 수 있다 18세기 중엽의 유통 경제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택리지』에서 수원과 관련된 기사는 「팔도총론」 가운데 경기(京畿) 지역에 대한 부분에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리산에서 나온 맥 중에서 서쪽에서 간 것이 가장 짧은 것이며 안산 바닷가에서 그쳤다 서울 공경(公卿) 가문의 조상들 무덤이 많다 산맥이 동남쪽으로 간 것은 수원부의 여러 산이 된 다음 바다에 그쳤는데 충청도 아산현과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그 중간에 금수산(金水山)이 있고 산 꼭대기에 못이 있어 물이 노랗게 물든 것 같다 그 속에 금이 난다는 말이 전한다 옛적에 지기를 잘 살피는 사람이 이 산에 금보(金寶)의 정기가 있다고 하였다 … 육지가 끝나는 바닷가에 화량포(花梁浦) 첨사의 진이 있고 진에서 바닷가를 10리쯤 건너가면 대부도가 있다 모두 어민이 사는 곳이다 까닭에 남양부의 서쪽 마을이 한강 남쪽의 생선과 소금의 이익을 독차지한다 화량진을 이 섬에다 옮겨 영종도와 서로 의지되게 해야 한다 · 수원 동쪽은 양성과 안성이다 안성은 경기와 호서 바닷가 사이에 위치하여 화물이 모여 쌓이고 공바치와 상인이 모여 한양 남쪽의 한 도회지가 되었다 수원 북쪽은 과천이고 북쪽으로 15리 가면 동작 나루터가 된다 여기에서 강을 건너 다시 북쪽으로 15리 쯤에 서울 남대문이 있다"

이상에서 보면 현재 시흥시의 수리산에서부터 수원 지역과 지맥이 연결된다는 것 및 기타 자연지리적 상황을 말한 뒤 경기 남부 지역의 상호 관계, 유통경제 상황을 수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서울과의 연결 관계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 신읍치 이전 직전 수원과 그 주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자료이다 또 대부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곳에 군진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22) 『화성지(華城志)』

1831년(순조 31) 수원부 유수(留守) 박기수(朴綺壽)의 주관하에 편찬된 수원부읍지이다 1책(零本)의 필사본으로, 총3책으로 편찬되었으나, 제1책의 권지1 · 권지2만 남아 있고, 권지3, 권지4, 부편(附編)1~3의 내용은 유실되고 목차만 남아 있다 규장각도서에 소장된 이 책의 규모는 세로 37.5㎝×가로 24㎝의 크기이다(고 No 915 12-H991j-V 1)

책 머리는 유수 박기수의 서문과 범례(凡例)가 실려 있어 이 읍지의 편찬경위와 편찬

원칙을 찾아볼 수 있다 그 편성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책 권지1…폭원(幅圓 부내의 넓이와 경계)·건치연혁(建置沿革 역사적 유래와 행정구역의 변천과정)·읍명(邑名)·관직(官職)·유임(儒任 鄕校와 關里祠의 직임)·향관(鄕官 各倉과 面任)·장관(將官 화성성곽과 행궁 禿城 등의 衛將)·원역(員役 각 관아의 吏胥 등)·속읍(屬邑 附屬郵·屬鎭)·읍치(邑治 구읍치와 신읍치)·방리(坊里 40面 49里洞)·호구(戶口 호수 약 14,588戶, 인구 약 58,041口)·전결(田結)·부세(賦稅)·재용(財用)·군총(軍摠) 등

(2) 제1책 권지2 …산천(山川)·성곽(城郭)·산성(山城)·진도(津渡)·도서(島嶼)·필로(蹕路)·교량(橋樑)·봉수(烽燧)·제언(堤堰)·둔전(屯田)·우역(郵驛) 등

(3) 제2책 권지3(이하 내용은 落秩) ·능원(陵園)·전우(殿宇)·행궁(行宮)·관해(官廨) 등

(4) 제2책 권지4 단묘(壇廟)·사원(祠院)·형승(形勝)·누대(樓臺)·지당(池塘)·분사(分寺)·각창(各倉 附各邑倉)·각고(各庫)·각전(各廛)·장시(場市)·사찰(寺刹)·성씨(姓氏)·인물(人物)·충신(忠臣 附忠奴)·효자(孝子)·효부(孝婦)·열녀(烈女)·고적(古蹟)·풍속(風俗)·물산(物産)·과시(科試)·영선생(營先生)·읍선생(邑先生) 등

(5) 제3책 부편(附編)·· 부편1, 이읍사실(移邑事實)·부편2, 승영사실(陞營事實)·부편3, 축성사실(築城事實) 등

18세기 말 수원 신도시 건설과 화성 축성을 주도했던 정조가 별세한 지 31년 뒤인 1831년에 이 『화성지』는 유수 박기수의 주관으로 편찬되었다 이 읍지는 제2·3책이 낙질된 비록 영본(零本)이기는 하나 종래에 편찬된 바 있던 『수원부읍지』와는 그 체재와 내용면에서 비교될 수 없으리만큼 지방지로서의 충실성과 보다 발전적인 편찬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18세기 말~19세기 초의 수원지방은 그 이전의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행정·산업·도시적 측면에서 공전절후(空前絶後)의 변화와 발전의 양상을 보여주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읍지는 시대적으로 18세기 말에 편찬된 『수원부읍지』와 1899년(광무 3)에 편찬된 『수원군읍지』 사이에서, 수원의 역사적 변화와 발전의 모습을 담으려는 시대적·행정적·지방적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화성지』가 편찬된 계기는 이 책의 「범례」 부편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정조대에 이룩된 수원의 이읍과 신도시 건설·유수부(영)로의 승격·화성축성·산업기반시설 설치 등 네 가지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1789년(정조 13) 정조의 생부 장헌세자 능묘의 이장(移葬)에 따라 이해 7월부터 수원읍치를 화산으로부터 팔달산(八達山)으로 이전, 행궁·향교·도로·교량 등의 영건(營建), 상업 및 농업도시로의 발전을 여러 도시 기반시설의 건설 등으로 수원은 신흥대도회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더욱이 1793년(정조 17) 1월 수원을 '화성(華城)'으로 개호하고 유수부로 승격시켰으며, 국왕의 친위군영인 장용외영(壯勇外營)을 이곳에 주둔시킴으로써 이 고장은 정치도시로서 행정·군사·산업의 중심지로서 크게 주목되었다 이어서 1794~1796년(정조 18~20)에 걸친 화성 성곽의 축조 등으로 용복면(龍伏面) 화산 기슭에 위치했던 이전의 구읍치시대와는 달리 읍의 치소(治所)·행정구역·도로·강역·도시시설 등이 현저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였다 비록 1800년(정조 24) 국왕의 별세로 도시발전과 행정적 중요성은 크게 더디고 감소되었으나, 도시발전의 양상은 그 이전의 『수원부읍지』와 견주어 볼 때 내용면에서 거의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현저하게 달라져 있었다 따라서 『화성지』는 이읍·유수부 승격과 장용외영·화성축성 등 신도시 건설이 시작된 지 4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크게 달라진 변화의 모습을 담으려는 행정적 의도에서 편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읍지는 유수부로 승격된 지 38년이 지나 새로운 도시로서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던 시기에 편찬된 읍지로서, 새로 건설된 계획도시인 수원의 모습, 특히 19세기 초엽 이 고장이 당면했던 지방적 양상과 변화의 모습을 보다 세분된 편찬체제 아래 그 전말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매우 귀중한 자료인 것이다 비록 3책 가운데 1책만 남아 있는 이 읍지의 편찬체제와 제2·3책의 목차 등을 통해 볼 때, 『화성지』는 수원지방 연구에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할 문헌이며, 이 시대 지방지·읍지로서의 한 전범(典範)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읍지는 그 뒤 1899년(광무 3) 5월에 2종의 『수원군읍지』(규장각도서)가 편찬될 때 그 저본으로 삼아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내용이 전하는 『화성지』의 제1책 권지2까지는 물론 내용이 낙질된 제2책 권지3 능원 이하 권지4 물산조에 이르기까지 거의 동일한 내용과 목차를 수록하고 있다 또 장서각도서에 소장되어 있는 『수원군읍지』(1899)의 뒷부분에는 「화성지속편(華城志續編)」이 첨부되어 있어서, 낙질 부분을 다소나마 보충하는데 참고가 되어 준다 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화성지』보다 약 40년 앞서 정조대에 편찬된 『수원부읍지』 2종이 규장각도서에 소장되어 있어서, 정조대 이전과 이후 수원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는데 참고가 된다

23) 『화영사례(華營事例)』

『화영사례』는 『기전영사례』의 제1책 개성부신정사례(開城府新定事例), 제2책 강도

사례(仜都事例), 제3책 광영사례(廣營事例), 제4책 화영사례(華營事例) 중 제4책으로 그 내용은 수원 화영(華營)의 전반적인 제반운영 등에 관한 기록이다 1894년(고종 31)에 편찬되었으며, 현재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제4권의 목차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호총(戶摠)·전정소(田政所)·환향(還餉)·진제곡(賑濟穀)·외탕고(外帑庫)·광혜고(廣惠庫)·고마고(雇馬庫)·팔색고(八色庫)·군기고(軍器庫)·화약고(火藥庫)·둔소(屯所)·별비미(別備米) 등이 있다 이 책은 수원의 재정 수입과 지출을 전(錢)·미(米)·포(布)·목(木) 등 항목별로 세부적인 규정을 밝힌 것으로 19세기 후반 재정 운영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사료이다

제2장 의궤(儀軌)

1) 『경모궁의궤(景慕宮儀軌)』

정조 때에 경모궁(景慕宮)의 사전(祀典)·고실(故實)·금제(今制) 등 사도세자와 경모궁에 관한 것을 모아 만든 의궤이다

경모궁은 사도세자와 그의 비(妃) 헌경왕후(獻敬王后)의 사당으로서, 경모전(景慕殿)이라고도 한다 본래 1764년(영조 40) 봄에 서울 북부 순화방(順化坊)에서 숭교방(崇敎坊)으로 옮겨 수은묘(垂恩廟)라 하였다 1776년(정조 즉위년)에는 도감(都監)을 설치하고 개축하여 경모궁이라 하고 정조가 현판 글씨를 썼다 그후 1780년에는 궁의 외장(外墻)을 쌓고 1784년에는 경모원(景慕園)이라고 궁의 명칭을 고쳤다가 1794년에 다시 경모궁으로 확정하였다 1871년(순조 17)에 이르러서는 궁을 대대적으로 수리하였다 궁의 관리를 위하여 도제조·제조 각 1인과 영(令 종5품) 3인을 두었다 이때 1인은 반드시 문관으로 뽑도록 규정하였다 뒤에 2인을 증원하여 음관(蔭官)으로 보직하였고, 그 외 직장(直長 종7품)과 봉사(奉事 종8품) 1인 등을 두었다 1839년(헌종 5)에 화재로 불타 없어졌다

이 책은 모두 4권을 합하여 3책으로 만든 도식(圖式)이 붙은 필사본으로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1783년 의궤청(儀軌廳)에서 작성하였다.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1은 도설(圖說)로서 본궁전도(本宮全圖)·봉안의물(奉安儀物)·인장(印欌)·책봉옥인(冊封玉印)·옥인전문(玉印篆文)·책장(冊欌)·교명축(敎命軸)·축궤(軸櫃)·교명문(敎命文)·책봉죽책(冊封竹冊)·죽책문(竹冊文)·의장(儀仗)·내외주렴(內外朱簾)·향사반차(享祀班次)·설찬(設饌)·제기(祭器)·악기(樂器)·무기(舞器)·일무(佾舞)·제복(祭服)·악공관복(樂工冠服)·이의(肄儀)·악(樂)·일첨문(日瞻門)·유근문(逌覲門)·유첨문(逌瞻門)·궁지(宮池)·척도(尺度) 등 총 28편이다

권2는 사전(祀典)으로서 봉안규제(奉安規制)·제향규식(祭享規式)·탄일(誕日)·기진(忌辰)·변사(辨祀)·시일(時日)·축식(祝式)·향식(香式)·악장(樂章)·생뢰(牲牢)·찬품(饌品)·폐백(幣帛)·망료위(望燎位)·오향친제의(五享親祭儀)·작헌예의(酌獻禮儀)·전배의(展拜儀)·유일첨문전배의(由日瞻門展拜儀)·오향섭사의(五享攝事儀)·속절급삭망제의(俗節及朔望祭儀)·이환안의(移還安儀)·고유제식(告由祭式)·천신의(

薦新儀)·진상식례(進上式例) 등 23편으로 되어 있다

권3은 고실(故實)로 을묘정호의(乙卯定號儀)·병진책봉의(丙辰冊封儀)·임술입학의(壬戌入學儀)·계해관례의(癸亥冠禮儀)·갑자가례의(甲子嘉禮儀)·기사대리의(己巳代理儀) 등 6편이다

권4는 금제(今制)로서 개건시설도감의(改建時設都監儀)·당저즉조후추상휘호시의궤(當宁卽祚後追上徽號時儀軌)·원자정호후가상휘호시의궤(元子定號後加上徽號時儀軌)·어제(御製)·어필(御筆)·전교(傳敎)·봉심규제(奉審規制)·수개규식(修改規式)·각소현판(各所懸板)·궁문개폐(宮門開閉)·본궁관원(本宮官員)·인신(印信)·솔거노비(率居奴婢)·내외담원설(內外墻垣說)·식목설(植木說)·주맥포석설(主脈鋪石說)·하마비(下馬碑)·궁로교량(宮路橋梁) 등 18편이며, 부편(附編)으로 직방설치사(直房設置事)·궁저민가모입사(宮底民家募入事)·각전설치사(各廛設置事)가 수록되어 있다

의궤의 내용을 각 권별로 목록에 따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1 도설의 본궁전도는 경모궁의 약도와 배치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악기도설(樂器圖說)은 악기를 금(金)·석(石)·사(絲)·죽(竹)·포(匏)·토(土)·혁(革)·목(木)의 8종으로 분류하여 그림으로 그려 해설한 것이다 또한 제복도설(祭服圖說)에는 전하면복(殿下冕服)·왕세자면복(王世子冕服)·사관제복(祀官祭服)·종친문무배향관관복(宗親文武陪享官冠服)의 도식이 있다

권2 사전에는 주로 제례(祭禮)에 따른 여러 의전절차와 규칙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세자의 탄일(誕日)은 1736년 1월 21일이고, 기진(忌辰)은 1762년 윤5월 21일이다 축문(祝文)에는 오향제축문(五享祭祝文)과 작헌례축문(酌獻禮祝文)이 수록되어 있다

권3 고실에는 사도세자 생존시의 각종 의식과 절목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정호의(定號儀)에는 1735년(영조 11) 1월 21일 사도세자가 태어난 당일 정호의를 거행한 일을 비롯하여 24일에 고묘사(告廟社)하고, 25일에 진하반교(陳賀頒敎)한 사실 그리고 3월 3일부터 윤4월 21일에 걸쳐서 경과(慶科 진사과 생원과 문무과, 잡과)를 설행하였고, 9월 11일에는 보양관(輔養官)을 선임하여 상견례(相見禮)를 실시한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왕세자책봉의(王世子冊封儀)에는 1736년(영조 12) 1월 4일 정명(定名)을 거쳐서 3월 15일에 왕세자로 책봉한 일과 16일에 진하반교(陳賀頒敎)하였고 경과(慶科)를 설행한 사실이 수록되었다 왕세자입학의(王世子入學儀)는 1742년(영조 18) 3월 26일에 거행하였고, 왕세자관례(王世子冠禮)는 1743년(영조 19) 2월 26일에 왕세자 정자(定子)를 거쳐서 3월 17일에 거행하였다. 왕세자가례의(王世子嘉禮儀)는 1743년 9월 28일에 11월 13일에 걸쳐서 세자빈(世子嬪)을 간택한 후 12월 20일에 납채(納采)하였고, 이어서 26일에 납징(納徵), 29일에 고기(告期)하고 다음해(1744) 1월 9일에 책례(冊禮), 11일에

친영(親迎)의 순으로 거행되었다 왕세자대리의(王世子代理儀)는 1749년(영조 25) 1월 23일에 세자청정조참(世子聽政朝參)을 거쳐 1월 27일에 인정전(仁政殿)에서 거행하였다

권4 금제는 경모궁의 보수와 개진·사도세자의 존호(尊號)·궁호(宮號)·원호(園號)·전교 및 좌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개건시설도감의는 1776년 4월 8일에 정조가 즉위한 후 전교에 따라 경모궁의 어재실(御齋室)·정당(正堂)·재실(齋室)을 보수 개건할 때의 의례를 기록한 것이며, 같은해 5월 16일에서 9월 3일까지 완성하고 8월 17일에 신련(新輦)을 이봉(移奉)하였으며, 9월 30일에 환안(還安)하였다 「당저즉조후추상휘호시의궤」는 1776년 정조가 즉위한 후 사도세자에게 '장헌(莊獻)'이라는 존호를 올리고 궁호를 경모궁, 원호는 영우원(永祐園)으로 추상할 때의 기록으로서, 3월 20일에 설치한 봉원도감(封園都監)과 추숭도감(追崇都監)의 좌목이 첨부되어 있다 그 좌목을 보면, 도제조(都提調)에 영의정 김양택(金陽澤), 좌의정 김상철(金尙喆), 우의정 정존겸(鄭存謙)이고, 제조(提調)는 채제공(蔡濟恭) 외 8인이다 8월 17일에 의례를 거행하였다 의주(儀註)에는 친상책인의(親上冊印儀) 등이 있다 「원자정호후가상휘호시의궤」는 1783년(정조 7) 4월 1일에 사도세자에 수덕돈경(綏德敦慶)이라는 존호를 올릴 때의 기록이다 같은 해 3월 8일 전교에 의하여 도감이 설치되는데, 좌목을 보면 도제조에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서명선(徐命善), 제조에 김화진(金華鎭)외 8인이었다 3월 20일에는 악장수명곡(樂章嵩明曲)과 가상존호시응행절목(加上尊號時應行節目)이 기록되어 있다 의주(儀註)에는 추상존호책인친상의(追上尊號冊印親上儀) 등이 있다 「전교」는 1776년부터 1783년까지 7년간 경모궁에 관한 왕명을 모아 놓은 것이다 경모궁의 관원(官員)은 도제조 1인, 제조 1인, 영 1인, 직장(直長) 1인, 봉사(奉事) 1인이다

2) 『국조보감감인청의궤(國朝寶鑑監印廳儀軌)』

『국조보감(國朝寶鑑)』은 조선시대 역대왕의 업적 가운데 선정(善政)만을 모아 편찬한 편년체의 사서(史書)이다 『국조보감』의 편찬을 최초로 구상한 것은 세종 때이다 이때에 정치에 모범이 될만한 일들을 모아 후세의 귀감(龜鑑)으로 삼기 위해 권제(權踶)·정인지(鄭麟趾) 등에게 명하여 태조·태종보감을 편찬하기 시작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였다. 세조 때(1457년, 세조 2) 신숙주(申叔舟), 권람(權擥) 등이 이를 계승하여 태조·태종·세종·문종 4대의 보감을 처음으로 완성하였다 이후에 숙종 때(1684년, 숙종 10) 이단하(李端夏)에 의한 『선묘보감(宣廟寶鑑)』, 영조 때(1730년, 영조 6) 이덕수(李德壽) 등에 의한 『숙묘보감(肅廟寶鑑)』, 정조 때(1782년, 정조6) 조경(趙璥)에 의한 『국조

보감』, 헌종 때(1847년, 헌종 13) 조인영(趙寅永), 1908년(융희 2) 이용원(李容元)에 의하여 『국조보감』은 꾸준히 보강되었다 이같은 국조보감의 편찬이 꾸준히 계속된 것은 제왕의 감계(鑑戒)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조보감은 제왕학 연구에 필수적 사료로서 가치가 있으나 지나치게 수식이 많은 것이 하나의 흠이 된다고 할 수도 있다

『국조보감감인청의궤』는 『국조보감』의 편찬과 감인(監印)에 관한 기록으로 규장각에 3종이 보존되어 있다(정조·헌종·순종때 편찬된 것) 정조 때 편찬된 『국조보감감인청의궤』는 1781년(정조 5) 7월부터 1782년 12월까지 행해졌던 『국조보감』의 편찬과 감인에 관한 기록으로 1책 189장, 채색도가 붙은 필사본이며, 책의 크기는 46㎝×35㎝이다

책의 제목은 『감인청의궤(監印廳儀軌)』라 하였으나, 내용에는 감인청 사실 앞에 찬집청(纂輯廳) 사실이 실려 있어 『국조보감』을 작성하는 과정과 뒤에 편집하는 과정이 합편되어 있다 책의 내용을 목록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찬집청좌목(纂輯廳座目)」에는 총재대신(摠裁大臣)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김상철(金尙喆)과 찬집당상(纂輯堂上) 행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채제공(蔡濟恭) 외 12인, 교정당상(校正堂上) 전(前) 대제학(大提學) 서명응(徐命膺) 외 1인 및 낭청(郎廳), 서리(書吏) 등의 명단이 실려 있다

「찬집청사목(纂輯廳事目)」에는 1781년 7월 12일에 조직된 찬집청의 응행절목(應行節目) 몇 가지가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찬집청사실(纂輯廳事實)」에는 1781년 7월 9일부터 1782년 3월 26일까지의 찬집과 교정에 관한 여러 기록이 실려 있다 정조는 『영조실록(英祖實錄)』의 편찬이 끝난 직후 실록보다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보감 편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기왕에 발행된 태조·태종·세종·문종·선조·숙종의 『6조보감(六朝寶鑑)』에 정종·단종·세조·예종·선종·중종·인종·명종·인조·효종·현종·경종·영조 등 13조의 보감을 합하여 『국조보감』을 편찬하려는 뜻을 피력하였다. 『13조보감(十三朝寶鑑)』의 편찬이 결정된 후 찬집 및 교정에 대한 분담 추진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정조는 보감 편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는 보감의 편집 방향이나 기술 자세 등에 대하여 관련 대신들과 토의를 벌이는 기사의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조보감』 찬집은 불과 2개월 여만인 9월에 끝나고 교정은 다음해 3월에 완료되어 3월 26일에는 교정소에서 감인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찬집청이문질(纂輯廳移文秩)」에는 서리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시역시(始役時)의 이문(移文) 몇 개가 실려 있고, 내관질(來關秩)이라 하여 내관 1종이 수록되었다 또한 「찬집청실입질(纂輯廳實入秩)」에는 찬집청소입물종(纂輯廳所入物種)·용환물종(用還物種)이 실려 있고, 이어서 찬집청감결질(纂輯廳甘結秩)이 있다.

『감인청의궤』에는 『국조보감』의 태묘(太廟)·봉모당(奉謨堂) 봉안(奉安) 일자(日字)

와 인출(印出)과 봉안(奉安)에 대한 내용이 수록된 것이다 「감인청좌목(監印廳座目)」에는 총재대신 영중추부사 김상철과 당상 3인 도청, 낭청, 감동관(監董官), 서리 등의 명단이 있다 감동관으로는 교서관(校書館) 교리(校理) 성대중(成大中)과 이덕무(李德懋), 유득공(柳得恭), 박제가(朴齊家), 서이수(徐理修) 등 규장각 4검서관(四檢書官)이 책임을 맡았다

「감인사실(監印事實)」에는 1782년 4월 28일부터 1782년 12월 28일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활자로 선인(先印)한 다음에 목판(木板)에 번각(翻刻)하는 인출방식의 결정과정과 각수(刻手)의 선정, 책의 장정(裝幀)에 대한 의논, 보감고교(寶鑑考校) 및 태묘봉안습의(太廟奉安習儀)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어 정조의 어제(御製)인 「국조보감서(國朝寶鑑序)」·「국조보감총서(國朝寶鑑總敍)」·「태묘각실봉안국조보감권질(太廟各室奉安國朝寶鑑卷秩)」·「국조보감수찬제신좌목구본(國朝寶鑑修撰諸臣座目舊本)」·「국조보감범례(國朝寶鑑凡例)」·「국조보감발(國朝寶鑑跋)」·「국조보감전(國朝寶鑑箋)」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종묘(宗廟)에 『국조보감』을 봉안하는 절차와 그때의 「반차도(班次圖)」 준비를 위해 예조(禮曹)에 보냈던 관문(關文)을 모은 「예관질(禮關秩)」이 함께 수록되었고, 「감인청이문질(監印廳移文秩)」·「감인청래관질(監印廳來關秩)」·「감인청감결질(監印廳甘結秩)」과 인역소용(印役所用)의 물목(物目)과 『국조보감』 종묘 봉안 및 진상을 위한 여러 물목이 부기된 「감인청실입질(監印廳實入秩)」이 있으며, 「별단(別單)」에는 『국조보감』의 찬집·감인·봉안에 참여한 인원의 명단이, 「상전질(賞典秩)」에는 그들에 대한 포상 내용이, 마지막으로 「공장질(工匠秩)」에는 사자관(寫字官), 각수(刻手) 등 여러 공장(工匠)들의 명단과 그들에 대한 급료 규정인 공장료포식(工匠料布式)이 수록되었다

『국조보감감인청의궤』는 조선시대사에 대한 통일적 이해의 성립을 시사하는 『국조보감』의 구체적 편찬작업과 봉안과정이 자세히 기록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료이다

헌종 때 편찬한 『국조보감감인청의궤』는 1책 162장으로 채색도가 붙은 필사본이며, 책의 크기는 47.4㎝×33.1㎝이다 1847년(헌종 13) 2월부터 1848년 10월까지 행해진 정조·순조·익종 3대의 국조보감 감인(監印) 과정이 수록된 책이다 목록에는 「시일」·「계사」·「재용」 등이 있고, 책 끝편에는 채색의 반차도가 있다

「좌목」에 의하면 총재대신으로 영중추부사 조인영(趙寅永)이, 찬집청 교정대신에는 행판중추부사 정원용(鄭元容)이, 교정당상에는 행지중추부사 홍경모(洪敬謨) 외 2인이, 찬집당상에는 판돈녕부사 김난순(金蘭淳) 외 5인이, 감인당상에는 행호조판서 서희순(徐憙淳) 외 2인 등이 선임되어 이 책을 편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순종 때 편찬한『국조보감감인청의궤』는 1책 78장으로 된 채색도가 붙은 필사본이며, 책의 크기는 44 7㎝×31㎝이다 1908년(순종 2) 9월부터 1909년 8월까지 사이에 제작된『국조보감』(헌종·철종 때의 업적)의 감인 과정이 기록된 것이다.

1908년 9월부터 찬집이 시작되고, 다음해 4월에 인역(印役)이 시작되어 8월에 종묘에 보관되었다「좌목」에 의하면 교정관(校正官)에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 외 6인, 편집관에는 규장각 대제학 이용원(李容元) 등 8인, 감인관에 내부대신 박제순(朴齊純) 등 3인이 선임되었다「도설(圖說)」에서는 전대의 의궤와 같은 봉안궤(奉安櫃) 등을 채색으로 그려놓고 있으나, 채색반차도(彩色班次圖)는 없다. 단지 정해진 위치에 관원(官員)의 직명(職名)만을 기입한 문반차도(文班次圖)가 있다는 것과「주본(奏本)」에 찬집 방침과 같은 보감에 대한 논의는 없고 원역(員役) 선임에 대한 내용만 수록되어 있는 점 등은 전대의 의궤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3)『사도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思悼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1762년(영조 25) 윤 5월부터 7월까지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 莊獻世子)의 빈궁(殯宮)·혼궁(魂宮)에 관한 기록이다 빈궁이란 왕세자 또는 왕세자의 아내인 빈궁(嬪宮)의 관을 발인(發靷)하기 전까지 모시던 곳이고, 혼궁이란 태자(太子)나 세자(世子)의 국장 뒤 3년간 신위(神位)를 모시던 곳이다

사도세자가 훙서(薨逝)한 것은 윤5월 21일 자시(子時)였다 이때부터 예장을 마치고 신위를 모실 때까지 관(棺)과 혼령(魂靈)이 깃들인 신위를 모시기 위한 제반 시설과 관련 사항의 기록이다 이 책은 2책으로 채색도가 붙은 필사본이다.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45 5㎝×33 3㎝이다

책의 내용은 목록(目錄)에 이어 소선도(素扇圖 깁부채의 도식)·소개도(素蓋圖 생명주로 만든 일산의 도식)·명정도(銘旌圖 죽은 사람의 품계 관직 성씨를 기록한 기의 도식)·명정부도(銘旌趺圖 명정의 받침을 그린 도식)·소란평상도(小欄平床圖 간단한 장식을 한 난간이 있는 나무 침상의 도식)·소금저도(素錦褚圖 관 위를 덮는 흰 비단 보자기의 도식) 등의 도식과 설명이 실려 있고 장례 일지(日誌)와 함중식(陷中式 죽은 사람의 이름, 관직, 별호 등을 적기 위하여 신주 속에 사각형으로 우묵하게 파낸 홈의 양식)이 실려 있다

이조단자(吏曹單子)에는 도제조(都提調)로 의정부(議政府) 우의정(右議政)인 홍봉한(洪鳳漢), 제조(提調)로 신회(申晦) 등 5명, 도청(都廳)에 정만순(鄭晩淳), 낭청(郎廳)에 홍헌보(洪獻輔) 등 8명의 명단이 실려 있다 계속하여 도감사목(都監事目)·예조의주질

(禮曹儀註秩)·승전질(承傳秩)·계사·예관·감결·품목·이문·내관·논상·의궤와 제전제구(祭奠諸具)·성복후잉찰(成服侯仍察)·빈궁사(殯宮事)·개명정습의(改銘旌習儀)·발인시수예묘소등사(發靷時隨詣墓所等事)가 실린 일방, 성복제사(成服諸事)·혼궁조성(魂宮造成)·수리소등사(修理所等事)가 실린 이방, 습염제사(襲斂諸事)·빈궁배설명정등사(殯宮排設銘旌等事)·성복후장제기주성등사(成服後祭器鑄成等事)가 실린 삼방에 관한 기록이 차례로 실려 있다 별공작의 끝 부분에는 도제조인 좌의정(左議政) 홍봉한을 비롯하여 제조·도청·낭청 등의 관직(官職)과 성(姓) 그리고 수결(手決)이 실려 있다

4) 『사도세자예장도감도청의궤(思悼世子禮葬都監都廳儀軌)』

1762년(영조 38)의 사도세자(思悼世子) 장례(葬禮)에 관한 기록이다

사도세자는 1749년(영조 25)부터 부왕 영조를 대신하여 서정(庶政)을 대리하였다 그러나 이때에 사도세자를 비판하는 노론(老論)의 정치세력이 있었고 여기에 영조의 계비(繼妃)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와 숙의(淑儀) 문씨 등이 가세하여 사도세자를 비방하였다 이에 실망을 느낀 영조는 사도세자를 꾸짖고, 이에 사도세자는 격분하더니 마침내 정신질환으로 광기(狂氣)를 부리며 난행(亂行)을 부리게 되었다 영조는 크게 노하고 국가 장래를 위하여 부득이 사도세자에게 자결하도록 명하였다 세자가 끝내 자결하지 않자 그를 서인(庶人)으로 폐하고, 영빈(映嬪)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8일 동안 뒤주에 가두어 아사(餓死)하게 하였다 영조는 뒤에 이를 후회하고 사도(思悼)라고 시호(諡號)를 내리고 장례 때는 친히 참석하여 신주(神主)를 제주(題主)하면서 나라의 장래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선포하였다

이 책은 2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채색도가 포함된 필사본이다 현재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으며, 크기는 45.3㎝×33㎝이다

책의 내용을 보면 권수(卷首)에 총목록이 있고, 제1책에는 좌목(座目)·계사(啓辭)이하 일방(一房)까지 수록되어 있다 제2책에는 이방(二房)·삼방(三房)·분장홍고(分長興庫)·분전설사(分典設司)·지석소(誌石所)·우주소(虞主所)·별공작의궤(別工作儀軌)가 수록되어 있다

「도청의궤(都廳儀軌)」에는 좌목·사목과 계사질·이문질(移文秩)·내관질(來關秩)·품목질(稟目秩)·감결질(甘結秩)·예관질(禮關秩)·의주질(儀註秩)·논상질(論賞秩)이 수록되어 있다 의주질은 발인의(發靷儀)·노제의(路祭儀)·천전의(遷奠儀) 등 거행의례별(擧行儀禮別)로 약술되어 있다

일방의궤(一房儀軌)이하 별공작의궤(別工作儀軌)까지 각방의궤(各房儀軌)에는 제원(諸員)의 명단과 관계된 내왕문서질(來往文書秩)·소장물목조성사(所掌物目造成事)·소용물자(所用物資)의 실입(實入)·환하(還下)·차비제원(差備諸員)·공장질(工匠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각방(各房)의 주요 소관내역을 살펴 볼 수가 있다 특별히 각방에서 조성하는 물목(物目)에는 수량과 용도, 소요되는 물자와 규격 및 채색도설(彩色圖說)이 섬세하게 병기(倂記)되어 있다 또한 「일방의궤」의 뒤(제1책 끝편)에는 예장 때의 채색반차도(彩色班次圖) 13장이 첨부되어 있어 예장 때의 사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5) 『원행배설정례(園幸排設定例)』

『원행배설정례』는 원행 때 의식에 쓰는 제구(祭具)를 진설(陳設)하는 배설(排設)에 대한 규정을 모은 책으로, 그 중에서도 수원에서의 배설 부분만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편년(編年)과 편자(編者)가 미상이다 책의 크기는 33 8㎝×23㎝이며 1책(31장, 26장)으로 된 필사본이다 수원에서의 배설 부문만 실려 있기 때문에 원행 전반에 대해 규정한 『원행정례(園幸定例)』에 실려 있는 과천 등지에서의 배설에 대한 규정 등은 찾아 볼 수 없다.

목록의 순서는 행궁배설(行宮排設)·북루하배설(北樓下排設)·대청급방배설(大廳及房排設 塗褙秩·鋪陳秩·門張秩·地衣秩)·은약헌소차배설(隱若軒小次排設)·방배설(房排設 塗褙秩·鋪陳秩)·시사시배설(試士時排設 . 唱榜所入)·수자간배설(水刺間排設)·향축봉안처소(香祝奉安處所)·약방(藥房)·금루(禁漏)·기상(已上 合計부분으로 價錢註記)으로 되어 있다 『원행정례』에 수록된 같은 항목과 내용을 비교해 보면 개비(改備)기간이 『원행정례』보다 긴 편이다 시기의 선후(先後)를 확언하기는 어렵다

6)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

『원행을묘정리의궤』는 1795년(정조 19)에 정조가 생모(生母)인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 사도세자비)를 모시고 수원에 있는 현륭원(顯隆園)에 행차한 일과 그것에 수반된 여러 왕실 행사의 기록을 정리한 것이다 1795년은 국왕의 친부모인 사도세자와 자궁이 태어난지 만 60이 되는 갑년(甲年)이고 영조의 계비(繼妃) 정순왕후(貞純王后)가 51세가 되어 망육(望六)에 이르는 동시에 국왕 정조가 즉위한지 20년이 되는 특별히 경사스

러운 해라고 하여 많은 기념행사를 하였다 자전(慈殿 정순왕후)에게 수경(綏敬), 자궁(慈宮 정조의 생모 혜경궁 홍씨)에게 휘목(徽穆)이라는 존호를 올렸다 그리고 대대적인 규모로 현륭원에 행차하여 혜경궁에게 올리는 잔치를 벌렸다 이때에 진찬(進饌)은 물론이고 그외에 노량진 앞 한강에 주교(舟橋)를 설치하였고, 수원에서 문무과방방(文武科放榜)·어사(御射)·사미(賜米)·양노연(養老宴) 등 부속 행사를 다채롭게 펼쳤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왕실 행사만이 아니고, 정조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책은 규장각도서로 15종이 소장되어 있으며, 국립도서관 장서각, 국립박물관 등에도 소장되어 있다 책의 구성은 권수(卷首) 1책, 본책 5권 5책, 부편 4권 2책으로 합 8책으로 구성된 정리자(整理字) 활자본이다

정리자는 청(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던 자체(字體)를 수용하여 만든 목활자(木活字) 생생자(生生字)를 본떠 제작한 것으로서 『원행정례』와 이 책의 인쇄에 처음 이용되었다 활자 이름인 정리자도 『원행을묘정리의궤』의 명칭을 따서 붙여진 것이다 처음에는 생생자로 인쇄하려고 하였으나, 좀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인쇄하려고 금속활자를 새로 주조하여 인쇄하기로 방침을 바꾼 듯하다

권수는 택일(擇日)·좌목(座目)·도식(圖式)으로 구성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도식이다 도식은 화성행궁(華城行宮)의 전경으로부터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후에 홍화문(弘化門)에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는 광경에 이르기까지 원행시 행사의 중요 장면들을 판화로 정리한 것으로 화성행궁도(華城行宮圖)·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채화도(綵花圖)·기용도(器用圖)·복식도(服飾圖)·낙남헌양노연도(洛南軒養老宴圖)·알성도(謁聖圖)·방방도(放榜圖)·서장대성조도(西將臺城操圖)·가교도(駕轎圖)·주교도(舟轎圖)·반차도(班次圖 63면)·연희당진찬도(延禧堂進饌圖)·신풍루사미도(新豊樓賜米圖)·득중정어사도(得中亭御射圖)·홍화문사미도(弘化門賜米圖) 등이 있다 이것들은 당시 도화서(圖畵署)를 주도한 김홍도(金弘道)식 화풍으로 표현되었다

권1에는 전교·연설·악장·치사(致詞)·어제·어사·전령(傳令)·군령(軍令)과 부록으로 엄시각조령(嚴時刻操令)으로 구성되었다 전교와 연설은 국왕의 명령이나 대화 내용이고, 악장은 원행시 각종 행사에 사용된 음악이다 치사와 어제는 각종 행사에 이용된 여러 글이고, 어사는 임금님이 활을 쏜 내용이다 전령은 정리사나 장용영내·외사에게 내린 훈령이고, 군령은 원행시 취할 행사의 세부내용이다

권2에는 의주(儀註)와 부록으로 부조식(附操式)·절목·계사로 구성되었다 의주는 출궁의식과 환궁의식의 절차로 대가배자궁예현륭원시출환궁의(大駕陪子宮詣顯隆園時出還宮儀)·화성묘전배의(華城廟展拜儀) 등 총 9개가 있다 절목은 의식의 업무 규식으

로 자궁가교습의절목(慈宮駕轎習儀節目)·화성진찬시절목(華城進饌時節目)·의궤사목(儀軌事目) 등 총 4개가 있다 계사는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글로서 갑인 12월 초10일부터 정사 2월 18일까지 연월일별로 정리하였다

권3은 계목(啓目)·장계·이문·내관·수본(手本)·감결로 구성되었다 계목과 장계는 신하들의 보고서이고, 이문과 내관은 관공서 상호간에 오고간 문서이다 또한 수본은 직속상관에게 자필로 쓴 보고서이며, 감결은 상급관청에서 내려온 공문서이다

권4는 찬품(饌品) 부록으로 채화(綵花)·기용·배설·의장(儀仗)·반전(盤纏)·장표(掌標)·가교(駕轎)·주교·사복정례(司僕定例)로 구성되어 있다 찬품은 각종 식품의 내용과 조달에 관한 것이고, 배설은 봉수당 진찬 때의 소요 물건과 준비에 관한 내용이다 의장은 원행 때 사용할 도구와 준비 상황에 관한 기록이며, 반전은 원행 때 참가한 내·외빈과 각 사(司)의 수행 관원 및 하급 관리와 군병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지급한 노자의 내용이다 장표는 원행시 어가를 수행하는 수행원들이 패용하는 표신과 수행원 정수에 관한 내용이며, 가교와 주교는 원행 때 임금과 자궁이 타고 갈 가마를 준비하는 내용과 배다리를 놓는 데 필요한 여러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사복정례는 현륭원에 행차할 때 각 사에서 거행할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 내용이다

권5는 내외빈(內外賓)·참연노인(參宴老人)·배종(陪從)·유도(留都)와 공령(工伶)·당마(塘馬)·방목(榜目)·상전(賞典)·재용(財用)으로 구성되었다 내외빈에는 진찬할 때 참여한 동성(同姓) 8촌이내의 친척과 이성(異姓) 6촌이내의 인척(姻戚)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참연노인에는 양노연에 참여한 노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 노인들은 왕의 행차를 수종한 노인과 수원부의 노인들로서 15인의 대신과 374인의 사서인(士庶人)들이다 배종은 임금님의 원행 때 왕을 호위하며 수행하는 각 사, 각 영 경기영읍의 수행자의 명단이고, 유도는 임금님 행차 후 도성에 남아 수비를 담당하는 관원의 명단과 임무에 관한 내용이다 공령은 연회 때 참석하는 악사(樂士)·악공(樂工)·악생(樂生) 등 연주담당자와 복식에 관한 내용이고, 당마는 원행 때 임금님을 호위하는 당(塘 강안에 숨어 있는 것)과 복(伏 형체를 숨기는 것)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방목은 왕의 화성 행차 때 문·무과 별시(別試) 합격자 명단이고, 상전은 화성 행차에 참여한 관원과 군교 서리에 이르기까지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사한 상의 내용이며, 재용은 행궁 때 소요된 재정 일반에 관한 내용이다 「좌목」을 보면 총리대신에 채제공(蔡濟恭), 정리사에 심이지(沈頤之) 외 5인 낭청에 홍우영(洪宇榮)외 4인이다 부편은 모두 4편이 있는데, 이것은 원행을 전후한 왕실의 중요 행사에 대한 전교와 상전 등 제반 기록을 담은 내용이다 부편1 「탄신경하(誕辰慶賀)」는 1795년(정조 19) 6월 18일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이하여 명정전(明政殿) 월대(月臺)에서 진하(陣賀)·진연(進宴) 등의

의식에 관한 기록이며, 목록은 전교·연설·악장·치사·전문(箋文)·의주·절목(節目)·계사·찬품·기용·배설·내외빈·진찬시당랑원역(進饌時堂郞員役)·상전의 순으로 되어 있다 부편2「경모궁전배(景慕宮展拜)」는 1795년(정조 19) 1월 21일 사도세자의 회갑을 맞아 정조가 그 사당에 참배한 기록이다 목록은 전교·연설·의주·절목·계사·상전으로 되어 있다 계사 중에 1794년 12월 24일 기사에는 경모궁 배알 때 혜경궁과 정순왕후의 위차(位次)에 대한 논의가 기술되어 있다 부편3「영흥본궁제향(永興本宮躋享)」은 태조(太祖)의 아버지인 환조(桓祖)의 탄신 8회갑을 맞이하여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희(金熹)를 보내 섭행작헌례(攝行酌獻禮)를 행하고 추제(追躋)했을 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목록은 전교·연설·어제·반교문(頒敎文)·의주·계사·장계로 되어 있다 부편4「온궁기적(溫宮紀蹟)」은 1760년(영조 20) 사도세자가 온양행궁에 행차하고 영괴대(靈槐臺)를 세운 사적을 기념하기 위해 1796년(정조 20) 정조가 영괴대비(靈槐臺碑)를 세운 데에 대한 내용이다 목록은 전교·연설·어제·계사·장계·상전으로 되어 있다

이『원행을묘정리의궤』는 원행 행사가 모두 끝난 1795년 윤2월 27일에 정리의궤청(整理儀軌廳)의 명칭으로 의궤를 편찬하라는 어명에 따라 곧바로 주자소(鑄字所)에 의궤청이 설치되어 업무가 시작되었다 의궤청 총리대신(總理大臣)은 좌의정 채제공이 맡았고, 좌참찬 정민시(鄭民始) 등 8명이 당상을 맡아 편찬 작업을 추진하였다 정조의 깊은 관심 속에 작업이 진행되어 같은 해 8월 15일 교정(校正)을 끝내고, 윤행임(尹行恁)이 인쇄 책임자로 인쇄를 시작하여 1797년(정조 21) 3월 24일에 완성하였다 완성 즉시 혜경궁과 정조에게 바치고 규장각 서고·화성행궁·규장각·외규장각·다섯 사고를 비롯한 각처에 소장하는 한편 각 관서 및 총리대신 채제공이하 관계인들에게 분배하였다

이『원행을묘정리의궤』가 담고 있는 풍부한 기록 내용은 왕실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전하여 줄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1795년 정조의 화성행차와 이 책의 간행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며 내용상으로도 많은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7)『원행정례(園幸定例)』

정조가 1789년(정조 13) 10월 비운의 생부 장헌세자의 능묘를 수원 화산에 이장한 뒤 정기적인 원행(園幸)을 위하여 그에 따른 여러 사항을 규정한 정례(定例)이다 이미 정조는 현륭원 천봉에 앞서 정조 13년 9월에『원행정례(園幸定例)』를 편찬할 것을 비변사

(備邊司)에 명한 바 있었다 그것은 화산의 현륭원이 왕궁 소재 서울에서 1백리 이상 떨어져 있는 수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행에 따른 외읍의 공궤(供饋), 군병의 마련, 한강을 건너기 위한 주교(舟橋)의 설치 등 막대한 준비와 폐해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었다 정조는 현륭원 천봉 뒤의 원행에 관한 일로 각 사(司)·각 영(營)이나 필로(蹕路)에 인접한 외읍 백성들에게 털끝만큼의 수고나 폐해도 끼치고 싶지 않다는 뜻을 이 무렵에 자주 전교(傳敎)를 통하여 토로한 바 있었다 따라서 어가(御駕)를 수행하는 백관과 군병들에게 음식과 여비를 지급하는 등 각종의 원행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그 폐단과 민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하였다.

『원행정례』는 왕명을 받들어 1790년(정조 14) 1월 5일 비변사에서 편찬을 끝내고 정조의 재가를 받았다 규장각도서에 소장된 이 책은 1책 121장의 필사본으로서, 그 크기는 세로 36㎝×가로 23㎝이다

『원행정례』는 원행에 따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비를 줄이고 간편함을 원칙으로 그 절차와 내용을 정례화하여 수록하였다 이 책은 정조의 현륭원 원행에 수행하는 백관(百官)·이례(吏隷)·군병수·복식(服式)·군량·음식의 배설(排設)·주교(舟橋) 등 원행 전반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목차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배종백관군병반차식(陪從百官軍兵班次式)·수가관장복식(隨駕官章服式)·대례식(帶隷式) 등은 각 품별 서리(書吏)·색구(色驅)·배례(陪隷)·구종(驅從)·다모(茶母)·마부(馬夫) 등 수에 관한 규정이다

(2) 반전식(盤纏式)·척후장졸양료식(斥候將卒楊料式)·장표식(掌標式)·군량마태식(軍糧馬太式)·주교식(舟橋式 橋排·軍物·堂下以下員役軍兵)·경식거식(京植炬式)·등계식(燈契式)·시초식(柴草式) 등과 전체 규정 다음에 시흥참(始興站)·수원참(水原站) 등 참별(站別) 규정이 있다

(3) 배종백관원수(陪從百官員數)·각사이례총수(各司吏隷摠數)· ‥원행에 배종(陪從)하는 백관(百官) 원수와 이례(吏隷)의 각사별(各司別) 총수 끝에 과거를 개설하는 설과시(設科試)에 가종(加從) 인원의 내용이 덧붙여져 있다 이 정례에 규정된 배종백관 원수와 각사 이례(吏隷) 총수는 39관청의 1,100명이며, 설과시 가종 인원은 35명이다 원행에 수행하는 그 인원수의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종묘서(宗廟署) 3원 ② 경모궁(景慕宮) 3원 ③ 종친부(宗親府) 17원 ④ 의정부(議政府) 23원 ⑤ 중추부(中樞府) 22원 ⑥ 의빈부(儀賓府) 17원 ⑦ 규장각(奎章閣) 24원 ⑧ 위내대령(衛內待令) 74원 ⑨ 비변사(備邊司) 11원 ⑩ 의금부(義禁府) 31원 ⑪ 이조(吏曹) 28원 ⑫ 호조(戶曹) 26원 ⑬ 예조(禮曹) 23원 ⑭ 병조(兵曹) 81원 ⑮ 형조(刑曹) 23원 ⑯ 승정원(承政院) 71원 ⑰ 사헌(司憲府) 19원 ⑱ 사간원

(司諫院) 13원 ⑲ 홍문관(弘文館) 14원 ⑳ 예문관(藝文館) 16원 ㉑ 도총부(都摠府) 14원 ㉒ 내의원(內醫院) 50원 ㉓ 통례원(通禮院) 25원 ㉔ 상서원(尙瑞院) 7원 ㉕ 향실(香室) 5원 ㉖ 액정서(掖庭署) 75원 ㉗ 군직청(軍職廳) 9원 ㉘ 선전관청(宣傳官廳) 55원 ㉙ 별군관청(別軍官廳) 16원 ㉚ 충의청(忠義廳) 13원 ㉛ 별운검(別雲劍) 2원 ㉜ 금루(禁漏) 6원 ㉝ 좌포도청(左捕盜廳) 5원 ㉞ 우포도청(右捕盜廳) 5원 ㉟ 내시부(內侍府) 33원 ㊱ 정리의궤청(整理儀軌廳) 9원 ㊲ 내수사(內需司) 3원 ㊳ 봉상시(奉常寺) 6원 ㊴ 사복시(司僕寺) 223원 등 합계 1,100명

(4) 수가각영문장졸총수(隨駕各營門將卒摠數) ··장용영(壯勇營)·용호영(龍虎營)·훈련도감(訓練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총융청(摠戎廳)·경기감영(京畿監營)·일로도차사원(一路都差使員)·광주부(廣州府) 등 수가장졸(隨駕將卒)은 모두 5,044명을 헤아릴 만큼 대규모였다 그 내역을 보면, ① 장용영 장졸은 위내(衛內)·위외(衛外) 1,961원, 별수가(別隨駕) 44원, 사부직(私卜直)·취반군(炊飯軍) 229원 등 계 2,234명 ② 용호영 장졸은 위내·위외 206원, 사부직·사군양직(私軍粮直) 125원 등 계 331명 ③ 훈련도감 장졸은 위내·위외 983원, 별수가 54원, 당마(塘馬) 54원, 사부직 57원 등 계 1,148명 ④ 금위영 장졸은 위내·위외 404원, 별수가 42원, 사부직 39원 등 계 485명 ⑤ 어영청 장졸은 위내·위외 448원, 별수가 42원, 사부직 107원 등 계 597명 ⑥ 총융청 장졸은 정원대령(政院待令) 32원, 별수가 6원 등 계 38명 ⑦ 경기감영장졸은 어전(御前) 103원, 사부직 5원 등 계 108명 ⑧ 일로도차사원 장졸은 수원판관(水原判官) 14원, 대령마차사원(待令馬差使員) 2원, 과천현감(果川縣監) 8원, 시흥현령(始興縣令) 8원 등 계 32명 ⑨ 광주부 장졸은 광주유수(廣州留守) 39원, 광상대령(壙上待令) 27원, 사부직 5원 등 계 71명으로 9개 관아의 장졸 5,044명을 헤아렸다

(5) 병조각차비봉대 급 부연대위군역인마총수(兵曹各差備奉待及富輦隊衛軍驛人馬摠數)·사복내외시입파마총수(司僕內外寺入把馬摠數 各站菊豆器皿實數) 합계 86명의 인원, 그리고 전부마(戰卜馬) 1,317필과 사복시의 말 100필 등 말 1,417필이 동원되었다

이러한 『원행정례』의 규정은 원행 노정(路程)인 과천로(果川路)에서 시흥로(始興路)로 변경된 1795년(정조 19) 이후에 확정된 것인데, 그 이전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정조의 현륭원 원행에는 배종하는 백관과 각사 이례(吏隷) 1,100명, 수가(隨駕)하는 각 영 군병 5,044명, 그리고 병조의 차비군 등 86명 등 도합 6,230명이 참가했을 정도로 정조의 원행 규모와 그 위용을 알려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 훈련도감의 당마(塘馬 斥候의 임무를 가진 말탄 군사) 54명과 원소(園

所)와 수원참의 주참(主站) 지방관인 과천현감·시흥현령 휘하의 군졸, 광주유수 휘하의 당상대령군(塘上待令軍) 등 합계 113명의 인원은 실제 원행행열에 직접 참가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정조를 수가한 인원수는 6,117명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그 인원수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어서 때에 따라서는 정조의 재가를 받아 약간명을 증원할 수 있는 부서가 있었고, 또한 과거가 설치될 때는 이조·병조 등에서 35명이 더 가종(加從)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륭원 원행에는 위의 6,230명(실제로 6,117명)의 인원과 더불어 병조의 전부마 1,317명과 사복시의 말 100필 등 1,417필의 말이 동원되는 등 왕권의 위용(威容)을 보여주는 장엄한 행렬이었음을 알 수 있다

(6) 배종백관반전수솔양료실수(陪從百官盤纏隨率粮料實數 1일분 준비)·배종백관수솔각사이례장표실수(陪從百官隨率各司吏隷掌標實數)[設科時加從]·각영문수솔장표(各營門隨率掌標)· ··정조의 뜻을 받들어 배종하는 백관에게 여비[盤纏]을 지급하고 수솔(隨率)에게는 식량[粮料]을 지급하였다. 이들에게는 목표(木標)가 지급되어 한 사람의 하인도 더 이상 거느리지 못하게 하였다 수가하는 군병에게는 군량을 지급했고 말에도 콩과 시초(柴草)를 지급하는 등 원행에 따른 일체의 사소한 비용까지 관에서 마련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도로교량(道路橋梁 果川作路·果川作路時塘馬)·척후(斥候 果川作路時斥候)·복병(伏兵 果川作路時伏兵)……원행을 위하여 동원되었으면서도 수가행렬에는 참가하지 않은 상당수의 인원이 주교의 가설·운영 등에 동원되었다 한강에 주교를 가설할 때는 주교당상(舟橋堂上) 등 456명의 관원과 수부(水夫)가 동원되었다 대궐문에서 노량진까지는 횃불 300자루가 가설되었고, 노량진에 수원까지는 매 15보(步, 6척)마다 등(燈) 3,604개를 설치했으며, 3등에 1명씩의 군사 1,201명이 배치되었다 또한 대궐문에서 수원 원소까지 24개 처에 4인 1개조 120명의 척후병과 18개 처에 8인 1개조 144명의 복병을 설치하였다

현륭원 천봉 직후 처음에는 과천로가 정조의 원행로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수원까지는 거리가 먼 데다가 과천로에는 남태령(南泰嶺)이라는 고갯길이 가로막혀 있어서 치도(治道)와 인근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연로상(輦路上)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한강을 건널 때는 용주(龍舟 배 앞에 용의 머리를 조각 장식한 큰 배)를 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 용주법에는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 데다가 왕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으므로 새로 주교제(舟橋制)를 채택, 주교사(舟橋司)를 설치하여 배를 연결하여 다리를 만드는 방법을 시행,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주교는 1789년(정조 13) 10월 현륭원 천봉 때 처음으로 이용되었는데, 이때의 주교는 왕명으로 뚝섬나루에 설치하여 그 위로 상여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륭원 천봉 후 정조는 매년 정기적으로 원행을 할 예정이어서 주교의 필요성은 더 한층 높아졌다 그리하여 정조 13년 12월에 이를 전담할 주교사(舟橋司)를 설치하고 주교의 가설·운영 등을 관장하게 되었다 주교사에서는 주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원행정례』와는 별도로 36개 조에 규정을 제정했고, 정조 14년 7월에는 정식으로 주교제를 정하여, 왕명으로 의정부로 하여금 『주교절목(舟橋節目)』을 만들도록 했으며, 정조는 이 『주교절목』의 장단점을 취사하는 논변을 가하여 친히 『주교지남(舟橋指南)』을 찬술한 바 있었다 이러한 제반 조처를 취해 나가는 가운데 주교의 설치 장소로는 노량나루[路粱津]가 결정되었다 이 곳은 지세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가 많이 절약된다는 점이 크게 고려되었다 『원행정례』 주교식(舟橋式)에 따르면 이 주교 가설에 동원된 배는 교배선(橋排船)이 38척(조수의 진퇴에 따라 증감이 있음), 난간선(欄干船)이 240척, 좌우위선(左右衛船)이 12척(정수가 없고 때에 따라 증감함) 도합 290척이었다 이 주교 설치에 동원된 배는 주로 훈국선(勳局船)과 경강선(京江船)·아산 공진창선(貢津倉船) 등이었다

(8) 과천행궁(果川行宮)·안양주필소(安養駐蹕所)·사근평주필소(肆覲坪駐驛所)·화성행궁(華城行宮) 현륭원 원행에 있어서 처음 개설된 노정(路程)은 과천로였다 이 노정은 궁궐에서 숭례문·노량주교·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을 지나 남태령에 이르고, 여기에서 다시 과천행궁·수원행궁·원소에 이르는 길이었다 그러나 과천로는 남태령이라는 고갯길이 있어 치도에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화성성역의 착공 직후인 1794년(정조 28) 4월에 새로이 시흥로(처음에는 금천로(衿川路)라 했음)가 개설되고, 시흥행궁도 건축되어 정조의 원행에 대비하였다

『원행정례』에는 화성행궁의 경우 보첨배설(補簷排設)·정하배성(庭下排設)·대청급방배설(大廳及房排設)·유여택 보첨배설(維與宅 補簷排設)·방배설(房排設)·북루하배설(北樓下排設)·도배(塗褙)·포진(鋪陳)·등촉배설(燈燭排設)·수라간배설(水刺間排設)·시소배설(試所排設) 등 순으로 배설 규정을 싣고 있으며, 특히 화성행궁의 경우에는 문시소(文試所)·무시소(武試所)·문시창방(文試唱榜) 등 시취(試取)에 관한 규정이 첨부되어 있다

(9) 외정리소각종가본년한식(外整理所各種價本年限式) 1년1차개비(改備), 2년1차개비, 수훼수보질(隨毁修補秩), 3년1차개비, 4년1차개비, 5년1차개비, 7년1차개비, 10년1차개비, 15년1차개비, 30년1차개비, 연구파상즉개비(年久破傷則改備), 수훼개비(隨毁改備), 거동시대령(擧動時待令), 3년1차개비, 4년1차개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물종과 그

가전(價錢)이 기재되어 있다

(10) 원소재실(園所齋室) 보첨배설(補簷拜設), 정하(庭下)배설, 내외재실방(內外齋室房)배설, 등촉(燈燭)배설, 수라간(水刺間)배설, 약방(藥房)·판위(版位)배설, 존소(尊所)배설, 금루(禁漏) 등

(11) 능행원행 겸 행시각사솔지화성경락후총수(陵幸園幸兼行時各司率至華城境落後總數)· ·정례(定例) 외의 능행원행 겸행 때의 각사수솔(各司隨率)이 화성경계에서 낙후(落後)하는 인원 총수를 각사별로 규정한 것이다

한편 규장각도서에 소장된 「奎 No 12209의 6」본은 1책 117장의 책으로 같은 내용의 필사본이다 그러나 이 책에는 「외정리소각종가본년한식(外整理所各種價本年限式)」의 '5년1차개비'의 뒷부분이 낙장(落張)되어 있다

『원행정례』는 현륭원과 화성행궁 원행 때 수행하는 백관·이례(吏隷)·군병수·마필수·물종비용 등 원행 전반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이다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원행을묘정리의궤』 등과 더불어 원행을 비롯한 정조대의 대(對) 화성경영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데 그 사료적 가치가 높은 책이다

8) 『장조상시봉원도감의궤(莊祖上謚封園都監儀軌)』

영조가 그의 둘째아들 사도세자(思悼世子)에게 1776년(영조 52)에 장헌(莊獻)이라고 추상존호(追上尊號)하고 봉원(封園)한 내용이다 이 책은 156장의 1책으로 채색도(彩色圖)가 있는 필사본(筆寫本)이다 책의 규격은 44.2㎝×33.5㎝이며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책의 내용을 「목록(目錄)」에 따라 살펴보면 좌목(座目)·계사(啓辭)·이문(移文)·내관(來關)·품목(稟目)·감결(甘結)·예관(禮關)·의주(儀註)·의궤(儀軌)·논상(論賞)·일방(一房)·이방(二房)·삼방(三房)·표석소(表石所)·별공작(別工作)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좌목」을 보면 도제조(都提調)에 영의정 김양택(金陽澤)이었으나 후에 김상철(金尙喆), 정존겸(鄭存謙)의 순으로 교체되었고, 제조(提調)에는 행부사직(行副司直) 채제공(蔡齊恭) 외 2명을 두었으며, 도청(都廳) 2명, 낭청(郎廳) 6명이 도감당랑(都監堂郎)으로 차출되어 있다 사도세자에게 존호로 장헌을 추상(追上)하고, 궁호(宮號)를 경모궁(景慕宮), 원호(園號)를 영우원(永祐園)으로 정한 것은 3월의 일이며, 4월에는 장헌세자시인식(莊獻世子謚印式)을 갖고, 사도장헌세자지인(思悼莊獻世子之印)을 마련하였다 또한 7월 16일에는 영우원 표석(表石)을 영건(營建)하여 수립(竪立)하였으며, 8월 9일에는 시

책인(謚冊印)을 내입(內入)하였다가 12일에 내출(內出)하여 17일에 올렸다 일방의궤(一房儀軌)에는 반차도(班次圖) 12면이 있고, 이방의궤(二房儀軌)에는 옥인(玉印)이, 삼방의궤(三房儀軌)에는 죽책(竹冊)의 도식(圖式)이 그려져 있다 표석소의궤(表石所儀軌)에는 표석의 크기에 관한 설명이 있으며, 표석의 전면식(前面式)에는 조선국사도장헌세자영우원(朝鮮國思悼莊獻世子永祐園)이라고 되어 있다

9) 『장조영우원묘소도감의궤(莊祖永祐園墓所都監儀軌)』

1762년(영조 38)에 사도세자의 묘인 영우원을 양주 배봉산에 조성한 기록이다

사도세자(思悼世子 영조 11~38년)는 영조의 둘째 아들이다 영조는 정성왕후(貞聖王后) 서씨와 계비(繼妃) 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와의 사이에는 소생이 없고, 영빈(映嬪) 이씨와의 사이에 효장세자(孝章世子)와 사도세자가 있었다 효장세자는 일찍 죽고, 사도세자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1749년(영조 25)에 영조는 그로하여금 대리청정(代理聽政)케 하였다 그러나 세자는 악질(惡疾)이 발생하여 광행(狂行)을 하기도 하였다 그 때 세자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계비와 총희(寵姬) 문숙의(文淑儀) 등이 대신들과 상의하여 왕께 광행을 보고하였다 왕은 세자를 불러 비행을 꾸짖은 다음 1762년(영조 38) 5월 13일에 세자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하고, 세자와 그의 어머니 영빈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영조 자신이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굶겨 죽였다 사도세자가 창경궁에서 훙서(薨逝)함으로 묘소도감(墓所都監)이 설치되어 봉묘(封墓)하였는데, 그 곳은 양주 배봉산(拜峰山)에 있는 영우원이다

이 책은 도식이 곁들인 필사본 형태의 2책으로 구성되었으며,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책의 크기는 44.8㎝×33㎝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책(상권)에는 좌목·계사·이문·내관·감결·삼물소의 순으로 수록되어 있고, 제2책(하권)에는 조성소(造成所)·대부석소(大浮石所)이하 논상(論賞)이 수록되어 있다 제1책의 책 앞부분에 옹가전면도(瓮家前面圖)와 옹가후면도(瓮家後面圖)가 있으며 사신도(四神圖)는 없다

묘소도감의 「좌목」에 보면 도제조(都提調)에는 좌의정(左議政) 홍봉한(洪鳳漢)이고, 제조(提調)에는 이이장(李彝章) 등 5인이며, 도청(都廳)에는 김응순(金應淳)이 낭청(郎廳) 삼물소(三物所)에는 송택휴(宋宅休) 등 4명이 그리고 감조관(監造官) 조성소(造成所)에는 임곤(任琨) 등 3명이었다

1762년 윤5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의 「계사(啓辭)」를 보면, 윤5월 28일에는 묘소(墓所)를 간심(看審)한 후에 산론별단(山論別單)이 종합 검토되었으며, 윤5월 29일에는

중랭포신점(中冷浦新占) 갑좌경향(甲坐庚向)에 정혈(正穴)을 재정(裁定)한 후 봉표(封標)함으로써 묘소가 결정되었다

석물(石物)은 의릉(懿陵) 봉릉(封陵) 때 사용하고 남은 석물 중 순강원(順康園)에서 옮겨 쓰고 남은 것을 우선적으로 취용(取用)하고, 모자라는 것은 새로이 부출(浮出)하도록 했다 특히 석인(石人)은 의소묘(懿昭墓)에 비해 약간 크게 만들도록 지시하고 있다 묘소역(墓所役)은 7월 25일에 이르러 완결되었다

10) 『장조영우원천봉도감도청의궤(莊祖永祐園遷奉都監都廳儀軌)』

이 책은 1789년(정조 13) 7월 부터 10월에 걸쳐 영우원(永祐園)을 수원 화산(花山)으로 천봉(遷奉)한 기록이다

장조는 1735년(영조 11)에 창경궁에서 탄생하였다 영조는 진성왕후 서씨와 계비 정순왕후 김씨에게서는 소생이 없고, 영빈 이씨 소생으로 효장세자와 사도세자가 있었다 효장세자는 1725년(영조 1)에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나 나이 10세에 요절하였다 사도세자는 영조가 40세가 넘어서 출생한 까닭에 2세 때 왕세자로 책봉되고 10세 때 혼인하여 별궁에서 거처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부왕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다 1749년(영조 25)부터 사도세자는 대리청정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행동에 형평을 잃고 비정상적인 성격이 나타났다 이것은 격간도동(膈間挑動)이라는 정신질환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영조는 세자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다 1761년 세자의 관서순행과 1762년 나경언(羅景彦)의 무고사건, 문소의(文昭儀)등의 이간책 등에 의하여 부자간의 대립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마침내 영조는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세자를 없애기로 결심하고 휘령전(徽寧殿)으로 불러 자결을 명하였다 세자가 끝내 자결을 하지 않자 그를 서인(庶人)으로 폐한 후 세자와 영빈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뒤주에 가두어 8일만에 죽게 하였다(1762년, 영조 38) 영조는 뒤에 이를 후회하고 사도(思悼)라는 시호(諡號)를 내렸고, 장례 때는 친히 나아가 스스로 신주(神主)에게 제주(題主)를 하면서 나라의 앞날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알리기도 하였다 그 뒤 정조가 즉위하자 장헌세자(莊獻世子)라 하고 고종때 장조로 추존하였다 그의 능은 양주군 배봉산(拜峰山)의 영우원이었으나 수원 화산 현륭원(顯隆園)으로 천봉하였다

이 책은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채색도가 붙은 7책의 필사본이다 각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책에는 좌목(座目)·시일(時日)·승전(承傳), 제2책에는 주계(奏啓)·장계(狀啓), 제3책에는 이문(移文)·물력(物力)·내관(來關)·예관(禮關), 제4책에는 일방의궤(一房儀軌)·이방의궤(二房儀軌), 제5책에는 삼방의궤(三房儀軌)·지방소의

궤(紙牌所儀軌)·분전설사(分典設司)·분장홍고(分長興庫)·내별공작(內別工作)·외별공작(外別工作), 제6책에는 만장(挽章), 제7책에는 빈전소의궤(殯殿所儀軌) 등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처음 「목록(目錄)」에는 제8책의 수록분으로 의주(儀註)·상전(賞典)·의궤(儀軌)가 있었으나 실제 내용에는 빠져 있다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좌목」에 의하면 총호사(摠護使)는 김욱(金煜)·채제공(蔡濟恭)이, 제조(提調)는 서유린(徐有隣) 등 4인, 도청(都廳)은 이만수(李晩秀)·이익운(李益運)이, 낭청(郎廳)은 이명걸(李明杰) 등 8인이, 감조관(監造官)은 이시원(李始源) 등이 담당하였다

「시일」에는 구원(舊園)·신원(新園)으로 구분하여 택일(擇日)하였다 구원택일에는 8월 9일에 조후토제(造後土祭)·고사유제(告事由祭)·이안제(移安祭)가, 8월 12일에는 파구원소(破舊園所)가 시행되었다 신원택일에는 7월 20일에 시역(始役)하고 9월 7일에 하현궁(下玄宮)한 것으로 되어 있다 7월 11일 일기(日記)에는 금성위(金城尉) 박명원(朴明源)이 천원(遷園)을 발의했고, 당시 국릉봉표(國陵封標)한 곳 중에서 최고의 길지(吉地)는 홍제동의 영릉(寧陵), 건원릉(健元陵) 우강(右岡) 원릉(元陵) 그리고 수원읍 등이었는데 남은 곳은 수원 뿐이기 때문에 이 곳으로 천원할 것을 결정하고, 8월 7일에는 원호(園號)를 현륭원(顯隆園)으로 고친 후 10월 8일에 원례(園禮)를 행함으로써 천원을 완료하였다

각 방(房)과 소(所)에는 좌목과 함께 도식이 있고 각각 해당 작업 내용이 분류되어 수록되었다 「일방의궤도식(一房儀軌圖式)」에는 대여전후좌우도(大輿前後左右圖)·견여도(肩輿圖)와 채색의 반차도가 실려 있다 특별히 반차도는 경기감사를 선두로 하여 선상군(先廂軍) 400명, 평교자(平橋子)·지방요여(紙牌腰輿)·지방여(紙牌輿)·채여(彩輿)·견여(肩輿)·대여(大輿)·후상군(後廂軍) 300명 순으로 이루어진 긴 행렬도이다 이방에는 방상씨(方相氏)·죽안마(竹鞍馬) 등 도식이 실려 있고, 삼방에는 지방(紙牌)·만장 등의 도식이 실려 있다 그리고 「빈전소의궤(殯殿所儀軌)」에는 설찬도(設饌圖)와 채색의 원상각도(園上閣圖)·수도각도(隨道閣圖) 등이 각각 실려 있다 만장은 영중추부사 김치인(金致仁)이하 부사과(副司果) 권유(權裕)까지 100명이 지은 것이 있다

11) 『장조현륭원원소도감의궤(莊祖顯隆園園所都監儀軌)』

이 책은 1789년(정조 13) 7월에서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영우원(永祐園)을 수원부 뒤쪽에 있는 화산(花山)으로 천원(遷園)하고 현륭원(顯隆園)을 조성한 기록이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4권 4책으로 부분채색도(部分彩色圖)가 붙은 필사본으로 책의 크기는 37㎝×24㎝이다

제1책 권1에는 목록·도설(圖說)·좌목·차개(差改)·사례(事例)·사실(事實)의 내용이 실려 있다 제2책 권2에는 시일·예의(禮儀)·재용(財用)·늠료(廩料)·상전(賞典)·잡조(雜條)가 실려 있다 제3책 권3에는 삼물조(三物條)·조성조(造成條)·노야조(爐冶條)·낭석조(浪石條)·보토조(補土條)·수석조(輸石條)·의궤(儀軌)·관감(關甘)이 실려 있다 제4책 권4에는 삼물소·조성소·노야소(爐冶所)·대부석소·보토소(補土所)·소부석소(小浮石所)·수석소(輸石所)·별공작·분장홍고·번와소(燔瓦所)가 수록되어 있다

「도설」에는 도상각도(圖上閣圖) 등 28개의 도설이 실려 있고, 채색의 사신도(四神圖) 중에는 현무(玄武)와 주작도(朱雀圖)만 보인다 「좌목」을 보면 총호사(摠護使)에 영의정 김육(金堉)이었으나 후에 채제공(蔡濟恭)으로 교체되었다 제조에는 김이소(金履素) 등 3인, 도청에는 서매수(徐邁修) 등 3인, 낭청 삼물소에 이정회(李廷恢) 등 6명, 감조관 조성소에 여준영(呂駿永) 등 3명으로 되어 있다 각 소별로 낭청과 감조관이 함께 임명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의궤에서는 차개이하 각조의 내용이 계사질(啓辭秩)에 기록되는 것이 상례이나, 이곳에서는 항목별로 연설(筵說), 승전(承傳), 주계(奏啓)로 분류되어 기록되었다 차개의 연설항에 천원 및 원소(園所) 양도감(兩都監)의 설치에 관한 기록이 있고, 사례항의 주계에 원소도감별단(園所都監別單)이 있으며, 사실항의 연설에 산론(山論)이 실려 있다 시일항에 원소택일별단(園所擇日別單)과 천원택일별단(遷園擇日別單)이 들어 있다 예의항의 주계에는 영우원을 현륭원으로 개호(改號)한 내용이 실려 있다

부석조(浮石條)의 내용은 석물 체제에 관한 것인데, 상설수(象設數)에 있어서는 병풍석(屛風石)외의 모든 석물은 광릉체제(光陵體制)에 따르고 석물의 대소(大小)는 인조(仁祖)의 장릉(長陵) 천능(遷陵) 때의 석물에 준하여 부출(浮出)하였다. 특히 병풍석은 이후 어느 능에도 설치하지 못하도록 수교(受敎)에 기록 되어 있다 정조는 현륭원을 마련할 때 온갖 정성을 기울여 조선시대의 어느 원(園)보다도 후하고 창의적인 상설(象設)을 하였다

능상설(陵象設)은 병석(屛石)을 두르고 인석(引石)은 화뢰형(花蕾形)을 하고, 문무석인(文武石人)을 세웠다 장명등(長明燈)은 전기의 팔각장명등과 숙종·영조연간에 등장한 사각장명 등의 양식을 혼합한 새로운 양식으로 만들어 세웠다 석인(石人)도 종전과는 달리 가슴까지 파묻혀 있던 것을 위로 나오게 하여 시원한 느낌을 나타나게 하는 등 조각수법이 사실적이다 능의 뒤에는 곡단(曲垣)을 둘렀다. 19세기 이후의 능석물양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2) 『장조현륭원천원의궤(莊祖顯隆園遷園儀軌)』

1789년(정조 13)에 장조(莊祖 1735~1762, 사도세자)의 영우원을 수원의 화산(花山)에 천원(遷園)하는 산릉도감(山陵都監)의 기록이다

사도세자(思悼世子)가 당쟁의 희생물로 휘령전(徽寧殿)에서 비참하게 죽은 후 영우원에 예장(禮葬)되었다 영조는 뒤에 이를 후회하고 사도(思悼)라는 시호(諡號)를 내렸고, 아들 정조(正祖)는 즉위하자 곧바로 생부(生父)인 사도세자를 장헌세자(莊獻世子)로 개칭했으며 능(陵)을 현륭원(顯隆園)으로 천원하였다 현륭원으로 천원하는 내용은 『장조영우원천봉도감도청의궤』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국장도감(國葬都監)·빈전도감(殯殿都監)·산릉도감(山陵都監)을 합설(合設)하였으며, 의궤의 내용도 도감별로 나누어 기록하지 않고 함께 수록하였다 그러나 『장조현륭원천원의궤』는 그 중 산릉도감의 기록 뿐이다

책의 구성은 3책(天卷, 地卷, 人卷)으로 된 필사본으로 책의 크기는 43 7㎝×29 9㎝이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책의 내용은 각 권별로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1책[天卷]에는 차개·승전·시일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2책[地卷]에는 삼물조·조성조·노야조·부석조·보토조·수석조가, 3책[人卷]에는 예의의주(禮儀儀註)·재용·상전·의궤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세부 내용은 각각 승전 주계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13)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

『건릉산릉도감의궤』는 2종류가 있다 하나는 1800년(순조 즉위년)에 화성 현륭원 소내(所內)에 정종건릉(正宗健陵)을 조성한 것이고, 또 하나는 1821년(순조 21)에 정조의 건릉을 천봉하고 정조비(正祖妃) 효의왕후(孝懿王后)를 합장(合葬)한 내용이다

이 능은 정조와 왕후를 합부한 동릉이실(同陵異室)이며, 병석(屛石)없이 난간만 두르고 그 밖의 모든 상설(象設)은 융릉(隆陵)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 합부릉(合祔陵)이나 혼유석(魂遊石) 1좌만 놓았고, 융릉식의 장명등(長明燈)을 두었다 문무석(文武石)의 조각이 극히 사실적이며 안정감이 뛰어나다 문관석(文官石)은 금관조복(金冠朝服)을 입고 있다 융릉식(隆陵式)은 19세기 능석물(陵石物)제도의 새로운 표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00년의 책은 채색도를 포함한 2책으로 구성된 필사본으로 크기는 46 8㎝×38 4㎝이

며,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제1책(상편)은 정종(正宗 후에 正祖)이 1800년 6월 28일 유시(酉時)에 창경궁(昌慶宮) 영춘헌(迎春軒)에서 승하(昇遐)하였고, 7월 6일에는 빈청회의(賓廳會議)를 거쳐 능호(陵號)를 건릉으로 정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7월 15일에 수원부 화산 아래 현륭원 제2청룡외(第二靑龍外) 구강무당(舊講武堂) 뒤편에 봉표(封標)되었다는 기록이다

또한 목록으로는 1권(상편)에 시일·좌목·전교·계사·서계·상전·이문·감결·내관·예관·의주·부상량문·반사(頒賜)·제용(財用 부잡물식례)·삼물소(三物所 圖設具)가 있고, 2권(하편)에는 조성소(造成所 圖設具)·대부석소(大浮石所 圖設具)·노야소(爐冶所)·보토소(補土所)·소부석소(小浮石所)·수석소(輸石所)·별공작·분장홍고(分長興庫)·번와소(燔瓦所)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의궤의 체제와 목록은 지금까지의 의궤 체제의 종합된 형식을 갖춘 것이며 이후의 의궤는 삼물소부터가 하편에 기록되는 것 외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시일」에는 1800년 7월 6일부터 12월 13일 산릉(山陵)을 마칠 때까지 주요 작업 일정이 기록되어 있다 「좌목」을 보면 총호사(摠護使)에 좌의정 이시수(李時秀), 제조에 서유린(徐有隣) 등 5인, 도청(都廳)에 조윤수(曺允遂)등 2인, 낭청 삼물소에 한익진(韓翼鎭) 등 13인, 감조관(監造官) 조성소에 홍원섭(洪元燮) 등 4인으로 되어 있다 이외에 상지관(相地官)과 방외지사(方外地師) 등이 차출되어 있다

「전교」와 「계사」에는 7월 10일에 산릉도감 산혼별단으로 산릉을 정하는 일과 7월 14일에 석물상설수(石物象設數)는 상례보편(喪禮補編)에 따르도록 하였고 11월 12일에 산릉역(山陵役)을 마치도록 하였다 1책(상편)의 삼물소와 2책(하편)의 각 소(所)는 좌목과 도성 및 구체적 작업 내용이 기록되었다 특히 지금까지의 의궤에 있는 도설은 책의 앞부분이나 제1책 첫머리에 실려 있었으나, 건릉의궤부터는 도설이 분류되어 해당 소(所)에 들어가 있다 「삼물소」 도설로는 능상각(陵上閣)·능상각입주(陵上閣立柱)·가도리수도각(加道里遂道閣)·녹로(轆轤)·별조록로(別造轆轤) 등이 있고, 「조성소」에는 가정자각(假丁字閣)·가정자내배설(假丁字內排設)·찬궁(欑宮)·사수(四獸)·회남수평상(回南首平床)·신어평상(神御平床)·길유궁(吉惟宮)·유문(惟門)·가제실(假齊室)·내인가가(內人假家) 등의 도설이 실려 있다 「대부석소」에는 면전석(面磚石)·우전석(隅磚石)·장면전석(長面磚石)·장수도석(長水道石)·수도우석(水道隅石)·죽석(竹石)·동자석주(童子石柱)·석주(石柱)·고색석주(古索石柱)·석인(石人)·석수(石獸)·면전우전석연배(面磚隅磚石連排)·전석상안난간석(磚石上安欄干石)·상석(床石)·지석함(誌石函)·전석(磚石)·퇴광배설(退壙排設) 등의 도설이 실려 있다 또한 채색의 정자각도(丁字閣圖)·찬궁도(欑宮圖) 및 사수도(四獸圖)가 있다

또 하나의 책은 1821년(순조 21)에 조성한 건릉에 관한 기록으로 도식을 포함한 2책으로 된 필사본이다 책의 크기는 45 7㎝×32 3㎝이며 현재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시일」에 의하면 1821년 3월 9일 효의왕후가 승하하자 4월 28일 장조의 현륭원 서쪽에 봉표하고 5월 22일 개기시역(開基始役)하여 9월 13일에는 하현궁(下玄宮)을 9월 18일에는 안릉전(安陵奠)을 행하고 모든 역사(役事)를 필역(畢役)하였다

「전교」에는 3월 20일에 건릉천봉(健陵遷奉)을 주장하는 영돈녕부사 김조순(金祖淳)의 상소가 있고, 이 상소에 대한 제신(諸臣)의 논의를 거쳐 건릉천봉이 결정되었다 5월 1일에는 영릉(英陵)·장릉(長陵)의 예(例)에 따라 쌍분(雙墳)이 아닌 합부지예(合祔之禮)를 취하고, 소배석의(所排石儀)는 현륭원의 예(例)에 따라 구건(舊件)을 이용(移用)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명등(長明燈)과 혼유석(魂遊石)은 단설(單設)하도록 하는 등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되었다

「좌목」을 보면 총호사(摠護使)에 영의정 한용구(韓用龜), 좌의정 남공철(南公轍), 우의정 임한호(林漢浩)가 제조에는 김시근(金蓍根) 등 5인이, 도청에는 김교희(金敎喜), 박태수(朴台壽)가, 낭청에는 박만수(朴晩壽) 등 22명이 감조관(監造官)에는 이일연(李一淵) 등 6명이 책무를 담당하였다

도식에는 「삼물소」에 능상각도(陵上閣圖) 등 5종이 있고, 「조성소」에는 정자각도·가정자각도와 극채색(極彩色)의 사수도 등 16종이 있으며, 「대부석소」에는 대무석도(大武石圖) 등 여러 가지 석의(石儀)들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삼물소」 도설에는 이 시기 다른 의궤와는 달리 구봉기도(拘捧機圖)·윤여평상도(輪轝平床圖)·첩목도(貼木圖)·삭목도(槊木圖) 등이 빠져 있고, 「대부석소」 도설에서는 이용된 석물에 '이용'이라고 밝혀 놓았다 그리고 목록 끝에 번와소가 있으나 실제 내용에서는 그에 관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14) 『정조건릉천봉도감의궤(正祖健陵遷奉都監儀軌)』

정조(正祖 1752~1800)의 건릉은 본래 현륭원(顯隆園 사도세자의 능)의 동강(東岡)에 있었으나, 1821년(순조 21)에 정조비 효의왕후 국장 때 현륭원 서강(西岡)으로 옮기며 왕비와 함께 합장하였다

이 책은 1821년(순조 21) 4월부터 9월까지 현륭원 동강에 있던 건릉을 현륭원 서강으로 천릉한 내용의 기록이다 채색도가 곁들인 7권 7책의 필사본으로 책의 크기는 45 8㎝×33 2㎝이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권1에는 권수·시일·좌목·상소(附 奏啓)·장계·이문·내

관이 있고, 권2에는 예관·의주·감결·품목·재용(附 武例)·부(附) 의궤로 되어있다 권3은 일방(一房)이고, 권4는 이방(二房)과 분장흥고(分長興庫)로 되어있다 권5는 삼방(三房), 지방소(紙牓所)·표석소(表石所)·지석소(誌石所)·분전설사(分典設司)로 되었다 권6은 빈전소, 권7은 내별공작(內別工作)·외별공작(外別工作)으로 되어 있다

「권수(卷首)」에는 정조대왕의 건릉을 현륭원 서월일사제이강(西越一砂第二岡)에 천능하고 효의왕후를 합부한다고 기록되었다 「상소」를 보면 효의왕후 합부와 건릉 천봉을 발의한 것은 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 김조순(金祖淳)이며, 이때에 현륭원 천봉과 영릉 및 장릉의 천능 예에 따라 할 것이 결정되었다 4월 18일에는 도감당랑(都監堂郞)이 차출 임명되고, 5월 11일에 역사(役事)가 시작되어, 9월 13일에 역사를 모두 끝마쳤다 「좌목」을 보면 총호사(摠護使)에 좌의정(左議政) 남공철(南公轍), 한용구(韓用龜)가 임명되고, 제조에는 김이양(金履陽) 등 3인이 도청에는 이인부(李寅溥), 윤풍렬(尹豊烈)이, 낭청에는 윤병렬(尹秉烈)외 13명, 감조관(監造官)에는 심의복(沈宜復) 외 16명이 임명되었다

각 방 소의궤(所儀軌)의 내용과 도설은 이때의 다른 의궤와 차이가 없으나 일방의궤(一房儀軌)에 있는 반차도는 다른 의궤의 반차도와는 달리 특이한 행렬도로 되어 있다 즉 금부도사(禁府都事) 2명을 선두로 하고 이어 평교자(平轎子)·공연(空輦)·향향자(香享子)가 나오고, 중앙에는 견여(肩輿)를 배치하였으며 맨 끝에는 감찰(監察) 2명을 배치한 특이한 형태이다. 삼방의궤에는 영중추부사 이시수(李時秀) 등이 지은 천봉만장(遷奉輓章)이 있다

15) 『정조국장도감의궤(正祖國葬都監儀軌)』

이 책은 1800년(정조 24) 정조의 국장(國葬)에 관한 기록이다 채색도가 붙은 필사본으로 4책으로 구성되었고, 크기는 45.8㎝×32.7㎝이며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제1책 머리에 「목록」이 있고, 6월 28일 사망 이후 성빈(成殯)에서 부터 선정전(宣政殿)에 반우(返虞)하기까지의 제반 절차를 기록하였다 묘호(廟號)는 정종(正宗), 전호(殿號)는 효원전(孝元殿), 능호(陵號)는 건릉이라고 하였다 「좌목」에는 총호사(摠護使)를 비롯하여 제조 4명, 도청 2명, 낭청 11명, 감조관 4명, 지석소·표석소(表石所) 감조관 1명, 우주소감조관(虞主所監造官) 2명, 별공작·분전설사(分典設司)·분장흥고(分長興庫) 등의 역원 명단이 있고, 이어 「승전」에서 「주계」까지 부록되어 있다 계속하여 장계·이문·내관·예관·의주·품목·감결·물력·상전·의궤가 실려 있다

제2책에는 「일방의궤」로 낭청에 공조좌랑(工曹佐郞) 이영익(李永翼)을 비롯하여 감

조관·서리 등의 관직과 성명 및 품목질·감결질·조작질·용환질·환하질·공장질 등과 반차도 20장이 실려 있다 그리고 「이방의궤」에는 낭청에 공조좌랑 심윤지(沈允之)를 비롯하여 감조관·서리 등 16명의 관직과 성명 및 품목질·이관질·내관질·조작질·길의장질(吉儀仗秩)·흉의장질(凶儀仗秩)·복완질(服玩秩)·궤함질(櫃函秩)·복질(袱秩)·포연질(鋪筵秩)·봉척질(封尺秩)·장인소용질(匠人所用秩)·실입질(實入秩)·전배용환질(前排用還秩)·환하질(還下秩)·숙소가가질(宿所假家秩)·공장질(工匠秩) 등이 실려 있다

제3책에는 「삼방의궤」로 낭청을 비롯하여 11명의 관직과 성명 그리고 품목질·조작질·시책문(諡冊文)·시보전문(諡寶篆文)·애책문(哀冊文) 및 만장질(輓章秩)이 실려 있다 만장은 115축이나 되는데 이것은 모두 영부사 이병모(李秉模), 영의정 심환지(沈煥之) 등이 쓴 것이다

제4책에는 우주소의궤(虞主所儀軌)·표석소의궤(表石所儀軌)·지석소의궤(誌石所儀軌)·별공작의궤·분장홍고의궤(分長興庫儀軌)·분전설사의궤(分典設司儀軌)가 실려 있다

16) 『정조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正祖大王殯殿魂殿都監儀軌)』

1800년(순조 즉위년) 6월부터 11월까지 정조(1752~1800)의 국장(國葬) 때 빈전(殯殿)과 혼전도감(魂殿都監)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빈전(殯殿)이란 발인(發靷) 때까지 왕이나 왕비의 관(棺)을 모시는 전각(殿閣)이고, 혼전(魂殿)은 왕이나 왕비의 국상을 치른 후 3년 동안 신위(神位)를 모시는 전각이다

이 책은 3책으로 구성된 것으로 필사본으로 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47.2㎝×43.6㎝이다 현재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책머리에 1800년 6월 28일 유시(酉時)에 대행대왕(大行大王)께서 창경궁의 영춘헌(迎春軒)에서 승하(昇遐)하였고, 묘호(廟號)는 정종(正宗), 시호(諡號)는 문성무열성인장효(文成武烈聖仁莊孝), 전호(殿號)는 효원(孝元), 능호(陵號)는 건릉(健陵)이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기록이 있다

범례(凡例)를 보면 빈전과 혼전의 의궤를 각각 별도로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으나 여기서는 합록(合錄)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한 것은 빈전이나 혼전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고하기에 편리하도록 하려는 뜻에서 취한 조치였다 따라서 각방(各房)의 의궤도 빈전과 혼전을 구별하지 않고 일편(一編)으로 묶었다 그리고 의궤 앞에 선도(扇圖)·개도(盖圖) 등 도설(圖說)을 기록하는 것이 전례이나, 여기서는 상례보편(喪禮補編)에 의거하여 싣지 않기로 하였다 의주(儀註)에는 본조(本條) 아

래에 쌍행(雙行)으로 이설(異說)을 기록하도록 하였고, 전교나 주계는 말이 연속되도록 차서(次序)대로 수록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궤사례(儀軌事例)를 만들며 존경(尊敬)하는 부문에서는 행(行)을 바꾸어 쓰던 것을 여기서는 『국조보감』의 예에 따라 일자(一字)의 간격을 떼어 쓰도록 하였다

상권(上卷)의 좌목에는 총호사(摠護使)에 좌의정 이시수(李時秀)를 비롯하여 제조 4명, 도청 1명, 낭청 9명의 명단과 사목(事目)·거행일기(擧行日記)·의주·승전(承傳)·품목·이문·예관·감결·실입(實入)·용환(用還)·내하수용(內下需用)·상전·의궤사례가 실려 있다 「의주」에는 쌍행의 주(註)가 첨가되었고, 진향의(進香儀)가 부기(附記)되었다 「승전」에는 주계와 장계가 첨부되어 있다

중권(中卷)의 일방의궤에는 감선식(監膳式)·제전기수식(祭奠器數式)·진설도식(陳設圖式)·각양배일(各樣排日)·재궁결과식(梓宮結裹式)·발인시인마파정수(發靷時人馬把定數)·품목·이문·내관·감결·각처수본(各處手本)·실입·용환·환하(還下)·공장(工匠)·삼사실입(三寺實入) 및 축문(祝文)·진향문(進香文) 등이 실려 있다 일방(一房)의 소관 임무는 제전(祭奠) 및 재궁가칠(梓宮加漆)·친서상우(親書上宇)·재궁결과(梓宮結裹)·개명정(改銘旌)·인산시파정인마(因山時把定人馬) 등이다

하권(下卷)의 이방의궤에는 성복제사(成服諸事)의 품목·감결·실입·용환·공장과 조성제사(造成諸事)의 품목·이문·내관·감결·실입·용환·환하·전배용환(前排用還)·공장과 수리제사(修理諸事)의 수본·감결·실입·공장이 실려 있다 이방의 소관 업무는 성복제구(成服諸具) 및 혼전의 조성과 수리이다 삼방에는 초상제구(初喪諸具)·금화제구(禁火諸具)·발인시행로배설(發靷時行路排設)·제기주성(祭器鑄成) 등과 별공작(別工作 監役官 繕工監假監役 李後秀)의 의궤가 실려 있다 삼방의 소관 업무는 초상(初喪) 때 제구(諸具)의 준비, 관리 성빈배설(成殯排設) 및 제기주성(祭器鑄成) 등의 일이다 또한 별공작의 소관 업무는 빈전과 혼전에 진배할 목물(木物)과 철물(鐵物)의 조성 등이다

17) 『정조부묘도감의궤(正祖祔廟都監儀軌)』

정조를 1802년(순조 2)에 혼전인 효원전(孝元殿)에서 태묘(太廟 宗廟)에 부묘한 기록이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는 사망 후 관(棺)을 빈전에 모셨고, 국장(國葬)을 치른 뒤에는 곧바로 신주(神主)를 3년동안 혼전에 모셨다 그리고 3년상을 마친 후에는 태묘에 모시게 된다

이 책은 1802년(순조 2) 6월부터 8월까지 정조를 혼전인 효원전에 모시다가 태묘에

부묘(祔廟)한 내용이며, 채색도가 첨가된 1책(90장)으로 구성된 필사본이다 책의 크기는 45 4㎝×32 9㎝이며 현재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책 머리의 「목록」에는 선원전수개사실(璿源殿修改事實)이 들어 있으며 「일기(日記)」에는 6월 21일의 내용에 도감당랑계하(都監堂郎啓下)가 6월 24일의 기록에는 각방시역(各房始役)의 사실과 종묘수리시역(宗廟修理始役) 등의 내용이, 8월 9일의 기록 내용에는 부묘례(祔廟禮) 등의 일정이 기록되어 있다 「좌목」에 의하면 도제조는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이병모(李秉模), 영의정(領議政) 심환지(沈煥之)이며, 제조는 이만수(李晩秀) 등이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방」에는 제상(祭床)·목두(木豆)·이안기(移安機) 등의 도식(圖式)과 반차도(班次圖 24면)가 실려 있다 「삼방」에는 감실(龕室)·신탑(神榻)·책장(冊欌)·보장(寶欌) 등의 도식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선원전수개사실」이 있는데, 8월 15일에는 정조대왕어진(正祖大王御眞)을 선원전(璿源殿)에 봉안하고 수리하는 내용을 수록하여 놓았다

18) 『정종대왕태실가봉의궤(正宗大王胎室加封儀軌)』

표제(表題)의 명칭으로는 『정종대왕태실가봉의궤』이나, 실제로는 『정종대왕태실석란간조배의궤(正宗大王胎室石欄干造排儀軌)』이다 내용은 1801년(순조 1)에 강원도 영월군 학죽산에 있는 정조의 태실(胎室)에 석물을 조배(造排)한 것과 관련된 기록이다 정조의 묘호(廟號)는 본래 정종(正宗)이었으나 1899년(고종 37)에 정조(正祖)로 고쳤다

태실은 왕가에서 태(胎)를 묻던 석실(石室)로 일명 태봉(胎封)이라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임시로 태실도감(胎室都監)을 설치하여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태실은 대개 대석(臺石)·전석(磚石)·우상석(遇裳石)·개첨석(蓋檐石) 등으로 만들어졌는데, 태를 묻을 장소를 물색케 하고 안태사(安胎使)가 내려가 태를 묻었다

이 책은 12장으로 된 1책으로 도식이 붙은 필사본이다 책의 규모는 86 2㎝×35㎝이며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책의 권두(卷頭)에 보면 역사(役事)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태봉가봉제의(胎峯加封提議)는 1786년(정조 10) 4월 20일에 태실을 봉심(奉審)한 좌승지(左承旨) 이시수(李時秀)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영의정(領議政) 정존겸(鄭存謙), 예조판서(禮曹判書) 이재협(李在協)의 동의 및 정조의 허락이 실려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의와 정조의 허락이 있었다고 하여도 역사는 민읍지폐(民邑之弊)를 우려한 나머지 계속 미루어졌다 1786년 7월과 10월에는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태실의 가봉을 다시 주청(奏請)하였으나 이때도 왕명(王命)에 의하여 다음해로 연기되었다

정조태실의 가봉이 착수된 것은 정조 사후인 1801년 4월 16일에 영의정 심환지(沈煥之)의 발의로 비로소 행해지게 되었다

태실가봉의 역사는 7월부터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부석처(浮石處)·석물체양례(石物體樣例) 등의 논의가 있었고, 9월 12일에는 드디어 석물시역(石物始役)에 착수하였다 10월 11일에는 태실개기(胎室開基)가 11월 4일에는 석물조배(石物造排)의 작업일정이 관상감(觀象監)에 의해 택일(擇日)되어 결정되었다 또한 공장군인(工匠軍人)·잡물(雜物)·기계(機械) 및 석물체양(石物體樣)은 영조의 태실례(胎室例)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역사를 모두 끝마치는 날짜는 10월 27일로 앞당기도록 변경되었다 이는 태봉(胎峯)이 있는 곳의 지세(地勢)가 높고 험하여 엄동설한(嚴冬雪寒)에는 공역(工役)이 어려워 결빙(結氷) 전에 작업을 끝마치는 것이 좋겠다는 강원도 관찰사의 건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모든 작업은 실제로 앞당겨 10월 27일에 완료되었고, 11월 11일에 시상(施賞)이 있었다

도식으로는 진설도(陳設圖)·난간석조작도(欄干石造作圖)·석난간배설도(石欄干排設圖)가 있다

끝부분의 수결(手決)에는 제조겸서표관(提調兼書標官) 정대용(鄭大容), 감역겸도차사원(監役兼都差使員) 허질(許晊), 감역겸전향주시관(監役兼傳香奏時官) 안사언(安思彦), 부석차사원(浮石差使員) 홍재연(洪載淵), 운석차사원(運石差使員) 정래승(鄭來升), 강원도 관찰사(江原道 觀察使) 이노춘(李魯春) 등 관계관의 직함명(職銜名)이 나타난다

19)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조선 제22대 왕인 정조가 생부인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능묘 천봉(遷奉)을 계기로 읍치를 옮겨 수원 신도시를 건설한 다음 국력을 기울여 1794년(정조 18) 1월부터 1796년(정조 20) 8월까지 화성성역을 이룩한 경위와 제도·의식 등을 상세히 기록한 책이다 권수(卷首) 1권, 본편(本編) 6권, 부편(附編) 3권의 모두 10권 9책으로서, 성곽과 부속건물·기기(器機) 등에 대한 그림과 함께 본문은 정리자(整理字) 활자본으로 1801년(순조 원년) 9월에 인간(印刊)되었다 이 책은 규장각도서 중의 화성행궁본(華城行宮本)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세로 23 8㎝×가로 16 2㎝(奎 No 14586, 14589의 1·2·3, 14590, 14591의 1·2·3, 14593, 14595, 14929의 1·2)다

『화성성역의궤』의 편찬 동기는, 화성성역이 끝난 지 약 1개월 후인 정조 20년 9월 10일 정조가 화성 축조를 대규모의 토목공사로서 80만냥에 이르는 많은 경비와 기술을

필요로 했던 역사적인 사업으로 추진했던 만큼 공사 내용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겨야 하겠다는 뜻에서 그 편찬을 봉조하(奉朝賀) 김종수(金鍾秀)에게 명한 데서 비롯되었다 정조는 이미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에게도 "역사(役事)가 컸을 뿐 아니라 대단한 기술을 필요로 했던 바이니 기적(紀蹟)을 반드시 거론해야 할 것"을 하명한 바 있었고(『화성성역의궤』권 2, 筵說), 한편 왕명을 받들어 김종수는 그 편찬을 서둘러 약 2개월 후인 그해 11월에 원고가 완성되어 정조에게 제진(製進)되었다 이때 이루어진 것은 등본의궤(謄本儀軌)라는 초고본(草藁本)인데 등사 15부를 궁내·사고(史庫)·내각(內閣)·정원(政院)·비변사(備邊司)·병조(兵曹)·내외영에 각 1건씩 보관케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해 11월 9일 정조는 등사하는 노고가 인간(印刊)하는 것보다 더 클 것이므로 오히려 정리자(整理字)로 찍어내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대신과 비변사 당상(堂上)들이 입시(入侍)한 자리에서 조심태에게 하교하였다 다시 정조는 "성역에 소요된 예산은 거의 80만냥이나 되는 막중한 것이니, 티끌만큼도 소홀하고 간략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나의 본뜻이다 그러므로 이 책을 간행해서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요연(瞭然)하게 성역의 본말(本末)을 알게 하는 것이 좋겠다"(『정조실록』권4, 20년 11월 경술)고 밝힘으로써 『화성성역의궤』의 편찬과 간행사업은 그 뒤 전사복정(前司僕正) 홍원섭(洪元燮)의 전관(專管) 아래 계속 추진되었다 그러나 당초에 예정되었던 정조 20년에 간행되지 못하고, 내용 보충과 활자 주조 등으로 뒤로 미루어져 1800년(정조 24) 6월 정조가 승하할 때까지 간행되지 못하다가 1801년(순조 원년) 7월에서야 찬집랑(纂輯郞) 홍원섭의 책임 아래 정리의궤청(整理儀軌廳)에서 『화성성역의궤』가 간행을 보게 되었다(『순조실록』권3, 원년 7월 임인) 이로써 이 책은 인간(印刊) 사업에 착수된 이래 만 5년만에 정리자로 출간되었으니, 이것은 화성성역이 국력을 기울여 추진한 역사적 사업이었던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보다 완벽한 의궤를 간행하려는 국왕과 관련 신료들의 깊은 뜻이 담겨진 결과가 아니었나 싶다

『화성성역의궤』의 체제는 정조 19년에 설치된 권설기관(權設機關 임시로 설치된 관청)인 정리의궤청의 의궤례를 따르고 있다

(1) 책의 맨머리에는 이 책의 편찬내용·경위·편찬방법을 밝힌 범례(凡例)가 있다 권수(卷首)…본편과 부편의 총목록을 실은 총목(總目)과 권수목록(卷首目錄), 성곽축조에 관계되는 일지를 실은 시일(時日 1794년 1월 7일 부석시역(浮石始役)에서 1796년 10월 16일 낙성연(落成宴)까지의 일정), 성곽축조 및 의궤편찬에 관한 관리명과 담당업무를 실은 좌목(座目)에는 성역소좌목(摠理大臣 蔡濟恭, 監董堂上 趙心泰, 都廳 李儒敬 이하 策應都廳·別監董·別看役·京府監官·京府牌將·京府書吏·府書寫·京庫直·旗手·文書直에 이르기까지의 명단과 원수를 수록)·감인좌목(監印座目 閣臣 李晩秀

이하 堂上·郎廳·監官·書吏 등) 등으로 나누어 명단과 원수를 기재하였다 도설(圖說)에는 화성전도(華城全圖) 이하 4대문·암문(暗門)·수문(水門)·장대(將臺)·공심돈(空心墩)·각루(角樓)·포루(砲樓)·포루(舖樓)·성신사(城神祠)·행궁(行宮)·사직단(社稷壇)·문선왕묘(文宣王廟 鄕校) 등의 그림과 각물명(各物名)그림, 거중기(擧重器)·녹로(轆轤)·대차(大車)·평차(平車) 등 기계 그림, 연거(演炬)그림·대호궤(大犒饋)그림·낙성연그림 등을 수록하였다

(2) 권1·목록, 성곽축조의 기본계획을 실은 어제성화주략(御製城華籌略)은 분수(分數)·용재(用材)·호참(壕塹)·축기(築基)·벌석(伐石)·치도(治道)·조차(造車 附圖說)·성제(城制)의 8조로 되어 있다 왕명을 실은 전교(傳敎), 정조의 말을 실은 윤음(綸音), 정조가 내전 문서를 실은 유지(有旨), 연석(筵席)에서의 왕의 자문과 대신들이 답한 내용을 실은 연설(筵說), 대신들이 왕에게 올린 상주문(上奏文)과 그 결과를 실은 계사(啓辭) 등을 수록했는데, 그 내용은 거의 성역과정에서 물자조달 등의 문제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3) 권2…목록, 성역에 관한 정조의 시문(詩文)을 실은 어제(御製), 정조가 활을 시사(試射)한 내용을 실은 어사(御射), 성역에 공이 큰 신하에게 내린 녹봉(祿俸)을 실은 반사(頒賜)에는 역군(役軍)에게 의약품을 나눠준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조가 하사한 음식의 내용을 실은 호궤(犒饋), 성역 유공자에게 포상규칙을 실은 상전(賞典), 의식에 관한 절차를 실은 의주(儀註), 행사와 공사진행에 관한 절차를 실은 절목(節目)에는 궁장윤파성상파수절목(宮墻輪把城上派守節目)·부근오읍군병합속절목(附近五邑軍兵合屬節目)·수성고설시절목(修城庫設始節目)이 있다 그리고 성역에 관한 각종의 고유문(告由文)·상량문(上梁文)·비문(碑文 華城紀蹟碑, 金鍾秀撰)을 수록하였다

(4) 권3…성역 현장에서 정조 또는 상관(上官)에게 올린 보고문을 실은 장계(狀啓)는 1794년 2월~1796년 10월의 것으로 성역소용 각물의 운송·조달에 관한 것이고, 정조에게 올리는 문서에 덧붙인 문서를 실은 별단(別單)에는 성역도청·수원유수부의 별단이 있다 그리고 성역과 관련하여 관청 간의 조회문(照會文)을 실은 이문(移文)을 수록하였다

(5) 권4 ·동급관청에서 온 공문을 실은 내관(來關), 상급관청에서 온 공문을 실은 감결(甘結), 정조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 물건의 품목과 양을 실은 품목(稟目), 성역 진행상의 규칙을 실은 사목(事目), 성역에 관한 전례(前例)를 실은 식례(式例)에는 삭하식(朔下式)·고가(雇價)·철물타조식(鐵物打造式) 등이 있다 성역에 동원된 석수(石手)·목수·미장이·와벽장이[瓦壁匠]·대장장이[冶匠]·개와장이[蓋匠]·수레장이[車匠]·화공(畵工)·가칠장이[假漆匠]·큰끌톱장이[大引鉅匠]·작은끌톱장이[小引鉅匠]·기거

장(歧鉅匠)·걸톱장이[乞鉅匠]·조각장이[彫刻匠]·목혜장이[木鞋匠]·안자장이[鞍子匠]·병풍장이[屛風匠]·박배장이[朴排匠]·부계장이[浮械匠] 등의 지방별 이름과 종사일수를 실은 공장(工匠)을 수록하였다

(6) 권5·· 재용(財用) 상을 세분하여 구획(區劃)에서는 중앙과 지방 관청에 염출·조달한 경비의 내역(총 공사비 873,517냥 7전 9푼)을, 조비(措備)·실입(實入)에서는 성역에 사용된 곡물과 각종의 물자·기계·우마(牛馬) 등의 수효와 수량, 성곽과 부속 건물별로 소용된 각종 물품의 수량 모군(募軍)·짐군(擔軍)의 품삯, 차로 나른 품삯[車運雇價] 등을 못 한 개, 벽돌 한 장까지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7) 권6 재용 하를 실입(實入) 1~4로 세분하여 성곽과 부속건물에 소용된 각종 물품의 종류와 기술자·모군들의 품삯, 터를 사들인 가사(家舍)와 전답(田畓), 식목(植木) 등의 모든 경비를 상세히 기록하였다

(8) 부편1 ·목록, 화성에 소속된 행궁(行宮 奉壽堂行閣·長樂堂·景龍館·福內堂·維與宅·洛南軒·老來堂·得中亭·新豊樓行閣)·공해(公廨 南北軍營行閣·外整理所·講武堂行閣·武庫行閣·修城庫·紙所)·단묘(壇廟 社稷壇·文宣王廟[鄕校])·정거(亭渠 迎華亭·萬石渠)·역관(驛館 迎華館) 등을 수록하였다

(9) 부편 2 목록·전교·연설·계사·어제·어사·절목·고유문·상량문·장계·별단·이문·내관·감결의 항으로 나누어 일자별로 그 내용을 수록하였다

(10) 부편 3 재용을 행궁·공해·단묘·정거별로 나누어 건축에 소요된 물량·경비·품삯 등을 다시 해당 건물별로 상세히 기록하였다

정조는 생부인 장헌세자의 능묘를 수원 화산에 이장함에 따라 정조 13년 10월 읍치를 옮겨 수원을 행정·군사·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1783년(정조 17) 1월 '화성'으로 개호하고 유수부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전통적인 우리나라 성제를 뼈대로 중국·일본 성제까지 참고하여 조선 최고의 성곽을 축조했으며, 장용외영(壯勇外營)을 화성에 두어 현륭원행궁·화성성곽을 수호케 하는 등 친위군영으로 발전시켰다 화성 성곽의 길이는 체성(體城)의 부속시설까지 합하여 4,600보(5,743 56㎝)에 이르며, 시설물로는 팔달(八達)·장안(長安)·화서(華西)·창룡문(蒼龍門) 등 4대문과 암문 4개·수문 2개·적대(敵臺) 4개·공심돈 3개·봉돈(烽墩) 1개·포루 5개·장대 2개·각루 4개·포사(舖舍) 1개 등 외에 성신사·사직단·향교·행궁 및 그 부속건물을 갖추었다 성역은 정조 18년 1월~정조 20년 8월까지 약 2년 7개월이 소요되었고, 투입된 인력은 각 부분 감독·경비·사환 등이 430여명, 각종 공장(工匠)이 1,820여명, 연일수(延日數)는 376,342일에 달한다 소요된 물량은 석재 대소 187,600개, 벽돌 695,000장, 쌀 6,200여석, 콩 4,550석, 잡곡 1,050석, 목재 26,200주, 철물 559,000근, 철엽(鐵葉) 2,900근, 숯 69,000

석, 기와류 530,000장, 석회 86,000석, 소와 말이 각각 688과 252필, 지류(紙類) 8,000여 권, 가마니 6,000매 등이다 소요된 총 경비는 약 873,520냥과 양곡 1,500석에 이르며, 그 재원은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의 정번전(停番錢) 10년분 336,000냥과 경상·전라·평안감영에서 염출한 10만냥, 그밖에 각도가분모전(各道加分耗錢)·관서목대전(關西木代錢)·수안금점세전(遂安金店稅錢)·책응소환봉전(策應所還捧錢)·경기회부미(京畿會簿米) 등으로 충당, 성역이 끝난 후 정부는 십수년 간에 걸쳐 긴축재정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화성성역의궤』 재용편에 기록되어 있다

『화성성역의궤』는 정제(整齊)된 목차와 내용구성, 성곽과 부속 건조물 및 각종 기계의 도설을 수록했을 뿐만 아니라 위로는 국왕 정조를 비롯한 채제공·조심태 등의 관료, 실학자 정약용(丁若鏞) 등의 경륜과 화공 엄치욱(嚴致郁) 등의 기술적 창견(創見), 그리고 새로운 과학기술과 건축공학적인 아름다움이 어울어진 성역의 백서(白書)이자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을묘정리의궤(乙卯整理儀軌)』와 더불어 의궤류로서 학술적인 면에서 조선시대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수준을 보여줄 만큼 그 내용이 자세하고 정교한 활자와 인쇄술 또한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못 하나 벽돌 한 장까지 빠짐없이 기록한 그 치밀함과 사실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도면, 위로는 대신에서 밑으로는 기술자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과 공역일수를 일일이 기록한 이 책이야말로 조선 후기의 건축사·성제사·과학기술사·무기발달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문헌이 되어줄 뿐 아니라 우리들 시대가 본받아야할 하나의 전범(典範)이 되어 준다고 할 수 있다 『국역 화성성역의궤』상·중·하(신구문화사, 1984)와 복간본 『화성성역의궤』(서울대 규장각, 1996)가 있어 참고된다

제3장 문집(文集)

1) 『건재집(健齋集)』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16세기 말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수원 남쪽 독성산성(禿城山城)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김천일(金千鎰 : 호 건재(健齋), 1537-1593)의 시문집이다 본집 4권, 부록 7권 모두 11권 2책으로 편제 되었고, 1833년(순조 33) 방손(傍孫) 민상(旼相) 등이 선조인 김천일의 시문을 수습하여 편집,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김천일은 일찍이 이항(李恒)의 문하에서 수업한 뒤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1573년(선조 6) 군기시주부(軍器寺主簿), 1578년 임실현감(任實縣監) 등을 지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나주(羅州)에서 고경명(高敬命), 박광옥(朴光玉), 최경회(崔慶會)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킨 뒤 6월 초 서울의 왜적을 토멸하기 위하여 북상하던 중에 충청도에서 많은 의병을 모집하여 23일 수원에 이르렀다 이때 많은 자원의병의 참여로 그의 의병부대는 병력 3천명을 헤아렸다 조정에서는 김천일의 활약상을 전해듣고 장의원판결사 겸 창의사(掌議院判訣事兼倡義使)의 직함을 내려 의병을 통솔케 하였다 김천일은 독성산성에 웅거하며 전라도순찰사 권율(權慄) 휘하의 관군과 긴밀한 협력 아래 작전을 수행하면서, 왜군과 협조한 간민(姦民)들을 가려내어 참수하는 등 백성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날쌘 장사들을 선발하여 이를 4대(隊)로 편성하고 수시로 유격전을 펴서 수많은 적병을 참살했다 특히 용인 부근 김령(金嶺) 싸움에서는 일시에 적병 15인을 죽이고 병기, 갑옷, 군마를 다량 노획하는 등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건재집』 행장(行狀) 참조) 이때 그가 지휘하는 의병부대와 관군 사이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듯한데, 그것은 장계(狀啓)를 올려 관군과 의병이 서로 힐책하고 화목하지 못한 가운데 남의 공(功)을 서로 빼앗는 행위를 시정할 것을 건의한 점에서 알 수 있다 서울에서 증파된 왜군이 수원에서 퇴각하자, 김천일은 우성전(禹性傳)의 의병부대(2천~5천명), 전라병사 최원(崔遠)과 함께 의병군진을 수원에서 인천, 강화로 옮겨 활약하였다 김천일은 외지에서 기병(起兵)하여 수원, 강화, 서울 등지에서 왜적을 무찌르는 큰 공을 세운 뒤 진주성 전투에서 분투하다가 성이 함락되자 아들 상건(象乾)과 함께 남강(南江)에 투신하였다

그의 시문집 『건재집』의 책머리에는 김세연(金世淵)·기정진(奇正鎭)의 서문이 있고,

책끝에는 송근수(宋近洙)·기우만(奇宇萬)·박창수(朴昌壽) 등의 발문이 있다 권1에는 부(賦) 2편, 시 2수, 권2에는 소(疏) 3편이 있다 그 가운데 「기축소(己丑疏)」는 1589년(선조 22)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 곧 기축옥사 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과 혹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음을 지적하고, 해원(解寃)과 민심 수습을 적극 건의하였다 임진왜란 이듬해에 올린 「계사소(癸巳疏)」는 의병이 관군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관군은 의병의 전공을 시기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여 유능한 장수로 하여금 관군과 의병진을 통솔·지휘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 책의 권3에는 서(書) 13편 , 권4에는 명(銘) 1편, 제문 3편, 격문(檄文) 1편이 실려 있다 부록의 권1에는 교서(敎書) 3편, 사제문(賜祭文) 8편, 권2에는 제문 2편, 축문 8편, 권3에는 연보, 권4에는 행장 1편, 기 2편, 명 3편, 상량문 1편, 기사(記事) 1편, 서사(敍事) 1편, 권6에는 시 16수, 권7에는 척록(摭錄)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건재집』은 의병의 소모(召募)를 위한 격문, 관군과 의병의 원활한 합동작전을 건의한 소 등 임진왜란의 전사(戰史), 특히 수원 독성산성의 항전을 비롯하여 의병항쟁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사료이다 부록의 행장 또한 김천일의 의병활동 전모와 수원을 비롯한 경기지역에서 활약한 당시의 의병항쟁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목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성균관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2) 『계갑일록(癸甲日錄)』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이자 중견 관인(官人)으로 활약한 우성전(禹性傳 호 추연(秋淵), 1542~1593)이 1583년(선조 16) 6월 초부터 이듬해(甲申) 8월 말까지의 정치기사를 일기체로 엮은 책이다 1책의 필사본과 1929년에 목판본으로 간행된 권1~권4의 체재로 간행된 『추연선생 계갑일록(秋淵先生 癸甲日錄)』 2책이 있다. 규장각도서에는 연기미상의 『우공계갑일록(禹公癸甲日錄)』이라는 표제 하의 2권 2책의 필사본이 있으며 책의 크기는 세로 30㎝×가로 19.5㎝이다 이 책의 서술 체재는 매일의 날씨를 먼저 적고 이어서 그날 일어났던 관료와 사림들의 움직임과 교우관계, 독서한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다

우성전이 『계갑일록』을 기록하던 당시의 나이는 42, 43세 때로서 동서분당(東西分黨)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더욱이 자신이 동인과 남인의 중추적 인물로 떠오르고 있던 시기였던 만큼 국왕 선조와 동인·서인 양편에 서서 활동하던 여러 인물들의 동태와 세력분포, 조정과 사림들의 동향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책은 비록

1년 동안의 짧은 기록이지만 16세기 말의 정치적 동향과 당쟁사를 연구하는데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필사본과 목판본으로 현존하는 『계갑일록』은 저자 우성전이 중견관료이자 성리학자로 활동하던 시기에 중앙정계의 실상과 동향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사후(死後) 목판본으로 간행된 이 책의 맨 뒤에는 서애 유성룡(西厓 柳成龍 1542~1607)이 쓴 발문 「서우경선일록후(書禹景善日錄後)」 2편과 추도문 「곡우경선(哭禹景善)」이 덧붙여져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실학을 주도한 근기학파(近畿學派)의 종장(宗匠) 성호 이익(星湖 李瀷)의 「계갑일록 후서(後序)」와 「추연우선생묘갈명(秋淵禹先生墓碣銘)」, 그리고 정조대의 개혁정치를 주도한 번암 채제공(樊巖 蔡濟恭)의 「추연우공시장(秋淵禹公諡狀)」이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이어서 후학 박승진(朴勝振)과 유동준(柳東濬), 후손 우세정(禹世鼎)의 발문이 이 책의 후미(後尾)를 장식하고 있다 특히 유성룡·이익·채제공 등은 남인계를 대표하는 당대의 최고 학자·관료들이었던 만큼 남인 일색으로 우성전을 추모하거나 후서·발문 등을 쓰고 있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목판본 『추연선생 계갑일록』은 계미(癸未, 1583)년 6월~12월까지를 권1·2에, 갑신(甲申, 1584)년 1~8월 말까지를 권3·4에 각각 분정해 놓았다

우성전의 고향은 수원부 호매절면(好梅折面) 외촌(현 화성군 매송면 어천리)이며, 일찍이 우언겸(禹彦謙)의 둘째아들로 태어나 퇴계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스승의 각별한 총애를 받은 바 있었다 이때 퇴계의 문하에 함께 공부한 동문·동갑의 친구 유성룡과 함께 당색(黨色)을 같이하면서 평생의 지우(知友)가 되었다 1561년(명종 16) 진사가 되고, 1568년(선조 원년)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한 뒤 검열(檢閱)·봉교(奉敎)·검상(檢詳)·사인(舍人) 등을 역임하고 1576년(선조 9) 향리의 노친(老親)을 봉양하기 위해 수원현감으로 나가 읍민에 대한 교화가 컸으나, 한때 파직되었다가 다시 수찬(修撰)·전한(典翰)·장령(掌令)·응교(應敎)·사옹원정(司饔院正)과 성균관 대사성(大司成) 등을 역임했으니, 『계갑일록』은 바로 이 무렵에 집필된 것이다 또 외직으로는 수원현감 외에도 강화부사(江華府使)·연안부사(延安府使)를 지내는 등 치적이 높았다

그리하여 그는 동인의 영수(領袖)로 활약한 초당 허엽(草堂 許曄 · 1517~1580)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일 만큼 동인계의 맹장(猛將)이 되었다. 그는 동인 내의 온건파로서 뒤에 남인의 거두(巨頭)로 활약했으며, 1591년(선조 24) 정철(鄭澈)이 물러날 때 북인의 책동으로 관직을 삭탈당한 뒤 수원 향리로 물러나 학문 연구에만 힘썼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향리이자 현감을 지낸 수원에서 기의(起義)하여 남쪽 농민과 유생들을 의병으로 끌어모아 의병장(義兵將)에 추대되었다 이 의병부대를 '추의군(秋義軍)'이

라 이름하였는데, 그 병력은 2천여 명(그후 5천명)을 헤아렸다 그는 수원을 비롯한 경기 각 지역에서 활동했고, 뒤에는 강화로 들어가 김천일(金千鎰) 의병부대와 합류하여 큰 전과를 거두었다 그의 뛰어난 애국적 정열로 큰 전공을 세워 봉사시정(奉常寺正)에 이어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에 특진되었다 강화 해상에 주둔할 때는 소금을 생산하여 군자금과 식량을 조달했고, 퇴각하는 왜적을 의령(宜寧)까지 추적했다가 귀로(歸路)에 부평(富平)에서 병사하니, 그의 나이 52세 때인 선조 26년 7월 19일의 일이었다 그는 청렴하고 양심적인 학인(學人)으로 일관하였으므로 그의 처세에 대하여 친우 유성룡이 『계갑일록』 후서에서 "안목이 당세에서 가장 높아 원망을 많이 샀고, 길이 험난하고 곤궁했으나 끝까지 변치 않고 죽었다"고 술회했듯이, 도학과 절의 그리고 원대한 경륜을 아울러 갖춘 대학자이기도 하였다

그는 생전에 이황(李滉)와 유성룡으로부터 각별한 관심과 주목을 받았고, 또 적지 않은 저술을 남겼다 그러나 전란(戰亂)과 집안의 영락(零落)으로 상당 부분이 분실되어 현존하는 저술로는 『계갑일록』과 퇴계의 언행을 수록한 미간(未刊)의 『추연수록(秋淵手錄)』이 있고, 성리론에 대한 그의 학문적인 견해를 담은 『이기설(理氣說)』, 『역설(易說)』 등은 전하지 않고 있다

그의 유저 『계갑일록』 또한 조선 말까지 미간인 채 필사본으로 일반에 유포해 오다가 1911년 고서간행회(古書刊行會)에서 간행한 『대동야승(大東野承)』 제24권에 수록 간행되고, 또 『패림(稗林)』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 뒤 목판본 권1~권4의 『추연선생계갑일록』은 1929년 인간(印刊)되었다

3) 『관수만록(觀水漫錄)』

서울대 규창각도서로 소장되어온 『관수만록』은 두 개의 상이한 내용과 체재로 꾸며진 이본(異本) 필사본이 있다 그 하나는 상백문고(想白文庫) 속의 『천일록(千一錄)』 권4를 구성한 A 『관수만록』 상·하편이고(도서번호 「古」 951 053-C, 421-V, 1-10), 다른 하나는 별책의 단행본 체재로 남아 있는 B 『관수만록』 하(도서번호 No 5049)가 그것이다 두 이본 모두 18세기 말 수원부 호매절 어량천면(好梅折 於良川面) 외촌(外村) 출신의 실학자 취석실(醉石室) 우하영(禹夏永 1741~1812)의 저술이다

A본은 『천일록』 10권 중의 한 부분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그 규모는 세로 30㎝×가로 21㎝의 크기이다 한지(韓紙)에 모필로 씌어진 이 필사본은 매쪽마다 10행 20자로 되어 있으며, 모두 92쪽의 분량이다 『천일록』 권4의 A본 상·하편의 목차와 체재는 다음과 같이 모두 15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부형편(一府形便)·축성방략(築城方略)·지계변통의(地界變通議)·전부변통의(田賦變通議)·군교구근변통의(軍校久勤變通議)·향곡저적의(餉穀儲積議)·환곡교폐의(還穀矯弊議)·전채의(錢債議)·인민모취의(人民募聚議)·인민생리변통의(人民生利變通議)·군병조습의(軍兵操習議)·독성철이의(禿城撤移議)·유생과시의(儒生課試議)·위척참용설(衛戚參用說)·총론(總論)

한편 B본 역시 한지에 씌어진 필사본으로 그 체제는 세로 30㎝×가로 20 7㎝의 크기이다 매쪽에 10행 20자씩 모두 76쪽로 이루어진 분량인데,「서(序)」「일왈 민인모취지책(一曰民人募聚之策)」에서「부록(附錄)」에 이르기까지 그 목차와 내용이 정제(整齊)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별책의 B본『관수만록』하의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이 모두 19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왈 민인모취지책(一曰民人募聚之策)·이왈 치적량향지책(二曰峙積粮餉之策)·삼왈 조적균편지책(三曰糶糴均便之策)·사왈 성향변통지책(四曰城餉變通之策)·오왈 승환이치지책(五曰僧還移置之策)·육왈 산성철이지책(六曰山城撤移之策)·칠왈 파목치진지책(七曰罷牧置鎭之策)·팔왈 경세권농지책(八曰輕稅勸農之策)·구왈 광둔전민지책(九曰廣屯奠民之策)·십왈 광치전화지책(十曰廣置錢貨之策)·십일왈 영속우후지책(十一曰營屬優厚之策)·십이왈 모민흥판지책(十二曰募民興販之策)·십삼왈 약환이공지책(十三曰藥丸移貢之策)·십사왈 빈정선박지책(十四曰賓汀船泊之策)·십오왈 무예권과지책(十五曰武藝勸課之策)·십육왈 창늠견실지책(十六曰倉廩堅實之策)·십칠왈 야금정한지책(十七曰夜禁定限之策)·관방제치삼책(關防制置三策)·부록(附錄)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이 책의 표지는『관수만록』이라는 표제를 달았으나, 안쪽 목차 앞에는『관수만록』(下)라고 씌어져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B의 단행본 체재의 독립된 필사본은 상편이 결락(缺落)된 영본(零本)이거나, 앞의『천일록』권10『관수만록』상·하의 속편으로 씌어진 저술로 인식될지 모르나, 그 목차와 내용은 순서대로 빠짐없이 정제되어 있다

그렇다면 '수원지방에 관한 만필(漫筆)의 기록'이라는 뜻을 지닌 이 저작물,『관수만록』은 어떠한 동기·의도·배경하에서 집필된 것일까

앞의 A『관수만록』하편 첫머리에 "본부의 성역(城役)이 지금 이미 거의 끝나 각처 모군(募軍)이 차례로 흩어져 돌아갔으니 "라는 구절이나, B『관수만록』하「서」에서 "지금 화성은 이미 지리(地利)를 차지하고 성 쌓는 일도 끝났으니, 얻어야 할 일은 인화(人和)이다"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이 저작물의 집필시기와 배경을 대략 추측해 볼 수 있다 화성 성역은 1794년(정조 17) 2월 28일부터 성역에 착수, 착공일에서 2년 8개월이 경과한 1796년(정조 20) 9월 10일에 완공된 바 있었다 따라서 이 저작은 1789년(정조

13) 10월 7일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능묘를 양주(楊州)에서 수원 화산(花山)으로 옮긴 후 정조 17년 1월 수원부의 유수부(留守府)로 승격과 '화성(華城)'으로 개호하고 성역을 서둘러 완공하던 18세기 말 수원지방의 역사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A의 내용 중 『관수만록』 하편은 앞의 예문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축성공사가 완공된 정조 20년 9월 이후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저술의 「인민모취의」에서 「총론」에 이르는 후반 부분은 성곽이 쌓아진 이후 수원부계(水原府界) 내의 민생과 부역·군역·환곡 문제를 중점적으로 취급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본다면 『관수만록』 하편은 화성 성역의 완공을 전후해 집필된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그 내용은 목차에 따라 정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초고(草稿)로 집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A의 저술 중 전반부를 차지하는 『관수만록』 상편의 내용, 즉 「일부형편」에서 「군교구근변통의」에 이르는 항목과 내용은, 이읍(移邑) 후 축성에 관한 논의가 조야(朝野) 간에 활발히 일어나고 정조 17년 수원을 '화성'으로 개호하고, 유수부로 승격시킨 때부터 성역이 착수 진행되던 정조 17~18년을 전후해서 집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즉 「일부형편」에서는 역사지리·행정변천을 논하면서 삼남의 요충으로서 그 지리적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축성방략」에서는 조정에서 축성의 논의는 분분하나 통일된 논의가 없다는 것, 재력과 석재의 어려움을 들어 그 실현이 주춤해 있다는 것, 성곽은 반드시 석성(石城)이나 벽성(甓城)이 아니더라도 흙과 돌로 혼축한 전래의 성제(城制)가 유리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조벽지제(造甓之制)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지계변통의」·「전부변통의」 등에서는 유수부로 승격된 뒤 인근 군읍의 이속(移屬)에 따른 신역과 호역 등 행정적 문제점을 상세히 논했고, 수원부계 내 주민의 전부(田賦)가 삼남이나 서북지방은 물론 여주·용인·이천·안성 등 다른 경기지방의 토성(土性)에 비하여 과도하게 고율(高率)임을 지적, 부세의 고통을 덜기 위한 새로운 토지측량[改量田]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군교구근변통의」에서도 수원부 내 군교(軍校)의 자생지방(資生之方)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목마(牧馬)와 진영(鎭營)의 영속(營屬) 문제를 다루는 등 성제나 부계의 개편 문제, 그리고 당시 조야의 상황을 논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적어도 A의 『관수만록』 상편은 성역이 착공되던 정조 17년 1월을 전후한 시기의 당시 수원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축성방략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본부는 유수부로 승격된 뒤의 무릇 군총(軍摠)과 민역(民役)이 그 이전에 비하여 더욱 번거로워져· 」(「地界變通議」) 등의 표현으로 볼 때, 이 저술은 수원이 '화성'으로 개호되고 유수부로 승격된 1794년(정조 17) 이후 1795년(정조 18)경에 집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단행본 체재의 B의 필사본은 성제나 성역, 부계의 이속 등 행정계획 단계의 문

제보다는 성역과 행정개편을 모두 마치고 기정화(旣定化)된 단계에서 새로 보완하거나 유념해야 할 바의 수원부 내의 행정적 내실(內實)과 민생의 편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급하였다 특히 앞에서 예거한 B의 「서」에서도 보았듯이 축성이 완공된 뒤인 정조 20년 9월 이후를 전후해서 집필된 것임이 거의 확실하며, 따라서 A본의 집필시기보다 2, 3년 뒤늦은 시기에 씌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아무튼 『관수만록』의 두 이본(異本)은 집필상의 선후(先後)관계와 초고와 정리본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18세기 말 수원 신도시 건설과 화성 성역이란 정조대 최대의 역사적 사업으로 일대 변화를 맞이하고 있던 수원 향촌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와 시대적 추이(推移)를 취급하고 있는 저술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지닌다 이 저술은 우하영의 또 다른 저술, 시무책(時務策)인 『수원유생우하영경륜(水原儒生禹夏永經綸)』 화성(華城)항과 함께 18세기 말 수원 향촌사회의 개발과 행정개편에 대한 재야 실학자의 지방사적 인식과 실학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저작이다. 특히 왕조중흥과 개혁정치를 지향하던 유교적인 계몽군주 정조의 각별한 관심 아래 유형원(柳馨遠)·채제공(蔡濟恭)·정약용(丁若鏞)·조심태(趙心泰) 등 실학자·경세가들의 경륜을 반영하여 계획된 신도시로서 일대 발전을 거듭하고 있던 조선 후기 수원 지방에 대한 본격적이고 전일적인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저작은 고식적(姑息的)인 체제의 옹호나 현상유지에 급급하는 관찬자료(官撰資料)와 같은 관점이나 정태적인 서술 태도를 지양하려는 매우 독특한 시각을 보여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본주의에 입각해서 수원을 신흥대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적인 시무책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희귀한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신도시의 대다수 구성원인 소농민·소상민·빈민·이서(吏胥) 등 이른바 소민층(小民層)의 입장과 자활 문제를 일관되게 표출하면서 현실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전진적인 관점이 이 저술의 최대 특징이다 그리고 이 고장 출신으로 지역사정에 정통한 향촌인으로서의 경험과 성찰이 이 저작의 강점이자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지방에 대한 만필의 기록'이라는 뜻을 지닌 『관수만록』은 18세기 초 이 고장에서 태어나 일생동안 수원 향촌에 살면서 현실개혁과 비판의 필봉을 잠시도 늦추지 않던 실학자 우하영의 부국유민(富國裕民)의 민본의식과 향토애에서 발상된 저술인 것이다

4) 『반계수록(磻溪隨錄)』

『반계수록』은 조선 후기 실학을 본격적으로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한 유형원(柳馨遠)이 국가 전반의 제도개혁을 주장한 저술이다 유형원은 1622년(광해군 14)에 태어

나 1673년(현종 14)에 사망하였다 본관은 문화(文化)이며 자는 덕부(德夫), 호는 반계(磻溪)이다 세종 때 우의정을 지낸 유관(柳寬)의 9대손이며 증조부는 유위(柳湋), 조부는 유성민(柳成民)이다 부친은 예문관 검열을 지낸 유순(柳愃)이며 모친은 참찬을 지낸 이지완(李志完)(여주 이씨)의 딸으로 서울 출신이다 18세 때 혼인하였는데 부인은 심수경(沈守慶)의 증손녀이고 심은(沈誾)의 딸이다

『반계수록』은 모두 총 26권 13책의 목판본이다. '반계'는 앞서 언급했듯이 유형원의 호이다 '수록'은 책을 읽다가 수시로 기록해 두었다는 뜻이지만 이것은 겸손한 말이고 장기적인 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집필되어 매우 질서정연한 체재를 이루고 있다 저술 시기는 그의 연보 등에 의하면 대략 저자가 32세 때 부안에 내려간 이후인 38세에서 43세 사이(1759~1764)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의 체제가 먼저 전제(田制), 관제(官制), 병제(兵制) 등 개혁안을 제시한 다음 그 뒤에 각 개혁안의 타당성, 근거 등을 제시하였고 관련 제도에 대하여 역사적 고찰을 행하였다

권1~2는 전제, 권3~4 전제후록(田制後錄), 권5~6은 전제고설(田制攷說), 권7~8은 전제후록고설(田制後錄攷說)이다 전제에서는 토지국유제를 기초로 국가에서 모든 민에게 경작권을 분배하고 환수하는 공전제(公田制) 및 토지 파악을 면적 단위로 하는 경무법, 병농일치제를 주장하였다

권9~10은 교선지제(敎選之制), 권11~12는 교선고설(敎選攷說)이다. 교선지제에서는 교육 기관에서의 단계적 추천을 통해 관직에 나아가게 함으로써 과거 제도를 없애고 교육 제도와 관리 선발 제도를 일체화하였다

권13은 임관지제(任官之制), 권14는 임관고설(任官攷說)이다 임관지제에서는 관료의 임용에서 임기제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업적에 따라 승진시키도록 하였다

권15~16은 직관지제(職官之制), 권17~18은 직관고설(職官攷說)이다 직관지제에서는 의정부와 육조 체제를 근간으로 하되 임시 기구를 설치하지 말며 관련 기구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재상들이 겸직하던 육조의 예하 기관을 육조가 직접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왕실 관련 기구 등 불필요한 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재정에 있었서는 국가 재정을 단일화하도록 하였다 지방제도에 대하여는 관찰사 아래 관직을 보강하여 실제 행정을 처리할 수 있게 하고 군현 아래에 면리(面里)를 체계적으로 조직하도록 하였다

권19는 녹제(祿制), 권20은 녹제고설(祿制攷說)이다 녹제에서는 관료의 봉급을 증액시키는 한편 봉급이 없던 향리에게 봉급을 주어 부정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권21은 병제, 권22는 병제후록(兵制後錄), 권23은 병제고설(兵制攷說), 권24는 병제

후록고설(兵制後錄攷說)이다 병제에서는 중앙군에 육위를 두고 지방에 지방군을 따로 두되, 토지를 분급받는 농민이 군역을 지는 병농일치제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권25~26은 속편(續篇)이며 말미에 보유편으로 군현제가 붙어 있다 속편에서는 위에서 다루지 않은 노비제의 철폐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여 노비제 철폐를 궁극적 목표로 하되 공전제가 완전히 실시될 때까지는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만이라도 실시하여 노비의 수를 줄이고 차차 그 수를 줄이면서 용역제로 전환시켜 나아간다는 점진적, 단계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보유편인 군현제에서는 군현의 승강을 정치적 이유로 하는 일을 일체 없애고 불합리한 행정 구역을 재조정하며 군현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반계수록』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국가 제도를 재조직하기 위한 개혁론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아래에서 유형원의 생애와 학문의 계보, 후대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원은 시종일관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부안에 내려가 학문에 전념하였으므로 생애는 비교적 단순하다 2세 때 부친을 여읜 그는 15세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 가족들과 함께 원주로 피난갔으며, 다음해 지평(현재의 양평) 화곡리(花谷里)로 이사하였다가 그 다음해 여주 백양동으로 옮겨갔다 23세 때 조모상, 27세 때 모친상을 연달아 당하였고 탈상 후 두 차례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였다 그 뒤 30세 때(1651 효종 2) 조부상을 당하였으며 조부상을 마친 뒤인 32세 때 부안으로 내려가 학문에 전념하며 20년간의 여생을 이곳에서 보냈다 유형원의 학문 상의 계보를 따지면 가계 상으로 보아 그는 외삼촌 이원진(李元鎭)과 고모부 김세렴(金世濂)에게 배웠다 이원진은 성호 이익(李瀷)의 당숙이며 하멜 표류 사건 당시 제주 목사였고, 김세렴은 함경도, 평안도 감사를 역임하고 당시 외교관으로 활약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서경덕 이래 내려오는 학풍의 영향이 있다고 여겨지며 관료 학문적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는 한백겸의 기자정전론(箕子井田論)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퇴계 이황(李滉)의 이기론(理氣論)의 영향도 받았다

후대의 영향 관계를 생각하면 성호 이익의 개혁론은 유형원에게서 계발된 것이 많고 나중에 『반계수록』의 서문을 쓴 오광운(吳光運)은 영조대에 기호남인계의 영수이다 정약용은 이익을 중간 다리로 하여 유형원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정약용이 『주례(周禮)』에 입각하여 국가제도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개혁론을 주장한 『경세유표(經世遺表)』는 전체 체제, 발상에 있어서 『반계수록』에서 많은 부분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그의 사후 1678년(숙종 4) 유형원의 친구인 배상유(裵尙踰)가, 그리고 1694년(숙종 20)에는 노사효(盧思孝)가 유형원의 개혁안을 실시하자는 상소를 올렸으나 『반계수

록』은 유형원의 사후 거의 100년이 지나서야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주목되었다 1741년 영조에게 승지 양득중(梁得中)이 『반계수록』을 추천하였고, 이후 홍계희(洪啓禧)의 청으로 예문관에서 3부를 찍어 사고에 보관하게 하는 한편 경상도 대구 감영에서 간행하여 신하들에게 배포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1770년(영조 46)에 이르러 세상에 배포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때에 간행된 것이 26권 13책의 목판본이며 1783년 보유편인 군현제가 대구 감영에서 간행되었다 1974년 경인문화사에서 부록 자료를 추가하여 영인되었고 충남대학교에서 1962~1967년 한장경에 의한 번역본이 출간되었으며 북한사회과학원에서도 완역본이 출간되었다

『반계수록』에서 수원과 관련된 자료는 보유편인 군현제 부분의 수원도호부 조목(「수록보유(隨錄補遺)」 권지일(卷之一), 29면)이다 여기서 수원의 지형적 조건에 대하여 "북쪽 들 가운데 지세를 보고 생각하니 지금의 읍치도 좋기는 하나 북쪽 들은 산이 크게 굽고 땅이 태평하여 농경지가 깊고 넓으며 규모가 광원하여 성을 쌓아 읍치로 하게 되면 참으로 큰 번진이 될 수 있는 기상이다 그 땅의 안팎에 일만호는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현재 구 수원 읍치에서 북쪽 들(팔달산 아래 현재의 수원시 지역)로 옮겨 성을 쌓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당시 광주(廣州) 하도(下道)의 왕륜(王倫), 일용(一用), 월곡(月谷), 북방(北方), 송라곡(松蘿谷), 송갑(松甲) 등 6면 즉 광교산과 도양산 남쪽 지역을 수원에 더하도록 하였다

영조 연간 간행된 『반계수록』은 조야에 널리 읽혀 수원 화성 축조가 정조 연간 논의될 때 이 책에서의 논의가 채제공, 정약용 등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들은 정조의 명을 받아 팔달산 아래로 수원부를 옮겨오고 화성을 축조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 『반계수록』 권22 병제후록 성지(城池)조에서는 돌성보다는 벽돌성의 장점이 주장되었는데 후대의 실학자들이 이를 이어서 벽돌성의 건축을 주장하고 이것이 화성 축성에 반영되었다. 병제후록 성지조에서는 거주지 축성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유형원은 여기서 우리나라 여러 읍은 성이 없거나 좁은 곳이 많으며 심지어는 치소가 성과 다른 곳도 있어 성으로서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그는 평시에 사람들이 늘 성 안에 거주하게 하여야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자신들의 생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방어 자세를 가지게 되어 방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주장은 수원 화성이 그 안에 치소와 도시를 수용하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성곽을 갖고 방어하도록 하는 방략을 세우는데 영향을 주었다

정조대의 화성 축조는 『반계수록』에서 주장된 유형원의 실학적 개혁론이 정약용 등 그의 계승자에 의해 실현된 것이라 하겠다 『홍재전서』의 국왕의 교(敎) 부분에는

「고처사(故處士) 유형원(柳馨遠) 가증제주교(加贈祭酒敎)」가 있는데, 여기서 정조는 『반계수록』 보유편의 군현제에 실린 수원 관련 부분을 인용하고 유형원의 생각이 백 년 전에 이미 화성 축성 당시의 일을 안 듯이 모든 것이 그에 부합게 되었다고 한 뒤 유형원에게 성균관 좨주[祭酒]를 추증하고 후손을 방문하여 알리도록 명을 내렸다

한편 유형원은 지리지로서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를 저술하였는데 여기에 수록된 수원도호부조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간행 이후 17세기 중반까지의 수원의 변화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5) 『번암집(樊巖集)』

『번암집』은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 때에 활동한 채제공(蔡濟恭)의 문집이다 그는 1720년(숙종 46)에 태어나 1799년(정조 23)에 죽었다 본관은 평강(平康)이며 자는 백규(伯規), 호는 번암(樊巖) 또는 번옹(樊翁)이다 효종 때 이조판서와 대제학을 지낸 채유준(蔡裕後)의 방계 5대 손이며 부친은 지중추부사 채응일(蔡應一)로서 홍주 출생이다

『번암집』은 모두 60권 27책의 목판본이다 정확한 간행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824년(순조 24) 이후로 생각된다 1791년(정조 15) 정조의 어명과 「어정범례(御定凡例)」에 의거해 편성되었다 이 책의 수권(首券)에는 정조의 서문과 어정 범례, 부주(附奏 . 1800년(정조 24) 만듦), 사륜(絲綸), 어찰(御札)이 수록되어 있다 권1~19는 모두 시이다 권1은 어정갱화록(御定更和錄)으로 시 57수, 권2는 어정영은록(御定榮恩錄)으로 시 107수, 권3은 증별운(贈別韻) 등 시 24수, 권4~5는 각기 단구록(丹丘錄) 상(上)과 하(下), 권6~7은 각기 망미록(望美錄) 상과 하, 권8은 재필록(載筆錄), 권9는 이주록(伊州錄), 권10은 시 115수, 권11은 정원록(貞元錄), 권13~14는 함인록(含忍錄), 권15는 시 92수, 권16 알릉곡(謁陵曲) 등 시 235수, 권17~19에는 희년록(稀年錄), 임단록(臨湍錄)이 들어 있다

권20~27은 소(疏)와 차(箚) 152편, 권28은 서(書)와 계(啓) 54편, 권29는 헌의(獻議) 49편, 권30~31은 계 102편, 권32~33은 서(序) 53편, 권34~35는 기(記) 50편, 권36은 서 20편, 권37~38은 제문(祭文) 등 89편, 권39~40은 행장(行狀) 6편, 권41~43은 시장(諡狀) 22편, 권44~48 신도비명(神道碑銘) 26편, 권49~53은 묘갈명(墓碣銘) 58편, 권54는 묘지명(墓地銘) 9편과 묘표(墓表) 8편, 권55는 유사(遺事) 1편과 전(傳) 14편, 권56은 발(跋) 14편, 권57은 비명(碑銘) 13편, 권 58은 명(銘) 24편, 송(頌) 2편, 찬(贊)

13편, 반교문(頒敎文) 1편, 전(箋) 1편, 장(狀) 2편, 상량문(上樑文) 4편, 설(說) 4편, 그리고 권59에는 잡저(雜著) 22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1의 어정갱화록과 권2의 어정영은록은 정조를 보좌한 채제공의 충성심을 표현한 것이다 이『번암집』에 수록된 시는 2,147수나 되는데 대체로 산문적 경향이 짙다 계와 헌의 가운데 이색적인 것으로 서학 교주의 처벌을 헌의한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는 천주교에 대해 온건책을 견지하였다 전에는 남편을 죽이고 자신을 겁탈하려는 도적을 기지로 죽이고 남편도 살린 청풍의 의부(義婦) 이야기, 임진왜란 때 임진강가에서 밤에 강변의 노적에 불을 놓아 선조로 하여금 임진강을 건널 수 있게 한 이광정(李光庭)의 종 애남(愛男)의 이야기, 흉년에 기민을 구한 제주도의 의녀(義女) 김만덕(金萬德)의 이야기 등 흥미로운 것이 있다

이와 같은 채제공의『번암집』은 그의 정치 활동과 사상을 살펴 볼 수 있는 기본 자료이다 대략 그의 정치 활동과 사상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735년(영조 11) 15세 때 향시에 급제한 뒤 1743년(영조 19) 문과 정시에 급제하여 관직을 시작하였다 1748년(영조 24) 영조의 탕평책으로 남인임에도 불구하고 청요직인 예문관 사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1753년(영조 29)에는 충청도 암행어사가 되어 균역법 실시 과정 상의 폐단과 변방 대비 문제에 관해 진언하였다 1755년(영조 31) 나주 괘서 사건의 조사를 맡았으며 1758년(영조 34)에 도승지가 되었다 이 해에 사도 세자의 폐위 결정를 목숨을 걸고 막았으나, 1762년(영조 38) 모친상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있던 윤 5월에 영조에 의해 사도 세자가 죽음을 당했다

1772년(영조 48)에는 세손우빈객이 되어 세손인 정조를 보호하였으며 1775년(영조 51) 12월에 시작된 정조의 대리 청정 이후에는 호조판서, 좌참찬 등으로 활약하였다 이후 채제공의 정치 활동은 정조의 깊은 배려 아래 전개되었다 1776년(영조 52) 3월 영조가 서거하자 국장도감 제조가 되어 행장, 시장, 어제, 어필의 편찬 작업에 참여하였고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련된 책임자를 처벌할 때 형조판서 겸 판의금부사로 잘 처리하였다 또 정조의 특명으로 내시 노비의 폐단을 시정하는 절목을 만들어 점진적으로 그 숫자를 줄이게 하였다 이 덕분에 1801년(순조 원년) 내시 노비의 혁파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1780년(정조 4) 세손 시절부터 정조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왔던 홍국영(洪國榮)이 정계에서 축출되자 그와의 친분 관계, 사도세자의 신원을 위해 과도한 언사를 하였다는 죄목 등으로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이후 8년간 정계에서 물러나 있게 되었다 1788년(정조 12)에 다시 우의정으로 복귀하여 국왕의 절대권인 황극(皇極)을 세울 것, 당론을 없앨 것, 의리를 밝힐 것, 탐관오리를 없앨 것, 백성의 어려움을 근

심할 것, 권력의 기강을 바로 잡을 것 등을 진언하였다 이것은 정조의 준론 탕평, 즉 의리론적 탕평책과 잘 부합되는 것이라 하겠다. 1790년(정조 14)에는 좌의정이 되었는데, 이후 3년간은 그의 독상(獨相)체제였다 이 때 이조전랑 자대제 및 통청권을 혁파하였다. 이것들은 조선 중기 이래 당쟁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것들의 혁파는 왕권 강화라는 의미를 갖는다. 1791년(정조 15)에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신해통공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1793년(정조 17)에는 영의정이 되어 적극적으로 사도세자에 대한 역적 토벌을 주장하였다 1794~1796년(정조 18~20)에는 수원 화성 축조의 성역을 책임졌다. 1798년(정조 22)에 사직한 뒤 1799년(정조 23) 1월에 사망하였다 사후 1801년(순조 원년) 황사영 백서사건으로 관작이 추탈되었으나, 1823년(순조 23) 영남 만인소에 의해 관작이 다시 회복되었다

그는 기호남인의 학문 계보를 이황(李滉)에서 정구(鄭逑)를 거쳐 허목(許穆), 이익(李瀷)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정립하였다 따라서 그의 학문은 대체로 주자학적 견해를 가지면서도 양명학, 불교, 도교, 민간신앙 등에 포용적 태도를 가졌다 천주교에 대하여도 사교(邪敎)라고 보면서도 역적으로 다스리는 데에는 반대하고 유교적 교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대체로 정조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는 학통 상, 정치 계보 상으로 기호남인 가운데 청남(淸南)에 속하여 영조 연간 청남의 영수였던 오광운(吳光運)과 강박(姜樸)에게 수학하였으며 정범조(丁範祖), 이헌경(李獻慶), 신광수(申光洙), 정재원(丁載遠 정약용의 부친), 안정복(安鼎福) 등이 그의 친구이다 이승훈(李承薰), 이가환(李家煥), 정약용(丁若鏞) 등은 차세대 기호남인계 학자로서 그의 정치적 계승자이다

그러나 채제공의 사상은 기호남인계의 실학자들에 비해 보수적이다 그는 적극적인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단은 제도의 운영 개선책을 택하여 중간 수탈 제거, 부가세 폐단의 제거, 간리의 작폐 방지를 통한 재정 확보를 이루고자 하였다 신분질서에 대하여는 사족 우위를 유지하고 적서를 구별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번암집』은 수원 화성 건설을 총감독한 채제공의 생애를 잘 알 수 있게 하며 영조와 정조대의 정치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번암집』은 19세기 초 처음 간행된 뒤 최근 1974년 경인문화사에서 영인본이 간행되어 비교적 쉽게 구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서울대 규장각에서 「함인록」 등 일부가 번역되었다

『번암집』에서 직접적으로 수원과 관련된 자료로는 「재화성유영사영의정소(在華城留營辭領議政疏)」(계축, 권26 소차), 「재화성유영(在華城留營) 특수영의정(特授領議政) 돈유계강인사관부주(敦諭繼降因史官附奏)」(계축, 권28 서계), 「영의정사소승(領議政辭

疏承) 비후인사관부주(批後因史官附奏)」, 「천원시산지간심의(遷園時山地看審議)」(기유, 권29 의), 「천원시파토후성빈전(遷園時破土後成殯前) 대소향사정행여부의(大小享事停行與否議)」(위와 같음), 「현륭원면복삼월내(顯隆園緬服三月內) 궁향시의식의(宮享時儀式議)」(위와 같음), 「화성(華城) 성역사민의(城役使民議)」(계축, 권29 의), 「화성공도회의(華城公都會議)」(계축, 권29 의), 「대부평신양진이속화성부편부의(大阜平薪兩鎭移屬華城府便否議)」(화성유수시(華城留守時), 권29 의), 「유수부조치사의계(留守府措置事宜啓)」(계축, 권31 계), 「화성루로치첩수문등급기지견축사계(華城樓櫓雉堞水門等及基地堅築事啓)」(권31 계), 「화성성루영건시청득재목계(華城城樓營建時請得材木啓)」(권31 계) 등이 있다.

「재화성유영사영의정소」는 계축년(癸丑年 1793년) 화성 즉 수원부 유수 때에 씌어진 것이다 1793년(정조 17) 5월 정조는 당시 중앙 정계에서 잠시 후퇴해 수원 유수로 물러나 있게 하였던 채제공을 영의정에 임명하였다 이것은 남인과 노론 시파 및 벽파를 고루 등용하는 이른바 탕평책의 일환이기도 하였지만, 채제공을 등장시킴으로써 1789년 있었던 사도세자 묘소의 수원 이장 이후에 다시금 사도세자의 신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재화성유영사영의정소」에서 채제공은 영의정을 사양하면서 사도세자의 의리 문제의 해결, 즉 그의 무죄를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자신이 영의정에 임명되는 것의 전제 조건으로 사도세자의 신원 문제의 해결을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채제공이 영의정에 부임한 뒤인 1793년 8월 그와 정조만이 알던 금등(金縢)의 내용을 공개해 영조와 사도세자가 모두 잘못이 없다고 공포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재화성유영 특수영의정 돈유계강인사관부주」와 「영의정사소 승비후인사관부주」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때 사도세자 신원 문제를 위해 영의정 임명을 사양하는 글이다 이상의 상소와 주청 끝에 1793년 8월 금등이 공개되었다 영의정을 사양하는 상소와 주청을 올린 곳이 바로 수원이며 채제공이 바로 수원 유수였던 점이 주목된다 수원에서 사도세자의 묘소에 의지하여 바로 위와 같은 글들을 올린 것이다 「천원시산지간심의」, 「천원시파토후성빈전 대소향사정행여부의」, 「현륭원면복삼월내 궁향시의식의」는 모두 1789년(정조 13)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 화산에 이장하고 이름을 현륭원(顯隆園)으로 할 때의 글들이다. 「천원시산지간심의」는 수원 화산을 답사하고 이곳이 풍수지리적으로 매우 좋다고 하는 글이며 「천원시파토후성빈전 대소향사정행여부의」는 사도세자 묘소를 이장할 때 이미 파토(破土)하였으나, 성빈(成殯)하기 전에 여러 제사 음식을 올리는 일을 행하여야 하는지, 정지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글이다. 「현륭원면복삼월내 궁향시의식의」는 현륭원 면복(緬服)의 3개월 내에 궁궐에서 제사드릴 때의 의식에 관해 논한 것이다

「화성성역사민의」는 1794년(정조 18) 화성 성역을 시작하기 바로 전해인 1793년 화성 성역에 어떻게 민을 동원할 것인가를 논의한 글이다 먼 곳의 민은 동원하지 말고 경기도 내부 및 화성 주민을 동원하되, 가장 먼 곳도 이틀 거리가 넘지 않게 하라고 건의하였다 이것은 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정조는 채제공의 뜻대로 화성 성역에서 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답하였다

「화성공도회의」는 수원에 별도로 유신(儒臣) 가운데 학문으로 이름있는 자를 보내 수원 사람들에게 과거를 실시하게 해 달라는 요청으로서 이에 정조의 허락을 받았다

「대부평신양진이속화성부편부의」는 수원 유수로 있을 시절 조정에서 대부와 평신 지역의 수군 진(鎭)을 수원에 이속시키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의론이다 대부와 평신은 수원과 멀리 떨어져 왕래가 힘들므로 유수가 직접 가서 군사를 사열하기도 어렵고 군인들이 수원에서 훈련받기도 어려우며 더구나 수원에서 수군의 훈련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유수부조치사의계」는 채제공이 1793년(정조 17) 수원 유수로 있던 시절 어떻게 수원 지역에 상인을 육성할지에 대해 논한 것이다 처음부터 이에 대한 방안을 잘 세워야 한다고 하고서 이 해에 사행(使行)에 따른 교역에 상인들로 하여금 각기 능력대로 자본금을 내고 그 자본금에 따라 이권을 주는 방안을 주장하였다 사실 이에 앞서 정조 14년 2월 조정에서는 채제공의 건의로 수원에 부민(富民) 등을 끌어들여 대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런 논의들 끝에 수원에는 여러 시전이 설치되어 상업이 매우 번성한 대도회지로의 육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화성루로치첩수문등급기지견축사계」, 「화성성루영건시청득재목계」는 화성 축조의 실제 작업과 관련된 것들이다 「화성루로치첩수문등급기지견축사계」에서는 화성 축조에서 누로, 치엽, 수문 및 그 토대를 매우 굳건히 쌓자는 내용이다 「화성성루영건시청득재목계」에서는 화성 축조를 위해 재목 확보의 중요성을 말하고 안면도 등 비교적 멀지 않은 곳에서 잘 확보해 두자고 건의하는 내용이다 재목 확보가 순조로워야 화성 성역이 연기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그 비용을 조달하는 방안까지 제시하였다

이밖에 『번암집』에는 「화산용주사건설상량문(花山龍珠寺建設上樑文)」이 있다 용주사는 사도세자의 묘소를 구 수원부가 있던 화산으로 옮긴 뒤 사도세자의 원찰로서 세운 것인데, 이 용주사 건설에 대한 상량문을 채제공이 쓴 것이다

6) 『성호사설(星湖僿說)』

『성호사설』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 실학자 가운데 하나인 이익(李瀷)의 저서이다 이익은 1681년(숙종 7)에 태어나 1763년(영조 39)에 사망하였으며, 자가 자신(子新)이고 호가 성호(星湖)이다 이 호는 그가 살던 안산 첨성리 성호장(星湖莊)에서 비롯되었다 이곳은 바닷가로서 해안이 개펄로 되어 있었는데 물이 들어오면 별 모양의 호수처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 본관은 여주(驪州)로서 8대조가 병조판서를 지낸 이계손(李繼孫)이고 증조부는 의정부 좌찬성을 지낸 이상의(李尙毅)이며 조부는 사헌부 지평을 지낸 이지안(李志安)이고 부친은 사헌부 대사헌을 지낸 이하진(李夏鎭)이다 그가 태어나기 바로 전해에 경신환국이 있어 남인 정계에서 모두 축출당하였다 이리하여 당시 남인의 핵심 인물의 하나였던 부친 이하진은 평안도 운산에 유배갔는데 이익은 이 유배지에서 태어났다 『성호사설』은 대체로 이익이 40세 전후부터 책을 읽다가 느낀 점, 기록할 만한 사실 등을 그 때 그 때 기록해 둔 것을 그의 나이 80세에 이르러 조카들이 다시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사설(僿說)이란 세세한 논설이라는 뜻이다 『성호사설』은 필사본으로만 전해지다가 1967년에 이르러 비로소 이익의 조카 이병휴(李秉休) 후손의 소장본을 토대로 경희출판사에서 상·하 두 책으로 영인, 간행하였으며 전체가 1977~1979년에 민족문화추진회에 의해 번역되었다 한편 『성호사설』은 이익의 제자 안정복에 의해 다시 『성호사설류선(星湖僿說類選)』으로 정리되었는데 이것은 1915년 고서간행회에 의해 간행되었으며 이것을 정인보가 다시 교열하여 1929년 문광서림에서 출판하였다 문광서림본에는 이익의 자서, 변영만과 정인보의 서문 및 「곽우록(藿憂錄)」이 추가되었다

『성호사설』은 천지문(天地門), 만물문(萬物門), 인사문(人事門), 경사문(經史門), 시문문(詩文門)의 5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지문은 천문, 역법과 자연 지리와 역사 지리 및 자연 현상 등에 관한 서술이며, 만물문에는 복식, 음식, 농상, 가축, 화초, 화폐, 도량형, 병기, 서양 문물 등 일상 생활과 관련된 것이 들어 있다 인사문은 정치, 경제, 사회, 제도, 학문 등에 관한 것으로 그의 개혁사상과 연관되어 있으며 경사문은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읽으면서 느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시문문은 시와 문장에 대한 평이다 이런 『성호사설』은 일종의 백과사전이면서 그 속에 개혁사상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사문의 항목이 그러하며 인사문은 그의 개혁론이 정리되어 있는 「곽우록」과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다 또 경사문 가운데 경학에 관한 부분은 유교 경전에 관한 그의 주석서[疾書]들과 관련해 보아야 한다 한편 『성호사설』에서 직접 수원과 관련된 자료는 권6 만물문의 「목면(木棉)」조와 권9 인사문의 「오위

(五衛)」조이다 목면조에서 이익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목면은 고려 말기에 수입되어 지금은 거의 온나라에 퍼졌다 그러나 아직도 심지 않는 지방이 많다 지방에 따라 풍토와 기후가 달라 심지 못한다는 말은 잘못이다 황해도의 황주와 봉산, 충청도의 문의와 옥천 등지는 목면이 토리에 알맞아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데 경기 부근에 이르러서는 차츰 줄어든다 내가 바닷가에 살면서 징험해 보니 수원에 속한 쌍부(雙阜)라는 한 면은 한 집도 심는 이가 없으니 어찌 40~50리 사이에 토리가 이처럼 다를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우명(牛鳴)이란 곳도 바닷가의 한 구석진 지대로서 역시 목면을 심지 않는다. 그 실상은 풍속 습관이 고쳐지지 않은 때문이지 목면의 성질이 지방에 따라 다른 것은 절대 아니다 사방을 두루 살펴 보면 산골이건 바닷가이건 목면이 생산되지 않는 데가 없으니 이는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이것은 수원을 비롯한 경기 일대에서 목면을 재배하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고 그 재배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당시 농업의 상황을 엿볼 수 있게 해 주는 자료이다 이익은 당시 유통경제가 발전하고 금속 화폐가 사용되어 농촌 경제가 몰락하고 있던 상황에서 쌀이나 면포를 현물 화폐로서 사용할 것을 생각하였다 당시 경기 지역은 특히 화폐 사용에 따른 농촌 경제의 몰락이 심하였는데 경기 지역에서는 오히려 목면을 잘 재배하지 않고 있었다 목면을 재배하지 않는 것은 타 지역에 비해 금속 화폐 경제의 침투가 심한 경기 지역에서 목면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 「오위」조에서는 "오위 제도는 이미 폐지되었으나 이름만은 아직 남아 있다 처음에는 서울을 오부(五部)로 만들어 중·동·서·남·북으로 하고 전국을 오위로 만들어 중·좌·우·전·후로 하였다 · 오위 안에도 역시 각기 오부가 있으니, 중위에는 갑사보충대가 소속됨과 동시에 개성, 양주, 광주, 수원, 장단이 중(부)에 속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수원이 조선 전기 오위체제 하에서는 수원이 중위 가운데 중부에 속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자료이다 다만 이 오위조는 조선 전기 오위제도를 복구하자는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씌어진 것이다

또한 직접 수원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삼한 시대에 수원이 속하였던 마한에 대한 언급이 『성호사설』 권2 천지문 「삼한금마(三韓金馬)」조에 나온다 여기서 마한의 위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둘로 나누어 지금의 서울 이북을 조선(朝鮮)이라 하고 이남을 한(韓)이라 했다 한의 땅을 반으로 나누어 동쪽은 진한·변한이 되고 서쪽은 마한이 되었으며 마한 땅을 통틀어 금마라고 하였다" 마한을 경기 남부 지역, 충청도 및 전라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권2 천지문 삼한조에서는 "기준(箕準)이 마한 땅을 빼앗아 임금이 되었으니. 기씨의 전

(前)부터 한(韓)나라가 있었다"라고 하였다 기준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남쪽 마한 땅으로 오기 이전에 이미 마한이 존재하였다는 견해이다 삼한을 한강 이남으로 위치 비정하는 것은 한백겸의 설을 계승한 것이며 이익 이후 정약용에게 계승되었다 마한이 기준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주장은 이익에게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7) 『수원유생우하영경륜(水原儒生禹夏永經綸)』

『수원유생우하영경륜』은 1796년(정조 20) 4월 25일 수원 출신의 실학자 취석실(醉石室) 우하영(禹夏永 1741~1812)이 국왕의 구언하교(求言下敎)에 대하여 『병진사월응지소(丙辰四月應旨疏)』와 함께 정소(呈疏)한 시무책이다 저작자의 친필로 추측되는 필사본으로서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규장각도서 No 3202). 1책 87장의 필사본으로, 그 규모는 세로 32 8㎝×가로 21㎝의 크기이다

이 저작은 저작자 우하영이 당시까지 전작(全作)체계로 집필해온 『천일록(千一錄)』 가운데서 그 일부를 간추려 요약하고, 또 그 내용을 정소문(呈疏文)의 격식과 관행에 맞추어 매우 정중한 문체로 집필한 것이다 첫째번의 「무본(務本)」에서 열세번째의 「무과수전의(武科收箭議)」에 이르는 13개 항목에 걸쳐 각 항목 서술 서두(序頭)에 반드시 "신근안(臣謹按)…"이라고 상소문의 격식을 갖춘 것이 특색이다

이 저작은 우하영의 필생의 전작집인 『천일록』 11권 편제에서는 제외된 채 독립된 별책으로 전해 왔다 그 서술체재와 내용을 볼 때 독립된 저작으로 정연함과 일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18세기 말 후기 사회의 제도적·행정적 여러 문제에 대한 저작자의 시각이 요약되어 있어서 우하영의 실학사상, 곧 그의 현실 인식과 경세관(經世觀)을 잘 집약해서 보여 주고 있다 『병진사월응지소』와 함께 이 시무책으로 인하여 재야 지식인으로서의 우하영의 경륜이 정조·순조실록을 비롯한 관찬사서(官撰史書)에 기록되고 그의 이름을 중앙정계에 알리는 단서가 되었다

시무책 『수원유생우하영경륜』은 ① 무본(務本) ② 화속(化俗) ③ 용인(用人) ④ 군제(軍制) ⑤ 관방(關防) ⑥ 적세(糴稅) ⑦ 화성(華城) ⑧ 탐라(耽羅) ⑨ 금도(禁盜) ⑩ 방간(防奸) ⑪ 육진승도의(六鎭僧徒議) ⑫ 화포장약의(火砲藏藥議) ⑬ 무과수전의(武科收箭議) 등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소문(呈疏文)과 함께 찬진한 이 저작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당세(當世)의 급무(急務)를 조목별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 만큼 18세기 말 변동기에 처한 봉건 왕조사회의 실상과 문제점, 특히 수원지방의 농업·농업정책·상공업·풍속·부세(賦稅)·환곡(還穀)·토지제도·토지정책·신분제도·군사제도

·군사정책·관방·관리제도·과거제도·방간(妨奸), 그리고 수원 지역사회의 발전 등 당대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우하영의 개혁적인 경륜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실학사상이 잘 요약된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저작의 첫번째 「무본」조에서는 중농주의자로서의 본말관(本末觀)을 드러내 '무농(務農)과 풍속 계몽은 치국(治國)의 으뜸'이라는 관점에서 농업정책의 방향과 농민생활의 안정 문제, 농업생산력의 제고(提高) 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당시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의 모순과 토지겸병(兼倂)·광작농(廣作農)의 확대, 신분제와 사회경제적 변동, 관아(官衙)와 관리들의 토색(討索) 등으로 인하여 민생고가 가중되는 가운데 사치와 나농(懶農)풍조가 만연되고, 또한 날로 농민층분해가 한층 악화되어 가는 농촌현실의 처방이 시급한 위기적인 현실로 진단하였다

우하영은 풍기(風紀)가 퇴폐해 가고 세속이 문란해져 유수자(遊手者)가 늘어가는 농촌세태에 대하여 깊이 우려, 농업생산의 증진을 위한 관(官)의 권농(勸農)정책과 농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무본의식(務本意識)의 고양(高揚)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중농적인 무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을 담당한 지방수령의 권농정책과 그 역할, 농촌통제와 농업기술의 개혁을 통한 토지생산성의 향상을 시급히 제언하였다 농업진흥을 위한 권농기구로 권농관(勸農官)의 설치와 권농절목의 제정, 향약(鄕約) 시행을 통한 풍속교화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농법관행으로 일반화되고 있던 이앙법(移秧法)과 직파법(直播法)의 적부(適否), 농민의 토지이탈을 야기시키는 호부층(豪富層)의 토지겸병과 광작의 폐해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였다

특히 우하영은 18세기 말 상품화폐경제의 발전과 영농방법의 개혁에 조응(照應)하여 상업적 농업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18세기 후반 이래 개성(開城)을 비롯하여 경상·충청·전라도 등지에서 인삼(人蔘)이 널리 재배되어 각광을 받고 있고, 연초(煙草)재배가 전국 각지에서 곡물 농경지를 침식할 정도로 상업작물 재배 풍조가 파급되고 있으며, 장시(場市)의 발달로 인하여 농산물의 상품화가 촉진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깊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농가의 소득증대와 토지경작에 대한 농민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자신의 향촌인 수원지방과 같이 도시 부근의 농민들에겐 미나리와 채소 등 수익성있는 작물재배를 권유했고, 솜·삼베·모시·누에농사 등에 대하여 깊이 유의하는 등 상업적 농업 또는 농업의 상품생산화를 적극 주장하였다

한편 「화속」조에서는 보진(補賑)·보역(補役)의 문제를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깊이 검토하는 한편, 군보(軍保)를 둘러싼 납속수직(納粟授職)과 공명첩(空名帖)의 폐해를 국가재정과 군사정책의 충실화, 그리고 유교적인 치민(治民)과 풍속교화의 견지에서 시급

히 개선·극복되어야 할 현상으로 비판하였다

다음에 그가 이 저작에서 큰 비중을 두고 비판을 가한 것은 과거제도와 인사정책의 제도적 모순과 행정적 부조리 문제였다 즉, 그는 「용인」조에서 강경(講經)과 제술(製述)을 위주로 하는 과거제도의 문제점과 그 운영상의 문제점을 비판했고, 당시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인식된 과거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고 과천합일(科薦合一)의 방법을 그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그는 과거를 준비하는 데 일생을 허송해야 하는 당시의 사습(士習)과 과거시험 피해자로서의 울분, 그리고 과거제도의 문란으로 야기되는 행과(倖科)·부문(負門)·쟁접(爭接)·매문매필(賣文買筆) 등 세도가나 호부층에 의하여 자행되는 각종의 폐풍(弊風)과 부조리를 열거하면서 통렬한 비판을 가하고 그 제도적·운영상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견해는 아마도 저작자 자신이 13번에 걸쳐 적나라하게 겪어야 했던 과장(科場) 체험과 유생으로서 자신이 처한 기본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자 우하영이 크게 관심을 갖고 논조를 전개한 부분은 군사제도와 군사정책에 관한 문제였다 「군제」조는 전작『천일록』권2「군제」를 보충·요약하여 취록(取錄)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그는 군역제(軍役制)의 문제점, 즉 조선 전기의 오위(五衛 중앙의 군제)·진관(鎭管 지방의 군제)체제가 후기에 와서 오영(五營 중앙)·진영(鎭營 지방)으로 바뀌고, 조선 전기의 병농일치제(兵農一致制)에 의한 호보제(戶保制)에서 후기 용병(傭兵)을 중심으로 한 상비군적(常備軍的) 군사제도로 전환된 이후에 야기된 각종의 역역(力役) 부담과 군사상의 여러 문제에 주목하였다 다시 말해서, 임진왜란 이후 훈련도감(訓練都監)을 비롯하여 총융청(摠戎廳)·어영청(御營廳)·수어청(守禦廳)·금위영(禁衛營)이 설치된 바 있는데, 이 5군영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으로 문제된 양역(良役)의 폐단과 대응책으로 마련된 균역법(均役法)의 또 다른 문제점과 허실(虛實)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며, 그 개혁책을 마련하려 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각읍의 지방군은 각기 해당 순병영(巡兵營)에 속하게 군제를 개혁함으로써 불의의 사변 때 본읍의 수령 또는 대장(代將)이 지휘·통솔하는 데에 있어서 효율적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군제상 본읍 수령 중심의 지휘계통을 명백히 할 것을 제의함과 아울러, 그는 또한 소속 군정(軍丁)은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사훈련을 1차 실시하여 비상시에 대비할 것을 논했고, 군총환정(軍摠換定)의 방향으로는 통(統)·호(戶)에 따른 어린작대(魚鱗作隊 유사시 군정이 집결해야 할 장소를 기점으로 하여 인근지역으로부터 충정(充定), 점차 먼 곳으로 확산해 가는 것이며, 한 지역의 군정을 모두 동일한 부대에 소속시킴을 원칙으로 함)의 진형(陣形)을 갖추도록 제안하였다

한편 「관방」조에서는 일찍부터 자연·인문·역사·군사·산업지리에 관심을 갖고 전국 각지를 답사한 경험을 토대로, 지세(地勢)에 따른 험로(險路)·요새(要塞)·성곽 등 국방·교통상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외적의 침입 시 수행해야 할 역할과 방어책을 모색하는 등 국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제시하려 하였다.

다음 「적세」 조는 환곡의 폐단을 고찰한 것으로서, 본래 진정(賑政)의 취지와는 달리 관부고리대(官府高利貸)의 대명사로 전락(轉落)되었을 뿐만 아니라 간리(奸吏)들이 대(對) 농민수탈 기회로 활용하여 원성(怨聲)의 표적이 되고 있는 현실을 깊이 통찰하였다 저자는 행정상 환폐(還弊)의 가장 큰 단서는 금납화(金納化)에 있다고 보고, 간리들이 부정한 이익을 수탈하기 위하여 이매(移賣)·이록(移錄)하거나 또 관속(官屬)이 사술(詐術)을 써서 민간에 수봉(收捧)할 때는 정실곡(精實穀)을 받고 관아에 바칠 때에는 오로지 공곡(空穀)으로만 구차하게 채워 지능적으로 사취(詐取)하는 갖가지 비리(非理)와 세태를 꿰뚫어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인징(隣徵)·족징(族徵)에 이르기까지 악화일로에 빠진 환폐 방지책으로 그 폐단의 문제점과 실무자인 감색(監色)·고자(庫子)·간리 등의 농간을 단속하지 못하는 수령에게 그 책임을 물어 엄중히 문책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음 「화성」조에서는 1789년(정조 13) 7월 이후부터 수원 신도시 건설, 1793년(정조 17) 1월 수원을 '화성(華城)'으로의 개호와 유수부(留守府)로의 승격을 기록하였다 또 역사적인 화성 성역의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이 고장의 산업 발전과 민생 문제, 무엇보다 제도적·행정적인 개혁을 통한 신도시 발전을 위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비판하였다 특히 농업·상공업의 진흥을 도모한 도시발전과 번영책을 지역주민의 전문적인 시각(視角)에서 강구하는 등 행정·경제·사회·군사 등 여러 부문에 걸쳐 다양한 개혁안을 토로해 놓았다

그밖에 「탐라」조에서는 제주도민의 산업과 민생 문제, 「금도」·「방간」조에서는 도둑질과 부정부패에 대한 대비책, 「육진승도의」·「화포장약의」·「무과수전의」 등에서는 변경지에 배치할 승병(僧兵)과 각종 신·호역의 개선, 화포와 화약을 수원부가 직접 저장·운영하며 이를 통한 주민대책, 무과의 운영 문제 등에 대한 민본주의 실학자로서의 여러 개혁안을 제안해 놓았다

8) 『시남집(市南集)』

17세기의 수원부 서촌(西村) 출신으로, 서인계(西人系) 예학(禮學)의 대표적인 이론가

이자 역사학자·문신이었던 유계(兪棨 1607-1664)의 시문집이다 본래 아들 명윤(命胤)이 선친의 시문을 편집하여 송시열(宋時烈)의 교열을 거쳐 간행하려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자 동생 명흥(命興)과 아들 상기(相基)가 마무리하여 간행하였다 모두 24권으로 부록 3권 15책으로 구성된 목판본이다

유계는 19세 때 서인 예학의 대가인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공부했고 1633년(인조 11) 문과에 합격한 뒤 시강원(侍講院) 설서(說書)로서 세자 교육의 중책을 맡았다 1636년 병자호란 때는 열렬한 척화주전론(斥和主戰論)을 펴던 끝에 충청도 임천(林川)에서 3년간 유배생활을 보냈다 그 뒤 1641년(인조 19) 가족들과 함께 호남의 금산(錦山)으로 이사하여 마하산(麻霞山) 밑에 산천재(山泉齋)를 짓고 3년간 살았다 임천과 금산에 살던 6년간 유계는 주자(朱子)의 사학과 가례(家禮)를 공부하고 여러 학자들과의 교유를 통해 학문을 크게 성숙시킬 수 있었다 즉, 그의 대표적 저술인 『여사제강(麗史提綱)』은 임천 유배시절에 이루어진 것이며, 서인의 예론을 대표하는 『가례원류(家禮源流)』는 금산에서 엮어진 것이다 특히 당대 예론에 큰 영향을 미친 『가례원류』는 주자 『가례』를 강목(綱目)으로 편성하고 고례(古禮)의 경전 및 선현의 예론 그리고 우리 나라 유학자들의 예에 대한 논저를 덧붙였다 그의 학문·사상은 이이(李珥)의 경세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어릴 때부터 그는 이이와 성혼(成渾), 이황(李滉)과 기대승(奇大升)의 이기(理氣) 논쟁에 깊은 이해를 가진 가운데, 학문의 관심 또한 천문·지리·의약·복서(卜筮)·이수(理數)·역학(易學) 등에 이르기까지 깊고도 폭넓은 이해를 지녔다 따라서 유계의 사후 반대당인 남인계 실록편수관에 의해 씌어진 졸기(卒記)에도 박람강기(博覽强記)하고 문명이 높았음과 균역제(均役制) 주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현종실록』 현종 5년 2월 기미조)

그의 시문집 『시남집』은 서문을 송시열이, 발문을 윤증(尹拯)이 썼다 권1에는 사부(詞賦) 1수, 시 216수가 수록된 것을 비롯하여 권2~7에는 시 585수, 권8에는 교서 6편, 소(疏) 5편, 권9에는 소 25편, 권10에는 차(箚) 11편, 권11에 차 8편, 계(啓) 2편, 권 12·13에 서(書) 78편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권14~17에 잡저 21편, 권18에 서(序) 6편, 권19에 기(記) 15편, 권20에 설(說) 2편, 변(辨) 2편, 논(論) 5편, 권21에 발(跋) 4편, 찬(贊) 3편, 악장 1편, 표전(表箋) 2편, 상량문 4편, 권22에 축문 8편, 권23에 묘갈·지명(誌銘) 12편, 권24에 행장 3편이 각각 수록되었다 한편 부록에는 윤선거(尹宣擧)의 시남행장(市南行狀), 윤휴(尹鑴)의 묘표음기(墓表陰記), 송시열의 신도비명(神道碑銘)과 사제문(賜祭文) 14편, 만장 45편, 임천서원영건시통문(林川書院營建時通文)·임천유생청건서원소(林川儒生請建書院疏)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시는 절구·율시·배율·오언·육언·칠언 등 다양한 시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권8의 소 가운데 「청급수남한위분조소(請急修南漢爲分朝疏)」, 「청물집송척화제신소(請勿執送斥和諸臣疏), 권9의 「논변통군정소(論變通軍政疏)」, 「청면봉미수적곡이위민심소(請免捧未收糴穀以慰民心疏)」 등은 병자호란 후 당시의 정치 상황과 사회 현실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잡저에 실린 「독서쇄설이백육십조(讀書瑣說二百六十條)」는 『서경(書經)』 중 문제되는 260개 조목을 논의한 것이다 특히 「강거문답(江居問答)」은 효종 초에 『율곡문집(栗谷文集)』 중에서 경세제민(經世濟民)에 관련된 글을 표본으로 자신의 정책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시남집』은 유계의 시문·성리학·예학 등 그의 박람강기의 폭넓은 학문과 특히 서인계를 대표하는 예학을 살펴보는데 좋은 자료이다 이 책은 규장각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9) 『여사제강(麗史提綱)』

17세기 수원부 서촌 출신의 학자·문신이었던 유계가 지은 편년체 고려사서(高麗史書)로서 총 23권 23책의 인본(印本)이다 이 책은 유계가 병자호란 때 대청주화론(對淸主和論)을 배척한 끝에 임천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시기, 즉 그의 나이 31~34세 때에 저술되었으며, 그의 사후 3년 뒤인 1667년(현종 8)에 인간(印刊)되었다

책머리에는 서(序)·범례(凡例)·목록·찬집제서(纂輯諸書)가 수록되어 있고, 권1·2 태조(太祖)에서 권22·23 신우(辛禑 禑王)·신창(辛昌 昌王)까지 편년체로 서술되어 있다 이 책의 서문은 유계와 동년의 절친한 학우이자 당우(黨友)인 송시열이 썼고, 1681년(숙종 7) 2월 왕에게 취람(取覽)하여 감계(鑑戒)로 삼을 것을 권했고, 그해 3월 김수항(金壽恒)이 왕에게 이 책을 간행하여 영남지방에 널리 배포할 것을 진언하여 윤허를 받았다 김수항이 이 책의 광포(廣布)를 진언한 까닭은, '이 책이 강목을 충실히 따르고, 규모가 가장 정(精)하며, 자세함과 간략함이 중도를 얻어 감계(鑑戒)하는 방법으로 절실하다'는 이유였다

따라서 서인 집권기인 숙종·영조대에 『여사제강』은 마치 관찬사서나 다름없을 만큼 중외에 널리 읽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영조 25년 이전에 태백산사고(太白山史庫)에 보관되는 영광을 입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사제강』은 영남 남인들로부터 춘추대의(春秋大義)에 어긋나는 사서라고 신랄한 비판을 받았는데, 이 책에 대한 남인측의 비판은 학술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 사안과 관련시켜 문제를 제기한 혐의가 짙었다 『여사제강』은 붕당(朋黨)정치와 관련되어 논란을 빚는 가운데서도 사학사적으로 후세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소론계인 임상덕(林象德)의 『동사회강(東史會綱)』과 남인

계인 안정복(安鼎福)의 『동사강목(東史綱目)』은 직·간접적으로 『여사제강』에 대한 자극과 반성에서 씌어졌다는 사실이 그것을 예증한다

송시열은 서문에서 기존의 기전체(紀傳体) 사서인 『고려사』가 요령을 얻기 힘들게 서술되어 있으므로 저자가 주자범례에 따라 강목체로 편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이어서 고려 470년의 역사는 한마디로 '치일(治日)이 극히 적고, 난일(亂日)이 매우 많은 시대'였으며, 따라서 고려의 역사는 '짧은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까지 진단하였다 또한 이 책의 22조에 걸친 범례에 의하면, 저술된 동기는 기존의 『삼국사기』, 『고려사』, 『동사찬요(東史纂要)』, 『동국통감(東國通鑑)』, 『동국사략(東國史略)』 등의 기사내용과 체재, 특히 사체(史体)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조선 중기 말엽의 전형적인 성리학자였던 유계는 이미 간행된 사서에 대한 학문적 불만에서 비롯되어 주자가 전범(典範)을 보인 성리학적 사체인 강목체를 본받아 간략한 사서를 저술하려는 의도를 이 책을 통해 집약적으로 반영하였다

유계가 『여사제강』 저술에 참고한 찬집저서 가운데, 먼저 사서로는 『고려사』, 『동국통감』, 『동국사략』, 『동국병감(東國兵鑑)』, 『동사찬요』 등이 있고, 그 외에 이제현(李齊賢)의 『익재난고(益齋亂藁)』, 『역옹패설(櫟翁稗說)』, 이색(李穡)의 『목은집(牧隱集)』, 이인로(李仁老)의 『파한집(破閑集)』, 최자(崔滋)의 『보한집(補閑集)』, 최부(崔溥)의 『금남집(錦南集)』,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 서거정(徐居正)의 『필원잡기(筆苑雜記)』, 『여지승람(輿地勝覽)』 등이었다 특히 『여사제강』 본문 중에는 이황·조식(曺植)·주세붕(周世鵬) 등의 사론을 수록하였다 또한 여러 사서와 문집을 참고로 강목체로 고려사를 재구성하고자 했는데, 저자가 주자료로 이용한 것은 『동국통감』의 「고려기(高麗紀)」 부분이었고, 편사범례(編史凡例)는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의 그것을 많이 따랐다

한편 이 책은 주자의 강목체 정신에 충실하면서도 그 서술에 있어서는 우리 역사의 주체성을 살리고자 하였다 즉, 유계는 본국의 기년(紀年) 아래 중국의 연호를 분주(分注)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본국이 비록 중국의 정삭(正朔)을 받들고 있으나, 이 책은 곧 본국의 역사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고려시대의 종(宗)을 비롯하여 폐하·태후·태자·절일(節日)·조(詔)·제(制) 등이라 칭하던 명칭이 비록 참월하기는 하나, 당시 칭하던 바를 사실대로 쓴다는 융통성을 보인 점도 특기할 점이다 『여사제강』은 그 내용면에서는 비록 새로운 사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사학사적으로 17세기 조선 성리학자들의 역사관, 특히 고려사관이 어떠했는가를 가늠하는 좋은 자료이다

또한 유계의 『여사제강』은 남인과의 정치적·학문적 경쟁관계 속에 편찬된 독특한 개성을 지닌 사서라는 점, 존화양이(尊華攘夷)의 입장을 가진 가운데서도 자주·자강의

측면을 더 중요시한 점도 주목된다 1973년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 간행되었다

10)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여유당전서』는 조선 후기 실학(實學)의 집대성자인 정약용(丁若鏞)의 문집이다 정약용은 1762년(영조 38)에 태어나 1836년(헌종 2)에 서거하였다 본관은 나주(羅州)이며 자는 미용(美庸), 호는 널리 알려진 다산(茶山 강진의 귤동으로 옮겨 간 이후) 외에도 사암(俟菴), 탁옹(籜翁), 태수(苔叟), 자하도인(紫霞道人), 철마산인(鐵馬山人) 등 여러 가지인데, 호가 사용된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의 호는 저작 시기를 추정하는 좋은 단서가 된다 흔히 아는 여유당(與猶堂)은 당호이다 부친은 기호남인계의 정재원(丁載遠)으로 당시 남인의 영수 채제공(蔡濟恭) 등과 친교가 있었다 모친은 해남(海南) 윤씨(尹氏)로서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緖)의 손녀이다 15세 풍천(豊川) 홍씨(洪氏)와 혼인하였다 아들로는 학연(學淵), 학유(學遊)가 있다

『여유당전서』는 정약용의 저술을 총정리하고자 한 것이다 정약용의 저작은 생전에는 간행되지 못하였으나 『목민심서』 등이 필사본의 형태로 널리 유포되다가, 그의 사후 1900년대 계몽운동기에 『목민심서』를 간행하는 등 단편적으로 정리 작업이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간행한 것은 1930년대(1934~1938) 신조선사에서 펴낸 『여유당전서』이다 이것은 당시 민족운동으로서 조선학운동의 일환이었고, 1936년 정약용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이었다

『여유당전서』는 모두 7집으로 분류되어 있다 제1집은 25권 12책으로 시문집(詩文集), 잡찬집(雜纂集), 제2집은 48권 24책으로 경집(經集), 제3집은 24권 12책으로서 예집(禮集), 제4집은 4권 2책으로서 악집(樂集), 제5집은 39권 19책으로서 정법집(政法集), 제6집은 8권 4책으로서 지리집(地理集), 제7집은 6권 3책으로서 의학집(醫學集)이다 제1집 시문집에는 부(賦), 시(詩), 문(文), 책(策), 문(問), 의(議), 소(疏), 차(箚), 원(原), 설(說), 계(啓), 장(狀), 논(論), 변(辨), 잠(箴), 명(銘), 송(頌), 찬(贊), 서(序), 기(記), 발(跋), 제(題), 서(敍), 묘지명(墓地銘), 묘갈명(墓碣銘), 묘표(墓表), 비명(碑銘), 제문(祭文), 뇌(誄), 유사(遺事), 행장(行狀), 전(傳), 기사(紀事), 증언(贈言), 가계(家誡), 서(書), 서암강학기(西巖講學記), 도산사숙록(陶山私淑錄), 잡문(雜文), 여문(儷文), 잡평(雜評), 산수심원기(汕水尋源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잡찬집에는 「문헌비고간오(文獻備考刊誤)」, 「아언각비(雅言覺非)」, 「이담속찬(耳談續纂)」, 「소학주관(小學珠串)」이 수록되어 있다

제2집 경집에는 『대학(大學)』, 『중용(中庸)』, 『맹자(孟子)』, 『논어(論語)』의 4서와

『시경(詩經)』, 『상서(尙書)』, 『춘추(春秋)』, 『주역(周易)』에 대한 주석서가 들어 있다 『대학』에 대하여는 「대학공의(大學公義)」(부(附) 「소학지언(小學枝言)」, 「심경밀험(心經密驗)」)와 「대학강의(大學講義)」, 『중용』에 대하여는 「중용자잠(中庸自箴)」과 「중용강의(中庸講義)」, 『맹자』에 대하여는 「맹자요의(孟子要義)」, 『논어』에 대하여는 「논어고금주(論語古今註)」가 수록되어 있다 『시경』에 대하여는 「시경강의(詩經講義)」와 「시경강의보(詩經講義補)」, 『상서』에 대하여는 「매씨상서평(梅氏尙書平)」, 「상서고훈(尙書古訓)」, 「상서지원록(尙書知遠錄)」, 『춘추』에 대하여는 「춘추고징(春秋考徵)」, 『주역』에 대하여는 「주역사전(周易四箋)」와 「역학서언(易學緖言)」이 있다

제3집 예집에는 「상례사전(喪禮四箋)」, 「상례외편(喪禮外編)」, 「상례절요(喪禮節要)」, 「제례고정(制禮考定)」, 「가례작의(嘉禮酌儀)」, 「예의문답(禮疑問答)」, 「풍수집의(風水集議)」가 실려 있다 제4집 악집에는 「악서고존(樂書孤存)」이 실려 있으며 제5집 정법집에는 이른바 1표(表) 2서(書) 즉 「경세유표(經世遺表)」, 「목민심서(牧民心書)」, 「흠흠신서(欽欽新書)」가 수록되어 있다 제6집 지리집에는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와 「대동수경(大東水經)」이 실려 있고 제7집 의학집에는 「마과회통(痲科會通)」과 「의령(醫零)」이 수록되어 있다

『여유당전서』의 체재는 정약용 자신이 61세 때 「자찬묘지명(自撰墓地銘)」에서 유교경전에 대한 주석서는 모두 경집, 그밖의 것은 모두 문집으로 정리해 놓은 체계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자찬묘지명」에 따르면 잡문을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고 있는데 『여유당전서』에서는 이 구분을 없애고 시문집에 장르별로 일괄해서 집어넣었다 정약용 자신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자찬묘지명의 체재에 따라 보는 것이 좋으나 『여유당전서』의 체재는 주제별로 살펴보는데 도움이 된다

『여유당전서』에 수록되지 않은 저작은 다시 다산학회에 의해 1973~1974년에 『여유당전서보유(與猶堂全書補遺)』로 간행되었다 다만 여기에는 반드시 정약용의 저작이라고 확증하기 어려운 것도 들어 있다 1930년대 간행된 신조선사본 『여유당전서』의 영인본이 경인문화사, 여강출판사 등에 의해 영인되었다 그리고 원래 「자찬묘지명」에서 정약용이 정리한 모습을 잘 살필 수 있는 필사본 『여유당집』, 『열수전서』 등이 단편적으로 규장각, 정신문화원 도서에 소장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방대한 저술을 한 정약용의 생애와 학문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약용의 생애는 대체로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1801년(순조 원년) 신유사옥으로 인한 유배 이전 시기이며, 둘째는 1801년에서 1818년까지의 유배시기이고, 셋째는 유배에서 풀린 이후 1836년 서거하기까지의 시기이다 첫째 시기는 다시 15세 때 서울에 오기 이전의 시기, 서울에서의 수학 시기, 28세 때(1789년 정조

13)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 활동을 한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유배 시기는 다시 1801년 경상도 장기(長鬐)에서의 유배 시기, 1801년 말에 시작되는 강진 유배 시기로 나뉘며 강진 유배 시기도 1808년(순조 8) 다산초당으로 이주하기 이전과 이후의 시기를 나눌 수 있다

첫째 시기 가운데 서울에 오기 이전에는 주로 집에서 부친 정재원의 교육을 받았다 정재원은 기호남인계의 학자, 관료 중 채제공, 정범조(丁範祖), 이헌경(李獻慶), 안정복(安鼎福) 등의 세대에 속한다 서울에 온 이후에는 이가환(李家煥), 이승훈(李承薰) 등 이익 학파의 선배들 속에서 있으면서 이익 학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이벽(李檗) 등을 통해 천주학에도 접하였다 이런 가운데 22세 때(1783년 정조 7)에 경의생원(經義生員)에 합격하였을 때 정조를 배알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정조와의 첫 만남이다

첫째 시기 가운데 제3기에서는 28세 과거 합격 이후 정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경기도 암행어사, 승지 및 금정찰방, 곡산부사 등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특히 이 시기 수원과 관련하여 1793년(정조 17) 수원 화성을 설계하여 이듬해 이를 토대로 화성 축조가 시작되었으며 기중기 설계 등 화성 축조와 관련된 실무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정조 연간 거듭해 천주교 사건이 터지는 와중에 자주 여기에 연루되기도 하였다 금정찰방이나 곡산부사와 같은 외직에 나가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조의 총애, 채제공의 도움 등으로 관로는 비교적 순조로왔다 이 시기에는 거대한 저작보다는 시문집에 실린 단편적인 글을 썼으며 이런 작업들이 나중에 『경세유표』 등의 체계적인 저술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 정조의 지도 아래 유교 경전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규장각 근무 시에는 박제가 등과의 교유를 통해 북학파의 학문을 흡수하였다

둘째 시기인 유배기를 살펴보면, 1801년 9개월 간 경상도 장기에 유배되었다가 황사영(黃嗣永) 백서사건(帛書事件)으로 다시 서울에 올라왔다가 이 해 11월에 강진으로 가게 되어 이후 18년간 유배 생활이 계속되었다 강진에서 처음에는 받아주는 이가 없어 읍내의 주모 집에 1805년까지 머무르다가, 다시 고성사(高聲寺), 제자인 이학래(李鶴來)의 집 등에 기거하였다 이 시기에는 『주역사전』 저술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후 1808년 봄 다산초당으로 옮겼으며 비교적 안정된 상황에서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여러 경전 주석서와 『경세유표』, 『목민심서』 등 정약용의 주요 저작이 거의 이루어졌다 다만 『경세유표』의 경우 1817년 작업이 시작되었다가 중단된 이후 끝까지 미완성으로 남았다

셋째 시기인 해배기에는 향리인 경기도 마재에 머물면서 주로 그 전까지 이루어졌

던 저작의 수정, 보완 작업을 행하였다 강진 시기의 『목민심서』 초고본을 보완하여 1821년 작업을 마쳤으며, 『아방강역고』에 대하여도 수정, 보완하였다 이 시기에 가장 두드러진 작업은 『상서고훈』과 『상서지원록』을 수정, 보완하고 합쳐서 합편 『상서고훈』을 만든 것, 수정본 『매씨상서평』을 만든 일이다 여기에는 해배 이후 교유하게 된 강화학파의 신작(申綽)의 학문적 자극이 많이 작용하였다

정약용은 기호남인계 실학자로서 유형원, 이익의 제도개혁론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북학파의 학문도 흡수했으며, 경학에서는 윤휴(尹鑴)의 반주자적 경학을 성호의 제자인 권철신(權哲身)을 통해 계승했다 이런 경학적 태도는 천주학 수용의 기반이 되고 천주학은 다시 정약용이 인격적 상제관(上帝觀)을 갖도록 하였다 또 정조에 의한 조정에서의 유교 경전 연구도 새로운 경학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이 새로운 경학은 정약용의 개혁사상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

이후 정약용의 개혁사상은 직접 정부에서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나 이후 다양한 계층의 사람에게 여러 각도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목민심서』는 매우 많이 필사되어 조선 후기 관리, 목민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으며 고종 때에 이르러 국왕에게 『여유당집』 전체를 필사하여 올린 일도 있다 또 정약용의 저작은 전봉준 등에게 일정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며 위정척사파의 이항로(李恒老)도 『경세유표』의 정전제 개혁론에 영향을 받았다 애국계몽운동기에 이르러서는 『목민심서』 등 정약용의 저작이 간행되어 계몽운동에 자극을 주었다. 또 일제시기 1930년대에는 조선학운동의 핵심적 주제가 되었다

『여유당전서』 가운데 수원과 관련된 것으로는 시문집에 실린 「자찬묘지명」, 「성설(城說)」, 「옹성도설(甕城圖說)」, 「포루도설(砲樓圖說)」, 「현안도설(懸眼圖說)」, 「누조도설(漏槽圖說)」, 「기중도설(起重圖說)」 등이 있다. 「자찬묘지명」에는 집중본과 광중본이 있는데 내용은 대체로 같으나 전자는 상세하고 후자는 간략하다 「자찬묘지명」에는 수원 화성 축조와 관련된 정약용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자찬묘지명」(집중본)에 의하면 정약용은 1792년(정조 17) 겨울 수원에 성을 쌓은 것으로 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1794년 시작되지만 이미 1792년 겨울 준비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792년 4월 정약용은 부친 정재원의 복상 중이라 관직에 물러나 이해 겨울에는 고향 마재에 있었다 「자찬묘지명」에 의하면 이 때 정조는 정약용이 이전에 주교사에서 계획을 잘 세워 성공한 경험을 알고 불러서 그로 하여금 집에서 성(城)의 제도에 대하여 조목조목 계획을 세워 올리도록 하였으며 정약용은 이에 윤경(尹畊) 및 유성룡(柳成龍)의 성(城)에 대한 설에서 그 장점을 채택하여 성의 제도에 대해 보고하였다 또 이어서 정조가 『도서집성(圖書集成)』과 『기기도설(奇器

圖說)』을 내려주어 인중기, 기중기의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여 이에 기중기에 대한 도설(圖說)을 올려 사용케 함으로 써 성역이 끝난 뒤 비용을 4만전이나 절약하게 되었다는 칭찬을 정조가 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성설」, 「옹성도설」, 「포루도설」, 「현안도설」, 「누조도설」, 「기중도설」 등은 1792년 겨울 무렵 정조의 명을 받고 화성 축조와 관련하여 지은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성설」은 화성 축조와 관련하여 성곽 축조의 기본 방향을 논한 것이다 정약용의 이 「성설」은 정조의 『홍재전서』에 실린 「성화주략(城華籌略)」과 내용이 같다 이것은 정조가 정약용의 건의를 그대로 화성 축조의 기본 방침으로 하였음을 의미한다

정약용은 「성설」의 서두에서 성역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기본 강령을 분수(分數), 재료(材料), 호참(壕塹 참호), 축기(築基), 벌석(伐石), 치도(治道), 조거(造車), 성제(城制)의 8조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어 각 항목에 대하여 조목조목 설명하였다 분수에서는 전체 성의 길이를 3,600보, 높이를 2장 5척으로 정하고 이에 의거해 석재 및 기타 비용을 산출하도록 전체적인 예산을 세웠다 재료에서는 벽돌성과 토성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벽돌성은 우리나라에서 벽돌을 굽는 능력이 모자라고 또 연료를 구하기 어렵고 토성은 붕괴되기가 쉽다고 하여 일단 석성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다만 화성 축조의 실제 작업에서는 부분적으로 벽돌이 사용되었다

호참에서는 방어하기에 좋도록 성의 바깥에 참호를 파고 또 그 흙을 성의 축조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성 주변에 해자(垓字)를 두르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 이래 전통적으로 해 오던 방법이다 다만 참호를 너무 성 가까이 파지 말도록 하였다 성의 기반을 약하게 하여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축기에서는 성곽의 기초를 튼튼히 하여 무너지는 않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벌석에서는 석재 채취에서 미리 대소의 규격을 정해 큰 것을 수레 하나에, 그 다음은 두 개를 수레 하나에 실을 수 있는 식으로 하여 제1보의 길이를 축성하는데 드는 적재 수레 수를 미리 산출하여 비용에 낭비가 없도록 하였다 운반에 수레를 사용하도록 한 것도 특색이다 치도에서는 수레를 사용하기 위한 치도의 필요성을 말하고 채석장에서 성곽을 축조하는 곳까지 길을 닦도록 하였다

조거는 수레 제작 방법을 말한 것으로 그림을 붙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성제에서는 성곽이 쉽게 붕괴하는 이유는 그 배가 부르는 것이라 하고 성의 아래 3분의 2까지는 점차 폭의 비율을 줄여가는 방법을 주장하였다

다음 「옹성도설」에서는 옹성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옹성을 둘러 성문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즉 문의 문루는 화공을 당하기 쉽고 관문은 방어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이

다 「포루도설」에서는 대포의 배치를 논하였다 화성은 거주지 중심의 방어 전략에 입각해 건설되는 일종의 평지성이다 따라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화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고려하여 정밀한 포대 구상이 이루어졌다 포루는 전부 7개를 설치하여 북문 좌우에 각 하나, 남문 좌우에 각 하나, 장대(將臺)의 남쪽에 둘, 서문의 남쪽에 하나를 두도록 하였다 포루도설에서는 포루 외에 적루(敵樓), 적대(敵臺), 포루(舖樓), 노대(弩臺)의 설치도 아울러 논하였다 「현안도설」은 적을 관찰할 수 있는 부성(附城)인 현안(懸眼)에 대해 논한 것이다 「포루도설」과 더불어 정약용이 화성 축조에서 군사적 방어에 매우 신경을 썼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이다

「누조도설」에서는 적이 성문을 불태우는데 대비하기 위해 누조(일종의 방화용 물저장통)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기중도설」은 화성 축조에 사용된 기중기에 대한 설계도 및 그 해설이다 설계도는 기중기의 각 부분 하나하나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이밖에 정약용의 『경세유표』에는 서울 지역의 새로운 도시 계획안으로서 「장인영국도(匠人營國圖)」가 있는데, 이 계획안은 화성 신도시 건설에서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장인영국도」에서는 전문 점포의 개설, 수공업 전문 단지의 형성 등이 계획되고 있다 실제로 수원에서는 상업 진흥을 위해 당시 새로이 성장하고 있던 상인 계층을 끌어들이는 일을 행하였다 이것은 조선 후기 상업 발전의 결과이며 또 상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 정조는 사도세자 묘소를 옮기기 전부터 이전부터 화성 성역 기간에 걸쳐 나무 심기 등 조경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에 대하여 정약용으로 하여금 『식목연표(植木年表)』라는 책을 정리하게 하였다 이에 대한 발문 「발식목연표(跋植木年表)」가 『여유당전서』 시문집에 실려 있다

11) 『읍혈록(泣血錄)』

『읍혈록』은 혜경궁 홍씨가 지은 것으로 국한문 혼용체의 친필본으로 미국 버클리 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한괘지(韓罫紙) 위에 쓴 내제(內題)가 「보장일(寶藏一)」로 된 것이 혜경궁 홍씨가 회갑년에 친가 장질 홍수영(洪守榮)의 간청으로 친이 지은 유일하게 현존하는 전본(典本)이다 총 128쪽이며, 한 쪽은 10줄이고, 한 줄은 모든 책이 16자 체제로 되어있다 그리고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이 한문 혼용체본을 풀어서 친히 지은 것으로 보이는 국문본 『읍혈록』 3책이 국립중앙도서관에 현존하고 있다

1802년(순조 2 임술)에 쓴 『읍혈록』과 1806년(순조 6 병인)에 쓴 병인추록(丙寅追錄)은 친가인 홍봉한의 종가 8대 후손인 홍기영(洪起英)이 보존하고 있으며, 순조에게 보이기 위하여 쓴 동일본(同一本)의 한문으로 된 읍혈록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혜경궁의 친정 종가에 보존중인 원전은 2책, 10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표지의 장정은 한지에다 어두운 남색 세마포(細麻布)를 배접하여 성책(成冊)되었으며, 오래된 탓으로 세마포는 거의 부스러지고 곳곳에 배접하였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다 책 표지 좌상단에 주제 명칭을 쓰려고 성책할 때 붙여 놓았던 표제지가 있으며, 표제지에는 제목이 없는 상태 그대로이다 원전은 조금도 훼손된 곳이 없이 원형이 완전하게 보존되고 있다 원전의 크기는 세로 27㎝, 가로 17.5㎝, 2책의 총쪽수는 280쪽으로 한쪽은 9줄[行]로 되어 있으며 한 줄의 글자 수는 28에서 32로 평균 자수가 27자이다

왕과 왕족의 존호 위에 한 자씩 띄어 써서 지존을 받드는 관행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단아한 필체가 더욱 돋보이고 지질(紙質)은 당시에 사용되었던 한지임이 실증되고 있다 혜경궁 홍씨가 친히 지은 원전의 이름은 『읍혈록』이다 혜경궁은 네 번에 걸쳐 쓴 기록마다 목적을 뚜렷이 밝히고 있는데, 1795년(정조 19) 61세 회갑 때 쓴 것은 장질 홍수영의 간청에 의한 것이고, 1802년(순조 2) 68세에 쓴 것은 그 동안의 쌓인 원한을 순조에게 알려 사후라도 원한을 씻으려 한 것이 주목적이라 하였다 1805년(순조 5) 71세에 쓴 「사도세자 편」은 가순궁(嘉順宮)도 자손에게 알리는 것이 옳다고 함으로 쓴 것이며, 주상이 보고난 후에는 세초(洗草)할 것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1806년(순조 6) 72세 때의 「병인추록」에는 "내 임술년(순조 2년) 간에 쓴 기록이 자세하나 혹 미진한 부분도 있어 쓴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이 혜경궁 홍씨의 읍혈록이고, 한중록은 친가에서 쓴 한문본이라는 사실을 밝혀 두고자 한다

명칭에 대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피를 울어 이리 기록하나 차마 쓰지 못할 마디는 뺀 것이 많고 · "라고 기록한 본문의 내용을 보아도 원전의 명칭이 읍혈록임을 알 수가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정조대왕의 남다른 효심과 학문을 칭송하였으며, 영조의 처사가 실덕(失德)함이 있다고도 표현했으나 이것은 주위 신하들의 압박으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파(時派)·벽파(僻派)의 싸움으로 인한 당쟁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영조가 탕평책을 쓴 이후 시파·벽파의 당쟁관계를 기술하였다 또 사도세자와 정조를 도운 화평옹주·화완옹주 등에 관해 기록하고, 수원능행이 화완옹주의 주선임을 밝히고 있다

12) 『정조윤음(正祖綸音)』

이 책은 조선 제22대 국왕 정조(1752~1800 재위는 1776~1800)의 윤음(綸音)이다 윤음은 국왕의 말을 의미하는데 일상적인 말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진 공식적 명령 또는 지시의 성격을 띤다 정조는 정치와 관련해 윤음을 반포했는데, 그것을 모아 놓은 것이 정조윤음이다 이것은 『홍재전서』 권26~29에 수록되어 있다

우선 권26에는 즉조일윤음(卽阼日綸音 즉위한 날의 윤음) 등 18편이 실려 있으며 권27에는 「명편국조보감윤음(命編國朝寶鑑綸音)」(부 「편장사실(編藏事實)」), 「기전호서민인위유윤음(畿甸湖西民人慰諭綸音)」(2수 임인), 「선대왕세실윤음(先大王世室綸音)」, 「설진제도사탕수별진자윤음(設賑諸道賜帑需別賑資綸音)」(5수 부), 「기호갑진별유(畿湖甲辰別諭)」(계묘), 「영종대왕정성왕후추상존호왕대비전가상존호수의윤음(英宗大王貞聖王后追上尊號王大妃殿加上尊號收議綸音)」(갑진), 「포록무신공신충신윤음(褒錄戊申功臣忠臣綸音)」(무신) 등 11편이 실려 있다

권28에는 「유수원민윤음(諭水原民綸音)」(기유), 「급복수원신치민호윤음(給復水原新治民戶綸音)」, 「원자정호진하일유중외윤음(元子定號陳賀日諭中外綸音)」, 「유도하민식윤음(諭都下民食綸音)」, 「승수원부위거류분사윤음(陞水原府爲居留分司綸音)」(계축), 「유화성성역동공제신윤음(諭華城城役董工諸臣綸音)」, 「화성진찬일유중외윤음(華城進饌日諭中外綸音)」 등 22편이 실려 있는데 수원과 관련된 것이 많다

권29에는 「양노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도향음의식향약조례윤음(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鄕飮儀式鄕約條例綸音)」, 「평음후유약승배성전윤음(平陰候有若陞配聖殿綸音)」, 「화성조적지곡제모개칭정리곡잉축만년제윤음(華城糶糴之穀除耗改稱整理穀仍築萬年堤綸音)」, 「화성부대파교맥윤음(華城府代播蕎麥綸音)」, 「장용외영군제통변윤음(壯勇外營軍制通變綸音)」, 「장용외영속읍첨정무득요민윤음(壯勇外營屬邑簽丁毋得撓民綸音)」, 「책저일윤음(冊儲日綸音)」 등 18편이 있는데 수원에 관련된 것이 많다

위의 정조 윤음에 수록된 여러 윤음 가운데 수원과 관련된 것은 권28의 「유수원민윤음」, 「급복수원신치민호윤음」, 「승수원부위거류분사윤음」, 「유화성성역동공제신윤음」, 「화성진찬일유중외윤음」(부 「원행사실(園幸事實)」) 및 권29의 「화성조적지곡제모개칭정리곡잉축만년제윤음」, 「화성부대파교맥윤음」, 「장용외영군제통변윤음」, 「장용외영속읍첨정무득요민윤음」 등이다

「유수원민윤음」은 수원 화산으로 사도세자의 묘소를 옮기게 되는 것을 계기로 수원민을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것과 현륭원 주변의 민에게 10년간 복호(復戶)하

며 환곡을 탕감하는 등 조세 감면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급복수원신치민호윤음」은 새 수원부로 이주된 민에게 조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이며, 「승수원부위거류분사윤음」은 수원을 유수부로 승격한다는 내용이다 「유화성성역동공제신윤음」은 화성 성역에 참여하는 여러 신하에게 내리는 특별 유시이다 「화성진찬일유중외윤음」은 수원에서 노인들을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면서 영의정 홍낙성(洪樂性) 이하 나이 70세 이상의 노인 및 61세 노인에게까지 각기 비단 1필을 주고 이 잔치에 참여한 수원부의 노인들에게 각기 일자(一資)를 더해준다는 내용이며 여기에는 정조가 수원 현륭원으로 원행(園幸)한 사실이 상세히 부록으로 붙어 있다

「화성조적지곡제모개칭정리곡잉축만년제윤음」은 화성의 환곡에서 이자를 탕감하고 이름을 정리곡으로 고쳐 만년제를 축조하는 데 쓴다는 내용이다 정조는 화성 축조와 더불어 인근에 만년제 등 여러 제방(저수지)을 축조하여 농업 진흥에 힘썼다 화성 축조는 단순히 성곽만을 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생산 기반이 아울러 조성되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농업 진흥책이며 이리하여 화성 축조와 더불어 여러 제방을 축조하면서 조선 후기에 새로이 발전된 선진 농업 기술, 농법, 농업 경영이 도입되었다

「화성부대파교맥윤음」은 수원에 흉년이 들었을 때 교맥을 대파하라는 지시로서 정조는 이 정도까지 수원에 대하여 배려하였다 「장용외영군제통변윤음」은 수원 화성 축조와 더불어 수원에 설치된 장용외영의 군제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장용외영은 장용영의 특별 파견 부대이다 조선 후기의 군제는 오군영체제인데 이것은 당시 집권층인 노론층에 의해 전통적으로 장악되어 왔다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장용영을 설치하였는데, 여기에 소속된 특별 부대를 수원에 파견하였다 수원을 정조가 군사적으로도 자신의 세력 기반으로 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용외영속읍첨정무득요민윤음」은 장용외영에 군사 충원 기반이 되는 여러 속읍에서 군사 충원을 할 때 민에게 폐단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이다 정조는 수원을 자신의 세력 기반으로 하면서 군대 양성, 성곽 축조 등이 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모든 문제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한편 1978년 태학사에서 영인된 『홍재전서』는 1801년 제2차 편집된 『홍재전서』를 대본으로 하였으나, 1799년에 제1차 편집된 『홍재전서』 가운데 남아 있는 필사본(당시 장서각 소장, 현재 정신문화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음)과 대조하여 제2차 편집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유편으로 말미에 실었다 이 보유편 가운데에도 정조윤음이 들어 있으나 특별히 수원과 관련된 부분은 눈에 뜨이지 않는다

13) 『정조초고(正祖草稿)』

이 책은 정조의 초고를 모은 것으로 4글자로 된 운(韻)이 없는 글과 논(論), 시(詩) 등이 실려 있는 것으로 규장각 소장의 필사본 도서로서 현존한다 여기에는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 정확한 서지 사항은 알기 어렵다 책의 겉 표지에 '사집(私集)'이라고 씌어 있으나 규장각 한국본 도서목록에는 제목이 '정조초고'라고 되어 있다 정조가 동궁이었던 시절인 1764년 쓴 초고본으로 여겨진다 5책으로 되어 있다 각 책 별로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책 사자무운문(四字無韻文 4글자로 된 운(韻)이 없는 글) 97편이다 공자(孔子) 및 그의 제자 안자(顔子)와 증자(曾子) 그리고 자사(子思), 맹자(孟子)를 찬양하는 글(각기 「대성지성문선왕(大聖至聖文宣王)」, 「복성공(復聖公)」, 「종성공(宗聖公)」, 「술성공(述聖公)」, 「아성공(亞聖公)」) 및 한고조(漢高祖) 이하 중국 역대 임금의 역사적 사실을 평가한 글이 있다 유교의 성인(聖人)에 대한 동궁 시절 정조의 견해 및 역사 인식을 알 수 있게 하여 주는 글이다

제2책 사자무운문 48편이다 이 가운데 「궁경남양(躬耕南陽)」, 「불수간의(不受諫議)」, 「원종적송자(願從赤松子)」, 「간축객(諫逐客)」, 「욕보한구(欲報韓仇)」, 「남인불복반(南人不復反)」, 「부도오강(不渡烏江)」, 「부형사상여(負荊謝相如)」, 「추도단고(抽刀斷鼓)」, 「문소하병(問蕭何病)」 등은 중국 역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 글이다 정조의 동궁 시절의 역사 인식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글들이다 이 밖에 「소상대양왕(沼上對梁王)」, 「서민자래(庶民子來)」, 「문왕지유민이위소(文王之囿民以爲小)」, 「무우불여기(毋友不如己)」, 「회사후소(繪事後素)」 등은 『논어』와 『맹자』의 구절에 대하여 4글자로 평가한 글이다 동궁 시절 정조의 『논어』와 『맹자』에 대한 견해를 알 수 있게 하는 글이다

제3책 사자무운문 53편이다. 「왕무죄세(王無罪歲)」, 「이인위미(里仁爲美)」, 「형자처남궁(兄子妻南宮)」, 「문왕시민여상(文王視民如傷)」 등은 『논어』와 『맹자』의 구절에 대하여 평한 글이다 역시 정조의 동궁 시절 『논어』와 『맹자』에 대한 견해를 알 수 있게 하여 주는 글이다

제4책 사자무운문 40편이다 이 가운데 「소자명고공(小子鳴鼓攻)」, 「달칙겸선천하(達則兼善天下)」, 「적자대열(弔子大悅)」 등은 『논어』, 『맹자』의 구절에 대하여 평한 글이다 이것 역시 정조의 동궁 시절 『논어』와 『맹자』에 대한 견해를 잘 알 수 있게 하여 주는 글이다 이밖에 논(論) 5편이 실려 있다 「한소열삼고초려론(漢昭烈三顧草廬論)」, 「진시황축장성론(秦始皇築長城論)」, 「한무제구신선론(漢武帝求神仙論)」, 「장침

대피론(長枕大被論)」, 「분주옥금수어전전론(焚珠玉錦繡於殿前論)」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중국 역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론으로 정조의 동궁 시절의 역사 인식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글들이다

제5책 앞에 논 4편, 소(疏) 5편, 제문(祭文) 1편이 실려 있다 「불식안진경하상론(不識顔眞卿何狀論)」, 「회수살차전사옹론(會須殺此田舍翁論)」 등의 논은 중국 역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이며 소 가운데에는 「친제청진연소(親製請進宴疏)」가 들어 있다. 이밖에 또 「납우대록열풍뢰우불미론(納于大麓烈風雷雨不迷論)」 등 논 6편, 「증부원군(贈府院君)」, 「증금성위(贈錦城尉)」 등 식희시(識喜詩) 7수가 실려 있다.

이 책 『정조초고』에는 특별히 수원과 관련된 자료는 없다 그러나 수원 화성을 축조한 정조 사상의 형성 배경을 동궁 시절부터 추적하게 하는데 좋은 자료이다 『정조초고』의 내용은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에 모두 실려 있기는 하지만, 이 규장각 소장의 『정조초고』는 원래의 모습대로 알 수 있게 하여 주는 자료이다 정조의 동궁일기와 더불어 상호 보완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4) 『천일록(千一錄)』

서울대 중앙도서관 규장각도서 상백문고(想白文庫) 속에 소장된 연기미상(年紀未詳)의 『천일록(千一錄)』 권10은 18세기 말 수원부 호매절 어량천면(好梅折 於良川面) 외촌 출신의 실학자 취석실(醉石室) 우하영(禹夏永 · 1741~1812)의 저작이다(「상백(想白)」 古951 053-C421-VOL 1~10 : 규장각도서 No. 349560~349569) 그 규모는 가로 32㎝×세로 21.8㎝의 크기이다 그 제명(題名)은 「천 가지 의견 가운데 하나 정도는 혹 쓸 만한 것(千慮之或有一得)」이라는 뜻에서 『천일록』이라 썼음을 저작자 자신이 스스로 밝히고 있다 본래 이 저작은 권11의 편목 「정도(定都)」, 「각도총록(各道總錄)」까지 합쳐 모두 11권으로 편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상백문고 속에 소장된 『천일록』 11권은 실전(失傳)되어 그 내용은 미상(未詳)이다

우하영의 친필 필사본으로 알려진 이 전작집 체제의 『천일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권1…① 건도(建都) ② 부 산천풍토관액(附山川風土關扼) ③ 치관(置官)
(2) 권2 · ① 전제(田制) ② 군제(軍制)
(3) 권3 ··① 관방(關防) ② 부 산천(附山川) · 산수총론(山水總論)
(4) 권4 ·① 관수만록(觀水漫錄) 상 · 하편

(5) 권5 · ① 과제(科制) ② 용인(用人) ③ 화속(化俗) ④ 진정(賑政 . 附錄 · 附耽羅賑策)

(6) 권6 ··① 곡부(穀簿) ② 균역(均役 參互經費) ③ 정전군부설(井田軍賦說) ④ 어장수세설(漁場收稅設) ⑤ 전화(錢貨 . 麗朝貨制 · 國朝貨制) ⑥ 주전이해설(鑄錢利害設) ⑦ 채은편부설(採銀便否說) ⑧ 채금편부설(採金便否說) ⑨ 조창변통설(漕倉變通說, 嶺南三漕倉) ⑩ 육진승도설(六鎭僧徒說) ⑪ 평시혁파의(平市革罷議) ⑫ 노방식목설(路榜植木說) ⑬ 금도설(禁盜說) ⑭ 신명법제설(申明法制說) ⑮ 양육인재설(養育人材說)

(7) 권7…① 염방(廉防) ② 보폐(譜弊) ③ 향폐(鄕弊) ④ 막폐(幕弊) ⑤ 영리폐(營吏弊) ⑥ 역속폐(驛屬弊) ⑦ 경향영읍군교폐(京鄕營邑軍校弊) ⑧ 삼폐(蔘弊) ⑨ 군목폐(軍木弊 附大同木) ⑩ 학교폐(學校弊) ⑪ 산지광점폐(山地廣占弊) ⑫ 노예(奴隷 東國古制 · 麗制 · 附名碩議)

(8) 권8 ·① 농가총람(農家摠覽)

(9) 권9…① 잡록(雜錄) 상 ② 잡록 하

(10) 권10 ·① 병진사월응지소(丙辰四月應旨疏) ② 갑자이월응지소(甲子二月應旨疏) ③ 어초문답(漁樵問答) ④ 취석실주인옹자서(醉石室主人翁自敍)

(11) 권11(失傳되어 내용은 未詳) ① 정도(定都) ② 각도총록(各道總錄)

현재 국내에 현존하는 우하영의 저작은 앞의 연기미상의 전작집인 『천일록』 권10(권11은 결락)과 역시 연기미상의 별책 『수원유생우하영경륜(水原儒生禹夏永經綸)』, 『관수만록(觀水漫錄)』 하 등 모두 3종이 있다 이들 저작들은 모두 한지(韓紙)에 모필로 씌어진 동일인 서체(書體)의 필사본으로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저작자 우하영의 친필고(親筆稿)일 가능성이 크다

필자가 검토한 바로는 규장각 소장본 『천일록』 권11은 18세기 말 정조 중엽에서 19세기 초 순조 초년에 걸쳐 대부분 집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1812년(순조 12) 10월 24일 우하영이 노환(老患)으로 별세한 후 약 200여년간 우씨가문 후손들에 의하여 보관되어 오다가 20세기초 일제식민지 당국자들에 의하여 이 저작물이 수거(收去)당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崔洪奎, 『우하영의 실학사상연구』, 일지사, 1995, 61~91쪽) 즉 1915~1918년을 전후해서 일제의 조선총독부 당국이 전국에 걸쳐 지방 행정기관까지 동원하여 고래(古來)의 조선전적(朝鮮典籍)들을 강제로 수거하던 시기에 후손들에 의하여 소장되어 오던 우하영의 『천일록』도 이때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심증은 조선총독부에서 1919년 3월에 간행된 『조선도서해제(朝鮮図書解題)』의 「정치류

(政治類)」 편에서 『천일록』 1책을, 「수록류(隨錄類)」 편에서는 『관수만록』 1책에 대한 해제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규장각 소장의 『천일록』 10권(11권은 결락)과 『관수만록』 1책에 표시된 도서번호 중 지난날 식민지시대의 조선총독부에서 분류된 번호와 소장인(所藏印)이 일치함을 볼 때 현재의 책이 소장하게 된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천일록』은 18세기 말 수원부 출신의 재야실학자 우하영이 전작체계로 집필한 그의 대표작이다 권1~권11(권11은 결락)의 내용은, 농업을 비롯하여 상공업·역사·지리·풍속·토지제도·환곡·군사제도·과거제도·관방·교통 등 조선 후기 봉건 왕조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저자의 경험주의적이고 백과전서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그 집필시기 또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천일록』의 중요 내용을 이루는 「농가총람(農家摠覽)」 57장이 대략 1779~1799년(정조 3~23)사이에 걸쳐서 집필되었고, 「관수만록」 또한 수원 신도시 건설과 화성 축성이 진행되던 정조 17~20년을 전후한 시기에 집필된 만큼, 각권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저작물들의 집필은 우하영의 나이가 중년으로 접어든 시기인 18세기 말 정조 중엽에서 19세기 초 순조 초엽에 걸쳐 집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작체계의 『천일록』은 각기 독립된 단행본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저작물들로 편제된 것이지만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때로는 제명만 달리할 뿐 그 내용이 상당부분 중복되는 점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의 초고(草稿)를 다듬어 별고(別稿)로서 그 내용을 보완하고, 체제를 정연하게 다듬으려 한 저작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별책 『수원유생우하영경륜』, 『관수만록』 하 참조)

『천일록』을 구성하는 각권의 저작물 가운데서 논리정연한 체제와 내용을 갖춘 대표적인 것은 권4 「관수만록」 상·하편과 권8의 「농가총람」, 그리고 별책의 단행본으로 전해오고 있는 『수원유생우하영경륜』과 『관수만록』으로서, 이 저작들 역시 광의의 『천일록』 체계에 편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권1 「건도 부산천풍토관액」, 권3 「관방 부산천·산수총론」은 전국 각지의 현장답사의 경험을 토대로 집필된 조선 후기 농업을 비롯한 산업의 지방적 특성, 그리고 국방문제를 중심으로 인문지리·산업지리·역사지리를 적절히 안배하여 서술한 특색있는 저술이다 또 권10의 「병진사월응지소」, 「갑자이월응지소」, 「어초문답」 등도 농업을 비롯한 후기 사회의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사회경제적 여러 문제를 초출(抄出)하여 요약함으로써 일정한 체계와 논리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밖의 권2의 「전제」, 「군제」, 권5의 「과제」 등도 분량은 단출하지만 역사적·현실적 관점에서 조선 후기 사회의 토지제도·군사제도·과거제도의 개혁 등 여러 문제에 직

접 접근한 뜻깊은 저술이다. 권6·7은 균역법·환곡·화폐·광업·수산업·신분제 문제와 사회적 부조리 등 그의 시대가 해결해야 할 사회경제적·행정적 개혁 문제를 다룬 글들이지만, 여러 논의를 총괄하는 저술 제명이 누락되어 있다 권1~권11의 대표작 가운데서 「관수만록」의 내용은 별도의 해제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권1 「건도 부산천풍토관액」과 권8 「농가총람」만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권1 「건도 부산천풍토관액」은 우하영의 국토에 대한 애정과 농업문제를 중심으로 한 지방적 특성과 관점이 잘 드러난 저술이다 이 저술은 『천일록』 가운데서 비교적 초기의 저작으로 추정되는데, 그 취급하고 있는 지역만 보아도 기전(畿甸 경기도)을 비롯하여 북관(北關 함경도)·서관(西關 평안도)·해서(海西 황해도)·호서(湖西 충청도)·영남(嶺南 경상도)·호남(湖南 전라도)·탐라(耽羅·제주도) 등 전국 8도와 관하의 각 지방을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시 세분하여 그 지역의 토성(土性)·교통·민속·농업·전답(田畓)·전용(田用 농기구)·분양(糞壤 비료)·생리(生利) 등의 조목을 중심으로 농법·농사기술·수리·토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저술은 농업 문제와 관련하여 전국 어느 지방에 관해서든지 서(序)·민속·농업·생리·결(結) 등을 요령있게 기술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에 따른 농업관행을 서술하였다 먼저 「서」에서는 토성의 비옥과 척박·절후(節候)의 조만(早晩)을 다루었고, 「민속」에서는 농업과 길쌈 등에 대한 부지런함과 게으름 여부, 그리고 「농업」항에서는 전답의 다과(多寡)와 파종법(播種法)·경전(耕田)·농기·제초(除草)·시비(施肥)·수리 문제 등을 다루었다 「생리」에서는 면(綿)·상(桑)·마(麻)·저(苧)·채(菜)·과(果)·남초(南草)·양봉(養蜂)·방직(紡織) 등 농곡(農穀) 이외에 상업적 작물과 각종 부업 문제를 취급했으며, 「결」에서는 앞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그 지역농민의 근만실적(勤慢實績)과 생활 태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 저작은 문헌적 연구와 관행의 답습으로 일관한 재래의 농서와는 달리, 실제로 경험과 관찰을 통한 조사자·연구자로서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농서와 다른 점이다

특히 이 저술은 각 지방의 논·밭의 농법, 곧 중대된 조선 후기 농업생산력과 연관되는 이앙법(移秧法)·견종법(畎種法)과 당시 경기지방의 나농(懶農)·광작(廣作)의 문제점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함께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 놓고 있다 우하영에 의하면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지방의 경우, 여주·이천·안성·죽산 등지의 토성이 비교적 비옥할 뿐 그 밖의 땅은 모두 수리(水利)가 불완전하고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이앙법 보급 이후 무조건 광작을 능사로 삼아 토지생산성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험주의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그 대책을 제안해 놓고 있다.

한편 권8 「농가총람」은 「관수만록」과 함께 『천일록』을 구성하는 주요 저작물의 하나

로서, 정농사상(精農思想)에 입각한 집약농법과 우하영의 경험주의적이고 선진적인 농학사상이 담긴 18세기 말의 대표적인 농서의 하나이다. 농학사적인 측면에서 이 책은 조선 전기의 『농사직설(農事直說)』을 비롯한 당시까지 편찬된 농사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통하여 조선 후기의 농학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한마디로 이 저작은 저작자의 해박한 농사지식·농업이론과 과학적인 농업기술, 그리고 농촌에서의 영농경험을 토대로 집필되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 책의 총론 부분에서 저작자는 중농적 무본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고금(古今)의 시후(時候)는 같지 않고, 농민들의 농사법이 또한 적지 않게 다른 까닭에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감히 고방(古方)을 수집, 겸하여 관견(管見)을 붙여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 일반과 농촌의 무본에 일조하기 위하여" 이 책을 저술했음을 겸손하게 밝히고 있다

「농가총람」은 농작방법에 있어서 근(勤 부지런함)·예(豫 농사준비)·비곡종(備穀種 씨앗준비)·변곡성(辨穀性 곡식의 특성 변별법)·상토의(相土宜 알맞은 땅 고르기)·점시후(占時候 시후 맞추기)·취분회(取糞灰 거름 장만)·치숙전토(治熟田土 땅다루기)·예저수원(豫貯水源 물가두기)·급시서확(及時鋤穫 제때에 김매고 수확하기)·주영금영이해설(注秧禁秧利害說 이앙과 부종(付種)의 이해 문제)·농업근나자설(農業勤懦說 농사에 부지런함과 게으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각 항마다 『농사직설』을 중심으로 전시대 농서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자신의 주견(主見)을 담은 「부관(附管)」 또는 「관견(管見)」을 붙여 본문보다 한 자 내려 서술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는 씨앗준비에 있어서 선종(選種)·저종(貯種)·종자 처리에 대하여 『농사직설』, 『농가집성(農歌集成)』, 그리고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山林經濟)』 등의 전·중기 농서보다 한층 구체적이고 발전된 견해를 밝혀 놓았다

저작자는 일찍부터 수원 농촌에서 논농사 13두락을 손수 경작할 만큼 소농(小農)·독농가(篤農家)로서의 산 체험, 그리고 답사와 문헌연구에서 얻어진 농사지식과 농업기술, 부지런한 인공(人功)을 바탕으로 힘써 경작한 결과 다른 농민보다 20여 석이나 더 수확할 수 있었다고 술회하였다 그는 노동력의 효과적인 투여와 농업기술을 토지상의 자연조건보다 우선시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는 정농(精農)문제와 함께 근농(勤農)의 역할을 우선시키는 그의 소농생산과 정농사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5)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영·정조 양대는 청조(淸朝)문화의 절정기인 건륭(乾隆)의 치세에 해당한다 그래서 밖으로 북학과 서학의 영향을 받고 안으로는 문예부흥의 기운이 싹터 많은 문인·학자의 배출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사조와 학풍을 대표하는 여러 석학 중에 아정 이덕무(雅亭 李德懋 1741~1793)가 있다 그는 박학다재하여 경사(經史)에서 기문이서(奇文異書)에 이르기까지 통달했고, 문장의 개성이 뚜렷하여 문명을 일세에 떨쳤다. 그러나 서출(庶出)이었으므로 크게 등용되지 못했다

정조 3년(1779)에 궐내에 규장각(奎章閣)을 설치하고, 준재를 뽑아 쓸 때 이덕무는 최초로 선발되어 유득공(柳得恭)·박제가(朴齊家)·서이수(徐理修)와 함께 검서관(檢書官)에 임명되니 세상에서 말하는 4검서관으로 그 이름을 떨쳤다 이를 계기로 이덕무는 궐내에 있는 기문진서(奇文珍書)를 마음대로 열람할 기회를 얻고, 저명인사들과 서로 학문을 연구함으로써 식견을 더욱 넓혔다

이와 같이 뛰어난 그의 재식(才識)으로 정조의 특별한 대우를 받아 여러 가지 편찬사업에 참여하였다 그의 문장은 고인의 본을 뜨지 않았으며 저속에도 흐르지 않는 기이하고 멋있는 풍으로 묘사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였다 시는 새로운 격조를 띠어 '사가(四家 박제가, 유득공, 이서구, 이덕무)'라 불렸으며, 서화도 역시 일가로서의 독특한 맛을 드러냈다 『청장관전서』는 이덕무의 저술을 망라한 시문집이다

이덕무가 돌아간지 3년만인 1796년(정조 20)에 평소 그의 재식을 알아주던 정조가 그의 죽음과 불우를 애석히 여겨 그의 아들 광규(光葵)를 역시 검서관으로 삼았다. 또 각신(閣臣)들에게 명하여 이덕무의 유고를 내탕금(內帑金 임금의 사적인 돈)으로 간행케 하였다 『아정유고(雅亭遺稿)』 8권이 그것으로 대개 그 내용이 『청장관전서』에 다시 나오고 있다

『청장관전서』는 아들 광규가 편집하였으며, 이완수(李畹秀)가 교정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편집 교정한 전서 외에도 서만보(徐晩輔)가 소집(所輯)한 전서도 있었던 모양이나 이 원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본 해제에서는 이덕무의 유저중 현재 접할 수 있는 서종(書種)에 대해서 간략히 풀이하려 한다

◉「영처시고(嬰處詩稿)」 권1~2
저자의 소년시대에 지은 시작들로 240여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영처문고(嬰處文稿)」 권3

서(序) 9편, 기(記) 13편으로 되어 있다 그 중 '기복건인황삼문답(記福建人黃森問答)'은 복건인 황삼 등 43인이 강진에 표박한 후 이들을 통하여 중국의 사정, 즉 명유(名儒), 경서·처첩·문장가 등을 알려고 하는 등 저자의 중국문물에 관한 관심의 일단을 엿 볼 수 있다

◉「영처문고」 권4

서·발(跋)·전·론·설·잠(箴)·송 등 40여 편이다 영처(嬰處)는 영아처자(嬰兒處子)의 뜻으로, 저자 자신이 자기 호(號)처럼 제명한 것이다

◉「영처잡고(嬰處雜稿)」 권5~6

권5는 4편으로 되어 있다 그 중의 '무인편(戊寅篇)'은 저자가 18세가 되기까지 독학을 하는 과정중에 틈틈히 읽은 경서 속에서 스스로 깨달은 바를 정사(淨寫)한 것이다 '쇄아(瑣雅)'는 고인의 저서 가운데서 순서없이 내용을 가려 뽑은 글이다 그가 섭렵한 저서는 『제자백가서(諸子百家書)』를 비롯, 중국의 사서(四書)·경서(經書), 우리나라 서적, 일본의 문장 등으로 그의 박식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매훈(妹訓)'은 저자의 성장한 두 여동생들에게 훈계하기 위해 16장으로 나누어 계(戒)한 내용이다

권6은 '관독일기(觀讀日記)' 1편으로 되어 있다 관독일기는 저자의 초기 생애의 일단과 사상의 경향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예기억(禮記臆)」 권7~8

『예기(禮記)』에 대한 연구서로써 편명(篇名)의 해설, 제가(諸家)의 주설(註說)내지 자의(字義)에 대하여 고증하고 비판한 것이다 권7은 17편으로 되어 있으며, 권8은 29편으로 짜여 있다

◉「아정유고(雅亭遺稿)」 권9~20

일명 「청장관고(靑莊館稿)」라고도 한다 이것은 시문(詩文)의 각체(各體)를 시범한 것으로 저자 자신이 선집한 것으로 그의 사후에 왕명에 의해 편집 간행된 『아정유고』와는 편차와 분량이 다른 것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장관전서』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는 『아정유고』의 내용이 상당 부분 수록되어 있다 아쉬운 것은 『청장관전서』에 수록된 「아정유고」는 현재 권13·14·17·18이 결본으로 되어 있다 점이다

권9~12는 시이다 권9에 80여수, 권10에 120여수, 권11에 110여수, 권12에 95수가 수록되어 있다 권15~16은 서(書)가 6편이다 권19~20도 서이며, 권20에 '용주사주련(龍珠寺柱聯)'이 있어 귀중한 사지(寺誌) 자료가 되고 있다

◉「편서잡고(編書雜稿)」 권21~24

사서(史書) 편찬에 관한 문자(文字)를 수록한 것으로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송사보전(宋史補傳)이다 정조가 일찍이 『송사(宋史)』의 두찬(杜撰 틀린 곳이 많은 저술)을 유감으로 여겨서 제신(諸臣)에게 글의 자구를 깎고 다듬고 잘 정리하도록 명하여 『송사전(宋史筌)』 40책을 만들게 하고, 그 보전(補傳 · 고려 · 요 · 금 · 몽고 등의 열전)을 이덕무에게 찬술케 한 것이다

권21은 6편이고, 권22는 2편으로 되어 있다 권23은 「송사전금열전(宋史筌金列傳)」 1편이며, 권24는 8편으로 되어 있으며, 역사관계 명찬(命撰)이 실려 있지 않고 정조의 명에 의해 찬한 저서 중 이덕무가 편찬한 저술에 관하여 범례(凡例) 및 논찬(論贊)을 수록한 것이다

◉ 「기년아람(紀年兒覽)」 권25~26

이덕무의 선배인 이만운(李萬運)이 편저한 것이나 찬자 자신이 그 편차와 내용의 미비한 바를 자인하여, 이덕무에게 위촉하여 대폭 보완케 한 것이니 공저(共著)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내용은 중국 및 우리나라의 상고로부터 편찬 당시에 이르기까지 역대 연호, 세차(世次)의 요강과 주군(州郡)의 이름, 일본 · 유구 등의 주군 명칭까지 부기한 것으로 특히 아동들을 위하여 일목요연하게 꾸민 것이다

◉ 「사소절(士小節)」 권27~31

권27 사전(士典) 1, 권28 사전 2, 권29 사전 3, 권30 부의(婦儀), 권31 동규(童規)로 되어 있다 즉 사전 · 부의 · 동규 등 여러 편으로 나누어 선비 · 부녀자 · 아동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예절과 수신(修身)에 관한 규범을 보인 것이다 이는 일종의 수신 교과서로서 단행본으로 유포 되었던 것이다

◉ 「청비록(淸脾錄)」 권32~35

규장각본에는 결본으로 되어있으나, 서울대에서 간행한 『청장관전서』에는 보유편으로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이덕무가 고려에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5~6백년간의 시인들의 시문을 중심으로 시품(詩品) · 시화(詩話) · 시인에 관하여 저자 나름대로의 평론을 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끝에는 중국과 일본인의 시가 약간 언급되어 있다

◉ 「뇌뢰락락서(磊磊落落書)」 권36~47

규장각본에는 권 36~41까지 결본이나, 서울대에서 간행한 『청장관전서』에는 보유편으로 수록되어 있다 내용은 명말(明末) · 청초(淸初) 교체기의 중국 인물지이다 특히 명나라 말기 유민(遺民)들의 전기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여러 인물에 관한 약전(略傳)을 적은 것이다 끝에는 찬자가 조사 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 문헌의 기사를 그대로 발취하여 일일이 인용서목(引用書目)을 주기(註記)하였다 그 중에는

조선에 귀화한 명나라 남자·여자들의 애화까지 수록하였다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권48~53

내용은 글자 그대로 저자 자신이 귀로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입으로 말한 바, 마음으로 생각한 바를 적은 것이라 하겠다 이덕무가 여러 가지 서적을 읽으면서 초출(抄出)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시문을 통하여 당시의 사회상·인물·활자·경전·신변잡기·재정·풍속·사찰 등에 관한 내용을 저자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18세기의 사회사 및 이덕무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이다

이 편이 작성된 연대는 내용을 통해 살펴보면 이덕무가 24세 되는 해인 1765년(영조 41)부터 다음 해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앙엽기(盎葉記)」권54~61

각종의 사실들에 대하여 이덕무 자신이 해설하거나 직접 자료를 인용하여 정리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일종의 소논문집(小論文集), 자료집 또는 소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중에는 흥미있고 참고할 만한 것이 많이 실려 있다

권별 목록을 살펴보면, 권54에 50편, 권55에 51편, 권56에 43편, 권57에 40편, 권58에 48편, 권59에 45편, 권60에 50편, 권61에 40편으로 되어 있다

◉「서해여언(西海旅言)」권62

이덕무가 28세 때에 황해도 장연의 조니진만호(助泥鎭萬戶)로 있는 종매부(從妹夫) 유씨(兪氏)에게 갔다가 돌아 온 기행일기이다

◉「윤회매십전(輪回梅十箋)」권62

이덕무는 윤회매를 설명하여 "벌이 화정(花精)을 채취하여 꿀을 빚고, 꿀은 밀〔蠟〕을 낳고 밀은 다시 매화가 된다"하였다 우리 민속에 종이와 밀과 털을 가지고 매(梅)의 화판(花瓣)·화예(花蘂)·화악(花萼) 등을 만들고 또 매화 가지를 동병(銅甁)·필통·자두(磁斗) 등 문방구에도 꽂아 완상용을 삼는데, 이에 관한 시를 적은 것이다

◉「산해경보(山海經補)」권62

이덕무 자신이 '섭구(囁嚅 귀는 셋, 눈은 둘, 입과 마음은 각각 하나라는 가칭(假稱) 벌레)'에 비유하자, 막역한 벗인 박미중(朴美仲 박지원의 자)이, 이 불가사의적인 벌레가 백제 서북 3백리에 있다 하고, 희해적(戱諧的)으로『산해경보』동황(東荒)을 간단히 지었는데 이덕무는 또 이에 대하여 곽박(郭璞 산해경을 주석한 진 나라 사람)의 이름을 빌어 의주(擬註)한 것이다

◉「열상방언(洌上方言)」권62

주로 경기지방의 속담(俗談)을 모아 놓은 것이다

◉「천애지기서(天涯知己書)」권63

홍대용(洪大容)이 막내 삼촌을 따라 연경(북경)에 가서 항주(杭州)의 명사인 엄성(嚴誠)·육비(陸飛)·반정균(潘庭筠) 3인과 필담한 내용과 그들로부터 받은 서독(書牘) 및 시문 등을 이덕무가 얻어보고 감탄을 하면서 그들의 서독과 필담 및 시문을 초록한 것이다 그 필담에 대해서는 이덕무 자신이 쓴 평론도 덧붙었다

◉「선귤당농소(蟬橘堂濃笑)」권63

이덕무 자신의 수필집, 수상록과 같은 것이다

◉「병정표(丙丁表)」권63

1636~1637년 병자·정축의 호란에 관한 사실을 정리하여 월·일에 따라 표시한 것인데, 병자 12월 9일 청군이 의주에 침입한 날로 시작하여 이듬해(정축) 2월 8일 두 왕자가 볼모〔人質〕로 청국에 간 것으로써 끝마쳤다

◉「청정국지(蜻蜓國志)」권 64~65

결본이다 그러나 박지원(朴趾源)의 형암행장(炯菴行狀)과 전간공작(前間恭作)의 『고선책보(古鮮冊譜)』 중 「청정국지조(蜻蜓國志條)」에 인용된 "금택씨(金澤氏) 장서목록"에 의하면 일본의 세계(世系)·씨성(氏姓)·직관(職官)·인물·예문·여지(輿地)·풍속·언어·물산 등을 적은 일본국지(日本國志)임을 알 수 있다 청정은 잠자리 유(類)의 날 짐승이니, 일본국의 지형이 잠자리와 비슷하다 하여 일본인이 그렇게 자칭하였다

◉「입연기(入燕記)」권66~67

1778년(정조 2) 3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이덕무가 부연사서장관(赴燕使書狀官) 심염조(沈念祖)의 수행원으로 연경에 가는 도중일기(道中日記)를 비롯하여 연경의 관광과 명인들과의 교유(交遊) 등을 적은 연행록(燕行錄)이다

◉「한죽당섭필(寒竹堂涉筆)」권68~69

이덕무가 경상도 함양군 사근역 찰방(沙斤驛察訪)으로 있을 때 경상도 주변지역을 견문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형식은 그 지역의 주요 인물이나 명승을 제목으로 하여 글을 쓰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날짜별로 기록한 기행문과는 다르다 편수는 권68에 24편, 권69에 37편으로 되어 있다

◉「부록(附錄)」권70~71

이덕무의 연보(年譜)로서 아들 광규가 편술한 것으로, 내용이 가장 자세하다

『청장관전서』는 이덕무의 다채로운 학식과 좋은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당대의 실학 중심의 학풍과 취향 가운데도 박학·계몽적인 사조의 흐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즉 이덕무의 생애와 사상뿐만 아니라 18세기 당시의 사회, 사상풍토, 국문학 연구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16) 『한중록(恨中錄)』

궁중문학으로 알려진 『한중록』은 그 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10여종의 필사본 이본(異本)이 학계에 소개되었다 그 명칭도 『한중록(恨中錄)』·『한중만록(閑中漫錄)』·『한중록(閑中錄)』·『한중록(閒中錄)』·『한중만록(閒中漫錄)』·『읍혈록(泣血錄)』 등으로 불리어졌으며, 작품을 통해서 궁중의 아어(雅語 바르고 좋은 말)와 문체(文體)·관습, 그리고 권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궁중비사(宮中祕史)를 알 수가 있었다 국문본도 사본에 따라 『한듕록』·『한듕만록』·『읍혈록』 등의 이칭(異稱)이 있다

혜경궁 홍씨의 친저(親著)로 알려진 『한중록』은 역사적인 인물의 글이라는 점에서, 또한 그가 비빈(妃嬪)이라는 사실에서 정계야화(政界夜話)로서 역사의 보조자료가 된다 특히 임오화변(壬午禍變)의 원인 및 흥봉한 일가에 대한 사관을 재정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실기문학이다 그리고 문장이 사실적이고 박진감이 있으며, 문체에서 옛 귀인들의 전아한 품위를 풍기고 경어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작자를 비롯하여 등장인물 가운데에서 전통사회의 규범적 여인상의 전형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중만록』은 혜경궁 홍씨의 친정-흥봉한 집-에서 손수 지은 것이다 분량은 2책이고, 내용의 전문은 한문으로 쓰여졌다고 한다 성책연대(成冊年代)는 『읍혈록』보다 앞서는 1791년(정조 15)을 전후한 홍낙신(洪樂信)·낙임(樂任)·낙윤(樂倫)형제가 생존하고 안정이 되어 주고총서(奏藁總敍)가 완성되는 시기로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추정이라고 본다

『한중만록』은 현재 그 내용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혜경궁 홍씨가 손수 지은 것이 아닌 친가본(親家本 친정 집 책)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중만록』이라는 그 제목에서 입증이 된다 즉, 한(閒 대신 간, 代也)·중(中 마음 중, 心也)으로 풀이되니, 혜경궁 홍씨의 마음을 대신하여 친가에서 기록하였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흔히 '한중'을 '한가한 가운데'로 평범하게 해석함으로써 그동안 친가본임을 확인하는데 지장이 있었던 것이다

『읍혈록』에서 작자는 집필 목적이 명확하고 작자 자신의 기록임을 밝히고 있다 즉, 61세 때에는 "질자(姪子 조카) 수영(守榮)이가 내 수적(手蹟 필적)을 받아", 68세 때에는 "가순궁(嘉順宮)께 맡겨 내 없는 후라도", 71세 때에는 "기록하여 주상을 뵈고 없이 하고자 하되", 72세 때의 병인추록(丙寅追錄)에는 "내 임술년간에 기록한 책이 있어"

등 『읍혈록』에서는 작자의 기록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반면 『한중만록』에 대해서는 "자세한 마디는 한중만록에 있으니"라고 상대적인 입장에서 책의 명칭까지 지적하고 언급한 것은 『한중만록』이 별도의 책이며 작자 자신의 기록이 아닌 친가본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통칭 『한중록』은 『읍혈록』을 중심으로 친가에서 지친(至親 부자, 형제 또는 근친 사이)들이 옮겨 쓴 것으로 보이며,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10여종의 이본들도 표제(表題)는 친가본의 제명(題名)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더욱이 "주상을 뵈고 없이하고자"하여 세초(洗草)되었으니, 처음부터 원전은 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자가 을축년(순조 5년 작자 71세)에 쓴 「사도세자 편」 이본에 자서(自序)의 간기(刊記)가 그대로 옮겨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읍혈록』의 전본임을 입증하고 있으나 표제만은 친가본 『한중만록』에서 빌려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본들의 기록이 각 본(本)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으며, 전후가 바뀌고 첨삭·가감되고 수정·윤색되었으며 오류와 어사(語辭)의 구사(構思 구상)방법도 다른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원전을 옮겨 쓰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여겨지고, 궁중본 『읍혈록』과 친가본 『한중록』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원전이 등장됨으로써 이본에 대한 제문제점은 해결되리라 본다

작품의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혜경궁은 자신의 출생부터 어릴 때의 추억, 9세 때 세자빈으로 간택된 이야기, 이듬해 입궁하여 이후 50년간의 궁중생활을 회고하고 있다 중도에 남편 사도세자의 비극에 대해서는 차마 말을 할 수 없다 하며 의식적으로 사건의 핵심을 회피한다 그 대신 자신의 외로운 모습과 장례 후 시아버지인 영조와 처음 만나는 극적인 장면의 이야기로 넘어간다 그리고 정적들의 모함으로 친정 아버지·삼촌·동생들이 화를 입게된 전말이 기록되어 있다 다음에 화성행궁에서 열린 자신의 회갑연에서 만난 지친들의 이야기로 끝난다.

17) 『홍재전서(弘齋全書)』

『홍재전서』는 정조의 시문(詩文)과 윤음, 교지 및 기타 편저를 망라한 문집이다. 전체 184권 100책이나 되는 거질(巨帙)이다 『홍재전서』의 편찬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차는 1799년(정조 23)에 편찬되었다. 『정조실록』 23년 12월 21일조에 의하면 이전에 규장각 직제학 서호수(徐浩修)가 주동이 되어 어제회수법(御製會粹法)을 제정하고 의례를 세우며 편차를 정해 이만수(李晩秀), 김조순(金祖淳), 이재수(李在秀)

등과 편찬을 진행하였으나, 겨우 수십편만을 교정하고 서호수가 사망했으므로 이 해에 이르러 서영보(徐榮輔)에게 계속 편찬하도록 명했으며 이에 서영보는 정대용(鄭大容), 심상규(沈象奎), 김근순(金近淳) 등과 더불어 작업, 완성하여 이때 상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다 이때 편찬된 것은 총 190권이다

제2차 편찬은 1801년(순조 원년)에 시작되어 12월에 일단 완료되었으며 이 편찬 작업은 제1차 편찬에 관여하였던 심상규가 주동이 되었다 여기에는 정조 23년 12월에서 그가 서거한 다음해 6월까지의 저술 및 「추서춘기(鄒書春記 맹자 연구)」, 「노론하전(魯論夏箋 논어 연구)」, 「증전추록(曾傳秋錄 중용 연구)」 등이 추가되었으며, 제1차 편찬의 내용 가운데 서(書), 논(論), 잠(箴), 송(頌) 등이 삭제되었다 제2차 편찬은 이후에도 다소 보완 작업을 계속하여 1814년(순조 14) 3월에 내각판(정리자판)으로 간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184권 100책의 『홍재전서』이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1~4는 「춘저록(春邸錄)」이다 이것은 정조의 동궁 시절 저작이다 이 가운데 권1은 시(詩) 108수, 권2는 시 88수, 권3은 「춘저록」 서 27편, 권4는 서인(序引) 4편, 기(記) 3편, 제문(祭文) 1편, 논 2편, 찬(贊) 3편, 잠 4편, 명(銘) 7편, 송 2편, 잡저(雜著) 1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권4에는 경학사상(經學思想)이 피력되어 있다

권5~7은 각기 시가 47, 67, 74수 수록되어 있으며, 권7에 부록으로 악장(樂章) 2편, 치사(致詞) 1편이 있다 권8~13은 서인이다 권8의 서인 19편은 문예에 관한 것이며 권9의 서인 19편은 운서(韻書), 전법(戰法), 군사 훈련, 강역에 대한 것이고, 권10~13의 서인 69편은 외조부 홍봉한(洪鳳漢)의 상주문(上奏文)에 정조의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권14는 기 7편, 권15는 비문(碑文) 24편, 권16은 지(誌) 1편, 권17은 행록(行錄) 1편, 권18은 행장(行狀) 1편이다 권19~25는 제문, 권26~29는 윤음(綸音), 권30~36은 교(敎), 권37은 돈유(敦諭), 권38은 유서(諭書), 권39~41은 봉서(封書), 권42~46은 비(批), 권47은 판(判), 권48은 책문(策問 과거 시험의 문제로 정조가 직접 출제한 것), 권53은 설(說)·찬·명, 권54~63은 잡저이다

권64~119는 경사강의(經史講義)이다 이것은 유학에 깊은 조예가 있는 정조가 경연관(經筵官) 등 신하들과 유교 경전를 강하면서 의문나는 점을 문답한 내용이다 이 가운데 권64~65는 『근사록(近思錄)』에 대한 문답, 권66은 「심경강의(心經講義)」, 권67~70은 「대학강의(大學講義)」, 권71~75는 「논어강의(論語講義)」, 권76~79는 「맹자강의(孟子講義)」, 권80~83은 「중용강의(中庸講義)」, 권84~92는 「시경강의(詩經講義)」, 권93~100은 「서경강의(書經講義)」, 권 101~105는 「역경강의(易經講義)」, 권106~109는 경서(經書) 전반에 걸친 의문점에 대한 문답, 권110~119는 강목(綱目)의 강의

및 관학(館學) 유생(儒生)들과 문답한 내용이다

권120~121은 「추서춘기(鄒書春記)」, 권122~125는 「노론하전(魯論夏箋)」, 권126은 「증전추록(曾傳秋錄)」이다 권127~128은 유의평례(類義評例)로서 신하들과 『대학유의(大學類義)』에 관해 토론한 것이다. 권129~134는 고식(古寔)으로 신하들과 『대학(大學)』, 『주자대전(朱子大全)』, 『국조고사(國朝故事)』에 수록된 내용에 관해 토론한 내용이다 권135~160은 「심리록(審理錄)」으로 전국 각지의 죄인들의 옥사에 관해 정조가 판결을 내린 것이다 권161~178은 「일득록(日得錄)」으로 정조의 어록이다 이 가운데 권161~165는 문체에 관한 문학편(文學篇), 권166~170은 임금, 군제 등 각종 정책에 관한 정사편(政事篇), 권171~173은 우리나라 및 중국의 역대 인물에 관한 인물편(人物篇), 권174~173은 우리나라 전반의 문물, 풍속, 제도 등에 대한 훈어편(訓語篇)이다 권179~184는 군서표기(群書標記)이다 정조 자신이 지은 서책과 신하들에게 명하여 찬한 서책의 내용 등을 해설한 일종의 해제집이다 이 1814년 간행본은 현재 규장각에 6부, 장서각 도서에 2부가 남아 있다

현재 정조의 저술로 장서각에 『홍재고(弘齋稿)』 4책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 3책은 정조 즉위년에서 3년 사이의 윤음·돈유·제문·비문·시책·비답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나머지 1책은 윤음집이다 이것은 제1차 편찬시 자료 수집을 위해 등사한 것으로 생각되며, 간행본 『홍재전서』에 실려 있지 않은 글이 많이 있다 또 장서각에는 29책 『홍재전서』, 35책의 『홍재전서』가 남아 있다 전자는 각 책마다 같은 종류의 글을 모아 등사한 것이다 이 역시 제1차 편찬시 자료 수집을 위해 분류해 놓은 것으로 생각되며 간행본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이 많다 35책 『홍재전서』는 편찬 형식을 완전히 갖추고 정서되어 있는 바 1799년 서영보가 제1차 편찬한 것의 낙질본로 생각된다 1978년 태학사에서는 1801년 제2차 편찬 때의 사본(장서각 도서)을 대본으로 하고 위의 장서각 『홍재고』 4책, 29책 『홍재전서』, 35책 『홍재전서』 중에서 1814년 간행본에 없는 것을 보유편으로 추록한 영인본을 간행하였다. 아울러 서울대학교에는 1801년 편찬된 사본의 초집 2권, 2집 61권 도합 38책이 남아 있다

『홍재전서』는 정조의 사상과 정책을 이해하고 당시의 사회경제와 정치 전반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여기에 나타난 정조의 경학사상을 통해 그의 사상적 토대를 이해할 수 있으며 여러 신하 및 유생들과의 문답으로써 당시 유학 사상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또 문체론 등에 드러난 문학사상을 통해서는 패관소설(稗官小說), 서학, 북학파의 문풍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고 전례(典禮), 부세(賦稅) 등 각종 정책에 대한 견해를 알 수 있다 후대의 영향 관계를 생각하면 강진 유배 시기 정약용의 경학 연구는 정조의 경사강의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서유구 등 다른 사람들에게

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홍재전서』에서 수원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홍재전서』 잡저 부분의 「천원사실(遷園事實)」(권57)에는 천하 명당 자리인 화산(花山)으로의 사도세자 묘소의 이전 및 그와 관련된 수원부의 팔달산 아래로의 이전에 대한 언급이 있다 정조의 부친인 사도세자는 영조의 세자이면서도 당시 집권층 노론과 갈등 관계에 있었고, 이에 따라 모함을 받게 되어 부왕인 영조의 명으로 비운의 죽음을 당하였다 이에 정조는 언제나 부친의 죽음에 대하여 절통한 심정을 갖고 있었다 사도세자 묘소의 이전은 부친의 설원(雪冤)을 위한 작업 가운데 하나였다 사도세자의 묘소는 원래 경기도 양주군 배봉산(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뒷산)에 있었으며 그 명칭이 영우원(永佑園)이었다 이 묘소를 1789년(정조 13) 천하의 명당 자리라는, 당시 수원부가 소재하던 화산에 옮기게 된 경과에 대하여 「천원사실(遷園事實)」에서 언급하였다 화산으로 옮긴 다음부터는 명칭을 현륭원(顯隆園)이라 하였다 당시까지 아직 사도세자는 임금으로 추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능(陵)'이라 하지 못하고 '원(園)'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어느 원보다 훌륭하게 시설을 꾸몄다

사도세자의 묘소에는 정조의 생모인 혜경궁 홍씨가 1816년(순조 16)에 합장되었다(서거는 전 해인 1815년) 정조의 생존시에는 사도세자의 추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1899년에 가서야 비로소 장조(莊祖)로 추존되고 혜경궁 홍씨는 경의왕후(敬懿王后)가 되었다 이에 따라 현륭원은 융릉(隆陵)으로 승격되었다 1800년(정조 24) 정조가 서거하자 처음에는 장지를 현륭원 동쪽으로 하였다가 1821년(순조 21) 정조 비 효의왕후(孝懿王后) 서거후 현륭원 서쪽에 이장하여 합장하였다 이 능(陵)을 건릉(健陵)이라 하는데 오늘날은 흔히 융릉과 합쳐 융건릉(隆健陵)이라고 한다 융건릉은 사적 제206호로서 현재의 행정구역 상으로는 수원이 아니라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안녕리에 있다

이밖에도 『홍재전서』에는 사도세자의 묘소 이전과 관련된 자료가 매우 많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능침인(陵寢引)」(권11), 「현륭원비(顯隆園碑)」(권15), 「현륭원지(顯隆園誌)」(권16) 등이 있다 능침인은 사도세자 묘소 이전의 의도, 당위성에 대한 언급이다 현륭원비는 사도세자 묘소를 이전하면서 쓴 비문이며 현륭원지는 그 지문(誌文)이다

한편 잡저 부분에는 「어제성화주략(御製城華籌略)」이 실려 있다. 이것은 1793년(정조 17) 정조가 화성 행차시에 팔달산에 올라가 내린 화성 건설에 대한 구체적 안이다 성화주략은 이에 앞서 1792년(정조 16년) 겨울 정약용이 정조의 어명을 받고 작성한 「성설(城說)」(『여유당전서』 시문집)에 토대한 것이다(『여유당전서』의 해제 부분

가운데 수원 관련 부분에서의 「성설」 관련 설명 참조) 정조의 독창적인 것은 아니지만 화성 축조의 기본 방침이라 할 수 있다 정조의 여러 시책은 자신의 독창적인 것이라기보다 측근 신료의 안을 채택하여 자기의 것으로 한 것이 많다 우리가 『홍재전서』 등 정조에 대한 자료를 다룰 때 이런 점들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성화주략은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에도 실려 있다

또 잡저 부분에는 「제성도전편(題城圖全篇)」이 실려 있는데, 이것은 화성을 축조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전국의 성지(城池)를 그려 올리게 하여 만든 『성도전편(城圖全篇)』에 대한 머리말이다 1794년(정조 18) 정조는 화성 축성을 위해 전국 팔도의 축성 경험을 참고할 수 있도록 팔도의 성지에 대하여 그림을 그려 올리게 하였다(정조 18년 1월 을미) 이 명령은 당시 제대로 그림을 올리지 못한 지방관은 문책을 당할 정도로 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전국 팔도에서 올라 온 성지의 그림을 궁중의 화원(畵員)들이 다시 그리고 정리하여 그림과 더불어 설명까지 갖춘 것이 바로 『성도전편』으로서 1795년 완성, 간행되었는데 이 책 머리에 정조가 「제성도전편」을 붙인 것이다.

정조는 축성과 관련하여 우리의 전통적 축성술과 당시 새로이 주장되던 북학파 등 실학자들의 축성술을 조화시키면서 새로운 우리 것을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창조해 가려 하였다 정조는 『홍재전서』 권168 「일득록」 정사편(서영보 계축록)에서 "중국의 축성은 벽돌을 많이 쓰고 우리나라는 돌을 사용한다……대개 들판에 있는 읍은 흙은 많지만 돌은 적으므로 벽돌을 쓰는 것이 유리하며 돌을 쓰는 것이 불리하다 바위가 많은 읍은 돌이 많고 흙이 적으므로 벽돌을 쓸 필요가 없다 일이란 지역에 따라 마땅함이 다르다"라고 하였다

『홍재전서』에 실린 「일득록」의 정사편에는 정조 22년 10월 수원에 장용외영의 설치와 관련된 언급이 있다(권167-170) 정조는 장용영 운영을 통해 충분한 곡식의 비축이 가능해 국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생각하였다 「일득록」 정사편 가운데 권167의 언급에 의하면 정조는 유성룡의 둔전론에 따라 병농일치제를 실시하여 수원 장용외영의 재정 자립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더욱이 「일득록」 정사편 가운데 권169에 의하면 정조는 조선 후기 모병제와 군포 장수로 유지되던 오군영제도를 바꾸어 조선 초기의 오위제로의 복구를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실학자 유형원의 발상과 유사한 것이다 화성의 위치 선정, 성의 축조 등은 유형원의 『반계수록』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장용외영 설치라는 군사제도의 면에서도 유형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정조의 장용영의 설치는 새로운 개혁이라기보다 먼저 시대의 제도(조선 초기의 오위제)로의 복구를 통한 경장(更張)

의 의도를 가진 것이다

정조가 군사제도를 경장하려 하였음은 「일득록」 정사 부분 가운데 권170(이시원(李始源) 무오록)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여기에서 정조는 "우리나라 균역법의 설치는 부득이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외방의 군현이 이로 인해 쇠퇴하므로 내가 본영(장용영)을 창설함에 재력을 모아 한번 경장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즉 장용영의 설치를 통해 균역법 등의 폐단 등 조세제도 모순의 시정만이 아니라 군사제도의 전면적 개혁까지 의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용영제도는 병농일치제이므로 장용영 방식의 군사제도 개혁은 조선 초기 오위제 방식으로의 복구가 될 것이다

아울러 『홍재전서』「일득록」 정사편에는 화성 건설의 의도에 관한 언급도 있다(권169, 김조순 병진록) 이것은 화성 성역이 사도세자의 묘소를 지키기 위해 지나치게 재정을 낭비하고 화려하게 되었다는 비판에 대하여 자신의 의도를 암시한 것으로 선대의 능침을 옹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장차 수십년이 지나면 저절로 사람들의 의문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즉 능침 보호보다는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의도를 흔히 수원으로의 천도(遷都)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수원을 자신의 왕권 강화의 세력 기반으로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양위한 후 상왕으로서 수원에서 정치를 배후 조정할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홍재전서』「일득록」의 훈어(訓語) 부분에는 사도세자 묘소의 이전과 관련된 자료(권175) 외에 상업진흥책(권176)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 상업진흥책과 관련하여 (「일득록」 훈어 이만수(李晩秀) 정사록, 권176) "화성으로 옮길 때 경외(京外) 유생으로서 가서 살기를 원하는 자는 전방을 하나씩 주었다 비단 읍의 거주지가 번성하기만을 운한 것이 아니라 교화의 뜻이 있었던 것이니 그 재주를 시험하고 과거를 설치하려고 한 것이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실학자들이 주장해 온 양반의 상업에의 종사를 수용한 것인 동시에 상업 종사자가 벼슬에 나아갈 수 있게 하려는 조처였다

농업진흥책과 관련된 자료는 「일득록」 정사편(남공철(南公轍), 계축록, 권168)에 실려 있다 정조는 여기서 "축성은 수로를 잘 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고 하였다 사실 수원 화성은 유천(柳川 현재 수원천)이 성내의 도심을 관통하도록 성곽 전체 설계의 일부로 조성되었으며 화성 축조와 더불어 팔달산에서 흘러내리는 여러 하천을 정비하고 저수지를 축조하였다 이런 여러 노력의 효과는 『홍재전서』를 통하여 엿볼 수 있다. 「일득록」 정사편(서용보, 무오록, 권170)에 의하면 만석거(萬石渠)라는 저수지를 축조함으로써 원래에는 황무지였던 대유둔 지역(현재 일왕 저수지 부근)을 옥토로 바꾸어 놓고 계속되는 가뭄 피해에서 벗어나게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만석거 외에 정조는 만년제(萬年堤)도 축조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가 『홍재전서』

권169, 「일득록」 정사편(서용보, 병진록)에 실려 있다 정조는 여기서 '이 제언(堤堰)을 쌓은 것은 1만경의 토지에 관개하여 척박한 토질을 비옥하게 할 뿐 아니라 10리에 달하는 도로를 굳건히 하여 지나는 사람들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조는 저수지를 농업 외에 휴식지로서 기능하게 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조는 수원에 만석거, 만년제(萬年堤) 외에 축만제(祝萬堤 현재의 서호)도 쌓고 주변에 둔전을 설치하였다(현재의 서둔동)

끝으로 『홍재전서』에 실린 정조의 윤음에도 수원과 관련된 자료가 많다 정조의 윤음에 대하여는 별도의 항목이 있으므로 따로이 정조의 윤음 항목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18) 『화성일기(華城日記)』

1795년(정조 19) 2월에 이희평(李羲平)이 지은 국문 기행일기이며, 필사본(筆寫本)으로 1책이다 『화성일기』는 이겸로(李謙魯)가 발굴하여 가지고 있던 것으로, 1947년 10월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조선어문학연구회가 주최한 도서 전시회에 특별 출품하여 전시됨으로써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그후 강한영(姜漢永)이 그 전문을 『현대문학』 지상에 연재하여 소개함으로써 학계에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다

1795년 1월 21일은 뒤주 안에 갇혀서 목숨을 스스로 끊어야만 했던 정조의 생부(生父) 사도세자의 회갑일이다 또 6월 18일은 정조의 생모(生母) 혜경궁 홍씨의 회갑일이었다 이런 관계로 정조는 1월 21일에 경모궁(景慕宮)에 친행(親行)하여 엄친(嚴親)의 위판(位板)에 재배하고, 장헌세자(莊獻世子)라는 존호를 바치었다 그리고 2월 9일에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성의 현륭원 능행길에 올라 15일에 환궁하였다

이때 일가친척들도 많이 동행하게 되었으므로 지은이 이희평도 형 희갑(羲甲)과 함께 따라가서 성대한 잔치구경을 하고 2월 17일에 귀경하여 『화성일기』라는 기행문을 지었다 지은이 스스로가 밝힌 바 저술동기는 "차마 싫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채이어 일필로 난초(亂草)하여 말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황잡(荒雜) 촉잡(促雜)하니 짐작하여보고 흉보지 말지니라"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보아 남의 뜻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읽히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 기행문은 대체로 가사체(歌辭體)의 글이 많았으나, 『화성일기』는 산문체(散文體)로 씌어졌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 서사적(敍事的)이다

이 일기는 일반적인 기행문의 일정·기후·토속·자연 풍광·고적·인물·사건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회포 등을 유감없이 모두 짜임새 있고 절도 있게 적어 놓았다 그리고 단백 간결한 필치로써 선비의 풍채와 태도를 사실과 같이 적어 놓은 점은 높이 평가할 글솜씨라 하겠다

『화성일기』의 중요내용은 이러하다

2월 9일 휘황한 한강 위의 배다리[舟橋], 배다리에서의 검문을 마치고 건널 때의 풍경, 화성에 이르러 장안문과 시가를 바라보며 느낀 인상으로 시작된다

2월 10일 비오는 날 북문 밖에 나아가 어가를 맞이하여 거둥 길의 위엄이 당당하신 임금님과 뒤따르신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모습을 보며 고개 숙여 엎드려 영접한다

2월 11일 낙남헌에서 문·무 알성과 과거를 보고, 그날로 방을 붙여 문·무과 장원이 거리를 도는 모습을 부럽게 뒤따라 바라보며, 남문·북문·행궁·화홍문·용두각을 관광하였다

2월 12일 현륭원 참배하시고 서장대에 오르시어 영의정 이하 문·무백관들의 군례(軍禮)를 받으시고, 수성훈련을 참관하시는 장엄한 모습을 사실적으로 적었다

2월 13일 잔치 구경하러 행궁에 들어가서 본 여러 가지 의장(儀仗), 잔치에 참여한 조신(朝臣)들의 알현, 대풍류(大風流) 광경, 정조의 한시(漢詩)와 그에 차운한 지은이의 한시, 밤의 풍악들이 잔치를 보는 듯이 적혀 있다

2월 14일 낙남헌 앞에 주상께서 나오시어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시고, 노인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푸는 모습과 저녁 불꽃놀이의 찬란한 광경을 적었다

2월 15일 상감이 서울로 환궁하실 때 화성유수가 전송하는데, 용주사의 승군 지휘관이 승군을 거느리고 전송하는 위엄있고 질서있는 행렬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행렬과 헤어진 지은이가 험한 산길을 밤에 가다가 큰 호랑이를 만나 절박하였던 순간을 실감나게 적으며, 밤길을 조심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

2월 16일 지은이가 전에 살던 마을에 들른 느낌을 썼다

2월 17일 서빙고 강을 건너 서울로 돌아온 뒤, 주위 사람들에 보채이어 단숨에 글을 쓰게 됐음을 밝히고 있다

현재 국문학계에 보고된 순국문 기행일기 중에서도 정조의 능행차에 동행하고 지은 작품으로는 유일한 것이다 이 작품과 비슷한 『수원릉행행가(水原陵幸行歌)』라는 가사가 있으나, 그 전모는 알 수 없고 일부분만이 전해지고 있다 『화성일기』 끝에 "한산이씨 후손 이희평 지음"이라고 그의 본관을 밝혀놓고 있다

19) 『화영일록(華營日錄)』

이 책은 풍석(楓石)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수원유수(水原留守)로 있었을 때의 일기이다 서유구는 그의 나이 73세 때 즉 1836년(헌종 2) 1월 11일에 수원유수에 임명되었다 1월 15일에 상소사직(上疏辭職)하였으나 불윤(不允)되어 1월 26일에 사조

(辭朝)하여 이튿날 수원부에 도임하였다. 서유구는 1837년(헌종 30) 12월 2일에 지경연(知經筵)에 임명되고, 12월 12일에 수원부를 떠나 상경하였다 이 일기는 병신년(丙申年, 1836) 1월 1일에서 시작되어 정유년(丁酉年, 1837) 12월 12일에 끝나고 있는 것으로, 2년에서 19일 모자라는 기간동안의 일기인 셈이다 따라서 이 일기의 내용은 수원유수로서의 행정일기이다

이 일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는 장계(狀啓), 전령(傳令), 감결(甘結), 전교(傳敎) 등이다 조정에 올린 장계에는 현륭원(顯隆園)·화령전(華寧殿)·건릉(健陵) 등의 분향(焚香)·제향(祭享) 봉번장계(奉審狀啓), 묘당(廟堂)에 품의차(稟議次) 상경한다는 장계, 품의를 마치고 도로 도임하였다는 장계, 실화사(失火事)를 보고하는 장계, 농형(農形)과 우담(雨潭)을 보고하는 장계, 포폄장계(褒貶狀啓), 연분장계(年分狀啓), 능원(陵園)에의 식목장계(植木狀啓), 기우제설행장계(祈雨祭設行狀啓), 문무과 과시(科試) 거행장계, 관문취점장계(官門聚點狀啓), 기타 수원부 행정관계의 장계 등이 있다

수원부유수로서 각면에 내린 전령·감결은 권농전령(勸農傳令), 우주송삼금전령(牛酒松三禁傳令) 등이다 묘당 품의차 상경해 있을 동안의 판관(判官)에의 「권칙농무감결(勸飭農務甘結)」도 있다 수원부에 내려온 윤음(綸音)·전교, 그리고 수원부 작성의 절목(節目)이 있고, 그날 그날의 행정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일기의 가장 큰 특징은, 농정학자로서의 서유구의 면목이, 그가 지방행정에서 특히 권농에 크게 힘을 기울이고 있는 사실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며, 따라서 향촌의 실태가 잘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일기의 기사 중에서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를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는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담장계와 농형장계가 자주 나오고 있어서, 수원부 그리고 수원부에 이웃한 지역의 전작(田作)·답작(畓作) 농업의 경작실상과 농법을 소상하게 알 수 있다

둘째, 우축모손(牛畜耗損)이 당시의 농업경영에 큰 폐해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셋째, 부세거납(賦稅拒納)이 반호(班戶)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넷째, 향촌에서의 부세등에 관계되는 행정과 권농행정의 일선업무는 풍헌(風憲)·권농관(勸農官) 등 면임(面任)과 이임(里任), 대민(大民), 두목(頭目), 두인(頭人) 등이 책임지고 있는 사실이다

다섯째, 당시 농촌에서는 빈호(貧戶)의 요호(饒戶)에의 용임(傭賃)노동으로서 전통적인 상부상조 관행을 조직·운영하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 자료는 19세기 중엽 향촌 현장에서의 사회경제 실태를 파악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제4장 관찬서(官撰書)

1) 『건릉지(健陵誌)』

건릉은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에 있는 정조와 효의왕후(孝懿王后) 김씨의 능으로 사적 제206호이다 원래는 생부인 장헌세자의 현륭원 동쪽 언덕에 있었던 것을, 순조 21년에 현 위치인 현륭원 서쪽 언덕으로 이장하며 효의왕후를 부장(祔葬)하였다 이장의 이유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 능은 정조와 왕후를 합부(合祔)한 동릉이실(同陵異室)이며, 병석(屛石)은 없이 난간만 두르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융릉(현륭원)의 예를 따랐다 그리하여 합부릉인데도 혼유석(魂遊石) 1좌만 놓았고 융릉과 같이 장명등(長明燈)을 세웠다 문무인석(文武人石)의 조각이 사실적이며 안정감이 있는 수작(秀作)으로 문인석(文人石)은 금관조복(金冠朝服)을 입히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19세기 능석물제도(陵石物制度)의 새로운 표본을 제시하였다

영(令) 1인과 참봉 1인을 두었는데, 1878년(고종 15)에 남정철(南廷哲 1840~1916)이 건침랑(健寢郎)에 제배되면서 편집한 능에 대한 기록이 건릉지이다 건릉에 대한 기록으로는 구지(舊誌)가 있었으나, 1873년(고종 10)에 재실의 화재로 선생제명록(先生題名錄) 등과 함께 소실되었다 그리하여 5년 뒤인 1878년에 남정철이 성균관 진사로서 건침랑에 제수되었고, 이 때에 능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비부(祕府)와 예조, 봉상시(奉常寺) 등에서 해당 고실(故實)과 전적 등을 참고하여 새로운 능지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책은 4권 4책으로 되어 있는데, 각 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권1 3편의 서문(김윤식, 윤치담, 남정철)이 있으며, 대략 건릉에는 구지가 있었으나 소실되고, 남치상(南稚祥 남정철의 자)이 건침랑에 제수되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던 문헌들을 모아 그의 동생과 벗을 동원하여 편집된 능지를 전사(傳寫)했다는 내용들이 적혀있다

「능원침내금양전도(陵園寢內禁養全圖)」를 비롯하여 모두 17종의 그림 중에 능도(陵圖)는 화소(火巢 금양구역) 안의 여러 산봉(山峰)의 이름과 촌락·교량·제방 등이 옛 지도형으로 그려져 있다 화소의 주회보수(周回步數)가 부록되어 있으며, 기타의 재각(齋閣) 및 기명(器皿)은 일반적인 도식에 불과하다 도식 가운데에 장명등, 문무인석 등

의 능석물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은 아쉽다

후미의 대사기(大事記)에는 정조가 승하한 날로부터 장례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절차와 정자각, 재실 등이 지어진 내력이 적혀 있다 순조의 능행 및 친제(親祭), 헌종의 능행 친제, 철종의 능행 친제, 고종의 능행 친제가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다

◉ 권2 판중추부사가 왕명으로 지어 올린 정조와 효의왕후 김씨의 선계(璿系)와, 김양택(金陽澤)이 지어 올린 봉왕세손책문(封王世孫冊文)·관례교명문(冠禮敎命文)과 영조 52년에 영조 어제인 유서(諭書)가 있다 이 밖에도 순조 5년에 대제학 이만수가 찬한 행장(行狀), 순조의 즉위년(卽位年 1800)에 병조판서 김조순이 제술관(製述官)으로서 지어 올린 시호옥책문(諡號玉冊文), 영의정 심환지가 지어 올린 애책문(哀冊文) 등이 기록되어 있다

◉ 권3 1762년(영조 38)에 영중추부사 정휘량(鄭翬良)이 찬한 봉왕세손빈교명문(封王世孫嬪敎命文), 김양택이 찬한 죽책문(竹冊文), 1778년(정조 2)에 황경원(黃景源)이 찬한 봉왕비교명문(封王妃敎命文), 김종수(金鍾秀) 찬의 옥책문(玉冊文), 상왕대비호옥책문(上王大妃號玉冊文), 상왕대비존호악장문(上王大妃尊號樂章文), 1823년(순조 23)에 평안도관찰사 김이교(金履喬)가 찬한 대행왕후김씨(大行王后金氏)의 행장, 구릉지문(舊陵誌文), 좌의정 남공철이 제술관으로서 찬진한 천봉지문(遷奉誌文), 정자각상량문(1800), 정자각상량문(1821), 계구릉고유문(啓舊陵告由文) 등이 기록되어 있다

후미에는 별지 1매가 부착되어 있는데 고종 23년에 겸장례 윤태홍(尹泰興)이 건릉을 살핀 후에 보고한 봉심적간(奉審摘奸)과 수리전조(修理錢條)의 주본으로써 조선시대의 능관리 일면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된다

◉ 권4 건릉 관리와 관계가 있는 전교(傳敎)와 능침제향 때의 폐단을 교정하는 조칙(朝飭), 순조 1년 이후로 헌종·철종·고종 7년(1870)에 이르기까지 건릉의 참봉, 능령(陵令) 등에 대한 상전(賞典), 부섭행헌례시홀기(附攝行獻禮時笏記), 제향시응행지규(祭享時應行之規), 화소금단절목(火巢禁斷節目), 제물단자(祭物單子), 식례잡기(式例雜記), 화소내소재위전답원역급수호군등분급량안(火巢內所在位田畓員役及守護軍等分給量案) 등이 수록되어 있다

2) 『건릉지장속편(健陵誌狀續編)』

1812년(순조 21) 효의왕후(孝懿王后) 김씨가 승하하자 현륭원 동쪽에 자리잡은 정조의 건릉을 영돈녕부사 김조순(金祖淳)의 상소에 따라 현륭원 오른편으로 옮기고 효의왕후를 합장한 사실과 효의왕후에 관한 행록(行錄)과 행장(行狀) 등을 수록한 책으로

편자와 간행년도는 알 수 없다 1책 44장의 고활자본(현종실록자)으로 규장각도서이다

정조에 관한 천릉지문(遷陵誌文)과 천릉표석음기(遷陵表石陰記) 그리고 효의왕후에 관한 행록, 행장, 지문(誌文), 봉왕세손빈교명문(封王世孫嬪敎命文), 죽책문(竹冊文), 봉왕비교명문(封王妃敎命文), 옥책문(玉冊文), 상왕대비호옥책문(上王大妃號玉冊文), 악장(樂章), 시책문(諡冊文), 애책문(哀冊文), 빈전친제문(殯殿親祭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3) 『국조보감(國朝寶鑑)』

서울대 규장각도서에 소장된 이 책은, 개주(改鑄) 갑인자(甲寅字)로 인쇄되었며, 모두 90권 28책으로 그 규모는 세로 36 4㎝×가로 23 5㎝의 크기이다 조선 전기 세조대의 신숙주(申叔舟)와 정조대의 서명응(徐命膺) 등의 「서(序)」와 정조대 김종수(金鍾秀)·권돈인(權敦仁) 등의 「발(跋)」이 붙어 있다

조선왕조 역대 임금의 사적(事績)을 기록한 편년체(編年體)의 관찬사서(官撰史書)로서 역대 왕의 치적 중에서 본보기가 될 만한 것을 실록(實錄)에 의해 채록·편집한 것이다 세종이 처음 편찬을 명한 이래 1457년(세조 3)에 수찬청(修撰廳)을 설치하고 이듬해 태조·태종·세종·문종 4대의 사조(四朝) 보감을 처음으로 완성했으며(7권 3책), 신숙주·권람(權擥) 등이 편찬을 주관하였다 그 후 숙종·영조·정조·헌종 때 편찬을 계속하여 순종 때에 이르러 총 90권으로 완성되었다 『국조보감』은 세조·영조·정조·헌종·순종 등 시기별로 각기 다른 분량으로 간행, 그 내용이 더해진 5종이 있다 그밖에 별편(別編)이 2종 있으며, 1782년(정조 6) 간행 때 정조어제로 된 서문을 별도로 성책(成冊)한 『국조보감서(國朝寶鑑序)』 1책이 있다 또 세조 때의 것은 같은 내용을 3종의 활자(甲寅字·丁酉字·訓鍊都監木活字)로 인간(印刊)했으므로, 『국조보감』에 관계되는 책은 모두 10종으로서 규장각도서로 보존되어 있다

이와 같이 역대에 걸쳐 이 책의 편찬이 꾸준히 이어진 것은 제왕감계(帝王鑑戒)에 그 편찬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유교적 왕도정치를 지향한 조선왕조에 있어서는 덕치(德治)·인정(仁政)을 지배자의 필수적 덕목(德目)으로 인식했고, 조종(祖宗)의 가모(嘉謨)·선정(善政)을 배우고 모범으로 삼는 것은 제왕지학(帝王之學)의 근본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취지 하에서 세종은 이 책의 본보기로 송사(宋史)의 예를 따를 것을 처음으로 명했는데, 송나라에서는 국사원(國史院)을 두어 정사실록(正史實錄)을 찬진(撰進)한 후, 별도로 조종의 업적 가운데에서 「굉모요정(宏謨要政)」을 추려 『보훈(寶訓)』을 편찬, 이를 강(講)하게 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선례가 『국조보감』 편찬에 모범이 되었다 또한 세종은 『국조보감』 외에도 『제왕명감(帝王明鑑)』·『후비명감(后妃

明鑑)』·『명황계감(明皇戒鑑)』 등을 계속 편수하여 왕실에서 보감으로 참고케 하였다

『국조보감』의 편찬을 주관한 관청은, 시대에 따라 각각 달랐다 즉 세조 때는 이 책의 편찬을 위하여 수찬청을 특설했으나, 숙종 때는 실록청(實錄廳)에 1당상(堂上)을 더했고, 영·정조 때는 찬집청(纂輯廳)이 이를 주관했으며, 순조 때는 규장각에서 편찬 업무를 담당하였다

현존하는 『국조보감』 5종류와 『국조보감별편』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457년(세조 3)에 태조·태종·세종·문종 등 4조의 기사를 수록 간행한 것(도서번호 奎 No 1213,1214) ·신숙주의 전(箋)·서(序), 신숙주·권람·강희맹(姜希孟) 등 3인의 수찬(修撰)으로서 태조(권1)·태종(권2~3)·세종(권4~6)·문종(권7)으로 편찬되었다 이 초간본은 처음 세종이 권제(權踶)·정인지(鄭麟趾) 등에게 명해 태조·태종 양대의 보감을 편찬케 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세조가 그 뜻을 이어 1년 여의 노력 끝에 완성한 것이다 같은 내용의 이 보감은 2종이 있으니, 하나는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도장이 찍힌 정유자(丁酉字) 활자본(奎 No 1137, 1596)과 훈련도감목활자(訓練都監木活字)로 인쇄된 책(奎 No 1717, 209)이 그것이다

(2) 1782년(정조 6)에 태조(권1)·정종(권2)·태종(권3~4)·세종(권5~7)·문종(권8)·단종(권9)·세조(권10~13)·예종(권14)·성종(권15~17)·중종(권18~20)·인종(권21)·명종(권22~23)·선조(권24~33)·인조(권34~36)·효종(권37~38)·현종(권39~40)·숙종(권41~55)·경종(권56)·영조(권57~68) 등 19조의 기사를 수록 간행한 것(奎 No.1138)……1782년 10월 정조는 영조대까지의 찬진사업을 계승, 「보감」의 일대 정리작업을 서명응 등에게 명하여, 정종·단종·세조·예종·성종·중종·인종·명종·인조·효종·현종·영조대의 「보감」을 완성, 모두 68권을 완성하였다

이 「보감」에는 정조어제서(正祖御製序), 서명응이 쓴 진전(進箋), 교정·편집·고교(考校)·어제교열(御製校閱)·감인(監印) 등을 맡은 봉교자(奉敎者)의 명단, 총서(總序)·범례·목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태조~영조대 가운데 19조의 기사를 68권에 수록하고, 책 뒤에는 김종수가 정조 6년에 쓴 발문(跋文)이 붙어 있다

총서(總序) 및 범례에 의하면, 세조 이후 정조에 이르기까지는 두 차례의 「보감」 편찬사업이 있었던 바, 1684년(숙종 10) 이단하(李端夏)가 선조의 치적을 수록한 『선묘보감(宣廟寶鑑)』 10권을 찬진한 바 있었고, 그 뒤 1730년(영조 6) 이덕수(李德壽)가 『숙묘보감(肅廟寶鑑)』 15권을 찬진 간행한 것(奎 No 5391)이 그것이다 정조는 왕 6년 서문을 손수 짓고, 성대한 진서의(進書儀)를 거행하였다 그리고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 완료했을 때 세조묘(世祖廟)에 고헌(告獻)한 전례에 따라 종묘에 「보감」을 고헌한

뒤 동고(東庫)에 보관하게 되니, 그 뒤 이러한 절차는 개식(楷式)으로 된 바 있다

(3) 정조의 어제서문(御製序文)만을 별도로 8장으로 성책(成冊)한 『국조보감서(國朝寶鑑序)』의 정조어제서문에 의하면, 그 편찬 과정과 동기가 자세히 나타나 있으니,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실록과 보감의 다른 점을 밝혔으니, 즉 실록은 일의 대소득실(大小得失)을 모두 기록하여 후세인들로 하여금 보게 한 것이라면, 보감은 훈모(訓謨)·공렬(功烈)을 기록하여 왕자들로 하여금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실록은 비장(秘藏)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라면, 보감은 드러내는데 목적을 둔 것이며, 실록은 먼 후세를 위한 기록이지만, 보감은 당세에 요긴한 기록임을 밝혀 놓은 것이다

둘째, 그 편찬 동기면에 있어서 보감이 우리나라 유일의 것임을 강조하고 송과 명나라의 예를 들어, 세종의 본래 뜻은 선왕의 업적을 찬양하려는 것이 아니라 후세인을 관유(寬裕)하기 위한 것이라고 쓰고 있다

셋째, 전대에 편찬한 『사묘보감(四廟寶鑑)』·『선묘보감』·『숙묘보감』이 매우 미비함을 지적, 정종에서 경종까지의 12묘보감을 2년만에 완성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다

넷째, 정조는 완성된 68권의 보감을 보고, 4백년의 심법(心法)·전장(典章)이 여기에 들어 있다고 하면서, 이 책이야 말로 전학수덕(典學修德)의 요체이자 경천존조(敬天尊祖)의 실상과 절용(節用)·애민(愛民)·흥교(興敎)·정속(正俗)의 방법 등이 망라되어 있다고 하였다

(4) 1848년(헌종 14) 19조의 보감에 정조·순조·익종(翼宗) 3대의 보감을 합편(合編)한 것이 있다 헌종이 쓴 어제서문, 김난순(金蘭淳)이 쓴 진전(進箋)이 앞에 더 붙여졌고, 권1~68까지는 (2)와 같은 편차(編次)로 태조~영조의 보감, 권69~75는 정조, 권76~80은 순조, 권81~82는 익종 대리(代理)의 순서이며, 끝에는 권돈인의 발(跋)이 있다 총 82권 2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조대에 『정조보감』의 편찬을 주청(奏請)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헌종대에 이르러서야 조인영(趙寅永)·정원용(鄭元容) 등이 이를 받들어 3대의 보감을 이루어 합집, 1847년 책보지례(冊寶之禮)를 거행하고 종묘에 보관케 하였다 규장각에는 이 판본이 여러 질(帙) 있으나 모두 영본(零本)이다

(5) 1909년(융희 3)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보감 일통(一統)작업에 의하여 (4)의 22조의 내용에 헌종·철종의 것을 합편한 것으로, 순종의 명을 받아 규장각에서 이용원(李容元) 등이 완성한 것으로 총 90권 28책이다 고활자본(古活字本)과 목판의 교인본(交印本)으로 앞의 내용 외에 순종의 어제서문, 이용원의 진전이 있다 그 편차는 태조(권1)·정종(권2)·태종(권3~4)·세종(권5~7)·문종(권8)·단종(권9)·세조(권10~13)·

예종(권14)·성종(권15~17)·중종(권18~20)·인종(권21)·명종(권22~23)·선조(권24~33)·인조(권34~36)·효종(권37~38)·현종(권39~40)·숙종(권41~55)·경종(권56)·영조(권57~68)·정조(권69~75)·순조(권76~80)·문조(文祖)대리(순조의 아들 익종, 권81~82)·헌종(권83~86)·철종(권87~90) 등의 순서이다 이상의 보감의 내용은 정조 때까지는 실록초(實錄草)에서, 헌종에 이르러서는 조인영의 의견에 따라 실록초에 의거하지 않고 『일성록(日省錄)』·『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그리고 각사(各司)의 장고(掌故) 등에서 기사를 뽑았다

(6) 앞의 보감과는 별도로 인조·효종·현종·숙종·영조·정조·순조·익종대리 등 존양(尊攘)의 사실만을 골라서 기록한 『국조보감별편』이 있는데, 정확한 연기(年紀)는 미상(未詳)이나 헌종의 보감 편찬 때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수록된 내용은 명나라 5성(聖)이 끼친 황은(皇恩)을 갚을 수 있는 대의(大義)가 될 만한 것을 특히 기록하였다 또한 병자·정묘호란 때의 순절자는 이러한 '수보황은지대의(酬報皇恩之大義)'에 맞는 것이라 하여 야사(野史)나 가전(家傳)에서 간략하게 뽑은 것도 있다 「범례」에 이어 인조(권1~3)·효종(권4)·현종(권5)·숙종(권6)·영조(권7) 등으로 편찬되었는데, 총 10권 3책이다 이 『별편』은 영조가 『숙묘보감』을 편찬할 때 1권으로 별편을 엮은 데서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 후 정조가 일통작업 때 김치인(金致仁) 등에 명하여, 영조 때까지의 사실을 엮게 하였고, 헌종 때 다시 정조·순조·익종 3대의 별편을 엮어 완성한 것이다 이 『별편』은 본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처음 만들어진 『숙묘보감별편』은 『숙묘보감』만을 별도로 성책한 8책의 『숙묘보감』에 부록으로 있다

4) 『규장각지(奎章閣志)』

정조의 개혁정치와 문화정책을 펴기 위한 기구였던 규장각의 설치연혁·의의와 조직·기능·제도·의식(儀式), 각신(閣臣)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관서지(官署志)로서 2권 1책이다 규장각의 제도·의식이 갖추어진 1781년(정조 5)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 서명응(徐命膺)을 비롯한 채제공(蔡濟恭)·황경원(黃景源)·이복원(李福源) 등이 초초본(初草本 1책 95장 필사본, 正祖의 御製序)과 재초본(再草本 1책 73장, 正祖의 御製序)을 만든 바 있고, 이를 바탕으로 증삭(增削)하여 다듬은 완성본으로 1784년(정조 8) 고활자 정유자(丁酉字)로 간행되었다. 책머리에는 정조의 어제서문이 있고, 책 뒤에는 이복원·이징지(李徵之)·황경원·서명응·김종수(金鍾秀) 등 5인의 발문이 있다

이 책의 내용은 8목 34장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8목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권1의 ① 건치(建置)에서는 규장각을 설립하게 된 연혁과 건물의 용도를 밝혔다 내

각(內閣)은 본각(本閣)과 그 부속건물을 말하는데, 즉 규장각·봉모당(奉謨堂)·열고관(閱古觀)·개유와(皆有窩)·이안각(移安閣)·서고(西庫)로 되어 있다 부강도외각(附江都外閣)을 별도로 두고, 직원(直院)은 각신(閣臣)들이 숙직하는 곳이며, 외각은 본각의 속사인 교서관으로 일명 운각(芸閣)이라 하여 경적·향축·인쇄반포 등을 담당한 곳임을 밝혔다 ② 직관(職官)에서는 각신 이하 잡직의 임면·직위·차제(差除)·예겸(例兼)·고시(考試) 등을 규정했고, ③ 봉안(奉安)에서는 열성의 어제(御製) 등을 봉안하는 의식과 그 날짜를 기재하였다 ④ 편차(編次)에서는 편차의 사실과 회수(會粹)·선사(繕寫)·봉장(奉藏)·간인(刊印) 등의 의절(儀節)이 적혀 있고, ⑤ 서적에서는 서적의 분류와 편찬, 책의 관리 등을 규정해 놓았다

권2의 ① 교습(敎習)에서 문신의 교습담당 업무와 초계문신(抄啓文臣)의 운영 등이 규정되어 있고, ② 원규(院規)에서는 규장각에서 날마다 해야 할 일을 기록해 놓았으며, ③ 사실(事實)에서는 규장각에 관하여 임금과 여러 신하가 지은 글에서 규장각 설립의 동기와 규례를 정하는 데 관계된 사실을 모아 놓았다

이 책은 규장각의 의의 및 조직·기능·의식, 그리고 각신의 지위와 권리·의무 등을 수록한 것으로 정조대의 혁신정치와 문운융성을 주도하면서 장서각 및 학문연구기관으로서의 직능을 수행했던 규장각의 실체와 역사적 의의를 연구하는데 높은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5) 『규장총목(奎章總目)』

1781년(정조 5)에 각신(閣臣) 서호수(徐浩修)가 정조의 명을 받아 규장각 개유와(皆有窩)에 소장된 중국본[華本]에 간략한 해제를 붙인 장서목록이다

4권 3책의 필사본으로 그 크기는 세로 33㎝×가로 20.5㎝이다 조선시대 도서분류법인 사부분류법(四部分類法)에 의하여 정리되었고, 또한 간략한 해제를 붙인 중국본의 장서목록으로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최초의 것이다

규장각은 원래 정조가 등극한 후 1776년 정치개혁과 문화중흥정책을 펴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 중의 하나이다 정조는 동궁으로 있을 때부터 장서수집과 그 정리·보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쏟았으며, 처음 규장각 설치 당시의 장서는 약 3만권을 헤아렸다 정조는 이 도서를 화본(華本 중국본)과 동본(東本 한국본)으로 나누고, 화본의 소장을 위해서는 규장각 서남쪽에 열고관(閱古觀)과 개유와를 건립했고, 동본의 소장을 위해서는 열고관의 북쪽에 서서(西序)를 지어 장서 보관에 힘을 기울였다 정조는 원래 열고관서목(閱古觀書目)과 서서서목(西序書目)을 총목록으로 작성하려 하였다 즉 1779

년(정조 3)부터 각신 등의 노력으로 규장각 소장의 서목 정리를 위한 기초작업이 진행된 끝에 정조 5년 2월에 비로소 그 작업이 일단락될 수 있었다 이때 정조는 원임규장각제학(原任奎章閣提學) 서명응(徐命膺)에게 『규장총목』 편찬 책임을 명하였다 그러나 당시 서명응은 벼슬에서 은퇴하여 저술활동에만 힘쓸 때였으므로 실제로 서명응의 아들 서호수가 그 일을 맡아 1781년(정조 5) 6월에 이 책의 편찬 업무가 끝났다

서호수의 노력으로 이때 화본을 수록한 『열고관서목』 6권과 동본을 수록한 『서서서목』 2권의 합본인 『규장총목』이 편찬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책 목록인 『서서서목』 2권은 현존하지 않으며, 화본을 수록한 장서각 소장의 『열고관서목』과 서울대 도서관 소장의 『개유와서목(皆有窩書目)』(표제는 '규장총목')만이 전해지고 있다

이 책의 도서분류는 송대의 경사자집(經史子集) 4부 45류로 전개된 『숭문총목(崇文總目)』의 분류법을 참조, 지나치게 세분된 것은 합치고, 합쳐진 것은 세분하여 규장각의 장서구성에 알맞도록 체계를 세워 4부 34류로 분류된 것이 특징이다 『규장총목』에서 시도된 이러한 도서분류법은 그 뒤 우리나라 전통적인 고서분류법의 기본적인 전거(典據)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총 13,642책을 헤아리는 화본 도서의 차례와 34류별 책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책의 범례 목차 및 책수‥ ㉠ 권1 개유와 갑고(皆有窩 甲庫 . 經部 총 1,648책) ① 총경(總經, 446책) ② 역(易, 53책) ③ 서(書, 58책) ④ 시(詩, 63책) ⑤ 춘추(春秋, 64책) ⑥ 예(禮, 388책) ⑦ 악(樂, 16책) ⑧ 사서(四書, 220책) ⑨ 소학(小學, 340책)

㉡ 권2 을고(乙庫 史部 총 4,279책) ① 정사(正史, 1,215책) ② 편년(編年, 556책) ③ 별사(別史, 899책) ④ 장고(掌故, 858책) ⑤ 지리(地理, 556책) ⑥ 초사(鈔史, 117책) ⑦ 보계(譜系, 36책) ⑧ 총목(總目, 42책)

(2) 제2책의 범례 목차 및 책수 ……㉢ 권3 병고(丙庫 . 子部 총 2,832책) ① 유가(儒家, 682책) ② 천문(天文, 10책) ③ 역주(歷籌, 159책) ④ 복서(卜筮, 4책) ⑤ 농가(農家, 27책) ⑥ 의가(醫家, 135책) ⑦ 병가(兵家, 136책) ⑧ 형가(刑家, 46책) ⑨ 도가(道家, 45책) ⑩ 석가(釋家, 49책) ⑪ 잡가(雜家, 70책) ⑫ 설가(說家, 237책) ⑬ 예완(藝玩, 155책) ⑭ 유사(類事, 400책) ⑮ 총서(叢書, 680책)

(3) 제3책의 범례 목차 및 책수‥ ㉣ 권4 정고(丁庫 集部 총 4,883책) ① 총집(總集, 2,125책) ② 별집(別集, 2,758책)

각 서목을 작성한 기재양식은 각 책마다 줄을 높여 서명 · 부수 · 본수를 적고, 그 다음에 줄을 바꾸어 찬자(撰者)의 성명, 소저(所著)의 의례(義例), 서문과 발문을 절취하여 규모의 개략과 그 연혁을 살피는데 도움이 되도록 간략한 해제를 덧붙였다

장서각본 『열고관서목』은 필사본이며, 그 뒤 고종 때 규장각도서를 정리하면서 편찬

한 간명목록(簡明目錄)으로 『규장총목』과는 달리, 다만 서명·권수·조대(朝代) 및 편저자만을 밝힌 장서목록이다 이는 현재 장서각도서에 소장되어 있으며, 권말에 『개유와북방서목(皆有窩北房書目)』·『문헌각서목(文獻閣書目)』 및 『연경당서목(演慶堂書目)』이 부록으로 붙여져 있다 이와 같이 『규장총목』은 정조 초엽 당시의 규장각의 화본 소장 내력을 소상히 알려 주는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4부법에 의한 우리나라 최초의 해제목록이라는 점에서 한국서지목록학사상 역사적 위치와 가치를 지닌 책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6)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1789년(정조 13) 왕명에 의하여 규장각의 검교(檢校)인 이덕무(李德懋 1741~1793), 박제가(朴齊家 1750~1805)가 장용영 초관(壯勇營哨官)이었던 백동수(白東修) 등에 군실무를 물어 그 이듬해인 정조 14년에 간행된 무예서(武藝書)이다 무신과 위사(衛士)들에게 무예를 익히기 위하여 편찬되었으며, 『무예통지(武藝通志)』·『무예보(武藝譜)』라고도 한다 4권 4책에 언해 1책으로 된 목판본으로 태백산성에 소장되어 있던 책이다

이 책은 조선의 전투기술사를 다루고 있으며, 전투기술을 중심으로한 역사·사회적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어 18세기 말엽에 조선이 지닌 '무예'에 대한 개념이 오늘 우리들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판이하였음을 알게 한다

표지에는 『어정무예통지(御定武藝通志)』라고 쓰여있고 표지 안쪽에는 『어정무예도보통지(御定武藝圖譜通志)』라고 판인(板印)되어 있으며 태백산성이란 필사기록도 있다

편집체제를 살펴보면 권두에는 정조 14년에 정조 친필의 서문이 있다 이어서 총목(總目)에 이은 범례(凡例) 21조가 실려있다 그리고 「병기총서(兵技總敍)」·「척모사실(戚茅事實)」·「기예질의(技藝質疑)」·「인용서목(引用書目)」 등을 싣고 본문에는 24종의 병기(兵技)를 수록하였다

책 끝에는 관복도설(冠服圖說)과 고이표(考異表)를 부록으로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무예는 고대로부터 궁시(弓矢) 1기만을 위주로 해 왔었으나, 임진왜란 때의 자극으로 창·검·권(拳) 등 단병(短兵)의 필요성을 느낀 선조가 명장(明將)인 척계광(戚繼光)이 지은 『기효신서(紀效新書)』를 얻어보고 훈련도감의 낭관인 한교(韓嶠)를 보내 명나라 장사들에게 곤봉 등 6기를 배워오게 하였다

이때 도보를 만들게 함으로써, 1598년(선조 31)에 『무예제보(武藝諸譜)』가 간행되었다 그 후 1749년(영조 25)에 와서 죽장창(竹長槍)·기창(旗槍)·예도(銳刀) 등 12기를

더하여 18기에 관한 도보를 만든 것이 『무예신보(武藝新譜)』이다

정조 때에 와서는 위의 『무예제보』와 『무예신보』를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다시 기창(騎槍)·마상월도(馬上月刀)·마상쌍검(馬上雙劍)·마상편곤(馬上鞭棍)의 4기와 격구(擊毬)·마상재(馬上才) 2기를 더하여 24기를 만들고 여기에 해설과 도보를 첨가하여 이를 집대성한 것이 『무예도보통지』이다

이 중 「병기총서」는 이덕무·박제가의 찬(纂)으로서, 태조가 건국한 이래로 역대 임금들이 군영을 설치하고 병서 진법 등의 서적을 간행하고 무예시취(武藝試取) 및 상무훈련 등 무예전반에 관한 것을 연대 순으로 적고 있다 「척모사실」은 『기효신서』와 『무비지(武備志)』의 저자인 척계광과 모원의(茅元儀)의 소전(小傳)을 다루었다 「기예질의」는 한교가 명의 허유격(許遊擊)에게 병기에 관하여 질의, 응답한 내용이고, 질의 끝에 있는 한교의 소전에는 『기효신서』의 구입경로와 기예의 훈련 등에 관한 일화도 적고 있다 「인용서목」에는 이 『무예도보통지』를 편찬하기 위해 참고한 『사기』·『한서』·『삼국사기』·『일본기』·『일지록』 등 145종의 책을 저자의 이름과 함께 싣고 있다 「관복도설」은 무기에 필요한 옷의 그림과 설명을 한 것이고, 「고이표」는 군영에 따라 다른 기법의 비교표인 것이다.

본문은 24종의 병기로 구성되었는데, 그 24종의 병기를 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1은 장창(長槍), 죽장창(竹長槍), 기창(旗槍), 당파(鎲鈀), 기창(騎槍), 낭선(狼筅) 등 6개항, 권2에서는 쌍수도(雙手刀), 예도(銳刀), 왜검(倭劍) 등 3개항, 권3은 제독검(提督劍), 본국검(本國劍), 쌍검(雙劍), 마상쌍검(馬上雙劍), 월도(月刀), 마상월도(馬上月刀), 협도(挾刀), 등패(藤牌) 등 8개항, 권4에서는 권법(拳法), 곤봉(棍棒), 편곤(鞭棍), 마상편곤(馬上鞭棍), 마상재(馬上才), 격구(擊毬), 관복도설(冠服圖說), 고이표(考異表)의 8개항의 기(技)을 설명하고 있다

무기를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각 기(技)마다 도식(圖式)·설(說)·보도(譜圖)·총보(總譜)·총도(總圖)로 나누어 알기 쉽게 그림과 아울러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창·검·권 등 이른바 단병만이 실려 있고 궁시나 총포 등의 화약병기에 관한 것은 실려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선진후기(先陣後技)"의 사고를 기저로 진법에 관한 진도(陣圖) 등의 저술은 많았으나 기 즉 무예에 관한 기록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고전을 참고하여 실전에 필요한 기예를 익히도록 이 책을 만들게 된 것이다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주로 하였으나 그 외에도 모원의의 『무비지』, 도홍경(陶弘景)의 『도검록(刀劍錄)』, 왕탁의 『병장기』 등 148종의 무예서를 참고로 하여 만들었다

여기에 궁시나 총포에 관한 기술이 없는 것은 총포는 전문적인 것이므로 별도로 기

록이 있었을 것이며, 궁시에 관한 것은 도보나 기록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종래 우리나라에서 쓰여지지 않던 새로운 중국식 무예 24종만을 기술한 것으로 본다

종래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무경칠서(武經七書)』를 지상의 무전(武典 병서)으로 여겨 왔으며 이것으로 무과를 치렀었다 칠서의 내용은 전략, 전술 내지는 치민(治民)의 서(書)로서 교봉하고 합전하는 방식을 쓴 것은 아니나 본서는 많은 고전을 참고하여 실전에 필요한 기예를 익히도록 엮어진 책이다 따라서 무예의 기술서로 무예사나 무복, 무기 등을 연구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또한 본문 외에 당시의 역사적·사회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각종 자료가 있어 그 진가를 더하고 있다

특히 당시의 군주나 관료적 학인들이 임진·병자 양란 후의 국방현실을 얼마나 중요시하였는지를 보게 한다 권2의 「왜검총보」와 「총도」는 일본에 대한 주시로 왜검술을 다루어야 할 현실성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7) 『무예도보통지언해(武藝圖譜通志諺解)』

1790년(정조 14)에 정조의 명으로 편찬된 『무예도보통지』를 언해한 것이다

정조가 무인(武人) 등에게 무예를 익힐 목적으로 이덕무·박제가·백동수 등을 불러서 무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므로 『무예도보통지』의 편찬과 거의 동시에 이 언해가 편찬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언해본은 본문 앞에 『무예도보통지』의 범례와 목록이 있고 「장창전총보(長槍前總譜)」, 「장창전총도」, 「장창후총보」 등 40개의 총보, 총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총보'란 여러 동작을 하나 하나 순서대로 명칭한 것이고, 이 동작을 그림으로 도해한 것이 '총도'이다 이 책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의 국어사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책이다

8) 『병학지남(兵學指南)』

군사의 조련법을 설명한 병서이다 정조의 명에 의하여, 전해오던 『병학지남』의 여러 책을 모아 잘못된 부분 등을 바로잡아 1787년(정조 11)에 목판본 5권 1책으로 간행한 것으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원래의 『병학지남』은 명나라 장수인 척계광(戚繼光)이 지은 『기효신서』 중에서 조련에 관한 것을 간추려 강습에 편리하도록 엮은 것이다

편자에 대하여는 여러 설이 있다 선조 때의 유성룡(柳成龍)이라는 말이 있으나 아무

런 근거가 없다 서지에 관한 신빙할 만한 문헌인 『군서표기(群書標記)』와 『누판고(鏤板考)』 등에서는 편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246, 예문고(藝文考) 5 병가류(兵家類)에서는 통제사 최숙(崔橚 생몰년 미상)이 편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한 이본에 실린 1684년(숙종 10) 공홍도(公洪道) 병마절도사 최숙의 『병학지남』 발문에 의하면, 그는 이미 있던 『병학지남』에 두주(頭註)를 붙이고, 권2를 언해하고, 영진총도(營陣總圖)의 도판을 첨삭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그 발문이 있는 책은 두주와 권2의 언해가 있고, 영진총도가 1권으로 되어 모두 4권 1책이지만, 그보다 앞선 시기의 간행으로 보이는 책은 두주가 없고, 언해가 권1뿐이며 영진총도가 분권되어 있다 그러므로 최숙이 수정한 것은 사실이나 편찬자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후부터 17세기 중엽사이에 누군가에 의한 편찬으로 봄이 온당하다

최숙이 수정한 책도 권1의 언해가 한글만으로 본문과 같이 1행으로 된 데 대하여 권2는 국한문 혼용으로 쌍행으로 되는 등 미비한 곳이 있고, 게다가 수정본이 나온 이후에도 언해가 1권뿐이며 두주가 없는 책도 통용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정조는 선전관 이유경(李儒敬 1747~?)을 시켜 대대적인 교정을 행하고, 어제서(御製序)를 붙여 1787년(정조 11) 장용영(壯勇營)에서 간행하게 하여 이 책의 정본으로 삼았다 「병학지남범례」에 의하여 교정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 상세한 두주를 붙이고 원문의 교정까지 가하여 권2의 언해를 권1의 것과 같이 다듬어 붙이는 등 내용과 체제가 완비된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은 군대의 조련, 진을 치는 법, 행군, 호령 등에 대한 규정과 설명이 그림과 함께 되어 있어서 17세기 이후로 우리나라 연병의 기본지침서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각 병영에서 간행된 많은 이본이 전한다 『누판고』에는 장용영, 훈련도감, 남한산 개원사(開元寺) 등 13개소에 책판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거기 나타나지 않는 강화도 등에서 간행된 책도 현존하므로 실제 판본은 그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이본은 정조 11년의 장용영판과 그 복간본이 주류를 이루고, 그 밖에 이 보다 앞선 판본으로서 최숙의 수정본과 수정하기 전의 판본으로 나누어진다 최숙의 수정본보다 앞선 판본에는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는 등 17세기 국어의 모습을 보게 한다 그러므로 이 책은 여러 이본으로 근대 국어 안에서의 다른 자료를 보여주는 특이한 국어사 자료가 되며, 그 내용으로써 우리나라 옛 군대의 훈련방법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최숙은 숙종 10년(1684) 『병학지남』의 발문을 쓸 당시 공홍도 병마절도사를 하였고, 이유경은 정조 때 선전관, 우포도대장, 삼도수군통제사, 평안도 병마절도사 등을 지낸

인물이다

『병학지남』의 편집체제를 살펴보면, 책 첫 머리에는 정조의 서문과 이유경의 범례, 그리고 목차를 실었고, 권1에는 정법(定法)과 총결(總訣)을, 권2에는 정구(正彀)를 권3에서 4까지에는 진도(陣圖)를, 권5에는 장조(場操)·야조(夜操)·분련(分練)·성조(城操)·수조(水操) 등을 차례로 수록하였다 책 끝에는 "정미(丁未, 1787년, 정조 11) 신간 장영장판(新刊 壯營藏板)"이란 간기를 적고 있다 권1에서 권2까지는 한글로 대역(對譯) 하였는데, 역문은 원문보다 한 호수 낮은 활자를 썼고, 권1에서 권5까지 위아래의 난외에는 작은 글씨로 주를 달았다.

이유경의 범례에 의하면, 두주는 훈국본(訓局本)·남한본(南漢本)·해서본(海西本)을 따르고, 언해가 없던 권2의 영진정구(營陣正彀)는 남한본에 따라 첨가하여 보충하였다 각본진도부의(各本陣圖附議)중에 실리지 않은 차기영법(車騎營法) 5조와 진법통변(陣法通變) 4도(圖)를 첨가하여 기술하고, 각진의 호령을 큰자로 적어서 두주와 혼동이 없게 하였다 한다

책의 목록을 권별로 살펴보면, 권1은 「기고정법(旗鼓定法)」·「기고총결(旗鼓總訣)」, 권2는 「영진정구(營陣正彀)」, 권3은 「영진총도(營陣總圖)」 상편, 권4는 「영진총도」 하편(진법통변 4도부), 권5는 「장조정식(場操程式)」(야조정식·분련정식부)·「성조정식(城操程式)」·「수조정식(水操程式)」 등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고정법」에는 먼저 기와 북의 호령법에 대하여 총의를 논한 다음, 명포호(明砲號)·명적호(明笛號)·명라팔호(明喇叭號) 등 29항으로 나누어 포성으로 하는 호령을 밝히는 일에서부터 급한 도적을 만난 호령을 밝히는 일에까지 순서대로 하나하나 세분하여 밝히고 있다 「기고총결」에는 기와 북을 총체적으로 논하는 것으로서 호포(號砲)·호적(號笛)·고(鼓) 등 16가지에 대한 용도와 암호·호령 등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영진정구」에는 먼저 진 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다음, 편병(編兵)·좌우오(左右伍) 등 34항으로 나누어 군대를 편성하는 일에서부터 활쏘는 일에 이르기까지 정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영진총도」 상편에는 진 치는 방법을 여러 가지 그림으로써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좌오도(左伍圖)·우오도(右伍圖)·원앙대도(鴛鴦隊圖) 등 50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영진총도」 하편에는 보병·수군·차기(車騎)·선박 등 여러 가지의 부대 편성하는 방법, 진 치는 방법, 작전하는 방법, 행군하는 방법 등을 그림으로 세밀하게 밝히고 있으니, 보병입대도(步兵立隊圖)·보병전대도(步兵戰隊圖)·마병수기도(馬兵授器圖) 등 33가지로 나누어 상세히 밝히고 있다 「장조정식」에는 조련에 앞서 조패(操牌)를 달아 각 영에 알리는 일에서부터 주장(主將)이 교장에 입장하는 절차, 훈련 태세를 순시하는

방법, 조총과 파궁(鈀弓)을 일제히 쏘는 과정, 출전할 때의 자세, 복병하는 방법, 훈련이 끝나면 공과를 조사하는 일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현조패(懸操牌)·장일호(掌一號)·사공죄(査功罪) 등 34개 항목으로 기록하고 있다 「야조정식(夜操程式)」은 야간 훈련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서 주습(晝習)·안영(安營)·수영(收營) 등 9개항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분련정식(分練程式)」은 대오(隊伍)를 결성하거나 진을 벌이거나 하는 등 갖가지 형태상의 조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조일대전래(調一隊前來)·분위양의진(分爲兩儀陣)·합일사련(合一司練) 등 8개 항목이다 「성조정식」은 성에서 조련하는 방법을 입중군(入中軍)·파수(派守)·출시(出示) 등 12개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수조정식」은 물에서 조련하는 방법을 현조패·발초선(發哨船)·열영(列營) 등 25개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상당량이 한글 대역이고(권1은 제목까지, 권2는 제목은 제외하고 대역), 서문에서부터 성조정식의 우마장회비(牛馬墻淮備)에 이르기까지 묵서로 재래식 현토를 하여서 해독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또한 조련·진법·행군·호령 등 군사에 관한 모든 일들이 그림과 함께 체계적으로 설명되어서 우리나라 재래의 훈련방법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이며, 역문을 봄으로써 17세기의 국문을 연구하는 귀중한 국어사 자료이다

9) 『병학지남연의(兵學指南演義)』

정조 때에 교련관(敎鍊官)을 역임한 바 있는 이상정(李象鼎)이 1798년(정조 22) 5월에 처음 탈고(脫稿)한 필사본으로 유일본(唯一本)이다

정조 시대는 비교적 정치가 안정되고 문화가 발달하여 각종 서적이 새로이 간행되었으며, 특히 실학사상이 활발히 전개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군사실학사상도 대두된 것은 당연하다 정조는 『병학지남』을 수정하여 반포하는 등 국방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그 결과, 김석주(金錫胄)의 『행군수지(行軍須知)』, 송규빈(宋奎彬)의 『풍천유향(風泉遺響)』 등과 같은 병서가 속속 나오게 되었고, 이상정의 『병학지남연의』도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상정이 이 책을 편집한 목적은 ① 당시 무신들은 과강(課講)으로 『병학지남』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내용이 너무 난잡하여 일반 무신들이 익히기 어려우며 ② 『병학지남』은 진법(陣法)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 병법의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육도삼략(六韜三略)'이 결여되었다. 그러므로 각종 운서(韻書)들을 참고하여 자의와 주석을 자세히 다는 한편, 『무경칠서(武經七書)』 등의 병서에서 각종 병법의 이론을 뽑아 연의(演義)를 만

들었던 것이다 이상정은 이 책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군을 운용하는 자는 장수인데 장수가 운용하는 것은 병법이며, 병법을 전수하는 것은 병학이다 병법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병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병학은 훌륭한 장수를 만나지 못하면 병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병에 학이 있음은 장기에 도보가 있는 것과 같고, 병학에 법이 있음은 사람에게 정신이 있는 것과 같으니, 만약 도보로 전수함이 없다면 제아무리 명철한 재주가 있어도 병법의 초보적인 것도 맡기 어렵고, 정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비록 7척의 몸을 가지고 있어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므로 병을 운용함은 병법에 달려있고, 병법의 응용은 병학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에 제가의 병서를 널리 인용하고 모두 해석하며 반복하고 변증하여 뒤에 나열하였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권1은 기고정법(旗鼓定法)과 총결에 형명(形名), 신위(中威) 등 18개 항목의 연의가 있으며, 권2는 영진정구(營陣正殽)에 기정(奇正), 악기(握奇) 등 25개 항목의 연의가 있으며, 권3은 장조정식(場操程式), 야조정식, 분련정식, 성조정식, 수조정식에 오교(五敎), 납항(納降) 등 13개 항목의 연의로 구성되어 있다

『병학지남』에는 권3~4에 영진총도 상·하편이 있으나 삭제하였으며, 권1 기고총결의 중간에도 "망기(望旗)로 신호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망기를 사용하지 않는다"하여 삭제하였다 『병학지남』의 해설은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중간에 병법을 부연 설명할 경우에는 연의의 항목을 기재한 다음 난을 바꿔 첫머리에 검은 판에 흰 글씨로 "演義(연의)" 두 글자를 표시하였다

연의는 주로 『무경칠서』 등에서 인용하였으나 때로는 유가의 경전이나 유학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견해를 밝힐 경우에는 "愚曰(우왈)" 두 자를 머리에 붙이기도 하였다 원문(『병학지남』)은 모두 강(綱)으로 처리하고, 주석은 한 자 낮추어 강과 목(目)으로 구분하였는데, 본문의 자의(字意)와 알기 어려운 대목을 강으로 설정하여 풀이하고 부연 설명할 경우에는 분주(分註)형식을 취하여 목으로 처리하였다

이상정은 이 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글자 풀이 등의 훈고(訓詁)는 첫권에 상세히 해석하고, 육도삼략은 대부분 중권에 서술하였으며, 조약(條約)은 모두 마지막 부분에 나열하였다"

이상정은 미관말직에 불과하였으므로 자세한 인적사항은 알 수 없고, 그의 자서(自

序)에 "완산후인(完山后人)"이라고 적고 있다 다만 승진(陞進)한 것은 오직 이 책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정조가 『병학지남』을 발간 배포한 것은 임진왜란에 대한 치욕을 복수하려는 지극한 뜻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10) 『병학통(兵學通)』

조선 후기의 군사훈련 교범으로, 2권 1책인 목판본으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1776년(정조 즉위년)에 정조의 명을 받아 형조판서 겸 지훈련원사(知訓鍊院事)인 장지항(張志恒 1721~1778)이 편찬하였으며, 금위대장 서명선(徐命善), 훈련대장 구선복(具善復) 등이 교열하고, 예문관검열 윤행임(尹行任), 돈령부도정 이가환(李家煥) 등이 감인(監印)한 중정본(重訂本)이 1785년(정조 9)에 간행되었다

군사훈련을 위한 책으로는 조선 초기 세조가 찬한 『병장설(兵將說)』, 『병장도설(兵將圖說)』이 있었으나, 오위체제(五衛體制)가 무너짐에 따라 그 책의 내용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었다 조선 후기에 영조의 명으로 『병장도설』을 본떠서 중앙군의 진법·조련·편성·기구 등을 설명한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을 편찬한 바 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로는 명장 척계광(戚繼光)이 지은 『기효신서』에서 군대의 조련 방법에 관한 부분을 요약하여 만든 『병학지남』이 주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각 군영이나 도(道)에 따라 규례(規例)가 다르고 조련에 각각 법식(法式)이 같지 않은 바가 있었으므로 군사 훈련에 질서가 없었다 정조는 이를 통일시킬 목적으로 『병학통』을 만들게 하여 『병장도설』과 『속병장도설』을 집대성한 것이다

편찬한 장지항은 자(字)는 월여(月如), 본관은 인동(仁同)이며, 형조판서 붕익(鵬翼)의 손자이자 통제사 태소(泰紹)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한 후 1759년(영조 35) 전라좌도수군절도사에 이어 경상우도·황해도·함경북도의 병마절도사와 광주부윤·한성부우윤·용호위대장·어영대장·총융사를 지내고, 1776년에 금위대장, 1777년 훈련대장을 거쳐 한성부판윤·형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한때 왕의 능행을 호종하지 않은 죄로 영암에 유배되었다가 한 달만에 풀려나와 삼도수군통제사에 이어 어영대장이 되었다 그러나 앞서 영암에 유배되었을 때 환관들과 결탁하여 역모했다는 시파들의 무고로 인하여 국문을 받다가 장살 되었으나, 뒤에 복관이 되었다

편집체제를 살펴보면, 속표지에 '어정병학통(御定兵學通)'이라는 책 제목과, 표지 이면에는 '병신(1776) 휘집(彙輯)', '을사(1785) 중정(重訂)', '어정병학통'이라고 간행의 경위를 간단히 기록하였다

책 머리에는 정조의 친필로 된 「어제병학통서(御製兵學通序)」를 붙여서 그의 병법에

대한 생각을 전하고 있다 그 뒤에는 명을 받들어 휘집한 장지항과 교열한 8명의 신하, 감인한 5명의 신하들의 명단이 관직명과 함께 실려 있다 주로 무신들이 작업에 참여하였으나 윤행임 외에 이가환, 박제가 등 당대의 이름난 문사들도 교열과 감인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부분의 범례에서 본문작성·도면수록원칙을 제시한 6개항과, 목록이 실려 있다 목록은 대체로 1권에는 조련과 호령에 관한 것이고, 2권은 진도(陣圖)에 관한 것 순으로 되어 있다

권1의 내용은 조련하는 순서와 요령을 자세히 규정한 것으로서, 장조(場操)·별진호령(別陣號令)·분련(分練)·야조·성조·수조의 내용이 실려 있다 장조에는 훈련도감과 금위영·어영청·용호영의 군사훈련에 관한 기록이 실려있으며, 그 세목은 현패(懸牌)·열성행오(列成行伍)·입장(入場)·소개문(小開門) 등의 20항목이다 별진호령에는 진치는 방법을 비롯하여 추격하는 요령과 호령 전달하는 일 등을 설명하고 있으니, 그 세목은 구군진(九軍陣)·팔진(八陣)·육화진(六花陣)·대상방진(臺上方陣) 등 29항이 있다 분련에서는 훈련도감 및 금위영·어영청의 소속 군사에 대해 대오를 나누어서 훈련시키는 방법과 연합하여 진을 결성하는 절차를 밝히고 있으니, 그 세목은 살수일대련(殺手一隊鍊)·분위양의진(分爲兩儀陣)·변위삼재진(變爲三才陣) 등 11항목으로 되어 있다 야조에는 야간훈련에 관한 설명이 순서에 따라 전개되고 있고, 그 세목은 안영(安營)·발복로당보(發伏路塘報)·발초급(發樵汲)·수초급(收樵汲)·취반(炊飯) 등 11항목이다 성조는 성에서 조련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서, 그 세목은 입중군(入中軍)·파수(派守)·출시(出示)·장일호(掌一號)·사공죄(査功罪) 등 22항목으로 되어 있다 수조는 수상조련 방법을 조리있게 설명한 것으로서, 그 세목은 현패·발초선(發哨船)·열영(列營)·승선청(升船聽)·초관기(招官旗)·관초발방(官哨發放) 등 20항목이 있다 장조에서부터 야조까지는 훈련도감의 것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금위영 등 네 군영의 것은 훈련도감의 내용과 다른 것이 있을 경우에만 한 자 낮추어서 따로 기록하고 있다

권2는 진도로 『병학지남』의 「영진총도」에 따라 팔교장열성행오도(八敎場列成行伍圖)를 위시하여 삼도주사첩진도(三道舟師疊陣圖)에 이르기까지 99개 도를 수록하였으니, 모두 시행연습(時行鍊習)을 위주로 그려진 것이며, 그림마다 신호에 대한 설명을 붙이고 있다

수록된 도면을 각 영별로 살펴보면, 훈국진도(訓局陣圖)로는 팔교장열성행오도·대장청도도(大將淸道圖)·대장기고대상파열도(大將旗鼓臺上擺列圖) 등 40도이며, 금어영진도(禁御營陣圖)로는 팔교장열성행오도·관기청장호적인출마로도(官旗聽掌號笛引出馬路圖)·관기도대하완립도(官旗到臺下完立圖) 등 32도이고, 용호영진도(龍虎營陣圖)로는

원앙대도(鴛鴦隊圖)·오마작대도(五馬作隊圖) 등 19도이다 그리고 성조에는 남한성조도(南漢城操圖)·통제영수조도(統制營水操圖)에는 주사강구열성행오도(舟師江口列成行伍圖)·첨자찰도(尖字札圖)·각선진집청발방도(脚船湊集聽發放圖)·열선작전도(列船作戰圖)·정종회선도(整綜回船圖)·연선하방도(聯船下方圖)·삼도사방영도(三道師方營圖)·삼도주사첩진도(三道舟師疊陣圖)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의 진도 중에는 상당수의 도명(圖名)이 훈국진도·금어영진도와 중복되고 있으나 결진형태(結陣形態)는 각각 다르다

뒷장에 교서관(校書館 芸閣)에서 새로 인쇄하여 군기시(軍器寺 武庫)에 판목을 보관한다는 기록이 있다 그 뒤 이 책과 『병학지남』 등의 여러 병서들은 1790년(정조 14)에 다시 집대성되어 『무예도보통지』로 편찬되었다 특히 1776년(정조 즉위년) 9월에는 각 군영의 진 치는 훈련, 남한산성의 훈련, 통영수군의 훈련에 『병학통』을 준용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아 이 책은 간행된 직후부터 군사훈련의 지침서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1)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

정조가 이덕무(李德懋) 등 규장각의 제신(諸臣)에게 명하여 편찬한 운서(韻書)의 하나이다 상·하 2권 1책의 목판본으로 세로 33.5㎝×가로 21.5㎝의 크기로 되어 있다.

이 책은 동음(東音 조선의 한자음)과 화음(華音 중국의 본토 자음)을 함께 표시한 운서로서, 정조의 명에 따라 이덕무가 1792년(정조 16)까지 주로 편찬했고, 윤행임(尹行恁)·서영보(徐榮輔)·남공철(南公轍)·이서구(李書九)·이가환(李家煥)·성대중(成大中)·유득공(柳得恭)·박제가(朴齊家) 등의 교정을 거쳐 1796년(정조 20) 8월 규장각에서 간행, 강화도 정족산성(鼎足山城)에 내사(內賜)되었다 이 책은 그 뒤 방각본(坊刻本)으로도 많이 인간(印刊)되어 이본이 많다

종래 우리나라에 전해오던 『삼운통고(三韻通考)』 계열의 『화동정음통석운고(華東正音通釋韻考)』·『삼운성휘(三韻聲彙)』 등의 운서는 3단식 체재로 평성(平聲)·상성(上聲)·거성(去聲)을 한꺼번에 나열하고, 입성(入聲)은 별도로 책 뒤에 나열해 싣는 것이 항례였다 그러나 『규장전운(奎章全韻)』은 종래의 운서들과는 그 체재를 달리하여 평·상·거·입의 4성(聲)을 한꺼번에 표시한 4단식 운서로서, 자음(字音)은 한글로 표기하고 또 다른 운자(韻字)와 통하는 자(字)는 그 운모(韻母)를 표기하였다 이 운서편찬에는 당시까지 우리나라에 널리 활용되던 『삼운통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명나라 장보(章黼)의 『문학집성(文學集成)』, 양신(楊愼)의 『고음략례(古音略例)』, 송나라 오역(吳棫)의

『운보(韻譜)』, 청나라 소장형(邵長衡)의 『고금운략(古今韻略)』 등 중국의 운서를 광범위하게 참조하였다

『규장전운』은 운서 안에 한자를 나열할 때는 한글 자모 순서에 따라서 한자음을 분류하여 배열하였다 다만, 이 책의 편찬자들이 나타내고자 한 우리나라 전승자음은 어느 정도 규범성을 띤 것이어서, 예컨대 『화동정음통석운고』에서는 당시 일반인들이 발음하고 있던 한자음을 속음(俗音)으로 표시했으나, 이 책에서는 규범음만을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뒤에 속음을 아울러 표시하는 『전운옥편(全韻玉篇)』이 편찬되어 그 결점을 보충했으니, 『전운옥편』은 『규장전운』을 저본으로 한 획인자전(劃引字典)이었다

『규장전운』의 표지 뒷면에는 '가경원년(嘉慶元年, 1796) 팔월 일 내사정족산성(內賜鼎足山城) 어정신인(御定新印) 규장전운 직제학(直提學) 신(臣) 이(李)'라는 내사기(內賜記)가 있으며, 권두에는 「어정규장전운의례(御定奎章全韻義例)」가 있고, 이어서 목록이 실려 있다 즉 권지상(卷之上)에는 평성(平聲, 上平) 15운(東·冬·江·支·微·魚 등), 상성(上聲) 15운(黃·腫·講·紙·尾·語 등), 거성(去聲) 16운(送·宋·絳·寘·未·御 등), 입성(入聲) 8운(屋·沃·覺·質·物·月 등)이 권지하(卷之下)에는 평성(平聲, 下平) 15운(先·蕭·肴· 豪· 歌 등), 상성 14운(銑·篠·巧·皓·哿 등), 거성 14운(霰·啸·效·號·箇 등), 입성 8운(藥·陌·錫·職·絹 등) 이 그것이다

이상의 목차에 따라서 『규장전운』 상·하권에는 평성 30운과 상성 29운, 거성 30운, 입성 17운의 운부별(韻部別)로 한자를 나열하였다 이 책도 우리나라의 다른 운서와 마찬가지로 106운계 운서이며, 모두 13,345자의 한자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당시의 중국 한자음과 우리나라 한자음 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12)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정조가 규장각에 명하여 이미 전대에 편찬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와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를 합본하여 1797년(정조 21)에 편찬한 책이다 5권 4책으로 세로 32 3cm× 가로 19 3cm의 크기이며, 고활자 정리자(整理字)로 간행되었다 이 책이 1797년에 간행될 때에는 규장각 직제학 이병모(李秉模)와 제학 윤시동(尹蓍東)이 교열을, 제학 이만수(李晩秀) 등이 감인(監印)을 맡았다

이 책은 맨 앞머리에는 정조의 어제윤음(御製綸音)과 당시 좌승지 이만수의 서(序), 원서(原序), 발(跋) 3편이 실려 있다 초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1859년(철종 10)에 목판으로 간행된 중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동국대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많은 이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삽화와 언해를 함께 실고

있어 가본의 변천에 따라 조선시대 판화와 국어사의 발달과정을 알려 준다는 점에서 서지학적으로 가치가 있다

본래 이 책은 1434년(세종 16)에 왕명에 따라 설순(偰循)이 편찬한 『삼강행실도』와 1518년(중종 13)에 조신(曺伸)이 편찬한 『이륜행실도』를 합본하여 1797년(정조 21)에 수정한 것이다 정조는 이 책의 앞에 실린 윤음에서 '앞서 간행된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라는 책이 선후로 발간되어 학관(學官)에 반포하니 백성을 감화시키고 풍속을 교정하는 근본이 되었으므로 두 책을 표준으로 삼아 향음례(鄕飮禮)를 강조하고 행하려는 뜻'에서 이 책을 간행하게 되었다는 동기를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일반 백성의 충효의열(忠孝義烈)의 유교적 이념을 고취하려는 뜻에서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과 체재를 흥미롭게 편성하였다 즉 판화를 먼저 싣고 그 다음에 행적을 설명하는 글을 붙임으로써 한문지식이 없는 일반 백성들도 누구든지 그림을 통하여 이해하고, 다음에 언해로 설명을 읽도록 체재를 구성하였다

본편에 수록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150인으로 효자 33인, 충신 35인, 열녀 35인, 형제 24인, 종족(宗族) 7인, 붕우(朋友) 11인, 사생(師生) 5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수록된 인물은 대부분 중국인이고,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효자 4인, 충신 7인, 열녀 6인 등 모두 17인이 수록되어 있으며, 중국인의 경우 열국(列國)시대로부터 명나라 때까지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이다

구성은 먼저 도상(圖像)이 실려 있고, 이에 대한 설명과 시(詩), 찬(贊), 그리고 언해가 실려 있다 책의 첫머리에는 정조의 윤음과 이만수의 서문이 실려 있고, 다음에 1432년(세종 14) 권채(權採)가 쓴 『삼강행실도』 원서, 1726년(영조 5) 윤헌주(尹憲柱)가 쓴 『삼강행실도』 원발, 1518년(중종 13) 강혼(姜渾)이 쓴 『이륜행실도』 원서가 실려 있다 그리고 이어서 교열한 감인자(監印者)의 관직과 명단이 덧붙여져 있다

책의 내용을 보면, 권1에는 효자 33인의 효자도와 기사가 실려 있다 특히 수원 출신으로 고려 때의 최루백(崔婁伯)이 15세 때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자 도끼를 들고 쫓아가 호랑이를 찍어 죽이고 아버지의 해육(骸肉)을 그릇에 담아 홍법산(弘法山) 서쪽에 묻고 3년간 여막(廬幕)을 산 행적이 수록되어 있다. 권2에는 충신 35인의 충신도와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고려 때의 충신 정몽주(鄭夢周)와 길재(吉再)의 충절이 실려 있음을 볼 수 있다 권3에는 열녀 35인의 열녀도와 기사 등 역대 열녀의 행적이 소개되어 있다 한편, 권4·5의 충신·종족·붕우·사생은 『이륜행실도』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이다 권4에는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했던 24명의 형제도, 기사와 부록으로 종족간에 화목한 7명의 종족도와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권5에는 붕우간에 의리를 지킨 11명의 붕우도, 기사와 부록으로 사생간에 도리를 극진히 한 5명의 사생도와 기사를 실

고 있어 인륜과 선행을 크게 장려하였다

한편, 여기에 실린 150점의 판화는 조선 후기 판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수록된 인물들의 뛰어난 행실을 기리는 찬과 시를 적은 글 다음에 삽화를 배치, 글을 모르는 사람도 누구든지 흥미를 갖고 이해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과 기법에 있어서 인물·풍속·산수·건물 등 당시의 다양한 면모를 엿볼 수 있고, 유행 화풍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주는데, 특히 새김기술이 정교한 것이 특색이다

13) 『우사별전초월과홀기(右司別前哨月課笏記)』

1795년(정조 19) 겨울에 장용영에서 성급하였다 화성성역을 하며 수성훈련(守城訓練)을 실시한 월과(月課 매월의 일정한 과업)의 차례를 기록한 홀기(笏記)이다 23첩으로 되어 있으며, 첩 뒷면에는 경기도에 있는 능·원·묘에 대한 관련사항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다

화성 성역 당시의 군사의 진법(陣法)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차례로 요점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조(場操 야전훈련)

◉ 열성항오(列成行伍) 줄로 서서 항오(군대를 편성한 행렬)를 이룬다

◉ 토환(吐丸) 탄환을 쏜다 포를 한 번 쏘고, 천아성(天鵝聲)이란 나팔을 분다

◉ 입장(入場) 입장한다

◉ 소개문승장승기(小開門升帳升旗) 문을 조금 열고 장막을 올리고 기를 올린다

◉ 초관기(招官旗) 포를 한 번 쏘면 호적(號笛)을 맡은 청도기(淸道旗)가 좌우로 바로 내려간다 청도기가 무릎을 꿇고 관기(官旗)가 왔다고 고(告)한다 금고(金鼓)를 울리면 호적을 그친다

◉ 청발방(聽發放) 전(傳)에 이르되 관기가 지나오면 무릎을 꿇고 북을 한 번 친다 발방(發放)을 들었느냐고 말하되, 관기가 온 것을 들었느냐, 금고를 듣느냐, 정기(旌旗)는 보느냐, 숙련되게 치고 찌르라, 천천히 걷다가 멈추라, 만인이 한 마음을 갖어라 군법(軍法)에 상도(常道)가 있느냐 하면, 예! 하고 대답한다
발방이 끝나면 차대장(次隊長)이 전과 같이 머리를 두드리라고 한다

◉ 하지방(下地方) 전에 이르되 관기가 지방으로 내려가면 금고를 울리고 대취타(大吹打)와 청도기가 기대(旗隊)를 거느려 보내고 각각 제자리로 돌아간다 청도기가 관기의 지방 도착을 보고하면 금고와 취타(吹打)를 그친다

포를 쏘고 징을 울리면, 오방(五方)의 기초(旗招)를 함께 눕힌다

◉ 개영행(開營行) 숙정포(肅靜砲)를 세 번 쏘면 장일호(掌一號)는 금고를 갓에서 울린다

금고를 그치면 장이호(掌二號)는 포를 쏘고 나팔을 부는 것이 어지럽다 금고를 멈추면 다시 어지럽고 방포(放砲)하며 홍방기(紅方旗)를 오른쪽을 향하여 셋을 세운다 오방의 기초를 점고한다

◉ 분로(分路) 포를 한 번 쏘고 남색 기를 세우며 높이 부른다 포를 한 번 쏘고 백색 기를 세우며 높이 흔들고 북을 친다 군사가 한 바퀴를 돌고 교장(敎場) 앞에 이르면, 포를 쏘고 금고를 울린다 방포가 끝나고 징을 울리면 금고가 그치고, 다시 징을 울리면(앉아서 쉰다) 금고는 그친다

◉ 열진(列陣) 당보(塘報)가 경계를 알리면 방포하고 나팔을 어지럽게 분다 금고를 그치고 다시 나팔을 불다가 금고를 그치면 기를 세운다 몸을 돌이켜 나팔을 불고 바쁘게 북을 치고 대오(隊伍)를 밀치고 나팔을 불면 두 층의 대대로 나누게 된다 1기(旗)가 서면 1·2·3대가 되고 2·3기는 각각 한 대가 되어 앞층이 되고, 2·3기는 각 2·3대로 뒷층이 된다

◉ 전층제방(前層齊放) 적이 백보 안에 있으면 방포하며 나팔을 분다 금고를 그치고 다시 나팔을 불다가 금은 그치고 한 가지만 불며 문을 열어 제친다

금을 그치고 방포하며 천아성을 분다 금을 그치고 불 한 가지를 들고 일어나서 천아성을 분다

◉ 후층출전(後層出戰) 앞층 앞에서 나오기를 기다려 북을 치고 천아성을 분다 병기를 들고 앞을 향하여 소리치며 달려나가서 싸운다

◉ 후층제방(後層齊放)·또 적이 도는 모양을 하면, 한 가지만을 불고 밀치고 연다 금을 그치고 방포하고 천아성을 분다 기대(旗隊)가 활을 쏜다

◉ 전층출전(前層出戰) 뒷층 앞에 나아가 기다려 북을 치고 천아성을 불면 금은 그친다

앞·뒤에 복병(伏兵)을 머물게 한다 금을 울리고 군사를 물려 앞의 복병안으로 들어가면, 복병이 소리치고 일제히 일어난다 연이어 금을 두 번 울리고 범의 소리를 하며 서서 자리를 정한다 북을 치고 천아성을 불면 적이 패하여 물러간다

◉ 양층구출(兩層俱出) 방포하고 북을 친다 두 층이 밀쳐서 빽빽하게 한다 북을 치고 천아성을 불다가 두 층이 함께 적을 쫓는다

적이 패하며 물러가면 금을 그친다

◉ 간화첩퇴(間花疊退) 앞·뒤층이 각각 원대(原隊)를 나눈다 금을 울리면 군사를

물린다

앞층은 빈 곳을 걸러서 물러가 뒷층 뒤에 이른다 연이어 금을 두 번 울린다 뒷층이 빈 곳을 걸러서 물러가 앞층 뒤에 이른다 금을 울려 군사를 물리고 연이어 금을 두 번 울린다, 방포하고 천아성을 분다 금을 그치고 방포하면 징을 울리고 다시 울리며 금을 그친다

◉ 하방영(下方營) 금은 그치고 방포하고 서면 그 높은 곳에서 오른쪽 한 점을 불러 움직이게 하고, 북을 치고 대오를 밀치고 나팔을 분다

금을 그치고 한 가지만 불다가 밀쳐 열고 나팔을 분다 영(營)의 막을 친다 방포하고 징을 울리고 다시 울리면 금을 그친다

◉ 발초급(發樵汲) 방포하고 황대기(黃大旗)를 세우고 북을 친다 각 대의 화병(火兵)은 문을 거쳐서 나간다 금을 그치고 포를 세 번 쏜다 금을 울리면서 대취타로 영문을 닫는다

◉ 사공죄(査功罪) 방포하고 한 가지 나팔만 분다 기대(旗隊)가 일어서고, 금을 그치고 호적을 분다 중군(中軍)에 이르러 가지런히 있는다 금과 호적이 끝나면 전해 이르기를 관기가 지나온다고 한다

차례대로 보고하고 머리를 두드리며 일어나라 하면 응하며 물러간다 공이 있고, 죄가 있는 자를 결정하는 것을 마친다 전해 이르기를 관기가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한다

◉ 수초급(收樵汲) 화병들이 문밖에 이른다 각 병사들은 일어서서 기계를 잡는다 영문을 열고 초급병(땔나무하는 일과 물긷는 일을 하는 병사)을 거둔다 화병을 문을 열고 거두어 드린다

◉ 취반(炊飯) 방포를 세 번하고 금을 울리고 대취타를 하면, 영문을 닫는다 불 한 가지를 들고 일어나서 징을 전하면, 천천히 북을 네 번 친다

◉ 사면조(四面操) 사면에서 적이 오면 포를 쏘고 그 자리에 서서 기를 높이 휘두르고 나팔을 불면 사면의 병사가 일어선다 자벽(子壁)의 군사가 외루(外壘)로 옮겨간다 총수(銃手)가 돌아가면서 쏜다 궁수(弓手)는 활을 쏜다 적이 물러간다 자벽의 병을 거두어 드린다

◉ 수영(收營) 영막(營幕)을 거두어 각 소대(小隊)를 이룬다 대대(大隊)를 이루다가 변해서 두 층이 된다 금을 그치고 몸을 돌려 나팔을 불고 방포 한 번에 오방의 기초가 모두 뒤를 향하여 가리킨다 각 병사가 즉시 뒤를 향해 몸을 돌이킨다 북을 치고 진으로 들어간다 다시 오방의 기초가 모두 앞을 향해 가리킨다 전과 같이 몸을 돌이킨다 진으로 가 대대를 이룬다

◉ 회신지(回信地)
방포하고 천아성을 분다 기치를 세 줄로 나누어 세우고, 대취타로 3기 9대가 이어져 간다 신지(목적지)에 돌아와 안정되면 금을 그친다
◉ 산조(散操) 대취타로 중로(中路)에 이르러 흩어져 나간다

2) 분련(分練)
◉ 대련(隊練) : 방포 한 소리에 제 자리에서 크게 부르면 앞의 일점일기(一點一旗)와 총점창기(摠點槍旗)가 이에 응한다 뒤의 일점일대장(一點一隊長)과 점창기(點槍旗)가 이에 응한다 북과 기를 점검하며 원앙진(鴛鴦陣)을 만든다
◉ 분위양의진(分爲兩儀陣) 금을 그치고 방포 한 소리에 남색과 백색의 큰 기를 세우고 이면(二面)에서 대오를 밀치고 나팔을 불면 양의(兩儀)로 나누어 진다
방포 한 소리에 북을 치면 앞으로 간다 천아성을 불면 고함치며 뛰어 든다 세 번 나가서 싸운다 병사를 물린다
◉ 변위삼재진(變爲三才陣) 남색·홍색·백색의 큰 기를 세우고 삼면에서 대오를 밀치며 나팔을 불면 변해서 삼재가 된다
세 번 앞으로 나아가 싸운다 병사를 물린다
◉ 합위원앙진(合爲鴛鴦陣) 방포 한 소리에 황대기(黃大旗)를 세우고 일면으로 동발을 던져 울린다 합해서 원앙이 된다. 화살을 쏘고 앞으로 간다 세 번 나아가 싸운다 세 번 물러간 후에 방포 한 소리로 몸을 돌려 나팔을 분다 득승고(得勝鼓)를 친다
◉ 초련(哨練) 삼기구대(三旗九隊)가 차례대로 앞으로 와서 앞을 향하여 일제히 열(列)을 지으면 대대(大隊)가 된다
세 번 나아가 싸운다 금을 그치고 첫 번과 두 번째 동발을 던진다 군사를 물린다
◉ 분위양의진(分爲兩儀陣) 남색과 백색의 큰 기를 세우고, 대오를 밀치고 나팔을 분다 양의(兩儀)가 된다 앞의 삼진삼퇴(三進三退)를 비쳐 본 후에 징을 울리고 금을 그친다
◉ 변위삼재진(變爲三才陣) 남색·홍색·백색의 큰 기를 세우고, 대오를 밀치고 나팔을 분다 매대가 변하여 삼재(三才)가 된다 전과 같이 삼진삼퇴 후에 동발을 던져 울린다
◉ 총수련(銃手練) 외줄로 선다 천아성을 불어 다섯 번 돌려가며 쏜다 득승고를 친다

◉ 각진호령(各陣號令) 방진(方陣)에서 방포 일성(一聲)에 그 자리에 서서 높이 부른다 우는 1점이다
원진(圓陣)에서 방포 일성에 전후좌우 사면에서 북을 친다 현무진(玄武陣)에서는 방포 일성에 현무기를 세우고 불 한가지를 들고 일어 난다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대오를 밀치고 나팔을 분다
육화진(六花陣)에서는 방포 일성에 황신기(黃神旗)를 세우고, 불 여섯 가지를 들고 일어나서 움직임을 멈추면 북을 치고 대오를 밀치고 나팔을 분다

14) 『자휼전칙(字恤典則)』

1783년(정조 8) 정조가 흉년에 구걸하며 떠돌아 다니는 10세 이하의 어린아이와 3세 이하의 버려진 아이에 대한 구제대책을 강구하도록 명하여 마련한 규칙을 수록한 책이다 기재양식은 정조의 자휼전칙 윤음(綸音)과 이에 대한 사목(事目)이 한문으로 기록되고 뒷부분에 한글본이 붙어 있다

정조의 자휼전칙 윤음은 만백성의 어버이로서 인정을 베풀기 위해 흉년에 버려진 아이들과 떠돌아 다니며 걸식하는 아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구휼책을 마련하여 이들을 구제하여 인정의 본 뜻을 실천하자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휼전칙 윤음의 실천 강령인 사목은 먼저 이러한 윤음을 내린 정조의 아름다운 뜻을 찬양한 다음, 구체적인 실천 조목 9개조를 밝히고 있다 9개조의 내용은 떠돌아 다니는 행걸아(行乞兒)와 유기아(遺棄兒)의 구제를 위해 지급하는 곡물, 소금, 면포 등의 양과 민간인 수양시 수양자가 이들을 자손으로 받아 들이거나 고공(雇工)으로 부릴 수 있는 법적 기준 등을 정하고, 관에서 이들을 수용 구제할 경우 유접소(留接所)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783년 수원을 비롯하여 전국 각 고을에 내려진 흉년에 버려진 아이, 떠돌아 다니는 아이의 구제 지침서이다

15) 『현륭원지(顯隆園誌)』

정조(1752~1800)가 비운의 생부 장헌세자(莊獻世子 1735~1762)의 묘를 양주 남쪽 중량포(中梁浦) 배봉산(拜峯山) 영우원(永祐園)에서 수원 화산(花山) 현륭원(顯隆園 현재의 융릉)으로 천봉(遷奉)할 때 친히 지은 원지(園誌)이다 『현륭원지』는 정조 사후 1814년(순조 14)에 간행된 『홍재전서(弘齋全書)』 184권 100책(장서각장서, 1986년 太學社刊) 중 권16 「지(誌)」속에 수록되어 있다

정조는 임오화변(壬午禍變) 때 비명(非命)으로 세상을 떠난 사도세자(思悼世子)를 신원(伸寃)하는 일이 생부에 대한 효도와 원통함을 풀고 정조 자신의 정통성 확보와 왕권 강화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즉위 초인 1776년 3월 사도세자의 존호를 장헌세자로 올리고, 묘의 원호(園號)를 영우원, 7월에는 궁호를 경모궁(景慕宮)으로 높였다 이때 친히 「영우원비문(永祐園碑文)」을 지었다 이어서 1783년(정조 7)에 선친의 존호를 소급하여 '수덕돈경(綏德敦慶)'이라 하였으며, 이듬해에는 또 존호를 소급하여 올려 '홍인경지(弘仁景祉)'라고 하였다(『현륭원지』 참조) 그리고 1789년(정조 13) 10월 7일에는 오랜 숙원이던 선친의 묘역을 최길지(最吉地) 명당으로 지목된 수원 구읍치 자리인 화산으로 이장하였다 이때 정조가 친히 지은 어제(御製) 현륭원 지석(誌石)도 함께 묻혀졌다 정조는 또한 앞의 『현륭원지』와 함께 장헌세자의 일생과 활동을 기록한 『현륭원행장(顯隆園行狀)』과 「현륭원비문(顯隆園碑文)」을 친히 지을 만큼 선친에 대한 깊은 추모의 정을 쏟았다 이 현륭원 천봉을 계기로 부읍치를 옮기는 대대적인 수원 신도시 건설작업이 시작되었으며, 1793년(정조 17) 1월 선친의 능묘가 있는 수원을 '화성(華城)'으로 고치고 유수부(留守府)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1794~1796년(정조 18~20)까지 국력을 기울여 역사적인 화성성곽을 축조하고, 576칸에 이르는 조선 최대의 화성행궁을 영건하였다

『현륭원지』의 내용은 먼저 현륭원이 수원 화산의 계좌정향(癸坐丁向)에 위치해 있고, 정조 13년 7월에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의 상소를 계기로 10월 7일 반룡농주형(盤龍弄珠形 서려있는 용이 구슬을 갖고 노는 형상)의 이곳에 천장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다 이어서 장헌세자의 이름은 선(愃), 자는 윤관(允寬), 1735년(영조 11) 1월 21일 영조와 영빈이씨(映嬪李氏)의 아들로 태어나 출생 1년만에 세자에 책봉되었다는 사실, 탄생에서 성장기에 이르기까지 영특함과 검소한 성품, 지극한 효성과 학문에 힘쓴 사실, 10세에 풍산홍씨(豊山洪氏) 홍봉한(洪鳳漢)의 딸 혜경궁(惠慶宮)과의 결혼과정, 1749년(영조 25) 서정(庶政)을 대리하게 된 과정을 소상히 서술하였다 그리고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하는 과정에서의 총명하고 지효(至孝)함과 형제간의 우애, 학문과 무예에 대한 식견, 병서 『무기신식(武技新式)』을 엮어 반포한 사실, 서정에 힘쓰는 검소한 습관과 무예·의술·복식 등에 관한 세자의 깊은 조예 등 여러 가지 일화(逸話)들을 소개하고 있다

『현륭원지』는 이어서 세자를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뜨려 대리청정을 거두게 하려는 김상로(金尙魯)·홍인한(洪麟漢)·구선복(具善復) 등의 노론 권신과 숙의문씨(淑儀文氏) 등의 세자에 대한 무고(誣告), 김한구(金漢耉)와 그 일파인 홍계희(洪啓禧)·윤급(尹汲) 등의 사주를 받은 윤급의 청지기 나경언(羅景彦)의 세자의 비행에 대한 무함 상

소가 밝혀져 나경언이 복주(伏誅)된 사실을 『기주(記註)』·『궁중기문(宮中記聞)』 등의 문헌을 인용, 당시 세자가 당면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억울함을 토로하였다 마침내 1742년(영조 38) 윤 5월 세자를 서인(庶人)으로 폐한데 이어 뒤주 속에 가둬 비명(非命)으로 아사(餓死)시킨 임오화변(壬午禍變) 때 조정 내 신하들의 동향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하였다 예컨대 영조가 임오화변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나경언의 세자를 무함한 고변(告變) 때 판의금부사 한익모(韓翼暮)·대사간 이심원(李心源)이 나경언의 복주와 아울러 그를 사주한 배후 세력을 철저히 사핵할 것을 청하다가 파직된 사실, 검열(檢閱) 윤숙(尹塾)·분사(分司)의 한림 임덕제(林德躋), 궁관 임성(任城)·권정침(權正忱), 분주서(分注書) 이광현(李光鉉), 도승지 이이장(李彝章), 분사의 제조 한광조(韓光肇), 승지 조중회(趙重晦)·이익원(李翼元), 총관 이태화(李泰和) 등도 세자를 아사시키려는 영조의 처분에 적극 반대하거나 만류했고, 또 뒤주 속에 갇힌 세자를 구하기 위하여 힘쓰다가 삭탈 관직되거나 유배된 경위를 『기주』를 인용하여 밝혀 놓았다

세자가 마침내 1762년(영조 38) 윤 5월 21일에 별세한 뒤 '사도(思悼)'라는 시호와 '수은(垂恩)'이라는 궁묘의 호를 내렸으며, 그해 7월 23일 양주 배봉산 갑좌(甲坐)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그 뒤 1768년(영조 44) 왕이 신료들 앞에서 하교하기를 "아, 임오년의 말을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자질(資質)이 훌륭하였건만, 내가 정말 인자하지 못하였다"라 후회했고, 1774년(영조 50) 여름에는 영조가 세손(정조)을 대동 친히 수은묘에 나아가 제문을 친제(親製)하고 헌작례(奠酌禮)를 행한 사실, 1776년(영조 52) 봄에 영조는 세손의 청에 따라 "『정원일기(政院日記)』와 공가(公家)의 문적 중 1757년~1762년(영조 33~38)까지의 차마 말하기 곤란한 점이 있는 내용은 모두 세초(洗草)하라"고 명한 뒤 "이후로 임오년의 일을 언급할 경우 마땅히 역률로 논죄할 것"을 하교한 사실, 그리고 세손으로 하여금 묘소에 가서 전배(展拜)하고 제사를 지내게 한 뒤 영조의 슬픔과 괴로움을 하교한 사실도 기록하였다

『현륭원지』는 글 뒷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다

"장헌세자의 행록을 살펴보면, 2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의소세손(懿昭世孫)으로서 이름이 정(琔)이고, 차남은 바로 소자(정조)로서 이름은 산(祘)이다 딸들은 광산(光山) 김기성(金箕性)과 오천(烏川) 정재화(鄭在和)에게 출가하였다 서자가 3명 있는데 인(裀)·진(禛)·찬(禶)이고, 서녀 하나는 당성(唐城) 홍익돈(洪益惇)에게 시집갔다 자손들에 대한 기록은 옛 행장을 따라 간략히 쓰니, 오르내리는 신령이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바이다"

한편 정조가 선친을 추모하기 위하여 친제(親製)한 또 다른 글 「영우원비」·「현륭원

비」는 『홍재전서』 권15 비(碑)에, 그리고 「현륭원행장」은 『홍재전서』 권18 행장(行狀)에 수록되어 있어 참고가 되어 준다. 정조는 현륭원을 천봉하던 정조 13년에서 24년(1800)까지 13차의 원행(園幸)을 정기적으로 거행했고, 말년에는 정조 자신도 왕위에서 물러나면 자신이 건설한 수원 신도시 행궁에 은퇴하여 만년을 보낼 것을 스스로 구상하기도 했다고 한다 아무튼 정조는 선친에 대한 추모와 효심에서 비롯된 현륭원 천봉을 계기로 이읍과 근대적인 신도시 건설, 유수부 승격, 화성행궁과 화성성곽의 축조, 국왕의 호위와 화성방어를 담당할 장용외영(壯勇外營)의 화성 주둔 등으로 자신의 구상을 확대 실현시켰으며, 그 결과 현륭원이 봉안된 수원은 계몽군주 정조의 왕권강화와 개혁왕정을 상징하는 정치도시로, 또 수도에 버금가는 행정·군사·산업의 중심지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다 1899년(광무 3) 11월에 장헌세자를 장조(莊祖)로 추존하였고, 현륭원도 융릉(隆陵)으로 격상되었다. 1800년 정조가 49세를 일기로 승하한 뒤 생전에 염원대로 이곳 서쪽 건릉(健陵)에 묻혔다

16) 『화성궐리지(華城闕里誌)』

1792년(정조 16) 10월 3일 정조의 전교(傳敎)를 받들어 화성부 남쪽 40리 지점, 곧 문공산(文公山) 구정촌(九井村 · 현 오산시 궐동)에 창건되어 공자의 영정(影幀)을 봉안했던 궐리사(闕里祠)의 역사적 유래·사적·비품·규칙 등을 적어 1927년에 간행된 사우지(祠宇誌)이다 본래 이곳은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공자(孔子)의 64세손인 공서린(孔瑞麟 · 1483~1541)의 옛집과 서재(書齋)가 있던 유서깊은 옛터로서, 창건 당시의 행정구역은 화성부 중규면(中逵面) 구정촌이었으며, 현재의 궐리·궐동은 이 궐리사가 위치해 있었다는 데서 그 지명이 유래된 것이다

정조 때 궐리사 건립에 앞서 이 곳에 집을 짓고 서당을 설립했던 공서린의 자는 희성(希聖), 호는 휴암(休巖)이며, 군자감정(軍資監正) 희(禧)의 고손, 소격서령(昭格署令) 숙(淑)의 증손, 증(贈)영의정 제로(悌老)의 손자, 현령(縣令) 의달(義達)의 아들로 이곳 구정촌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다 일찍이 김굉필(金宏弼)의 문하에서 수학하면서 조광조(趙光祖)·권발(權撥)·김정국(金正國) 등과 교유하였다 1507년(중종 2) 생원이 되고, 그 해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한 뒤, 1509년(중종 4) 좌랑으로서 정전예연(正殿禮宴)에서 여악(女樂)을 쓰지 말 것을 건의했고, 사전(祀典)체제를 정비할 때 강경서(姜景敍)·김안국(金安國) 등과 함께 기신재(忌晨齋) 혁파에 힘썼다 1511년 사간원 정언을 거쳐, 홍문관 부수찬·수찬·사헌부 지평 등을 지냈다. 1516년(중종 11) 장령으로 경연(經筵)에서 노산군(魯山君)과 연산군의 입후(立後) 문제를 제기했고, 이듬해 시강관(侍講官)으로

경연에 참석하여 언로(言路)의 확장을 주장하였다 1518년 이조참의를 거쳐 『성리대전(性理大全)』 편찬의 감독능력이 있는 인물로 선발되었고, 승정원 부승지로 대간(臺諫)을 논박했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물러났다

1519년(중종 14) 좌승지로 다시 서용되었으나,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조광조 등 사림파 인물들과 함께 투옥되었다가 곧 풀려났다 1524년(중종 19) 남곤(南袞)의 주청으로 공조참의가 되었고, 1527년에 양양부사(襄陽府使), 1532년 파주목사(坡州牧使)를 지냈다. 1533년 구수담(具壽聃)·이준경(李浚慶) 등과 함께 기묘당인(己卯黨人)을 서용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화를 입은 선비들의 무죄를 상소했다가 수차 관직을 삭탈당하였다 정권을 장악하여 횡포를 부리던 김안로(金安老)가 죽자, 1538년(중종 33)에 경기도 관찰사, 이듬해 황해도 관찰사를 거쳐 부제학·사헌부 대사헌·동지부 중추사를 역임하였다 벼슬에서 물러나 향리에 서당을 세워 후진을 양성하다가 1년 반만에 별세하였다 생전에 성품이 온화하고 자상했으며, 청백리에 선발되었다 정조 16년 문헌(文獻)이란 시호를 내렸다 현 오산시 궐동의 궐리사에 배향되었다

1792년(정조 16) 10월 3일, 정조는 수원 현륭원(顯隆園)에서 가까운 독성산성(禿城山城)의 수축을 끝낸 후, 궐리사 창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교하였다(『정조실록』 16년 10월 戊辰)

"공씨(孔氏)가 우리나라에 건너와 맨 먼저 수원에 정착한 사실이 읍지에 실려 있는데, 일전에 도신으로 하여금 그곳의 형태를 그림으로 그려 올리게 하여 이 그림에서 찾아보니 궐리사란 사우(祠宇)도 있고, 수십리 떨어진 곳에는 새로 지은 영당(影堂)이 있다고 하였다. 문헌공(공서린)의 시호를 내린 뒤로도 조정이 공씨 집안을 우대하는 일에 있어 보통 예와는 달리해야 할 것이니, 도백으로 하여금 궐리 옛터에다 집 한 채를 세워 내각(內閣)에 있는 성상(聖像)을 모시게 하고 영당에 모셨던 진영(眞影)도 모셔다가 함께 봉안한 다음 이름을 '궐리사'라고 하라 사우의 편액은 써서 내리겠다 봄·가을로 지방 수령에게 향(香)과 축(祝)을 내려 제사를 모시게 하고 제사에 쓰이는 제수들은 이성(尼城 논산) 궐리사의 예대로 시행하되, 한사코 정갈하고 간략하게 하라. 그렇게 하고 나면 이른바 새로 세웠다는 영당은 고을 유생들이 사사로이 세운 것에 불과하고 또 간직했던 영정마저도 함께 봉안하였으니, 재목이며 돌들도 당연히 이곳에다 옮겨 세워야 할 것이다. 어찌 감히 사사로이 제향을 드릴 일이겠는가 서원(書院)을 지키는 재생(齋生)에 있어서도 그 마을에 대대로 살아온 공씨를 시키도록 하고, 다른 유생은 감히 섞이지 못하게 하여 시비거리가 없도록 하라 이 전교를 써서 강당에다 게시하라"

정조의 이 전교와 『화성궐리지』(1927년간)의 서(序)·양한계서(陽漢禊序)·창건(刱建)·영당(影堂)조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첫째 공서린의 옛집과 서재 터에 정조가 명명한 '궐리사'란 편액을 내릴 것, 사우(祠宇)를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것, 둘째 이곳에는 내각(규장각)에 소장된 공자의 영정과 함께 화성부 광덕면(廣德面) 소재의 지방 선비들이 세운 영당은 헐고 그곳에 보관된 진영(眞影)도 이 곳에 옮겨 봉안할 것, 셋째 향사(享祀)는 1년에 봄·가을로 두 차례 시행하되 지방 수령에게 향(香)과 축(祝)을 내려 제향을 모시며, 그 의례는 논산 궐리사의 예를 따를 것, 넷째 서원을 관리하는 재생은 그곳에 거주하는 공씨 가문에서 선정하여 다른 유생과 섞이지 못하게 할 것, 다섯째 정조 16년 10월 3일에 내린 왕의 전교를 궐리사 강당에 게시할 것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대에 창건된 화성 궐리사의 유래·사적·규칙·운영·변천 등에 대해서는 1927년에 김철현(金喆鉉)이 간행한 1책 28장의 『화성궐리지』 속에 대체로 그 윤곽이 나타나 있다 이 책의 내용 구성은 맨머리에 그 경위를 밝힌 김철현이 쓴 화성궐리지 서(序 1927), 봄(3월)·가을(9월) 두 차례 향사 때 쓰일 제수(祭需)를 준비·담당하는 계(禊)조직인 화성궐리양한계서(華城闕里陽漢禊序 1896년 徐政淳씀), 궐리지의 편찬 원칙과 궐리사 변천을 간략히 기술한 범례(凡例), 도(圖 華城闕里圖1, 文山圖1, 公山圖, 位田圖4), 세가(世家 공자를 문선왕(文宣王)으로 왕가에 준함), 궐리사가 처음 건립하게 된 배경과 유래를 적은 창건(刱建), 1871년(고종 8) 3월 대원군이 전국의 사액서원(賜額書院) 47곳만 남기고 모두 철폐시킬 때 철폐된 사실을 적은 폐철(廢撤), 1894년(고종 31) 3월 심의윤(沈宜允)·공병렬(孔秉烈)의 고유와 사림 손홍함(孫興咸)의 향사향수(享祀享需)를 담당한 양한계 통문이 적힌 설단(設壇 附設壇時告由文, 設壇時通文), 1871년 사우가 폐철된 후 1900년(광무 3) 7월 심의윤·서정순·공광렬(孔光烈)·공병렬 및 사림·공씨후손 등이 장례원원경(掌禮院院卿)에게 상주하여 중건한 사실과 양한계에서 3월·9월의 석채향수(釋菜享需)를 영구 봉행하게 된 내용이 적힌 중건(重建 . 附重建後奉安時告由文), 1739년(정조 17) 내각에서 내린 것과 광덕면 구묘(舊廟)에서 옮겨온 대(大) 1본, 소(小) 2본의 영정과 1871년 폐철 이후의 보관 경위를 적은 영정, 제향의 절차·위치 및 이때 읽을 백록동규(白鹿洞規)·오교지목(五敎之目) 등을 적은 홀기(笏記 附相揖禮圖笏記), 어제축문식(御製祝文式)·본사축문(本祠祝文)을 적은 축문(祝文 附設壇後祝文, 庚子重建後奉安闕里誌 小像祝文), 향수(享需)의 진설법을 적은 진설도(陳設圖 · 甲午設壇時陳設圖, 庚子重建閣時陳設圖, 丙寅秋享時始用牲幣陳設圖)가 있다

이어서 제사 물품의 종류를 적은 사품(祀品), 제상·향상·제기·촛대 등을 적은 비

품(備品), 제관과 계(稧)의 규칙을 적은 규칙(規則 祭官齊戒節目, 稧規), 열성조친제제문(列聖朝親製祭文 궐리사에 파견되어 제문을 읽었던 정조 19년 윤 2월 10일의 예조판서 민종현(閔鍾顯), 순조 10년 9월 9일의 예조정랑 홍택주(洪宅柱), 익종 3월 28일의 수원유수 박영원(朴永元) 등을 적은 제문(祭文), 공자(문선왕)의 주대(周代)부터 명대(明代)까지 가계(家系)와 공자의 54세손 창원백(昌原伯) 소(紹 호 昌庵)가 고려 말 우리나라에 들어와 벼슬이 문하시랑·평장사에 이른 사실, 부(俯 호 漁村)가 고려조 집현전 태학사에 오른 사실, 서린(瑞麟 호 休巖)이 중종대에 벼슬이 현달하고 청백리에 뽑힌 사실 1746년(영조 22) 기묘명현·이조판서·양관제학을 추증했고, 정조 16년 문헌공으로 증시한 사실을 기록하고 「역사보유(歷史補遺)」에서는 조선 태조에서 고종대에 이르는 열성조수교(列聖朝受敎) 등을 역사(歷史 附補遺)에 수록하였다

한편 이 책에는 공자의 탄생·활동·자손·묘·고적·사단(祀壇)·사우·서원·행단(杏壇) 등의 제반 사실을 기록한 사적(事蹟) 그리고 명(銘)과 가장(歌章) 등의 항목이 끝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화성궐리지』는 비록 일제시대에 간행된 것이지만, 조선 후기 정조대에 국왕의 큰 관심 아래 창건되어 조선 말기 고종대에 폐철과 중건을 거듭한 과정, 그리고 이 고장의 사림과 공씨 후손들의 노력으로 이 사우를 관리·운영해온 경위가 소략한 대로 나타난 사우지(祠宇誌)이다 정조가 이 고장에 화원(畵員)을 보내어 그림을 그려오게 하고 사우를 건립하여 공자를 봉안하고 그 후손 공서린을 배향케 한 사실, 사액현판과 영정의 하사, 조정대신과 수령방백을 파견하여 공서린의 구지(舊趾)·서재 유허(遺墟)·유정(遺井) 등을 수리하고 제향을 받든 배려 등은 정조대의 대(對) 수원향촌정책에 있어서 유학 장려와 향풍(鄕風)을 진작시키려 한 의도와 더불어 매우 주목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화성궐리지』 서문과 창건조를 통하여 이 사우의 건립을 위하여 이미 정조 16년 9월 3일 경기관찰사 서정수(徐鼎脩)가 전교를 받들어 화사(畵師)를 파견한 일, 수원부 패장(牌將) 박만호(朴萬戶)·박동칠(朴東喆, 地師)를 파견하여 사우 터를 살핀 일, 이해 10월 9일 전(前) 훈련대장 이경무(李敬懋)가 수원부사로 부임하여 개기(開基)를 둘러본 일, 13일에는 모군 80명과 목수 9인이 공역에 참가한 일, 이듬해인 정조 17년 4월 25일에는 신문(神門)·정문(正門)·정당(正堂) 등이 거의 완성, 마침내 6월 20일에 광덕면 영당에서 옮겨온 영정 대(大) 1본과 19일 내각에서 내려진 영정 소(小) 2본이 봉안된 사실, 그리고 정조 19년 윤 2월 10일에 예조판서 민종현이 향사에 참여, 정조 친제의 제문을 읽은 일 등은 이제까지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인 사실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장 일록(日錄)·등록(謄錄)·계록(啓錄)

1) 『건릉기사(健陵紀事)』

정조(正祖 재위 1776~1800)의 재위 시절의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규장각 소장 도서로서 37권 16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질이 남아 있다(도서번호 규(奎)No 12479 및 No. 12626, 각 1질 다만 후자 규(奎)No 1266 필사본의 경우 분책한 것이 전자와 달라서 같은 내용을 29책으로 하였다) 『건릉기사』라는 제목이 아니라 겉표지에는 단지 『기사(紀事)』라고만 되어 있고, 안에 『본조기사(本朝紀事)』라고 된 필사본도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도서번호 규(奎)No 6699) 『건릉기사』와 본문의 내용 및 체재가 거의 동일하다 『건릉기사』는 필사본 상태이므로 간기(刊記)가 없고 서문, 발문 등도 없어 편자 또는 저자에 대하여 알 수 없다 내용이나 체재로 미루어서 역대의 사실을 기록한 관찬 편집물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체재는 월별(月別)로 정조 재위 당시의 크고 작은 정치적 사건을 기록하였으나, 내용 가운데 왕실의 일상 의례에 대한 기록도 매우 충실하다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대하여는 임금인 정조의 조치와 중신들의 의견을 거의 모두 요약하여 수록하였다

이 책 『건릉기사』는 정조 시대에 관한 기록이기는 하지만, 권1에 별도로 정조가 즉위하기 전 해인 1775년(영조 51) 12월의 기사가 삽입되어 있다. 아마 12월부터 정조의 대리청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각 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1·2·3 정조 즉위년(1776), 권4 정조 원년(1777), 권5 정조 2년(1778), 권6 정조 3년(1779), 권7·8 정조 4년(1780), 권9 정조 5년(1781), 권10·11 정조 6년(1782), 권12 · 정조 7년(1783), 권13·14 . 정조 8년(1784), 권15 : 정조 9년(1785), 권16·17 정조 10년(1786), 권18 정조 11년(1787), 권19·20 정조 12년(1788), 권21 정조 13년(1789), 권22 정조 14년(1790), 권23·24 정조 15년(1791), 권25·26·27 정조 16년(1792), 권28 . 정조 17년(1793), 권29·30 정조 18년(1794), 권31·32 정조 19년(1795), 권33 정조 20년(1796), 권34 정조 21년(1797), 권35 정조 22년(1798), 권36 정조23년(1799), 권37 정조 24년(1800)

이 책 가운데 수원과 관련된 기록은 정조 13년(권21) 및 정조 17년에서 정조 20년까지의 기록에 주로 포함되어 있다 정조 13년은 사도세자의 묘소인 영우원(永佑園)

을 당시 수원부가 있던 화산으로 이장하여 현륭원(顯隆園)이라 명명한 시기이다 정조 17년에는 화성 축성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정조 18년 착공되고 정조 20년에 준공되었다 이에 관한 자료는 『정조실록』과 『홍재전서』 등에도 실려 있으나(『정조실록』 및 『홍재전서』 항목 참조), 이 책 『건릉기사』는 『정조실록』 및 『홍재전서』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자료이다 같은 날짜의 『정조실록』과 『홍재전서』의 기사를 찾아 대조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특히 중요 정책에 대한 임금과 신하들의 의견을 아는데 좋은 자료이다 또 당시 궁중의 일상적 의례에 대하여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2)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조선 중·후기에 있어서 국정의 수부(首府)였던 비변사(備邊司)에서 매일 매일의 회의 내용을 수록한 총 12왕조 280여년간의 기록이다 273책의 필사본으로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현존분은 완전한 일질(一秩)은 못되지만 각 왕대를 잇는 그 방대한 양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못지 않은 귀중한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비변사의 설치는 그 정확한 연대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조선의 국가체제가 일단 정비완료된 뒤의 임시조처로써 16세기 초엽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6세기에 들어오면서 조선은 대내적으로는 왕권을 중심으로 한 훈구세력과 사림세력 간의 사화·당쟁, 대외적으로는 왜구와 여진족의 변경 침입이 점차 노골화되는 상황하에서 국방경비사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비변사를 설치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지봉유설(芝峰類說)』·『반계수록(磻溪隨錄)』 등에서는 비변사의 설치시기를 을묘왜란(乙卯倭亂 1555년, 명종 10)이 일어났을 때로 보고 있고, 일인(日人)학자 시게요시만지(重吉萬治)는 이보다 앞선 삼포왜란(三浦倭亂 1510년, 중종 5)을 비변사 설치의 직접적 계기로 보고 있다 한편 신석호(申奭鎬)는 비변사가 1517년(중종 12) 북변 여진족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해 처음으로 설치되었다가 곧 폐지되고 이로부터 3년 후인 1520년에 다시 설치되었다고 하고, 이 당시는 임시기관이었으나 1522년부터 상설기관화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초기에 이와 같이 단순한 국방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된 비변사의 임무와 기능은 점차 본래의 영역과 목적을 떠나 성격을 변모시켜 갔다 처음 임시기구로서의 비변사는 명칭도 '책성사(築城司)'였으나 1517년 6월 삼공(三公)의 의견에 따라 비변사라 개칭되고, 1522년 추자도(楸子島) 등지의 왜구 침입을 계기로 상설기구화되었다 이때 비변사는 군무만을 주관하던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군사기밀을 모두 처리하였으며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비변사 폐지론까지 대두하였다 비변사는 그후 임진왜란을 통해 급격한 확장을 보게되어 문무고관의 합의기관으로 비변당상(備邊堂上)의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왕권을 제약하고 압도하는 기구로 정착되고 비대해져갔다

따라서 후기에는 비변사에 대한 부정적인 논란이 자주 일어나고 급기야 대원군(大院君)의 일련의 왕권강화책에 의해 그 기능을 의정부(議政府)에 넘겨주게 되기까지 비변사는 실로 약 300년 동안 정부의 정책결정을 주도해 온 권력기구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비변사의 직무와 권한이 막중했던 만큼 그 회의의 기록으로서 남겨진 이 등록은 그 내용상 사료로서의 가치가 다른 어느 것보다도 큰 것이 사실이다 본래 비변사가 설치된 해인 1517년을 기준으로 하면 모두 349년 분이 되어야 하나, 임진왜란 이전의 기록은 전란 중에 산일되고 1617년(광해군 9) 이후의 것이 남아있다. 1865년(고종 2)에 비변사가 폐지된 뒤에는 의정부 안에 비변사와 유사한 조직이 마련되어 1892년(고종 29)까지 같은 체재의 기록이 계속되었는데, 이 기록도 『비변사등록』 안에 포함되어 있다 엄격히 말하면 이 기록은 의정부등록(議政府謄錄)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합쳐서 비변사등록으로 불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 등록에서 결질되어 있는 부분을 연대별로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광해군(光海君) 10년(7월), 11~15년.
② 인조(仁祖) 2년(7~12월), 3~11년, 13~15년, 17년(1~4월), 17(6월)~18년(9월), 18년(11~12월), 21년
③ 효종(孝宗) 2, 6, 9~10년
④ 현종(顯宗) 7년, 13~15년.
⑤ 숙종(肅宗) 6~7년, 22~24년, 27년, 35년, 38년(7~12월)
⑥ 경종(景宗) 1~2년
⑦ 영조(英祖) 19년(7~12월), 20년, 24년, 26년(7~12월), 30년(1~6월), 48~49, 52년.
⑧ 정조(正祖) 7년, 9년, 16~17년(7~12월), 18년(1~6월), 19년, 23년(1~5월)
⑨ 순조(純祖) 8, 15, 21년
⑩ 헌종(憲宗) : 8년
⑪ 고종(高宗) : 1~2년, 4~6년, 11년(이상 동합 54년분이 결질)

각 왕대별 현존분의 책순(冊順)은 광해군(제1~2책), 인조(제3~13책), 효종(제14~19책), 현종(제20~30책), 숙종(제31~73책), 경종(제74~76책), 영조(제77~157책), 정

조(제158~191책), 순조(제192~222책), 헌종(제223~236책), 철종(제237~250책), 고종(제251~273책)으로 총 273책이 되며 표제는 '광해조비국(光海朝備局)', '임진등록(壬辰謄錄)', '정부(政府)' 등으로 일정하지 않다

『비변사등록』에는 조선 후기의 국정전반에 걸치는 기본적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 당대에도 실록편찬의 중요한 자료로 『승정원일기』, 『일성록(日省錄)』과 함께 이용되었던 만큼 제1차 사료로써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그 양상을 추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충실히 수록하였다는 점, 그리고 앞에서 소개한 수많은 절목(節目)·사목(事目)·별단(別單) 등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그 사료적 가치가 인정된다

이러한 『비변사등록』에 수록된 수원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영조 31년 12월 13일 수원별효사절목성책(水原別驍士節目成冊)
② 정조 21년 2월 22일 화성부내신접부실호삼모구획절목(華城府內新接富實戶蔘帽區劃節目)
③ 순조 2년 9월 2일 장용영전곡목포내력급구처별단(壯勇營錢穀木布來歷及區處別單)
④ 순조 2년 10월 1일 장용영시재은전미목포구처별단(壯勇營時在銀錢米木布區處別單)

이 가운데 화성부와 장용영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사 둘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화성부내신접부실삼모구획절목(華城府內新接富實蔘帽區劃節目) 정조 21년 2월 22일, 18책 591면~594면

1 모집해 들인 자들이 비록 부실(富實)하다고는 하지만, 새로 옮길 때에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니 항산(恒産)을 먼저 생각하고, 제도를 마련하여 근기(根基)의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미삼(尾蔘)의 무역이 아직 영구히 예속된 곳이 없으니, 부실한 자 20인을 선발하여 계(契)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화성에 이주하여 집을 짓고 살면서 사업을 하도록 하면서 자손 대대로 계속 거주시킨다는 것

1 관모(官帽)는 산매(散賣)하게 된 뒤로 별달리 주관하는 사람이 없으니, 지금 화성에 이거(移居)할 부실(富實)한 가호에게 주관하도록 하여 연경(燕京)의 시장에서 무역하거나 의주의 저자에서 사오게 하되, 청포전(靑布廛)의 면세분(免稅分) 1백척(隻)

은 전인(廛人)에게 내주고 그 나머지는 물주(物主)가 주관하여 각처에서 매매하도록 하여 유통하도록 한다 교역은 시가에 따라하여 폐단이 없도록 한다

1 양남(兩南) 지방의 집에서 심는 삼(蔘)은 근래에 점차 풍성해져서 교역과 매매가 하나의 생업이 되고 있다 이번에 이거하는 자들은 대부분 전에 물주 노릇을 하던 자들이고, 또 미삼계(尾蔘契)에 속한 자들도 물주로 삼아 이들로 하여금 무역을 주관하게 하면 양쪽을 편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관모와 가삼(家蔘)을 막론하고 화성의 물주와 차인(差人)이 아니면 본지(本地)에서 직접 사지 못하도록 하고 각처의 상고(商賈)들도 모두 화성에서 교역하도록 하여 난잡의 폐단이 없도록 한다

1 이번에 부실호(富實戶)를 옮겨 살도록 하는 것은 실로 화성의 소중한 일이라 절목을 작성하니 각항의 구획(區劃)이 어찌 다만 이들만을 위한 것일까 결국 성(城) 안의 민호(民戶)가 많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도 덕의(德意)를 받들 줄 알아서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서로 권계(勸誡)하며 성실하고 각근(恪勤)한 자는 특별히 뽑아서 등용하겠다고 이미 초기(草記)의 비답에 말하였다 만약 부랑(浮浪)하고 어긋난 습관이나 사람을 속이고 이익만 독점하는 폐단이 있을 경우, 계중(契中)에서 적발하여 관에 알리도록 하고, 관에서는 이를 조사하여 엄히 다스린다

1 부호(富戶) 응모인을 이미 20호로 정액하였으니, 성명을 기록한 명단을 만들어 하나는 본사(本司)에 하나는 유수에 둔다 후일 만약 숫자가 점차 늘어날 경우 이익이 감소하여 자생(資生)에 부족하게 되고 사람수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잡다한 폐단이 생길 것이므로 20인 이외에는 1인도 더 정하지 못하게 한다 혹시 탈이 생기든가 죄를 짓든가 하여 명단에서 삭제되었을 경우 그들로 하여금 합당한 자를 가려서 유부(留府)에 고하게 함으로써 본사에 보고하여 문안에 기록하도록 한다

1 금번에 부호(富戶)를 모집해 들여 삼과 모자의 업을 경영하게 하는 것은 사실 성안에 사람이 많이 살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성안에 원래 살던 사람들도 같이 혜택을 받아야만 백성들을 골고루 잘 살게 하는 좋은 정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모자나 삼을 막론하고 그 이익(利益)을 매년 1천냥씩 본부(本府)의 교리청(校吏廳)에 떼어주어서 혜택이 고루 미치도록 하는 바탕을 삼는다

1 관전(官錢) 10만냥은 이미 허대(許貸)하여 미삼계에 이속하게 하여 관모와 가삼을 전관하도록 구획한 즉 분배할 때 출납의 방도를 불가불 일일이 소상하게하여 별도 식(式)을 만든 후 이들에게 편부를 논하게 한 다음 추가로 절목을 만들어 본부로부터 본사에 보고하고 성첩(成貼)하여 준행(遵行)한다

1 미진조건 추후마련

특히 위의 정조년 기사는 그 당시 상품화폐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 자료로서 특히 신흥 상공업세력의 실체와 새로운 상업질서의 확립을 통한 왕권강화 정책을 담고 있어 주목이 된다.

장용영전곡목포내력급구처별단(壯勇營錢穀木布來歷及區處別單) 순조 2년 9월 2일, 19책 484면~498면

장용영에서 기존의 재정 운용 내역을 전(錢)·곡(穀)·목포(木布) 등 사용 명목을 세분하면서, 기존 항목별 재정지출의 액수를 먼저 적고, 다음으로 발생 연도와 항목 발생 내력으로 유취(貿取) 등의 방식에 의한 기금 마련 내역 및 이의 사용처 등, 그리고 장용영 혁파 이후 이의 다른 부서로의 이속(移屬) 내역을 정리한 별단이다 미(米)는 전체 42개 항목을 액수별로 나누어 그 내력 및 구처의 내용을 적고 있다 태(太)의 경우는 전체 약 3,700여석을 9개 항목으로, 목(木)의 경우 21개 항목, 포(布)는 전부 39동(同) 20소(疋)을 6개 항목으로, 전(錢)은 47개 항목 등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1792년에 마련한 35,800냥 상당의 환곡을 비변사에서 취모(取耗)하여 원행과 행궁의 수리 등에 사용하다가 1799년에 장용영으로 넘겼던 것을 금년(1802)부터 선혜청으로 이속한다는 내용의 「별고소관급향색환곡잉분취모질(別庫所管及餉色還穀仍分取耗秩)」이 19개 액수별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2일자 비변사에서 장용영에 남아 있는 많은 액수의 은전(銀錢)·곡·목·포의 처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들의 일부는 각 관청과 내수사 및 각 궁방의 1801년과 1802년 두 해의 노비공물의 비용을 마련하는 것과 나머지 일부는 호조에 넘겨 훈련도감에 소속시킨 군사들이 살아나가는 데 쓰는 비용으로 각각 전용하였다

3) 『수원부계록(水原府啓錄)』

1845년(헌종 11)에서 1877년(고종 14)까지의 수원부에서 비변사(備邊司)에 올린 계본(啓本)을 토대로 비변사에서 합편(合編)한 것이다 3책의 필사본으로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표지서명은 『화영계록(華營啓錄)』으로 되어있다. 3책이 보존되었는데, 각 책에 포함된 기재시기(記載時期)와 그 당시 수원유수(水原留守)의 성명과 재임기간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제1책 송근수(宋近洙, 1874년(고종 11) 11월~1876년 8월), 박규수(朴珪壽, 1876년 8

월~12월), 김병지(金炳地, 1876년 12월~1877년 12월) 제2책 이경하(李景夏, 1866년 10월~1869년 2월) 제3책 : 이휘정(李輝正, 1844년(헌종 10) 1월~1845년 11월), 이약우(李若愚, 1845년 11월~1847년 9월), 김좌근(金左根, 1847년 9월~1849년 7월), 김란순(金蘭淳, 1849년 7월~1851년(철종 2) 4월), 조병준(趙秉駿, 1851년 4월~12월), 서영순(徐英淳, 1851년 12월~1853년 11월), 이학수(李鶴秀, 1853년 11월~1858년 1월) 등 이다 이와 같이 각 유수의 재임시의 계본이 모두 남아있는 것은 아니며, 그리고 날마다 치계(馳啓)하지는 않았지만, 본래 치계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대부분 본부와 비변사와의 사이에 전달된 지시·보고 사항의 면모를 자세히 살필 수 있다 또한 수원부의 사정 일반, 특히 연중행사나 문서수발은 물론 행정조직의 일면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중 이례적인 것만을 들어 보더라도 정월(正月)의 현륭원(顯隆園)·화령전(華寧殿) 등에 분향(焚香)·치제(致祭)한 보고와 권농문(勸農文) 등 반사문(頒赦文)을 들 수 있고, 3월~8월 사이에 계속되는 농형(農形)·천기(天氣) 보고와 주로 4월~5월에 실시되는 도시[都試 주로 무과(武科)]의 설치와 합격자에 대한 보고, 9월~10월의 재급요청(災給要請)에 관한 기사를 볼 수 있다 마지막 12월의 세수응자노인보고(歲首應資老人報告), 통내사학지류형찰(統內邪學之類詗察)·공도회[公都會 문과(文科)·시취(試取)]·청국헌서(靑國憲書) 등에 관한 보고·지시사항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각 책마다의 특징적인 기사로는 제1책의 이양선(異樣船)·기우제(祈雨祭)·기민(饑民) 관계 기록과 제2책의 관노비(官奴婢)·교원노비(校院奴婢) 및 악공(樂工)· 의녀추쇄사목마련(醫女推刷事目磨鍊 병인 12월 29일조)·도시(都試)·이양선 등에 관한 기록, 제3책의 도시(1845년 12월 26일, 1848년 12월 24일조 등)·별천(別薦) 등에 관한 기록 등을 들 수 있겠다 지방 행정의 일차적인 자료의 하나로, 위와 같은 기록을 세밀히 분석하면 각 시기 마다의 성격상 차이도 검출해 낼 수 있겠으며, 기본적인 행정조직의 구조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기우제 때 제관(祭官)으로 인근 지방관 외에도 다수 부내유생(府內儒生)들이 참여하는 것이라든지, 실화(失火)에 대한 면임(面任)의 문책(問責), 유수(留守)의 수령가합인(守令可合人) 천거(薦擧) 등에 관한 기록도 여러 가지 검토를 요하는 문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 책은 지방행정을 살필 수 있는 일차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4) 『수원하지초록(水原下旨抄錄)』

→『수원지령등록(水原旨令謄錄)』

1789년(정조 13) 7월 12일부터 1791년(정조 15) 1월 14일까지 이읍(移邑)을 전후한 시

기에 수원부에 내린 전령(傳令)에 의거, 당시 수원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연월일 순으로 초록(抄錄)한 것이다 편자미상의 이 책은 일명 「수원지령등록(水原旨令謄錄)」이라고도 한다 『수원하지초록』은 규장각도서에 소장된 일·이·삼 3책의 필사본으로, 그 크기는 세로 35㎝×가로 23㎝이다

정조 13년 7월 11일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으로부터 양주(楊州) 남쪽 중량포(中梁浦) 배봉산(拜峯山) 기슭의 영우원(永祐園 정조의 생부 장헌세자의 묘역)은 묘역이 비좁아 서둘러 천봉(遷奉)해야 한다는 상소가 있자, 즉위 초부터 이장할 뜻을 갖고 있던 정조는 이를 계기로 숙원이던 선친묘의 천장(遷葬)을 공론화시켰다 그 결과 당시 수원부 읍치가 위치하고 있던 수원부 용복면(龍伏面) 화산(花山)이 최길지의 명당으로 최종 낙점되기에 이르렀다 이때는 현륭원(顯隆園) 천봉(이해 10월 7일에 이장)을 3개월 앞둔 시점으로서, 국왕과 조정 대신들의 시선이 온통 이곳에 집중되고 있던 수원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읍과 천릉작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역사적인 매우 중대한 시기였다 그리하여 이해 8월에는 화산 신원(新園)의 원호를 '현륭원'이라 정하고, 천릉작업과 동시에 수원부 읍치를 팔달산 기슭 신기리(新機里)로 옮기는 대대적인 신도시 이전작업이 병행 진행되었다 현륭원 역사와 왕의 능행에 대비하여 행궁·도로·교량 등이 서둘러 영건되고, 능묘의 이장에 따른 구읍민이 겪어야 할 고통과 번거로움, 집과 토지수용에 따른 급가대책(給價對策) 무과세(無課稅) 특전과 환곡 감면, 행정구역의 변화, 신읍치 건설과 현륭원의 원찰(願刹) 용주사(龍珠寺 정조 14년 10월 6일에 완공) 건립 유공자에 대한 상전(賞典), 수원과 인근 속읍민에 대한 특별 과시(科試)의 설치 등 속읍민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수원하지초록』은 현륭원 천봉과 신읍치 건설이 계획·실행되던 역사적인 시기에 수원부에 내린 전령에 의거, 수원부에서 보고한 제반 문제를 초록(抄錄)한 자료인 만큼 이 시기 정조의 대(對) 수원정책과 아울러 지방사정과 민(民)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책별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책 수원부소하전령등서(水原府所下傳令謄書), 별군부(別軍附)

이 책의 시기는 1789년(정조 13) 7월 12일부터 1791년(정조 15) 1월 14일까지이다. 먼저 7월 12일 기사에는 구읍 객사(客舍) 외문에 모인 읍내의 부노(父老)·교리(校吏)·군졸 등에 대한 정조의 효유(曉諭) 내용에 대하여 거의 동의하고 찬양했다는 것과 모인 사인(士人)들의 명단을 기재했고, 7월 15일 기사에는 구읍 천봉지 주위에는 공해(公廨)·민가·전답 이외에도 현감을 지낸 이관진(李寬鎭)과 그 선대의 묘들이 산재해 있었으므로 그 대책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이어서 이듬해(1790년) 3월 13일 기사에는 수

원부 읍내의 유생(儒生)·무사(武士)의 별시(別試) 과거의 설치·시행한 내용과 응제피초인(應製被抄人)·응사입격인(應射入格人) 별로 등급·명단을 후록하였다. 이해 4월 14일, 5월 2일, 5월 6일, 5월 8일, 6월 5일, 8월 9일, 8월 11일, 8월 13일, 8월 14일, 10월 7일, 10월 10일, 12월 8일, 12월 7일, 12월 10일, 12월 12일 등의 기사는 정조의 특별 명령으로 수원 신읍치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한 문·무과 별시의 시행 내용, 문과의 응제피초인과 무과의 응사입격인의 등급·명단 그리고 상전(賞典)과 특혜조치 등을 수록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당시 수원부에서 문·무과 별시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였고 시취(試取)를 통하여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는 특전이 베풀어지고 있음을 알려 주는 자료이다. 그리고 10월 7일과 12월 10일 기사에서는 문·무과 별시의 응시자격은 수원부에 호적이 있는 자로서 신읍치에 권속과 더불어 신접해온 계권유생(契眷儒生)과 부내 각면의 외촌(外村)유생, 그리고 본읍 내의 원거무사(原居武士)와 신접 한량(閑良)들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5월 2일 기사에는 이해 정조의 거둥 때 응역(應役)한 교리와 지난해 원역(園役) 때 수고가 큰 교리·선차인수(扇次人數)와 성명을 기록해 올리라는 전령에 대하여 성첩(成貼)해 올린다는 것, 5월 7일 기사에는 지난해 겨울 동헌(東軒)·향교(鄕校)·객사 등을 신건한 후 상전을 내린데 이어 득중정(得中亭)·와호헌(臥護軒)·복내당(福內堂)·진남루(鎭南樓)·강무당(講武堂)·각청(各廳)·각창(各倉) 등의 공역 후 낙성연을 베풀어 감동인(監董人)에게 시상한 전례에 따라 이번에는 비장(裨將)·향임(鄕任)·교리 등 공로가 큰 자들을 후록해 올리라는 전령 내용과 함께 득중정·진남루·강무당·와호헌·장용영(壯勇營)·전목고(錢木庫)·비장청·군향고(軍餉庫)·고사(庫舍)·고마고대청(雇馬庫大廳)·관청대청·어승마마혜(御承馬馬廨)·군기대청(軍器大廳)·군수고(軍需庫)·미고(米庫)·명륜당(明倫堂)·집사청(執事廳)·초관청(哨官廳)·방영군(防營軍)관청·토포군(討捕軍)관청·별요사청(別驍士廳)·작청(作廳)·영선(營繕)·교방(敎房)·객사익랑(翼廊)·외삼문·외담장 등의 「신건공해간수(新建公廨間數)」, 그리고 이 건물들을 영건하는데 노고가 컸던 자들의 직책과 이름을 「감동비장향소장교하리질(監董裨將鄕所將校下吏秩)」에서 후록하였다. 5월 8일 기사에는 앞의 신건공해의 공역 때 공이 큰 감동·비장·교리 등은 마땅히 지난해 행궁을 이룩했던 때의 전례에 따라 직책과 명단을 성첩, 시상키로 했다는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9월 22일 기사에는 식목감관(植木監官) 노대철(盧大喆)과 그의 동생 노완철(盧完喆)의 식목군가(植木軍價) 문제를, 9월 23일 기사에는 원관(園官)·차원(差員) 등의 식목에 대한 근만(勤慢) 문제를 가려내고 각별히 진력해야 할 사항을, 10월 1일 기사에는 원

관·차원·비장 등은 식목사업을 명심해서 실행할 것과 원관·지방관·수원부사는 식목길일(吉日)에 유념하여 보토(補土)·보사(補莎)할 보토군가 문제 등을 언급하고 있다 10월 6일 기사에는 현륭원 원찰 용주사(龍珠寺)의 신건간수(新建間數 본건물 145칸, 중문 9칸, 담장 249칸 규모)와 간역책응패교리장수승도질(看役策應牌校吏匠手僧徒秩)을 후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새로 완공된 용주사의 건물별 칸수, 감동도간역(監董都看役) 이하 책응·패장·교리·장수·승도들의 이름과 공역일수를 상세히 수록하였다 또 10월 7일 기사에는 용주사 공역후 공로가 큰 각 부문 책임자와 실무자·기술자 승도(僧徒)들에게 역할에 상응한 상전을 내리고 있다 예컨대 지방관인 수원부사 조심태(趙心泰)에게는 말 1필을, 도간역 이인찰방(利仁察訪) 조윤식(曺允植)을 기읍수령(畿邑守令), 도책응영패(都策應營牌) 전(前)현감 구수한(具壽漢)을 수령에 승서(陞敍) 조용(調用)하였다 당대의 명화공(名畵工)이자 불탱주관감동(佛幀主管監董) 전찰방(前察訪) 김홍도(金弘道)와 감동 절충(折衝) 김득신(金得臣)도 각각 사과(司果)직에 영부(永付)시켰다 또한 책응 겸 간역 수원부 패장 한량(閑良) 신숙(申肅)은 원역(園役)과 사역(寺役)에 공로가 크다고 하여 오위장(五衛將)에 가자(加資)했으며, 용주사 사역에 진력한 각 장리(將吏)·승도·각색공장(各色工匠) 등에게도 이에 상응한 상전을 베풀었다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끝으로 1791년(정조 15) 1월 5일과 1월 14일 기사에는 수원부 내 순뢰(巡牢)의 사천참(沙川站)에서의 분대(分待)와 열립(列立) 문제, 용주사 승통(僧統)의 갑주(甲冑) 지급과 승모군가(僧募軍價) 문제, 본부 별시 과거를 둘러싸고 계권(契眷)유생과 미계권유생의 응시자격과 폐단 등이 수록되어 있다

(2) 제2책 수원부소하유지등서(水原府所下有旨謄書), 장계부(狀啓附)

1789년(정조 13) 7월 15일에서 1790년 12월 20일까지의 기사가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구읍민호에 대한 이전(移轉) 대책·산송원관정리교논상(山訟園官定吏校論賞)·수원 부노사민(父老士民)들에 대한 정조의 효유(曉諭) 내용, 관찰사의 원속(園屬) 폐단에 대한 보고, 권농효유(勸農曉諭), 원군(園軍)에 대한 식량 획급, 구읍민호의 철이(撤移) 문제에 대한 응지상계(應旨上啓), 군액 문제, 원소 역사의 물력 조달방법에 대한 논의 등이 주내용을 이루고 있다

7월 15일 기사에는 현륭원 원역을 앞두고 원소도감(園所都監)의 감조관(監造官)·간역(看役)·패장(牌將) 자리 등에 대하여 수원부의 토교(土校)와 경교(京校)의 임용 문제, 7월 16일 기사에는 현륭원 천봉과 신읍치 결정 직후 정조가 수원부에 내린 특별 효유 중의 하나인 수원부에 구금되어 있는 죄수들은 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석방시키

고, 읍을 옮길 때까지 수금(囚禁)하지 말 것, 그리고 수원부민으로 유배된 자도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해당 감사로 하여금 방면케 할 것과 정조의 이러한 뜻을 민간에 널리 효유토록 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7월 17일 기사에는 표처(標處) 부근의 반이민호(搬移民戶)의 가주(家主)·역(役)·성명 및 집 칸수, 급가수(給價數) 등을 조사하여 성첩할 것에 대한 내용과 구읍 주민 중 20명의 가주 성명·직역 및 신분·가사(家舍) 규모가 후록되어 있고, 구읍민의 이주비용으로 내탕고(內帑庫)에서 1만냥을 하사한다는 내용을 장교 장광욱(張光郁)이 와서 알려준 사실을 기록하였다 7월 19일 기사에는 구읍의 반이민호는 244호이며, 이주비용으로 국왕이 내린 내탕고전에서 각 민호에게 우선 급가하되, 봉표혈(封標穴) 민호 20호에게는 본가 외에 50냥을 가급(加給)하고, 피잔(疲殘)의 무리에게는 본가의 2~4배를 분급해 주며, 본가 또한 타처 보다 특별히 우급해 주도록 배려하였다 그리고 이 날 반이민호를 구읍 객사 앞뜰에 모아놓고, 각 호마다 집과 전답에 대한 보상으로 본가외에 가급가를 분급하니, 이러한 특별혜택에 대하여 주민의 대부분은 크게 감읍하였다 그리고 이날 신읍치에서 새집을 지을 비용으로 가사 1,789칸 반의 원가 3,457냥, 가급 4,112냥, 합계 7,569냥을 분급해 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7월 24일 기사에는 표국(標局) 내 주민들의 전답을 절가(折價)하기로 하고, 그 두수(斗數)·부수(卜數) 그리고 전답주의 성명을 조사 기록하니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후록하고 있다

진전(陳田) 53부 7속·관둔전 33부 6속·가대전(家垈田) 1결 33부 5속(價錢은 價舍價에 들어감)·기전(起田) 4결 79부 9속·춘모(春牟) 1,192두 7승·낙지가전(落只價錢) 1,790냥 8전·기답(起沓) 1결 80부 8속·정조(正租) 117두 8승·낙지가전 1,447냥 5전·합계 3,233냥

8월3일 기사에는 구읍민의 인가철훼(人家撤毁)가 봉표혈 주변 뿐만 아니라 원소의 화소(火巢) 내까지 확대되어, 능침의 화소 내 민호도 무인가접(無人家接)의 예에 따라 신읍치로 옮겨 이사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8월 5일 신읍치의 읍기(邑基)가 위치할 팔달산(八達山) 기슭 일대는 본래 진사 이운행(李運行) 집안의 소유였으며, 신읍의 향교 터로 잡은 신기리(新機里) 일대는 그의 가문 누대(累代)의 분묘 5기(基)가 자리잡고 있었다 경기도 순영(巡營)에서는 산지주인을 초치(招致)하여 산가를 후급(厚給)해 주었고, 뒤에 정조는 산지 수용에 협력한 이운행의 공을 참작하여 등용을 명하였다(『정조실록』 8월 7일조) 9월 26일 기사에는 이때까지 신읍치의 반이민호 242호 가운데 90호의 이거자(移居者)가 아직 집을 짓지 못했고, 아직도 150호 가량이 이래

(移來)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9월 26일 기사에는 이때까지 신읍에 조성된 관아 건물은 행궁 27칸, 내아(內衙) 34칸, 객사 20칸, 향교 51칸, 군수고 19칸, 창사(倉舍) 60칸, 각처 담장 278칸 등 읍참(邑站)·행궁·객사·향교 건물들의 영건된 칸수를 후록하고 있다. 이어서 후록된 「감동비장장교질(監董裨將將校秩)」에는 22명의 감동·비장·장교들의 직책과 종사일수를 밝혔는데, 이 가운데 수원 출신이 16명, 그 다음은 서울 민인(民人)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 신도시 건설 공역에 참여하여 종사한 일수는 각기 44~74일간에 이르며, 특히 순영동근패장(巡營董飭牌將) 예빈시봉사(禮賓寺奉事) 조윤식(曺允植)은 74일의 공역일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는 이때의 공로를 인정받아 6품 외직에 조용(調用)되었다 9월 28일 기사에는 이때까지 급가받은 반이민호는 319호, 가사(家舍) 2,417칸, 원가 4,818냥, 가급 4,394냥, 합계 9,212냥, 불수가원류(不受價願留) 16호, 기수가고류(已受價姑留) 119호임을 기록하고 있다 9월 29일 기사는 신읍의 행궁·객사·향교 조성에 공이 큰 감독·실무자·기술자들의 이름·직책·상전 내용 등을 밝히고 있다

10월 14일 기사는 정조가 수원 부노(父老) 등에게 유시(諭示)한 내용과 원소 부근 면리 및 신읍 이주민에게 10년간을 급복(給復)하고, 신환곡은 탕감하며 수보미(需保米)도 분급했으며, 부내 각 면리에는 1년간의 급복(給復)과 구환곡 가운데 오래된 3년 조는 탕감하고, 수보미도 수량을 나누어 탕감케 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날 장헌세자의 온천행(溫泉幸)과 이번 정조의 원행을 우러러 본 70세 이상의 조간(朝官)과 80세 이상의 사서(士庶)에 가자(加資)하고, 이듬해 봄부터 별시 문·무과를 개설하여, 근무가 오랜 교속(校屬)에 대한 관직 제수와 조천(調遷)시킬 것을 하교한 내용을 담고 있다

1790년(정조 14) 2월 2일 기사에는 원소의 식목공역과 운영, 원관(園官)의 차원(差員) 문제를, 득중정의 어사(御射) 때 과녁을 맞춘 장교·군사들을 후록하고 상전을 내린 사실과 2월 10일 기사에는 본부의 어전에 대령했던 순령수(巡令手) 10명·뇌자(牢子) 8명·취고수(吹鼓手) 33명 등 57명에게 각각 포목 1필씩 시상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이어서 각해차지교련관질(各該次知敎鍊官秩)·각무감색일등질(各務監色一等秩)·각무감색이등질·각무감색삼등질 등을 후록, 교련관과 각급 감색 등을 표창하였다 2월 12일 기사에 수원의 부노·사민(士民)들에게 유시한 내용을, 7월 15일 기사에는 수원 신읍내의 민호가 구읍천사민인(舊邑遷徙民人) 469호, 원거민인(原居民人) 63호, 천사협호인(遷徙挾戶人) 46호, 타처 이래민인 141호, 도합 719호에 이를 정도로 그 수가 크게 증가했음과 환폐(還弊)의 시정 사실을 기록하였다 8월 18일 기사에는 광주부의 일용(日用)·송동(松洞) 양면이 수원부에 이속됨에 따른 467명의 군액 200여석을 탕감해 주어 이 면 주민들이 정조의 효유에 감읍한 사실을 적어 놓았다

10월 14일 기사에 원소에 식목한 서울 거주의 전 경력(經歷) 이경대(李敬大), 수원부 거주 절충(折衝) 김낙함(金樂咸)과 한량 박수의(朴首義), 출신 여문영(呂文永) 등의 식수 사실과 이름을 후록했고, 10월 22일 기사에는 당시에 식목한 소나무 45여만주가 거의 착근된 사실, 또 앞의 식목에 공로가 큰 이경대·김낙함·박수의 등을 후록한 사실, 원관·지방관의 식목에 대한 성근(誠勤) 문제와 본부의 교리(校吏)·군병들을 분등 시상할 문제, 그리고 실역(實役) 8~17일에 이르는 장교 황재담(黃再淡) 등 12인을 후록하였다

(3) 제3권 ①순영소하유지등서(巡營所下有旨謄書), 장용영관문부(壯勇營關文附)
②원도도감하유지등서(園都都監下有旨謄書), 장계부(壯啓附)

①의 기사는 1789년(정조 13) 7월 13일~1790년(정조 14) 11월 3일까지, ②의 기사는 1789년(정조 13) 7월 12일~10월 2일까지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①에서는 현륭원 천봉과 정조의 거둥을 앞두고 진공(進供) 문제(7월 17일), 수원과 과천로 간의 복병(伏兵) 문제(9월 13일), 주필소(駐蹕所) 설치 문제(10월 1일), 신읍의 향교가 자리할 땅의 주인 이운항(행)(李運恒[行])이 성근(誠勤)하며 공역에 가인(家人)을 수용하는 등 협조적이어서 후일에 조용(調用)할 문제(10월 18일), 수원·광주·과천 3읍의 별시 문·무과의 개설과 왕의 친임(親臨) 하에 시취할 문제(12월 27일, 1790년 1월 4일·7일, 2월 2일), 이읍 공역에 참여한 고군(雇軍)에 대한 고가(雇價)가 후하지 못하다는 불평이 있으므로 민은(民隱)을 살펴 고가우급해야 할 문제(1790년 2월 13일), 별시 문·무과의 개설과 절차·진행할 문제(3월 7일, 11월 3일) 등을 수록하였다

②의 기사는 주로 조정대신과 지사(地師)들에 의하여 원소의 풍수지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것이 큰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 이에 관한 기사는 1789년(정조 13) 7월 12일~10월 2일에 걸쳐 기재되어 있다

이상 3책으로 구성된 이 책은, 현륭원 천봉과 수원 신도시를 건설하던 시기의 대(對)수원정책, 그리고 이읍 초기의 신·구읍의 지방사정과 관·민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피는데 매우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5)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623년(인조 1) 3월~1910년(융희 4) 8월까지 승정원에서 처리한 왕명출납·행정사무·의례 등을 기록한 일기로 3,245책의 필사본이다 원래는 1623년부터 1894년(고종 31)까지 기록으로 3,047책인데,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 직제의 개편으로 부서명은

다르지만 그 기능을 계승한 관서의 일기를 합하면 모두 3,245책이 된다

책명·책수·대상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승정원일기(3,047책)』는 1623년 3월~1894년 6월, 『승선원일기(承宣院日記 4책)』는 1894년 7월~1894년 10월, 『궁내부일기(宮內府日記 5책)』는 1894년 11월~1895년 3월, 『비서감일기(秘書監日記 8책)』는 1895년 4월~1895년 10월, 『비서원일기(秘書院日記 115책)』은 1895년 11월~1905년 2월, 『비서감일기 33책』는 1905년 3월~1907년 10월, 『규장각일기(奎章閣日記 : 33책)』는 1907년 11월~1910년 8월을 각각 대상 시기로 하였다

승정원의 직제는 도승지 이하 정3품의 승지 6인과 정7품의 주서(注書) 2인으로 『승정원일기』의 서술은 주서가 담당하였다 이곳에는 가관(假官)·분관(分官)으로 가승지·분승지·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가주서·분주서를 둔 반면에, 다른 가관·분관은 임시로 임명되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 전쟁에 관한 사실을 기록하고자 임시로 둔 사변가주서는 계속하여 군무(軍務)·칙사(勅使)·국안(鞫案) 등을 담당하였다 주서가 기록한 내용은 한달마다 다시 정리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았고, 그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쳤다. 이는 곧바로 성책(成冊)하는데, 분량이 많으면 두 책으로 윤달의 경우에는 따로 성책하였다

고려시대에도 승정원과 같은 기능을 가진 부서를 두었다 즉 성종대(981~997)는 은대남북원(銀臺南北院)을 두어 왕명의 출납을, 현종대(1009~1031)에는 중추원에 정3품의 승선(承宣) 4인과 정7품의 당후관(堂後官) 2인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케하였다 이후 부서와 관명은 변천되었으나 기능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기록은 현존하지 않는다 조선 건국 직후 중추원에 5인 승지와 2인의 당후관을 두어 왕명의 출납과 기록을 담당하다가 1400년(정종 2)에 승정원은 독립되었다 이듬해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와 승정원을 합쳐 승추부(承樞府)로 개칭하고 도승지 이하를 지신사(知申事)·대언(代言)이라 칭하였다 1405년(태종 5)에 대언 1인을 증원하는 동시에 이들을 승지로 개칭했다

조선 전기의 『승정원일기』는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으로, 이후 1623년까지의 일기도 이괄(李适)의 난으로 대부분 소실되었다 인조 때에 1592년 이후의 일기를 보수하였으나, 1744년(영조 20) 화재로 소실되는 등 현존하는 『승정원일기』는 후일에 보수한 부분이 많다 즉 당시 화재로 1592년에서 1721년(경종 1)까지의 일기가 소실되자, 1746년(영조 22)에 일기청을 설치하여 보수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때 조보(朝報)를 비롯한 각 사(司)의 일기·등록(謄錄)과 관인의 일기·문집 등이 널리 이용되었다 이듬해 말에 548책을 개수하였는데, 이는 본래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 1888년(고종 25)에 승정원의 화재로 1851년(철종 2)부터 1888년까지의 일기 361책이 소실되자,

1890년(고종 27)에 개수를 마무리하였다 이 외에도 분실이나 소실이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의 보수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승정원일기』는 여러 차례의 보수에도 최대한의 사료를 수집·보수하였기 때문에 사료적인 가치는 매우 높다

『육전조례(六典條例)』·『은대조례(銀臺條例)』·『은대편고(銀臺便考)』에 나타난 승정원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왕명의 하달(下達)과 하의(下意)를 상달(上達)하였다 승정원은 정3품의 관아이나 의정부·비변사·육조·홍문관 등에 대한 왕명은 이를 통해 이루어졌다 중요한 공사(公事)의 기록인 일기의 기술, 조보의 제술, 궁궐·궐문의 개폐 등도 승정원이 담당하였다 둘째로 경연(經筵)·입시(入侍)의 참석은 물론이고 추국(推鞫), 관리의 임면(任免)·상벌, 과거시험, 병무 등과 관련된 사항에도 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궁중의 제향(祭享), 국왕의 동가(動駕), 대외적인 사대·교린에 참여하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있었다

그런 만큼 조선 후기의 기본사료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일성록(日省錄)』 등과 더불어 『승정원일기』도 쌍벽을 이룬다 특히 이 책은 국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기록과 매일 기록한 일차적인 사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더욱 높다 『승정원일기』의 원본은 초서(草書)로 해독(解讀)이 난이함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國史編纂委員會)에서 해서(楷書)로 고치고 구두점을 찍어 출판함으로써 연구자의 이용에 편리함을 주고 있다

6) 『일성록(日省錄)』

1760년(영조 36)~1910년(융희 4)간의 국정(國政)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한 637책의 필사본 일기체(日記體) 연대기(年代記)이다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비변사등록』과 더불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관찬(官撰) 연대기(年代記) 사서(史書)의 하나이다. 실록(實錄)의 기록에 따르면 1785년(정조 9) 7월, 왕이 규장각(奎章閣)·승정원(承政院)·홍문관(弘文館)의 제신(諸臣)에게 명하여 편찬케 한 것이며, 1752년(영조 28, 정조 생년)부터의 기록이 편찬되었다 하나 실제로는 1760년부터의 기록으로 되어 있다 또 1760년에서 1776년(정조 즉위)까지의 기록은 이후의 것에 비하여 매우 소략한 편이다 정조 즉위년(卽位年) 이전의 기록은 정조 세손(世孫)시의 일록(日錄)인 「존현각일기(尊賢閣日記)」에 기초한 것이라 하나, 그 내용은 영조의 임어소견(臨御召見)·과강(課講)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이복원(李福源)이 찬(撰)한 「일성록서(日省錄序)」(1785년경)에 따르면, 정조의 『일성록』 찬수(纂修)는 선왕(先王)인 영조의 『어제자성편(御製自省編)』의 뜻을 본받은 것으로 둘이 모두

유교적 덕치를 이상으로 군주가 자성(自省)의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군주가 통치의 거울로 삼기 위한 사서로서는 실록이 있었지만, 당대의 실록은 후대에 가서야 찬수되며 당대의 사실을 다룬 사초(史草)는 군왕이라 해도 쉽게 볼 수 없었으므로, 매일 매일의 반성에 도움이 되기는 힘들었던 것이다

「일성록서(日省錄序)」·『일성록범례(日省錄凡例 규장각검서관 유본예(柳本藝) 편찬)』·『정조실록(正祖實錄)』 등을 통해 찬수 담당자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정조 자신에 의해 쓰여졌다 하나, 규장각이 설치된 이후로는 각신(閣臣)이 대찬(代撰)하였다 한다 특히 출초(出草)는 입직(入直) 검서(檢書)가 맡았으며, 검서는 매일의 초본(草本)을 매 5일 마다 정서(正書)하여 입계(入啓)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순조 때부터는 승정원일기와 같이 매월분을 다음 달 20일에 입계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누락(漏落)이 있어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음 해 정월에 꺼내어서 추보(追補)하였다 이렇게 입계된 초본을 보고 군주가 재가(裁可)를 내렸고 이것이 모아져 권질(卷帙)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체재(體裁)는 상략(詳略)의 차이는 있으나, 전시기(全時期)가 대체로 같은데 매사마다 요목(要目)을 세워 간결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각 기사의 첫머리에 그 내용을 요약한 표제를 붙여 열람에 편하도록 하였다 일록적 기록으로는 그 성격이 승정원일기와 같아 편찬 초기부터 이와 구별되는 성격의 규정에 고심하였으나, 상기(上記) 『범례』에 밝혀져 있듯이 그 기록이 『일기』에 비하여 "글은 생략하고 사건은 상세히 한다(文省而事詳)"라 하여 춘관(春官)의 의주(儀注), 도신(道臣)의 장계(狀啓), 환급(還給)한 상소(上疏), 의금부(義禁府)와 형조(刑曹)의 수공(囚供) 및 살옥안(殺獄案), 상언명쟁지계(上言鳴錚之啓), 사대교린문자(事大交隣文字), 사행견문별단(使行見聞別單) 등은 오직 『일성록』에만 실려 있다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는 간결한 기술을 위주로 하나 국왕의 분부·재가는 전문(全文)을 수록하였고 다만 신하들의 주(奏)·계(啓) 등은 산초(刪秒)하여 실었다 기사들이 수록되는 순서는 천문(天文)·제향(祭享)·임어(臨御)·소견(召見) 등의 순서로 실었다 『범례』에 의한 분류 순서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앞의 네가지 항목에 이어 반사은전(頒賜恩典)·제배체해(除拜遞解)·소차(疏箚)·계사(啓辭)·초기서계별단(草記書啓別單)·장계(狀啓)·과시(科試)·형옥(刑獄)류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일성록』의 분량은 2,300여책에 이르는 거질(巨帙)을 이루고 있다 이같은 양은 『일성록』에서 다루고 있는 기간이 150년 간이란 비교적 짧은 것임을 생각할 때 상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00년간을 다루는 실록의 총자수(總字數)가 5천만자에 못미침에 비해, 본서의 자수(字數)는 이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양에 걸맞게 그 사료적 가치도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본서도 『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 등의

전통적 사서와 같이 왕조중심(王朝中心) 혹은 치자중심(治者中心)임을 면치 못한다 또『일성록』이라는 이름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군주의 자성을 위해 편찬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동양의 전통사회에서는 어디에나 공통되는 것이었다 전통적 역사기록의 대부분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치자(治者)의 반성 내지는 통치의 자(資)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일성록』의 사료적 평가는 이와 같은 한계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일성록』이 사료로서 다른 기록보다 우월한 것은 그것이 축일(逐日)로 쓰여졌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즉 역대의 실록은 신왕(新王)이 전왕(前王) 때의 사초(史草)를 토대로 그 전왕의 실록을 찬수(纂修)하는 것이기 때문에『일성록』이 보다 근본적인 사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같은 일록적 성격의『승정원일기』에 비해서는 그 내용이 정리되어 이용에 편리하며, 또 후자에는 수록되지 않는 기록이『일성록』에만 수록되어 있어 그 사료적 가치를 높여준다 한편『고종실록(高宗實錄)』·『순종실록(純宗實錄)』은 한일병합(韓日倂合) 뒤 일인(日人)에 의해 정리된 것으로 그 공정성은 애초에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또 같은 시기의『승정원일기』는 상당부분이 소실되어『일성록』을 참고로 한 개수일기(改修日記)라 한다 이렇게 볼 때『일성록』의 사료로서의 중요성은 매우 높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소장처는 규장각도서이다

『일성록』에는 특히 정조대에 장헌세자를 화산으로 이장하면서부터의 융릉관련 기사와 국왕의 친위부대인 장용영의 외영 설치와 관련된 기사, 수원 화성 건립관련 기사 및 혜경궁 홍씨의 화갑을 기념하고자 1795년에 현륭원에 행차할 당시의 기록들이 상당수 있다

7)『정조강서원일기(正祖講書院日記)』

정조(正祖)의 세손(世孫) 시절에 대한 일기로서 그날 그날의 기록을 시강원(侍講院)에서 편한 것이다 정조는 5세인 1756년(영조 32) 원손(元孫)이 되고 8세 때인 1759년(영조 35)에 세손에 책봉되었으며 1762년(영조 38) 생부 사도세자의 죽음을 계기로 동궁(東宮)이 되었다『정조강서원일기』는 1759년 8세 때 세손이 된 때부터 11세인 1762년 동궁이 될 때까지의 기록이다『정조강서원일기』가 끝나는 바로 다음날『정조동궁일기』가 시작되고 있다 다만 이 가운데 1761년(영조 37)의 기록은 누락되어 있다 이 책은 필사본 3책으로 현재 규장각 소속의 도서로 남아 있다 원손은 세자의 맏아들로서 다음 다음의 왕위 계승권 자격을 갖는다 다만 이는 그 후보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세손(世孫)으로 책봉되어야 정식으로 다음 다음의 왕위 계승권자가

된다

조선시대에는 원손이 세손으로 책봉되면 그 교육을 강서원(講書院)에서 맡도록 하였다 강서원의 정식 명칭은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이다 세손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설 기관이 아니고 필요한 때만 설치되었다 1448년(세종 30), 1649년(인조 27), 그리고 바로 1759년(영조 35)에 설치되었다 최고 관원인 사(師)는 종1품, 다음의 부(傅)도 종1품으로서 격이 매우 높은 기구였으며 세손에게 여러 경전을 강하였다 사와 부 외에도 좌우(左右) 유선(諭善) 각 1인, 좌우 익선(翊善) 각 1인, 좌우 권독(勸讀) 각 1인, 좌우 찬독(贊讀) 각 1인이 있었다 각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책은 1759년(영조 35) 2월~12월 정조 8세 때의 기록이다 제2책은 1760년(영조 36)의 기록이다 1761년(영조 37)의 기록은 누락되어 제3책이 1762년(영조 38) 1월~8월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매일 세손 주변의 동정과 강서의 내용이 약기되었으며, 날짜·날씨·입시·설강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정조가 유년시절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잘 알 수 있어 정조 사상의 형성 배경을 알 수 있다 통상적인 관청의 일기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당시의 정치적 사건 등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이 책은 『정조원손궁일기(正祖元孫宮日記)』, 『정조동궁일기(正祖東宮日記)』, 『정조청정일기(正祖聽政日記)』와 더불어 즉위 이전 정조의 동정을 아는데 매우 좋은 자료이다 다만 즉위 이전 기사이므로 수원과 직접적인 관련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다

8) 『정조동궁일기(正祖東宮日記)』

정조의 동궁 시절에 관한 일기로서 그날 그날의 기록을 시강원(侍講院)에서 편한 것이다 정조는 8세 때인 1759년(영조 35)에 세손(世孫)에 책봉되었으며 1762년(영조 38) 11세 때 생부 사도세자가 비운의 죽음을 당하자, 그를 이어 동궁(東宮)이 되었다 동궁은 다음 왕위 계승자라는 의미로서 보통은 국왕의 아들로서 왕위 계승자인 세자(世子)가 동궁이지만 이 경우 세자가 서거하였으므로 정조는 세손(다음 다음의 왕위 계승자)으로서 동궁이 된 것이다 동궁은 세자궁이라고도 하며 왕위 계승자로서의 동궁 외에 이 동궁이 거처하는 집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선시대 동궁 제도는 세종 때에 정비되어 내명부의 양제 등이 소속되었다 『정조동궁일기』를 편한 시강원은 정식 명칭이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으로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였던 기구이다 조선 태조 초에 설치된 세자관속(世子官屬)을 뒤에 개칭한 것이다 세자에게 경서(經書)와 역사를

강의하여 학문을 도야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시강원의 최고 관원 사(師)는 종1품으로서 격이 매우 높았다 사는 보통 영의정이 맡으며 다음의 부(傅)는 좌의정과 우의정 가운데 한 사람이 맡았다 세자의 학문을 위해 과거 합격자가 아닌 사람도 추천에 의해 시강원의 관원이 될 수 있었다

이 『정조동궁일기』는 정조가 11세로 동궁이 된 1762년(영조 38) 8월에서 1776년(영조 52, 정조 즉위년) 3월 영조가 서거할 때까지의 기록이다 현재 규장각도서에 속해 7책 필사본으로 남아 있으나 많은 부분이 결질(缺帙)된 상태이다

내용과 체제는 통상적인 형식으로 일상사를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으며, 날짜·날씨와 동궁의 처소 입시 관원이 맨 먼저 기록되어 있다 다만 마지막의 제7책은 당시 정조가 대리청정하고 있을 때의 기록으로서 양과 내용에 있어서 매우 자세하며 권말에 부속 서리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각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책은 1762년(영조 38) 8월 3일 동궁 개설 일기로 시작된다 세손이었던 정조가 부친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동궁이 되며 이에 따라 세손의 학문을 위한 강서원(講書院)을 폐지하고 춘방(春坊 세자시강원)을 개설하는 절차를 대략 기록하고 있다 『동궁일기』의 본문은 8월 3일부터 연말까지 기록되어 있다

제2책과 제3책은 1764년(영조 40)의 기록이다 따라서 1763년(영조 39)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다 제4책과 제5책은 1765년(영조 41)의 기록이다 제6책은 1766년(영조 42)의 기록이다 제7책은 1776년(영조 52) 1월~3월의 기록으로서 대리청정 시기의 것이다 제6책과 제7책 사이에 1767~1775년(영조 43~51)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다

『정조동궁일기』는 정조의 동궁 시절에 대한 기본 자료이다 이를 통해 그의 동궁 시절에 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동궁 시절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정조청정일기(正祖聽政日記)』(규장각 소장)가 있다 또 동궁이 되기 이전 세손 시절의 자료로는 『정조강서원일기(正祖講書院日記)』(규장각 소장)가 있고 세손이 되기 이전 원손 시절의 자료로는 『정조원손궁일기(正祖元孫宮日記)』가 있다 이 세 자료와 『정조동궁일기』는 즉위 이전 정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 준다

『정조동궁일기』는 즉위 이전의 기록이므로 수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사는 없다 그러나 수원 화성을 축조한 정조 사상의 배경,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이다 특히 동궁 시절에 정조가 겪은 어려움은 이후 독자적 세력 기반의 확보와 왕권 강화를 위해 화성을 축조하고자 한 생각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9) 『정조수필일기(正祖手筆日記)』

『정조수필일기』는 정조의 1797년(정조 21)도 일기이다 정조의 친필로 씌어진 필사본 9책이 규장각 소장 도서로 남아 있다 표제에는 『정조수필일기(正祖手筆日記)』라고 되어 있으나 규장각 한국본 총목록에는 『과무(課務)』라고 되어 있다 전체의 체재는 매일 매일의 일기이며, 날짜와 날씨를 기록한 다음 맨 앞에 과무(課務), 다음에 과술(課述) 또는 과독(課讀), 끝에 과사(課射)를 기록하고 있다 과무란 그날에 행한 업무를 말하며, 과술은 그날에 한 저술, 과독은 그날에 한 독서를 의미하고, 과사는 그날 활을 쏜 기록이다 정조는 바쁜 업무 가운데에도 거의 매일 저술 작업을 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워 놓고 거의 매일 쉬지 않고 독서를 하였다 예를 들어 이 일기를 쓴 1797년에는 『사기(史記)』「열전(列傳)」 등을 꾸준히 읽고 있다 각 책에 수록된 날짜는 다음과 같다 제1책 1797년(정조 21) 정월, 제2책 2월, 제3책 4월, 제4책 5월, 제5책 6월, 제6책 윤6월, 제7책 9월, 제8책 11월, 제9책 12월로 되어 있다

이상에서 보면 3월과 7~8월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가치를 살펴보면 왕의 친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정조의 공무 외에도 일상의 독서, 저술 생활을 아는 데에 좋은 자료이다 『정조실록』, 『홍재전서』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다만 자세히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간단한 메모 형식이며 과무, 과술, 과독, 과사 외의 일은 기록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이 일기는 수원 화성 성역이 1796년 끝난 다음 해의 일기이고 간단한 메모 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수원과 관련해 특별히 중요한 사료는 없다 수원, 인천, 광주, 남양, 안산 등 10개 읍 유생의 응제(應製) 시권(試券)을 고찰하여 합격을 결정하였다는 간단한 기록과 장용영의 내외사, 제조, 총사를 불러 외영의 군제를 정하였다는 단편적 기록이 있다

10) 『정조실록(正祖實錄)』

『정조실록』은 조선의 제22대 임금 정조 시기에 대한 조선 왕조의 공식 역사이다 이것은 그가 1776년(영조 52) 3월 10일 즉위한 날에 시작하여 서거한 1800년(정조 24) 6월 28일까지의 재위 24년 4개월 동안을 연월일(年月日)의 날짜순으로 기록한 것이다 정조는 이름이 산(祘)이며 자(字)는 형운(亨運)이고 호(號)는 홍재(弘齋)이다 아버지는 영조(英祖)의 차남(次男)인 장헌세자(莊獻世子 사도세자이며 '장헌'은 정조 즉위 후에 추존한 것)이며 어머니는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딸인 혜경궁(惠慶宮)

홍씨(洪氏)이다 정조의 비는 청원부원군(淸源府院君) 김시묵(金時默)의 딸인 효의왕후(孝懿王后)이다

1752년(영조 28) 탄생하여 1756년(영조 32) 5세로 원손(元孫)이 되고 8세 때인 1759년(영조 35) 세손(世孫)에 책봉되었다 1762년(영조 38) 11세 때 장헌세자가 노론(老論) 벽파(僻派)의 음모로 비운에 서거하자 동궁(東宮)이 되었다 13세 때인 1764년(영조 40)에는 영조의 장남(長男)인 효장세자(孝章世子 후사없이 요절, 정조 즉위 후에 진종(眞宗)으로 추존)의 후사(後嗣)가 되어 효장세자의 아들 자격으로 대통을 잇도록 조처되었는데, 이는 장헌세자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1775년(영조 51) 12월 영조를 대신하여 대리청정을 하게 되었고 이듬해 3월 영조가 서거하자 왕으로 즉위하였다

이하 실록의 의미, 실록의 일반적 편찬 절차, 『정조실록』의 편찬 경위, 『정조실록』의 전반적 내용을 살펴 본 다음 수원과 관련된 자료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먼저 실록의 의미는 국왕별 재위 기간의 일을 연월일의 날짜순으로 기록한 국가의 공식 편년체 역사이다 중국의 양황제(梁皇帝) 실록이 그 효시로서 당(唐)나라 이후 실록이 계속 편찬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일신라에서는 실록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며, 고려시대에 들어와 비로소 실록이 생겨나게 되었다 975년(고려 광종 26) 이전에 이미 사관(史館)이 설립된 것으로 여겨지며 감수국사(監修國史), 수국사(修國史), 동수국사(同修國史), 수찬관(修撰官), 직사관(直史館)이 있어 시정의 기록을 담당하였다 이리하여 고려 태조(太祖)에서 목종(穆宗)에 이르는 7대 실록이 1034년(덕종 3)까지 완성되었다 고려 후기에도 실록 편찬은 계속되었으나, 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의 4대 실록은 내우외환으로 조선 태조 때에 완성되었으며 고려시대의 실록은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편찬의 기본 사료가 되었다 조선 왕조는 고려 실록의 편찬 전통을 계승하여 왕이 즉위하면 선대(先代) 왕의 실록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조선조 실록의 일반적 편찬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먼저 왕이 서거한 얼마 뒤 임시 기구로서 실록청(實錄廳)이 설치되었다 평소에 춘추관(春秋館) 소속의 기사관(記事官 사관)이 항상 국왕의 곁에 있으면서 그날 그날의 중요한 일을 모두 기록하고 중요 문서도 포함시켜 사초(史草)를 만들고 각 관청의 문서를 종합하여 시정기(時政記)를 작성하여 춘추관에 보관하였다 임금의 서거 후 이 사초와 시정기가 실록 편찬의 기본 자료가 되었다 실록청의 최고 책임자는 초기에는 영사(領事)라 하였으나 광해군일기를 편찬할 때부터 총재관(摠裁官)이라 하였다 총재관 아래 도청당상(都廳堂上), 도청낭청(都廳郎廳), 각방당상(各房堂上), 각방낭청(各房郎廳) 등이 있었는데 대

체로 춘추관의 사관이 여기에 많이 임명되었다 편찬 절차는 먼저 모든 자료를 모아 일차로 초초(初草)를 만들고 이를 다시 수정, 보완하여 중초(中草)를 만든 뒤 최종적으로 완성된 원고로서의 정초(正草)가 이루어지면 이를 교서관에서 3부 인쇄하여 춘추관 및 지방의 사고에 보관토록 하였다

다음『정조실록』의 편찬 경위를 살펴보기로 한다『정조실록』은 원래 명칭이『정종실록(正宗實錄)』이었다 정조는 사후의 존칭이며, 원래 정종(正宗)으로 불리웠기 때문이다 1899년(광무 3) 정조로 추존되면서 그에 대한 실록도『정조실록』으로 명칭이 바뀌었다『정조실록』의 편찬 절차는 다른 실록의 편찬 절차와 같다 그 경위를 보면 1800년(정조 24, 순조 즉위년) 12월 편찬이 시작되어 1805년(순조 5) 완성되었다 실록청 총재관은 이병모(李秉模), 이시수(李時秀), 서용보(徐龍輔), 서매수(徐邁修)이고 도청당상은 이만수(李晩秀), 김조순(金祖淳)이었다 각방당상은 김재찬(金載瓚), 한용구(韓用龜), 이의필(李義弼), 이서구(李書九), 이익모(李翊模) 등 20인, 교정당상(校正堂上)은 남공철(南公轍), 조진관(趙鎭寬), 황승원(黃昇源) 등 9인, 교수당상(校讐堂上)은 서미수(徐美修), 한용탁(韓用鐸) 등이 하였다 도청낭청(都廳郎廳)은 오연상(吳淵常) 등 20인, 각방낭청(各房郎廳)은 임경진(林景鎭) 등 64인이며 분판낭청(粉板郎廳)은 이우재(李愚在) 등 10인이다 1920년대 이래 조선 역대 왕의 실록(태조~철종)과 더불어 몇 차례 영인되었으며 1991년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 의해 번역, 간행되었다

『정조실록』의 내용은 그의 재위 기간(1776 3~1800 6) 24년 4개월 동안 당시 조선에서 일어났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등 국가의 중요한 일에 대하여 연월일의 날짜순으로 기록하여 이 시대를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료가 된다 이것을 모두 살필 수 없으므로『정조실록』을 중심으로 그의 중요한 치적에 대하여만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장헌세자의 사후 정조가 즉위하기까지에는 그를 제거하려는 반대파의 음모가 끊이지 않았으나 홍국영(洪國榮) 등의 도움으로 1776년 무사히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왕위에 오르자 홍국영을 도승지 겸 숙위대장으로 삼아 반대파를 제거하는 등 왕권 강화를 꾀하였으나 홍국영이 권력을 전횡하자 그를 정계에서 은퇴시키고 친정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조는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고자 하였다 다만 정조의 탕평책은 영조의 그것이 완론탕평(緩論蕩平)이었던데 비해 준론탕평(峻論蕩平)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완론탕평이란 정치의 이념은 따지지 않고 단순히 각 정치세력을 적당히 안배하려는 것이어서 척신과 권귀들이 왕권에 영합, 빙자하여 반대자들을 누르고 권력 유지만을 도모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노론 위주의 정국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다만 기존의 각 당색 내부에 다시 시파(時派)와 벽파

(僻派)의 대립이 생겨 노론이 시파와 벽파로 갈라졌다. 남인과 소론은 대체로 시파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조대에도 이 시파와 벽파의 대립은 계속되었다 정조의 준론탕평은 시비, 의리를 분명히 하는 이념 지향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왕권 강화라는 기본 전제에 서 있었으므로 사림세력에 의한 공론 정치의 추구보다는 관료제의 정점이 되는 재상권의 강화를 통해 사림정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정조대에는 남인 채제공(蔡濟恭)이 재상으로 중용되는 등 노론과 다른 당색 사이에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다

정조는 즉위 다음해인 1777년 "민(民)의 재산을 만들며 인재를 무성하게 하고 군사를 다스리며 재정을 풍족하게 한다"라는 대고(大誥)를 반포하여 개혁정치의 기본 방향을 밝혔다. 1791년(정조 15) 신해통공(辛亥通共)을 실시하여 도시 중소상인층의 상권을 보호하였으며,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생산력 발전을 꾀하고 궁방(宮房)에서 직접 사람을 파견하여 세금을 거두는 궁차징세법(宮差徵稅法)을 금지하였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규장각(奎章閣)을 설치하여 신진 관료를 양성하는 한편 서얼허통(庶孼許通)을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박제가(朴濟家), 이덕무(李德懋), 유득공(柳得恭) 등이 규장각에서 검서관(檢書官)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고 정약용(丁若鏞), 박지원(朴趾源), 이가환(李家煥) 등 실학적 개향지향 인물이 관료로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실학이 단지 학문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실적으로 실천될 수 있었다 수원 화성의 축조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군사 문제에 대하여는 당시 군문(軍門)의 혼란을 정리하고자 장용영(壯勇營)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점차 모든 군문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장악할 계획을 가졌다 이것은 왕권 강화를 위한 군사적 기반 확립의 도모라는 의미를 갖는다 재정 확립을 위하여는 각 관청과 군문의 보유 양곡수, 전국의 환곡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전세 징수의 기본 상황을 파악한 『탁지전부고(度支田賦考)』 등을 간행하였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재정 개혁책을 실천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정조대에는 서적의 편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학문에 전념하였으며 많은 서적을 수집하여 개유와(皆有窩)라는 도서실을 따로 갖고 있기까지 하였다 그는 개혁 정치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조선 초기 이래 제정, 정비된 문물과 제도를 수정·보완·정리하여 『속오례의(續五禮儀)』, 『증보동국문헌비고(增補東國文獻備考)』, 『국조보감(國朝寶鑑)』, 『대전통편(大典通編)』, 『동문휘고(同文彙考)』, 『해동읍지(海東邑誌)』, 『오륜행실(五倫行實)』, 『태학지(太學志)』, 『전율통보(典律通補)』, 『홍문관지(弘文館志)』, 『규장각지(奎章閣志)』,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등을 편찬하는 외에 『성학집략(聖學輯略)』, 『팔자백선(八子百選)』, 『갱장록(羹墻錄)』, 『주서백선(朱書百選)』, 『사기영선(史記英選)』, 『오경백편(五經百編)』, 『문원보불(文苑黼黻)』 그리고 『규장전운(奎章全韻)』, 『규장총목(奎章總目)』 등을 간행하였다

이런 서적의 간행을 위해 활자의 주조가 행해졌다 1772년 동궁 시절 임진자(壬辰字)가 주조된 데에 이어 1777년(정조 원년) 정유자(丁酉字), 1782년 한구자(韓構字), 1792년 목활자인 생생자(生生字), 1795년 정리자(整理字), 1797년 춘추관자(春秋館字) 등 도합 80여만 자를 주조하여 규장각에 두고 서적 간행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1777년 12월 교서관(校書館)을 규장외각(奎章外閣)으로 하였다 당시 서적의 간행과 활자 주조 사업 등은 대체로 규장각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정조의 업적 가운데 하나로 수원 화성(華城)의 축조를 들 수 있다 이것은 1794년(정조 18년)에 시작되어 1796년(정조 20년)에 완공되었다 정조는 즉위 후 생부를 장헌세자로 존호(尊號)하고 1789년(정조 13) 양주 배봉산 아래에 있던 묘소를 당시 수원부가 있던 화산(花山)으로 옮기고 현륭원(顯隆園)이라고 하였으며 용주사(龍珠寺)를 수리, 확장하여 그 원찰(願刹)로 하였다 장헌세자 묘소의 이장을 계기로 수원부의 이전이 논의되어 현재의 팔달산(八達山) 아래로 옮겨 오게 되고 이에 따라 화성이 건설되었다

끝으로 정조대에는 이전부터 들어온 서학(西學)이 천주교운동(天主敎運動)으로 발전되는 시기였다 이것은 당시 조선의 주자학적 지배 질서 및 이념과 충돌을 일으켜 여러 차례 천주교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1791년(정조 15) 윤지충(尹持忠)과 권상연(權尙然)이 신주를 불사르고 제사를 폐지한 데에서 발단한 이른바 진산(珍山) 사건이다 정조는 천주교를 사학(邪學)이라 인정하면서도 천주교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이것은 그가 천주교에 대한 대응 방식을 정학(正學)인 유학 진흥으로 삼는 한편, 당시 천주교 사건에는 그 자신이 등용한 남인계 관료 이가환, 정약용 등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노론 벽파는 이를 빌미로 남인에 대한 정치 공세를 강화하였으며 정조의 사후 천주교 탄압 사건인 이른바 신유사옥(辛酉邪獄)을 일으켜 남인을 대거 정계에서 숙청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계의 분위기는 일거에 변하여 정조대의 개혁적 분위기에서 보수적인 세도정치기로 이행하였다

다음으로 『정조실록』에서 수원과 관련되는 기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정조실록』에서 수원과 관련되는 기사는 매우 많다 여기에는 대체로 수원부의 이전과 수원 화성 축조 및 장용영 외영 설치에 관한 것들이 많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수원부의 이전과 수원 화성의 축조 논의는 1789년(정조 13) 사도세자의 묘소를 구 수원부가 있던

화산에 이장함으로써 발단되었다 따라서 『정조실록』에서 수원에 관한 기사는 이 때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

사도세자의 묘소를 화산에 옮기는 문제를 놓고 조정에서 논의가 분분하였으나 현지를 답사한 중신, 지관들이 최고의 길지(吉地)라고 보고하는 기사가 『정조실록』 13년 7월 정유조에 실려 있다 이렇게 묘소 이장이 결정된 뒤 『정조실록』 13년 7월 을미조에 의하면 조정에서는 그곳 주민을 안정시키고 잘 이주시키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어 7월 기해조(15일)에는 수원부사 조심태(趙心泰)의 장계에 따라 수원부를 팔달산 아래로 옮기기로 결정하는 기사가 실려 있다. 수원부의 이전은 같은 해인 정조 13년 10월경에 대략 마무리되었다(『정조실록』 13년 10월 14일)

그러나 새로 옮겨간 수원부의 상황과 백성의 생활이 바로 안정되지 못하였다 여기에 대해 근심하는 기사가 『정조실록』 14년(1790) 기사에 실려 있으며(2월 임술조, 2월 병인조, 7월 을미조) 정조 14년 2월 수원부 백성의 생업 안정책을 강구하도록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2월 병인조) 이 해 2월 19일 좌의정 채제공은 신 수원부를 번영시키시 위한 헌책을 올렸다(2월 경오조) 여기서 채제공은 상가를 조성하여 서울의 부호를 옮겨 오게 할 것, 수원부에서 기와를 구워 기와집을 짓게 할 것, 수원부 주변에 매달 6개의 5일장을 개설하되 세금을 받지 말 것 등을 건의하였다

한편 정조 14년부터는 팔달산 아래로 옮긴 신 수원부에 축성하는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정조 14년 6월 기미조에 의하면 강유(姜游)라는 관리가 "수원은 총융청의 외영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진(鎭)이고 현륭원이 위치한 곳이므로 성곽의 설치가 필요하며 새로 옮겨 간 수원부는 평지이므로 축성과 해자의 설치를 동시에 하여야 하고 이 성곽과 수원 남쪽의 독산성이 상호 의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일단 1793년(정조 17) 1월 12일 수원부를 '화성(華城)'이라 개칭하고 유수부로 승격시켰다(『정조실록』 17년 정월 병오조) 초대 유수에는 채제공이 임명되고 장용영 외사와 행궁 정리사를 겸임하였다 17년 5월 병진조에 의하면 이 때 이미 영의정 채제공에 의해 화성 축성 계획이 마련되어 있었다

수원 화성 축조의 실제 작업은 1794년(정조 18)에 실시되었다 『정조실록』 18년 1월의 기사에는 국왕이 8도에 명하여 화성 축조에 참고하기 위한 설계도를 그려 바치게 하라고 명령한 내용이 있으며(정월 을미조), 정조가 사도세자의 현륭원 참배를 마치고 화성 축조를 곧 시작할 것임을 시사하는 기사도 실려 있다(1월 계묘조) 이어 이 해 정조 18년 2월 28일 공식적으로 착공되었다 이를 위하여 이미 정조 17년 12월 채제공은 화성 성역을 총괄할 총리대신에 임명되었다 화성 축조는 1794년에 가뭄이 심하여 삼남 지방에 관리가 파견되고 구황 대책이 논의되는 가운데(『정조실록』 18년

10월 기사조, 무인조)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정조실록』 18년 10월 계유조) 1796년 10월 준공되어 낙성연이 거행되었다

화성 축성 중간인 1795년(정조 19)은 정조의 생모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이 되는 해이다 혜경궁 홍씨의 회갑 기념 행사를 수원에서 성대하게 거행하였는데, 이를 '을묘원행(乙卯園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자료도 『정조실록』에 많이 있다 여기에 드는 행사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따로 정리소(整理所)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재원을 조달하였다 정리소에는 따로 낭관(郎官)을 두어 관장토록 하였다(『정조실록』 18년 12월 을축조) 행사를 치르고 난 뒤 남은 곡식은 『정조실록』 19년 3월 경술조에 의하면 화성 둔전의 설치 등에 사용하여 화성 경영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 남은 비용의 일부는 정리곡(整理穀)이라 하여 각도에 일종의 환곡으로 주었으나 여러 폐단이 생기자 모두 수원에 속하게 하였다(『정조실록』 22년 2월 임진조)

다음으로 『정조실록』에서 장용영과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장용영은 조선 후기 중앙군의 근간이었던 기존의 5군영 체제에 대신하여 정조가 친위부대로서 적극 양성한 군영이다 장용영은 내영과 외영으로 구성되며 외영을 위주로 하였다 이 장용 외영이 바로 수원에 주둔하였다 『정조실록』 2년 6월 임진조에 의하면 정조는 자신의 기본 시정 방침 가운데 기존의 5군영을 재편하여 군제를 개혁함으로써 자신의 정치 개혁을 뒷받침할 군사적 기반을 만들 것을 시사하였다 이리하여 기존의 5군영에 속하는 수어청과 총융청을 합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기존 세력의 반발로 5군영 개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조는 일단 자신의 독자적 친위부대로 정조 11년 장용청을 발족시킨 다음 정조 12년 장용영으로 발전시켰다 정조 17년(1793) 1월 수원이 유수부로 승격한 것과 더불어 앞서 언급하였듯이, 수원 유수는 장용 외사를 겸임하게 되어 장용 외영을 수원에 두게 되었다 17년 1월 기미조에 의하면 장용영에 관한 절목도 제정되고 화성 축성을 위한 성정군(城丁軍) 확보 대책도 마련되었다 이해 7월 장용영 군제의 정비는 조심태 등에게 맡겨졌다(『정조실록』 17년 7월 정미조) 이리하여 『정조실록』 17년 10월 신사조에 의하면 장용외영 군제절목이 만들어져 화성의 군제가 이에 의거하여 새로이 정비되었다

이런 가운데 수원에서는 장용 외영의 군사 조련이 매우 강력하게 실시되었다 『정조실록』 17년 10월 신사조에 의하면, 2월과 10월 번상할 때 군사 기술을 익히도록 하고 장교 가운데 기예에 익숙한 자를 교관으로 삼도록 하였다 또 『정조실록』 19년 2월 신유조에 의하면 화성의 성조(城操 성의 수비와 공격 훈련)와 야조(夜操 야간 훈련)에 관한 규정이 이 날 완성되었다고 한다

정조는 1795년(정조 19) 윤 2월 현륭원에 행차하고 윤 2월 9일부터 16일까지 수원에 머무르면서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베풀었다(을묘원행) 이 가운데 윤 2월 12일 정조는 자신의 친위 부대인 장용 외영 군대의 훈련을 팔달산 정상에 올라 살펴보았다(『정조실록』 18년 9월 기해조) 이 해에는 흉년이 심하여 다른 군영에서는 훈련이 중지되었는데 장용외영만은 군사 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이것은 정조가 자신의 기반인 장용외영을 얼마나 중시하였는지 짐작하게 한다.

한편 장용영에는 국가의 재원이 많이 집중되었는데, 이것은 수원 화성의 신도시 건설을 위한 재원이 되었다 정조 16년 윤 4월 을해조에 의하면 장용외영에서는 풍부한 재원에 의거해 수차(水車)를 다수 제작하는 등 여러 농업 시설과 기술 개발에 힘쓰기도 하였다 또 정조 20년 4월 경자조에 의하면 경기감영에 장용영의 4만냥이 대여되어 현륭원 내의 토지 보상비와 수원 행차 때의 비용, 현륭원 식목 비용으로 충당하게 하였다

한편 『정조실록』 22년 10월 기유조에 의하면, 장용 외영에는 둔전이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병과 농이 상호 연계되어 병사로 하여금 경작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군영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졌다 둔전 설치와 더불어 만석거 등 저수지 시설도 이루어졌다 『정조실록』 18년 11월 을유삭조에 의하면 장안문 북쪽 지역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안정된 농업 경영을 위해 수리시설을 축조하도록 명령하였다 이 만석거 축조 및 그와 연계된 둔전 설치를 위하여는 내탕금이 사용되었다(『정조실록』 22년 4월 신유조) 이런 둔전의 설치는 재정의 충실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수원 백성에게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으로서 정조는 수원을 경기 지역 가운데 표준적인 곳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만석거와 더불어 수원의 서쪽 5리 지점에는 축만제가 1799년(정조 23)에 축조되었다

11) 『정조원손궁일기(正祖元孫宮日記)』

이 일기는 정조가 원손(元孫)이었던 시절의 그날 그날의 기록을 시강원(侍講院)에서 편집해 놓은 것이다 1752년(영조 28)에 탄생하여 1800년(정조 24) 서거한 정조는 1756년(영조 32) 5세의 나이로 원손이 되었으며, 8세 때인 1759년(영조 35) 세손(世孫)에 책봉되었다 원손이란 세자의 맏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국왕의 다음 다음에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것은 세손과는 의미가 다르다 원손은 세손으로 책봉되어야 정식으로 다음 다음 왕위 계승자가 되며 원손 시절에는 아직 그렇게 될 자격이 있는 후보에 지나지 않는다

『정조원손궁일기』를 편집한 시강원은 조선시대에 세자의 교육을 맡은 기구이다 따라서 원손 시절 정조의 교육을 시강원에서 맡은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정조는 1762년(영조 38) 11세 때 동궁이 되었는데, 이 때 시강원에서 그의 교육을 맡았으며 그 때의 기록인 『정조동궁일기』도 시강원에서 편(編)하였다 따라서 『정조원손궁일기』는 시강원에서 정조의 『정조동궁일기』와 더불어 편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조원손궁일기』는 규장각에 필사본 형태로 남아 있으며 모두 3책이다 이 책은 1756년(영조 32), 1758년(영조 34), 1759년(영조 35) 등 3년간의 일기이다 1757년(영조 33)의 기록은 누락되어 있다 원손궁을 중심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날마다 기록한 것으로, 내관·보양관 등 관계 인물의 문안과 원손·원손빈의 동정 등이 기록되어 있어 원손 시절의 정조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전해 준다 각 책에는 앞에 연기(年期)가 있으며, 마지막 제3책에는 달무리 등 측후 관계 기록을 상세히 적어 놓은 점이 특색이다 원래 표제(表題)는 『의소세손궁일기(懿昭世孫宮日記)』로 되어 있으며, 내제(內題)는 『원손궁일기(元孫宮日記)』로 되어 있다 『정조강서원일기』, 『정조동궁일기』, 『정조청정일기』 등과 더불어 즉위 이전 정조의 동정을 알 수 있게 하여 주는 자료이다 다만 5세-8세까지의 기록이므로 수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사는 없다

12) 『정조청정일기(正祖聽政日記)』

정조가 동궁으로서 영조를 대신하여 대리청정하던 때의 기록이다 정조는 1762년 생부 사도세자의 죽음을 계기로 세손에서 동궁이 되었다가 1775년(영조 51) 12월부터 영조가 서거하는 다음 해(1776년) 3월까지 대리청정을 하였다 이 시기에 대한 기록인 『정조청정일기』는 규장각 소장 도서로 현존하며 2책의 필사본으로 되어 있고 편자는 미상이다

필사본 2책이 각기 내용상 구분된다 제1책은 표제명(表題名)이 『을미청정일기(乙未聽政日記)』(을미년 1775, 영조 51)로서, 대리청정 때의 대소 사건과 동궁의 주변 사실을 약기한 것이다 권말에 연속해 다음해 1~2월 사건을 간단히 2~3장으로 첨부하였다

제2책은 정조가 청정하는 기간 중에서도 특히 1775년(영조 51) 11월 20일에서 12월 12일까지 약 1개월 간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제1책과 제2책은 내용상에 있어서 다소 성격이 다르므로 하나의 책으로 편집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두 책 모두 정조가 즉위 초 분란의 경과를 소상히 밝힌 『명의록(明義錄)』, 『속

명의록(續明義錄)』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동궁(정조) 위해(危害) 사건과 관련 날짜만을 뽑아 그 전말을 수록한 것이다 각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책은 1775년(영조 51) 2월에서 1776년(영조 52) 2월까지의 기록이다 동궁인 정조 위해(危害) 사건의 경과와 관련된 날만을 뽑아 수록하고 있다 정조가 대리청정을 하게 되기까지의 복잡한 암투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동궁을 중심으로 한 분란의 경과가 잘 요약되어 있다 제2책은 책 안의 제목이 『청정일기(聽政日記)』로 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1775년(영조 51) 11월 20일에서 12월 12일까지의 동궁과 관련된 분란 및 이에 대한 수습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당시 영조는 이미 80세를 넘은 고령이어서 동궁의 대리청정을 원하고 있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여 오던 홍인한(洪麟漢), 김구주(金龜柱), 김한록(金漢祿) 등에 의하여 성사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명선(徐命善)이 이들을 논핵하자 영조는 홍인한을 파직시키고 대리청정을 결정하였다 동궁의 대리청정을 저지하는데 실패한 홍인한 등은 재차 상소를 올려 이를 관철시키고자 집요하게 획책하지만 이것도 역시 실패하였다 한편 동궁인 정조는 거듭해서 대리청정을 사양하는 상소를 올린다 12월 7일 영조는 대리청정을 동궁인 정조에게 명령하는 교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의정부는 「왕세손청정절목(王世孫聽政節目)」, 「별단(別單)」(모두 15개조)을 마련하여 12월 10일에는 경현당(景賢堂)에서 정조가 청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제2책은 바로 이와 같은 당시의 사정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또 제2책에는 청정과 관련된 「왕세손청정절목」 및 「별단」과 종묘배알(宗廟拜謁) 및 창덕궁 전배(展拜) 등 여러 궁을 전배할 때의 절목이 기록되어 있다

『정조청정일기』는 정조의 대리청정 시기를 살필 수 있는 기본 자료이다 또 이 『정조청정일기』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규장각 소장의 『정조동궁일기』 제7책(영조 52년 1월~3월 기록)이 있으며 정조 즉위 전후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사료로는 앞서 언급한 『명의록』, 『속명의록』(모두 규장각 소장 도서)이 있다 이 밖에 즉위 전 정조의 동정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정조원손궁일기』, 『정조강서원일기』가 있다 이들은 각기 원손 시절과 세손 시절의 정조에 대한 기록이다 『정조청정일기』는 정조가 독자적으로 정치를 하기 이전, 즉 동궁으로서 대리청정을 하던 때의 기록이므로 수원과 직접 관련된 기록은 없다

13)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조선 태조에서 철종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편년체(編年體)로 기록한 책으로

1,893권 888책의 필사본과 인본으로 되어 있다 일제는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고 조선의 정통성을 훼손하기 위해 이 책을 『이조실록(李朝實錄)』이라 폄하하였다 정족산본(鼎足山本)과 태백산본(太白山本)은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왕이 승하하면 다음 왕대에 임시로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여 편찬한다 이용된 자료는 조정 각 관서에서 보고한 문서 등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작성해 둔 『춘추관시정기(春秋館時政記)』, 전왕의 재위시 사관(史官)들이 작성한 사초

실록의 명칭 · 권수 · 편찬연대

왕 대	명 칭	권수	책 수	편 찬 연 대
1	태조실록	15	3	1413(태종 13)
2	정종실록(공정왕실록)	6	1	1426(세종 8)
3	태종실록	36	16	1431(세종 13)
4	세종실록	163	67	1454(단종 2)
5	문종실록	12	6	1455(세조 1)
6	단종실록(노산군일기)	14	6	1469(예종 1)
7	세조실록	49	18	1471(성종 2)
8	예종실록	8	3	1472(성종 3)
9	성종실록	297	47	1499(연산군 5)
10	연산군일기	63	17	1509(중종 4)
11	중종실록	105	53	1550(명종 5)
12	인종실록	2	2	1550(명종 5)
13	명종실록	34	21	1571(선조 4)
14	선조실록	221	116	1616(광해군 8)
14	선조수정실록	42	8	1657(효종 8)
15	광해군일기(태백산본)	187	64	1633(인조 11)
15	광해군일기(정족산본)	187	39	1653(효종 4)
16	인조실록	50	50	1653(효종 4)
17	효종실록	21	22	1661(현종 2)
18	현종실록	22	23	1677(숙종 3)
18	현종개수실록	28	29	1683(숙종 9)
19	숙종실록	65	73	1728(영조 4)
20	경종실록	15	7	1732(영조 8)
20	경종개수실록	5	3	1781(정조 5)
21	영조실록	127	83	1781(정조 5)
22	정조실록	54	56	1805(순조 5)
23	순조실록	34	36	1838(헌종 4)
24	헌종실록	16	9	1851(철종 2)
25	철종실록	15	9	1865(고종 2)

(史草),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의정부등록(議政府謄錄)』 등 주요 관서의 기록과 개인문집이었다 후대에는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일성록(日省錄)』 등이 활용되었는데, 특히 사초는 실록편찬에 가장 중요한 자료였다 사관은 춘추관 관직을 겸임한 관원이 모두 해당되나, 기사관을 겸임한 예문관의 정7품 봉교(奉敎) 2인, 정8품 대교(代敎) 2인, 정9품 검열(檢閱) 4인 등이 전임의 사관이다 이들의 품계는 낮지만 국가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왕과 신하들이 국사를 처리하는 과정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동시에 인물에 대한 비평과 기밀사무 등을 직필하였다 그런 만큼 각 사초는 사관이 각자 보관하였다가 실록의 편찬시 제출하는 것이 상례였다 실록편찬시 사초를 제출하지 않은 사관의 자손을 금고(禁錮)하고 은 20냥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사초는 오직 사관만이 볼 수 있었는데, 만약 사초를 누설한 사관은 중죄에 처하였고, 왕조차도 이를 전혀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사관의 직필이 가능할 수 있었다

각종 기록이 실록청에 수합되면 편찬에 임하는 실록청 구성원은 모두 춘추관의 관원이 된다 후기에는 총재관(摠裁官)·당상(堂上)·낭청(郎廳)의 직함을 주어 도청(都廳)과 1·2·3의 방(房)으로 나누어 편찬하였다 편찬 과정은 첫째로 1·2·3의 각방에서 『춘추관시정기』 등 각종 자료 중 주요한 사실을 초출(抄出)한 초초(初草)를, 둘째로 도청에서 초초 중 빠진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수정한 중초(中草)를, 마지막으로 총재관과 도청당상이 중초를 재수정하여 체재와 문장을 통일하여 정초(正草)를 만든다.

실록이 완성되면 이를 사고(史庫)에 비장하는 한편 편찬에 사용된 각종 자료는 기밀방지와 종이의 재생을 위해 세초(洗草)하였다 사고에 비장한 실록도 왕의 선악과 신하들의 간위(奸僞)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사관만이 열람할 수 있었다

『태종실록(太宗實錄)』까지는 충주사고(忠州史庫)에 보관하다가 1439년(세종 21) 사헌부(司憲府)의 건의에 따라 전주(全州)와 성주(星州)에 사고를 설치하여 1445년 11월 3부를 더 등사하여 춘추관·충주·전주·성주의 4사고에 1부씩을 비장하였다 『세종실록(世宗實錄)』부터는 정초본 외에 활자로 3부를 인쇄·간행하여 역시 4사고에 봉안하기에 이르렀다 규장각에 소장된 정족산본의 『태조실록(太祖實錄)』·『정종실록(靖宗實錄)』·『태종실록』은 세종대에 등사하여 전주사고에 봉안한 필사본이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시 춘추관·충주·성주사고의 실록은 소실되었으나, 전주사고의 실록은 선비인 안의(安義)와 손홍록(孫弘祿)이 내장산(內藏山)으로 옮겨 보관함으로써 후세에 전할 수 있었다 이듬해 이를 넘겨받은 정부는 해주(海州)·강화(江華)·묘향산(妙香山) 등지로 이동 보관하다가 1606년(선조 39) 3월부터 2년 9개월 동안에 인쇄·출판하였다 이때 출판한 3부와 교정본·원본 등 5부를 춘추관에 1부를 보관하

고, 강화도 마니산(摩尼山)·봉화(奉化) 태백산·영변(寧邊) 묘향산·평창(平昌) 오대산(五臺山)에 새로 사고를 설치하고 각각 1부씩을 보관하는 등 보존에 만전을 기하였다 춘추관·태백산·묘향산은 신인본(新印本), 마니산은 전주사고의 원본, 오대산은 교정본이었다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으로 춘추관 소장의 실록이 소실된 이후 이를 보관하지 않음으로써 이후에는 4부만 간행하였다 1633년(인조 11) 후금(後金)과 관계 악화로 전라도 무주(茂朱)의 적상산(赤裳山)에 사고를 건립한 다음 묘향산사고의 실록을 옮겼다 마니산사고의 실록은 병자호란시 크게 파손되었는데, 현종대에 완전히 보수한 후 1678년(숙종 4)에 정족산으로 역시 옮겼다 이리하여 철종대까지 실록은 정족산·태백산·적상산·오대산의 4사고에서 온전히 보관하였다 식민지배 하에서 출판된 『고·순종실록』은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방향에서 출판되었기 때문에 사료적인 신빙성이 상당히 미약하다 따라서 『조선왕족실록』은 일반적으로 태조~철종까지의 시기를 의미한다

한편 조선을 병탄한 일제는 정족산·태백산사고의 실록과 규장각도서를 조선총독부로, 적상산사고의 실록은 구황실(舊皇室)의 장서각(藏書閣)으로 이관하는 한편 오대산사고의 실록은 동경제국대학(東京帝國大學)으로 반출하였는데, 이 실록은 1923년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으로 거의 불타버렸다 조선총독부로 이관된 도서는 1930년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으로 이관된 이후 현재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장서각의 실록은 해방 이후 실록도난사건으로 낙권이 많았는데, 한국전쟁시 북한이 가져가 현재 김일성종합대학(金日成綜合大學)에 소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한국사 연구 특히 조선시대 연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1929~1932년 경성제국대학에서 태백산본을 원본으로 30부를 원본의 4분의 1로 축소·영인하였다 이어 일본 학습원(學習院) 동방문화연구소(東方文化硏究所)도 1953년 이를 영인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는 1955~1958년까지 태백산본을 8분의 1로 축소한 영인본을 발간하여, 구미 각 대학도서관에 배포함으로써 한국학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는 실록의 번역사업에 착수하였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世宗大王紀念事業會)는 1968년부터 태조에서 성종까지, 민족문화추진회(民族文化推進會)는 1972년부터 연산군에서 명종까지의 실록을 각각 번역·출판하였다 북한은 실록 전체의 번역을 완료·출판하였는데, 민족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이미 국내에 유입되었다 1995년에는 광복5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스템이 실록을 CD-ROM(컴팩트디스켓)화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14) 『현륭원등록(顯隆園謄錄)』

이 책은 1797~1802년(정조 21~순조 2)의 현륭원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관아와 화영(華營) 및 예조와 같은 중앙부서와, 용인과 같은 지방부서가 서로 주고받은 기록들을 모은 문서이다 현재 소장처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그 기록들은 대개 첩보(牒報)·이문(移文)·회통(回通)·사통(私通) 등의 방식으로 주고 받았으며, 그 내용으로는 현륭원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인원수에 관한 것과 거기서 쓰이는 물품을 조달하는 것 그리고 화재를 입어 보수한 일 등과 같은 관리에 관한 내용, 그곳에서 지내는 의례에 대해 입는 복제(服制) 등과 같은 형식에 관한 것, 심지어는 현륭원의 수목이 모자라서 봄에 새로 수목을 보충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1797년 3월 초 5일의 기록)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사항이 망라되어 있다

대표적인 문서제목을 살펴 보면, 정사(丁巳 1797년) 3월 10일 「전용주사총섭제승(傳龍珠寺總攝諸僧)」, 무오(戊午 1798년) 2월 22일 「예조동보이아고목(禮曹同報貳衙告目)」, 기미(己未·1799년) 11월 25일 「제내완문성송향사(題內完文成送向事)」, 신유(辛酉 1801년) 정월 초1일 「정조제향(正祖祭享)」 등이 있다

15) 『현륭원사례(顯隆園事例)』

이 문서는 1817년(순조 17) 12월에 쓰여진 글로써 현륭원의 운영, 비품 등을 기록한 사례집이다 소장처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다

그 내용은 현륭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품 및 구성물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다 「원상계좌정향(園上癸坐丁向)」, 「정자각십간축좌미향(丁字閣十間丑坐未向)」, 「비각이간(碑閣二間)수자간삼간(守刺間三間)」, 「계기고이간(癸器庫二間)」, 「향대청십사간반(香大廳十四間半)」 등이다

또한 제향시의 복식과 의식행위 등을 나열하고 현륭원내에서 행해지는 행사 등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몇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기진제향용천담복(忌辰祭享用淺淡服), 제향시양관원합주이출직관원(祭享時兩官員合籴而出直官員), 원상급전내사수복거행(園上及殿內事守僕擧行), 제향시 제기고직조검출입고(祭享時 祭器庫直照檢出入庫) 등이 있다

이후는 현륭원을 운영하거나 행사를 거행할 때 드는 구체적인 물품과 그 비용을 나열하고 있고 그에 필요한 인원수가 기록되어 있다

제6장 고문서(古文書)

1) 『경기각군각둔도조급각양세전납미납구별성책(京畿各郡各屯賭租及各樣稅錢納未納區別成册)』

8책의 필사본으로 편자(編者)는 경기도 봉세관(捧稅官) 이태하(李泰河)이다 현재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1899년(광무 3)~1906년(광무 10) 경기도 각 군의 둔(屯) 도조(賭租)와 각양세전(各樣稅錢)의 완납·미납 상황을 원인별로 구분한 1904~1907년 궁내부(宮內府) 내장원(內藏院)에서 만든 책이다 제1책은 1899년, 제2책은 1900년, 제3책은 1901년에 작성된 것을 1904년 3월에 합책하였다 제4책은 1902년에 작성한 것을 1904년 4월, 제5책은 1903년 작성한 것을 1904년 12월, 제6책은 1904년 작성한 것을 1905년 9월, 제7책은 1905년 작성한 것을 1906년 10월, 제8책은 1906년 작성한 것을 1907년에 각각 합책하였다

기재양식은 도내의 수원(水原)·용인(龍仁)·시흥(始興)·안성(安城) 등 37개 군의 각둔(各屯)·각제언답(各堤堰畓)·위토(位土)·화속전(火粟田)·시장(柴場)·염정(鹽井)별로 미(米)·태(太)·두(豆)·속(粟) 등의 조액(租額)과 대전액(代錢額)의 필납(畢納)·기납액(已納額)·미납액(未納額)은 물론이고 군(郡)의 합계와 전체의 총계가 수록되었다

미납 사유는 홍릉획거(洪陵劃去)·허록(虛錄)·첩록(疊錄)·가록(加錄)·오집(誤執)·사음(舍音)·서기모인범포(書記某人犯逋)·사음직납(舍音直納)·본군직납(本郡直納)·경감(京監)·탁지파감(度支派監)·파원모인수거(派員某人收去)·미사(未査)·독쇄시여비나용(督刷時旅費挪用)·당년진미봉(當年陳未捧)·천포구진(川浦舊陳)·결세본군제거(結稅本郡除去)·칭위사토민미납(稱爲私土民未納)·작인모인미수(作人某人未收)·기로소이부(耆老所移付)·본원감정(本院減定)·각릉대토(各陵代土) 등이 주류였다 수원군의 영화관둔조(迎華官屯租)는 155석 중 109석 12두의 홍릉획거와 23석 13두의 사음범포(舍音犯逋)된 나머지 겨우 21석 15두만이 완납되었다 수어둔조(守禦屯租) 39석 13두는 모두 홍릉획거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제1책과 제2책에서는 마름의 범포가 자주 나타나며, 제5책부터는 필납·기납의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로 보아 봉세관 또는 수세관을 통한 조세 수입이 후기로 갈수록 점차 증대됨을 알

수 있다 끝에는 경기도 봉세관 이태하의 수결(手決)이 있는데, 이는 작성·보고자가 이태하임을 알려준다

2) 『경기각군각역둔을사도수도성책(京畿各郡各驛屯乙巳度收賭成冊)』

편자(編者)는 궁내부(宮內府)의 경리원(經理院)이며 1책 32장의 필사본으로 되어 있다 현재 소장처는 규장각도서이다 1905년(광무 9) 경기도내 37개 군에 소재한 각 역둔(驛屯)의 원도곡(原賭穀)·도전(賭錢)과 재감(災減)에 따른 실도곡(實賭穀)·도전(賭錢)을 1906년 3월 경리원에서 정리한 책이다 즉 수원(水原)·용인(龍仁)·안성(安城) 등 도내의 37개 군에 소속된 각 역둔의 미(米)·태(太)·두(豆)·속(粟)·직(稷) 등의 도조액(賭租額)과 대전액(代錢額)은 물론이고, 재감내역(災減內譯)·실조(實租)·실전액(實錢額)을 수록하였다 또 본원선납(本院先納)·대전항정(代錢恒定)·본군집유(本郡執留)·본군학교수거(本郡學校收去)·민미납(民未納)·종목과수납(種牧課收納)·연례민자납(年例民自納)·본부년례수납(本府年例收納) 등의 명목도 있다 수원군의 지고고마둔도조(紙庫雇馬屯賭租)는 34석 10두이나 금재(今災) 4석 10두로 실도조는 30석과 도태(賭太) 8석이다 각 군의 끝에는 군의 총계가, 책 끝에는 전체의 총계가 항목별로 기록되어 있다 첨지(添紙)로 해당 역둔마다 인민소보고감정(因民訴報告減定)·결대감(結代減)·환승총가(還陞摠加)·갱사가(更査加)·신사가(新査加)·추사가(追査加) 등 각종 명목의 가감 내역을 밝혔다

3) 『경기각군각역둔전답일경두락결복도액실수초록(京畿各郡各驛屯田畓日耕斗落結卜賭額實數抄錄)』

작성자는 궁내부(宮內府) 경리원(經理院)의 경기도 수조관(收租官) 이태하(李泰河)이고, 1책 139장의 필사본으로 되어 있다 소장처는 규장각도서이다. 1906년(광무 10) 3월 경리원이 경기도 각 군의 역둔전답(驛屯田畓)의 일경(日耕)·두락(斗落)·결부(結負)·도액수(賭額數) 등을 기록한 책이다

군단위로 역둔전답의 전일경수(田日耕數), 전(田) 전체에서 철도범입(鐵道犯入)·진전(陳田)을 제외한 실전일경수(實田日耕數), 답두락수(畓斗落數), 각릉대토(各陵代土)와 위토(位土)·치중대이속(輜重隊移屬)·철도범입·천진오보(川陳誤報) 등을 제외한 실답두락수(實畓斗落數), 대좌수(垈座數), 목둔결부수(牧屯結負數), 철도범입과 진천각

양이(陳川各樣頉)를 제외한 실결부수(實結負數), 화속결부수(火粟結負數), 시장(柴場)·초평(草坪)·율원좌수(栗園座數), 도조두수(賭租斗數), 각릉획거(各陵劃去)·치중대획부(輜重隊劃付)·철도범입·진천각양이를 제외한 재조(在租), 재조에서 각 사음료비(舍音料費)·수축비(修築費)를 제외한 실납조(實納租), 도태(賭太), 철도범입과 진천을 제외한 재태(在太), 사음료비를 제외한 실납태(實納太), 도두(賭豆), 사음료비를 제외한 실납두(實納豆), 도직(賭稷), 도속(賭粟), 도시(賭柴), 도전(賭錢), 재전(在錢), 실납결(實納結), 원결(原結) 등을 수록하였다

수원군의 삼봉역(三峰驛)은 전(田) 62일 3식(息) 반경(半耕), 진전 8두 3승락을 제외한 실답은 72석 2두 4승락(升落)이고, 시장 19좌, 도조 459두 19승 중 10석 7두 3승을 제외한 재조는 449석 11두 7승으로 사음료비 22석 9두 7승을 제외한 실납조는 427석 2두였다 도태는 40석 14두 3승으로 사음료비 2석 7승을 제외한 실납태는 38석 13두 6승이고, 도전은 53냥, 원결은 49결 60부 5속이었다 군마다 이러한 내역을 합계한 다음 책 끝에 경기도 전체의 상황을 밝혔다 이는 당시 경기도 각 역둔전답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4) 『경기각군둔역도조기경신임계봉미봉책(京畿各郡屯驛賭租己庚辛壬癸捧未捧冊)』

궁내부(宮內府) 내장원(內藏院)에서 편(編)하였고, 1책 10장의 필사본이다 1899년(광무 3)에서 1903년(광무 7)까지 경기도 각 군 둔역도(屯驛賭)와 각 세액(稅額)의 봉(捧)·미봉(未捧)의 내역을 궁내부(宮內府)의 내장원에서 정리한 책이다

수원·용인(龍仁)·안성(安城) 등 도내의 37개 군에 소속된 각 역(驛)·둔(屯)마다 각각 기해(己亥)·경자(庚子)·신축(辛丑)·임인(壬寅)·계묘(癸卯) 5년간의 미(米)·태(太)·두(豆)·속(粟) 등의 조액(租額)과 대전액(代錢額)은 물론이고 선봉(先捧)·미봉(未捧)·재감(灾減)·필봉(畢捧) 등을 수록하였다

수원군 영화관둔(迎華官屯)의 기조(己租 1899년도 조세액)는 155석 중 21석 15두의 선봉과 133석 5두의 미봉이었고 경조(庚租 1900년도 조세액)는 155석 중 150석의 선봉과 5석의 미봉이었다 신조(辛租 1901년도 조세액)는 160석 중 50석 19두 2승의 재감과 109석 8승의 필봉, 임조(壬租 1902년도 조세액)는 160석 중 151석 12두 선봉과 8석 8두의 미봉, 계조(癸租 1903년도 조세액)는 160석 중 141석 6두 6승의 선봉과 18석 13두 4승의 미봉이 있었다 이처럼 선봉과 미봉은 시기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인다 그런데 미봉된 사유와 이에 대한 조처, 그리고 각 군별(郡別)에 관한 총계는

없다 이 책은 당시 경기지역 역둔전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5) 『경기도각군소재각둔토조사성책(京畿道各郡所在各屯土調查成册)』

수원지방대(水原地方隊)에서 편(編)하였고 1책 24장의 필사본으로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1897년(광무 1) 10월 수원지방대에서 경기도 수원·진위(振威)·양성(陽城)·용인(龍仁) 등 75군의 각 둔토(屯土)를 조사한 책이다 각 군에 소재한 둔전의 도조(賭租)·일경수(日耕數)·두락수(斗落數)·타조(打租)와 소관 기관명을 밝혔다

수원군의 궁내부 소관은 양향둔답(糧餉屯畓)·오타둔답(五朶屯畓)·총융청전답(摠戎廳田畓)·충훈부전답(忠勳府田畓)·용호영답(龍虎營畓)·친군영전답(親軍營田畓)·별비둔답(別備屯畓)·삼도둔답(三島屯畓)·지고전(紙庫田)·숙성둔답(宿城屯畓) 등이고, 관찰부 소관은 고마전답(雇馬田畓)뿐 이었다 반면 지평(砥平)은 수어영둔결(守禦營屯結)만 궁내부의 소관이고, 훈련도감둔결(訓鍊都監屯結)과 관둔결(官屯結)은 본군 소관이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둔전은 대다수 궁내부 소속의 전답이었다

6) 『경기도수원군양안(京畿道水原郡量案)』 -1900년

양지아문(量地衙門 1898~1902)에서 펴냈으며, 73책으로 필사본이다 1900년(광무 4)에 양지아문의 양전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수원군의 39개면에 관한 양안이다 면별(面別)로 구분되어 있으며, 1개 면의 양안은 1~4책으로 되어 있다 양지아문은 1899~1901년 사이에 전국 331개 군 가운데 124개 군을 대상으로 양전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이 양안도 그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다

73책 각각의 표지에는 초사(初查)·재사(再查)·초서(初書)·재서(再書)·초준(初准)·재준(再准)의 시기와 각각의 담당 조사원의 이름을 기재한 부표(付表 조사안)가 붙어 있다 조사안 위에 "중초(中草)"라는 표시가 있어 본 양안은 완성된 양안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양안의 내용은 여러 군데 수정되고 있으며, 곳에 따라서는 매우 심한 수정으로 인하여 폐기된 표시도 많이 보인다

대개 양지아문의 양전사업은 양지아문에 의해 완성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중초본(中草本)을 이후 지계아문(地契衙門)에서 정서하는 형식으로 완성하였던 경우가 많은 듯 하다 그러나 본 양안(중초본)은 이와 달리 심한 수정으로 인하여 무효화 된 듯하며, 따라서 이후 1903년(광무 7)에 지계아문에 의해 상이한 형식과 내용의 별도의 양

안본이 작성되고 있다

표제는 '수원군양안'이며, 내제는 '광무4년 경자 월일 경기도수원군○○면 양안'으로 되어 있다 제69책(북부면)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책의 첫 면에는 양전의 결과로 밝혀진 군내의 전체적 상황을 기록한 군총목(郡總目)이 붙어 있다 총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군계(郡界) 동접(東接) 용인군, 남접 평택군, 서접 남양군, 북접 과천군
② 자호(字號) 천(天)~양추(兩追 1,748자)
③ 전답적척(田畓積尺)
④ 전답결총(田畓結總) 9,137결(結) 24부(負) 4속(束) [응탈(應頉) 3결 7부 4속, 진(陳) 11결 96부 9속, 무술(戊戌) 해일진(海益陳) 1결 51부 1속]
전결(田結) 2,472결 93부[수춘(水春) 24부 9속, 응탈 3결 77부 4속, 진 85부 6속, 무술해일진 8속]
답결(畓結) 6,684결 31부 4속[진 11결 11부 3속, 무술해일진 1결 50부 3속]
⑤ 실전답결총(實田畓結總) 9,119결 99부
⑥ 거민(居民) 14,846호, 와(瓦) 836칸, 초(草) 60,907칸
⑦ 공해(公廨) 24좌(座)와 71칸, 사찰 2좌(와 14칸), 수춘 18좌

각 책의 첫면에는 해당 면(面)의 면 총목이 위의·군총목과 같은 양식으로 기재되고 있으며, 그 끝에는 양전을 담당한 양전위원, 학원(學員)의 이름도 밝혀져 있다

양안의 기재내용은 자호(字號)·지번(地番)·양전방향[地犯]·지형·열좌(列座)·장광척(長廣尺)·사표(四標)·지형도·적척수(積尺數)·등급·결부수·전답주 이름·작인 이름 등과 가대(家垈)일 경우 대주 이름·집주인 이름과 초·와 칸수 등이다

전답의 지형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은 이전 양안과는 다른 양지아문 양안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상단을 별도로 두어 전·답이 위치한 지명인 평(坪)·원(員)·곡(谷) 등과 이에 대한 지심인(指審人)·지심시기도 밝히고 있다 각 자호가 끝나는 곳에서는 동자호 안의 전답총척수·총결수·거민호수·칸수 등을 종합하여 기록하고 있다

총 39면이 73책에 나누어져 있는데, 그 해당 면은 다음과 같다

제1~2책 남면, 제3~4책 문시면, 제5~6책 남부면, 제7·8·19책 남곡면, 제9·10·20책 동북면, 제11~12책 청용면, 제13~14책 정림면, 제15~16책 송동면, 제17~18책 숙성면, 제21~22책 어탄면, 제23책 상홀면, 제24~27책 압정면, 제28~29책 태촌면, 제30~31책 초장면, 제32~33책 삼봉면, 제34책 갈담면, 제35~36책 형석면, 제37~39책

우정면, 제40~42책 장주면, 제43책 토진면, 제44~45책 일용면, 제46~47책 초평면, 제48~49책 용복면, 제50~51책 오정면, 제52~53책 매곡면, 제54~55책 팔탄면, 제56책 오탄면, 제57책 안녕면, 제58책 수북면, 제59~60책 포내면, 제61책 가사면, 제62책 광덕면, 제63책 종덕면, 제64~65책 공항면, 제66책 양간면, 제67~68책 현암면, 제69~70책 북부면, 제71~72책 장안면, 제73책 청호면(이상 39개면 이다)

7) 『경기도수원군양안(京畿道水原郡量案)』 -1903년

양지아문의 양안 이외에 같은 수원군 것으로 지계아문(地契衙門 1901~1904) 양안은 1903년(광무 7)에 작성한 수원군 39개 면에 관한 양안으로 66책 필사본이다 지계아문은 양지아문에 이어 전국 94개 군을 추가로 양전하였다 이때 양지아문에 의해 이미 양전이 시행되었던 곳은 그 중초안(中草案)을 정서하는 형식으로 양안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수원군에서의 사정은 이와 같지 않았던 듯하다

수원군에서 시행된 양지아문의 양전사업은 전품등제(田品等第)를 지나치게 상품으로 규정하고, 진결(陳結 황폐한 면세전에 대한 조세)을 실기전(實起田)으로 파악하는 등 결수(結數)의 남증(濫增)이 지나쳐 많은 민원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당시의 경기양무감리(京畿量務監理)가 처벌되고, 이 지방에 대한 새로운 양안이 시행되는 등 일련의 대책이 강구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양지아문에 의한 양안본은 극심하게 수정되거나 부분적인 폐기 등 혼란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후 이 양안은 무효처분 된 듯하다 따라서 별도의 상이한 형식과 내용의 양안이 지계아문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이것이 수원군양안이다

이 양안의 기재 내용은 지번·양전방향·토지등급·지형·열좌·장광척·적척수·결부수·두락수(斗落數)·일경수(日耕數)·사표·시주명(時主名) 등이다 양지아문 양안과 비교할 때 지형도를 생략한 점, 두락·일경수를 추가한 점, 작인명을 빼고 시주명만을 기록한 점 등은 이 양안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두락제(斗落制)를 채택한 것으로서 당시의 개혁방안 중의 하나이다 양안에는 전주(田主)와 전답(田畓)의 넓이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농민 개개인의 경작면적이나 소득관계 등 농민경제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자호가 모두 붙어 있지도 않으며 또한 자호별 전답적척수, 결총수 등의 집계도 빠진 부분이 많다 따라서 각 책의 해당 면에 대한 면총목(面總目) 나아가 군총목도 당연히 추계(推計)되지도 않고 있다 또한 양전을 담당한 양전위원, 학원명도 기록되고 있지 않다 이상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양안은 미완성인 채로 남겨졌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특색의 하나는 일자오결(一字五結)원칙이 매우 엄

격히 지켜지고 있으며, 이에 1자호 내에 5결 이상의 여결(餘結)이 생기면 이를 차자(次字)로 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총 39개 면이 66책에 나누어 있는데, 그 해당 면은 아래와 같다

제1책 일용면, 제2책 청룡면, 제3책 형석면, 제4책 현암면, 제5책 광덕면, 제6책 공향면, 제7책 정림면, 제8책 수북면, 제9~10책 포내면, 제11~12책 어탄면, 제13~14책 남면, 제15~16책 안녕면, 제17~18책 초장면, 제19~20책 매곡면, 제21~22책 청호면, 제23·36책 초평면, 제24책 용복면, 제25책 양간면, 제26책 토진면, 제27책 송동면, 제28책 가사면, 제29책 갈담면, 제30책 상홀면, 제31책 오타면, 제32~33책 북부면, 제34~35 숙성면, 제37~38책 장안면, 제39·43·44책 남곡면, 제40~41책 종덕면, 제42·45책 삼봉면, 제46~47책 남부면, 제48~49책 압정면, 제50~51책 태촌면, 제52~53책 동북면, 제54~55책 장주면, 제56·58책 우정면, 제59~60책 오정면, 제61~62책 문시면, 제63·65책 팔탄면, 제66책은 양지아문에서 펴낸 수원군양안의 제34책의 후반 파손분이나 본 양안 속으로 잘못 편입되어 있다

8) 『경기수원부내수사원장부급적몰전답개타량병록성책(京畿水原府內需司元帳付及籍沒田畓改打量並錄成冊)』

수원부에서 편(編)하였고, 1책 17장의 필사본으로 현재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1694년(숙종 20) 4월에 수원부의 오정면(吾井面)·숙성면(宿城面)·북둔면(北芚面)에 소재한 원장부(元帳付)에 기록된 내수사의 전답과 적몰전답을 타량(打量)한 후 작성한 양안(量案 조선시대 토지대장)이다

기록된 내용은 자호(字號)와 각 필지마다 지번(地番)·양전방향(量田方向)·토지등급(土地等級)·지형(地形)·지목(地目)·장광척(長廣尺)·결부수(結負數)·시작인명(時作人名) 등이다 오정면에는 11개 자호에 속하는 52필지 전답이 3결 4부(負) 1속(束)으로 시작인은 1사람이었다 숙성면의 시작인은 모두 노비의 이름인데, 답은 4결 11부 4속 중 기전(起田)이 50부 9속이며, 기답총전(起畓總田)은 3결 52부 5속인 반면 진답(陳畓)은 8부였다 책의 말미에는 유수(留守)의 수결(手決)이 있다

9) 『광주부수원부춘천부개성부각양면세갑오승총초책(廣州府水原府春川府開城府各樣免稅甲午陞總抄冊)』

→『광주등부각양면세승총초책(廣州等府各樣免稅陞總抄冊)』

1894년(고종 31) 말경에 작성한 1책 8장의 필사본으로 편자(編者)는 미상이다 소장처는 규장각도서이다 수원부를 비롯한 4개 부의 각양면세전답(各樣免稅田畓) 중 갑오승총(甲午陞摠)으로 출세(出稅)된 전답을 기록하였다. 기록된 순서는 개성부·춘천부(春川府)·수원부·광주부로 승총된 전답의 명목과 결수(結數)를 적고 부별(府別)로 총계를 수록하였다 승총된 전답은 사포서전답(司圃署田畓)·장원서전(掌院署田)·상의원전답(尙衣院田畓)·훈련위답(訓鍊位畓)·성균관위전(成均館位田)·서원답(書院畓)·아록위전(衙祿位田)·어의궁전(於義宮田)·청교역위전답(靑郊驛位田畓) 등 각종 아문둔전(衙門屯田)과 잡위전(雜位田)·제궁가절수전(諸宮家折受田) 등이다 각 부별 총 결수는 개성부 597결(結) 10부(負) 8속(束), 춘천부 315결 12부 8속, 수원부 514결 38부 9속이고, 광주부의 결수에 대한 합계가 없다

10) 『남양관계서류(南陽關係書類)』

이 서류들은 남양지방금융조합에서 1908년 탁지부에 보내는 서류들을 묶은 것이다 1책 58장으로 현재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이를 통해 그 당시 남양의 상업실태와 조합 및 중앙관서간의 관계를 엄밀히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 중 대표적인 제목만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강희(康熙) 2년 6월 4일 탁지부감독과장(度支部監督課長), 강희 2년 6월 11일 탁지부감독과장(度支部監督課長), 강희 2년 7월 18일 탁지부차관각하((度支部次官閣下), 강희 2년 8월 18일 탁지부이재국감독과(度支部理財局監督課), 강희 2년 8월 27일 탁지부이재국감독과(度支部理財局監督課), 강희 2년 9월 6일 탁지부대신임선준각하(度支部大臣任善準閣下), 강희 2년 9월 11일 탁지부이재국감독과(度支部理財局監督課), 강희 2년 9월 12일 탁지부대신임선준각하(度支部大臣任善準閣下), 강희 2년 9월 16일 탁지부대신임선준각하(度支部大臣任善準閣下), 강희 2년 9월 18일 탁지부대신(度支部大臣), 강희 2년 10월 14일 탁지부(度支部) 등이다

11) 『남양둔추수성책(南陽屯秋收成册)』

1894년(고종 31) 12월 경리원에 제출된 것으로 남양군에 있던 총어둔(摠禦屯) 소속 둔전답의 추수기로 현재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표제에 '총어둔(摠禦屯) 사음(舍音) 조현삼(趙鉉三)' 이라 기록하여 총어둔 전답임을 나타내고 있다 기재양식은 우선 동별로 각 필지마다 밭과 논으로 나누고 각각 두락수, 도조액(혹은 타조액)을 적은 다음, 그해의 토지이용 유무를 당년 진폐(陳廢) 또는 구진(舊陳)이라 하여 진폐 여부로 구분하고 맨 밑에 작인의 이름을 적고 있다 본 문서에 기록된 남양군 둔전답의 1894년 수조총액은 조 21석 2두였다 그 중 종자로 3석을, 결복(結卜)으로 9석, 양식 쌀로 남겨 둔 것이 4석, 기수(旗手)에게 4석, 기타 2두를 공제하여 그해 11월 실제 상납액은 조 1석이었다 이때의 둔전답을 감독한 기사(屯監騎士)는 최완길(崔完吉)이었다

12) 『남양부마산동소재의열궁전답타량성책(南陽府馬山洞所在義烈宮田畓打量成冊)』

1783년(정조 7) 경기도 남양부 마산동(馬山洞)에 소재한 선희궁(宣禧宮) 소속 전답을 남양부에서 타량(打量)하여 보고한 것으로, 소장처는 규장각도서이다 선희궁은 1762년(영조 38) 창설 당시 의열묘(義烈廟)라 하였는데, 1788년(정조 12) 선희궁으로 개칭하였다 기재양식은 각 필지마다 자호(字號) 아래에 지번, 양전방향, 토지등급, 야미수(夜味數), 지형, 지목, 길이와 넓이[長廣尺], 결부수, 사방표시[四標], 기주(起主) 등을 기록하였다

미지곶면(旀知串面)의 전답에는 사방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특히 미지곶면의 논은 결부수만 기록되어 있다 마산동 둔전답의 기주는 모두 궁둔(宮屯)으로 되어있지만, 미지곶면 전답의 기주와 진주(陳主)는 노복(奴僕) 삼복(三福)으로 되어있다 1783년 타량 당시 마산동 소재 의열궁 전답의 총결수는 5결 49부 3속이었는데, 그 중 오래된 진전답이 2결 45부여서 실제 경작하는 전답은 3결 4부 3속이었다 미지곶면의 총전결수는 1결 76부였다 이것의 내용을 보면 묵힌 밭이 27부 6속이고 경작하는 밭이 24부, 경작한 논이 1결 24부 4속이었다 맨 끝에 행부사(行府使) 이(李)라고 적혀 있다

13) 『남양부미지곶면소재선희궁전답양안(南陽府旀知串面所在宣禧宮田畓量案)』

1870년(고종 7) 남양부에서 작성한 본부 미지곶면(旀知串面)에 있는 선희궁(宣禧宮) 전답의 양안으로 현재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기재양식은 각 자호(字號) 아래에 매필지마다 지번, 양전방향, 토지등급, 지형, 지목, 야미수(夜味數), 길이와 넓이[長廣尺], 결부수, 사방표시, 기주(起主)를 적고 있다

1870년 미지곶면 소재 선희궁 전답은 4개의 자호(字號)로 나뉘어 있지만 기주는 모두 삼복(三福)이라는 한 인물이었다 당시 선희궁 전답의 총결수는 1결 44부 2속이었는데 그 중 논이 19부, 밭이 1결 25부 2속이었다. 맨 마지막에 행부사(行府使) 정(鄭)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14) 『남양부소재장용영전답안(南陽府所在壯勇營田畓案)』

남양부 소재 장용영 전답의 양안으로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언제 누가 작성하였는지 불명확하다 기재양식은 지역 단위로 자호(字號) 다음에 각 필지마다 지번, 양전방향, 토지등급, 지형, 지목, 야미수, 장광척, 결부수, 사표, 진전과 시기전의 구분, 두락수, 현재 작인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본 책에 기재된 남양부 소재 장용영 전답의 총전결수는 4결 73부 8속이었다 그 중에서 현재 경작하는 시기전(時起田)이 53부 8속이고, 3석 18두 3승 낙지(落只)였다

15) 『남양부소재전답진기구별성책(南陽府所在田畓陳起區別成冊)』

1783년(정조 7) 경기도 남양부에 소재한 전답의 현재 경작 상황[陳起]을 남양부에서 책으로 만들어 보고한 것이다 기재양식은 각 필지마다 자호(字號) 아래에 지번, 양전방향, 토지등급, 야미수(夜味數), 지형, 지목, 길이와 넓이[長廣尺], 결부수, 사방표시, 기주(起主)와 진주(陳主) 등을 기록하였다 미지곶면의 전답에는 사방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특히 미지곶면(旀知串面)의 논은 결부수만 기록되어 있다

본 책에 조사된 전답이 남양부 마산동에 있는 선희궁 소속 전답임을 본 책의 기록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남양부마산동소재의열궁전답타량성책(南陽府馬山洞所在義烈宮田畓打量成冊)』을 통해 알 수 있다 두 책의 내용은 거의 같고 미지곶면의 전답 기

록에서만 약간 차이가 있다 『남양부마산동소재의열궁전답타량성책』에서는 1424번지의 전답이 조사된 반면 본 책에서는 1426번지의 진전과 기전 상황이 조사되었고 미지곶면에 소재한 전답 번지의 기재 순서가 두 책이 다르다 또 앞책에서는 미지곶면 전답의 기주가 삼복(三福)으로 되어 있었는데, 본 책에서는 삼복(三卜)으로 표기되어 한자만 다르다 본 책의 앞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마산동 소재 전답의 기주는 모두 궁둔전(宮屯田)으로 되어 있지만 미지곶면 전답의 기주와 진주는 노복 삼복(三卜)이었다 1783년 타량 당시 마산동 소재 의열궁 전답의 총결수는 5결 49부 3속이었는데 그 중 오래 묵은 진전답이 2결 45부여서 실제 기전답은 3결 4부 3속이었다. 미지곶면의 총전결수는 1결 76부였다 이것의 내용을 보면 묵힌 밭이 27부 6속이고 경작하는 밭이 24부, 경작하는 논이 1결 24부 4속이었다 책의 맨 끝에 본 전답의 진전과 기전 상황 조사에 참여한 기록관과 호장(戶長)의 수결이 적혀 있다

16) 『남양부우음도소재궁전답개타량성책(南陽府牛音島所在宮田畓改打量成冊)』

1783년(정조 7) 남양부에서 본부 우음도(牛音島)에 있는 수진궁(壽進宮) 소속 전답을 타량하여 책으로 만든 것으로 현재 소장처는 규장각도서이다 기재 양식은 자호(字號) 아래 각 필지마다 지번, 토지등급, 양전방향, 지형, 지목, 야미수(夜味數), 길이와 넓이, 결부수, 사방표시, 기주 순으로 적고 있다.

1783년 당시 수진궁 전답의 기주는 모두 노복 구오동(九五同)이었다 전답의 전결 총액은 23부 9속이었는데, 그 중 논이 3부, 밭이 20부 9속이었다

17) 『남양총둔경둔추수기(南陽摠屯經屯秋收記)』

→『경리원추수기(經理院秋收記)』

1898년(고종 24) 1월 경리원(經理院)에 제출된 1897년도 경기도 남양 소재 총둔(摠屯), 경둔답(經屯畓)의 추수기인데, 소장처는 규장각도서이다 기재양식은 동별로 작인명, 두락수, 타조액을 적고 마지막에 타조총액과 각종 지출을 제한 실제 상납액을 기록하고 있다

1897년 추수상황을 보면 미지곶면(旀知串面) 연화동(蓮花洞)에 있는 총둔답의 타조총액은 18석 2두였다 여기서 종자와 결복조(結卜條), 사음(舍音)에게 예하(例下)한

것, 하인에게 든 경비 등을 제하면 실제 상납액은 2석 8두였다 당시 사음은 배선명(裵善明)이었다 관수리면(觀樹里面) 해일동(海一洞)에 있는 경둔답의 타조 총액은 8석 17두였다 여기서 결복조, 사음의 식비, 하인에게 든 경비를 제한 실제 상납액은 4석이었다 두 지역의 실제 상납조(上納租) 6석 8두를 돈으로 환산하니 90냥 5전이었다

18) 『봉불기복게(奉佛祈福偈)』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4호로 용주사(龍珠寺)에 있다 정조가 부왕(父王) 장헌세자의 원침을 양주 배봉산에서 화산으로 옮기고,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790년(정조 14) 용주사를 자복사(資福寺)로 창건하였다 『봉불기복게』는 1796년(정조 20) 5월에 정조가 용주사 부처님을 받들고 복을 기원하기 위해 불교식 가사체로 손수 지어 내렸다

수사본(手寫本)으로 된 이 기복게는 질이 좋은 닥종이에 먹으로 썼다 글씨는 해서체(楷書體)로 정조의 친필로 추정되며, 필치가 매우 유려하고 2책으로 되어 있다 어제본(御製本)답게 가장자리를 청동으로 제본하고 5개의 연꽃무늬로 장식하였다 내부는 붉은 선으로 굵게 경계선을 그리고 그 안에는 역시 붉은 색의 가는 선으로 칸을 나눠 글을 썼다 수제(首題)에는 "어제화산용주사봉불기복게(御製花山龍珠寺奉佛祈福偈)"라고 쓰여있고 한자 낮추어 게송(偈頌)이 시작되었다. 크기는 가로 45㎝, 세로 68㎝이며, 판광(版匡 서책에서 판의 사주를 둘러싼 검은 선. 그러나 기복게는 붉은 선으로 둘렀다.)은 가로 36㎝, 세로 53㎝이다

이 기복게는 정조의 수많은 글 중에서도 부처님에 대한 칭송과 낳아주신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잘 나타나 있다 부처님을 봉안하는 기복게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이 사찰은 현륭원(顯隆園 · 융릉)의 재궁(齋宮 능 옆에 제사 지내기 위하여 지은 집)으로 건립하였다 소자(小子 정조)는 8만 4천의 보안법문(普眼法門)의 경의(經義)를 베껴 썼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삼가 게어(偈語)를 지음으로써 삼업(三業 · 몸과 입과 마음의 세 가지 욕심으로 인하여 짓는 죄업)의 공양을 드리며 은혜에 보답하는 복전(福田)을 짓습니다. 또한 부모님에게는 길러주신 은혜가 있으니 공경으로써 공양하면 이것이 바로 보은의 길입니다"라고 하였다

게송은 ① 초서분(初序分) ② 정종분(正宗分) ③ 결게분(結偈分)으로 나누어 읊었다

1) 사람과 하늘을 대신해서 고하는 처음 차례분[初序分 — 替告人天]

혜일(慧日) 같은 대성(大聖)의 존귀하심이며, 그 위덕(威德)을 헤아려 알지 못하겠습

니다 종을 쳐서 사방에 고하여 뭇 백성을 깨우쳐 바른 땅에 오르게 하소서.

2) 정종분(正宗分) 7

첫째, 대지(大地)의 숙인(宿因)

보화(寶花)가 우주법계에 날으고 원수(員樹)가 도리천(忉利天 수미산 꼭대기에 있으니 중앙에 제석천이 있고 사방에 33천이 두호하고 있는 곳)에 나며 동방의 땅에 길성(吉星)이 경사롭게 비치니 화산에 새 절을 지었노라

둘째, 칠보를 공양함[供養七寶]

구추(九秋)의 치자꽃이 피는 계절에 일을 정리하여 바로잡을 것을 아뢰고 금·은과 유리·옥[마노 碼瑙]과 조개[거거 · 硨磲] 등 칠보를 공양하여 축수하노라

셋째, 장엄한 일만게어[莊嚴萬偈]

청정한 광엄(廣嚴)을 장식하니 층층한 부처님의 집이 웅장하도다 나에게 우담화(優曇華 3천년에 한 번씩 꽃이 핀다는 상상의 식물)의 발과 같은 8만대장경이 있도다[萬四千大書]

넷째, 운에 응해서 발상[應運發祥]

과연 금륜의 성상이 때 맞춰 구해지니 향내음 바람이 7등에 붙고 연꽃 비가 삼거(三車 · 삼계를 불난 집에, 삼거를 성문·연각·보살의 삼승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를 기름지게 하도다

다섯째, 복덕은 무량하라[福德無量]

유해(乳海)의 무량한 복을 초생(初生) 때부터 주심이 도마죽위(稻麻竹葦 벼와 삼, 대와 갈대가 서로 엉키어 있다는 뜻으로 많은 물건이 모이어 서로 엉킨 모양)와 같이 서로 얽히어 십승(十乘)의 불국토에 꽉찼도다.

여섯째, 모든 부처님은 호우 하시라[諸佛護佑]

비로차나불의 빛과 가릉빙가(迦陵頻伽 불교에서 이르는 새)의 소리가 기묘하게 들리는 것 같이 일어나 사랑스럽게도 운치를 띄어 밝게 보살피며 도와 줄 것을 크게 발원하도다

일곱째, 보살의 원력[菩薩願力]

여러 세(世)의 부처님을 다시 모시니 하나 하나가 다 부처님의 정(情)으로서 내 참됨이 이 같음을 아니 법력(法力)이 가없이 비치는 도다

3) 결게분(結偈分) 2

첫째, 정토극락(淨土極樂)

감로(甘露)가 정계(淨界)에 두루 퍼지고 추월(秋月)이 창공에 가득하니 한 구비 넘어 한적한 사찰은 왕성에서 80리 거리에 있도다

둘째, 항사보록(恒沙寶籙)

어언간에 보리(菩提)가 나타나서 범춘(梵春)에 오르도록 인도함에 게어(偈語)를 지어 부처님의 은혜를 찬송하니 보응(報應 . 그 인과에 따라 선・악이 대갚음 됨)의 과(果)가 진진(溱溱)함을 점치겠도다

내 즉위 20년 을묘 5월(음력)에 게를 쓰다

『봉불기복게』는 각기 5언 4구의 게문이 있고, 그에 모두 해석이 붙어 있다

19) 『수원군갈담면갈등리치사남인김자근봉핵검문안(水原郡葛潭面 笁等里致死男人金自斤奉覈檢文案)』

1898년(광무 2) 10월 남양군수 김두희가 수원군 갈담면 갈등리에서 죽은 김자근봉의 치사 사건을 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문서이다 남양군 보고서 4호로 이름 붙여진 이 보고 문안은 먼저 남양군수가 이 사건을 재조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후, 본 사건의 고소인, 참고인, 피의자를 3차에 걸쳐 심문하고 시신을 검핵한 결과를 토대로 본 사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싣는 순으로 작성되어 있다 남양군수는 1898년 10월 21일 도착한 49호 훈령에 따라 이미 안산군수가 1차 검핵한 것을 다시 재검하기 위한 2차 검핵관으로 뽑혀, 10월 23일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갈담면 갈등리에 가서 참고인, 관련인, 고소인 등을 취조하였다 본 사건에 관한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고소인 김차봉(金次奉)을 불러 죽은 자와의 관계, 치사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치사인의 인적 사항, 피해 상황, 증거물의 확보 여부를 질문하였다 김차봉은 "죽은 자의 아우로 두 형제가 추석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산소에 성묘 다녀오다 피의자 방원여 일족에게 투장(偸葬)한 혐의로 붙잡혀 형 김자근봉이 구타, 폭행당하고 그들의 위협에 못이겨 투장한 묘소 5평의 땅 값으로 1,300냥을 8월 그믐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성표(成標)를 주고 풀려났다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고소하여 방원여를 잡아오도록 했으나 그는 이미 숨어버렸고 성표만 방가 일족이 우리 사촌형에게 돌려주었다 그런데 형 자근봉은 폭행당한 상처가 깊어 8월 29일 운명하였다 우리는 형이 구타로 치사한 것이기 때문에 시신을 방원명의 집 내방에 들여놓고 수원군에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음 증인으로 농민 유영실(劉永實)을 불러 김자근봉의 병사와 타살 여부를 문의하였다 그는 "사건 당일 나무하러 방원여의 산 근처에

갔다가 방씨 일족이 피살자에게 투장 혐의를 씌워 매질하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방씨에게 욕설을 듣고 돌아왔다 그 후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갔다가 김씨 일족에게 붙들려 고색리로 끌려왔고, 그 동생이 관에 고소한 후 다시 본 군에 붙들려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같은 날 이웃 농민 방금동에게 사건 경위를 물으니 그는 "본인은 사건의 발생 경위는 모르고 김씨 일족이 시체를 방원여 집에 메고가는 것을 보다가 김가네에게 붙들려 여기까지 온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또 다른 관련인 방춘교를 불러 본 사건의 관련자로서 김자근봉의 치사 원인에 대해 심문하였다 그는 "친척인 방원여의 산 꼭대기에 그의 외삼촌 묘소가 있었는데 음력 2월경 이 무덤 위에 투장한 무덤이 생겨 범인을 찾고 있었다 소문에 8월 15일 김자근봉 일행이 그 근처를 방황하기에 범인으로 지목하고 매질하며 추궁했고, 묘자리 값으로 1,300냥을 받아내고 풀어주었다고 하나 본인이 본 바가 아니며 나는 동리 어른으로서 김가네에게 붙잡혀 온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또 관련 농민 이원익을 심문하니 그는 "우리 산이 방가네와 인접하여 투총(偸塚)한 무덤 주인을 찾고 있었는데 사건 당시 서울에서 돌아오는 길에 본 사건을 목격하고 방가가 산 값을 흥정하는데 흑심이 생겨 힐문에 동참한 것이고 김가의 치사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날 사체 검안시 심부름할 오작사령(忤作使令) 강영근에게 시체 검안시 조작하거나 허위기재하면 엄중 처벌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같은 날 수서기(首書記) 홍영섭, 형방서기 박재하, 의생(醫生) 박은석, 율생(律生) 김장순, 오작사령 강영근과 고소인, 간증인, 관련인 등을 모아 이들 앞에서 죽은 김자근봉의 시체를 검험하였는데, 봉쇄하여 둔 시신을 검시하기까지의 절차와 검시 내용 및 검시 후 시신을 군인이 지키게 한 사실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시신 검안 결과 사망의 직접적 사인이 타살임을 확인하고 있다 같은 날 다시 고소인, 간증인, 관련인을 차례로 불러 치사인의 직접적 사인이 타살인 점을 확인하고 주범이 방원여이라는 사실을 유도하여 시인을 받아내는 2차 심문을 단행하였다 같은 날 마지막으로 3차 심문을 다시 반복하여 이 모든 사실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본 사건에 대한 검핵관의 판결을 기재하고 있다

즉, 본 사건은 김자근봉이 타살된 것이며 구타 치사케한 주범 방원여와 구타 폭행시 악행을 주도한 간범 방선일, 이인준은 도주 중이라 추적하고 있으며 이원익은 저지른 행위로 보아 관련인으로 보여 구금하였고, 간증인 방금동은 단초(單招)만 받고 석방하였으며 고소인 김차봉도 석방하였다 이상 본 사건에 관계되어 심문에 응한 사람들과 구속자의 명단을 기록한 책자 1건과 검핵 사실에 관한 문안 2건을 만들어 올리고 검핵관은 본 군으로 돌아갔음을 검핵관 남양군수 김두희의 직인을 찍어 경기

재판소 판사에게 1898년 10월 26일 보고하고 있다

본 문서는 수원부에 접수된 치사 사건의 타살 여부를 재조사한 과정과 그 결과를 상세히 기록한 것이다 묘지 문제로 발생한 과실치사 사건의 용의자가 수원부에 거주하였기에 수원부에 접수되어 남양군수가 사건의 수사와 처리를 맡았다

20) 『수원군만평리향탄둔책(水原郡晩坪里香炭屯册)』

→『경리원전독쇄책자(經理院前督刷冊子)』

이 책은 경리원(經理院)에서 편찬하였고 현재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1899년(광무 3) 10월 경리원에 제출된 수원군 만평리에 소재한 향탄둔 전답의 추수기이다 기재양식을 보면 만평리의 향탄둔 전답을 도조로 조세를 내는 것[賭租秩]과 타조로 내는 것[打租秩]으로 나눈 다음 각 동리별로 작인의 이름, 두락의 수, 도조액과 타조액을 기록하고 있다 이곳의 도조 총액은 40석 1두, 타조 총액은 50석이며 수조 총액은 90석 1두였다 그 가운데에서 종자로 44석, 큰 저수지[大洑]를 새로 고쳐만들 때 떡 쌀값 1석 1두, 중간 저수지[中洑] 고칠 때 떡 쌀값 12두, 이동(二洞)에 있는 저수지 고칠 때 점심으로 4두, 반월 저수지[半月洑] 고칠 때 점심값 1두, 중간 저수지 보수할 때 빈 가마 50개 값으로 1석, 사음(舍音)에게 10석, 예하조(例下條) 18석 등의 지출을 제하고 남은 실제 상납액이 72석이었다 그 가운데 33석 10두는 황장연(黃長淵)의 집에 보관하고 38석 10두는 이순원(李順元)의 집에 보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1) 『수원둔수봉책(水原屯收捧册)』

→『전독쇄소책자(前督刷所冊子)』

1894년(고종 31) 10월 경리청(經理廳)에 제출된 수원, 평택(平澤), 인천, 부평에 있는 둔전답 도조의 징수 상황을 기록한 책이다 기재양식은 평택 사개천(私介川) 전답을 도조로 거두는 것과 타조로 거두는 것으로 나눈 다음 타조의 경우 작인명(作人名), 두락수(斗落數), 추수액(秋收額), 타조액(打租額)을 기재하고, 도조하는 것은 작인명, 두락수, 도조액을 기록하고 있다 인천과 부평은 도조의 총액만 기록하였다 맨 마지막 부분에 합산한 수조 총액을 돈으로 환산하였으며 지출 경비를 제하고 실제 남은 금액을 최종 집계하고 있다

1894년 당시 수원둔의 수조 총액은 평택, 인천, 부평에서 징수한 수조액까지 총합

하여 조 100석 7두 8승 2합이었다 여기에서 종자로 27석 6두 2승, 장리로 18석 4두 8승을 지급하고 보수세(洑水稅)로 5석 10두, 평택 결작미(結作米)로 5석, 양식 쌀로 남긴 것이 8석, 기수(旗手)의 예하(例下)로 3석, 사령(使令)의 양식 쌀로 1석을 지출하였다 또 인천과 부평 사음(舍音)의 예하(例下)로 4석, 인천의 식주인예하(食主人例下)로 1석, 이전 관원들의 급료로 2석, 도합 62석 1두 2승을 지출하여 실제 상납할 조는 38석 6두 6승 2합이었다 이것을 가마니당 32냥에 팔아 돈으로 1,225냥 6전이 되었는데, 여기에 수원 실덕면(實德面)의 수세전(收稅錢) 169냥 5전 6푼을 합하니 모두 1,395냥 1전 6푼이었다 이 중에서 21냥 1전을 평택의 결전으로 빌려주고 64냥은 수원의 사음에게 예하(例下)하고 31냥은 기수에게 예하하고 3냥은 순령수(巡令手)와 뇌자(牢子)에게 인사값으로 지급하고 200냥은 오고 갈 때 경비로 썼으며, 34냥은 집사청(執事廳)에 의례히 내리는 것으로 주고 983냥 2전 5푼은 평택의 신결전(新結錢)으로 지급하여 모두 1,334냥 3전 5푼을 썼다 이 지출을 제하고 실제로 남은 돈 64냥 8전 1푼은 모두 당오전(當五錢)이었다

22) 『수원목장결미수축곳성책(水原牧場結未收逐廳成冊)』

→『전독쇄소책자(前督刷所冊子)』

1898년(광무 2) 5월 경리원(經理院)에 제출된 수원 양야목장(陽也牧場)의 결전 원액과 미수 금액을 적은 책이다 기재양식은 결전 납입자의 성명을 적고 그 아래에 결전 납입 원액을 적은 다음 맨 하단에 미납자의 경우 미납액수를 기재하고 있다 1898년 수원 양야목장의 결전 금액은 5,080냥 7전 5푼이며, 미수 금액은 835냥이었다

23) 『수원부각포선세혁파성책(水原府各浦船稅革罷成冊)』

1886년(고종 23) 11월 수원부에서 수덕면(守德面) 동청포(東靑浦), 오타면(五朶面) 흑진포(黑津浦), 우정면(雨井面), 초장면(草長面), 토진면(土津面) 옹포(甕浦) 등 12개 포구에 대한 선세(船稅)의 혁파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기재 양식은 각 포구별로 선세의 종목, 세액, 세금을 받아간 관청 또는 거두어 간 담당자 이름, 선세를 걷기 시작한 년도 순으로 되어 있다 선세를 받아 간 관청은 해방영(海防營), 순화궁(順和宮), 경우궁(景祐宮) 등이었고, 개인으로는 어음사공(於音沙工), 포구주인(浦口主人)을 비롯해 각 지역의 수세 담당자들이었다 선세의 수세 품목을 보면 배를 비롯하여 배에 싣고 포구에 들어 온 새우젓, 굴젓, 곡물, 생선, 땔감, 소금, 종이 등 각종 물품이 징수 대

상이 되었다 세액은 각 물품별로 징수 기준액을 정해서 돈이나 곡물, 또는 물품 자체로 징수하고 있는데, 포구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포구세 징수의 구체적 사실을 보면 수덕면 동청포의 경우 새우젓 1동이에 선세 1냥, 굴젓 1동이에 1냥 5전을 해방영에서 1884년부터 거두어 가기 시작했고, 배에 대해서는 매척마다 2냥씩을 언세(堰稅)로서 수북면(水北面) 서상돈(徐相敦)이 거두어 갔다 오타면 흑진포는 굴젓 1동이에 1냥 5전, 새우젓 1동이에 1냥, 조 1석에 2전, 쌀 1석에 3전을 순화궁과 해방영에서 각기 거두어 갔는데, 순화궁은 1886년(고종 23)부터 해방영은 1884년(고종 21)부터 포구세를 징수하였다 조 1석에 2전, 쌀 1석에 3전은 어음사공이 거두었으며, 선세는 매선에 2냥씩을 언세로서 수북면 서상돈이 거두어 갔다 우정면의 경우 선세는 매선마다 5냥씩을 언세로 김경준(金敬俊)이 거두어 갔고 조 1백석에 조 1석, 쌀 1백석에 쌀 1석을 어음사공이 거두어 갔다 토진면 웅포에서는 청어 1동(同)에 7전, 조기 1동에 7전, 갈치어 1동에 1냥, 큰 미역 1동에 1냥 5전, 중간 미역 1동에 1냥, 고등어 1동에 1냥, 북어 1태에 1냥을 비롯하여 생강 1부(負)에 2전, 목화 1척(隻)에 5전, 조 1석에 2전, 잡젓갈 1동이에 2전 5푼, 백목 1동에 5전, 소금 1석에 1전, 우피 1칭(稱)에 2냥 등을 1884년부터 해방영에서 거두어 갔다 전 500냥은 1년 포세로 소속 주인처에서 거두어 갔고 새우젓 4동이를 경우궁에서 1881년(고종 18)부터 거두어 갔다 그리고 각종 잡물 대신 거두는 돈 25냥과 매선당 선세 2냥을 1881년부터 해당 포구주인이 부상(負商)에게서 거두어 들였다 여타 포구도 이와 비슷하게 포구세를 징수하였다 그런데 공향면(貢鄕面) 해창포(海倉浦)의 경우는 새우젓, 굴젓을 실은 배의 그 크기에 따라 본 면에 사는 정원조(鄭元朝)가 입안처(立案處)로서 소금으로 거두어 갔다 다른 물품을 실은 배는 매척마다 그 물품에 따라 본 면의 진사 이용길(李容吉)이 그 물건을 언세로 거두어 갔다 그리고 소금배와 곡물배는 매척마다 그 대소에 따라 본 면의 김춘명(金春明)이 어음봉감(於音捧監)으로서 곡물을 거두어 갔다 어물선은 매척마다 어물의 다소에 따라 풍헌(風憲), 동소임(洞所任), 권농(勸農), 읍주인(邑主人)이 물품대로 거두어 갔다 각 물선은 매척마다 그 크기에 따라 1885년(고종 22)부터 토진면의 이민환(李敏煥)이 해방영세라 하여 세로 거두어 갔다 송동면(松洞面) 빈정포(賓汀浦)의 경우도 물품을 실은 배마다 그 대소에 따라 본 면의 선경삼(宣京三)이 해방영세라 하여 1884년부터 세로 거두어 갔다 팔탄면(八灘面) 금천포(金川浦)에서도 매척마다 그 물종에 따라 본면의 오위장(五衛將) 고영식(高英植)이 해방영세라 하여 1884년부터 세로 거두어 갔다

24) 『수원부갑오조년분성책(水原府甲午條年分成冊)』

1895년(고종 32) 12월에 수원부에서 논과 밭 등 조세 징수대상 토지의 1894년도 조세납부 실제 총결수를 조사하여 보고한 것이다

기재양식은 병술조 연분성책과 같다 1894년도 수원부 연분성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894년 수원부의 원전답(元田畓)은 11,821결 61부 3속이었는데 그 중 밭은 6,426결 5부 3속이었다 이 밭의 원결수에서 무세전(無稅田) 962결 3부 5속, 구진전(舊陳田) 2,894결 57부 7속을 비롯한 각종 진전을 제한 전년도의 실결전(實結田)이 2,299결 4부 8속이었다 여기에 지난 해의 속전환기전(續田還起田) 65결 42부 3속, 당년의 구진권벽환기전(舊陳勸闢還起田) 71부, 경신년(庚申年) 구진권벽환기전 18결 32부 2속, 매곡동(梅谷洞) 명고서원위환출세기전(明皐書院位還出稅起田) 2결 66부 6속, 선희궁유토면세환출세기전(宣禧宮有土免稅還出稅起田) 4결 71부 5속을 더하니 모두 2,390결 88부 4속이었다 여기에서 다시 당년의 속잉진전(續仍陳田)과 각양감세전(各樣減稅田)을 제하니 1894년의 실전은 2,306결 42부 9속이었다 한편 수원의 논 원결수는 5,395결 11부였다 여기에서 무세답(無稅畓), 각종 진전을 제한 전년도 실답은 3,278결 77부 2속이었으며 각양환기답(各樣還起畓) 등 새로이 추가된 논을 더하니 도합 4,484결 83부 5속이었다 이 결수에서 여러 감세답(減稅畓)을 제하니 1894년의 실제 조세징수할 논은 3,292결 97부 7속이었다

25) 『수원부공도회과작(水原府公都會科作)』

→ 『과작(科作)』

갑신년(甲申年 1884) 11월 수원부가 주관하여 치른 과거시험인 공도회(公都會)의 초장(初場), 중장(中場), 종장(終場)에서 상위 성적으로 입격(入格)한 6인의 시(詩), 부(賦) 등 답안을 실은 책으로 규장각도서에 소장되어 있다 당년 공도회의 초장에 들어온 자는 532인이었고 답안을 제출한 자는 304인이었으며 입격한 자는 23인이었다 중장에는 377인이 응시하여 301인이 답안을 제출했고 입격한 자는 48인이었다 종장에는 326인이 응시하여 207인이 답안을 내었으며 입격한 자는 63인이었다 책에 실린 답안은 수원부 유수 김이양(金履陽)이 시험관으로 임한 공도회 초장에서 삼상(三上)으로 입격한 유학(幼學) 조규년(趙奎年)의 시와 유학 이동수(李東秀)의 부, 중장에서 삼상(三上)으로 입격한 유학 이술신(李述新)의 부, 삼상(三上)으로 입격한 유학 이재구(李在矩)의 시, 종장에서 이하(二下)로 입격한 유학 엄규(嚴圭)의 부와 삼상(三上)으

로 입격한 유학 정창진(鄭昌鎭)의 시 등이다

26) 『수원부무인조년분성책(水原府戊寅條年分成册)』

수원부에서 편하였고 1책 4장의 필사본으로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1878년(고종 15) 12월 수원부에서 만든 1878년의 연분성책(年分成冊)인데, 전답의 총 전결수(田結數)는 11,821결(結) 61부(負) 3속(束)이다 전(田) 21항목과 답(畓) 30항목으로 각각 나누어 결부수(結負數)를 기록하였는데, 무세(無稅)전답·구진(舊陳)전답·각아문환출세진(各衙門還出稅陳)전답·각년성천(各年成川)전답·각년포락(各年浦落)전답·상년실(上年實)전답·금년구진권경환기(今年舊陳勸耕還起)전답·경신구진권벽환기(庚申舊陳勸闢還起)전답·매곡명고서원위환출세기(梅谷明皐書院位還出稅起)전답·수진궁유토면세환출세기(壽進宮有土免稅還出稅起)전답·선희궁유토면세환출세기(宣禧宮有土免稅還出稅起)전답·궐리사면세환출세기(闕里祠免稅還出稅起)전답·구진권경(舊陳勸耕)전답·구진권벽환진전답(舊陳勸闢還陳田畓)·실전답(實田畓)·전답결부수 등이다 책의 끝에 유수(留守)의 수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원유수의 책임 하에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27) 『수원부병술조년분성책(水原府丙戌條年分成册)』

1887년(고종 24) 12월 수원부에서 작성한 1886년 수원부의 연분성책이다 기재양식은 원전답(元田畓)의 합산된 총수를 먼저 적고, 논과 밭 각각의 원결부수에서 세금이 없는 밭[無稅田]과 각년도의 오래묵은 진전(陳田) 등을 제한 전년도의 실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전답의 총 결수를 쓴 다음, 금년도에 다시 농사 짓게 된 각종 땅[還起田]을 추가하여 금년도의 실결(實結)을 최종 정리하는 식으로 되어있다

1886년 수원부 연분성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수원부의 원전답은 11,821결 61부 3속이었는데 그 중 밭은 6,426결 5부 3속이었다 이 원전결수에서 무세전 960결 13부 5속, 오래 묵은 진전 2,900결 25부 7속, 각년에 모입된 진전[各年募入陳田] 1결 32부, 계속된 진전[續陳田] 86결 46부 3속, 각년속잉진전(各年續仍陳田) 51결 50부, 각아문에서 다시 세를 빼내는 진전[各衙門還出稅陳田] 34결 13부 6속, 각년 하천이 되어버린 밭[各年成川田] 3결 39부 9속, 각년 포락전(各年浦落田) 3결 73부 4속을 제한 전년도의 실결전이 2,291결 72부 3속이었다 여기에 지난해의 속전환기전(續田還起田) 65결 42부 3속, 당년 오래묵은 진전을 농사짓도록 권해 다시 농사지은

밭[舊陳勸耕還起田] 71부, 경신년에 구진권벽환기전(舊陳勸闢還起田) 18결 32부 2속, 매곡동(梅谷洞) 명고서원위환출세기전(明皐書院位還出稅起田) 2결 66부 6속, 선희궁유토면세(宣禧宮有土免稅) 환출세기전(還出稅起田) 4결 71부 5속, 궐리사면세환출세기전(闕里祠免稅還出稅起田) 2결을 더하니 모두 2,385결 55부 9속이었다 여기에서 다시 올해의 속잉진전 65결 42부 3속과 초년에 감세하라는 조령(朝令)이 내린 구진권경전 71부, 구진권벽환진전 18결 32부 2속을 제하니 당년의 실결전은 2,301결 10부 4속이었다 한편 수원에 있는 논의 원래 결수는 5,395결 11부였다 여기에서 무세답 991결 93부 6속, 구진답 125결 57부 4속을 비롯한 각종 진전을 제한 지난해의 실제조세를 낼 논의 총수는 3,187결 29부 8속이었으며, 전년도의 구초불전재환기답(舊初不全災還起畓), 금진전재환기답(今陳全災還起畓), 금년구진권경답(今年舊陳勸耕畓), 경신년의 구진권벽환기답(舊陳勸闢還起畓), 매곡동의 명고서원위환출세기답(明皐書院位還出稅起畓), 삼아문추봉결(三衙門秋捧結), 견보고이송결(蠲補庫移送結), 본부수리소이송결(本府修理所移送結), 권복결(權復結), 제언작답환포니생기사경오사득답(堤堰作畓換浦泥生己巳庚午査得畓), 각년각양잡이환출세답(各年各樣雜頉還出稅畓), 선희궁유토면세환출세기답(宣禧宮有土免稅還出稅起畓), 궐리사면세환출세기답(闕里祠免稅還出稅起畓)을 더한 총합이 4,448결 38부 6속이었다 이 결수에서 감세하라는 조령이 내린 구진권경답(舊陳勸耕畓)을 비롯한 구진권벽환진답(舊陳勸闢還陳畓), 구초불전재답(舊初不全災畓) 등을 제하니 1886년의 실결답은 3,585결 60부 6속이었다

28) 『수원부병술조환향각곡급각읍소재별비미마감성책(水原府丙戌條還餉各穀及各邑所在別備米磨勘成冊)』

1887년(고종 24) 2월 수원부에서 작성 보고한 1886년 당시 수원부 환향각곡(還餉各穀) 규모와 수원부 관내 읍에 보관하던 별비미(別備米)의 액수를 기록한 책이다 기재양식 및 수치내용이 을유조(『水原府乙酉條還餉各穀及各邑所在別備米磨勘成冊』)와 동일하며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29) 『수원부소재내영둔전답개타량성책(水原府所在內營屯田畓改打量成冊)』

1827년(순조 27) 5월 수원부에서 작성한 본부(本府) 금물촌면(今物村面), 북방면(北

方面), 숙성면(宿城面), 오내면(吾內面)에 있던 구 장용내영 소속 둔전답(屯田畓)에 대해 다시 타량(打量)하여 작성한 양안으로, 규장각도서에 소장되어 있다 장용영(壯勇營)은 1789년(정조 17) 장용내영으로 개칭되었다가 1802년(순조 2) 폐지되었다 장용영둔은 1787년부터 황해, 평안, 경기도 등에 설치되었으며 영이 폐지된 이후 각 군영, 아문, 궁사로 이속되었다 기재양식은 각 동리별로 자호(字號)를 기록한데 이어 각 필지마다 지번(地番), 양전 방향, 토지 등급, 지형, 지목(地目), 야미(夜味), 길이와 넓이[長廣尺], 결부수(結負數), 두락수(斗落數), 기주의 이름[起主名] 순으로 적고 있으며, 현재 경작여부도 진(陳), 기(起)로 표시하고 있다 1827년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장용영둔의 기전답(起田畓)은 밭이 1결 15부, 논이 10결 38부 6속, 도합 11결 53부 6속이며 타량액은 밭이 4석 5승, 논이 31석 3두 1승, 도합 35석 6두 6승락이었다 책 끝에 겸사(兼使), 타량감관(打量監官)과 서리(胥吏)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30) 『수원부소재용동궁전답개타량성책(水原府所在龍洞宮田畓改打量成冊)』

1731년(영조 7) 수원부에서 본부(本府) 정송면(貞松面)과 모지면(茅旨面)에 있는 용동궁(龍洞宮) 소속 전답의 타량을 다시 작성하여 올린 양안[改打量案]이다 자호(字號) 아래에 각 필지마다 지번(地番), 양전 방향, 토지 등급, 지형, 지목, 야미(夜味), 길이와 넓이, 결부수, 사방표시[四標]가 기재되어 있다. 기주(起主), 진주(陳主), 시작인(時作人)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1731년 현재 용동궁의 실기전답(實起田畓)은 정송면에 밭이 53부 4속, 논이 1결 49부 1속이며, 모지면에 논이 43부 5속이 있었다 책 끝에 수원도호부사의 성이 기재되어 있고 규장각도서에 소장되어 있다

31) 『수원부수조성책(水原府收租成冊)』

1876년(고종 13), 1877년(고종 14), 1879년(고종 16) 수원부에서 작성한 수원부 소속 전답의 수조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제1책은 1876년, 2책은 1877년, 3책은 1879년 12월에 작성되었다. 동일한 기재 양식하에 연도별 수조 규모와 내용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876년 이후 수원부 수조상황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기재양식은 원장부(元帳付)에 실린 전답의 총 결부수와 논, 밭 각각의 결부수를 나

누어 기록하고 산성, 사찰, 봉대, 조련, 군수, 관둔, 교위의 현재 농사짓는 전답[起田畓]과 묵혀둔 전답[陳田畓]을 적고 있다

32) 『수원부수조출미태성책(水原府收租出米太成册)』

→『수원부전답임진조수조출미태성책(水原府田畓壬辰條收租出米太成册)』

수원부에서 편(編)하였고 각각 1책 2장과 7장의 필사본으로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1892년(고종 29) 수원부의 수조전답결수(收租田畓結數)와 미(米)·태(太)의 액수를 기록한 책이다 4종류가 현존하는데, 기재양식이나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

기록양식은 원장부전답(元帳付田畓), 세목별 각양면세전답(各樣免稅田畓), 속진(續陳)·구진(舊陳)·구재(舊灾) 등의 환기전답(還起田畓), 환진전답(還陳田畓)의 순으로 마지막에 당해년의 수조(收租)된 전답결수와 수조액(收租額)을 기록하였다 특히 각 면세(免稅)전답을 분류한 기전답(起田畓)과 진전답(陳田畓)·신면세전답(新免稅田畓)·낙루전(落漏田)·차로(車路) 등에 의한 범입기전답(犯入起田畓) 등을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수원부의 전답은 하지하(下之下)전답으로 실제의 수조전답은 전 614결 36부 4속과 답 3,396결 11부 2속이다 이에 대한 수조액은 쌀[米] 905석 9두 4승(升) 4합(合) 8석(夕)과 콩[太] 614석 11두 4승 5합 6석이었다

그 중 규장각(奎章閣) 도서번호 16636본은 각 세목을 생략한 반면에 각양면세·구진·금재전결(今灾田結)의 총계와 수조태미(收租太米)의 총계만 기록하였다 다만 4종류 모두 작성년대가 각각 다를 뿐이다

33) 『수원부외탕고봉부동전마감성책(水原府外帑庫封不動錢磨勘成册)』 -1886년

수원부에 있던 외탕고(外帑庫)의 1886년(고종 23) 고정유치금에 대한 회계를 기록한 것으로 소장처는 규장각도서이다 수원부에 있던 외탕고는 그 성격이 확실치는 않으나, 총리영(總理營)의 금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총리영은 1802년(순조 2) 장용영을 개칭한 것으로 수원부 유수가 총리사를 겸하였는데, 본래 장용영은 내영(內營 궁중에 설치)과 외영(外營)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외용은 총리영으로 개칭된 후에도 계속 수원에 설치되어 1895년(고종 32) 신식 군제로 개편될 때까지 존속하였다 외탕고라는 말은 이 외영의 금고라는 것에서 유래된 듯 싶다 외탕고에는 일정액의

고정 유치금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제목에서 말하는 봉부동전(封不動錢 봉해 두어 쓸 수 없는 돈)은 고정 유치금이란 뜻에서 쓴 것이다 그러나 유치금이 반드시 매년 동일하지는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 유치금을 늘리기도 했다 기재양식은 원보유고를 적은 후 각종 수입과 지출 금액 및 내역을 적고 마지막에 현재의 보유고를 적는 순으로 되어 있다

1886년 외탕고의 고정유치금 회계를 보면, 원보유고는 1,492냥 5전 5푼이었고, 각종 수입은 저치고(貯置庫)의 2,000냥, 수성고(修城庫)의 1,000냥, 1837년부터 거둔 호조상환호남미(戶曹相換湖南米) 200석을 돈으로 바꾼 600냥, 1856년 영호남에서 곡식으로 만든 대미(大米)의 이자곡 333석 5두를 돈으로 환산한 1,000냥, 신집복고재미(新執復庫在米) 2석 12두 1승 7합 6작을 돈으로 바꾼 126냥 5전 3푼을 합하여 총합 6,219냥 8푼이다 당년의 지출은 1862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의정부관 영영탕포(議政府關嶺營蕩逋)의 급대 3,000냥과 1864년부터 지급한 본영 신역구폐조(身役捄弊條) 1,600냥으로 지출 총합은 4,600냥이다. 당시 보유한 고정유치금은 1,619냥 8푼이었다

34) 『수원부외탕고봉부동전마감성책(水原府外帑庫封不動錢磨勘成冊)』 -1887년

1887년(고종 24) 수원부 외탕고(外帑庫) 고정유치금에 대한 회계를 기록한 것으로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기재양식과 내용은 1886년과 거의 비슷하다

1887년 외탕고의 고정유치금 회계를 보면 원보유고는 1,645냥이고, 각종 수입은 저치고(貯置庫)의 2,000냥, 수성고미(修城庫米) 1,000냥, 1837년부터 거두어 올린 호조상환호남미(戶曹相換湖南米) 600냥, 1856년 봄 영호남에서 곡물로 만든 대미(大米)의 이자곡 1,000냥, 총합 6,204냥이다 지출은 1862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영영탕포(嶺營蕩逋)의 급대 3,000냥과 1864년부터 지급한 본영 신역구폐조(身役捄弊條) 1,600냥 등 총합 4,600냥이다 당년 보유한 고정유치금은 1,640냥이다

35) 『수원부외탕고봉부동전마감성책(水原府外帑庫封不動錢磨勘成冊)』 -1893년

1893년(고종 30) 수원부 외탕고 고정유치금에 대한 회계를 기록한 것으로 소장처는 규장각도서이다 기재양식과 내용은 1886년과 거의 비슷하다

1893년의 외탕고 고정유치금 회계를 보면 원보유고는 3,851냥 7전 9분이고 각종 수입은 저치고의 2,000냥, 수성고의 1,000냥, 1837년부터 거두어 올린 호조상환호남미 200석을 돈으로 바꾼 600냥, 1856년 영호남에서 곡물로 만든 대미(大米)의 이자곡 333석 5두를 돈으로 바꾼 1,000냥, 신집복고재미(新執復庫在米) 2석 4두 2승 3합 2작을 시가대로 돈으로 바꾼 197냥 1전 8푼을 합하여 모두 8,648냥 9전 7푼이다 지출은 의정부관할 영영탕포의 급대로 3,000냥을 1862년부터 지급하기 시작했고 본영 신역구폐조로 1864년부터 1,600냥을 지급하여 지출 총합이 4,600냥이다 현재 보유된 고정유치금은 4,048냥 9전 7분이다

36) 『수원부을유조환향각곡급각읍소재별비미마감성책(水原府乙酉條還餉各穀及各邑所在別備米磨勘成冊)』

1886년(고종 23) 2월 수원부에서 작성 보고한 1885년 당시 수원부 환향각곡(還餉各穀) 규모와 수원부 관내 읍에 보관하던 별비미(別備米)의 액수를 기록한 책이다 기재양식을 보면 먼저 전년도의 환향실총액(還餉實總額)에서 의례적인 지출을 제한 전년도 보관액에서 당년도에 나누어 줄 전액분[盡分額]을 뺀 후 다시 당년도에 거둔 환곡과 병인년(丙寅年, 1886)에 옮겨 온 별비미의 액수를 합하여 1885년 현재 창고에 보관된 액수를 곡물의 종류별로 기재하고 있다 1885년 환향원총(還餉元總)은 47,517석 9두 9작이었다 여기에서 임술년(壬戌年, 1802) 봄 호남소재호조경비곡상환각곡(湖南所在戶曹經費穀相換各穀)이 6,224석 6두 1승, 무술년(戊戌年, 1838) 겨울 의정부관광주구관영남각곡(議政府關廣州句管嶺南各穀) 1,333석 5두, 신축년(辛丑年, 1841) 봄 보의정부이무영남각곡(報議政府移貿嶺南各穀) 3,651석 7승, 무신년(戊申年, 1848) 봄 보의정부이무호남각곡(報議政府移貿湖南各穀) 1,819석 13두, 기사년(己巳年, 1869) 여름 장청각등나대구포탕감각곡(將請各等挪貸舊逋蕩減各穀) 9,352석 8두, 갑술년(甲戌年, 1874) 봄 보의정부유래상정청전혁파각곡(報議政府流來詳定廳錢革罷各穀) 3,488석 5두를 제하니 전에 창고에 남은 것이[前留庫] 가을에 거둔 각곡[秋各穀]으로 7,058석 1합이었다 여름 곡식과 봄의 이자곡[夏穀春耗] 1,712석 1두를 다 나누어 주고 당년도에 거둔 것이 7,526석 11두였고 병인년(丙寅年, 1866)에 각읍에 옮겨다 준 별비미가 5,351석 1두 8승이어서 1885년 당시 창고에 남아 있는 액수가 19,935석 13두 6승이었다 그것은 벼 8,663석 3두, 쌀 8,540석 2승, 콩 2,263석 3두, 목맥(木麥) 268석 1두였다 이 밖에 회부된 장 201석, 소금 101석은 독성(禿城)에 보존되어 있었다

37) 『수원부전답갑오조수조출미태성책(水原府田畓甲午條收租出米太成冊)』

1894년(고종 31) 12월 수원부에서 수조한 쌀, 콩의 액수를 기록한 것이다 기재양식은 1892년과 동일하다

1894년 거둔 수조의 내용을 보면, 원장부에 기재된 밭의 전결수는 2,306결 7부 4속이고 논은 3,597결 36부 6속으로 모두 합하여 5,903결 44부였다 수조액은 콩이 614석 4두 2승 9합 6작이며 쌀은 959석 4두 4승 6합 4작이어서 쌀, 콩을 합한 것이 1,574석 3두 7승 6합이었다 각양면세전(各樣免稅田)은 1,146결 5부 6속이며 구진전(舊陳田)이 99결 46부 6속이었다

38) 『수원부전답임진조수조출미태성책(水原府田畓壬辰條收租出米太成冊)』

1892년(고종 29) 수원부에서 수조한 전답의 총 결수와 수조한 쌀, 콩의 액수를 기록한 것으로 당년에 조세를 징수한 전답의 실제 결수와 실결에서 거둔 조세 총액을 정리하였다 기록양식은 1887년과 같다

1892년의 수조 실상을 보면 원장부에 기록된 밭은 2,305결 36부 4속이고, 논은 3,396결 12부 2속이며 전답 총합은 5,701결 47부 6속이다 수조액은 콩이 614석 11두 4승 5합 6작이며 쌀은 905석 9두 4승 4작으로 쌀, 콩 합한 액수가 1,520석 5두 9승 4작이다 그리고 각양면세결(各樣免稅結)은 1,146결 15부 6속이며 구진전(舊陳田)이 99결 46부 6속이고 당년의 재해결(災害結)은 199결 57부 4속이었다

39) 『수원부전답정해조수조출미태성책(水原府田畓丁亥條收租出米太成冊)』

1887년(고종 24) 수원부에서 조세를 거둔 전답의 총 결수와 수조한 쌀, 콩의 액수를 기록한 것이다 기록양식은 원장부(元帳付)에 기재된 논과 밭 각각의 결수 및 그 합산 결수를 적은 다음, 거둔 쌀과 콩의 액수를 쓰고 각양면세전답(各樣免稅田畓)과 진전, 재해로 조세를 면제받은 땅의 결수(結數)를 적고 있다 1887년 원장부에 기재된 밭의 결수는 2,301결 81부 4속이며 논은 3,143결 3부 6속이고, 논과 밭 총합이 5,444

결 85부였다 수조 규모는 콩을 613석 12두 2승 5합 6작이며 쌀은 838석 2두 1승 4합 4작이고 쌀과 콩을 합하여 1,451석 14두 4승이었다 각종 면세전답은 1,146결 15부 6속이며 구진전(舊陳田)은 99결 46부 6속이고 당년 재해결(災害結)은 444결 25부였다

40) 『수원부접제병정급일병용하전미모구별성책(水原府接濟兵丁及日兵用下錢米牟區別成冊)』

1895년(고종 32) 9월 수원부에서 그해 수원부가 조선 군인들과 일본 군병의 생활유지[接濟]를 위해 지출한 경비의 내역과 총액을 기록한 책이며, 소장처는 규장각도서이다 기재양식은 월별로 수입의 출처와 액수를 먼저 밝힌 다음 지출 금액과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경비 총액을 품목별로 합산하였다

당년 수원부에서 병정의 접제를 위해 쓴 내역을 보면, 먼저 4월에 상인에게 돈 16,000냥을 대출받아서 순변사(巡邊使)가 내려가는 행차 경비와 청인(倩人)의 음식 접대로 865냥, 본색(本色)으로 빌려 간 것 6,000냥, 초토사(招討使)가 내려왔을 때 병정 500명의 식비와 말 30필의 죽값, 잡비로 3,549냥, 병정 300명의 식비와 말 54필의 죽값과 잡비로 4,762냥 3전, 각 행차와 낙후된 병정의 음식 접대비로 823냥 7전을 지급하여 지출 총액이 16,000냥이었다 7월에는 민간에서 13,000냥을 대출하여 일본군 진지를 왕래하고 주둔할 때 접제 경비로 지출한 것이 각종 잡비값으로 6,296냥 8전, 장작과 빈가마니 땔감 값으로 2,978냥 2전, 도합 130,000냥이었다 이외에 쌀 220석 1두와 보리[牟] 106석도 지출하였다 9월에는 민간에서 4,300냥, 아전에게 14,500냥, 상인에게 8,700냥 도합 27,500냥을 대출하였다 이것의 지출내역을 보면 9월 15일 저녁부터 23일 아침까지 영관(領官), 대관(隊官), 교장(敎長) 10명의 식비로 하루 세끼 매상(每床)에 3냥 5전씩 계산하여 805냥, 병정 321명의 밥값으로 하루 세끼 매상에 1냥 7전씩 계산하여 12,551냥 1전, 영관, 대관, 교장들의 하인 7명의 밥값으로 한끼에 1냥 7전씩 계산하여 273냥 7전, 마부 30명 식비로 한끼에 1냥 7전씩 계산하여 1,173냥, 군마 30필의 죽값으로 하루 세 번 한통에 1냥 8전씩 계산하여 1,242냥을 지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매일 537냥 5전씩 세끼 밥값으로 지급하는 것 외에 교장이 표를 만들어 가 분급해 준 병정에게 지급한 돈이 4,600냥, 병정들 훈련할 때 먹일 말린 고기 값 350냥, 병정에게 먹인 찐 고기 값 1,966냥 1전 5푼, 신발값 및 말발굽값 1,284냥, 내려갈 때 50여리의 길을 가느라 유우(流牛) 14필을 빌린 값 125냥, 참자리, 동해자박이 촛대, 목침, 물 항아리, 나무 바가지 등 잡물 구입가 1,750냥, 육촉탄지지가(肉燭炭紙地價) 780냥, 일용 및 고용군의 품값 850냥, 병정과 일인 병정의 처소에 쓸 장작 및

땔감, 빈가마니 값 1,800냥으로 지출된 것이 도합 29,549냥 9전 5푼이었다 그러나 1895년 9월 당시까지 지급하지 못한 돈이 2,049냥 9전 5푼이었다 이상 당년에 병정의 접제로 쓴 경비 총액은 모두 돈이 60,549냥 9전 5푼, 쌀이 220석 1두, 보리가 106석이었다

41) 『수원부정해조환향각곡급각읍소재별비미마감성책(水原府丁亥條還餉各穀及各邑所在別備米磨勘成冊)』

1888년(고종 25) 2월 수원부에서 작성 보고한 1887년 당시 수원부 환향각곡 규모와 수원부 관내 읍에 보관하던 별비미의 액수를 기록한 책이다 기재양식 및 수치내용이 을유조(『水原府乙酉條還餉各穀及各邑所在別備米磨勘成冊』)와 동일한 것으로 소장처는 규장각도서이다

42) 『수원부진제곡마감성책(水原府賑濟穀磨勘成冊)』-1886년

1886년(고종 23) 수원부 기민구제곡[賑濟穀]의 수입과 지출 내력을 적은 회계책으로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기재양식은 각 품목별로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잔액을 기재하였다

당시 진제곡은 쌀, 콩이었는데, 쌀과 콩 원곡의 2/3는 창고에 비축해 두고 1/3은 민간에 나누어 주었다 1886년도 수원부 진제곡의 총액은 쌀이 6,447석 9두 3승이었다 그 중 2,149석 3두 1승을 나누어 주고 실제 비축되어 있는 것은 4,298석 6두 2승이었다

1886년의 진제곡 수입은 당년도의 첨향조(添餉條), 첨환조(添還條), 당년개색조(當年改色條), 병인별비미당년모조(丙寅別備米當年耗條), 호남소재병술진여미당년모조(湖南所在丙戌賑餘米當年耗條), 외탕고당년여재조(外帑庫當年餘在條) 등 총합 7,220석 7두 9승이었다 지출 상황을 보면 교리에게 줄 이자곡의 탕감[校吏耗米蕩減], 청국군기지 경비[議政府淸陣所用費], 돈으로 교환하는 데 드는 경비 지출 등 7,141석 9두 1승이어서 실제 잔액은 78석 13두였다 당시 수원부에 기재된 진제곡 중 외탕고별비미(外帑庫別備米)와 당년도 진휼하고 남은 쌀[賑餘米]은 각각 각읍과 호남에 분산되어 있었다 당시 외탕고별비미는 비축 원곡쌀 1,024석 2두 9승에 당년 이자 수입 102석 6두 2승을 합해 1,126석 9두 2승이었다 여기서 당년 이자곡 수입을 수원부에 이관하

여 실제 각 읍에 분산된 것은 쌀 1,024석 2두 9승이었다 당년 진휼하고 남은 쌀은 당년의 이자곡 수입 208석 12두 2승을 본부에 이관하고, 원곡 2,088석 2두 1승이 호남에 분산되어 있었다 한편 콩은 5,796석 1두 3승이었다 그 중 2/3는 보관하고 1/3을 나누어 주는[2留 1分] 원칙에 따라 1,932석 4승이 분급되어 창고에 비축된 콩은 3,864석 9승이었다 당년의 수입은 첨향조 200석이었고 지출은 돈으로 환산하는데 따른 비용 2,825석 13두 9승이었다 1886년의 실제 진제곡 잔액은 쌀 78석 13두 7승, 콩 3,170석 2두 3승이었다

43) 『수원부진제곡마감성책(水原府賑濟穀磨勘成冊)』-1887년

1887년(고종 24) 12월 수원부 진제곡의 수입과 지출 내력을 적은 회계책으로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기재양식은 1886년의 『수원부진제곡마감성책』과 같다

1887년도 진제곡 총액은 쌀 4,034석 9두 7승이었는데, 그 중 1,344석 13두 2승은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 실제 비축된 것은 2,689석 1두 5승이었다 1887년의 진제곡 수입은 당년도의 첨향조, 첨환조, 당년개색조, 병인별비미당년모조, 호남소재병술진여미당년모조, 외탕고당년여재조 등 총합 4,802석 9두 3승이었다 지출은 교리의 이자쌀 탕감, 청국군(淸國軍) 진지 소요 경비, 돈으로 바꾸는데 따른 경비 지출 등 4759석 1두 3승이어서 실제 잔액은 42석 12두였다 당년에 각 읍에 분산되어 있던 외탕고 별비미는 1,024석 2두 9승이었다 각 읍에 분산되어 있던 진여미(賑餘米)는 2,088석 2두 1승이었다 한편 콩은 5,996석 1두 3승이었다 그 중 2/3을 보관하는 원칙에 따라 1,998석 10두 4승을 민간에 나누어 주고 창고에 비축된 콩은 3,997석 5두 9승이었다 당년의 수입은 첨향조 200석과 당년개색조 1,998석 1두 3승이어서 모두 콩 6,196석 1두 3승이었다 여기서 돈으로 바꾸는데 따른 비용 2,825석 13두 9승이 지출되어 실제 콩은 3,370석 2두 3승이었다 그러므로 1887년의 실제 진제곡 잔액은 쌀 72석 12두 9승, 콩 3,370석 2두 3승이었다

44) 『수원부환향각곡급각읍소재병인별비미분유성책(水原府還餉各穀及各邑所在丙寅別備米分留成冊)』-1887년

1887년(고종 24) 7월 수원부에서 작성 보고한 1886년 당시 수원부 환향각곡(還餉各穀)의 규모와 수원부 관내 각 읍에서 보관하던 병인별비미(丙寅別備米 병인년에 마

련한 별비미)의 액수를 기록한 책이다 기재양식을 보면 먼저 전년도의 환향실총액(還餉實總額)에서 의례적인 지출을 제한 전년도 남은 액수에서 당년도에 나누어 줄 액수을 뺀 나머지 창고에 남길 액수를 수원부 관내 9개 창고에 분산 보관한 실상을 적고, 각 읍에 보관된 병인 별비미의 규모와 전액을 나누어 준[盡分] 상태임을 밝힌 다음 전체 환향 총액과 분급 총액, 실제 남아있는 액수를 적고 있다 1886년의 환향원총(還餉元總)은 42,437석 13두 4승이었다 여기에서 임술년(壬戌年, 1802) 봄 호남소재호조경비곡상환각곡(湖南所在戶曹經費穀相換各穀)이 6,224석 6두 1승, 무술년(戊戌年, 1838) 겨울 의정부관광주구관영남각곡(議政府關廣州句管嶺南各穀) 1,333석 5두, 신축년(辛丑年, 1841) 봄 보의정부이무영남각곡(報議政府移貿嶺南各穀) 3,651석 7승, 무신년(戊申年, 1848) 봄 보의정부이무호남각곡(報議政府移貿湖南各穀) 1,819석 13두, 병인년(丙寅年, 1866) 가을 진군한 군병의 양식미 110석 91두, 병인년 겨울 진군한 군병이 받아간 환향 탕감곡 160석 9두, 기사년(己巳年, 1869) 여름 장청각둥나대구포탕감각곡(狀請各等挪貸舊逋蕩減各穀) 9,352석 8두, 갑술년(甲戌年, 1874) 봄 보의정부유래상정청전혁파각곡(報議政府流來詳定淸錢革波各穀) 3,488석 5두를 제하니 남아 있는 것이 16,296석 12두 8승이었다 이 중에서 1887년 나누어 준 곡물이 7,526석 11두이고 창고에 남아 있는 것이 8,770석 1두였다 이 남아있는 것은 현재 9개 창고에 각각 나누어 보관중이다 한편 병인년(1866)에 각 읍에 옮겨 준 별비미가 5,351석 1두 8승이었는데 이것은 모두 다 나누어 주었다 그러므로 1887년 7월 당시 환향원총 21,647석 12두 6승에서 분급한 곡물이 12,877석이므로 나머지 보관곡은 8,770석 1두 1합이었다 이 밖에 회부된 장 201석, 소금 101석은 독성에 보존되어 있다 이 책은 현재 규장각 도서에 소장되어 있다

45) 『수원부환향각곡급각읍소재병인별비미분유성책(水原府還餉各穀及各邑所在丙寅別備米分留成册)』-1888년

1888년(고종 25) 7월 수원부에서 작성 보고한 1887년 당시 수원부 환향각곡(還餉各穀)의 규모와 수원부 관내 각 읍에 보관하던 병인별비미(丙寅別備米)의 액수를 기록한 책이다 본 책은 앞의 『수원부환향각곡급각읍소재병인별비미분유성책』보다 1년 뒤에 작성된 것이지만 내용은 동일하며 소장처는 규장각도서이다

46) 『수원부환향각곡갑술조세말별건성책(水原府還餉各穀甲戌條歲末別件成册)』

1875년(고종 12) 2월 수원부에서 작성한 1874년 수원부 환향각곡의 연말 현황과 수원부에서 관내 7개 읍에 보관하던 별비미(別備米)의 규모를 기록한 책이다 기재양식을 보면 먼저 전년도의 환향실총(還餉實總) 규모와 1874년 백성에게 나누어 준 액수, 창고에 보관된 액수를 기재한 다음, 그해의 추가 유입액과 지출액을 적고 이어 1874년의 환향원총(還餉元總)을 적고 있다 맨 끝에 「본부구관곡구별질(本府句管穀區別秩)」 항목하에 별비곡의 보관 지역과 각 지역의 보관규모를 기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873년 말 환향실총은 쌀 6,566석, 각종 곡물 35,949석(쌀로 15,086석)이었다 1874년 환곡으로 나누어 준 것이 쌀 8,634석, 각종 곡물 10,664석(쌀로 4,622석)이었고, 창고에 남은 것이 쌀 3,282석, 각종 곡물 11,908석(쌀로 5,114석)이었다 여기에 1874년 추가액이 쌀 15,575석, 각종 곡물 32,474석(쌀로 13,941석)이어서 모두 합해 쌀 29,516석이었다 추가액의 내역을 보면 각읍에 있는 별비미의 이자곡 534석, 호남소재호조경비곡상환미(湖南所在戶曹經費穀相換米) 2,998석, 영남소재광주구관곡상환미(嶺南所在廣州句管穀相換米) 1,333석, 영남에 옮겨간 쌀 1,999석, 호남에 옮겨간 쌀 1,000석이었다 1874년 지출액은 기사년(己巳年, 1869) 여름 장청(狀請)으로 각등나대구포탕감미(各等挪貸舊逋蕩減米) 5,550석, 갑술년(甲戌年, 1874) 봄 유래상정청전혁파미(侑來詳定淸錢革罷米) 2,098석 6두 6석, 아전과 하인의 봉급 및 군병 의식비 534석(이것은 별비미 이자로 지급), 호남소재호조경비곡상환미 2,998석, 영남소재광주구관곡상환미 1,333석, 영남에 옮겨간 쌀 1,999석, 호남에 옮겨간 쌀 1,000석이었다 1874년 실재 남아있는 환향원총은 14,005석이었고 장부에 기록된 간장 201석과 소금 101석이 독성(禿城)에 보관되었음을 적고 있다 뒤이어 「본부구관곡구별질(本府句管穀區別秩)」에서 별비미의 마련 내역과 당해년 7개 읍에 분산되어 있는 별비미의 액수를 밝히고 있다 수원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별비미는 1866년 당시 본부에서 관리하던 남한향조(南韓餉租) 13,377석 12두 6합을 경기 감영의 요청으로 견감(蠲減)한 후 대신 지급한 돈을 환곡으로 만들고 명칭을 별비미로 바꾼 것이었다 이 별비미 5,351석 1두 8승 2합 2작을 7개 읍에 획급하고 이자곡은 예전대로 아전과 하인의 봉급과 군병의 의식비로 지출하였다 별비미는 과천에 800석, 용인에 700석, 시흥에 104석, 진위에 1,000석, 안산에 400석, 남양에 1,147석, 안성에 1,100석이 획급되었다

수원에서 관리 운용하던 환곡의 1875년도 실총액과 당년의 추가 유입액, 지출 총액 및 1866년 수원부 관내 5개읍에 보관되어 오던 남한향곡을 대신한 별도의 환곡인 별

비미의 관리 보관 현황을 기록한 것이다

47) 『수원부환향각곡계사조세말별건성책(水原府還餉各穀癸巳條歲末別件成冊)』

→『수원부환향각곡갑술계사병술정해조세말별건성책(水原府還餉各穀甲戌癸巳丙戌丁亥條歲末別件成冊)』

수원부에서 편(編)하였고 1책 4장의 필사본으로 규장각도서에 소장되어 있다. 1894년(고종 31) 수원부에서 전년도의 환향각곡의 상황을 보고한 책이다

1892년(고종 29) 말 환향실총(還餉實摠)은 미(米) 6,566석, 각곡(各穀) 35,949석, 절미(折米) 15,086석으로 합미(合米) 21,652석이었다 이듬해 환분(還分)은 미 8,634석, 각곡 10,614석, 절미 4,622석으로 합미 13,256석였다 여기에 각읍소재별비미모조(各邑所在別備米耗條) 534석, 호남소재호조경비곡상환미(湖南所在戶曹經費穀相換米) 648석과 각곡 5,575석, 영남소재광주구관곡상환미(嶺南所在廣州句管穀相換米) 1,333석, 이무영남미(移貿嶺南米) 762석과 각곡 2,889석, 이무호남미(移貿湖南米) 382석과 각곡 1,438석 등이 가입(加入)되어 총계로 미 15,575석과 각곡 32,477석이었다 그런데 기사하인장청각등나대구포탕감미(己巳夏因狀請各等挪貸舊逋蕩減米 1869년) 2,408석과 각곡 6,944석, 갑술춘보의정부유래상정청전혁파미(甲戌春報議政府流來詳定淸錢革罷米) 678석 7두와 각곡 2,519석 12두, 계사용하미(癸巳用下米) 534석, 호남소재호조경비곡상환미 468석과 각곡 5,575석, 영남소재광주구관곡상환미 1,333석, 이무영남미 762석과 각곡 2,889석, 이무호남미 382석과 각곡 1,438석 등을 제외한 실재환향원총(實在還餉元摠)은 미 8,540석과 각곡 13,109석이었다 이외에 회부장(會付醬) 201석과 회부염(會付鹽) 101석 등이 있었다 본부구관곡구별질(本府句管穀區別秩)에는 별비미(別備米)로 각 읍에 소재한 남한향조(南漢餉租) 13,377석을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것은 1875년(고종 12)의 규장각 도서번호 16072본, 1876년의 규장각 16054본, 1886년의 규장각 16058본, 1887년의 규장각 16064본, 1888년의 규장각 16071본 등으로 원래는 5책이었다 즉 작성된 연도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하다. 다만 계사년의 기록에는 각 읍 소재 별비미의 현황이 총계만 기록한 점이 상이할 뿐이다 이를 통하여 20년 동안의 많은 변화에도 환향각곡의 운영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을 알 수 있다

48) 『수원부환향각곡기미조세말별건성책(水原府還餉各穀己未條歲末別件成冊)』

→『수원부환향성책(水原府還餉成冊)』

1860년(철종 11) 2월 수원부에서 작성 보고한 1859년 수원부 환향각곡의 연말 보관 규모와 그해 수원부 관내 5개 읍에 분산되어 있던 남한산성 군향곡[南漢餉租]의 액수를 기록한 책이다 기재양식을 보면 먼저 전년도의 환향곡의 실제 총액 [還餉實總] 규모를 적고 1859년에 환곡으로 나누어 준 것[還分額]과 창고에 보관된 것[留庫額]을 밝힌 다음, 그해에 추가 유입된 액수[加入額]와 지출액[用下額]을 적고 이어 1859년의 환향원총(還餉元總)을 적고 있다 맨 끝에 「본부구관곡구별질(本府句管穀區別秩)」 항목하에 남한향조의 보관 지역과 각 지역에서의 보관액수를 기재하고 있다

1859년 환향각곡의 현황을 보면 1858년 말 환향실총은 쌀이 4,725석, 각종 곡물이 36,061석(쌀로 환산하면 15,133석)이었다 이 중에서 1859년에 환곡으로 나누어 준 것이 쌀 2,362석, 각종 곡식 24,097석(쌀로 환산하면 9,996석)이어서 도합하면 쌀 12,359석이었고 창고에 남은 것이 쌀 2,362석, 각곡 11,964석(쌀로 5,137석)으로 모두 쌀 7,499석이었다 1859년의 추가 유입된 액수는 관내 5개 고을에 있는 남한환향의 모곡조로 벼[租] 1,337석(쌀로 534석), 호남소재호조경비곡상환분(湖南所在戶曹經費穀相換分) 쌀 648석과 각종곡 5,575석(쌀로 1,237석), 영남소재광주구관곡상환미(嶺南所在廣州句管穀相換米) 1,333석, 영남으로 옮겨간 쌀 762석, 각종곡 2,889석(쌀로 1,237석), 호남에 가져간 쌀 392석, 각종곡 1,438석(쌀로 618석) 도합 쌀 7,850석, 각종곡 47,300석(쌀로 19,872석)이었다 1859년의 지출액은 남한향조의 이자곡 벼 1,337석(쌀로 534석)을 아진, 하인들의 봉급 및 군병의 의식비로 지급했고, 호남소재호조경비곡상환용으로 쌀 648석, 각종곡 5,575석(쌀로 2,350석), 영남소재광주구관곡상환용으로 쌀 1,333석, 영남에 가져간 쌀 762석, 각종곡 2,889석(쌀로 2,237석), 호남에 가져간 쌀 618석이었다 1859년 당시 실제로 남아있는 환향원총은 쌀 4,725석, 각종곡 36,061석(쌀로 15,133석)으로 도합 19,585석이었다 이와함께 장부에 올린 간장 201석, 소금 101석이 독성(禿城)에 보관되어 있었다 한편 「수원부구관곡구별질(水原府句管穀區別秩)」에는 5개 읍에 분산되어 있는 남한향조의 각 지역별 보관액수가 기록되어 있다 이 곡물은 기미년(己未年, 1799)에 영남의 돈 15,600냥을 남한산성에 빌려주고 (남한산성)곡물 13,000석을 본군의 환곡으로 만들어 전액 나누어 주도록 한 것이었다 이것의 이자곡은 원곡에 보태도록 하였으나, 임술년(壬戌年, 1802)에 본사에 보고하고 이자곡을 가져다가 각종 봉급과 군병의 의식비로 지급토록 하였다 남한향조가 각 지역

에 분산된 현황을 보면 과천에 벼 1,315석(쌀로 526석), 시흥에 벼 1,181석(쌀로 472석), 안산에 벼 2,819석(쌀로 1,127석), 용인에 벼 4,503석, 진위에 벼 3,558석(쌀로 1,423석)이었다

수원부에서 관내 백성들의 구제기금으로 관리 운용하던 환곡, 군향곡의 1859년 말 당시 관리상황(곡물의 원총액, 수원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환곡의 규모, 실제 남아있는 곡물의 액수, 구호에 필요한 간장, 소금의 액수, 보관지) 일체를 기록한 것이다

49) 『수원부환향각곡병술조세말별건성책(水原府還餉各穀丙戌條歲末別件成冊)』

1887년(고종 24) 2월 수원부에서 1886년 수원부 환향각곡(還餉各穀)의 연말 현황을 작성 보고한 책이며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기재양식을 보면 먼저 전년도의 환향실총(還餉實總) 규모와 1886년의 민간에 나누어 준 총액, 창고에 보관된 액수를 적은 다음, 그 해의 추가 유입액과 지출액을 적고 맨 마지막에 1887년의 환향원총(還餉元總)을 기록하고 있다 먼저 1885년말 환향곡(還餉穀)의 실제 총액은 쌀 21,652석이었는데 그 중 13,256석을 1886년의 환곡으로 나누어주고 8,396석은 창고에 남겨 두었다 1886년의 추가 유입액은 각읍소재별비미(各邑所在別備米)의 이자곡 534석, 호남소재호조경비곡상환미(湖南所在戶曹經費相換米) 2,998석, 영남소재광주구관곡상환미(嶺南所在廣州句管穀相換米) 1,333석, 영남에 옮겨간 쌀 1,999석, 호남에 옮겨간 쌀 1,000석 등 도합 29,516석이었다 1886년의 지출액은 각등나대구포탕감미(各等挪貸舊布蕩減米) 5,550석, 유래상정청전혁파미(流來詳定淸錢革罷米) 2,098석 6두 6승 2합 5작 8리, 아전과 하인의 급료 및 군병의 의식비(별비미 이자곡으로 사용) 534석, 호남소재호조경비곡상환미 2,998석, 영남소재광주구관곡상환미 1,333석, 영남에 옮겨간 쌀 1,999석, 호남에 옮겨간 쌀 1,000석이었다 1886년에 실재 남아있는 환향원총은 14,005석이었고 회부된 장 201석과 소금 101석이 독성(禿城)에 보관되어 있었다

50) 『수원부환향각곡을해조세말별건성책(水原府還餉各穀乙亥條歲末別件成冊)』

→『수원부환향각곡을유을해조세말별건성책(水原府還餉各穀乙酉乙亥條歲末別件成冊)』

수원부에서 편(編)하였고 2책의 필사본으로 현재 소장처는 규장각도서이다 1876년

(고종 13) 수원부에서 전년도의 환향각곡의 상황을 보고한 책이다

1875년 말 환향실총(還餉實摠)은 미(米) 6,566석, 각곡(各穀) 35,949석, 절미(折米) 15,086석으로 합미(合米) 21,652석이었다 이듬해 환분(還分)은 미 8,634석, 각곡 10,614석, 절미 4,622석으로 합미 13,256석이었다 여기에 각읍소재별비미모조(各邑所在別備米耗條) 534석, 호남소재호조경비곡상환미(湖南所在戶曹經費穀相換米) 648석과 각곡 5,575석, 영남소재광주구관곡상환미(嶺南所在廣州句管穀相換米) 1,333석, 이무영남미(移貿嶺南米) 762석과 각곡 2,889석, 이무호남미(移貿湖南米) 382석과 각곡 1,438석 등이 가입(加入)되어 총계로 미 15,575석과 각곡 32,477석이었다 그런데 기사하인장청각등나대구포탕감미(己巳夏因狀請各等挪貸舊逋蕩減米 1869년) 2,408석과 각곡 6,944석, 갑술춘보의정부유래상정청전혁파미(甲戌春報議政府流來詳定淸錢革罷米) 678석 7두와 각곡 2,519석 12두, 계사용하미(癸巳用下米) 534석, 호남소재호조경비곡상환미(湖南所在戶曹經費穀相換米) 468석과 각곡 5,575석, 영남소재광주구관곡상환미 1,333석, 이무영남미 762석과 각곡 2,889석, 이무호남미 382석과 각곡 1,438석 등을 제외한 실재환향원총(實在還餉元摠)은 미 8,540석과 각곡 13,109석이었다 이외에 회부장(會付醬) 201석과 회부염(會付鹽) 101석 등이 있었다 본부구관곡구별질(本府句管穀區別秩)에는 별비미(別備米)로 각읍에 소재한 남한향조(南漢餉租) 13,377석을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것은 1875년(고종 12)의 규장각 도서번호 16072본, 1886년의 규장각 16058본, 1887년의 규장각 16064본, 1888년의 규장각 16071본, 1894년의 규장각 16079본 등으로 모두 5책이었다 즉 작성된 연도만 다를뿐 내용은 동일하지만, 계사년(1894)의 기록에는 각 읍 소재 별비미의 현황을 총계만 기록한 점이 다를 뿐이다 즉 과천(果川) 800석, 용인(龍仁) 700석, 시흥(始興) 104석, 진위(振威) 1,000석, 안산(安山) 400석, 남양(南陽) 1,147석, 안성(安城) 1,200석 등이 누락되었다 이를 통하여 20년 동안의 많은 변화에도 환향각곡의 운영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을 알 수 있다

51) 『수원부환향각곡정해조세말별건성책(水原府還餉各穀丁亥條歲末別件成冊)』

1888년(고종 25) 2월 수원부에서 1887년 수원부 환향각곡(還餉各穀)의 연말 현황을 기록 보고한 책이다 기재양식과 1887년 당시 환향원총의 실제 총액, 민간에 나누어 준 액수, 창고에 보관된 액수 등이 병술년(丙戌年)의 기록(『수원부환향각곡병술조세말별건성책(水原府還餉各穀丙戌條歲末別件成冊)』)과 완전히 일치한다 현재 규장각도

서에 소장되어 있다

52) 『수원삼도둔도조봉상두량성책(水原三島屯賭租捧上斗量成册)』

→ 『경남상납구별책(慶南上納區別册)』

1882년(고종 19) 11월 수원부에서 작성한 수원부 삼도 둔전답(屯田畓)에서 거둔 도조액의 현황을 조사한 책으로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기재양식은 원도조 총액에서 당시의 수입과 예하(例下)되던 경비를 제한 실도조액의 보관 현황을 기재한 후 새롭게 측량한 도조액과 재측량에 따른 경비 지출을 제한 실제 도조 총액 및 측량을 담당했던 실무자의 성명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맨 끝에 도조의 궐축액과 부대 경비를 제한 실제 상납액을 기재하고 있다

1882년 당시 원도조 총액은 497석 7두 2승, 조사하여 얻은 벼 1석 5두 7승, 색조(色條) 24석 1두 7승으로 모두 합하여 조 522석 14두 5승이었다 여기에서 예하 경비 10석 10두를 제하면 실제 얻은 벼는 502석 4두 5승이었다 그 중 323석은 창고에 보관되고, 홍승지(洪承旨) 집 하인 이인형(李寅亨)이란 자가 가져다 장정옥(張正玉)의 집 등에 추가로 들여간 곡물이 144석 16두 2승이었으며, 34석 8두는 이인형이 궐축시켜서 결국 467석 16두 2승이 남아 있었다 다시 측량을 한 벼 606석 중 42석 20두를 각종 경비로 지급하여 실재 있는 벼는 563석이었다 두량을 담당한 파감(派監), 순검(巡檢), 감관(監官), 삼도동(三島洞)의 존위(尊位), 공원(公員) 등 실무자 명단과 여기에 동원된 홍승지 집 하인의 명단이 기재되었으며 도조액을 축소시킨 이인형의 이름밑에 도망 사실을 첨부하였다 실제 상납조 563석 14두 7승 가운데 이인형이 미납한 조는 44석 14두 7승이었다

53) 『수원신읍영건공해간수성책(水原新邑營建公廨間數成册)』

1791년(정조 15) 수원부에 장용영(壯勇營)을 설치하면서 영건한 수원부 내의 청사(廳舍) 및 그에 딸린 부속건물 그리고 관에서 건립한 각종 창고·누정(樓亭) 등 수원부 관아에 딸린 제건물에 대한 건축 대장이다 1책 34장의 필사본으로 소장처는 규장각도서이다

표제는 『신해정월일신읍영건공해문수성책(辛亥正月日新邑營建公亥間數成册)』으로 편자와 연기(年紀)는 일단 미상이나 본자료의 내용 가운데 장용영(壯勇營)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편자는 수원부, 연기는 1791년으로 추정된다 체재는 크게

공해(公廨)와 향교(鄕校)로 나누어져 있다 기재 양식은 각종 건물의 칸수[間數], 그리고 그 건물에 딸린 각종 부속재료[材木]에 대해서는 그것의 용도, 봉상처(捧上處) 등을 기록하였다 권말에는 공해 및 향교에 딸린 각종 부속 건물에 대한 명칭과 칸수만 일괄 기재되어 있다

54)『수원오타면울성보수세책(水原五朶面蔚城洑水稅册)』

1900년 10월 수원부에서 오타면(五朶面)에 있는 울성보(蔚城洑)의 수세 내역을 기록해 보고한 책이다 기재양식을 보면 동별로 전답의 작인명을 먼저 쓰고 그 아래에 두락수, 진폐(陳廢) 현황, 전답의 소유상황과 전답주 이름을 적은 다음 맨 아래에 수세 납입 상황을 적고 있다

1900년 당시 오타면 울성보의 수세총액은 조 44석 14두였다 거기에서 저수지 수리조로 125냥, 풀값으로 10냥, 고사경비로 41냥, 술값과 쌀값으로 60냥, 보 지키는 사람[伏直] 4명에게 6석, 신대수축조(新垈修築條)로 1석, 동고리수축조(東古里修築條)로 15두, 사복시(司僕寺) 도조로 2석, 용주사 도조로 1석, 수세관조로 4석, 양식 쌀로 남겨둔 것이 4석, 울성교조(蔚城橋條)로 1석, 서조(書條)로 12두를 지출하여 모두 결(結)로 2구 25복 4속, 전으로 563냥 5전이었다 또 여기에 서원조(書員條) 14냥을 첨가하여 전의 지출 총합이 812냥 5전이고 조를 합산한 것이 9석 6승이므로 실제 상납액은 15석 6두 4승이었다 책의 마지막에 저수지를 지키는 보직(洑直) 3인의 서명이 있다

55)『수원용복둔추수성책(水原龍伏屯秋收成册)』

1905년(광무 9) 10월 선희궁(宣禧宮)에서 작성한 본궁 소속 수원 용복둔(龍伏屯)의 추수기로 현재 규장각도서에 소장되어 있다 본궁 소속 둔전답이 있던 지역은 용복 고소리(高素里)·서천리(鉏川里), 고촌리(庫村里), 매곡(梅谷) 서천리(鉏川里), 남부지장동(南部芝長洞), 북부고등촌(北部高等村), 매산촌(梅山村), 동촌(垌村), 탑동(塔洞), 서둔촌(西屯村) 등이었다 기재양식은 각 지역별로 작인의 성명, 두락수, 수조액 등이 기록되어 있다

1905년 수세조(水稅條)까지 합한 수조량은 75석 1두였는데, 여기에서 당년의 종자와, 남겨 둔 양식 쌀, 궁감관(宮監官)의 차첩가(差帖價) 등 각종 경비로 지급된 34석 3두를 제하니 실제 상납조는 40석 18두였다 표지에 선희궁의 낙인이 있다

56) 『수원전안(水原田案)』

1806년(순조 6)에 충훈부(忠勳府)에서 작성한 경기도 수원의 동부 둔전답(屯田畓)에 대한 양안(量案)과 1807년(순조 7)에 동부에서 작성한 경기도 용인의 동부 둔전답에 대한 양안을 합책(合冊)한 것이다 1책 7장의 필사본으로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수원전안』은 수원부 감암(甘巖)에 소재한 충훈부 둔전답에 대한 양안으로 그 내용은 자호(字號)·지번(地番)·양전방향(量田方向)·토지등급(土地等級)·지형(地形)·지목(地目)·야미수(夜味數)·장광척(長廣尺)·결부수(結負數)·사표(四標)·「주(主)」명(名)·「시(時)」명(名)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주명(主名), 시명(時名) 표시란에는 여러 장의 첨지(添紙)가 붙어 있다 총결부수(總結負數)는 5결 88부 3속이고 전답(田畓)이 구분되어 있다

또한 수원전안과 합책된 용인전답책(龍仁田畓冊)은 경기도 용인현의 도촌(道村)·남촌(南村) 등에 소재한 충훈부 둔전답에 대한 양안으로 내용은 수원전안과 같으나 야미(夜味)와 「주」명·「시」명이 없고 대신 진전답(陳田畓)의 표기만 있다 총결부수(總結負數)는 1결 94부 4속인데 몇몇 필지에는 첨지로 결부수를 수정하였다

57) 『수원죽산양읍수송군수전급타가로비구별성책(水原竹山兩邑輸送軍需錢及駄價路費區別成冊)』

1895년(고종 32) 수원부에서 수원과 죽산 두 고을에서 상납한 군수전(軍需錢)의 운반에 동원된 말 값[駄價]과 수송 전담군의 노자 등 부대 경비를 구별하여 만든 책이며 규장각도서에 소장되어 있다 기재양식은 수원과 죽산 각 고을에서 바칠 원납 군수전의 액수와 수송에 동원된 소의 거리당 운반 단가, 운반 담당군의 1인당 왕복 노자액을 적고 마지막에 경비 총액을 기록하였다

실제 수원과 죽산의 군수전 수송 경비를 보면 군수전이 보관되어 있는 읍에서 50리 떨어진 수원까지 원납해야 될 돈은 2천냥이었다 군수전 수송을 위해 동원될 소 2마리를 빌리는데 매 필당 매 10리에 3냥씩 계산하여 30냥, 군량미 30석을 실어갈 소 15필 빌리는 값으로 매 10리에 3냥씩 계산하여 225냥, 군수전과 군량미의 수송을 인솔해 갈 포군 5명의 왕복 노자로 1명당 10냥씩 계산하여 50냥, 마지막으로 군량미 30석을 다시 실어 오는데 필요한 소 15필 빌리는 값으로 매 10리에 1냥 5전씩 계산하

여 112냥 5전이 지급되었다 한편 읍에서 150리 떨어진 죽산까지 운반해야 될 군수전은 2천냥이었다 임시로 나누어 책정한 군수전 4천냥을 실어 갈 소 44필을 빌리는데 매 10리당 3냥씩 계산하여 184냥, 군수전과 말을 인솔해 갈 포군 5명의 왕복 노자로 1인당 30냥씩 150냥이 지급되었다 이상으로 원납할 군수전과 부대경비 총액은 4,747냥 5전이었다 맨끝에 부사의 수결이 있다

58)『수원친둔송동둔답추수기(水原親屯松洞屯畓秋收記)』

→ 『경리원추수기(經理院秋收記)』

1896년(고종 33) 경리원(經理院)에 제출된 수원부 송동(松洞) 소재 친둔답의 추수기로 규장각도서 소장이다 기재양식은 각 지역별로 둔답의 두락수와 타조액, 작인명을 적은 다음 마지막에 당년의 타조 총액과 경비를 제한 실제 수입을 적고 맨 끝에 사음(舍音)의 성명을 기록하고 있다

1896년 송동 둔답의 추수상황을 보면 전체 타조액 7석 3두 가운데 반종자(半種子)로 16두를 제하고 결복조(結卜條)로 1석 19두를 제하여 실제 수입은 4석 8두를 거두었다 당시 사음은 홍일손(洪一孫)이었다

59)『수원훈총양둔수세성책(水原勳摠兩屯收稅成冊)』

→ 『추수기(秋收記)』

1899년 수원부에서 작성한 본부 소재 총융청(摠戎廳) 둔전과, 충훈부(忠勳府) 둔전답의 1898년도의 추수기인데,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총융청 둔전답이 있던 지역은 압정면(鴨汀面) 백곡리(柏谷里), 초장면(草長面), 우정면(雨井面), 현암면(玄巖面) 신영리(新永里), 안녕면(安寧面), 양윤면(楊潤面), 상홀면(床笏面) 이동(二洞), 공향면(貢鄕面), 남곡면(南谷面) 귀내동(歸來洞) 등이었다 충훈부 둔전답이 있던 지역은 정림면(正林面), 오타면(五朶面), 압정면 사곡리(寺谷里), 양윤면, 상홀면, 수북면(水北面) 이동(二洞), 갈담면(葛潭面), 종덕면(宗德面) 등이었다 총훈둔전답의 두락수는 논이 17석 12두 9승, 밭이 6석되는 두락이었다 기재양식은 소속 관청의 지역별로 작인의 성명, 두락수, 재해 및 현재 농사 짓는지의 여부, 타도조액과 수조 납부 현황을 기록하고, 수 개의 동리를 묶어 수조 수입 총액과 경비 지출 내역 및 실제 상납액 , 두둔 전답의 논과 밭의 두락 총수, 감관(監官)의 성명을 적고 있다

1898년 당년의 수조 규모는 총둔의 경우 압정면, 초장면, 우정면 3면의 타조 총액

은 10석 7두 5승이었다 여기에서 종자와 양식으로 남기는 것, 수문조(水門條)를 제한 실제 상납조는 5석 15두였다 이것을 매석에 62냥씩 돈으로 바꾼 것 356냥 5전에서 결복(結卜), 세전(稅錢)을 제하니 실제 남은 돈이 161냥 1전 5푼이었다 현암면의 도조 총액 6석 6두를 매석에 62냥으로 계산하여 390냥 6전이 되었다 안녕면, 양윤면의 도조 총액은 2석 15두였는데 여기에서 양식으로 남길 쌀 1석을 제하니 1석 15두가 남았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니 180냥 5전이었다 상홀면의 도조액은 1석 11두였는데, 양식 쌀로 남겨 둔 11두를 제하니 1석이 실제 상납액이었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였더니 62냥이었다 공향면의 도조액은 3석 3두 5승었으나 1석을 양식 쌀로 남겼으므로 실제 상납액은 2석 3두 5승이었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34냥 8전 5푼이었다 남곡면에서는 도조를 전원 납부하지 않았다 충훈부의 수조 상황은 정림면은 도조 총액 2석 9두에서 종자 8두 5승을 제하여 실제 상납액은 2석 5승이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125냥 5전 5푼이었는데, 여기에서 결복전을 제하여 실제 상납액은 66냥 6전 5승이었다 오타면의 수조액은 타조, 도조 합하여 2석 13두였다 여기에서 종자와 수세를 제하고 남은 것이 1석 18두였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니 117냥 8전이었다. 이 중에서 결복전을 제하고 남은 실제 상납액은 69냥 9전 5푼이었다 압정면, 양윤면, 상홀면, 수북면, 갈담면, 종덕면의 도조 총합은 1석 12두이었다 여기에서 양식 쌀로 남긴 것을 제한 실제 수조액은 1석이었고 이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 62냥이었다 이상 총 훈둔의 수조 총합은 1,055냥 7전이었다 여기에서 하인에게 200냥, 조세를 징수하러 120여리를 돌아다니느라 쓴 경비 220냥, 상경할 노자돈 30냥을 제하니 실제 상납액은 605냥 7전이었다 당시 수조를 감독한 감관은 현학규(玄學圭)였다.

60) 『용주사상량문(龍珠寺上樑文)』

용주사는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에 있으며,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이다 상량문은 용주사의 사보이자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3호로 되어 있다 가로 15㎝, 세로 94㎝의 크기에 용주사 창건의 내용과 국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있다

정조가 생부 장헌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1790년(정조 14)에 용주사를 창건할 때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이 왕명을 받들어 상량문을 찬하여 쓴 것이다. 채제공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벼슬에 올라 영조·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다 영조는 정조에게 이르기를 "채제공은 진실로 나의 사심없는 신하이고 너의 충신이다"라고 하였다 정조가 등극한 이후 그는 여러 요직에 중용 되었는데, 절을 창건하던 정조 14년 즉 상량문을 지었던 해에는 좌의정으로서 행정의 수반이 되었고, 이후 3년 동안 왕과 독대

(獨對)하면서 정사(政事)를 하였다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을 무렵 왕명으로 지은 상량문은 당대의 세도가다운 거침없는 필치와 활달한 문장으로 2백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구름무늬의 비단 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상량문의 내용은 구구절절 용주사의 위치가 길지임과 정조의 지극한 효성을 찬양하고 있다

"세존이 오왕(五王)의 신지(神地)를 선택하였다고 나는 이와 같이 들었으며, 주나라 목왕은 팔관회의 도량을 창설하여 신령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다 하나 천축국의 허탄한 말이 애매하고 주나라의 지난 일이 의심스럽다

어찌 주구(珠丘)옆에 터를 잡고 금지(金地)의 예에 이름을 표방하리요, 복전(福田 불공) 이익한 법을 미루어 성수(聖壽)의 무강함을 축원함이다 원침에 좋은 수품을 받들어 거룩한 효를 무너지지 않게 함을 기리는 것이로다

아름다운 염부(閻浮)의 나무가 있는 대지인 이곳 수성(隋城 화성)의 이만한 곳이 없도다 속리산에서 지맥이 뻗어내려 5~6백리 지점이다 정묘(精妙)를 다한 조화를 만억천년 동안 비장하였으니, 그는 용(龍)인가 체세(體勢)의 변함이 무궁하고 구슬을 희롱하는 듯 하니 이는 다함없는 숙기(淑氣 봄날의 아늑하고 따듯한 기운)의 응결이다 바라보면 물은 굽어져 흐르고 도마뱀이 꿈틀거리듯 하여 황홀히 하늘에 올라 구름을 타는 것 같고, 나아가 보면 치밀하고 온화하며 윤택이 있어 의연히 창해로 들어가 조개를 캐는 듯 하구나 음기(陰氣)는 빨아들이고 양기(陽氣)는 밖으로 내보내니 완연히 왕위(王位)가 하늘에 있는 형세요, 산천은 맑고 명미하니 틀림없는 십이조차(十二照車)의 보배로다

형상이 이 같음을 몰랐으니 진실로 만나는 날이 있구나

오직 우리 주상전하(主上殿下)는 효가백행을 근원하고 학문이 천지인을 꿰뚫으시어 남을 사모하고 날로 보고 달로 살펴보시니 성려(聖慮)가 난수(灤水)에 맺히셨다

서리는 차고 이슬은 젖으니 거북과 용이 기자(箕子)의 글을 드러내었도다 우천(雨天)과 청천(晴天)이 스스로 때를 맞추는 정치가 있었고 규성(奎星)과 벽성(璧星)이 주공(周公)의 눈에 응해서 크게 하늘도 사랑하지 아니함이 없고 땅도 사랑하지 아니함이 없는 아름다움이로다

드디어 세자의 상여를 받들어 이에 상석(象石) 등 시설을 옮기니 왕의 눈물은 피가 되어 소매를 적시며, 검은 안개는 산을 가리우나 무덤 속은 환하도다 하물며 온천의 익숙한 길이오 산성(山城)의 옛 집이랴 끼친 백성이 길을 막고 다투어 정반성(淨飯城 싣달태자가 출가한 인도의 왕성)의 눈물을 뿌리고 뭇 신령이 어가를 보호하니

곧 금속강(金粟岡)의 의식을 다하는 도다

정성이 묵묵히 얽히니 하늘에 사무쳐 서로 느끼고 길한 경사가 곧 이르니 하계(下界)를 통하여 밝고 아름답도다 이에 무한한 정성으로 드디어 이곳에 절을 지을 의론을 경단하니 인군(人君)의 대리를 다하지 못하였으나 오히려 삼승(三乘 중생을 태우고 생사의 바다를 건넘에 있어서의 세 가지의 교법)의 보시를 바라며 팔방의 제사를 지내어 효양을 다함을 능히 펴니 거의 시방의 도움을 기약하도다

창포 김치로 공양하니 봉상시(奉常寺)의 진미가 아님이 없고, 아름다운 미나리로 정성을 드리니 부엌의 아름다운 공양이 귀한 바가 되도다

왕의 좋은 생각은 우러러 마음속의 경륜을 알게 되고 여러 힘이 즐겁게 따르니 이에 눈 앞에 오뚝함이 있도다 그 앞을 보면 옛 탑은 죽순이 솟은 것 같고 뒤를 보면 수려한 산은 꽃동산 같고나

부주(浮柱)가 종횡으로 있고 위수(渭水)가에는 천이랑의 대가 솟았으며, 화려한 개와 지붕이 즐비하니 은하수 물가에 직여(織女)의 실로 베를 짜는 것 같도다 수놓은 문지방을 늦으막이 헤치니 고서문(古西門)에 걸려 있는 엷은 안개가 그림 같고, 맑은 날 채색난간을 의지하니 세남교(細南橋)의 잔디가 하늘에 연한 듯 푸르다

삼천병마골은 예로부터 이름이 있고, 높이가 1장(丈) 6척인 불상은 불일내에 완성을 보게 되니, 이때에 난여(鸞輿 임금의 수레)가 재궁에 유숙하심에 용안이 슬픔을 먹음으셨다

후(緱) 땅 고개의 학 그림자는 만행하는 승려가 쉬는 숲과 비슷하고, 우(虞) 임금의 품류 가운데 봉황의 울음은 경(磬)의 치는 땅에 어울려 들리는 도다 주상께서 태우는 전단(栴檀 향나무)의 향기가 떠돔과 함께 송백(松栢 소나무와 잣나무)을 움직여 깃발과 더불어 펄럭이니 항월(恒月)과 승일(升日)의 축복은 만백성의 바라는 바로 생각하니 천지에 사무치는 애통은 천불(千佛)이 모두 슬퍼하는 도다

오직 나라에서 이를 주심은 평일의 은덕을 갚고자 함에 연유한 것이다

옥룡사(玉龍師)의 지혜로운 눈은 제천(諸天 三十三天)을 통철하고, 금쇄옹(金鎖翁)의 고충은 머물러 오늘을 기대한 것이다 이에 좋은 칭송하는 말을 베풀어 중생에게 널리 고하노라

목공이 대들보를 동쪽으로 향하여 안으니 바다의 아침해가 하늘에 가득히 붉었네, 마치 신룡(神龍)이 처음으로 잠에서 깨어나 장차 구슬을 안고 맑은 하늘을 희롱하리라

목공이 대들보를 서쪽으로 향하여 안으니 버드내[柳川] 남과 북에 주막 연기가 희미하다 어가가 해마다 지나가는 곳이라 서리와 이슬이 내리는 언덕에는 모든 나뭇잎

이 쓸쓸하구나

목공이 대들보를 남쪽으로 향하여 안으니 성첩(城堞)이 산을 연하여 푸르게 나무가 울창하고나, 성대(聖代)에 하천이 맑으니 봄이 다한 것 같고 노승(老僧)은 한가로이 우화감(雨花龕)을 쓸고 있구나

목공이 대들보를 북쪽으로 향하여 안으니 팔달산 앞으로 옛 고을을 옮겨왔네, 의연한 옛날의 신풍촌에 닭과 개는 집집마다 제각기 살아 움직임을 알리는 구나

목공이 대들보를 윗쪽으로 향하여 안으니 3월 3일의 전성(前星 왕세손)은 하늘 상이 왕성하구나 초목에 봄이 돌아와 빛을 받으니 설산(雪山)이 교산(喬山)의 뫼뿌리와 다투는 것 같고나 목공이 대들보를 아랫쪽으로 향하여 안으니 벼가 구름같이 큰 들에 가득한데 백발의 산아래 노인이 아침마다 북쪽을 향하여 송축하는 예를 올리는 구나 엎드려 비나니 상량한 후에 한자루 등을 전하면 삼원(三元 180년)동안 촛불을 고루하여 재해가 없고 길이 종국(宗國)에 경사로운 징조가 드려서 꺾이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아니하여 영원토록 선침(仙寢)의 수호신이 되시라 서울이 가깝고 질병이 없을지라

군왕이 매양 운향(雲鄕)에 거둥하시거던 멀리하지 말고 좌우에 가까이 있으라 오르고 내림을 보듯이"

61) 『용주사위답반호사음작인등이정책(龍珠寺位畓班戶舍音作人等厘正册)』

편자(編者) 미상이며 1책 35장의 필사본으로 규장각도서에 소장되어 있다 1832년(순조 32)에 12월 용주사위전답(龍珠寺位田畓)에 대한 이정책으로 작성된 책이다

진위현(振威縣)의 야막(野幕)·이북(二北)·금암(金巖)·일서면(一西面)과 수원부의 장족(長足)·용복(龍伏)·광교(光敎)·삼봉면(三峯面)에 소재한 전답이 이에 해당한다 내용은 자호(字號)·지번(地番)·지목(地目)·두락수(斗落數)·도조(賭租)·세조(稅租)·작인(作人) 등을 상세히 수록하였다 면적은 전 68석(石) 16두(斗) 4승(升) 5합락(合落)과 답 78석 3두 4승락인데, 유도조(有賭租)·무세조(無稅租)가 많다 이에 대한 도조와 세조의 합계도 기록되어 있는 등 당시 사원경제(寺院經濟)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사료이다

62) 『원소수호군절목(園所守護軍節目)』

수원 화산에 있는 장조(莊祖 1735~1762)의 현륭원(顯隆園) 관원 및 수호군에게 지급하는 지공전(支供錢) 급대(給代)에 대한 규정이다 1책 10장의 필사본으로 규장각 소장 도서이다 1792년(정조 16) 8월에 작성되었으며, 10·11월, 1793년 5월, 1795년 5월에 몇 개의 조항이 추가 혹은 개정되었다

1792년 8월 정조의 연교(筵敎)에 의해 「수호군수렴급대(守護軍收斂給代)」에 대한 7개조, 「응역지공마련(應役支供磨鍊)」에 대한 11개조, 「전수례전(傳授禮錢)·제전정식(齊錢定式)」에 대한 2개조, 「복호예매금단(復戶預賣禁斷)」에 대한 1개조 도합 21조의 절목이 작성되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원행교시(園幸敎是) 때에 합번(合番)하는 관원·원역(員役)의 지공전급대(支供錢給代)등 6개조, 11월에는 각종 지공비(支供費)와 이후의 지공비 마련에 대한 규정 1개조, 1793년 5월에는 원행교시 및 식목 때에 합번하는 관원·원역의 지공비 급대에 대한 2개조, 1795년 5월에는 기진제향(忌辰祭享) 때에 합번하는 관원에의 지공비에 대한 1개조의 규정이 덧붙여 실려있다

63) 『장용영고사(壯勇營故事)』

장용영에 의해 편찬된 필사 원본이며, 원래 불분권(不分卷) 9책이었으나, 현재는 제4책이 없어져 8책으로 전하고 있다

사건 수록 연도는 1785년(정조 9)에서 1800년(정조 24)까지의 16년간이고, 필사 연도는 1801년에서 1834년까지의 순조 연간으로 추정되며, 수선(修繕)은 1940년에 하였다 사건 수록 연도를 책별로 보면, 제1책은 1785년에서 1788년까지, 제2책은 1789년에서 1791년까지, 제3책은 1792년, 제5책은 1794년에서 1795년까지, 제6책은 1796년, 제7책은 1797년, 제8책은 1798년, 제9책은 1799년에서 1800년까지로 되어 있다 수록내용을 책별로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1책 통감감인청(通鑑監印廳)이 총재대신 이하에게서 수의(收議)한 것을 가지고 아뢰던 일을 비롯하여 친군(親軍)을 장용위로 호칭하게 한 일, 장용청이 시사절목(試射節目)을 바친 일, 장용청 교졸에게 호궤를 분급케 한 일, 장용청 군액을 먼저 정한 뒤에 무예청에서 의망(擬望 추천)하도록 한 일, 선혜낭청 박종후·김이택·유한갈을 도태시킨 일, 묘당에 명하여 장용영 연약환(鉛藥丸)의 수급을 구획하게 한 일, 장용영의 군안을 수정하게 한 일, 장용영이 새로 갖춘 군기와 감관 공장의 별단(別單)을 아

뢴 일, 장용영에게 명하여 각 색 각 초에 각각 영전 3백량씩을 획급하도록 한 일, 장용영이 향군의 새로 정한 절목을 아뢴 일, 장용영이 새로 갖추고 보수한 군기의 수효별단을 아뢴 일, 장용영이 겸관 제조가 응당 해야 할 절목을 아뢴 일, 장용영에 교서를 내려 크고 작은 사무를 누설할 경우는 군율을 시행하게 한 일, 가체신금사목(加髢申禁事目)을 반하(頒下)하는 일, 가체신금사목의 시행성적 여하에 따라 수어사 김종수에게는 상현궁(上弦弓)이 특별히 하사되고, 장용영향색제조 이재간 등에게는 추고(推考 허물을 따져 생각함)가 가해진 일, 장용영이 제장관의 천전규칙을 아뢴 일, 전누고(傳漏鼓)를 함부로 친 사람에게 조서를 받아 조율하게 한 일 등

◉ 2책 장용영에게 명하여 군기감조인 등의 별단을 장문케 한 일, 장용영장관 이하에게 성묘를 가도록 허락한 일, 임경업의 후손인 태원(泰遠)을 장용영 파총으로 올려 임명한 일, 장용영 마보군병의 방번식(防番式)을 정한 일, 장용영의 승호초상규(陞戶抄上規)를 정한 일, 장용영이 배봉둔절목을 올린 일, 장영파총선기장의 이력을 정한 일, 장용영의 기제(旗制)를 정한 일, 장용영이 『무예도보통지』를 올린 일, 선혜청의 갑주가미(甲胄價米)를 장용영으로 이획하게 한 일, 선혜청당상 이병모와 낭청 조원에게 구초(口招)를 받아내게 한 일 등

◉ 3책 통영에서 만든 장용영 군기의 수급가를 호남의 선저치미로 구획케 한 일, 서총대(瑞葱臺) 시사(試射)를 행하고 합격된 자에게 시상한 일, 임금이 영화당에 나아가서 탐라공마를 반사한 일, 장용영이 갈마창이속절목을 올린 일 등

◉ 5책 어가가 양철평에 이르러서 진법을 익힌 일, 장용영이 화성의 성조와 야조의 정식을 아뢴 일, 장용영이 화성성역 때의 공장에게 시상할 것을 아뢴 일, 화성발참절목을 비국(備局)에 판하하고 본영절목과 기영절목을 1책으로 합록하여 세 곳에 분장하게 하며, 수원의 각항절목도 속히 인출하여 분장하도록 주의시킨 일, 자궁에게 진찬한 일, 진찬소의 대신 이하에게 시상한 일, 장용영군물감조장교 천규석·이경기에게 가자(加資)한 일 등

◉ 6책 장용영이 향군 가설 후의 절목을 아뢴 일, 외탕고의 전곡을 가지고 1일 반전(盤纏)을 수가한 각 영·각 사에게 더 주도록 한 일, 정리소가 절목을 올린 일, 장용영이 촉호군교(捉虎軍校)의 성명별단을 아뢴 일, 장용영이 동부연지동의 영속인호 분계와 좌우통계에서 응당해야 할 절목을 올린 일 등

◉ 7책 본영의 고립군사 4명을 내각에 이속케 한 일, 원소식목상전을 행한 일, 제주공마를 제신에게 반사한 일, 장용영이 외영내의 각고전수(各庫典守)절목을 아뢴 일, 장용영이 영남 무사의 경시별단을 아뢴 일, 사복시(司僕寺)가 각도목장마의 유방 수효를 아뢴 일 등

◉ 8책 장용영이 수가하는 각사당랑원역(各司堂郞員役)에게 반전을 반급할 것을 아뢴 일, 시사방에서 합격한 사람을 유여택에서 시상한 일, 원소외금양처(園所外禁養處)에 금표를 새겨 세우게 한 일, 관서에 있는 장용영 둔전에서 곡식을 징수하거나 작전(作錢)할 때에 만일 민폐가 있을 경우는 둔감을 즉시 형배하고, 다른 궁방·아문의 장토가 본도에 있는 것을 일체 엄칙하도록 명한 일, 경조(京兆)가 격쟁인(擊錚人)의 원정을 아뢴 일, 비변사가 장용외영 부근의 5읍 군병을 합속하는 절목을 아뢴 일 등

◉ 9책 석상서(石尙書)의 족보를 사행 때 사오게 한 일, 문재(文宰)로서 총융사만 지내고 이미 삼국장망에 비의된 자는 발망하지 말게 한 일, 장용영이 방목하는 본영마의 자산수(孳産數)를 아뢴 일, 마천령 이북의 10읍 무거자(武擧子)를 남별영에서 시취하게 한 일 등이다

이 책에는 수원행행 때의 경비와 사격술을 시험하여 시상을 한 일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제2책에 실린 『무예도보통지』에 관한 기록에서는 편집·선사·교정 등의 분담 내력과 화원·사자관·서리·각수·각장·인출장·책장·소목장·사환군 등의 성명을 알 수 있다 제8책에 실린 「5읍군병합속절목(五邑軍兵合屬節目)」은 정조 대의 향군조직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이다

64) 『장용영대절목(壯勇營大節目)』

정조 때에 군영(軍營)으로 설치·운영 되었던 장용영의 제원을 기록한 요람 형식의 책이다 3권 3책으로 되어 있으며, 사본(寫本)이다

장용영은 1793년(정조 17)에 왕권강화를 위하여 설치한 금위조직(禁衛組織)이다 정조는 새로운 금위체제를 위하여 1785년(정조 9)에 장용위(壯勇衛)라는 국왕 호위의 전담부대를 창설하였다 그 뒤 1793년에 그 규모를 더욱 확대시켜 하나의 군영으로 발전시켰는데, 이것이 곧 장용영(壯勇營)이다 장용영은 크게 내영과 외영으로 나누어 지고, 내영은 도성을 중심으로 하였고, 외영은 수원의 화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외영제는 수원부를 화성으로 개칭하고 정3품의 부사에서 정2품의 유수로 승격, 장용외사와 행궁정리부(行宮整理府)의 직을 겸하게 하였으며 그 아래에 판관 1인을 두었다 이는 곧 정조가 생부인 장헌세자의 현륭원을 중시하여 취하였던 것이다

외영의 편제는 1798년(정조 22)에 크게 개혁되어 오위법(五衛法)으로 변하였다 이것은 장용영의 설치목적이 왕권강화에 있었던 만큼 편제도 중앙집권적인 오위체제를 도

입, 강력한 왕권의 상징으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나 정조가 승하하자 1802년(순조 2)에 혁파하여, 총리청(摠理廳)으로 고쳤다

목록을 살펴보면, 권1에는 목록·건치(建置)·관직·장교·차제(差除)·원역(員役)·천전(遷轉)·군제·청사·부신(符信)·군호(軍號) 등 34항목, 권2에는 경용(經用)·지방(支放)·곡부(穀簿)·회외(會外)·포폄(褒貶) 등 14항목, 권3에는 외영의 제절목(諸節目)과 배봉진(拜峯鎭)·고성진(古城鎭)·노량진의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권1의 건치는 목록에만 있고 본 항목에는 없다 각 항목의 내용은 매우 상세하게 조목별로 기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목록 중에서 중요한 것을 골라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관직(官職) 도제조(都提調) 1원(員), 제조 2원, 사(使) 1원, 종사관 1원, 별장 1원, 파총(把摠) 5원, 선기장(善騎將) 3원 등 18종의 관직들에 대하여는 창설 연도와 증감·개호(改號)·예겸(例兼) 등을 각각 소개하고 있다

◉ 장교(將校) 지각관(知慤官) 17인, 통장 2인, 제본사(除本仕) 7인, 교련관 20인 장용위 102인에 좌우열이 각각 50인이고 패두(牌頭) 2인, 별무사(別武士) 36인, 부료무사(付料武士) 16인, 마의(馬醫) 1인이다 이들 장교에 대하여도 각각 창설 연도와 증감 내력 등을 밝히고 있다

◉ 차제(差除) 도제조는 대신 중에서 현재 호위대장(扈衛大將)으로 겸하게 하되 이조에서 단부(單付 단망으로 관원을 골라 정하는 일)하여 임금의 재가를 받는 식으로 되어 있다 장교에 이르기까지 각각 차제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원역(員役) 서리(書吏) 16인, 서사(書寫) 4인 등 26인의 원역에 대해서도 그 창설연도 등을 밝히고 있다

◉ 천전(遷轉) 훈련첨정(訓鍊僉正)·훈련판관·훈련주부(訓鍊主簿)를 각각 한 자리를 더 설치하여 초관(哨官 한 초를 거느리던, 각 군영의 위관의 하나로 종9품임)을 만들고, 참외초관(參外哨官)은 근무경력이 15개월이 되면 주부로 승진시키며, 지구관(知慤官)·교련관 이하 관원들의 승진방법에 대하여도 설명하고 있다

◉ 군제(軍制) 각 군·병의 정수와 소속 그리고 충원 등을 밝히고 있다

◉ 청사(廳舍) 장용영·직방(直房)·치소·북창의 창건연도와 각각 446칸, 76칸, 99칸 반, 191칸 반에 이르는 부속건물의 내역을 모두 기록하였다

◉ 부신(符信) 각영대장은 명소(命召 임금이 은밀히 부를 때 사용하던 둥근 모양의 할부)를 차기도 하고 밀부(密符 유수·감사·병사·수사·방어사에게 병란이 일어나면 때를 가리지 않고 곧 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리는 병부)를 차기도 한다

는 것에서부터 인신(印信)에 장용영 세 자를 새기는 것과 영표(令票 각 영문에 주장의 명령을 전하는 표로 쓰던 것, 나무로 납작하고 둥글게 만들어 그 위에 '令票'라 썼음)를 대전(大殿)에 간직한다는 것 등 인신(印信 도장)의 형태 및 사용·관리 방법을 적고 있다

◉ 군호(軍號) 매일 지구관이 차비군호를 받아와서 전달하는 방법과, 군호를 받아갈 때 외영입직초관(外營入直哨官)이 유고시에는 입직별무사가 대행한다는 것 등을 밝히고 있다

◉ 초정(抄定)·대년군(待年軍)·장초년(壯抄年)·사취수(司吹手) 등의 선발규정을 밝혔다

◉ 참알(參謁) 도제조 이하 약방침의에 이르기까지 새로 제수된 날에는 무슨 복장으로 어느 장소에서 임금을 뵙는 의식을 위시하여, 동지·정조·제석·탄신에 도제조·제조·대장 이하가 모두 참알례를 행하는 것과 참알 때의 행례절차와 매월 삭망 문안할 때 대장·별장 이하 각 청의 장관·장교들의 문안절차 등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

◉ 의절(儀節) 제조가 대장의 자급(資級 벼슬아치의 위계)과 서로 대등할 경우, 길에서 서로 만나면 대장이 제조에게 양보하고, 대장의 자급이 제조보다 못하면 대장이 먼저 절을 하며, 대장은 비록 자급이 제조보다 높다 하더라도 역시 항례(抗禮 동등한 예)를 한다는 식이다 또한 대장 이하 별장·파총·선기장·초관·지구관·교련관 등 상호간의 경대의절을 밝히고 있다

◉ 직장(職掌) 향색제조는 전곡을 관장하고, 군색제조는 군무와 윤기를 관장하며, 종사관은 군물·기계·기치·군복 등을, 감관은 문부출납과 명령전달하는 일을, 약방침의는 군교의 간병구료하는 일을, 화원과 사자관은 선사·도화의 일을 관장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 겸찰(兼察) 향색제조가 결원되었거나 혹은 왕명을 받들고 밖에 있거나 말미를 받아 하향하였을 때에는 군색제조가 그 직무를 겸찰한다는 등으로 설명되어 있다

◉ 군적(軍籍) 맨 처음 군안(軍案)·마안을 각각 4건씩 작성하여 2건은 임금에게 바치고 1건은 대장소에, 1건은 지구관청에 올린다는 것과 군적과 요패에는 면세·용모·파기·보족인의 성명을 적는다는 것 등을 차례로 밝히고 있다

◉ 군기(軍器) 무기의 필요성과 더불어 법대로 무기가 제작되지 않았을 경우는 그 제작자를 처벌한다는 것을 밝힌 다음, 마보군이 갖는 총도는 무게와 길이 그리고 제작년월일을 새기고 따라서 문안을 작성하여 그 소재파악을 하게 하였다 또한 관청으로부터 받는 무기는 마군의 경우와 보군의 경우는 무엇이라는 식으로 화병·각색표

하군·아병·각소취수 등에 이르기까지 수령무기를 적고 있다

◉ 형명(形名) 기치의 제작방법과 사용요령 등을 밝히고 있다

◉ 입직(入直) 감관·통장·지구관·장용위패두·별무사·초관 등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해당 직소(直所)에 입직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번상(番上) 향군의 상번요령과 상하번시의 기계·복색 등에 대한 점검방법을 적고 있다

◉ 배호(陪扈) 임금이 거둥할 때 제조·대장·종사관 이하 배봉별장에 이르기까지 배호방법을 말하고 있다

◉ 징발(徵發) 원행 때나 능행 때에 어가가 지나는 지방에 있는 향군을 임시로 징발하는 방법 및 습진(習陣)할 때 배봉아병과 노량아병의 징발요령 등을 소개하고 있다

◉ 호궤(犒饋) 연초에 궐내입직군병에게 호궤(군사를 위로하여 음식을 내림)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능원을 행행하거나 성내외를 동가할 때에 수종하는 장교와 군병들에게 호궤하는 음식물의 가짓수까지를 기록하고 있다

◉ 이진(肄陣) 사맹삭(四孟朔)초 10일에 습진을 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무슨 일이 있을 경우는 20일이나 30일로 물려 행할 수도 있다는 것과, 복색에 있어서는 제조·종사관·감관의 경우 융복을, 대장 이하 장관·장교에 이르기까지 군복을 갖춘다는 등을 설명하고 있다

◉ 강사(講射) 제장관(諸將官)은 강사를 매월 세 차례씩 설행하고, 지구관과 교련관은 강진(講陣)을 매월 두 차례씩 설행하고, 장용위는 강진을 매월 한 차례씩 설행한다는 것과 유엽전·편전으로 실기를 실험하고 『병학지남』으로 면강(面講) 또는 배강을 시키는 등 무관에게 무예를 시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열기하고 있다

◉ 중일(中日) 다달이 중일(子·卯·午·酉가 드는 날 보던 무예시험) 시사(試射)에 대한 방법을 말하고 있다

◉ 취재(取才) 지구관·향무사·별무사 등의 선발규정 등을 밝히고 있다

◉ 마정(馬政) 납마(納馬) 할 경우는 유낭달마(有閬獙馬)로 할 것과 납마기일·마가(馬價)·춘추마점(春秋馬點) 등에 대한 규정을 밝히고 있다

◉ 급사(給仕) 지구관·교련관·장관·장교 등의 근무일자 계산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

◉ 급가(給暇) 도제조 이하 하급 군병 등에 이르기까지의 휴가신청 방법을 논하고 있다

◉ 칙령(飭令) 경군계령(京軍戒令) 10조는 영기(營機)를 누설하지 말 것, 반호(班

戶)와 통하지 말 것, 수렴(收斂)하지 말 것, 투항(鬪閧)하지 말 것, 금복(禁服)을 입지 말 것, 군장(軍裝)을 빌지 말 것, 잡기(雜技)를 하지 말 것, 무뢰배(無賴輩)를 사귀지 말 것, 두목을 업신여기지 말 것, 가로에서 술주정하지 말 것 등인데, 이 10조를 범하는 자는 소범(小犯)·대범(大犯)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향군계령(鄕軍戒令) 11조와 본영을 방자하여 비리를 저지른 교졸(校卒), 도망병, 사습(私習)을 기피한 마보군병, 10년내에 파손되게 갑주를 만든 자, 요패를 분실한 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 곤치(棍治) 도제조·제조·대장 등이 휘하 관료에게 범법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는 규정을 열기하고 있다

◉ 지방(支放) 향색(餉色)·군수색·향군색·외탕고·완천고(莞千庫)·별잉고(別剩庫)·군기색 등 각고(各庫)에서 1년 동안 지출할 전곡 및 화약의 수량을 밝히고 있다

◉ 상견(相見) 도제조·제조·대장이 새로 제수된 날에는 종사관·별장 이하가, 별장과 파총이 새로 제수된 날에는 선기장 이하가 찾아 뵙는다는 것 등을 설명하고 있다

◉ 시상(施賞) 시사(試射) 때의 시상절차를 규정하였다

◉ 반열(反閱) 종사관이 교체될 때나 고자(庫子)가 바뀔 때에는 반열을 한다는 것과 반열한 뒤에는 포결(逋欠)의 다소를 막론하고 관리자를 처벌한다는 것 등을 적고 있다

◉ 주휼(賙恤) 군병 중에 가난해서 가취(嫁娶)를 할 수 없거나, 상을 당하여 제대로 장례를 치룰 수 없거나, 가옥이 파괴되었거나 여역(癘疫)에 걸린 자에게 전곡으로 구제해 주는 것을 정하고 있다

◉ 승유수(陞留守) 수원부가 원침을 받들게 된 뒤로 부사가 유수로 승격된 것과 유수 겸 외사(留守兼外使)가 차는 인신·병부(兵符) 그리고 문첩의 규식 등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다

◉ 제치(制置) 수원유수의 임기는 송도·강도의 예에 의하여 2년, 판관은 경력예에 의하여 30개월을 정식으로 하며, 경내의 백성으로서 혹 타읍역명으로 본읍에 이거한 자에게는 본역을 제하고 본부에 소속시킨다는 것, 유죄(流罪)이하는 유수가 전담하고, 수원부 하리(下吏)는 송도·강도의 예에 의하여 서리(書吏)라 칭호한다는 것 등 여러 가지의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분공(分供) 수원부가 승격됨에 따라 예산규모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유청(油淸)·치계(雉鷄)·시초(柴草)·탄거(炭炬) 등도 양도례(兩都例)에 의하여

배정할 것과 군교·노비도 본부에서 전용할 것 등을 말하고 있다

◉ 친군위(親軍衛) 수원부는 한남의 응진이므로 훈국급마례(訓局給馬例)에 의하여 군병에게 탐라목마를 복정하되 매인당 한필씩을 지급하며, 각 장령을 차출하는 규정과 좌우열을 초선하는 법을 각항 조건별로 열기하고 있다

◉ 유방(留防) 친군위의 유방에 따른 전마·군량·마료·마보·사습·상격·양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도시(都試) 도시일자를 선택하는 일과 도시시관은 유수가 맡고 중군·종사관은 참시하여, 복색은 융복으로 거행한다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책은 장용영제도 등을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로서 장서각(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도서에 있다

65) 『현륭원행행절목(顯隆園幸行節目)』

1794년(정조 18) 1월에 정조가 현륭원(顯隆園)에 행행(幸行)하게 된 배경과 경위·절차 등에 관련된 제사실을 수록한 책이다 1책 126장의 필사본으로 현재 규장각도서에 소장되어 있다 『현륭원행절목(顯隆園行節目)』으로 표제되어 있으나, 이는 책 전체 내용 중의 일부 세목(細目)에 지나지 않는다 앞부분 수장(數張)이 없어져서 원 서명(原書名)이나 편자(編者)·편간시기(編刊時期) 등이 불분명하나 체재와 내용에서 보아 정조의 명으로 편찬된 듯 하다 체재·양식·내용은 의궤(儀軌)와 거의 같다

수록된 내용은 『정조실록(正祖實錄)』 해년(該年) 정월조(正月條)의 기사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모두 1794년의 기록인데, 정월의 기사가 많다 앞 뒤 부분에는 다소의 낙장(落張)과 충해로 인한 파손 부분이 있는데 첫머리 낙장 부분에는 목록과 행행에 관련된 군신의 논의가 실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내용은 전교(傳敎), 전령(傳令), 군령(軍令), 계사(啓辭), 장계(狀啓), 별단(別單), 의주(儀註), 절목(節目), 문이(文移), 배종(倍從), 반전(盤纏), 사복정례(司僕定例), 장표(掌標), 호궤(犒饋), 상전(賞典) 등 1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와 『원행정례(園幸定例)』 등 정조의 현륭원 행행과 관련된 참고자료가 있다

66) 『화령전응행절목(華寧殿應行節目)』

이 책은 편자(編者)와 연기(年期)를 알 수 없으며 1책 21장의 필사본으로 규장각도

서로 소장되어 있다. 화령전(華寧殿)은 정조의 진영(眞影)을 모시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던 건물로서, 아버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무덤을 명당처인 화산(花山)에 옮기고 새로 수원부를 건설하였던 정조의 효심과 유덕을 받들기 위해 1801년(순조 1) 수원부의 행궁 곁에 건립하였다. 이곳은 수원부의 행정장관인 유수가 관리의 책임을 맡는 등 국가적으로 신중히 여기던 곳이었다

화령전이 1801년 정월에 수원부내에 건립되어 현륭원 재실에 봉안되어 있던 정조의 진영이 이봉된 것으로 보아 이 절목은 이때에 만든 것으로 짐작된다 『화령전응행절목』은 화령전에서 이곳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방문하는 사람, 제사를 지낼 때 등에 지켜져야 할 조목 등을 하나하나 기록한 것로서 57개의 절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진(御眞)을 진열·보관하는 방법, 수직관(守直官)의 업무 및 전내(殿內)에서 제향(祭享)할 때의 복장, 화령전을 관리하고 지키는데 필요한 인원을 정해놓은 조항, 각종 소용물자의 마련, 소요 기구의 명칭·수효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67) 『화성둔답장흥소재도조작전용유재구별성책(華城屯畓長興所在賭租作錢用有在區別成冊)』

1797년(정조 21) 전라남도 장흥부(長興府)에 있는 화성둔답의 1796년(정조 20)분 도조작전액(賭租作錢額)을 상납하고 남은 금액을 지출 금액과 현재 남은 돈으로 구분, 정리하여 보고한 책이다 기재는 도조 총액과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 상납액, 지출액, 현재 남은 금액 순으로 하고 있다 1796년도 장흥부 소재 화성둔답의 도조 총액은 779석 19두이며 매석당 2냥씩 돈으로 바꾸어 1,560냥이 되었다 그 중 1,136냥을 상납하고 남은 424냥에서 398냥 4전을 각종 경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25냥 6전을 돈으로 남겼다.

장흥부에서 지출한 내역은 우선 장흥 지천고의 창사(倉舍) 12칸, 봉상청(捧上廳) 2칸, 고직청 3칸을 조성한 경비, 번와소(燔瓦所) 경비, 강진 벌목소의 경비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우선 장흥 지천고 창사 12칸, 봉상청 2칸, 고직청 3칸을 조성할 당시 들어간 지출 내역은 목수(木手) 21명이 8월 13일부터 9월 7일까지 25일간 부역하는 동안 1명당 매일의 음식·술·공임 값으로 3전씩 지급하여 도합 157냥 5전이 소요되었다 인거장(引鉅匠) 1명의 경우는 8월 13일부터 9월 10일까지 28일간 3전씩 지급한 것이 8냥 4전을, 개와장(盖瓦匠) 2명은 9월 8일부터 8일간 3전씩 4냥 8전, 담장 쌓는 군인[築墻軍] 3명은 9월 10일부터 10일간 3전씩 9냥을 지급하고, 정철(正鐵) 138근 구

입비로 23냥이 지급되어, 총 202냥 9전이 지출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번와소(燔瓦所)의 내역은 장인(匠人) 9명이 7월 1일부터 27일간 부역하는 동안의 음식·술·공임으로 72냥 9전이 소요되었고 마포 7필의 구입비 14냥(장인 9명에게 지급해 의의포, 용호, 거포 만드는데 들어감), 기와 굽는데 쓸 연료 나무 구입비 30냥이 들어 총 116냥 9전이 지출되었다 강진벌목소의 경우는 목수 6명이 윤 6월 27일부터 10일간 부역하는 동안의 음식·술·공임 값으로 1인당 2전씩 계산하여 12냥이 지급되었고, 예하시(曳下時) 민인 등의 고용값으로 40냥을, 창사터 값으로 4냥을 지출했다 1796년 도조를 거둘 때 도감(都監)과 차사(差使)의 두 달간 연가(煙價)로 22냥 6전이 지급되어 도합 78냥 6전이 지출되었다 지출액 398냥 4전을 제한 나머지 23냥 6전이 잔액으로 남아 있음을 밝히고 책의 맨 끝에 병마절도사(兵馬節都使)가 수결을 하였다 현재 규장각도서로 소장되어 있다

68) 『화성성역상전(華城城役賞典)』

1794년(정조 18) 1월부터 1796년 8월 사이의 화성성역(華城城役)에 따른 상전(賞典)을 왕명에 따라 1796년 9월에 정리의궤청(整理儀軌廳)에서 정리하여 만든 책이다 1책 61장의 필사본으로 소장처는 규장각도서이다 화성성역의 경위·내역은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에 실려있다

책의 구성은 상전 상·하와 부록으로서 호궤(犒饋)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각 부분은 먼저 왕명인 전교(傳敎)를 싣고 이어 해당내용을 열기하는 양식으로 되어 있다

(1) 화성성역상전 상(上) 1795년 윤 2월에 정조가 화성에 친행(親行)하여 성역이 거의 끝나감을 보고 미리 내린 상전으로 윤 2월 12일의 상전전교(賞典傳敎)에 이어 상사질(賞賜秩)·가자질(加資秩)·상가질(賞加秩)·첩가질(帖加秩)·내직조용질(內職調用秩)·외직조용질(外職調用秩)·군문수용질(軍門收用秩)·시사후별시상질(試射後別施賞秩)·원역공장질(員役工匠秩)·효로원역별시상질(效勞員役別施賞秩)·별단총수(別單摠數)·상전총수(賞典摠數) 순으로 포상대상자와 포상내역이 실려있다 (2) 화성성역상전 하(下) 성역이 끝난 뒤 1796년 9월 10일에 성역에 공이 있는 이들에게 전년의 상전과 중복을 고려하여 내린 상전으로 동일(同日)의 전교에 이어 내직조용질(內職調用秩)·외직조용질(外職調用秩)·죄명분간질(罪名分揀秩)·가자질(加資秩)·상가질(賞加秩)·첩가질(帖加秩)·군문수용질(軍門收用秩)·상사질(賞賜秩)·원역공장질(員役工匠秩)·별단총질(別單摠秩)·상전총수(賞典摠數) 순으로 실려있다 (3) 화성성역호궤

(華城城役犒饋) 성역에 종사·참여한 원역(員役)·장인(匠人)·군졸(軍卒) 등에게 떡·고기·술로써 호궤한 내역(대상인원수와 반급물품(頒給物品)의 종류·수량)을 정리한 것이다 호궤일자는 1794년 9월 16일, 1795년 윤 2월 13일, 10월 19일, 1796년 1월 21일, 4월 19일·24일, 6월 4일, 7월 15일·29일, 8월 10일·15일·17일·19일이다 8월 19일의 대호궤(大犒饋) 기록에 이어 8월 21일에는 승지(承旨)의 계청(啓請)에 따라 대호궤에 참여하지 않고 먼저 내려간 장수(匠手)에게 지방관들로 하여금 같은 격(格)의 물품을 내리도록 하였다 이어 9월 10일에 정리의궤청에 명하여 상전책자(賞典冊子)를 만들어 비변사와 화성부(華城府)에 보관토록 전교한 기사가 실려있다 화성성역에 참여하여 포상된 내역을 일람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제7장 기타(其他)

1) 『건릉표(健陵表)』

건릉의 표문(表文)과 음기(陰記)를 탁본(拓本)한 1첩(帖)의 탁본첩으로 규장각 도서이다 탁본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자획(字畫)은 마멸된 흔적이 없으며 비(碑)의 건립년대는 1900년(광무 4)이다

권두(卷頭)에는 「대한정조선황제건릉 효의선황후부좌(大韓正祖宣皇帝健陵 孝懿宣皇后祔左)」라는 전서(篆書)의 표문이 실려 있다 이에 이어서 정조릉의 이장관계와 정조의 존호의 추존(追尊), 시호(諡號)를 선황제(宣皇帝)라 추존한 내용이 적혀 있고, 다음에 효의왕후의 추존 내용도 실려 있다 마지막에는 고종(高宗)이 공경하여 전면(前面)과 음기를 쓴다 하고 '光武四年月日'이라 써 있다 연호(年號)·추존호(追存號) 등이 칭제건원(稱帝建元)을 행한 광무년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2) 『수원행행반차도(水原幸行班次圖)』

정조가 수원에 거둥할 때의 반차도로 정조말년에 만들어진 긴 두루마리의 채색도(彩色圖)이며, 필사본으로 규장각도서에 소장되어 있다 작성년대는 알 수 없으나 화성의 축성이 끝난 1794년(정조 18)무렵으로 추정되며 내용 중 '장용대장(壯勇大將)·장용영제조(壯勇營提調)' 등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장용영이 존속하던 기간(1791~1802년)의 것임은 틀림없다 마지막 부분에 약간의 결락(缺落)이 있다 조선의 복식사나 미술사연구에도 참고가 되는 자료이다

3) 『지지대비명(遲遲臺碑銘)』

수원과 광주(廣州)의 경계선인 지지현(遲遲峴) 위에 세워졌던 지지대비명을 탁본한 14절(折) 29면의 탁본첩(拓本帖)이다 지지대비는 1807년(순조 7)에 순조의 명에 의해서 세워진 것인데, 정조가 수원 현륭원에 원행을 와서 돌아갈 때 이곳에 이르러서 현륭원

쪽을 보고 차마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하여 이 고개를 지지현이라 하고 지지대(遲遲臺)를 만들고 비까지 세웠던 것이다 탁본의 연대는 알 수 없으며, 자획은 뚜렷하다

표지(表紙)에는 '遲遲臺碑銘帖'이라 쓰여 있고, 권두(卷頭)에는 '遲遲臺碑銘'이란 전서(篆書)가 있다 서영보(徐榮輔)가 찬(撰)하고, 윤사국(尹師國)이 서(書) 하고, 홍명호(洪明浩)가 전(篆)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어서 지지현과 지지대의 내력을 설명하고 있다 순조가 즉위한 뒤 수원어사(水原御史) 신현(申絢)의 청에 의하여 서영보에게 명하여 비문을 쓰게 하였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운문(韻文)의 명(銘)으로 정조의 효성과 덕을 찬양하고 있으며, 끝에는 비의 건립연대를 밝히고 있다

4) 『華城乃影(화성내영)』

저자인 일본인 사카이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가 1914년 9월 주정출판부(酒井出版部 수원군 수원면 남창리 95)에서 발간한 화보(畵報) 중심의 52쪽의 일본판 저술이다 이 책의 목차는 ① 수원군 ② 용인군 ③ 이천군 ④ 여주군 ⑤ 저명 실업가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수원군」편을 보면, ① 수원군세 약설(略說) ② 지지대 ③ 북지(北他) ④ 장안문 ⑤ 화서문에서 바라본 이민부락 ⑥ 수원부공원 1-3 ⑦ 수원행궁의 흔적 ⑧ 수원군청의 모습 ⑨ 화령전 ⑩ 화령전의 노송 ⑪ 수원성 시가의 일부 ⑫ 팔달문 ⑬ 남제(南堤)의 장류(長柳) ⑭ 공립 심상고등소학교와 보통학교 ⑮ 공자묘(孔子墓)에서 바라본 수원역 방면 전망 ⑯ 서호(축만제) ⑰ 권업모범장의 모습 ⑱ 농림학교·원잠종제조소(原蠶種製造所)·여자잠업강습소의 전경 ⑲ 화산의 능과 용주사의 불상 등을 화보 중심으로 간략히 서술해 놓았다 일제 식민지 초기인 1910년 초 수원의 문화유적과 행정·교육·산업·위생기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좋은 자료이다

5) 『發展する水原(발전하는 수원)』

일본인 사카이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의 저작으로, 1913년 9월 일문(日文)으로 간행되었다(수원군 수원면 남창리 95번지 酒井政之助 발행) 저자는 1885년 8월 일본 니이가타(新潟)현에서 태어나 1908년 일본 중앙대학을 졸업한 뒤 1910년 9월 조선에 와서 수원에 정착하였다 그는 수원에서 소송대리업(사법서사)에 종사하면서 조선신문 수원지국장, 수원학교조합회의원, 수원실업협회 법률고문, 수원전기주식회사 감사역, 니이가타현 회장, 수원독서회주사 등을 역임하였다

이 책의 서문은 조선총독부 수원모범장장장(水原模範場場長) 농학박사 혼다 코우스케(本田幸介)가 썼고, 총 74쪽 내용의 목차는 제1편 지리상으로 살펴본 수원, 제2편 역사상으로 살펴본 수원, 제3편 승지(勝地)로서 수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1편은 수원의 지세(地勢)·인구호수·교통·행정·학교조합·교육·위생·종교·농업·권업모범장·임업·상업·금융·수산·기타 생산사업(제지·양잠·과수재배·염연초제조) 등 일제 침략 초기인 1900~1910년대 초 수원지방의 사회현실을 통계숫자까지 첨부, 설명하고 있어 당시 수원의 사정을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이다

집필위원

김형목(중앙대학교 강사)
제1장 1~3, 5
제5장 5, 13
제6장 1~5, 8~9, 26, 32, 47, 50, 61

리제재(수원문화사연구회장)
제3장 11, 15~16, 18
제4장 1, 6~10, 13
제6장 6~7, 18, 60, 63, 64

박경하(중앙대학교 교수)
제1장 23
제5장 2~3, 6, 14~15
제6장 10, 53, 56, 65~66, 68

박옥걸(아주대학교 교수)
제1장 4, 12, 13~14, 18~20

오환일(유한대학 교수)
제2장 1~6, 8~18

정창렬(한양대학교 교수)
제3장 19

정형지(오산대학 교수)
제4장 14
제6장 11~25, 27~31, 33~46, 48~49, 51~52, 54~55, 57~59, 67

조성을(아주대학교 교수)
제1장 11, 21
제3장 4~6, 10, 12~13, 17
제5장 1, 7~12

최홍규(경기대학교 교수)
제1장 6~10, 15~17, 22
제2장 7, 19
제3장 1~3, 7~9, 14
제4장 3~5, 11~12, 15~16
제5장 4
제7장 4~5

편찬위원회

위 원 장	수원부시장	최병호
부위원장	수원문화원장	김종기
위　　원	전 수원시청 기획실장	이종민
	등잔박물관장	김동휘
	전 유네스코 경기도협회장	안익승
	경기대학교 교수	최홍규
	수원대학교 교수	구중서
	장안대학 교수	박천우
	국사편찬위 고증세실장	강영철
	향토사학자	이승언
	수원시청 공보담당관실	김우영
상임위원	수원문화사연구회장	리제재
간　　사	수원시 문화관광과장	신진호
서　　기	수원시 학예연구사	이달호

편집진

편집기획 교열·교정　이달호 허용호 김지형 김준혁 김세영 최금성 황윤정 박지연

* 題字　陶陽 金炳學

水原市史·附錄

-資料·解題-

발 행 일 / 1999년 2월 일
발 행 처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발 행 인 / 수원시장
인 쇄 / (주)경 기 출 판 사
(0331)231-5520~5

비매품
수원시사편찬위원회 (0331) 229-2910